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국문본)**

2009.11

외교통상부

※ 이 국문본은 법제처 심사 등 향후 정식서명을 위한
절차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수정될 수 있음.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 문

제 1 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대한민국 양허표

유럽공동체 당사자 양허표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유럽공동체 당사자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 3 장 무역구제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4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 5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6 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 7 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부속서 7-가-1 유럽공동체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국경간 서비스 공급)

부속서 7-가-2 유럽공동체 당사자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
(설립)

부속서 7-가-3 유럽공동체 당사자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
비스판매자)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부속서 7-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양해각서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
경 간 공급에 관한 양해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지역지구제·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 8 장 지불 및 자본이동

제 9 장 정부조달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 10 장 지적재산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 11 장 경 쟁

제 12 장 투 명 성

제 13 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협력

제 14 장 분쟁해결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 15 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 정 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공동선언

터키에 대한 공동 선언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 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유럽공동체설립조약 및 유럽연합조약의 당사자(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아일랜드,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과
유럽공동체는

기본협정에 반영된 공통의 원칙과 가치에 기초한 확고하고 오랜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양 당사자의 전반적 관계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전반적 관계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의 밀접한 경제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 및 투자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확신하며,

이 협정이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국제무역이 경제발전, 빈곤감소,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한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하며,

양 당사자가, 이 협정에 반영된 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그

러한 조치를 취할 양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자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상호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며,

이 협정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과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 당사자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할 것을 결의하며,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며, 이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1994년 4월 15일 작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과 양 당사자가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 1.1 조 목 적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상품, 서비스, 설립 및 관련 규칙에 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2.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한다) 제24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

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라 한다.) 제5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

다. 당사자의 경제에서 경쟁, 특히 양 당사자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라. 양 당사자의 정부조달시장을 상호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것

마. 지적재산권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증가된 투자흐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는 것

사. 지속가능발전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인식하에, 지속가능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자의 무역 관계의 모든 수준에서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에 대해 약속하는 것, 그리고

아. 양 당사자의 환경 및 노동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환경, 노동 또는 직업 건강과 안전 기준의 저하나 축소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는 것

제 1.2 조 일반정의

이 협정 전반에 걸쳐, 아래 언급은 다음을 말한다.

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유럽공동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공동체 당사자”라 한다)을 말한다.

기본협정이란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또는 이를 갱신, 개정 또는 대체하는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세관협정이란 1997년 4월 10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협정을 말한다.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1 절 공통 규정

제 2.1 조 목 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한다.

제 2.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¹⁾에 적용된다.

제 2.3 조 관 세

이 장의 목적상,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²⁾ 관세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8조에

-
- 1)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된 제 품을 의미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정의가 양 당사자가 최혜국대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맞게 부여할 수 있는 대우를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2.10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제 2.4 조 상품분류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있어서의 상품분류는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다)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된 분류이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5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2. 각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관세의 기준
세율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세율이다.

3.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감
축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들 간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무역위원회에서의 양 당사자의 결정은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 당사자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제 2.6 조 동 결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자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관세도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각 당사자가 일방적인 감축 이후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운영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며,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나. 수입 당사자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가공업자, 소매업자, 식당, 호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기관, 또는 그 밖의 인도 관세율할당 배분을 신청하고 관세율할당 배분을 받도록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관세율할당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으로 한정된다.

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관세율할당의 어느 부분을 생산자단체에게 배분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에게 한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의 각 관세율할당 및 적용 가능한 세번에 관한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관세율할당 배분은 특정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 또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그 품목 또는 혼합의 규격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유효하며, 그 품목 또는 혼합의 의도된 최종 사용이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율할당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적시한다.

4. 각 당사자는 수입자가 관세율할당 물량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5. 어떠한 당사자도 관세율할당 배분의 신청 또는 이용에 대하여 상품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6.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7.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1년차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 그리고 그 이후에

는 각 연도의 협정 발효 기념일을 시작으로 그 부록에 설정된 관세율할당의 전체 물량을 신청자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각 연도에 걸쳐 수입 당사자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그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제 3 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내국민대우

각 당사자는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9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10 조 수입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각 당사자는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와 제2.3조 가호, 나호 및 라호에

따라 관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항목 이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한정되고, 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며,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2.11 조

수출에 대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상품의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도, 또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동종 상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어떠한 내국세, 수수료 및 부과금도 유지하거나 도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2.12 조

관세평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관세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유보와 선택권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13 조

국영무역기업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및 그 주해와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상의 그들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의 양자무역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당사자는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 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 2.14 조 **분야별 비관세 조치의 철폐**

1. 양 당사자는 부속서 2-나부터 2-마까지에 규정된 약속에 따라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 조치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 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4 절 **상품과 관련된 특정 예외**

제 2.15 조 **일반적 예외**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20 조 및 그 주해상의 그들의 기존 권리 및 의무가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 무역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양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20조 자호 및 차호에 규정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려는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양 당사자에게 수용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자는 어려움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

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전 정보제공 또는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 5 절 제도 규정

제 2.16 조 상품무역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회합하고,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비관세 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다루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문제의 검토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다만, 이러한 임무는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련 작업반에 위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제 2.17 조 행정적 협력에 관한 특별 규정

1. 양 당사자는 행정적 협력이 이 장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 관세 대우의 이행 및 통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관세 및 관련 문제에 있어 부정과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을 강조한다.

2. 당사자가 행정적 협력 제공의 실패 및/또는 부정 또는 사기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경우, 그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관세위원회는 긴급 사안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합한다. 관세위원회의 틀 내에서 개최된 협의는 제 14.3조(협의)에 따른 협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1. 이 부속서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6”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사.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아.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자.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차.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카.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파.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2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5퍼센트,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행 5년차까지 매년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7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6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 이행 7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

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8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2퍼센트, 이행 9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7퍼센트, 그리고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인하하여,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0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의 첫째 날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거.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기준세율을 유지한다. 관세는 이행 9년차의 첫째 날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너.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6-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어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되고, 그 상품에 대하여 이행 16년차의 첫째 날과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더.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S-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 2) 10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4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첫째 날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

용된다.

러.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S-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 2)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첫째 날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머.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버.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자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기간 중의 관세율은 최소한,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경우 가장 근접한 0.1유로 센트 단위로 표시되도록,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자 양허표의 목적상, 각 연도별 감축은 제5항에서 정의된 해당 연도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이 부속서 및 부록 2-가-1의 목적상,
- 가.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나. 이행 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다. 이행 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라. 이행 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마. 이행 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바. 이행 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사. 이행 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아. 이행 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자. 이행 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차. 이행 1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카. 이행 1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타. 이행 1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파. 이행 1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하. 이행 1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거. 이행 1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너. **이행 1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더. **이행 1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러. **이행 1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머. **이행 1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버. **이행 2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일반 주해

1. 대한민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7년 5월 6일 발효 중인 대한민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반영한다.

부속서 2-가

대한민국 양허표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101101000	말(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한다)	0	0	
0101109000	기타	8	5	
0101901010	경주말	8	5	
0101901090	기타	8	5	
0101909000	기타	8	10	
0102101000	젖소	89.1	0	
0102102000	육우	89.1	0	
0102109000	기타	89.1	0	
0102901000	젖소	40	15	
0102902000	육우	40	15	
0102909000	기타	0	0	
0103100000	번식용의 것	18	0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10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10	
0104101000	번식용의 것	0	0	
0104109000	기타	8	0	
0104201000	유용산양	8	10	
0104209000	기타	8	0	
0105111000	번식용의 것	9	0	
0105119000	기타	9	0	
0105120000	칠면조	9	0	
0105191010	번식용의 것	0	0	
0105191090	기타	18	0	
0105199000	기타	9	0	
0105941000	번식용의 것	9	0	
0105949000	기타	9	3	
0105991010	번식용의 것	0	0	
0105991090	기타	18	0	
0105992000	칠면조	9	0	
0105999000	기타	9	0	
0106110000	영장류	8	0	
010612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	0	
0106191000	개	8	3	
0106192010	번식용의 것	0	0	
0106192090	기타	8	0	
0106193000	사슴	8	10	
0106194000	곰	8	0	
0106195010	번식용의 것	0	0	
0106195090	기타	8	0	
0106196010	번식용의 것	0	0	
0106196090	기타	8	0	
0106199000	기타	8	0	
0106201000	뱀	8	0	
0106202000	자라	8	3	
0106203000	거북	8	0	
0106209000	기타	8	0	
0106310000	맹금류	8	5	
0106320000	앵무류(파로트류·파라키트류·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5	
0106390000	기타	8	0	
0106901000	양서류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106902010	꿀벌	8	5	
0106902090	기타	8	0	
0106903010	갯지렁이	8	0	
0106903020	실지렁이	8	0	
0106903090	기타	8	0	
0106909000	기타	8	3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15	부속서 3-가 참조
020120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40	15	부속서 3-가 참조
0201300000	뼈 없는 것	40	15	부속서 3-가 참조
0202100000	도체와 이분도체	40	15	부속서 3-가 참조
020220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40	15	부속서 3-가 참조
0202300000	뼈 없는 것	40	15	부속서 3-가 참조
0203110000	도체와 이분도체	22.5	5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2.5	5	
0203191000	삼겹살	22.5	10	부속서 3-가 참조
0203199000	기타	22.5	10	부속서 3-가 참조
0203210000	도체와 이분도체	25	5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	5	
0203291000	삼겹살	25	10	
0203299000	기타	25	5	
0204100000	어린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또는 냉 장한 것에 한한다)	22.5	10	
0204210000	도체와 이분도체	22.5	10	
020422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22.5	10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냉동한 것에 한한다)	22.5	10	
0204410000	도체와 이분도체	22.5	10	
020442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22.5	10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5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2.5	10	
0204502000	냉동한 것	22.5	10	
02050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7	10	
0205002000	냉동한 것	27	10	
020610000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5	
0206210000	혀	18	15	
0206220000	간(肝)	18	15	
0206291000	꼬리	18	15	
0206292000	족	18	15	
0206299000	기타	18	15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7	
0206410000	간	18	5	
0206491000	족	18	6	
0206499000	기타	18	5	
0206800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5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18	15	
020711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18	12	
0207119000	기타	18	12	
020712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20	12	
0207129000	기타	20	10	
0207131010	다리	18	10	
0207131020	가슴	18	10	
0207131030	날개	18	10	
0207131090	기타	18	10	
0207132010	간	22.5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207132090	기타	27	10	
0207141010	다리	20	10	
0207141020	가슴	20	13	
0207141030	날개	20	13	
0207141090	기타	20	10	
0207142010	간	22.5	10	
0207142090	기타	27	10	
020724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0	
020725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8	7	
0207261000	절단육	18	10	
0207262010	간	22.5	10	
0207262090	기타	27	10	
0207271000	절단육	18	7	
0207272010	간	22.5	10	
0207272090	기타	27	10	
020732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0	
020733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8	13	
0207340000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2.5	10	
0207351000	절단육	18	10	
0207352010	간	22.5	10	
0207352090	기타	27	10	
0207361000	절단육	18	13	
0207362010	간	22.5	7	
0207362090	기타	27	10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10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	5	
020840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3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0	
0208901000	사슴의 것	27	10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	3	
0208909090	기타	18	10	
0209001000	돼지 비계	3	0	
0209002000	가금의 비계	3	0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	5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5	
0210190000	기타	25	5	
0210201000	건조 또는 훈제한 것	27	15	
0210209000	기타	27	15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10	
021092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10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10	
0210991010	소의 것	22.5	15	
0210991020	돼지의 것	22.5	5	
0210991030	가금류의 것	22.5	10	
0210991090	기타	22.5	10	
0210999010	면양과 산양의 것	22.5	10	
0210999020	가금류의 것	22.5	10	
0210999090	기타	22.5	10	
0301101000	비단잉어	10	0	
0301102000	열대어	10	3	
0301109000	기타	10	3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301911000	살모 트루타·양코링쿠스 미키스·양코링쿠스 클라키·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양코링쿠스 길래	10	7	
0301912000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10	7	
0301921000	실뱀장어(양식용에 한한다)	0	0	
0301929000	기타	30% 또는 1,908원/kg 양자중 고액(율)	10	
0301930000	잉어	10	0	
030194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0	3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0	3	
0301992000	방어	10	3	
0301994010	치어(양식용에 한한다)	0	0	
0301994090	기타	40% 또는 2,781원/kg 양자중 고액(율)	10	
0301995000	붕장어	10	5	
0301996000	갯장어	10	5	
0301997000	먹장어	10	3	
0301998000	넙치류	10	10	
0301999010	능성어	10	3	
0301999020	복어	10	5	
0301999030	틸라피아	10	0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5	
0301999051	치어(양식용에 한한다)	0	0	
0301999059	기타	38	5	
0301999060	송어	10	5	
0301999070	미꾸라지	10	3	
0301999080	메기	10	3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종, 아그라무스종)	10	3	
0301999092	붕어	10	3	
0301999093	연어	10	5	
0301999094	초어	10	0	
0301999095	민어	36	10	
0301999099	기타	10	10	
0302111000	살모 트루타·양코링쿠스 미키스·양코링쿠스 클라키·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양코링쿠스 길래	20	10	
0302112000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20	10	
0302120000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양코링쿠스 케타·양코링쿠스 차비차·양코링쿠스 키수츠·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대서양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20	5	
0302190000	기타	20	5	
0302210000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20	10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20	10	
0302230000	서대(솔레아종)	20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302290000	기타	20	10	
03023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20	3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	3	
03023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투우	20	3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20	3	
030235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20	0	
030236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20	0	
0302390000	기타	20	3	
030240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20	5	
0302500000	대구(가투스 모르화·가투스 오각·가투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20	10	
030261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20	5	
03026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20	5	
03026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20	0	
03026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20	10	
03026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20	3	
0302660000	뱀장어(앵귌라종)	20	10	
03026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0	3	
030268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치스종)	20	5	
0302691000	명태	20	10	
0302692000	방어	20	5	
0302693000	갈치	20	10	
0302694000	돔	20	10	
0302695000	붕장어	20	10	
0302696000	갯장어	20	5	
0302697000	전갱이	20	10	
0302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0	
0302699010	삼치	20	10	
0302699020	복어	20	7	
0302699030	병어	20	5	
0302699040	아귀	20	10	
0302699090	기타	20	10	
0302701000	간	20	3	
0302702000	어란	20	3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10	5	
0303190000	기타	10	5	
0303210000	송어(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앙코링쿠스 클라키·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 길래·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10	10	
0303220000	대서양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10	5	
0303290000	기타	10	5	
0303310000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10	10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10	10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	10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303390000	기타	10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5항 참 조	
03034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10	3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0	3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10	3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10	3	
030345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0	0	
030346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0	3	
0303490000	기타	10	3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10	7	
03035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0	10	
03036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	3	
03036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	3	
030371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10	10	
0303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10	5	
0303730000	검정대구(플라치우치 비렌스)	10	0	
03037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10	12-A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10	5	
0303760000	뱀장어(앵귌라종)	10	10	
0303770000	농어(디젠티라투스 라브락스·디젠티라투스 폰크타투스)	10	10	
03037800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유르피키스종)	10	10	
0303791000	명태	30	E	
0303792000	은대구	10	5	
0303793000	갈치	10	10	
0303794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10	5	
0303794090	기타	10	10	
0303795000	붕장어	10	10	
0303796000	조기	10	10	
0303797000	전갱이	10	10	
03037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34	10	
0303799010	삼치	10	10	
0303799020	복어	10	10	
0303799030	보리멸	10	5	
0303799040	홍살치	10	0	
0303799050	달고기	10	3	
0303799060	임연수어	10	3	
030379907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10-A	
0303799080	새꼬리 민태	10	7	
0303799091	아귀	10	10	
0303799092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10	7	
0303799093	홍어	10	10	
0303799094	밀크피쉬	10	0	
0303799095	민어	57	E	
0303799096	가오리	10	10	
0303799097	까나리	10	10	
0303799098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을 제외한다)	10	3	
0303799099	기타	10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303801000	간	10	5	
0303802010	명란	10	5	
0303802090	기타	10	5	
0304111000	피레트	20	3	
0304112000	연육	20	3	
0304119000	기타	20	3	
0304121000	피레트	20	5	
0304122000	연육	20	5	
0304129000	기타	20	5	
0304191010	피레트	20	10	
0304191020	연육	20	5	
0304191090	기타	20	5	
0304192010	피레트	20	10	
0304192020	연육	20	3	
0304192090	기타	20	3	
0304193010	피레트	20	0	
0304193020	연육	20	3	
0304193090	기타	20	3	
0304199010	피레트	20	5	
0304199020	연육	20	5	
0304199090	기타	20	5	
03042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	3	
03042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	3	
0304291000	명태의 것	10	10	
0304292000	붕장어의 것	10	10	
0304293000	대구어의 것	10	10	
0304294000	가자미의 것	10	10	
0304295000	참다랑어의 것	10	3	
0304296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은 제외한다)의 것	10	3	
0304297000	틸라피아의 것	10	0	
0304298000	쥐치의 것	10	3	
0304299000	기타	10	5	
0304911000	냉동 연육	10	3	
0304919000	기타	10	3	
0304921000	냉동 연육	10	5	
0304929000	기타	10	5	
0304991010	냉동연육	10	3	
0304991090	기타	10	3	
0304999010	냉동연육	10	5	
0304999090	기타	10	5	
0305100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3	
0305201000	간	20	3	
0305202000	건조어란	20	3	
0305203000	훈제어란	20	3	
0305204010	명태의 것	20	5	
0305204020	조기의 것	20	3	
0305204030	청어의 것	20	5	
0305204090	기타	20	3	
0305301000	건조한 것	20	3	
030530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3	
03054100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차비차·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0	5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	20	3	
0305491000	멸치	20	5	
0305492000	명태	20	3	
0305499000	기타	20	3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르크로세팔루스)	20	10	
0305591000	상어 지느러미	20	5	
0305592000	멸치	20	10	
0305593000	명태(복어)	20	3	
0305594000	조기(굴비)	20	10	
0305595000	복어	20	0	
0305596000	갯장어	20	3	
0305597000	까나리	20	5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20	0	
0305599000	기타	20	5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	20	3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르크로세팔루스)	20	5	
0305631000	멸치젓	20	10	
0305639000	기타	20	5	
0305691000	연어	20	5	
0305692000	송어	20	10	
0305693000	갈치	20	5	
0305694000	정어리	20	3	
0305695000	고등어	20	10	
0305696000	조기	20	10	
0305697000	전갱이	20	10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0	
0305699000	기타	20	3	
03061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 자수스종)	20	3	
03061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20	3	
0306131000	새우살	20	5	
0306139000	기타	20	10	
0306141000	게살	20	10	
0306142000	왕게	20	3	
0306143000	꽃게	14	10	
0306149000	기타	14	10	
0306190000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 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10	
03062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20	3	
03062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20	3	
0306231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3	
0306232000	건조한 것	20	3	
030623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50% 또는 363원/kg 양 자중 고액(율)	10	
0306241010	꽃게	20	10	
0306241020	대게	20	10	
0306241090	기타	20	10	
0306242000	건조한 것	20	5	
030624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10	
0306291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10	
0306292000	건조한 것	20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306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5	
0307101011	종패용	0	0	
0307101019	기타	5	3	
0307101090	기타	20	5	
0307102000	냉동한 것	20	5	
0307103000	건조한 것	20	5	
0307104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3	
03072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10	
0307291000	냉동한 것	20	10	
03072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3	
03073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7	
0307391000	냉동한 것	20	10	
03073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399000	기타	20	5	
0307411000	갑오징어	10	5	
0307412000	오징어	10	10	
0307491010	갑오징어	10	10	
0307491020	오징어	22	E	
030749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0	10	
0307493000	건조한 것	10	10	
0307511000	낙지	20	7	
0307512000	주꾸미	20	10	
0307519000	기타	20	10	
0307591010	문어	20	10	
0307591020	낙지	20	10	
0307591030	주꾸미	20	10	
0307591090	기타	20	3	
03075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599000	기타	20	5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20	0	
0307911110	치패	20	3	
0307911190	기타	20	5	
0307911200	전복	20	7	
0307911300	소라	20	10	
0307911410	종패용	0	0	
0307911490	기타	20	3	
0307911510	종패용	0	0	
0307911590	기타	20	7	
0307911600	새조개	20	10	
0307911700	개아지살	20	10	
0307911800	바지락	20	10	
0307911910	재첩	20	3	
0307911990	기타	20	10	
0307919010	성게	20	5	
0307919020	해삼	20	3	
0307919031	종묘	0	0	
0307919039	기타	20	5	
0307919040	해파리	20	5	
0307919090	기타	20	10	
0307991110	새조개	20	10	
0307991120	개량조개	20	10	
0307991130	바지락	20	10	
0307991140	개아지살	20	10	
0307991150	피조개	20	7	
0307991160	소라	20	10	
0307991190	기타	20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307991910	해삼	20	3	
0307991920	우렁쉥이	20	7	
0307991990	기타	20	10	
0307992110	개량조개	20	10	
0307992120	개아지살	20	10	
0307992130	바지락	20	10	
0307992190	기타	20	7	
0307992920	해삼	20	3	
0307992930	우렁쉥이	20	5	
0307992990	기타	20	5	
0307993110	개량조개	20	5	
0307993120	바지락	20	10	
0307993130	소라	20	3	
0307993190	기타	20	10	
0307993910	성게	20	3	
0307993920	해삼	20	3	
0307993930	해파리	20	0	
0307993990	기타	20	5	
0401100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36	15	
0401200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인 것	36	15	
0401301000	냉동크림	36	10	
0401309000	기타	36	13	
0402101010	탈지분유	17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0402101090	기타	17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0402109000	기타	17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0402211000	전지분유	17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0402219000	기타	17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0402290000	기타	17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0402911000	무당연유	89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402919000	기타	89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0402991000	가당연유	89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0402999000	기타	89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0403101000	액상의 것	36	10	
0403102000	냉동한 것	36	10	
0403109000	기타	36	10	
0403901000	버터밀크	89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6항 참 조	
0403902000	응고유와 응고크림	36	10	
0403903000	케피어	36	10	
0403909000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36	10	
0404101010	유장분말	49.5		
	- 사료용	49.5	0	
	- 기타	49.5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7항 참 조	
0404101090	기타	49.5		
	- 사료용	49.5	0	
	- 기타	49.5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7항 참 조	
0404102110	유당을 제거한 것	49.5		
	- 사료용	49.5	0	
	- 기타	49.5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7항 참 조	
0404102120	무기질을 제거한 것	49.5		
	- 사료용	49.5	0	
	- 기타	49.5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7항 참 조	
0404102130	유장농축 단백질	49.5		
	- 사료용	49.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 기타	49.5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7항 참 조	
0404102190	기타	49.5		
	- 사료용	49.5	0	
	- 기타	49.5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7항 참 조	
0404102900	기타	49.5		
	- 사료용	49.5	0	
	- 기타	49.5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7항 참 조	
0404900000	기타	36	10	
0405100000	버터	89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8항 참 조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	8	0	
0405900000	기타	89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8항 참 조	
0406101000	신선한 치즈	3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9항 참 조	
0406102000	커드	36	10	
0406200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9항 참 조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3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9항 참 조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36	10	
0406900000	기타 치즈	36		
	- 체더	3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9항 참 조	
	- 기타	3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9항 참 조	
0407001010	종란	27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407001090	기타	27	15	
0407009000	기타	27	10	
0408110000	건조한 것	27	13	
0408190000	기타	27	13	
0408910000	건조한 것	27	10	
0408991000	닭의 것	41.6	15	
0408999000	기타	27	10	
0409000000	천연꿀	243% 또는 1,864원/kg 양자중 고액 (을)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0항 참조	
0410001000	거북알	8	0	
0410002000	살랑개 동우리	8	0	
0410003000	로알제리	8	10	
0410009000	기타	8	0	
05010000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와 그 웨이스트	3	0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3	0	
0502902000	염소털	3	0	
0502909000	기타	3	0	
0504001010	소의 것	27	15	
0504001090	기타	27	13	
0504002000	방광	27	10	
0504003000	위	27	15	
0505100000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3	5	
0505901000	우모분	5	0	
0505909000	기타	5	5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3	0	
0506901010	호랑이의 것	3	0	
0506901020	소의 것	9	0	
0506901090	기타	3	0	
0506902000	골분	25.6	10	
0506909000	기타	3	0	
0507101000	상아	8	0	
0507102000	서각	8	0	
0507109000	기타	8	0	
0507901110	전지	20	15	
0507901190	기타	20	15	
0507901200	녹각	20	15	
0507902010	귀갑과 귀판	8	0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	0	
0507902030	천산갑	8	0	
0507902040	발굽과 발톱	8	0	
0507902090	기타	8	0	
0508001000	산호	8	0	
0508002010	진주패각	8	0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0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0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0	
0508002050	트로커스 패각	8	0	
0508002060	아고야 패각	8	0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리아스네보사, 엠브레마 프리카타, 콰드루라 콰드루라종)	8	0	
0508002090	기타	8	0	
050800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510001000	용연향	8	0	
0510002000	해리향	8	0	
0510003000	사향	8	0	
0510004000	우향	8	0	
0510005000	오령지	8	0	
0510009010	체장	8	0	
0510009020	담즙	8	0	
0510009030	합개	8	0	
0510009090	기타	8	0	
0511100000	소의 정액	0	0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알	8	0	
0511911090	기타	8	0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	5	3	
0511919000	기타	8	5	
0511991000	동물의 피	8	0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0	
0511992090	기타	0	0	
0511993010	소의 것	18	0	
0511993020	돼지의 것	18	0	
0511993090	기타	0	0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	10	
0511995011	정돈한 것	3	0	
0511995019	기타	3	0	
0511995020	마모의 웨이스트	3	0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8	0	
0511999010	잠종	18	0	
0511999020	누에번데기	8	0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를 제외한다)	8	0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8	0	
0511999090	기타	8	0	
0601101000	튤립의 것	8	0	
0601102000	백합의 것	4	0	
0601103000	다리아의 것	8	0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	0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0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	0	
0601107000	후리지아의 것	8	0	
0601108000	수선의 것	8	0	
0601109000	기타	8	0	
0601201000	튤립의 것	8	0	
0601202000	백합의 것	8	0	
0601203000	다리아의 것	8	0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8	0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0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8	0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	0	
0601208000	후리지아의 것	8	0	
0601209010	수선의 것	8	0	
0601209090	기타	8	0	
0602101000	과수의 것	8	0	
0602109000	기타	8	5	
0602201000	사과나무	18	0	
0602202000	배나무	18	0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	0	
0602204000	포도나무	8	0	
0602205000	감나무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602206000	굴나무	18	0	
0602207010	밤나무	8	10	
0602207020	호도나무	8	10	
0602207030	잣나무	8	10	
0602209000	기타	8	10	
0602300000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10	
0602400000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0602901010	난초	8	0	
0602901020	카네이션	8	0	
0602901030	구즈마니아	8	0	
0602901040	안개초	8	0	
0602901050	국화	8	0	
0602901060	선인장류	8	0	
0602901090	기타	8	0	
0602902011	분재용	8	10	
0602902019	기타	8	10	
0602902020	낙엽송	8	10	
0602902030	삼나무	8	10	
0602902040	편백	8	10	
0602902050	리기테다	8	10	
0602902061	분재용	8	10	
0602902069	기타	8	10	
0602902071	분재용	8	10	
0602902079	기타	8	10	
0602902081	분재용	8	10	
0602902089	기타	8	10	
0602902091	분재용	8	10	
0602902099	기타	8	10	
0602909010	목단	8	10	
0602909020	동백	8	10	
0602909030	뽕나무	18	0	
0602909040	버섯의 종균	8	0	
0602909090	기타	8	0	
0603110000	장미	25	0	
0603120000	카네이션	25	0	
0603131000	심비디움	25	0	
0603132000	팔레놉시스	25	5	
0603139000	기타	25	5	
0603140000	국화	25	0	
0603191000	튤립	25	0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25	0	
0603193000	백합	25	0	
0603194000	안개초	25	0	
0603199000	기타	25	5	
0603900000	기타	25	5	
0604100000	이끼와 지의	8	10	
0604911010	은행잎	8	10	
0604911090	기타	8	10	
0604919000	기타	8	0	
0604990000	기타	8	0	
0701100000	종자용	304	10	
0701900000	기타	304	E	
070200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45	7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703101000	양파	135% 또는 180원/kg 양 자중 고액(율)	E	
0703102000	쪽파	27	0	
0703201000	탈피한 것	360% 또는 1,800원/kg 양자중 고액 (율)	E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원/kg 양자중 고액 (율)	E	
0703901000	리크	27	0	
0703909000	기타	27	0	
0704100000	꽃양배추 및 절구된 브로콜리	27	5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	10	
0704901000	양배추	27	0	
0704902000	배추	27	5	
0704909000	기타	27	0	
0705110000	결구상추	45	10	
0705190000	기타	45	10	
0705210000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인티버스변 종, 포리오섬)	8	0	
0705290000	기타	8	0	
0706101000	당근	30% 또는 134원/kg 양 자중 고액(율)	5	
0706102000	순무	27	0	
0706901000	무	30	10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27	0	
0706903000	더덕	27	5	
0706904000	도라지	27	5	
0706909000	기타	27	5	
0707000000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7	0	
0708100000	완두(피셜 새티범)	27	5	
0708200000	콩(비그나종 · 파세러스종)	27	5	
0708900000	기타 채두류	27	5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	27	0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27	0	
0709400000	셀러리(셀러리악을 제외한다)	27	0	
0709517000	양송이버섯	30	10	
0709519000	기타	30	10	
0709591000	송이버섯	30	10	
0709592000	표고버섯	45% 또는 1,625원/kg 양자중 고액 (율)	15	
0709593000	영지버섯	30	10	
0709594000	느타리버섯	30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709595000	팽이버섯	30	10	
0709596000	송로	27	10	
0709599000	기타	30	10	
0709601000	단고추(벨 타입에 한한다)	270% 또는 6,210원/kg 양자중 고액 (율)	E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원/kg 양자중 고액 (율)	E	
0709700000	시금치류	27	0	
0709901000	고사리	30	10	
0709902000	고비	27	10	
0709903000	호박	27	0	
0709909000	기타	27	10	
0710100000	감자	27	5	
0710210000	완두(피셜 새티범)	27	5	
0710220000	콩(비그나종 · 파세러스종)	27	5	
0710290000	기타	27	5	
0710300000	시금치류	27	0	
0710400000	스위트콘	30	5	
0710801000	양파	27	12	
0710802000	마늘	27	15	
0710803000	죽순	27	10	
0710804000	당근	27	5	
0710805000	고사리	30	10	
0710806000	송이버섯	27	12	
0710807000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27	15	
0710809000	기타	27	0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0	
0711200000	올리브	27	0	
0711400000	오이류	30	10	
0711510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30	10	
0711591000	송로	27	10	
0711599000	기타	30	10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원/kg 양자중 고액 (율)	E	
0711903000	죽순	27	10	
0711904000	당근	30	10	
0711905010	고사리	30	12	
0711905020	고비	27	10	
0711905091	고추류	270% 또는 6,210원/kg 양자중 고액 (율)	E	
0711905099	기타	27	0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원/kg 양 자중 고액(율)	E	
0712311000	양송이 버섯	30	5	
0712319000	기타	30% 또는 1,218원/kg 양자중 고액 (율)	5	
0712320000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30% 또는 1,218원/kg 양자중 고액 (율)	10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종)	30% 또는 1,218원/kg 양자중 고액 (율)	10	
0712391010	송이버섯	30	12	
0712391020	표고버섯	45% 또는 1,625원/kg 양자중 고액 (율)	15	
0712391030	영지버섯	30% 또는 842원/kg 양 자중 고액(율)	10	
0712391040	느타리버섯	30	10	
0712391050	팽이버섯	30	10	
0712391090	기타	30% 또는 1,218원/kg 양자중 고액 (율)	0	
0712392000	송로	27	10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원/kg 양자중 고액 (율)	E	
0712902010	고사리	30% 또는 1,807원/kg 양자중 고액 (율)	10	
0712902020	무	30	7	
0712902030	파	30% 또는 1,159원/kg 양자중 고액 (율)	7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712902040	당근	30% 또는 864원/kg 양 자중 고액(율)	7	
0712902050	호박	30	10	
0712902060	양배추	30	10	
0712902070	토란줄기	30	10	
0712902080	고구마줄기	30	7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	5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370	13	
0712902093	감자	27	5	
0712902094	고비	30% 또는 1,446원/kg 양자중 고액 (율)	10	
0712902095	더덕	30	7	
0712902099	기타	30	7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0	
0713101000	종자용	27	5	
0713102000	사료용	0	0	
0713109000	기타	27	0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	27	5	
0713311000	종자용	607.5	5	
0713319000	기타	607.5	15	
0713321000	종자용	420.8	5	
0713329000	기타	420.8	15	
0713331000	종자용	27	5	
0713339000	기타	27	10	
0713390000	기타	27	7	
0713400000	렌즈콩	27	5	
0713500000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 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와 비시 아 파바변종, 마이너)	27	5	
0713900000	기타	27	5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15	
0714102010	칩	887.4	13	
0714102020	펠리트	887.4	10	
0714102090	기타	887.4	15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15	
0714104000	냉동한 것	45	5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또는 338원/kg 양 자중 고액(율)	13	
0714202000	건조한 것	385	13	
0714203000	냉장한 것	385	13	
0714204000	냉동한 것	45	10	
0714209000	기타	385	13	
0714901010	냉동한 것	45	10	
0714901090	기타	18	10	
0714909010	냉동한 것	45	5	
0714909090	기타	385	13	
0801110000	말린 것	30	0	
0801190000	기타	3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8012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30	0	
0801220000	탈각한 것	30	0	
08013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	0	
0801320000	탈각한 것	8	0	
08021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	0	
0802120000	탈각한 것	8	0	
08022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	7	
0802220000	탈각한 것	8	10	
08023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45	15	
0802320000	탈각한 것	30	6	
0802401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19.4% 또는 1,470원/kg 양자중 고액 (율)	15	
0802402000	탈각한 것	219.4% 또는 1,470원/kg 양자중 고액 (율)	15	
0802500000	피스타치오	30	0	
0802600000	마카다미아 너트	30	7	
08029010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566.8% 또는 2,664원/kg 양자중 고액 (율)	15	
0802901020	탈각한 것	566.8% 또는 2,664원/kg 양자중 고액 (율)	15	
08029020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7.0% 또는 803원/kg 양 자중 고액(율)	10	
0802902020	탈각한 것	27.0% 또는 803원/kg 양 자중 고액(율)	10	
0802909000	기타	30	7	
0803000000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 한 것에 한한다)	30	5	
0804100000	대추야자	30	10	
0804200000	무화과	30	7	
0804300000	파인애플	30	10	
0804400000	애버카도우	30	2	
0804501000	과아버	30	5	
0804502000	맹고	30	10	
0804503000	맹고스틴	30	10	
0805100000	오렌지	50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1항 참조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805201000 1)	감귤	144	E	
0805209000 2)	기타	144	15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30	5	
0805501000	레몬(시트리스 리몬 및 시트리스 리머눔)	30	2	
0805502010	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30	10	
0805502020	시트리스 라티폴리아	144	0	
0805900000	기타	144	E	
0806100000	신선한 것	45	S-A	
0806200000	건조한 것	21	0	
0807110000	수박	45	12	
0807190000	기타	45	12	
0807200000	포포우(파파야)	30	0	
0808100000	사과	45		
	- 후지 품종	45	20	부속서 3-가 참조
	- 기타	45	10	부속서 3-가 참조
0808201000	배	45		
	- 동양배 품종	45	20	
	- 기타	45	10	
0808202000	마르멜로	45	0	
0809100000	살구	45	7	
0809200000	버찌	24	0	
080930000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45	10	
0809401000	자두	45	10	
0809402000	슬로우	45	0	
0810100000	초본류 딸기	45	10	
081020000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	45	12	
0810400000	크랜베리 · 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종의 과실	45	10	
0810500000	키위프루트	45	15	
0810600000	두리언	45	0	
0810901000	감	50	10	
0810902000	단감	45	10	
0810903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양자중 고액 (율)	15	
0810905000	매실	50	10	
0810909000	기타	45	10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0	5	
081120000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와 흑색 ·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30	5	
0811901000	밤	30	15	
0811902000	대추	30	13	
0811903000	잣	30	15	
0811909000	기타	30	5	
0812100000	버찌	30	0	
0812901000	초본류 딸기	30	0	
0812909000	기타	30	0	
0813100000	살구	45	0	
0813200000	프룬	18	2	
0813300000	사과	45	7	
0813401000	감	50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813402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양자중 고액 (율)	15	
0813409000	기타	45	0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	0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30	0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30	0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2	0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8	5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5	
0901901000	커피의 각과 피	3	0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8	5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내용 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 다)	513.6	18	
090220000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13.6	18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 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40	0	
0902400000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40	0	
0903000000	마태	25	5	
0904110000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8	0	
0904120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8	0	
0904201000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270% 또는 6,210원/kg 양자중 고액 (율)	E	
0904202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70% 또는 6,210원/kg 양자중 고액 (율)	E	
0905000000	바닐라	8	0	
0906110000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	8	0	
0906191000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을 제외하 다)	8	0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8	0	
0906201000	계피	8	0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8	0	
0907000000	정향[과실·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8	0	
0908100000	육두구	8	0	
0908200000	메이스	8	0	
0908300000	소두구	8	0	
0909100000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8	0	
0909200000	코리앤더의 씨	8	0	
0909300000	커민의 씨	8	0	
0909400000	캐러웨이의 씨	8	0	
0909500000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8	0	
0910100000	생강	377.3% 또는 931원/kg 양 자중 고액(율)	18	
0910200000	샤프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910300000	심황(강황)	8	0	
0910910000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에 한함)	8	0	
0910991000	타임 및 월계수의 잎	8	0	
0910992000	카레	8	0	
0910999000	기타	8	0	
1001100000	듀럼종의 밀	3	0	
1001901000	메슬린	3	0	
1001909010	종자용	1.8	0	
1001909020	사료용	0	0	
1001909030	제분용	1.8	0	
1001909090	기타	1.8	0	
1002001000	종자용	108.7	3	
1002009000	기타	3	0	
1003001000	맥주맥	513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2항 참조	부속서 3-가 참조
1003009010	겉보리	324% 또는 326원/kg 양 자중 고액(율)	E	
1003009020	쌀보리	299.7% 또는 361원/kg 양 자중 고액(율)	E	
1003009090	기타	299.7	13	
1004001000	종자용	554.8	5	
1004009000	기타	3	0	
1005100000	종자용	328	5	
1005901000	사료용	328	5	
1005902000	팝콘	630	13	
1005909000	기타	328	13	
1006100000	벼	-	X	
1006201000	메현미	-	X	
1006202000	찰현미	-	X	
1006301000	멥쌀	-	X	
1006302000	찰쌀	-	X	
1006400000	쇄미	-	X	
1007001000	종자용	779.4	10	
1007009000	기타	3	0	
1008100000	메밀	256.1	15	
1008201010	종자용	18	5	
1008201090	기타	3	0	
1008209000	기타	3	0	
1008300000	카나리시드	3	0	
1008900000	기타 곡물	800.3	15	
1101001000	밀가루	4.2	3	
1101002000	메슬린 가루	5	0	
1102100000	호밀가루	5	0	
1102200000	옥수수가루	5	0	
1102901000	보리가루	260	10	
1102902000	쌀가루	-	X	
1102909000	기타	800.3	15	
1103110000	밀의 것	288.2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103130000	옥수수	162.9	10	
1103191000	보리의 것	260	10	
1103192000	귀리의 것	554.8	13	
1103193000	쌀의 것	-	X	
1103199000	기타	800.3	13	
1103201000	밀의 것	288.2	10	
1103202000	쌀의 것	-	X	
1103203000	보리의 것	260	10	
1103209000	기타	800.3	15	
1104120000	귀리의 것	554.8	13	
1104191000	쌀의 것	-	X	
1104192000	보리의 것	233	10	
1104199000	기타	800.3	15	
1104220000	귀리의 것	554.8	13	
1104230000	옥수수	167	10	
1104291000	율무의 것	800.3	15	
1104292000	보리의 것	126	10	
1104299000	기타	800.3	15	
1104301000	쌀의 것	5	10	
1104309000	기타	5	0	
1105100000	분·조분과 분말	304	13	
1105200000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304	10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에 한한다)	8	5	
1106201000	참깨의 것	8	5	
1106209000	기타	8	5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8	0	
1107100000	볶지 아니한 것	269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2항 참조	부속서 3-가 참조
1107201000	훈연한 것	269	10	
1107209000	기타	27	5	
1108110000	밀의 것	50.9	5	
1108121000	식품용	226	15	
1108129000	기타	226	15	
1108130000	감자의 것	455	15	부속서 3-가 참조
1108141000	식품용	455	15	
1108149000	기타	455	15	
1108191000	고구마의 것	241.2	15	
1108199000	기타	800.3	15	
1108200000	이눌린	800.3	15	
110900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1201001000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487% 또는 956원/kg 양 자중 고액(율)	5	
1201009010	콩나물용	487% 또는 956원/kg 양 자중 고액(율)	E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201009090	기타	487% 또는 956원/kg 양 자중 고액(율)	E	
120210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30.5	18	
1202200000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230.5	18	
1203000000	코프라	3	0	
120400000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0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109000	기타	10	0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909000	기타	10	0	
12060000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25	0	
1207200000	면실	3	0	
1207400000	참깨	630% 또는 6,660원/kg 양자중 고액 (율)	18	
1207500000	겨자씨	3	0	
1207910000	양귀비씨	3	0	
1207991000	들깨	40% 또는 410원/kg 양 자중 고액(율)	10	
1207992000	시어넛(캐리트넛)	3	0	
1207993000	팜넛과 핵	3	0	
1207994000	피마자	3	0	
1207995000	잇꽃씨	3	0	
1207999000	기타	3	0	
1208100000	대두의 것	3	0	
1208900000	기타	3	0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	0	
1209210000	루우산(알팔파) 종자	0	0	
1209220000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0	0	
1209230000	페스큐 종자	0	0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 자	0	0	
1209250000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및 로오리엄 페레네 엘)	0	0	
1209291000	루핀종자	0	0	
1209292000	수단그래스 종자	0	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 종자	0	0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 종자	0	0	
1209299000	기타	0	0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	0	
1209911010	양파 종자	0	0	
1209911090	기타	0	0	
1209912000	무 종자	0	0	
1209919000	기타	0	0	
1209991010	참나무	0	0	
1209991090	기타	0	0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	0	
1209993000	연초 종자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209994000	잔디 종자	0	0	
1209999000	기타	0	0	
121010000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을 제외한다)	30	10	
1210201000	호프	30	0	
1210202000	루폴린	30	0	
1211201100	수삼	222.8	E	
1211201210	본삼	222.8	E	
1211201220	미삼	222.8	E	
1211201240	잡삼	222.8	E	
1211201310	본삼	754.3	E	
1211201320	미삼	754.3	E	
1211201330	잡삼	754.3	E	
1211202110	분	18	15	
1211202120	타브렛 또는 캡슐	18	10	
1211202190	기타	18	15	
1211202210	분	754.3	15	부속서 3-가 참조
1211202220	타브렛 또는 캡슐	754.3	15	부속서 3-가 참조
1211202290	기타	754.3	15	부속서 3-가 참조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754.3	15	
1211209200	종자	754.3	15	
1211209900	기타	754.3	15	
1211300000	코카잎	8	0	
1211400000	양귀비줄기	8	0	
1211901000	부자	8	0	
1211902000	황련	8	0	
1211903000	원지	8	0	
1211904000	패모	8	0	
1211905000	두충	8	0	
1211906000	감초	8	0	
1211909010	사인	8	0	
1211909020	산조인	8	0	
1211909030	사군자	8	0	
1211909040	용안육	8	0	
1211909050	산사자	8	0	
1211909060	연자육	8	0	
1211909070	박하	8	0	
1211909080	초피	8	5	
1211909091	건조한 도라지	8	0	
1211909099	기타	8	0	
1212201010	마른것	20	5	
1212201020	냉장한 것	20	3	
1212201030	냉동한 것	10	3	
1212201090	기타	20	5	
1212202010	건조한 것	20	10	
1212202020	염장한 것	20	5	
1212202030	냉장한 것	20	5	
1212202040	냉동한 것	45	5	
1212202090	기타	20	5	
1212203010	건조한 것	20	5	
1212203020	냉장한 것	20	5	
1212203030	냉동한 것	45	7	
1212203090	기타	20	3	
1212204010	신선한 것	20	3	
1212204020	냉장한 것	20	3	
1212204030	냉동한 것	45	5	
1212204090	기타	20	3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212205010	염장한 것	20	5	
1212205020	냉장한 것	20	5	
1212205030	냉동한 것	45	5	
1212205090	기타	20	5	
1212206010	냉동한 것	45	3	
1212206090	기타	20	3	
1212207011	냉동한 것	45	3	
1212207019	기타	20	3	
1212207021	냉동한 것	45	3	
1212207029	기타	20	3	
1212207031	냉동한 것	45	3	
1212207039	기타	20	3	
1212208011	냉동한 것	45	3	
1212208019	기타	20	3	
1212208021	냉동한 것	45	3	
1212208029	기타	20	3	
1212208031	냉동한 것	45	0	
1212208039	기타	20	0	
1212209011	냉동한 것	45	0	
1212209019	기타	20	0	
1212209091	냉동한 것	45	5	
1212209099	기타	20	5	
1212910000	사탕무	3	0	
1212991000	치커리뿌리(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것으로서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1212992000	구약구의 뿌리	8	0	
1212993000	화분	8	0	
1212994000	사탕수수	3	0	
1212995000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를 포함한다)	20	0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	8	0	
1212999000	기타	8	0	
1213000000	곡물의 껍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5	
1214101000	사료용	1	0	
1214109000	기타	10	0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00.5	15	
1214909011	사료용	1	5	
1214909019	기타	18	5	
1214909090	기타	100.5	15	
1301200000	아라비아 검	3	0	
1301901000	올레오레진	3	0	
1301902010	셀락	3	0	
1301902090	기타	3	0	
1301909000	기타	3	0	
1302110000	아편	8	0	
1302120000	감초의 것	8	0	
1302130000	호프의 것	30	0	
1302191110	인삼엑스	20	13	
1302191120	인삼엑스분	20	13	
1302191190	기타	20	10	
1302191210	홍삼엑스	754.3	15	부속서 3-가 참조
1302191220	홍삼엑스분	754.3	15	부속서 3-가 참조
1302191290	기타	754.3	15	부속서 3-가 참조
1302191900	기타	20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302192000	캐슈넛셀액	8	0	
1302193000	생칠	8	5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엑스	8	0	
1302199020	콜라엑스	8	0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 또는 바닐라 추출물	8	0	
1302199099	기타	8	0	
1302200000	펙틴질·펙티닝산업 및 펙틴산업	8	0	
1302311000	실한천	8	3	
1302312000	분한천	8	5	
1302319000	기타	8	5	
1302320000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1302390000	기타	8	0	
1401101000	맹종죽	8	5	
1401102000	청환죽	8	5	
1401109000	기타	8	5	
1401201000	쫄개거나 인발한 것	8	5	
1401209000	기타	8	5	
1401901000	참줄기껍질	8	5	
1401909000	기타	8	5	
1404200000	면린터	3	0	
1404901000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 및 너트(예: 상아야자)	3	10	
1404902010	저피	3	10	
1404902020	삼아피	3	10	
1404902090	기타	3	10	
1404903010	떡갈잎	5	5	
1404903020	멍게잎	5	5	
1404903090	기타	5	5	
1404904000	총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총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10	
1404905000	비 또는 브러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카우치 그라스 및 이스틸리)(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10	
1404906010	오배자	3	10	
1404906020	아몬드 핵	3	10	
1404906090	기타	3	10	
1404909000	기타	3	0	
1501001010	산가가 1 이하인 것	3	0	
1501001090	기타	3	0	
1501002000	가금지	3	0	
1502001010	산가가 2 이하인 것	2	0	
1502001090	기타	2	0	
1502009000	기타	3	0	
1503002000	라드유	3	0	
1503009000	기타	3	0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3	3	
1504109000	기타	3	3	
150420000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3	5	
1504301000	경유와 그 분획물	3	0	
1504309000	기타	3	0	
1505001000	조상의 올그리스	3	0	
1505009000	기타	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506001000	우각유와 그 분획물	3	0	
1506009000	기타	3	0	
150710000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4	10	
1507901000	정제유	5.4	5	
1507909000	기타	8	5	
1508100000	조유	27	7	
1508901000	정제유	27	5	
1508909000	기타	27	5	
1509100000	버어진	8	5	
1509900000	기타	8	0	
151000000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1511100000	조유	3	0	
1511901000	팜올레인	2	0	
1511902000	팜스테아린	2	0	
1511909000	기타	2	0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10	0	
1512112000	잇꽃유	8	0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10	5	
1512191020	잇꽃유	8	0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10	0	
1512199020	잇꽃유	8	5	
1512210000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4	5	
1512291000	정제유	5.4	0	
1512299000	기타	8	5	
1513110000	조유	3	0	
1513191000	정제유	3	0	
1513199000	기타	3	0	
1513211000	팜핵유	5	0	
1513212000	바바수유	8	0	
1513291010	팜핵유	5	0	
1513291020	바바수유	8	0	
1513299000	기타	8	0	
1514110000	조유	8	10	
1514191000	정제유	10	5	
1514199000	기타	10	5	
151491100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8	5	
1514912000	겨자유	30	5	
151499101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10	5	
1514991020	겨자유	30	5	
1514999000	기타	10	5	
1515110000	조유	8	0	
1515190000	기타	8	5	
1515210000	조유	8	5	
1515290000	기타	8	5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8	5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율)	18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12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515909010	미강유와 그 분획물	8	7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30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40	동유와 그 분획물	8	0	
1515909090	기타	8	5	
1516101000	우지와 그 분획물	8	0	
1516102000	경유와 그 분획물	8	0	
1516109000	기타	8	0	
1516201010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36	5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36	5	
1516201030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36	5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12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36	12	
1516202010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8	0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8	0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40	면실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8	0	
1516202090	기타	8	5	
1517100000	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8	3	
1517901000	이미테이션라드	8	0	
1517902000	쇼트닝	8	3	
1517909000	기타	8	5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	5	
1518002000	에폭시화한 대두유	8	5	
1518009000	기타	8	5	
15200000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페액	8	0	
1521101000	카나버 왁스	8	0	
1521102000	팜왁스	8	0	
1521109000	기타	8	0	
1521901000	경납	8	3	
1521902000	밀납	8	0	
1521909000	기타	8	0	
1522001010	천연의 것	8	0	
1522001090	기타	8	0	
1522009000	기타	8	0	
1601001000	소시지	18	5	
1601009000	기타	30	5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15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7	
1602209000	기타	30	7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0	
1602319000	기타	30	7	
1602321010	삼계탕	30	10	
1602321090	기타	30	10	
1602329000	기타	30	10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0	
1602399000	기타	30	10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5	
1602419000	기타	27	5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5	
1602429000	기타	27	5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6	
1602499000	기타	27	5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	15	
1602509000	기타	72	15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5	
1602909000	기타	30	15	
1603001000	육 엑스	30	10	
1603002000	육즙	30	15	
1603003000	어류의 엑스	30	3	
1603004000	어류의 즙	30	3	
1603009000	기타	30	3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19000	기타	20	3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29000	기타	20	5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4139000	기타	20	3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	10	
1604141012	보일드한 것	20	10	
1604141019	기타	20	10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	10	
1604141022	보일드한 것	20	10	
1604141029	기타	20	10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	10	
1604141032	보일드한 것	20	10	
1604141039	기타	20	10	
1604149000	기타	20	10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7	
1604159000	기타	20	7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7	
1604169000	기타	20	7	
1604191010	콩치	20	5	
1604191020	전갱이	20	5	
1604191030	뱀장어	20	5	
1604191090	기타	20	5	
1604199010	쥐치포	20	3	
1604199090	기타	20	3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	20	3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	20	3	
1604203000	생선소시지	20	3	
1604204010	게맛의 것	20	3	
1604204090	기타	20	3	
1604209000	기타	20	5	
1604301000	캐비아	20	3	
1604302000	캐비아 대용물	20	3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5101020	훈제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20	3	
1605101090	기타	20	3	
1605109000	기타	20	5	
1605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5209010	훈제한 것	20	3	
1605209020	브레드한 것	20	3	
1605209090	기타	20	5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5309000	기타	20	3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5409000	기타	20	3	
1605901010	굴	20	3	
1605901020	홍합	20	5	
1605901030	바지락	20	5	
1605901040	새조개	20	5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605901070	골뱅이	20	5	
1605901080	오징어	20	3	
1605901091	전복	20	3	
1605901092	소라	20	3	
1605901099	기타	20	5	
1605902010	오징어	20	10	
1605902020	골뱅이	20	5	
1605902030	새조개	20	5	
1605902090	기타	20	3	
1605909010	조미오징어	20	10	
1605909020	해삼	20	3	
1605909030	골뱅이	20	5	
1605909040	홍합	20	7	
1605909090	기타	20	5	
1701111000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3	0	
1701112000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1121000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3	0	
1701122000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1910000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40	E	
1701990000	기타	40	16-A	부속서 3-가 참조
1702111000	유당	49.5	5	
1702119000	유당시럽	20	10	
1702191000	유당	49.5	5	
1702199000	유당시럽	20	10	
1702201000	단풍당	8	5	
1702202000	단풍당시럽	8	0	
1702301000	포도당	8	5	
1702302000	포도당시럽	8	5	
1702401000	포도당	8	5	
1702402000	포도당시럽	8	5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	5	
1702601000	과당	8	0	
1702602000	과당시럽	8	5	
1702901000	인조꿀	243	10	
1702902000	캐러멜당	8	0	
1702903000	맥아당	8	5	
1702909000	기타	8	5	
1703101000	주정 제조용의 것	3	10	
1703109000	기타	3	0	
1703901000	주정 제조용의 것	3	10	
1703909000	기타	3	0	
1704100000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5	
1704901000	감초엑스(과자로 만들어진 것을 제외한다)	8	10	
1704902010	드롭프스	8	5	
1704902020	캐러멜	8	5	
1704902090	기타	8	5	
1704909000	기타	8	5	
1801001000	볶지 아니한 것	2	0	
1801002000	볶은 것	8	0	
1802001000	코코아두의 각과 피	8	0	
1802009000	기타	8	0	
1803100000	탈지하지 아니한 것	5	0	
1803200000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5	0	
1804000000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5	0	
1805000000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806100000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8	0	
180620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5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50퍼센트 이상의 것)	8	5	
1806209090	기타	8	5	
180631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5	
1806319000	기타	8	5	
180632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5	
1806329000	기타	8	5	
180690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5	
1806902111	조제분유의 것	36	12	
1806902119	기타	40	12	
1806902191	오트밀의 것	8	0	
1806902199	기타	8	0	
1806902210	보리가루의 것	8	5	
1806902290	기타	-	X	
1806902910	맥아엑스	30	5	
180690292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36	10	
1806902991	오트밀의 것	8	0	
1806902992	보리가루의 것	8	5	
1806902999	기타	-	X	
18069030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5.4	0	
1806903091	날알상의 쌀	8	10	
1806903099	기타	8	5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	8	0	
1806909090	기타	8	0	
1901101010	조제분유	36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3항 참조	
1901101090	기타	40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3항 참조	
1901109010	오트밀의 것	8	5	
1901109090	기타	8	0	
1901201000	쌀가루의 것	-	X	
1901202000	보리가루의 것	8	5	
1901209000	기타	-	X	
1901901000	맥아엑스	30	5	
190190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36	10	
1901909010	오트밀	8	5	
1901909091	쌀가루의 것	-	X	
1901909092	보리가루의 것	8	0	
1901909099	기타	-	X	
1902111000	스파게티	8	5	
1902112000	마카로니	8	5	
1902119000	기타	8	5	
1902191000	국수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902192000	당면	45% 또는 355원/kg 양 자중 고액(율)	5	
1902193000	냉면	8	5	
1902199000	기타	8	0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8	0	
1902301010	라면	8	0	
1902301090	기타	8	0	
1902309000	기타	8	0	
1902400000	쿠우스쿠우스	8	5	
1903001000	타피오카	8	5	
1903009000	기타	8	5	
1904101000	콘 플레이크	5.4	0	
1904102000	콘 칩	5.4	0	
1904103000	퍼프드 라이스	5.4	5	
1904109000	기타	5.4	0	
1904201000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의 것	45	0	
1904209000	기타	5.4	0	
1904300000	불거소맥	8	0	
1904901010	짜거나 삶은 쌀	50	10	
1904901090	기타	8	10	
1904909000	기타	8	0	
1905100000	귀리빵	8	10	
1905200000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10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8	5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8	5	
1905400000	러스크 · 토우스트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8	5	
1905901010	식빵	8	5	
1905901020	건빵	8	10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8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8	5	
1905901050	미과	8	0	
1905901090	기타	8	5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8	10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8	5	
1905909090	기타	8	0	
2001100000	오이류	30	0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	0	
2001909010	쪽파	30	5	
2001909020	토마토	30	5	
2001909030	꽃양배추	30	5	
2001909040	스위트콘	30	5	
2001909050	엽교	30	5	
2001909060	마늘	30	10	
2001909070	양파	30	5	
2001909090	기타	30	5	
2002100000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8	0	
2002901000	토마토페이스트(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0	
2002909000	기타	8	0	
2003104000	양송이 버섯	20	0	
2003109000	기타	20	7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003200000	송로	20	10	
2003901000	표고버섯	20	15	
2003902000	송이버섯	20	15	
2003909000	기타	20	0	
2004100000	감자	18	0	
2004901000	스위트콘	30	5	
2004909000	기타	30	0	
2005101000	유아용 푸레콘	20	5	
2005109000	기타	20	5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20	7	
2005209000	기타	20	5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	20	5	
2005511000	녹두의 것	20	5	
2005512000	팥의 것	20	5	
2005519000	기타	20	5	
2005591000	녹두의 것	20	5	
2005592000	팥의 것	20	5	
2005599000	기타	20	5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	20	10	
2005700000	올리브	20	5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5	5	
2005910000	죽순	20	10	
2005991000	김치	20	5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	20	0	
2005999000	기타	20	0	
2006001000	마롱 글라세	30	15	
2006002000	파인애플	30	5	
2006003000	생강	30	5	
2006004000	연뿌리	30	5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	20	5	
2006006010	탈각한 콩	20	5	
2006006090	기타	20	5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	20	5	
2006008000	올리브	20	5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5	0	
2006009020	죽순	20	7	
2006009030	기타 채소의 것	20	5	
2006009090	기타	30	5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5	
2007911000	잼·과실제리 및 마말레이드	30	5	
2007919000	기타	30	5	
2007991000	잼·과실제리 및 마말레이드	30	7	
2007999000	기타	30	5	
2008111000	피넛 버터	50	10	
2008119000	기타	63.9	10	
2008191000	밤	50	15	
2008192000	코코넛	45	0	
2008199000	기타	45	7	
2008200000	파인애플	45	5	
2008301000	유자	45	5	
2008309000	기타	45	5	
2008400000	배	45	7	
2008500000	살구	45	0	
2008600000	버찌	45	7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7	
2008709000	기타	45	5	
2008800000	딸기	45	7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008910000	팜 하트	45	10	
200892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5	
2008921090	기타	45	5	
2008922000	과실 샐러드	45	5	
2008929000	기타	45	5	
2008991000	포도	45	5	
2008992000	사과	45	5	
2008993000	파콘	45	7	
2008999000	기타	45	10	
2009110000	냉동한 것	54	3	
2009120000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4	5	
2009190000	기타	54	3	
20092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30	10	
2009290000	기타	30	7	
2009311000	레몬주스	50	5	
2009312000	라임주스	50	5	
2009319000	기타	54	10	
2009391000	레몬주스	50	7	
2009392000	라임주스	50	5	
2009399000	기타	54	10	
20094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0	5	
2009490000	기타	50	5	
2009500000	토마토주스	30	5	
2009610000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5	0	
2009690000	기타	45	0	
20097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5	10	
2009790000	기타	45	7	
2009801010	복숭아주스	50	10	
2009801020	딸기 주스	50	10	
2009801090	기타	50	7	
2009802000	채소주스	30	5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	7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	10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	12	
2009901090	기타	50	7	
2009902000	채소의 것	30	0	
2009909000	기타	50	10	
2101110000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8	5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	8	5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8	5	
2101129090	기타	8	5	
2101201000	설탕·레몬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7	
2101209000	기타	40	7	
2101301000	보리의 것	8	5	
2101309000	기타	8	5	
2102101000	양조효모	8	0	
2102102000	증류효모	8	10	
2102103000	제빵효모	8	5	
2102104000	배양효모	8	0	
2102109000	기타	8	5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	5	
2102202000	누룩	8	10	
2102203010	정제상의 것	8	0	
210220309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102204010	정제상의 것	8	0	
2102204090	기타	8	5	
2102209000	기타	8	5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0	
2103100000	간장	8	5	
2103201000	토마토 케첩	8	0	
2103202000	토마토 소스	45	0	
2103301000	겨자의 분과 조분	8	0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	0	
2103901010	된장	8	10	
2103901020	춘장	8	10	
2103901030	고추장	45	5	
2103901090	기타	45	5	
2103909010	마요네스	8	10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	5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	15	
2103909040	메주	16% 또는 64 원/kg 양자중 고액(율)	10	
2103909090	기타	45	15	
2104101000	육류의 것	18	7	
2104102000	어류의 것	30	5	
2104103000	야채의 것	18	5	
2104109000	기타	18	5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30	5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8	7	
2105001090	기타	8	7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8	5	
2105009090	기타	8	5	
2106101000	두부	8	5	
2106109010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 이상 의 것	8	0	
2106109090	기타	8	0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	0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	5	
2106901090	기타	8	0	
2106902000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하 다)	8	0	
2106903011	인삼차	8	10	
2106903019	기타	8	0	
2106903021	홍삼차	754.3	10	
2106903029	기타	754.3	10	
2106904010	김	8	5	
2106904090	기타	8	5	
2106909010	커피크리머	8	5	
2106909020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	8	7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5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8	5	
2106909050	향미용 조제품	8	5	
2106909060	도토리분	8	5	
2106909070	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	8	5	
2106909080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 로 한 것을 제외하며, 알코올용량이 전용량 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0	5	
2106909091	로알제리, 벌꿀조제품의 것	8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106909099	기타	8	3	
2201100000	광수와 탄산수	8	5	
2201901000	얼음과 눈	8	10	
2201909000	기타	8	0	
2202101000	착색한 것	8	0	
2202109000	기타	8	0	
2202901000	인삼음료	8	5	
2202902000	과즙음료	9	0	
2202903000	식혜	8	10	
2202909000	기타	8	5	
2203000000	맥주	30	7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15	0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0	
2204212000	흰 포도주	15	0	
2204219000	기타	15	0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	0	
2204292000	흰 포도주	15	0	
2204299000	기타	15	0	
2204300000	기타 포도즙	30	0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10	
2205900000	기타	15	10	
2206001010	사과주	15	0	
2206001020	배술	15	0	
2206001090	기타	15	0	
2206002010	청주	15	0	
2206002020	약주	15	0	
2206002030	탁주	15	0	
2206002090	기타	15	0	
2206009010	와인쿨러(제2009호 또는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에 한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0	
2206009090	기타	15	0	
2207101000	조주정	10	15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	15	부속서 3-가 참조
2207109090	기타	30	5	
2207200000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8	0	
2208201000	꼬냇	15	5	
2208209000	기타	15	5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	3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	3	
2208303000	라이 위스키	20	5	
2208309000	기타	20		
	- 아이리쉬 위스키	20	3	
	- 기타	20	5	
220840000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20	5	
2208500000	진 및 제네바	20	5	
2208600000	보드카	20	5	
2208701000	인삼주	20	0	
2208702000	오가피주	20	10	
2208709000	기타	20	5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을 제외한다)	20	10	
2208904000	소주	30	0	
2208906000	고량주	30	5	
2208907000	데킬라	20	5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208909000	기타	30	5	
2209001000	양조식초	8	5	
2209009000	기타	8	5	
2301101000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및 펠리트	9	7	
2301102000	수지박	5	0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5	5	
2301209000	기타	5	3	
2302100000	옥수수수의 것	5	0	
2302300000	밀의 것	2	0	
2302401000	쌀의 것	5	0	
2302409000	기타	5	0	
2302500000	채두류의 것	5	0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0	0	
2303200000	비트펄프·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5	0	
230330000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5	0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	0	
2305000000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0	
2306100000	면실의 것	2	0	
2306200000	아마인의 것	5	0	
2306300000	해바라기씨의 것	5	0	
23064100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0	0	
2306490000	기타	0	0	
230650000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2	0	
2306600000	팜넛 또는 핵의 것	2	0	
2306901000	참깨의 것	63% 또는 72 원/kg 양자중 고액(율)	10	
2306902000	들깨의 것	5	0	
2306903000	옥수수 배(胚)의 것	5	0	
2306909000	기타	5	0	
2307000000	포도주 박과 생주석	5	0	
2308001000	도토리	5	10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	10	
2308003000	면실피	5	0	
2308009000	기타	46.4	10	
2309100000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5	0	
2309901010	양돈용의 것	4.2	0	
2309901020	양계용의 것	4.2	0	
2309901030	어류용의 것	5	0	
2309901040	축우용의 것	4.2	0	
2309901091	대용유의 것	71	10	
2309901099	기타	5	0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4항 참조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309902020	향미제를 주로 한 것	50.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4항 참조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	0	
2309902099	기타	50.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4항 참조	
2309903010	향생물질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30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90	기타	5	0	
2309909000	기타	50.6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4항 참조	
2401101000	황색종	20	10	
2401102000	버어리종	20	10	
2401103000	오리엔트종	20	10	
2401109000	기타	20	10	
2401201000	황색종	20	10	
2401202000	버어리종	20	10	
2401203000	오리엔트종	20	10	
2401209000	기타	20	10	
2401301000	잎의 주맥	20	10	
2401302000	잎 부스러기	20	10	
2401309000	기타	20	10	
2402101000	시 가	40	10	
2402102000	셔루트	40	10	
2402103000	시가릴로	40	10	
2402201000	필터담배	40	15	
2402209000	기타	40	15	
2402900000	기타	40	10	
2403101000	파이프 담배	40	10	
2403109000	기타	40	10	
2403911000	판상엽	32.8	10	
2403919000	기타	40	10	
2403991000	씹는 담배	40	10	
2403992000	코 담배	40	10	
2403993000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	40	10	
2403999000	기타	40	10	
2501001010	암엽	1	0	
2501001020	천일엽	1	0	
2501009010	식엽	8	0	
2501009020	순엽화나트륨	8	3	
2501009090	기타	8	3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0	
2503000000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2	0	
2504101000	인상흑연	3	0	
2504102000	토상흑연	3	0	
2504109000	기타	3	0	
2504901000	인상흑연	3	0	
2504902000	토상흑연	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504909000	기타	3	0	
2505100000	규사	3	0	
2505901010	점토사	3	0	
2505901020	장석사	3	0	
2505901090	기타	3	0	
2505909000	기타	3	0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3	0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이고 100분의 0.1 이하인 것	3	0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3	0	
25062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06209000	기타	3	0	
2507001010	하소하지 아니한 것	3	0	
2507001090	기타	3	0	
2507002010	가이로메	3	0	
2507002020	기부시	3	0	
2507002090	기타	3	0	
2507009000	기타	3	0	
2508100000	벤토나이트	3	0	
2508300000	내화점토	3	0	
2508401000	산성백토	3	0	
2508402000	탈색토와 표포토	3	0	
2508409000	기타	3	0	
2508501000	홍주석	3	0	
2508502000	남정석	3	0	
2508503000	규선석	3	0	
2508600000	몰라이트	3	0	
2508701000	샤모트	3	0	
2508702000	다이나스어드	3	0	
2509000000	초크	3	0	
2510101000	천연인산칼슘	0	0	
2510102000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1	0	
2510109000	기타	1	0	
2510201000	천연인산칼슘	3	0	
2510202000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3	0	
2510209000	기타	3	0	
2511100000	천연황산바름(중정석)	3	0	
2511200000	천연탄산바름(독중석)	3	0	
2512000000	규조토(예 : 키이젤거어 · 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0	
2513101000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한 조각[분쇄한 부서(빔스키)을 포함한다]	3	0	
2513109000	기타	3	0	
2513201010	금강사	3	0	
2513201020	천연커런덤	3	0	
2513201030	천연석류석	3	0	
2513201090	기타	3	0	
2513202010	금강사	3	0	
2513202020	천연커런덤	3	0	
2513202030	천연석류석	3	0	
2513202090	기타	3	0	
25140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3	
2514009000	기타	3	3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515111000	대리석	3	0	
2515112000	트래버틴	3	0	
2515121000	대리석	3	0	
2515122000	트래버틴	3	0	
2515200000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 질의 암석 및 앨러바스터	3	0	
2516110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3	
25161200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 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	3	
25162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3	
25162090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 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	3	
25169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3	
2516909000	기타	3	3	
2517101000	자갈	3	0	
2517102000	쇄석	3	0	
2517109000	기타	3	0	
2517200000	슬랙 ·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 물의 매카담(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0	
2517300000	타르매카담	3	0	
2517410000	대리석의 것	3	0	
2517491000	현무암의 것	3	3	
2517492000	화강암의 것	3	3	
2517499000	기타	3	3	
2518100000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3	0	
251820000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3	0	
2518300000	응결백운석	3	0	
251910000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0	
2519901000	용융 및 소결한 마그네시아	3	0	
2519902000	천연산화마그네슘	3	0	
2519909000	기타	3	0	
2520101000	석고	5	0	
2520102000	무수석고	5	0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 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	0	
2520209000	기타	5	0	
2521001000	석회석	3	0	
2521009000	기타	3	0	
2522100000	생석회	3	0	
2522200000	소석회	3	0	
2522300000	수경성 석회	3	0	
2523100000	시멘트클링커	5	0	
25232100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5	0	
2523290000	기타	5	5	
2523300000	알루미나시멘트	8	5	
2523901000	슬랙시멘트	5	0	
2523909000	기타	5	5	
2524100000	청석면	5	0	
2524901000	갈석면	5	0	
2524902000	백석면	5	0	
2524909000	기타	5	0	
252510000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갬 운모	3	0	
2525200000	운모분	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	3	0	
2526101000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	0	
2526109000	기타	3	0	
2526200000	분쇄 또는 분말화한 것	5	0	
2528100000	천연봉산나트륨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0	
2528901000	봉산칼슘	3	0	
2528902000	염화봉산마그네슘	3	0	
2528903000	천연봉산	3	0	
2528909000	기타	3	0	
2529100000	장석	3	0	
2529211000	분말의 것	2	0	
2529219000	기타	2	0	
2529221000	분말의 것	2	0	
2529229000	기타	2	0	
2529301000	백류석	2	0	
2529302000	하석	2	0	
2529303000	하석섬장암	2	0	
2530101000	질석	3	0	
2530102000	진주암과 녹니석	3	0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3	0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3	0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마암광	3	0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	3	0	
2530904000	주사	3	0	
2530905000	납석	3	0	
2530906000	불석	3	0	
2530907000	명반석	3	0	
2530908000	규회석	3	0	
2530909010	도석	3	0	
2530909020	견운모	3	0	
2530909030	어드컬러	8	0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0	
2530909050	천연빙정석과 천연치올라이트	3	0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3	0	
2530909099	기타	3	0	
2601111000	적철광	0	0	
2601112000	자철광	0	0	
2601119000	기타	0	0	
2601121000	적철광	0	0	
2601122000	자철광	0	0	
2601129000	기타	0	0	
2601200000	배소한 황화철광	1	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	0	
2603000000	동광과 그 정광	0	0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	0	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0	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0	0	
2607000000	연광과 그 정광	0	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	0	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	0	0	
2611001000	흑중석	0	0	
2611002000	회중석	0	0	
2611009000	기타	0	0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0	0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	0	0	
2613100000	배소한 것	0	0	
2613900000	기타	0	0	
2614001000	루틸(금홍석)	0	0	
2614002000	아나타스(예추석)	0	0	
2614009000	기타	0	0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0	0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	0	0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	0	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	0	0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	0	0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	0	0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	0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0	0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	0	0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	0	0	
2617903000	베릴륨광과 그 정광	0	0	
2617904000	비스무트광과 그 정광	0	0	
2617909000	기타	0	0	
26180000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2	0	
2619001010	용광로 슬랙	2	0	
2619001090	기타	2	0	
2619002000	드로스	2	0	
2619003000	스케일링	2	0	
2619009000	기타	2	0	
2620110000	경아연 스펠타	2	0	
2620190000	기타	2	0	
2620210000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2	0	
2620290000	기타	2	0	
262030000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2	0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0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2	0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	0	
2620990000	기타	2	0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	2	0	
2621900000	기타	2	0	
2701110000	무연탄	0	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탄	0	0	
2701122000	기타 코크스용탄	0	0	
2701129010	휘발성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	0	
2701129090	기타	0	0	
2701190000	기타 석탄	0	0	
2701201000	연탄	1	0	
2701202000	마젤탄	1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701209000	기타	1	0	
2702100000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1	0	
2702200000	응결한 갈탄	1	0	
2703001000	응결하지 아니한 것	1	0	
2703002000	응결한 것	1	0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3	3	
2704001090	기타	3	3	
2704002000	반성코크스	3	0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	3	0	
2705000000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를 제외한다)	5	0	
2706001000	콜타르	5	3	
2706002000	갈탄타르 또는 토탄타르	5	0	
2706009000	기타	5	0	
2707100000	벤조올(벤젠)	3	0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	0	
2707300000	크실올(크실렌)	3	0	
2707400000	나프탈렌	5	0	
2707500000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ASTM D)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0	
2707910000	크레오소트유	5	0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	5	0	
2707992000	안트라센	5	0	
2707993000	페놀(석탄산)	8	0	
2707999000	기타	5	0	
2708100000	피치	5	0	
2708200000	피치코크스	5	0	
270900101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을 초과하고 0.841 이하인 것	3	0	
270900102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을 초과하고 0.847 이하인 것	3	0	
270900103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을 초과하고 0.855 이하인 것	3	0	
270900104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를 초과하고 0.869 이하인 것	3	0	
270900105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를 초과하고 0.885 이하인 것	3	0	
270900106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를 초과하고 0.899 이하인 것	3	0	
270900107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를 초과하고 0.904 이하인 것	3	0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를 초과하고 0.966 이하인 것	3	0	
2709001090	기타	3	0	
2709002000	역청유	3	0	
2710111000	자동차 휘발유	5	0	
2710112000	항공 휘발유	5	0	
2710113000	프로필렌테트라머	5	0	
2710114000	나프타	0	0	
2710115000	엔·지·엘(NGL)	0	0	
2710119000	기타	5	0	
2710191010	제트 연료유	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710191090	기타	5	0	
2710192010	등유	5	0	
2710192020	제트 연료유	5	0	
2710192030	노르말 파라핀	5	0	
2710192090	기타	5	0	
2710193000	경유	5	0	
271019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5	0	
2710194020	중유(방카 비유)	5	0	
2710194030	방카 싸유	5	0	
2710194090	기타	5	0	
2710195010	조유	7	0	
2710195020	윤활유기유	7	0	
2710196000	신전유	8	0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7	0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7	5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7	5	
2710197210	실린더오일	7	0	
2710197220	스핀들오일	7	0	
2710197230	기어오일	7	0	
2710197240	터빈오일	7	0	
2710197250	냉동기오일	7	0	
2710197310	콤 파운드오일	7	0	
2710197320	유동파라핀	7	0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5	
2710197410	방청유	7	5	
2710197420	절삭유	7	5	
2710197430	세척유	7	0	
2710197440	주형이형유	7	0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7	0	
2710197510	프로세스유	7	0	
2710197520	전기전열유	7	0	
2710197530	열처리유	7	0	
2710197540	열매체유	7	0	
2710197900	기타	7	0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90	기타	8	0	
2710199000	기타	8	0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11020	나프타 및 엔·지·엘의 것	0	0	
2710911090	기타	5	0	
2710912010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12090	기타	5	0	
2710913000	경유의 것	5	0	
271091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싸유의 것	5	0	
2710914090	기타	5	0	
271091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의 것	7	0	
2710919000	기타	8	0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91020	나프타 및 엔·지·엘의 것	0	0	
2710991090	기타	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710992010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92090	기타	5	0	
2710993000	경유의 것	5	0	
271099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 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싸유의 것	5	0	
2710994090	기타	5	0	
2710995000	조유 · 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의 것	7	0	
2710999000	기타	8	0	
2711110000	천연가스	3	0	
2711120000	프로판	3	0	
2711130000	부탄	3	0	
2711141000	에틸렌	5	0	
2711142000	프로필렌	5	0	
2711143000	부틸렌	5	0	
2711144000	부타디엔	5	0	
2711190000	기타	5	0	
2711210000	천연가스	3	0	
2711290000	기타	5	0	
2712101000	바셀린	8	0	
2712109000	기타	8	0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2712901010	슬랙왁스 및 스케일왁스	8	0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8	0	
2712901090	기타	8	0	
2712909010	몬탄왁스	8	0	
2712909020	토탄왁스	8	0	
2712909030	세레신왁스	8	0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8	0	
2712909090	기타	8	0	
2713110000	하소하지 아니한 것	5	0	
2713120000	하소한 것	5	0	
2713200000	석유아스팔트	5	0	
2713900000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5	0	
2714100000	역청질혈암 ·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5	0	
2714901000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5	0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5	0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5	0	
2715001000	컷백	5	0	
2715002000	아스팔트 · 역청 · 피치 또는 타르의 에멜전 또는 안정분산액	5	0	
2715003000	매스틱	5	0	
2715009000	기타	5	0	
2716000000	전기에너지	5	0	
2801100000	염소	5.5	0	
2801200000	요드	5.5	0	
2801301000	플루오르	5.5	0	
2801302000	브롬	5.5	0	
2802001000	승화황	5	0	
2802002000	침강황	5	0	
2802003000	콜로이드황	5	0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5.5	0	
2803009010	카본 블랙	5.5	0	
2803009090	기타	5.5	0	
2804100000	수소	5.5	0	
2804210000	아르곤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804291000	헬륨	5.5	0	
2804292000	네온	5.5	0	
2804293000	크립톤	5.5	0	
2804294000	크세논	5.5	0	
2804299000	기타	5.5	0	
2804300000	질소	5.5	0	
2804400000	산소	5.5	0	
2804501000	붕소	5.5	0	
2804502000	텔루르	5.5	0	
2804610000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2804690000	기타	5.5	0	
2804701000	황린	5	0	
2804709000	기타	5.5	0	
2804800000	비소	5.5	0	
2804900000	셀렌	5.5	0	
2805110000	나트륨	5.5	0	
2805120000	칼슘	5.5	0	
2805190000	기타	5.5	0	
2805301000	세륨그룹	5.5	0	
2805302000	테르븀그룹	5.5	0	
2805303000	에르븀그룹	5.5	0	
2805304000	이트륨	5.5	0	
2805305000	스칸듐	5.5	0	
2805309000	기타	5.5	0	
2805400000	수은	5.5	0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5.5	0	
2806200000	클로로황산	5.5	0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07001090	기타	5.5	0	
2807002000	발연황산	5.5	0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08001090	기타	5.5	0	
2808002000	황질산	5.5	0	
2809100000	오산화인	5.5	0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09201090	기타	5.5	0	
2809202010	메타인산	5.5	0	
2809202020	피로이산	5.5	0	
2809202090	기타	5.5	0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5.5	0	
2810001090	기타	5.5	0	
2810002000	오르토붕산	5.5	0	
2810003000	메타붕산	5.5	0	
2810009000	기타	5.5	0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11119000	기타	5.5	0	
2811191000	황화수소	5.5	0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5.5	0	
2811193000	술파민산	5.5	0	
2811194000	과염소산	5.5	0	
2811195000	염소산	5.5	0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5.5	0	
2811197000	아인산	5.5	0	
2811198000	비산	5.5	0	
2811199010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청산)	5.5	0	
2811199090	기타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811210000	이산화탄소	5.5	0	
2811221000	화이트카본	5.5	3	
2811229010	실리카겔	5.5	0	
2811229090	기타	5.5	0	
2811291000	일산화탄소	5.5	0	
2811292000	아산화질소	5.5	0	
2811293000	이산화질소	5.5	0	
2811294000	삼산화비소	5.5	0	
2811295000	오산화비소	5.5	0	
2811299000	기타	5.5	0	
2812101010	삼염화요드	5	0	
281210102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3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3	
2812101040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50	셀퍼 모노클로라이드	5	0	
2812101060	셀퍼 디클로라이드	5	0	
2812101090	기타	5	0	
2812102010	티오닐 클로라이드	5	0	
281210202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0	
281210203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0	
2812102090	기타	5	0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5.5	0	
2812902000	셀퍼헥사플루오라이드	5.5	0	
2812909000	기타	5.5	0	
2813100000	이황화탄소	5.5	0	
2813901020	오황화인	5.5	0	
2813901090	기타	5.5	0	
2813902010	오황화비소	5.5	0	
2813902090	기타	5.5	0	
2813903000	황화규소	5.5	0	
2813909000	기타	5.5	0	
2814100000	무수암모니아	1	0	
2814200000	암모니아수	2	0	
2815110000	고체의 것	5.5	5	
2815120000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8	7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5.5	0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5.5	0	
2815302000	과산화칼륨	5.5	0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5.5	0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5.5	0	
2816400000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5.5	0	
2817001000	산화아연	5.5	0	
2817002000	과산화아연	5.5	0	
2818101000	선별된 입상의 것	3	0	
2818109000	기타	3	0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1	0	
2818301000	알루미나겔	5.5	0	
2818309000	기타	5.5	0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5.5	0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5.5	0	
2819901090	기타	5.5	0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5.5	0	
2820100000	이산화망간	5.5	0	
2820901000	일산화망간	5.5	0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5.5	0	
2820909000	기타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821101000	산화철	5.5	0	
2821102000	수산화철	5.5	0	
2821200000	어드컬러	5.5	0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5.5	0	
2822001091	2차전지 제조용의 것	4	0	
2822001099	기타	5.5	0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5.5	0	
2822002090	기타	5.5	0	
2823001000	아나타스형	5.5	0	
2823009000	기타	5.5	0	
2824100000	일산화연(리타지·메시코트)	5.5	0	
2824901000	연단 및 오렌지연	5.5	0	
2824909000	기타	5.5	0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5.5	0	
2825109010	히드라진	5.5	0	
2825109020	히드라진과 무기염	5.5	0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5.5	3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 염산염)	5.5	0	
2825109049	기타	5.5	0	
2825201000	산화리튬	5.5	0	
2825202000	수산화리튬	5.5	0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2	0	
2825309000	기타	3	0	
2825401000	산화니켈	5.5	0	
2825402000	수산화니켈	5.5	0	
2825501000	산화동	5.5	0	
282550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825502090	기타	5.5	0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5.5	0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5.5	0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3	0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5.5	0	
2825800000	산화안티몬	5.5	0	
2825901010	산화칼슘	5.5	0	
2825901020	산화텅스텐	1	0	
2825901030	산화석	5.5	0	
2825901090	기타	5.5	0	
2825902010	수산화칼슘	5.5	0	
2825902020	수산화망간	5.5	0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5.5	0	
2825902040	수산화석	5.5	0	
2825902090	기타	5.5	0	
2825903010	과산화니켈	5.5	0	
2825903090	기타	5.5	0	
2825909000	기타	5.5	0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5	0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5.5	0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슘	5.5	0	
2826193090	기타	5.5	0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 또는 플루오르화나트륨	5.5	0	
2826199000	기타	5.5	0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 석)	5.5	0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5.5	0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5.5	0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5.5	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5.5	0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 또는 플루오르화규산칼륨	5.5	0	
2826909000	기타	5.5	0	
2827100000	염화암모늄	5.5	0	
2827200000	염화칼슘	5.5	0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5.5	0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5.5	0	
2827350000	니켈 염화물	5.5	0	
2827391000	동염화물	5.5	0	
2827399000	기타	5.5	0	
2827411000	산화염화동	5.5	0	
282741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827412090	기타	5.5	0	
2827491000	산화염화물	5.5	0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5.5	0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5.5	0	
2827512000	브롬화칼륨	5.5	0	
2827591000	브롬화칼슘	5.5	0	
2827599000	기타	5.5	0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5.5	0	
2827609010	요드화칼륨	5.5	0	
2827609090	기타	5.5	0	
282810000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기타 하 이포아염소산칼슘	5.5	0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5	0	
2828901090	기타	5.5	0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5.5	0	
2828902090	기타	5.5	0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5.5	0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5.5	0	
2829191000	염소산칼륨	5.5	0	
2829192000	염소산바륨	5.5	0	
2829199000	기타	5.5	0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5.5	0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5.5	0	
2829901090	기타	5.5	0	
2829902010	브롬산염	5.5	0	
2829902020	과브롬산염	5.5	0	
2829902030	요오드산염	5.5	0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5.5	0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5.5	0	
2830109000	기타	5.5	0	
2830901000	황화물	5.5	0	
2830902000	폴리황화물	5.5	0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5.5	0	
2831102000	숯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숯폭실산나 트륨)	5.5	0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5.5	0	
2831902000	숯폭실산염	5.5	0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2109000	기타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5.5	0	
2832202000	아황산 칼륨	5.5	0	
2832203000	아황산 칼슘	5.5	0	
2832209000	기타	5.5	0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5.5	0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5.5	0	
2832303000	티오황산 칼륨	5.5	0	
2832309000	기타	5.5	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9000	기타	5.5	0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5.5	0	
2833220000	황산알루미늄	5.5	0	
2833240000	황산니켈	5.5	0	
283325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833259000	기타	5.5	0	
2833270000	황산바륨	8	0	
2833291000	황산철	5.5	0	
2833299000	기타	5.5	0	
2833300000	명반	5.5	0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5.5	0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5.5	0	
2833403000	과황산칼슘	5.5	0	
2833409000	기타	5.5	0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5.5	0	
2834109000	기타	5.5	0	
2834210000	질산칼륨	5.5	0	
2834291000	질산바륨	5.5	0	
2834299000	기타	5.5	0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5.5	0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5.5	0	
2835101090	기타	5.5	0	
2835102000	아인산염	5.5	0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5.5	0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5.5	0	
2835240000	인산칼륨	5.5	0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5	0	
2835260000	기타 인산칼슘	5.5	0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5.5	0	
2835299000	기타	5.5	0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5	0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5.5	0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5.5	0	
2835399000	기타	5.5	0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4	0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0	
2836400000	탄산칼륨	5.5	0	
2836500000	탄산칼슘	5.5	0	
2836600000	탄산바륨	5.5	0	
2836910000	탄산리튬	5.5	0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5.5	0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5.5	0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기타 탄산암모늄	5.5	0	
2836991090	기타	5.5	0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837111000	시아화나트륨	5.5	0	
2837112000	산화시아화나트륨	5.5	0	
2837191010	시아화칼륨	5.5	0	
2837191020	시아화동	5.5	0	
2837191030	시아화아연	5.5	0	
2837191090	기타	5.5	0	
2837192000	산화시아화물	5.5	0	
2837201000	페로시아화물	5.5	0	
2837202000	페리시아화물	5.5	0	
2837209000	기타	5.5	0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8	0	
2839190000	기타	8	0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8	0	
2839902000	규산바륨	8	0	
2839909000	기타	8	0	
2840110000	무수물	5	0	
2840190000	기타	5	0	
2840200000	기타 붕산염	5	0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0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8	0	
2841501000	크롬산칼륨	5.5	0	
2841509000	기타	5.5	0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5.5	0	
2841691000	아망간산염	5.5	0	
2841692000	망간산염	5.5	0	
2841693000	과망간산염	5.5	0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5.5	0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	5	0	
2841901000	석산염	5.5	0	
2841902010	티탄산바륨	5.5	0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5.5	0	
2841902030	티탄산납	5.5	0	
2841902090	기타	5.5	0	
2841903000	안티몬산염	5.5	0	
2841904000	철산염 및 아철산염	5.5	0	
2841905000	바나듐산염	5.5	0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5.5	0	
2841909000	기타	5.5	0	
2842101000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	6.5	0	
2842109000	기타	5.5	0	
2842901000	셀렌산염	5.5	0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겐염 또는 착염	5.5	0	
2842905000	셀렌의 겐염 또는 착염	5.5	0	
2842909000	기타	5.5	0	
2843101000	콜로이드 은	5.5	0	
2843102000	콜로이드 금	5.5	0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5.5	0	
2843109000	기타	5.5	0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43219000	기타	5.5	0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43299000	기타	5.5	0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5.5	0	
2843309000	기타	5.5	0	
2843901000	아말감	5.5	0	
2843909010	백금 화합물	5.5	0	
2843909090	기타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844101000	천연우라늄	0	0	
2844102000	분산물(천연우라늄 또는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109000	기타	0	0	
2844201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0	0	
2844202000	분산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 또는 이들 물품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0	0	
2844209000	기타	0	0	
2844301000	분산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309000	기타	0	0	
2844401000	방사성원소	0	0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	0	
2844403000	분산물(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409000	기타	0	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드리지)	0	0	
2845100000	중수(산화 중수소)	0	0	
2845901000	중수소	0	0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	0	
2845909000	기타	0	0	
2846100000	세륨화합물	5	0	
2846901000	산화이트륨	5	0	
2846909000	기타	5	0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47009000	기타	5.5	0	
2848001000	인동(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5	0	
2848002000	인화알루미늄	5.5	0	
2848009000	기타	5.5	0	
2849100000	탄화칼슘	5.5	0	
2849200000	탄화규소	5	0	
2849901000	복탄화물	5.5	0	
2849909010	탄화텅스텐	5.5	0	
2849909090	기타	5.5	0	
2850001000	수소화물	5.5	0	
2850002000	질화물	5.5	0	
2850003000	아지화물	5.5	0	
2850004000	규화물	5.5	0	
2850005000	붕화물	5.5	0	
2852001000	소호 제2825.90호, 제2827.39호, 제2827.49호, 제2827.60호, 제2830.90호, 제2833.29호, 제2834.29호, 제2835.39호, 제2837.19호, 제2837.20호, 제2841.50호, 제2842.10호, 제2842.90호, 제2843.90호, 제2848.0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또는 제2853.00호의 것	5.5	0	
2852002000	소호 제2918.11호, 제2931.00호, 제2932.99호, 제2934.99.9090호, 제3201.90.2000호, 제3201.90.4000호, 제3206.50호, 제3707.90호, 제3822.00.1091호 또는 제3822.00.2091호	6.5	0	
2852003000	제2934.99.2000호, 제3822.00.1092호 또는 제3822.00.2092호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852004000	소호 제3502.90호 또는 제3504.00호의 것	8	0	
2852005000	제3822.00.101호, 제3822.00.102호, 제3822.00.1093호, 제3822.00.201호, 제3822.00.202호 또는 제3822.00.2093호의 것	0	0	
2852006000	제3822.00.1099호 또는 제3822.00.2099호의 것	8		
	- 제3822.00.1099호의 것(기타)		0	
	- 제3822.00.2099호의 것(기타)		3	
2853001000	중류수 또는 전도도수 및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5	0	
2853002000	압축공기	5.5	0	
2853003000	아말감	5.5	0	
2853004000	시아노겐 및 시아노겐의 할로겐 화합물	5.5	0	
2853005000	알칼리 아미드	5.5	0	
2853009000	기타	5.5	0	
2901101000	부탄	0	0	
2901102000	헥산	0	0	
2901103000	헵탄	0	0	
2901109000	기타	0	0	
2901210000	에틸렌	0	0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	0	
2901230000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0	0	
2901241000	1,3-부타디엔	0	0	
2901242000	이소프렌	0	0	
2901291000	헥센	0	0	
2901292000	옥텐	0	0	
2901299000	기타	0	0	
2902110000	시클로헥산	5	0	
2902190000	기타	5	0	
2902200000	벤젠	3	0	
2902300000	톨루엔	3	0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5	0	
2902420000	메타-크실렌	5	0	
2902430000	파라-크실렌	3	0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3	0	
2902500000	스티렌	0	0	
2902600000	에틸벤젠	5	0	
2902700000	큐멘	3	0	
2902901000	나프탈렌	0	0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	0	
2902903000	메틸스티렌	0	0	
2902909000	기타	0	0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5.5	0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5.5	0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0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0	
2903140000	사염화탄소	5.5	0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5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5.5	0	
2903199000	기타	5.5	0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5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0	
2903290000	기타	5.5	0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이브로모에탄)	5.5	0	
2903391000	브로모메탄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03392000	브로모에탄(1,2-이브로모에탄을 제외한다)	5.5	0	
2903393000	요드메탄	5.5	0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CFC-116)	5.5	0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5	0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HFC-134a)	5.5	0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 메틸)-1-프로펜	5.5	0	
2903399000	기타	5.5	5	
290341000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0	
290342000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430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5.5	0	
290344100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5.5	0	
2903442000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5.5	0	
2903451010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5.5	0	
2903451090	기타	5.5	0	
2903452010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5.5	0	
2903452020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5.5	0	
2903452090	기타	5.5	0	
2903453010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5.5	0	
2903453020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5.5	0	
2903453030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5.5	0	
290345304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5.5	0	
2903453050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CFC-215)	5.5	0	
2903453060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5.5	0	
2903453070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7)	5.5	0	
2903453090	기타	5.5	0	
2903461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하론-1211)	5.5	0	
2903462000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하론-1301)	5.5	0	
2903463000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하론-2402)	5.5	0	
2903471000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5.5	0	
2903479000	기타	5.5	0	
290349111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5.5	0	
290349112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5.5	0	
2903491130	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31)	5.5	0	
2903491190	기타	5.5	0	
290349121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5.5	0	
290349122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5.5	0	
290349123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	5.5	0	
290349124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	5.5	0	
2903491290	기타	5.5	0	
290349131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	5.5	0	
2903491390	기타	5.5	0	
2903492000	불소 및 브롬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에탄·프로판의 유도체	5.5	0	
2903499000	기타	5.5	0	
29035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ISO)][린데인을 포함한다(ISO, INN)]	5.5	0	
29035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5.5	0	
2903590000	기타	5.5	0	
2903611000	클로로벤젠	5.5	0	
2903619000	기타	5.5	0	
29036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036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5	0	
2903691000	염화벤질	5.5	0	
29036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5.5	0	
2903692090	기타	5.5	0	
29036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5.5	0	
2903699000	기타	5.5	0	
2904101000	벤젠 술폰산	5.5	0	
2904109000	기타	5.5	0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5.5	0	
2904209010	니트로벤젠	5.5	0	
2904209020	4-니트로비페닐과 그 염	5.5	0	
2904209090	기타	5.5	0	
2904901000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2000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3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5	0	
2904909000	기타	5.5	0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2	0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0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5	
2905122090	기타	5.5	5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0	
2905140000	기타 부탄올	5.5	0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5	
2905169000	기타	5.5	5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5.5	0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5.5	0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5	0	
2905191000	헵틸알코올	5.5	0	
2905192000	노닐알코올	5.5	0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	0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5.5	0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0	
2905199020	2-프로필-헵틸 알코올	5	0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3	0	
2905199090	기타	5	0	
2905221000	게라니올·시트로네올·리날롤·로디놀 및 네롤	5	0	
2905229000	기타	5	0	
2905290000	기타	5	0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	0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5	
2905391000	1,4-부탄디올	5.5	0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5	
2905399000	기타	5.5	0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5	0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5.5	0	
2905430000	만니톨	8	0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	0	
2905450000	글리세롤	8	3	
2905490000	기타	5.5	3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5.5	0	
2905590000	기타	5.5	0	
2906110000	멘톨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0	
2906131000	스테롤	5.5	0	
2906132000	이노시톨	5.5	0	
2906191000	보르네올	5.5	0	
2906192000	테르피네올	5.5	0	
2906199000	기타	5.5	0	
2906210000	벤질알코올	5.5	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5.5	0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5.5	0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5.5	0	
2906299000	기타	5.5	0	
2907111000	페놀	5.5	5	
2907112000	페놀의 염	5.5	0	
2907121000	크레졸	5.5	0	
2907122000	크레졸의 염	5.5	0	
2907131000	옥틸페놀	5.5	0	
2907132000	노닐페놀	5	0	
2907139000	기타	5.5	0	
2907151000	나프톨	5.5	0	
2907152000	나프톨의 염	5.5	0	
2907191000	티몰	5.5	0	
2907192000	크실레놀과 그들의 염	5.5	0	
2907199000	기타	5.5	0	
2907211000	레소르시놀	5.5	0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5.5	0	
2907221000	히드로퀴논	5.5	0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5.5	0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5	5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5.5	5	
2907291000	카테콜	5.5	0	
2907299000	기타	5.5	0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5	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을 제외한다)	5	0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	0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5	0	
2908199000	기타	5	0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5.5	0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그들의 염	5.5	0	
2908992000	페놀술폰산	5.5	0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 및 그들의 염	5.5	0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 및 그들의 염	5.5	0	
2908999000	기타	5.5	0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5.5	0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5	0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5.5	0	
2909199000	기타	5.5	0	
2909201000	시네올	5.5	0	
2909209000	기타	5.5	0	
2909301000	아니솔	5.5	0	
2909302000	아네톨	5.5	0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5.5	0	
2909304000	앰브렛 머스크	5.5	0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5.5	0	
29093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09309090	기타	5.5	0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5	0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0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 에테르	5.5	0	
2909449000	기타	5.5	0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5.5	0	
2909499000	기타	5.5	0	
2909501000	오이게놀	5.5	0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5.5	0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5.5	0	
2909509000	기타	5.5	0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5.5	0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5.5	0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5.5	0	
2909609000	기타	5.5	0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0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5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5	5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5.5	0	
2910900000	기타	5.5	0	
2911001010	아세탈	5.5	0	
2911001020	헤미아세탈	5.5	0	
2911009000	기타	5.5	0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0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192000	시톨알	5.5	0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5.5	0	
2912199000	기타	5.5	0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5.5	0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5.5	0	
2912299000	기타	5.5	0	
2912301000	히드록시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309000	기타	5.5	0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0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9000	기타	5.5	0	
2912501000	트리옥산	5.5	0	
2912502000	파라알데히드	5.5	0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5.5	0	
2912509000	기타	5.5	0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0	
291300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 화유도체 · 술폰 화유도체 · 니트로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 화유도체	5.5	0	
2914110000	아세톤	5.5	5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3	0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0	
2914191000	3,3-디메틸-2-부타논(피나콜론)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14199000	기타	5.5	0	
2914210000	장뇌	5	0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5	0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5	0	
2914231000	이오논	5	0	
2914232000	메틸이오논	5	0	
2914291000	자스몬	5	0	
2914299000	기타	5	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0	
2914390000	기타	5.5	0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5.5	0	
2914409000	기타	5.5	0	
2914501000	케톤-페놀	5.5	0	
2914509000	기타	5.5	0	
2914610000	안트라퀴논	5.5	0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5.5	0	
2914699010	퀴논알코올·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5.5	0	
2914699090	기타	5.5	0	
2914701000	케톤 머스크	5	0	
29147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14709090	기타	5	0	
2915110000	포름산	5.5	0	
2915121000	포름산 칼슘	5.5	0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5.5	0	
2915129000	기타	5.5	0	
2915131000	포름산 메틸	5.5	0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5.5	0	
2915139000	기타	5.5	0	
2915210000	초산	5.5	0	
2915240000	무수초산	5.5	0	
2915291000	초산칼슘	5.5	0	
2915292000	초산나트륨	5.5	0	
2915293000	초산코발트	5.5	0	
2915299000	기타	5.5	0	
2915310000	초산에틸	5.5	0	
2915320000	초산비닐	5.5	0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915339000	기타	5.5	0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5.5	0	
2915391000	초산아밀	5.5	0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5.5	0	
2915393000	초산메틸	5.5	0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5.5	0	
2915395000	초산2-에톡시에틸	5.5	0	
2915399000	기타	5.5	0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5.5	0	
2915409000	기타	5.5	0	
2915500000	프로피온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5.5	0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5.5	0	
2915701000	팔미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5.5	0	
2915702010	스테아르산	5.5	0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5	0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5.5	0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5.5	0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5.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5.5	0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5.5	0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5.5	0	
2915702090	기타	5.5	0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5.5	0	
2915909010	2-에틸헥소산	5.5	0	
2915909090	기타	5.5	3	
2916111000	아크릴산	6.5	0	
2916119000	기타	6.5	0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6.5	0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6.5	0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6.5	0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0	
2916129000	기타	6.5	0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5	
2916139000	기타	6.5	5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5	
2916149000	기타	6.5	5	
2916151000	올레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6152000	리놀레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6153000	리놀렌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6190000	기타	6.5	0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6.5	0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6.5	0	
29162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16209090	기타	6.5	0	
2916311000	벤조산	6.5	0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6.5	0	
2916313000	벤조산벤질	6.5	0	
291631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16319090	기타	6.5	0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6.5	0	
2916322000	염화벤조일	6.5	3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6.5	0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6.5	0	
2916351000	페닐아세트산에틸	6.5	0	
2916352000	페닐아세트산이소부틸	6.5	0	
2916359000	기타	6.5	0	
2916360000	비나파크릴(ISO)	6.5	0	
2916391000	계피산	6.5	0	
29163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16399090	기타	6.5	0	
2917111000	옥살산	6.5	0	
2917112000	옥살산의 염	6.5	0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6.5	0	
2917121000	아디프산	6.5	5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6.5	0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6.5	3	
2917123090	기타	6.5	3	
2917131000	아젤라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7132000	세바스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7140000	무수말레산	6.5	0	
2917191000	말레산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17192000	숙신산	6.5	0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6.5	0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6.5	0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6.5	0	
2917199000	기타	6.5	0	
2917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5	0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5	
2917329000	기타	6.5	3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6.5	0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5	0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헵틸	6.5	0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6.5	3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8	0	
2917349000	기타	6.5	5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0	
2917361000	테레프탈산	3	0	
2917369000	기타	6.5	0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0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3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T.M)	6.5	0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6.5	0	
2917399000	기타	6.5	0	
2918111000	락트산	6.5	0	
2918112000	락트산의 염	6.5	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20000	타르타르산	6.5	0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6.5	0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40000	시트르산	8	0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6.5	0	
2918151090	기타	6.5	0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61000	글루콘산	6.5	0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6.5	0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5	0	
2918191010	말산	6.5	0	
2918191090	기타	6.5	0	
2918192010	말산의 염	6.5	0	
2918192090	기타	6.5	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6.5	0	
2918193090	기타	6.5	0	
2918194000	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5	0	
2918199000	기타	6.5	0	
2918211000	살리실산	6.5	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6.5	0	
2918212090	기타	6.5	0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6.5	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산의 염	6.5	0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0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6.5	0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6.5	0	
2918231090	기타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18232000	기타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0	
2918299010	갈산	6.5	0	
2918299020	파라히드록시 나프토산	6.5	0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6.5	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299090	기타	6.5	0	
29183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18309000	기타	6.5	0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 세트산)와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9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18999000	기타	6.5	0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6.5	0	
291990101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19901019	기타	6.5	0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6.5	0	
2919901090	기타	6.5	0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9909000	기타	6.5	0	
29201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20119000	기타	6.5	0	
29201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20199010	0.0-디메틸-0-(3-메틸-4-니트로페닐)티 오포스페이트	6.5	0	
2920199090	기타	6.5	0	
2920901010	황산디메틸	6.5	0	
2920901020	황산디에틸	6.5	0	
2920901090	기타	6.5	0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 및 질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4010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20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3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4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20909090	기타	6.5	0	
2921111010	메틸아민	6.5	0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2010	디메틸아민	6.5	0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6.5	0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91000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0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6.5	0	
2921199020	클로르메틴[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6.5	0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6.5	0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트리스(2-클로로에틸)아 민]	6.5	0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2119906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6.5	0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1199090	기타	6.5	0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6.5	0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6.5	0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6.5	0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6.5	0	
2921229000	기타	6.5	0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5	0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5	0	
2921299000	기타	5	0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6.5	0	
2921309000	기타	6.5	0	
2921411000	아닐린	6.5	0	
2921412000	아닐린의 염	6.5	0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6.5	0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6.5	0	
292142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1429090	기타	6.5	0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9010	톨루이딘	6.5	0	
292143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1439099	기타	6.5	0	
2921441000	디페닐아민	6.5	0	
2921449000	기타	6.5	0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5	0	
2921459090	기타	6.5	0	
2921460000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텍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펜터민(INN) 및 그들의 염	6.5	0	
29214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1499000	기타	6.5	0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6.5	0	
2921519090	기타	6.5	0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6.5	0	
2921599010	벤지딘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6.5	0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티벤-2,2'-디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6.5	0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6.5	0	
2921599090	기타	6.5	0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6.5	0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6.5	0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31000	트리에탄올아민	3	0	
2922132000	트리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40000	텍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5	0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6.5	0	
2922193010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산화된 염들	6.5	0	
2922193020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산화된 염들	6.5	0	
2922193090	기타	6.5	0	
292219400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500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6.5	0	
2922199000	기타	6.5	0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3	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9000	기타	6.5	0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6.5	0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6.5	0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6.5	0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6.5	0	
2922299040	페네티딘과 그들의 염	6.5	0	
2922299090	기타	6.5	0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노르메타돈(INN) 및 그들의 염	6.5	0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그들의 염	6.5	0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6.5	0	
2922399000	기타	6.5	0	
2922411000	리신	6.5	0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6.5	0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5	0	
2922421000	글루탐산	5	0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8	0	
2922423000	기타 글루탐산의 염	6.5	0	
2922431000	안트라닐산	6.5	0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6.5	0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6.5	0	
2922491000	글리신	6.5	0	
2922492000	알라닌	6.5	0	
2922493000	류우신	6.5	0	
2922494000	바린	6.5	0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6.5	0	
2922496000	페닐글리신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6.5	0	
2922499000	기타	6.5	0	
2922501000	세린	6.5	0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6.5	0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6.5	0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6.5	0	
29225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3	
2922509090	기타	6.5	3	
2923101000	콜린	6.5	0	
2923102000	콜린의 염	6.5	0	
2923201000	레시틴	6.5	0	
2923202000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0	
2923900000	기타	6.5	3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0	
2924121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6.5	0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6.5	0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6.5	0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6.5	0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0	
29241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24199090	기타	6.5	0	
29242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24219000	기타	6.5	0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 닐산) 및 그 염	6.5	0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6.5	0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6.5	0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6.5	0	
2924291090	기타	6.5	0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5	0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6.5	0	
2924299091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및 이오페프 롤	0	0	
2924299092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24299099	기타	6.5	0	
2925111000	사카린	6.5	0	
2925112000	사카린의 염	6.5	0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6.5	0	
2925191000	프탈아미드	6.5	0	
29251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25199090	기타	6.5	0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6.5	5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6.5	0	
2925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5	
2925299090	기타	6.5		
	- 구아니딘		0	
	- 기타		5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6.5	0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및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5	0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6.5	0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6.5	0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6.5	0	
2926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6909099	기타	6.5	0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6.5	0	
2927001900	기타	6.5	0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8	0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8	0	
2927002990	기타	8	0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6.5	0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6.5	0	
2928009010	페릴랄린	6.5	0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6.5	0	
29280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8009099	기타	6.5	0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9000	기타	6.5	0	
2929901000	이소시아나화물	6.5	0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6.5	0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르아미데이트	6.5	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6.5	0	
2929906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드 디할라이드	6.5	0	
2929909000	기타	6.5	0	
2930201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201090	기타	6.5	0	
293020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202090	기타	6.5	0	
2930301000	티우람모노술폰파이드	6.5	0	
2930302000	티우람디술폰파이드	6.5	0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술폰파이드	6.5	0	
2930400000	메티오닌	6.5	0	
2930501000	캡타폴(ISO)	6.5	0	
2930502000	메타미도포스(ISO)	6.5	0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6.5	0	
2930902010	티오우레아	6.5	0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6.5	0	
2930902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902099	기타	6.5	0	
2930903010	티오알코올	6.5	0	
2930903020	티오펜	6.5	0	
293090303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티올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3090304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4010	티오디글라이콜[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	6.5	0	
2930904020	티오아닐린	6.5	0	
2930904090	기타	6.5	0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술파이드	6.5	0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파이드	6.5	0	
2930905030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6.5	0	
2930905040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6.5	0	
2930905050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6.5	0	
2930905060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6.5	0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6.5	0	
2930905081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6.5	0	
293090508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6.5	0	
2930905090	기타	6.5	0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와 그들의 알킬화 혹은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 및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6.5	0	
2930909010	티오산	6.5	0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6.5	0	
2930909030	시스테인	6.5	0	
2930909040	시스틴	6.5	0	
2930909050	글루타티온	6.5	0	
2930909060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6.5	0	
293090907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 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함한 화합물	6.5	0	
2930909080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6.5	0	
2930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909099	기타	6.5	0	
2931002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6.5	0	
2931002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6.5	0	
2931002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6.5	0	
2931002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1002099	기타	6.5	0	
293100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그들에 대한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310033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0034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0035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6.5	0	
29310037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6.5	0	
293100391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2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5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1003919	기타	6.5	0	
2931004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6.5	0	
2931004090	기타	6.5	0	
293100501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2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4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90	기타	6.5	0	
29310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6.5	0	
29310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6.5	0	
29310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1009099	기타	6.5	0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6.5	0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5	0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2199000	기타	6.5	0	
2932211000	쿠마린	5	0	
2932212000	메틸쿠마린	5	0	
2932213000	에틸쿠마린	5	0	
2932291000	노나락톤	5	0	
2932292000	운데카락톤	5	0	
2932293000	부티로락톤	5	0	
2932294000	산토닌	5	0	
2932295000	페놀프탈레인	5	0	
2932296000	글루쿠로노락톤	5	0	
2932297000	탈수소초산과 그 염	5	0	
2932298000	아세틸케텐(디케텐)	5	0	
2932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2299090	기타	5	0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0	
2932930000	피페로날	6.5	0	
2932940000	사프롤	6.5	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0	
2932991000	디옥산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6.5	0	
2932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32999090	기타	6.5	0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틸아 미노피라조론-5)	6.5	0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6.5	0	
2933119030	설파린	6.5	0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6.5	0	
293311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33119099	기타	6.5	0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6.5	0	
2933199010	페닐부타존	6.5	0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6.5	0	
293319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33199099	기타	6.5	0	
2933211000	히단토인	6.5	0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0	
2933291000	리시딘	6.5	0	
2933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3	
2933299090	기타	6.5	3	
2933311000	피리딘	6.5	0	
2933312000	피리딘의 염	6.5	0	
2933321000	피페리딘	6.5	0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6.5	0	
2933330000	알펜타닐(INN), 아닐레리딘(INN), 베지트라 마이드(INN), 브로마제팜(INN), 디페녹신 (INN), 디펜옥실레이트(INN), 디피파논 (INN), 펜타일(INN), 케토베미돈(INN), 메 틸페니데이트(INN), 펜타조신(INN), 페치딘 (INN),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펜사 이클리딘(INN)(PCP), 페노페리딘(INN), 피 프라드롤(INN), 피리트라미드(INN), 프로피 람(INN), 트리메페리딘(INN) 및 그들의 염	6.5	0	
2933391000	이소니코산 하이드라지드	6.5	0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6.5	0	
2933394000	3-퀴누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	0	
2933395000	퀴누클리딘-3-올	6.5	0	
29333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3	
2933399090	기타	6.5	3	
2933410000	레보파놀(INN) 및 그 염	6.5	0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6.5	0	
29334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33499090	기타	6.5	0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의 염	6.5	0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 르비탈(INN), 부탈비탈(INN), 부토바르비탈 (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 르비탈(INN), 펜토바르비탈(INN), 페노바르 비탈(INN),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 비탈(INN), 비닐비탈(INN) 및 그들의 염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33540000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5	0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 메크로과론(INN), 메타과론(INN), 지페프롤(INN) 및 그들의 염	6.5	0	
2933591100	5-플루오르우라실	6.5	0	
2933591910	피리미딘	6.5	0	
29335919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33591999	기타	6.5	0	
2933592010	피페라진	6.5	0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6.5	0	
2933592030	아디프산 피페라진	6.5	0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6.5	0	
2933592090	기타	6.5	0	
2933599000	기타	6.5	0	
2933610000	멜라민	6.5	0	
2933691000	염화시아놀	3	0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6.5	0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6.5	0	
293369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33699099	기타	6.5	0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3	3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5	0	
2933791000	이사틴	6.5	0	
2933792000	2-히드록시퀴놀린	6.5	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6.5	0	
2933799000	기타	6.5	0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트리아졸람(INN) 및 그들의 염	6.5	0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6.5	0	
2933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3	
2933999090	기타	6.5	3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 및 그 유도체	6.5	0	
29341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34109090	기타	6.5	0	
2934201000	벤조티아졸	6.5	0	
2934202000	머캅토티아졸	6.5	0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린 디술파이드	6.5	0	
29342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34209090	기타	6.5	0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6.5	0	
2934309000	기타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텍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 및 그들의 염	6.5	0	
2934991000	모르포린	6.5	0	
2934992000	핵산과 그들의 염 및 유도체	8	0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6.5	5	
2934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5	
2934999090	기타	6.5	5	
2935002000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드	6.5	0	
2935003000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6.5	0	
2935004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6.5	0	
2935006000	솔파메톡사졸	6.5	0	
2935007000	솔파메톡신	6.5	0	
2935008010	솔파민	6.5	0	
2935008020	솔파피리딘	6.5	0	
2935008030	솔파디아아진	6.5	0	
2935008040	솔파메라진	6.5	0	
2935008050	솔파티아졸	6.5	0	
2935008090	기타	6.5	0	
293500902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5009090	기타	6.5	0	
2936210000	비타민 A와 그들의 유도체	6.5	0	
2936220000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6.5	0	
2936230000	비타민 B2와 그 유도체	6.5	0	
2936240000	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6.5	0	
2936250000	비타민 B6와 그 유도체	6.5	0	
2936260000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6.5	0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6.5	0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6.5	3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6.5	0	
2936279000	기타	6.5	3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6.5	0	
2936289000	기타	6.5	0	
2936291010	비타민 B9	6.5	0	
2936291090	기타	6.5	0	
2936292000	비타민 D와 그들의 유도체	6.5	0	
2936293000	비타민 H와 그 유도체	6.5	0	
2936294000	비타민 K와 그들의 유도체	6.5	0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그 유도체	6.5	0	
2936299000	기타	6.5	0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0	
2936909000	기타	6.5	0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 또는 제2934.9호의 것	6.5	0	
2937119000	기타	0	0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	0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또는 제2934.9호의 것	6.5	0	
2937199000	기타	0	0	
2937211000	코르티손	0	0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	0	
2937213000	프레드니손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37214000	프레드니손	0	0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0	
2937292000	소호 제2914.50호의 것	5.5	0	
2937299000	기타	0	0	
2937310000	에피네프린	0	0	
2937391000	소호 제2922.50호의 것	6.5	0	
2937399000	기타	0	0	
2937400000	아미노산 유도체	0	0	
2937501000	소호 제2918.19호 또는 제2918.9호의 것	6.5	0	
2937502000	소호 제2934.9호의 것	6.5	0	
2937509000	기타	0	0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또는 제2934.9호의 것	6.5	0	
2937909000	기타	0	0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6.5	0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6.5	0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5	0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6.5	0	
2938903000	사포닌	6.5	0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6.5	0	
2938909000	기타	6.5	0	
2939111000	모르핀	0	0	
2939112000	에틸모르핀	0	0	
2939113000	코데인	0	0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전종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8	0	
2939119000	기타	0	0	
2939190000	기타	0	0	
2939200000	기타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0	0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	0	
2939411000	에페드린	0	0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	0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	0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	0	
2939430000	캐친(INN)과 그 염	0	0	
2939491000	놀에페드린	0	0	
2939499000	기타	0	0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0	
2939590000	기타	0	0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	0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	0	
2939621000	엘고타민(INN)	0	0	
2939629000	엘고타민(INN)과 그 염	0	0	
2939631000	리세르그산	0	0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	0	
2939690000	기타	0	0	
2939910000	코카인, 에크코닌, 레보메탐페타민, 메탐페타민(INN),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그들의 염, 그들의 에스테르와 기타 그들의 유도체	0	0	
2939991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0	0	
2939992000	아레코린	0	0	
2939993000	피페린	0	0	
2939994000	니코틴과 그 염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39999000	기타	0	0	
2940001010	갈락토오스	8	0	
2940001020	소르보오스	8	0	
2940001030	키실로오스	8	0	
2940001090	기타	8	0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8	0	
2940002090	기타	8	0	
2941101000	페니실린 지 칼륨	6.5	0	
2941109010	페니실린 지 나트륨	6.5	0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	6.5	0	
2941109090	기타	6.5	0	
29412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0	
2941209000	기타	6.5	0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9000	기타	6.5	0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5	0	
2941501000	에리트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6.5	0	
2941509000	기타	6.5	0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 틸렌-5-옥시테트라사이클린-파라톨루엔 숴 포네이트	6.5	0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6.5	0	
2941909020	레더마이신	6.5	0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6.5	0	
2941909040	류코마이신	6.5	0	
2941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3	
2941909099	기타	6.5	3	
2942001000	케텐	6.5	0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6.5	0	
2942009090	기타	6.5	0	
3001201000	선추출물	0	0	
3001202000	간장추출물	0	0	
3001203000	담낭추출물	0	0	
3001204000	췌장추출물	0	0	
3001205000	위장추출물	0	0	
3001209000	기타	0	0	
3001901010	인체의 것	0	0	
3001901090	기타	0	0	
3001902010	웅담	0	0	
3001902090	기타	0	0	
3001909010	해파린과 그 염	0	0	
3001909020	인체의 것	0	0	
3001909090	기타	0	0	
3002101000	혈액분획물의 조제 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2102010	헤모글로빈	0	0	
3002102020	글로부린	0	0	
3002103000	트롬빈과 프로트롬비나제	0	0	
3002109010	면역혈청	0	0	
3002109020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0	0	
3002109090	기타	0	0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품의 것에 한한다)	0	0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002309000	기타	0	0	
3002901000	인혈	0	0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0	0	
3002903010	색시톡신	6.5	0	
3002903020	라이신	8	0	
3002903090	기타	0	0	
3002904000	미생물배양체	0	0	
3002905000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0	0	
3002906000	살균소	0	0	
3002909000	기타	0	0	
300310100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을 함유하는 것	8	0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3201000	항결핵제 및 항암제	8	3	
3003209010	클로람 페니콜제제	8	0	
3003209090	기타	8	0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3000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400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8	0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6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8	3	
3003398000	난포 및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3399000	기타	8	0	
3003401000	항암제	8	0	
3003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3409120	키닌제제	8	0	
3003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3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3409220	스트리키닌제제	8	0	
3003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3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3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3409330	니코틴제제	8	0	
3003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3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3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3409900	기타	8	0	
30039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8	0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8	0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3	
3003909300	비타민제제	8	0	
3003909400	녹용제제	8	0	
3003909500	인삼제제	8	0	
3003909600	로알제리 제제	8	0	
3003909900	기타	8	3	
300410100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8	0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3	
30042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8	0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8	3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8	0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8	0	
3004209900	기타	8	3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3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	3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3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4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4393000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	0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8	0	
3004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4397000	난포 및 황체 호르몬제제	8	3	
3004399000	기타	8	3	
3004401000	항암제	8	3	
3004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4409120	키닌제제	8	0	
3004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4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4409220	스트리키닌제제	8	0	
3004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4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4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4409330	니코틴제제	8	3	
3004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4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4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4409900	기타	8	3	
3004501000	비타민 A제제	8	0	
3004502010	비타민 B1제제	8	0	
3004502090	기타	8	3	
3004503000	비타민 C제제	8	3	
3004504000	비타민 D제제	8	0	
3004505000	비타민 E제제	8	0	
3004506000	비타민 H제제	8	0	
3004507000	비타민 K제제	8	0	
3004509000	기타	8	3	
30049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및 항암제	8	3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8	0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0	
3004909300	녹용제제	8	0	
3004909400	인삼제제	8	0	
3004909500	로알제리 제제	8	0	
3004909900	기타	8	3	
3005101000	반창고	0	0	
3005109000	기타	0	0	
3005901000	탈지면	0	0	
3005902000	거어즈	0	0	
3005903000	붕대	0	0	
3005904000	조제드레싱과 습포제	0	0	
3005909000	기타	0	0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의 캐터트	0	0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를 포함한다]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	0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테트	0	0	
3006104000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0	0	
3006105010	플라스틱제의 것	6.5	0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것	8	0	
3006105090	기타	0	0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0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0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투여용의 것)	0	0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0	
3006403000	뼈형성용 시멘트	0	0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3006600000	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 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6.5	0	
3006910000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8	3	
3006921010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0	0	
3006921090	기타	0	0	
3006922010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부린	0	0	
3006922031	색시토신	6.5	0	
3006922032	라이신	8	0	
3006922090	기타	0	0	
3006923000	제3003호 및 제3004호의 것	8	0	
3006924000	제3005호 및 제3006호의 것	0	0	
3006925000	소호 제3824.90호의 것	6.5	0	
3101001010	구아노	6.5	0	
3101001090	기타	6.5	0	
3101002000	식물성 비료	6.5	0	
3101003000	동물성 또는 식물성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0	
3102101000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	2	3	
3102109000	기타	6.5	3	
3102210000	황산암모늄	6.5	0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6.5	0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6.5	0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	0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에 한한다)	6.5	0	
3102501000	천연의 것	6.5	0	
3102509000	기타	6.5	0	
31026000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6.5	0	
310280000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6.5	0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6.5	0	
3102909000	기타	6.5	0	
3103100000	과인산석회	6.5	0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 이상인 것에 한한다)	6.5	0	
3103903000	기타 인산석회	6.5	0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6.5	0	
3103909000	기타	6.5	0	
3104200000	염화칼륨	0	0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2 이하인 것	1	0	
3104309000	기타	6.5	0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1	0	
3104901090	기타	6.5	0	
3104909000	기타	1	0	
3105100000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5	0	
3105200000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6.5	0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0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6.5	0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6.5	0	
3105590000	기타	6.5	0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6.5	0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6.5	0	
3105909000	기타	6.5	0	
3201100000	퀘브라초 엑스	8	0	
3201200000	왓틀엑스	8	0	
3201901010	망그로브 엑스	8	0	
3201901020	미로보란 엑스	8	0	
3201901030	수마크 엑스	8	0	
3201901040	감비어 엑스	8	0	
3201901090	기타	8	0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6.5	0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	6.5	0	
3201904000	기타 탄닌의 유도체	6.5	0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6.5	0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6.5	0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6.5	0	
3202109000	기타	6.5	0	
3202901000	무기유연제	6.5	0	
3202902000	인조 탈회제	6.5	3	
3202909000	기타	6.5	0	
3203001100	천연납	6.5	0	
3203001910	로그우드	6.5	0	
3203001920	백단향	6.5	0	
3203001930	엽록소	6.5	0	
3203001990	기타	6.5	0	
3203002010	코치니엘	6.5	0	
3203002020	커미즈	6.5	0	
3203002030	세피아	6.5	0	
3203002090	기타	6.5	0	
32030030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	6.5	0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에 한한다)	4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204119000	기타	8	0	
3204121000	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22000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30000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40000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50000	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60000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70000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92000	래피드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93000	황화염료 · 황화 건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99000	기타	8	0	
3204200000	합성유기형광증백제	6.5	0	
3204901000	합성유기루미노퍼	6.5	0	
3204909000	기타	6.5	0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6.5	0	
3205009000	기타	6.5	0	
3206110000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6.5	0	
3206190000	기타	6.5	0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	6.5	0	
3206411000	군청	6.5	0	
3206419000	기타	6.5	0	
3206421000	리도폰	6.5	0	
3206429000	기타	6.5	0	
3206491000	아연회	6.5	0	
3206492000	광물성블랙	6.5	0	
3206493000	어드칼러	6.5	0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6.5	0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6.5	0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	6.5	0	
3206499000	기타	6.5	0	
320650000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6.5	0	
3207100000	조제안료 · 조제유백제 · 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207201000	법랑과 유약	6.5	0	
3207202000	슬립	6.5	0	
3207209000	기타	6.5	0	
3207301000	금의 것	6.5	0	
3207302000	백금의 것	6.5	0	
3207303000	팔라듐의 것	6.5	0	
3207304000	은의 것	6.5	0	
3207309000	기타	6.5	0	
3207400000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 ·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6.5	5	
3208101010	에나멜	6.5	0	
3208101090	기타	8	0	
320810200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201011	에나멜	6.5	0	
3208201019	기타	8	0	
32082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208202011	에나멜	6.5	0	
3208202019	기타	8	0	
3208202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901011	에나멜	6.5	0	
3208901019	기타	8	0	
32089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909011	에나멜	6.5	0	
3208909019	기타	8	0	
3208909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9101011	에나멜	6.5	0	
3209101019	기타	8	0	
32091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0	
3209102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9901011	에나멜	6.5	0	
3209901019	기타	8	0	
32099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9909011	에나멜	6.5	0	
3209909019	기타	8	0	
3209909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10001011	에나멜	6.5	0	
3210001019	기타	8	0	
3210001091	에나멜	6.5	0	
3210001099	기타	8	0	
3210002010	오일 바니시	6.5	0	
3210002020	락·천연검 또는 천연수지를 기제로 한 바니시와 래커	6.5	0	
3210002030	역청질·피치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제로 한 바니시	6.5	0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아니한 액상 바니시	6.5	0	
3210003010	디스텔퍼	6.5	0	
3210003090	기타	6.5	0	
3211000000	조제드라이어	6.5	0	
3212100000	스탬프용의 박	6.5	0	
3212901000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6.5	0	
3212909000	기타	6.5	0	
3213101000	유성 회구류	8	0	
3213102000	수성 회구류	8	0	
3213109000	기타	8	0	
3213901000	유성 회구류	8	0	
3213902000	수성 회구류	8	0	
3213909000	기타	8	0	
3214101060	고무를 기제로 한 것	6.5	0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6.5	0	
3214101090	기타	8	0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6.5	0	
3214109000	기타	6.5	0	
3214900000	기타	6.5	0	
3215110000	흑색의 것	6.5	0	
3215190000	기타	6.5	0	
3215901000	필기용 잉크	6.5	0	
3215902000	제도용 잉크	6.5	0	
3215903000	복사용 잉크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215904010	유성의 것	6.5	0	
3215904020	수성의 것	6.5	0	
3215904030	유성·수성 겸용의 것	6.5	0	
3215905000	금속성 잉크	6.5	0	
3215906010	유성의 것	6.5	0	
3215906020	수성의 것	6.5	0	
3215906030	유성·수성겸용의 것	6.5	0	
3215909000	기타	6.5	0	
3301120000	오렌지유	5	0	
3301130000	레몬유	5	0	
3301190000	기타	5	0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5	0	
3301250000	기타 민트류의 것	5	0	
3301291000	바닐라유	5	0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5	0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5	0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5	0	
3301299000	기타	5	0	
3301300000	레지노이드	8	0	
3301901000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8	0	
3301902000	정유의 농축물	8	0	
3301903000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8	0	
3301904100	아편의 것	8	0	
3301904200	감초의 것	8	0	
3301904300	호프의 것	30	0	
3301904400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의 것	8	0	
3301904510	백삼의 것	20	13	
3301904520	홍삼의 것	754.3	10	
3301904530	기타의 인삼의 것	20	10	
3301904600	캐슈넛 쉼액의 것	8	0	
3301904700	생칠의 것	8	0	
3301904800	기타	8	0	
3302101000	식품공업용의 것	8	0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30	0	
3302102019	기타	8	0	
3302102090	기타	8	0	
3302900000	기타	8	3	
3303001000	향수	8	3	
3303002000	화장수	8	0	
3304101000	립스틱	8	3	
3304109000	기타	8	3	
3304201000	아이샤도우	8	3	
3304209000	기타	8	3	
3304301000	네일에나멜	8	3	
3304309000	기타	8	0	
3304911000	화이스파우다	8	5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콤파우다를 포함한다)	8	0	
3304919000	기타	8	0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8	5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8	3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8	0	
3304999000	기타	8	3	
3305100000	삼푸	8	3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 품류	8	3	
3305300000	헤어 래커	8	0	
3305901000	헤어린스	8	5	
3305902000	헤어크림	8	3	
3305909000	기타	8	3	
3306100000	치약	8	0	
3306201011	70텍시텍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8	0	
3306201019	기타	8	0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	8	0	
3306209000	기타	8	3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 품류	8	0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 품류	8	0	
3307101000	아프터 세이빙로손	8	0	
3307109000	기타	8	0	
3307200000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8	0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8	0	
3307302000	기타 목욕용 제 품류	8	0	
3307410000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8	0	
3307490000	기타	8	0	
3307901000	탈모제	8	0	
3307902000	향낭	8	0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 또는 의안의 액	6.5	0	
3307909000	기타	6.5	0	
3401111000	약용비누	6.5	0	
3401119000	기타	8	5	
3401191010	세탁비누	6.5	0	
3401191090	기타	6.5	3	
3401192000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 · 펄트와 부직포	6.5	0	
3401200000	기타 형상의 비누	6.5	0	
340130000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 품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6.5	0	
3402110000	음이온성의 것	8	5	
3402120000	양이온성의 것	8	5	
340213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에 한한다)	2	7	
3402139000	기타	8	7	
3402190000	기타	8	5	
3402201000	조제세제	6.5	3	
3402202000	조제청정제	6.5	3	
3402209000	기타	6.5	3	
3402901000	조제계면활성제	6.5	5	
3402902000	조제세제	6.5	5	
3402903000	조제청정제	6.5	5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조제 품	6.5	0	
3403112000	가죽 또는 모피의 처리조제 품	6.5	0	
3403119000	기타	6.5	0	
3403191000	조제절삭유	6.5	0	
3403192000	볼트 · 너트 방출제	6.5	0	
3403193000	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6.5	5	
3403194000	이형조제 품	6.5	0	
3403195000	신선용 조제 율활제	6.5	0	
3403199000	기타	6.5	0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조제 품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403912000	가죽 또는 모피의 처리조제 품	6.5	5	
3403919000	기타	6.5	0	
3403991000	조제절삭유	6.5	0	
3403992000	신선용 조제 윤활유	6.5	0	
3403999000	기타	6.5	0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6.5	0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6.5	0	
3404901020	오팔왁스	6.5	0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6.5	0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6.5	0	
3404901090	기타	6.5	0	
3404902000	조제왁스	8	0	
3405100000	신발 또는 가죽용의 광택제·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 품	6.5	3	
3405200000	목제가구·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 품	6.5	0	
3405300000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 품(금속용 광택제를 제외한다)	6.5	3	
3405400000	조제연마페이스트·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 품	6.5	3	
3405901010	초크를 기제로 한 것	6.5	0	
3405901020	규조토를 기제로 한 것	6.5	0	
3405901030	다이아몬드분 또는 더스트를 기제로 한 것	6.5	0	
3405901090	기타	6.5	0	
3405909000	기타	6.5	3	
3406000000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	6.5	0	
340700200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6.5	0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 품	6.5	0	
3501101000	커피 크림어 제조용의 것	8	5	
3501109000	기타	20	5	
3501901110	커피 크림어 제조용의 것	8	5	
3501901190	기타	20	5	
3501901200	기타 카세인 유도체	20	5	
3501902000	카세인 글루	20	5	
3502110000	건조한 것	8	5	
3502190000	기타	8	5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 물을 포함한다)	8	5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8	0	
3502909000	기타	8	0	
3503001010	젤라틴	8	3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8	0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8	0	
3503003000	기타 동물성 글루	8	0	
3504001010	펩톤	8	0	
3504001020	펩톤 유도체	8	0	
3504002010	케라틴	8	0	
3504002020	핵산단백질	8	0	
3504002030	유리단백질	8	0	
3504002090	기타	8	0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	8	0	
3505101000	덱스트린	8	0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8	10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1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505104010	식품용의 것	385.7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5항 참조	부속서 3-가 참조
3505104090	기타	385.7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5항 참조	부속서 3-가 참조
3505105010	식품용의 것	385.7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5항 참조	부속서 3-가 참조
3505105090	기타	385.7	대한민국 양허 표의 부록 2-가 -1의 제15항 참조	부속서 3-가 참조
3505109010	식품용의 것	385.7	10	
3505109090	기타	385.7	10	
3505201000	전분 글루	201.2	10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201.2	10	
3505209000	기타	201.2	10	
3506101000	고무를 기제로 한 것	6.5	5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제로 한 것	6.5	5	
3506109000	기타	6.5	5	
3506910000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6.5	5	
3506991000	비엔나 글루	6.5	0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	6.5	0	
3506993000	규산염을 기제로 한 글루	6.5	0	
3506999000	기타	6.5	5	
3507100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6.5	0	
3507901010	트립신	6.5	0	
3507901020	키모트립신	6.5	0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6.5	0	
3507901040	리파제	6.5	0	
3507901090	기타	6.5	0	
3507902000	펩신	6.5	0	
3507903000	맥아효소	6.5	0	
3507904010	파파인	6.5	0	
3507904020	브로멜라인	6.5	0	
3507904030	피신	6.5	0	
3507906010	아밀라제	6.5	0	
3507906020	프로테아제	6.5	0	
3507907000	펙티효소	6.5	0	
3507908000	시토크롬 씨	6.5	0	
3507909000	기타	6.5	5	
3601001000	흑색화약	6.5	0	
3601002000	무연화약	6.5	0	
3602000000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6.5	0	
3603001000	도화선	6.5	0	
3603002000	도폭선	6.5	0	
3603003000	뇌관	6.5	0	
3603004000	접화기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603005000	전기뇌관	6.5	0	
3604100000	불꽃제품	8	0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8	0	
3604909000	기타	8	0	
3605001000	황린성냥	8	0	
3605009000	기타	8	0	
3606100000	깍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들어있는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 연료	8	0	
3606901010	메타연료	8	0	
3606901020	헥사민	8	0	
3606901030	고체알코올	8	0	
3606901090	기타	8	0	
3606902010	라이터돌	8	0	
3606902090	기타	8	0	
3606909010	라이터돌	8	0	
3606909090	기타	8	0	
3701100000	엑스선용의 것	6.5	3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8	3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70130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1309910	천문용의 것	8	0	
37013099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1309991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에 한한다)의 것	3	3	
3701309999	기타	8	3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70191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1919910	천문용의 것	8	0	
37019199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1919990	기타	8	0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3	
370199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1999910	천문용의 것	8	0	
37019999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1999990	기타	8	3	
370210000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2311110	네가티브	6.5	0	
3702311120	포지티브	6.5	0	
3702311210	네가티브	6.5	3	
3702311220	포지티브	6.5	0	
3702311910	네가티브	6.5	0	
3702311920	포지티브	6.5	0	
37023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319010	광전복음용의 것	8	0	
370231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319090	기타	8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3	
	- 기타		0	
3702321110	네가티브	6.5	0	
3702321120	포지티브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702321210	네가티브	6.5	0	
3702321220	포지티브	6.5	0	
3702321910	네가티브	6.5	0	
3702321920	포지티브	6.5	0	
37023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329010	광전녹음용의 것	8	0	
370232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8	3	
3702329090	기타	8	0	
3702391110	네가티브	6.5	0	
3702391120	포지티브	6.5	0	
3702391210	네가티브	6.5	0	
3702391220	포지티브	6.5	0	
3702391910	네가티브	6.5	0	
3702391920	포지티브	6.5	0	
370239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399010	광전녹음용의 것	8	0	
370239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399090	기타	8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3	
	- 기타		0	
3702411010	네가티브	6.5	0	
3702411020	포지티브	6.5	0	
37024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19010	광전녹음용의 것	8	0	
370241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419090	기타	8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3	
	- 기타		0	
3702421010	네가티브	6.5	0	
3702421020	포지티브	6.5	0	
37024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29010	광전녹음용의 것	8	0	
370242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429090	기타	8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3	
	- 기타		0	
3702431010	네가티브	6.5	0	
3702431020	포지티브	6.5	0	
370243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39010	광전녹음용의 것	8	0	
370243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439090	기타	8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3	
	- 기타		0	
3702441010	네가티브	6.5	0	
3702441020	포지티브	6.5	0	
37024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3	
3702449010	광전녹음용의 것	8	0	
370244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449090	기타	8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3	
	- 기타		0	
3702511010	네가티브	6.5	0	
3702511020	포지티브	6.5	0	
37025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19010	광전복음용의 것	8	0	
370251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519090	기타	8	0	
3702521010	네가티브	6.5	0	
3702521020	포지티브	6.5	0	
37025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29010	광전복음용의 것	8	0	
370252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529090	기타	8	0	
3702530000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 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에 한한다)	8	0	
3702541010	네가티브	6.5	0	
3702541020	포지티브	6.5	0	
37025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49010	광전복음용의 것	8	0	
370254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549090	기타	8	0	
3702551010	네가티브	6.5	3	
3702551020	포지티브	6.5	0	
370255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59010	광전복음용의 것	8	0	
370255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559090	기타	8	0	
3702561010	네가티브	6.5	0	
3702561020	포지티브	6.5	0	
370256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3	
370256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69010	광전복음용의 것	8	0	
370256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569090	기타	8	0	
3702911010	네가티브	6.5	0	
3702911020	포지티브	6.5	0	
37029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19010	광전복음용의 것	8	0	
370291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919090	기타	8	0	
3702931010	네가티브	6.5	0	
3702931020	포지티브	6.5	0	
370293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3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39010	광전복음용의 것	8	0	
370293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939090	기타	8	0	
3702941010	네가티브	6.5	0	
3702941020	포지티브	6.5	0	
37029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7029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49010	광전녹음용의 것	8	0	
370294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949090	기타	8	0	
3702951010	네가티브	6.5	0	
3702951020	포지티브	6.5	0	
370295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5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59010	광전녹음용의 것	8	0	
3702959020	항공촬영용의 것	8	0	
3702959090	기타	8	0	
3703101010	엑스선용의 것	8	0	
3703101020	심전계용의 것	8	0	
3703101030	사진복사용의 것	8	0	
3703101040	기록용의 것	8	0	
3703101090	기타	8	3	
3703109010	엑스선용의 것	8	0	
3703109020	심전계용의 것	8	0	
3703109030	사진복사용의 것	8	0	
3703109040	기록용의 것	8	0	
3703109090	기타	8	0	
3703201000	엑스선용의 것	8	0	
3703202000	심전계용의 것	8	0	
3703203000	사진복사용의 것	8	0	
3703204000	기록용의 것	8	0	
3703209000	기타	8	3	
3703901000	엑스선용의 것	8	0	
3703902000	심전계용의 것	8	0	
3703903000	사진복사용의 것	8	0	
3703904000	기록용의 것	8	0	
3703909000	기타	8	0	
3704001110	뉴스용의 것	0	0	
370400112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에 한한다)	0	0	
3704001190	기타	0	0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의 것(엽서·그림엽서·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의 것에 한한다)	4	0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4	0	
3704001900	기타	0	0	
3704002000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	8	0	
3705101000	엽서·그림엽서·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의 것	8	0	
3705109000	기타	0	0	
3705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3705902010	엑스선 촬영한 것	0	0	
3705902020	도서를 복사한 것	0	0	
3705902030	서류를 복사한 것	0	0	
3705903000	마이크로필름	0	0	
3705909010	학술연구용의 것	0	0	
3705909020	천문용의 것	0	0	
3705909030	항공촬영용의 것	0	0	
3705909090	기타	0	0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의 것	6.5% 또는 195원/m	0	
3706102000	뉴스용의 것	6.5% 또는 4원/m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706103010	랏슈	6.5% 또는 26원/m	0	
3706103020	기타 네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468원/m	0	
3706103030	기타 포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78원/m	0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 순히 외국품물만 촬영한 것 또는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에 한한다)과 방화	6.5% 또는 26원/m	0	
3706105010	네가티브	6.5% 또는 1,092원/m	0	
3706105020	포지티브	6.5% 또는 182원/m	3	
3706106010	네가티브	6.5% 또는 1,560원/m	0	
3706106020	포지티브	6.5% 또는 260원/m	0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의 것	6.5% 또는 9 원/m	0	
3706902000	뉴스용의 것	6.5% 또는 5 원/m	0	
3706903010	랏슈	6.5% 또는 26원/m	0	
3706903020	기타 네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468원/m	0	
3706903030	기타 포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78원/m	0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 순히 외국품물만 촬영한 것 또는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에 한한다)과 방화	6.5% 또는 26원/m	0	
3706905010	네가티브	6.5% 또는 25원/m	0	
3706905020	포지티브	6.5% 또는 8 원/m	0	
3706906010	네가티브	6.5% 또는 1,092원/m	0	
3706906020	포지티브	6.5% 또는 182원/m	0	
3707100000	감광유제	6.5	0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3	
3707901090	기타	6.5	0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	6.5	0	
370790291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790292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7902990	기타	6.5	0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	6.5	0	
3707903910	엑스선용의 것	6.5	3	
370790392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7903990	기타	6.5	0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6.5	0	
3707909200	조색제	6.5	0	
3707909300	세정제	6.5	0	
3707909400	섬광재료	6.5	0	
3707909900	기타	6.5	0	
3801101000	2차전지 제조용의 것	4	0	
3801109000	기타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6.5	0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6.5	0	
3801900000	기타	6.5	0	
3802100000	활성탄	6.5	5	
3802901010	활성 규조토	6.5	0	
3802901020	활성토	6.5	0	
3802901090	기타	6.5	0	
3802902000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6.5	0	
3803000000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5	0	
3804001000	액상의 것	6.5	0	
3804009000	기타	6.5	0	
3805101000	검테레빈유	6.5	0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6.5	0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6.5	0	
3805900000	기타	6.5	0	
3806101000	로진	6.5	5	
3806102000	수지산	6.5	0	
3806201000	로진염	6.5	0	
3806202000	수지산염	6.5	0	
3806209000	기타	6.5	0	
3806300000	에스테르 검	6.5	0	
3806902000	런검	6.5	0	
3806903000	로진스프릿 및 로진유	6.5	0	
3806909000	기타	6.5	0	
3807001000	목타르·목타르유 및 목크레오소트	6.5	0	
3807002000	목나프타	6.5	0	
3807003000	식물성피치	6.5	0	
3807009010	목초액	6.5	5	
3807009090	기타	6.5	0	
38085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 살충제		3	
	- 살균제		3	
	- 제초제		0	
	- 발아억제제		0	
	- 식물성장조절제		0	
	- 소독제		0	
	- 살서제(쥐약)		0	
	- 기타		0	
3808509000	기타	6.5		
	- 살충제		3	
	- 살균제		3	
	- 제초제		0	
	- 발아억제제		0	
	- 식물성장조절제		0	
	- 소독제		0	
	- 살서제(쥐약)		0	
	- 기타		0	
38089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3	
3808919000	기타	6.5	3	
380892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3	
3808929000	기타	6.5	3	
3808931000	제초제	6.5	0	
3808932000	발아억제제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6.5	0	
3808940000	소독제	6.5	0	
3808991000	살서제(쥐약)	6.5	0	
3808999000	기타	6.5	0	
3809100000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8	0	
3809910000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6.5	3	
3809920000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6.5	0	
3809930000	파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6.5	3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6.5	0	
3810109000	기타	6.5	0	
3810901000	납불임·땀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6.5	0	
3810909000	기타	6.5	0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1190000	기타	6.5	0	
3811210000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5	0	
3811290000	기타	5	0	
3811900000	기타	6.5	5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3000	티우람 술폰파이드를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5000	머캅토프 벤조티아졸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술폰파이드(DM)를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9000	기타	6.5	0	
3812200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3	
3812301000	산화방지 조제품	6.5	5	
3812302000	기타 복합안정제	6.5	5	
3813001000	소화기용의 조제품	6.5	0	
3813002000	소화기용의 장전물	6.5	0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6.5	0	
3814001010	아세톤·초산메틸 및 메틸알코올 혼합물	6.5	0	
3814001020	초산에틸·부틸알코올 및 톨루엔 혼합물	6.5	0	
3814001090	기타	6.5	0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814002190	기타	6.5	0	
3814002900	기타	6.5	0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6.5	3	
3815121000	백금 또는 백금화합물의 것	6.5	3	
3815122000	팔라듐 또는 팔라듐화합물의 것	6.5	0	
3815129000	기타	6.5	3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 또는 철화합물의 것	6.5	0	
3815192000	티타늄 또는 티타늄화합물의 것	6.5	3	
3815199000	기타	6.5	0	
3815901000	반응시작제	6.5	0	
3815909000	기타	6.5	3	
3816001000	내화시멘트	6.5	0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6.5	0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6.5	0	
3816009000	기타	6.5	0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6.5	0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0	0	
3818002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819001000	유압제동액	6.5	0	
3819002000	기타 조제유압전동액	6.5	0	
3820001000	부동조제품	6.5	0	
3820002000	조제제빙액	6.5	0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식물 · 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6.5	0	
382200101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0	0	
382200101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0	0	
382200101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험	0	0	
3822001019	기타	0	0	
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	0	0	
382200109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6.5	0	
3822001092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8	0	
382200109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1099	기타	8	0	
382200201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0	0	
382200201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0	0	
382200201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험	0	0	
3822002019	기타	0	0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	0	0	
382200209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6.5	0	
382200209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8	0	
382200209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2099	기타	8	3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	0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퍼센트인 것	1	0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퍼센트인 것	2	0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퍼센트인 것	3	0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퍼센트인 것	4	0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퍼센트인 것	5	0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퍼센트인 것	5.4	0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퍼센트인 것	6.5	0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퍼센트인 것	7	0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퍼센트인 것	8	0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퍼센트인 것	10	0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퍼센트인 것	20	0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퍼센트인 것	27	0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퍼센트인 것	30	0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퍼센트인 것	36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퍼센트인 것	40	0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퍼센트인 것	50	0	
3822003058	제3706.10.1000호, 제3706.10.5020호 및 제3706.90.6020호의 것	6.5% 또는 182원/m	0	
3822003059	제3706.10.2000호 및 제3706.90.2000호의 것	6.5% 또는 4원/m	0	
3822003060	제3706.10.3010호, 제3706.10.4000호, 제3706.90.3010호 및 제3706.90.4000호	6.5% 또는 26원/m	0	
3822003061	제3706.10.3020호 및 제3706.90.3020호의 것	6.5% 또는 468원/m	0	
3822003062	제3706.10.3030호 및 제3706.90.3030호의 것	6.5% 또는 78원/m	0	
3822003063	제3706.10.5010호 및 제3706.90.6010호의 것	6.5% 또는 1,092원/m	0	
3822003064	제3706.10.6010호의 것	6.5% 또는 1,560원/m	0	
3822003065	제3706.10.6020호의 것	6.5% 또는 260원/m	0	
3822003066	제3706.90.1000호 및 제3706.90.5020호의 것	6.5% 또는 8원/m	0	
3822003067	제3706.90.5010호의 것	6.5% 또는 25원/m	0	
3823110000	스테아린산	8	0	
3823120000	올레인산	8	0	
3823130000	톨유 지방산	8	0	
3823191000	팔미틴산	8	0	
3823192000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8	0	
3823199000	기타	8	0	
3823701000	세틸 알코올	5	3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5	3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5	0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5	0	
38237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823709090	기타	5	0	
382410000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6.5	0	
3824300000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6.5	0	
3824400000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및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6.5	0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0	
3824600000	솔비톨(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5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제로 한 세정제	6.5	0	
3824719000	기타	6.5	0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0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0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700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6.5	0	
3824790000	기타	6.5	0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0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0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0	
3824901000	크롬광 배소물	5	0	
3824902100	진공관의 겿타	6.5	0	
3824902200	탄소저항 또는 세라믹솔리드 저항조제품	6.5	0	
38249024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3	
3824902490	기타	6.5	3	
38249031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2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3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40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5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8249036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드 디할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7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드 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8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1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엔, 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9	기타	6.5	0	
382490392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3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로 주로 구성된 화학품의 기타 혼합물	6.5	0	
3824903990	기타	6.5	0	
3824904100	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	6.5	0	
3824904200	이온교환체	6.5	0	
3824904300	스케일방지제	6.5	0	
3824904400	바니시 또는 글루의 경화제	6.5	0	
3824905100	잉크제거제	6.5	0	
3824905200	등사판 원지수정제	6.5	0	
3824905300	수정액	6.5	0	
382490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6.5	0	
382490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6.5	0	
3824906300	소다석회	6.5	0	
3824906400	수화실리카겔	6.5	0	
3824906500	방청제	6.5	0	
382490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6.5	0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6.5	0	
3824907200	염화파라핀	6.5	0	
3824907300	소포제	6.5	0	
3824907400	발포제	6.5	0	
3824907500	조제 탄산칼슘	6.5	0	
3824907600	액정용 조제품	6.5	3	
382490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6.5	0	
3824908010	메틸에틸케톤 퍼록사이드를 기제로 한 것	6.5	0	
3824908090	기타	6.5	0	
3824909010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6.5	0	
3824909020	폴리디페닐 메탄 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엡디아이)	6.5	3	
3824909030	추잉검 베이스	8	0	
3824909050	나프텐산 및 그들의 수불용성염과 그들의 에스테르	6.5	0	
3824909090	기타	6.5		
	- 플루오린과 클로린만으로 퍼할로겐화된 비환식 탄화수소를 가지는 것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 비환식 탄화수소의 퍼할로겐화 유도체 (서로 다른 2종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를 가지는 혼합물[플루오린과 클로린만으로 퍼할로겐화된 비환식탄화수소를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0	
	- 기타		3	
3825100000	생활폐기물	6.5	0	
3825200000	하수 찌꺼기	6.5	0	
3825301000	제3005호의 것	0	0	
3825302000	소호 제3824.90호의 것	6.5	0	
3825303000	소호 제4015.11호의 것	8	0	
3825304000	소호 제9018.3호의 것	8	0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490000	기타	6.5	0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6.5	0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690000	기타	6.5	0	
3825900000	기타	6.5	0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5	
3901109000	기타	6.5	5	
3901201000	펄프의 것	6.5	0	
3901209000	기타	6.5	0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5	
3901900000	기타	6.5	0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0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6.5	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0	
3902900000	기타	6.5	3	
3903110000	발포성의 것	6.5	0	
3903190000	기타	6.5	0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6.5	0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5	0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6.5	0	
3903909000	기타	6.5	0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5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6.5	0	
3904220000	가소화 한 것	6.5	0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5	
390440000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0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0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6.5	0	
3904690000	기타	6.5	0	
3904900000	기타	6.5	0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190000	기타	6.5	0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290000	기타	6.5	3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된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8	0	
3905910000	공중합체	6.5	0	
3905990000	기타	6.5	0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3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8	0	
390690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6.5	0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6.5	0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0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6.5	0	
3907209000	기타	6.5	0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907309000	기타	6.5	0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3	
3907500000	알키드수지	6.5	0	
390760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700000	폴리(락트산)	6.5	0	
3907910000	불포화의 것	6.5	0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999000	기타	6.5	0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0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6.5	0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또는 -6,12	6.5	0	
3908900000	기타	6.5	0	
3909101000	요소수지	6.5	0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6.5	0	
3909200000	메라민수지	6.5	0	
3909300000	기타 아미노수지	6.5	0	
3909400000	페놀수지	6.5	0	
3909500000	폴리우레탄	6.5	0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910009010	실리콘오일	6.5	3	
3910009020	실리콘고무	6.5	3	
3910009090	기타	6.5	3	
3911101000	석유수지	8	5	
3911102000	쿠마론 · 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8	0	
3911103000	폴리테르펜	8	0	
3911901000	폴리숄파이드	6.5	0	
3911902000	폴리숄폰	6.5	3	
3911903000	푸란수지	6.5	0	
3911909000	기타	6.5	3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5	0	
3912120000	가소화 한 것	5	0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3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6.5	3	
3912319000	기타	6.5	0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6.5	3	
3912399000	기타	6.5	0	
3912901000	재생셀룰로오스	6.5	0	
3912909000	기타	6.5	0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6.5	0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5	0	
3913109000	기타	6.5	0	
3913901000	경화단백질	6.5	0	
3913902010	염화고무	6.5	3	
3913902020	염산고무	6.5	0	
3913902030	산화고무	6.5	0	
3913902040	환화고무	6.5	0	
3913902090	기타	6.5	0	
3913909010	덱스트란	8	0	
3913909090	기타	6.5	5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914009000	기타	6.5	0	
3915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6.5	0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의 것	6.5	0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15905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15909000	기타	6.5	0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5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6.5	0	
3916904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16909000	기타	6.5	3	
3917101000	경화 단백질의 것	6.5	3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의 것	6.5	3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3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92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17299000	기타	6.5	3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19000	기타	6.5	0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29000	기타	6.5	0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8	0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8	0	
3917339000	기타	8	0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99000	기타	6.5	0	
3917400000	연결구류	8	3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6.5	5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의 것	6.5	3	
3918109000	기타	6.5	5	
3918900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5	0	
3919100000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5	0	
3919900000	기타	6.5	0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3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0430000	전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6.5	0	
3920490000	기타	6.5	0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6.5	0	
3920590000	기타	6.5	5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5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0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0690000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9207100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0799000	기타	6.5	0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0	
3920920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20930000	아미노수지의 것	6.5	0	
3920940000	페놀수지의 것	6.5	0	
3920991000	항공기용의 것	6.5	0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에 한한다)	4	0	
3920999090	기타	6.5	0	
392111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12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130000	폴리우레탄의 것	6.5	5	
39211400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191010	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4	0	
3921191090	기타	6.5	0	
3921192010	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4	0	
3921192090	기타	6.5	0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의 것	6.5	0	
3921193090	기타	6.5	0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0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1194090	기타	6.5	0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195090	기타	6.5	0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0	
392119902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21199030	아미노수지의 것	6.5	0	
3921199040	페놀수지의 것	6.5	0	
3921199090	기타	6.5	0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904010	경질의 것	6.5	0	
3921904020	연질의 것	6.5	0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의 것	6.5	0	
3921905090	기타	6.5	0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0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1906090	기타	6.5	0	
392190701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907090	기타	6.5	0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0	
392190902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21909030	아미노수지의 것	6.5	0	
3921909040	페놀수지의 것	6.5	0	
3921909050	폴리우레탄의 것	6.5	0	
3921909090	기타	6.5	0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8	0	
3922102000	세면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922103000	설거지통	8	0	
3922200000	변기용 시트와 커버	8	0	
3922901000	비데	8	0	
3922909000	기타	8	0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	8	0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의 것	8	0	
3923290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8	0	
3923300000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3923400000	스폴·콕·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3	
3923500000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5	
3923900000	기타	8	3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8	0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8	0	
3924902000	탁상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0	
3924909000	기타	8	0	
3925100000	저장기·탱크·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0	
3925200000	문·창문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8	0	
392530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 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	8	0	
3925900000	기타	8	3	
3926101000	필통 및 지우개	8	0	
3926102000	바인더 및 앨범	8	0	
3926109000	기타	8	0	
3926200000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방어리장갑을 포함한다)	8	0	
3926300000	가구용 부착구·자동차 차체[코우치워크 (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	8	0	
3926400000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8	0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8	3	
3926902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 한다)과 이들의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부 분품을 포함한다)	8	0	
3926903000	레이블 및 태그	8	0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8	0	
3926905000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및 이와 유사한	8	0	
3926909000	기타	8	3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001211000	알·에스·에스 1엑스	0	0	
4001212000	알·에스·에스 1호	0	0	
4001213000	알·에스·에스 2호	0	0	
4001214000	알·에스·에스 3호	0	0	
4001215000	알·에스·에스 4호	0	0	
4001216000	알·에스·에스 5호	0	0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0	
4001290000	기타	0	0	
4001301000	치클검	2	0	
4001309000	기타	2	0	
4002110000	라텍스	8	0	
4002190000	기타	8	5	
4002201000	라텍스	8	0	
4002209000	기타	8	5	
4002311000	라텍스	5	0	
4002319000	기타	5	0	
4002391000	라텍스	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5	0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	0	
4002410000	라텍스	8	0	
4002490000	기타	8	0	
4002510000	라텍스	8	3	
4002590000	기타	8	5	
4002601000	라텍스	8	0	
4002609000	기타	8	0	
4002701000	라텍스	8	5	
4002709000	기타	8	7	
4002801000	라텍스	8	0	
4002809000	기타	8	0	
4002910000	라텍스	8	0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 무(XNBR)의 것	8	0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8	0	
4002993000	티오폴라스트(TM)	8	0	
4002999000	기타	8	0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 상의 것에 한한다)	8	0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3	0	
4005101000	판·쉬트 및 스트립	8	0	
4005109000	기타	8	3	
400520000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 을 제외한다)	8	0	
4005910000	판·쉬트 및 스트립	8	0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8	0	
4005999000	기타	8	3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	8	0	
4006901000	고무봉	8	0	
4006902000	고무관	8	0	
4006903000	고무형재	8	0	
4006904000	고무디스크·링 및 와셔	8	0	
4006905000	고무사	8	0	
4006909000	기타	8	0	
4007001000	고무사	8	0	
4007002000	고무끈	8	0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식물과 결합된 것	8	3	
4008119000	기타	8	3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식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99000	기타	8	3	
400821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식물과 결합된 것	8	0	
4008219000	기타	8	0	
400829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식물과 결합된 것	8	3	
4008299000	기타	8	5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0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5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3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0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0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5	
4010110000	금속만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8	3	
4010199000	기타	8	0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8	0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8	0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8	0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8	0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90000	기타	8	5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8	0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8	0	
4011109000	기타	8	0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4011201090	기타	8	0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4011202090	기타	8	0	
4011209000	기타	8	0	
4011300000	항공기용의 것	5	0	
4011400000	모터싸이클용의 것	8	0	
4011500000	자전거용의 것	8	0	
4011610000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8	0	
401162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8	3	
401163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4011690000	기타	8	0	
4011920000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8	0	
401193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194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4011990000	기타	8	0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8	0	
4012120000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8	0	
4012130000	항공기용의 것	5	0	
4012190000	기타	8	0	
4012201000	항공기용의 것	5	0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8	0	
401220902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012209090	기타	8	0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5	0	
4012901020	쿠션 타이어	5	0	
4012901030	타이어트래드	5	0	
4012901040	타이어 폴랩	5	0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8	0	
4012909020	쿠션 타이어	8	0	
4012909030	타이어트래드	8	0	
4012909040	타이어 폴랩	8	0	
4012909090	기타	8	0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8	0	
4013102000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8	0	
4013200000	자전거용의 것	8	0	
4013901000	항공기용의 것	5	0	
4013909010	모터싸이클 또는 모터스쿠터용의 것	8	0	
4013909020	산업용 또는 농경용의 것	8	0	
4013909090	기타	8	0	
4014100000	콘돔	8	0	
4014901000	젓꼭지	8	0	
4014909000	기타	8	0	
4015110000	외과용의 것	8	0	
4015190000	기타	8	0	
4015901000	잠수복	8	0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8	0	
4015909000	기타	8	0	
4016100000	셀룰라 고무의 것	8	0	
4016910000	바닥 깔개와 매트	8	3	
4016920000	지우개	8	0	
4016930000	가스켓 · 워셔 및 기타 실	8	3	
4016940000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8	0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8	0	
4016952000	베개	8	0	
4016953000	쿠션	8	0	
4016959000	기타	8	3	
4016991010	기구 · 비행선 · 비행기계류 · 글라이더 · 연 및 로토슈트의 부품	0	0	
4016991090	기타	8	3	
4016992000	고무밴드	8	0	
4016993000	병마개	8	3	
4016999000	기타	8	3	
4017001000	경질고무	8	0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8	0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1501011	카우하이드	1	0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	1	0	
4101501013	옥스하이드	1	10	
4101501014	불하이드	1	0	
4101501019	기타	1	0	
4101501021	카우하이드	1	0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	1	0	
4101501023	옥스하이드	1	0	
4101501024	불하이드	1	0	
4101501029	기타	1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101501090	기타	1	0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1901011	송아지의 것	1	0	
4101901019	기타	1	0	
4101901091	송아지의 것	1	0	
4101901099	기타	1	0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2100000	탈모하지 아니한 것	1	0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201010	뱀의 것	1	0	
4103201020	도마뱀의 것	1	0	
4103201030	악어의 것	1	0	
4103201090	기타	1	0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901010	장어류의 것	1	0	
4103901020	강가루의 것	1	0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1	0	
4103901090	기타	1	0	
410390201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3	0	
4103902090	기타	5	0	
4104110000	풀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5	0	
4104190000	기타	5	0	
4104410000	풀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5	0	
4104490000	기타	5	0	
410510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530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2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2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3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3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400000	파충류의 것	5	0	
41069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9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7110000	풀그레인, 언스프릿	5	0	
4107120000	그레인 스프릿	5	0	
4107190000	기타	5	0	
4107910000	풀그레인, 언스프릿	5	0	
4107920000	그레인 스프릿	5	0	
4107990000	기타	5	0	
411200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 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 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5	0	
4113100000	산양의 것	5	0	
4113200000	돼지의 것	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113300000	파충류의 것	5	0	
4113900000	기타	5	0	
411410000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5	0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	5	0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5	0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	5	0	
4115100000	컴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인 것에 한한다)	8	0	
411520000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가죽의 더스트와 분	3	0	
4201001000	파충류제의 것	8	0	
4201009010	안장 및 안장용 방석	8	3	
4201009020	고삐줄	8	0	
4201009030	끈	8	0	
4201009040	재갈	8	0	
4201009090	기타	8	0	
4202111010	뱀의 것	8	0	
4202111020	도마뱀의 것	8	0	
4202111030	악어의 것	8	0	
42021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111050	강가루의 것	8	0	
4202111090	기타	8	3	
42021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	3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0	
42021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121090	기타	8	0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3	
4202191000	판지제의 것	8	3	
4202199000	기타	8	3	
4202211010	뱀의 것	8	3	
4202211020	도마뱀의 것	8	3	
4202211030	악어의 것	8	3	
42022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211050	강가루의 것	8	0	
4202211090	기타	8	0	
42022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3	
42022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221090	기타	8	3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4202291000	판지제의 것	8	0	
4202299000	기타	8	3	
4202311010	뱀의 것	8	3	
4202311020	도마뱀의 것	8	3	
4202311030	악어의 것	8	3	
42023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311050	강가루의 것	8	0	
4202311090	기타	8	3	
42023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3	
42023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321090	기타	8	3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3	
4202391000	판지제의 것	8	0	
4202399000	기타	8	3	
4202911010	뱀의 것	8	0	
4202911020	도마뱀의 것	8	0	
4202911030	악어의 것	8	0	
42029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911050	캥가루의 것	8	0	
4202911090	기타	8	0	
4202912000	코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0	
42029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921090	기타	8	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4202991000	판지제의 것	8	0	
4202999000	기타	8	0	
4203101010	코트류	13	0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1050	조끼류	13	0	
4203101060	바지류	13	0	
4203101070	스커트류	13	0	
4203101080	오버롤류	13	0	
4203101090	기타	13	0	
4203102010	코트류	13	0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2050	조끼류	13	0	
4203102060	바지류	13	0	
4203102070	스커트류	13	0	
4203102080	오버롤류	13	0	
4203102090	기타	13	0	
4203103010	코트류	13	0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3050	조끼류	13	0	
4203103060	바지류	13	0	
4203103070	스커트류	13	0	
4203103080	오버롤류	13	0	
4203103090	기타	13	0	
4203109010	코트류	13	0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9050	조끼류	13	0	
4203109060	바지류	13	0	
4203109070	스커트류	13	0	
4203109080	오버롤류	13	0	
4203109090	기타	13	0	
4203211000	야구장갑	13	0	
4203212000	골프장갑	13	0	
4203213000	스키장갑	13	0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13	0	
4203215000	배팅장갑	13	0	
4203216000	테니스장갑	13	0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13	0	
4203219000	기타	13	0	
4203291000	작업용 장갑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203292000	방한용 장갑	13	0	
4203293000	운전용 장갑	13	0	
4203299000	기타	13	3	
4203301010	뱀의 것	13	0	
4203301020	도마뱀의 것	13	3	
4203301030	악어의 것	13	3	
4203301040	장어류의 것	13	0	
4203301090	기타	13	3	
4203309000	기타	13	3	
4203400000	기타의 의류부속품	13	3	
4205001110	벨트	8		
	- 콘베이어용의 것		3	
	- 전동기용의 것		0	
	- 기타		3	
4205001190	기타	8		
	- 픽카		0	
	- 기타		3	
4205001900	기타의 가죽제품	8	0	
4205002110	벨트	8		
	- 콘베이어용의 것		3	
	- 전동기용의 것		0	
	- 기타		3	
4205002190	기타	8		
	- 픽카		0	
	- 기타		3	
4205002900	기타의 컴퓨터용 레더제품	8	0	
4206001000	캐거트	8	0	
4206009000	기타	8	0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0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0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0	
4301801000	친칠라의 것	3	0	
4301802000	오파섬의 것	3	0	
4301803000	라쿤의 것	3	0	
4301804000	코요테의 것	3	0	
4301805000	토끼의 것	3	0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3	0	
4301809000	기타	3	0	
430190000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0	
4302110000	밍크의 것	5	0	
4302191000	해리의 것	5	0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193000	여우의 것	5	0	
4302195000	친칠라의 것	5	0	
4302196000	오파섬의 것	5	0	
4302197000	라쿤의 것	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302198000	코요테의 것	5	0	
4302199010	면양의 것	5	0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에 한한다)	5	0	
4302199090	기타	5	0	
4302201000	밍크의 것	5	0	
4302202000	토끼의 것	5	0	
4302203000	해리의 것	5	0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205000	여우의 것	5	0	
4302207000	친칠라의 것	5	0	
4302209010	오파섬의 것	5	0	
4302209020	라쿤의 것	5	0	
4302209030	코요테의 것	5	0	
4302209090	기타	5	0	
430230000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5	0	
4303101100	밍크의 것	16	0	
4303101200	토끼의 것	16	0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1400	해리의 것	16	0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1600	여우의 것	16	0	
4303101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1910	오파섬의 것	16	0	
4303101920	라쿤의 것	16	0	
4303101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1990	기타	16	0	
4303102100	밍크의 것	16	0	
4303102200	토끼의 것	16	0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2400	해리의 것	16	0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2600	여우의 것	16	0	
4303102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2910	오파섬의 것	16	0	
4303102920	라쿤의 것	16	0	
4303102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2990	기타	16	0	
4303900000	기타	16	0	
4304001000	인조모피	8	0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8	0	
4401100000	떨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2	0	
4401210000	침엽수류	2	0	
4401221000	펄프 제조용의 것	0	0	
4401229000	기타	2	0	
4401300000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3	
4402101000	성형목탄	2	3	
4402109000	기타	2	3	
4402901000	성형목탄	2	3	
4402909000	기타	2	3	
4403101000	열대산 목재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403102000	활엽수	0	0	
4403109000	침엽수	0	0	
4403201000	삼나무	0	0	
4403202010	더글러스퍼	0	0	
4403202020	헴록	0	0	
4403203000	적송	0	0	
4403204000	전나무	0	0	
4403205000	낙엽송	0	0	
4403207000	가문비나무	0	0	
4403208000	라디에타소나무	0	0	
4403209000	기타	0	0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 ·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0	0	
4403491000	화이트라왕 · 화이트메란티 · 화이트세라야 · 옐로메란티 및 아란	0	0	
4403492010	티크	0	0	
4403492020	케루잉	0	0	
4403492030	카폴	0	0	
4403492040	제루통	0	0	
4403492090	기타	0	0	
4403493000	오꾸메 · 오베체 · 사펠리 · 시뽀 · 아까쥬다 푸리케 · 마코레 및 이로코	0	0	
4403494000	티아마 · 만소니아 · 이롬바 · 디베 토우 · 림 바 및 아조베	0	0	
4403495000	마호가니 및 발사	0	0	
4403499000	기타	0	0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0	0	
4403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0	0	
4403991010	자단	0	0	
4403991020	흑단	0	0	
4403991040	물푸레나무	0	0	
4403991050	호도나무	0	0	
4403991090	기타	0	0	
4403992000	리그넘바이트	0	0	
4403993010	사시나무	0	0	
4403993020	포플러	0	0	
4403993030	단풍나무	0	0	
4403993040	느릅나무	0	0	
4403993050	자작나무	0	0	
4403993060	피나무	0	0	
4403994000	오동나무	0	0	
4403999011	말라스	0	0	
4403999012	타운	0	0	
4403999019	기타	0	0	
4403999090	기타	0	0	
4404102000	목재의 봉	5	5	
4404109000	기타	5	5	
4404202000	목재의 봉	5	5	
4404209000	기타	5	5	
4405000000	목모와 목분	5	5	
4406100000	주악처리하지 아니한 것	5	5	
4406900000	기타	5	5	
4407101000	삼나무	5	3	
4407102000	미송	5	3	
4407103000	적송	5	5	
4407104000	전나무	5	3	
4407105000	낙엽송	5	3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407107000	가문비나무	5	5	
4407108000	라디에타소나무	5	3	
4407109000	기타	5	3	
4407210000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5	5	
4407220000	비롤라·임부아 및 발사	5	5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5	5	
4407260000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로메란티 및 아란	5	5	
4407270000	사팔리	5	5	
4407280000	이로코	5	5	
4407291000	케루잉·라민·카폴·종콩·멜바우·제루통 및 켄파스	5	5	
4407292000	티크	5	5	
4407293000	오꾸메·오베체·시뽀·아까쥬다푸리케·마끄레·티아마·만소니아·이롬바·디베투우·림바 및 아조베	5	5	
4407299000	기타	5	5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5	3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5	5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5	3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5	3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5	3	
4407991010	자단	5	3	
4407991020	흑단	5	5	
4407991040	호도나무	5	3	
4407991090	기타	5	5	
4407992000	리그넘바이트	5	3	
4407993010	사시나무	5	3	
4407993020	포플러	5	3	
4407993040	느릅나무	5	5	
4407993050	자작나무	5	3	
4407993060	피나무	5	3	
4407994000	오동나무	5	3	
4407999010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5	3	
4407999090	기타	5	3	
4408106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109100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109200	무늬목	3	5	
4408109910	삼나무	5	5	
4408109920	미송	5	5	
4408109930	적송	5	5	
4408109940	전나무	5	5	
4408109950	낙엽송	5	5	
4408109960	가문비나무	5	5	
4408109970	라디에타소나무	5	5	
4408109990	기타	5	5	
4408313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319011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319012	무늬목	3	5	
4408319019	기타	5	5	
4408319021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319022	무늬목	3	5	
4408319029	기타	5	5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408396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399011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399012	무늬목	3	5	
4408399019	기타	5	5	
4408399021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399022	무늬목	3	5	
4408399029	기타	5	5	
4408399031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399032	무늬목	3	5	
4408399039	기타	5	5	
4408399041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399042	무늬목	3	5	
4408399049	기타	5	5	
4408399051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399052	무늬목	3	5	
4408399059	기타	5	5	
4408399091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399092	무늬목	3	5	
4408399099	기타	5	5	
4408901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909150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909160	무늬목	3	5	
4408909191	자단	5	5	
4408909192	흑단	5	5	
4408909193	물푸레나무	5	5	
4408909194	호도나무	5	5	
4408909199	기타	5	5	
4408909210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909220	무늬목	3	5	
4408909290	기타	5	5	
4408909370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909380	무늬목	3	5	
4408909391	사시나무	5	5	
4408909392	포플러	5	5	
4408909393	단풍나무	5	5	
4408909394	느릅나무	5	5	
4408909395	자작나무	5	5	
4408909396	피나무	5	5	
4408909410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909420	무늬목	3	5	
4408909490	기타	5	5	
4408909912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909913	무늬목	3	5	
4408909914	바보엔	5	5	
4408909919	기타	5	5	
4408909991	합판 제조용의 것	3	5	
4408909992	무늬목	3	5	
4408909999	기타	5	5	
4409100000	침엽수류	8	5	
4409210000	대나무제의 것	8	5	
4409290000	기타	8	5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7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7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5	
4410119000	기타	8	5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7	
4410129000	기타	8	5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7	
4410191090	기타	8	5	
441019901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7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7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5	
4410199090	기타	8	5	
4410900000	기타	8	5	
44111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	7	
441112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8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마루판을 제외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그램 초과 0.8그램이하의 것에 한하며, 마루판을 제외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35그램 초과 0.5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5	
4411129000	기타	8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8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그램 초과 0.8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35그램 초과 0.5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5	
44111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	7	
441113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8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마루판을 제외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그램 초과 0.8그램이하의 것에 한하며, 마루판을 제외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35그램 초과 0.5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5	
4411139000	기타	8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8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그램 초과 0.8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35그램 초과 0.5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5	
44111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	7	
4411142010	마루판	8	7	
4411142090	기타	8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8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그램 초과 0.8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35그램 초과 0.5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5	
4411149000	기타	8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8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그램 초과 0.8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7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35그램 초과 0.5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5	
44119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	7	
4411922010	마루판	8	7	
4411922090	기타	8	7	
4411929000	기타	8	7	
44119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	7	
4411932010	마루판	8	7	
4411932090	기타	8	7	
4411939000	기타	8	7	
44119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8	7	
4411949000	기타	8	5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가.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 두께가 3.2밀리미터미만인 것		7	
	- 두께가 3.2밀리미터이상 4밀리미터미만인 것		7	
	- 두께가 4밀리미터이상 6밀리미터미만인 것		5	
	나.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 - 두께가 3.2밀리미터미만인 것		7	
	- 두께가 3.2밀리미터이상 4밀리미터미만인 것		5	
	- 두께가 4밀리미터이상 6밀리미터미만인 것		5	
	다. 기타(양쪽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5	
	2. 기타의 것(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에 한한다)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과 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 합판		5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 기타의 것(기타)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기재한 열대산 목재의 것, 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것 및 양쪽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5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가.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기재한 열대산 목재의 것 - 두께가 6밀리미터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5	
	- 두께가 12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5	
	나.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 - 두께가 6밀리미터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7	
	- 두께가 12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7	
	-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5	
	다. 기타(양쪽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5	
	2. 기타의 것(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에 한한다)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기재한 열대산 목재의 것과 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 합판		5	
	3. 기타의 것(기타)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기재한 열대산 목재의 것, 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것 및 양쪽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5	
4412102000	마루판	8		
	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에 한한다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기재한 열대산 목재의 것과 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5	
	2. 기타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기재한 열대산 목재의 것과 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7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에 한한다 - 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7	
	--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7	
	-- 기타(기타)		5	
	2. 기타의 것(기타) - 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7	
	--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5	
	-- 기타(기타)		5	
4412109090	기타	8		
	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에 한한다 - 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7	
	--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7	
	-- 기타(기타)		5	
	2. 기타의 것(기타) - 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7	
	--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5	
	-- 기타(기타)		5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	
441231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5	
441231400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1	5	
441231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1	5	
441231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1	5	
441231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5	
441232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	
441232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5	
441232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5	
441232400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1	7	
441232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1	7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41232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1	7	
441232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5	
441239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	
4412391090	기타	11	7	
4412399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5	
4412399090	기타	11	5	
4412941000	블록보드	8		
	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에 한한다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7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 합판		5	
	- 마루판		5	
	- 기타(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5	
	2. 기타의 것(기타)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7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 합판(양쪽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		7	
	- 합판(기타)		5	
	- 마루판		7	
	- 기타(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5	
4412942000	라민보드	8		
	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에 한한다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7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 합판		5	
	- 마루판		5	
	- 기타(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5	
	2. 기타의 것(기타)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7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 합판(양쪽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		7	
	- 합판(기타)		5	
	- 마루판		7	
	- 기타(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5	
4412943000	배튼보드	8		
	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에 한한다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7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 합판		5	
	- 마루판		5	
	- 기타(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5	
	2. 기타의 것(기타)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7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것에 한한다) - 합판(양쪽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		7	
	- 합판(기타)		5	
	- 마루판		7	
	- 기타(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5	
44129910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7	
4412991019	기타	8	7	
441299102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7	
4412991029	기타	8	7	
441299103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5	
4412991039	기타	8	5	
4412991041	마루판(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5	
4412991042	마루판(기타의 것에 한한다)	8	5	
4412991043	기타(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5	
4412991049	기타	8	5	
4412992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7	
4412992090	기타	8	7	
4412993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5	
4412993090	기타	8	5	
44129991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7	
4412999119	기타	8	7	
44129991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5	
4412999199	기타	8	5	
44129992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7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412999219	기타	8	7	
44129992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1	5	
4412999299	기타	8	5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8	5	
4414000000	목재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8	5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와 케이블드럼	8	5	
4415200000	페렛, 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페렛칼러	8	5	
4416000000	목재의 통·배럴·배트·텝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8	5	
4417000000	목재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8	5	
4418100000	창문과 창문틀	8	5	
4418200000	문·문틀 및 문지방	8	5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섯터	8	5	
4418500000	지붕이하는 판자	8	5	
4418600000	기둥 및 들보	8	5	
4418711000	파아켓트패널	8	5	
4418719000	기타	8	5	
4418721000	파아켓트패널	8	5	
4418729000	기타	8	5	
4418791000	파아켓트패널	8	5	
4418799000	기타	8	5	
4418901000	셀룰라우드패널	8	5	
4418909000	기타	8	5	
4419001000	대접(공기)	8	5	
4419002010	대나무제의 것	8	5	
4419002090	기타	8	5	
4419009000	기타	8	5	
4420101000	조상	8	5	
4420109000	기타	8	5	
4420901000	기목 세공과 상감 세공한 목재	8	5	
4420902010	담배상자	8	5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5	
4420902030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구	8	5	
4420902090	기타	8	5	
4420909010	담배 및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5	
4420909020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구	8	5	
4420909090	기타	8	5	
4421100000	옷걸이	8	5	
4421901010	보빈	8	5	
4421901090	기타	8	5	
4421902000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용의 나무 못	8	5	
4421903000	이쑤시개	8	5	
442190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5	
4421905000	부채·핸드스크리인(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이들의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5	
4421909000	기타	8	5	
4501100000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8	3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501900000	기타	8	3	
45020000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쉬트상이나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8	3	
4503100000	마개	8	3	
4503900000	기타	8	3	
4504100000	블록·판·쉬트·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및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8	3	
4504900000	기타	8	3	
4601211000	매트류	8	0	
4601212000	발	8	0	
4601221000	매트류	8	0	
4601222000	발	8	0	
4601291000	매트류	8	0	
4601292000	발	8	0	
4601921000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4601929000	기타	8	0	
4601930000	등나무제의 것	8	0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4601949000	기타	8	0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쉬트상의 물품	8	0	
4601999000	기타	8	0	
4602111000	바구니	8	5	
4602112000	쟁반, 접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 또는 식탁용품	8	5	
4602119000	기타	8	5	
4602120000	등나무제의 것	8	5	
4602191000	골풀제품	8	0	
4602199000	기타	8	5	
4602900000	기타	8	0	
470100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100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0	0	
47031100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31900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12000	표백한 것	0	0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92000	표백한 것	0	0	
47041100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41900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42100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42900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50000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0	
4706100000	면린터펄프	0	0	
4706200000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4706301000	기계펄프	0	0	
4706302000	화학펄프	0	0	
4706303000	반화학펄프	0	0	
47069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70691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69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692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693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693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710000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0	0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제의 것(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470730000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0	0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	0	
4801000000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4802100000	수제지와 판지	0	0	
4802200000	사진감광성, 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 지와 판지	0	0	
4802400000	벽지용의 원지	0	0	
480254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1090	기타	0	0	
480254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9090	기타	0	0	
480255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1090	기타	0	0	
480255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9090	기타	0	0	
480256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1090	기타	0	0	
480256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9090	기타	0	0	
480257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1090	기타	0	0	
480257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9090	기타	0	0	
480258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1090	기타	0	0	
4802582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802582090	기타	0	0	
480258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9090	기타	0	0	
480261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1090	기타	0	0	
480261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9090	기타	0	0	
480262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1090	기타	0	0	
480262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9090	기타	0	0	
480269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1090	기타	0	0	
480269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9090	기타	0	0	
48030010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	0	0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	0	0	
4803009000	기타	0	0	
4804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804190000	기타	0	0	
4804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804290000	기타	0	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12000	콘덴사지와 판지	0	0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19000	기타	0	0	
4804391000	전기전열지와 판지	0	0	
4804392000	콘덴사지와 판지	0	0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99000	기타	0	0	
4804411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804411090	기타	0	0	
4804419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9090	기타	0	0	
480442100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29000	기타	0	0	
480449100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99000	기타	0	0	
48045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804520000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0	0	
4804590000	기타	0	0	
4805110000	반화학 후로팅지	0	0	
4805120000	스트로 후로팅지	0	0	
4805190000	기타	0	0	
480524100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49000	기타	0	0	
480525100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59000	기타	0	0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	0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	0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	0	
480591100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19010	콘덴사지와 판지	0	0	
4805919090	기타	0	0	
480592100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29000	기타	0	0	
480593100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39000	기타	0	0	
4806100000	황산지	0	0	
4806200000	내지지	0	0	
4806300000	트래싱지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806401000	그라신지	0	0	
4806409000	기타	0	0	
480700000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100000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200000	지대용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300000	기타의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900000	기타	0	0	
4809201000	한겹의 것	0	0	
4809202000	두겹 이상의 것	0	0	
4809901000	전사지	0	0	
4809902000	감열기록지	0	0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09904000	카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09909000	기타	0	0	
481013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	0	
4810139000	기타	0	0	
481014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	0	
4810149000	기타	0	0	
481019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	0	
4810199000	기타	0	0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0	0	
4810290000	기타	0	0	
4810310000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0	
4810320000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0	0	
4810390000	기타	0	0	
4810920000	여러 겹의 것	0	0	
4810991000	지형지	0	0	
4810992000	여과지	0	0	
4810999000	기타	0	0	
4811101000	루핑지	0	0	
4811109000	기타	0	0	
4811141000	셀프접착지	0	0	
4811149000	기타	0	0	
4811511000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며 265그램 이하인 것	0	0	
4811519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	0	
4811519019	기타	0	0	
4811519090	기타	0	0	
4811590000	기타	0	0	
4811600000	왁스 · 파라핀왁스 · 스테아린 · 유 · 글리세롤을 도포 · 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811901010	과선, 선 또는 방안선을 그은 것	0	0	
4811901090	기타	0	0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	0	
4811902090	기타	0	0	
48120000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0	0	
4813100000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	0	0	
4813200000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의 롤상의 것	0	0	
4813900000	기타	0	0	
4814100000	인그레인지	0	0	
4814201000	벽지	0	0	
4814202000	링크라스타	0	0	
4814209000	기타	0	0	
4814901010	갈포섬유제의 것	0	0	
4814901090	기타	0	0	
4814909000	기타	0	0	
4816201000	한걸의 것	0	0	
4816202000	두겹 이상의 것	0	0	
4816901000	전사지	0	0	
4816902000	감열기록지	0	0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16904000	카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16905000	등사원지	0	0	
4816909000	기타	0	0	
4817100000	봉투	0	0	
4817200000	봉합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0	0	
4817300000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0	
4818100000	화장지	0	0	
4818200000	지제의 손수건·크렌싱티슈·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0	0	
4818300000	책상보 및 서비에트	0	0	
481840100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0	0	
4818409000	기타	0	0	
4818500000	의류 및 의류부속품	0	0	
4818900000	기타	0	0	
4819100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0	0	
4819200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을 제외한다)	0	0	
4819300000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0	
4819400000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0	0	
4819501000	액체포장에 적합한 것	0	0	
4819509000	기타	0	0	
4819600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	0	
4820100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0	0	
4820200000	연습장	0	0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를 제외한다)·홀더 및 서철표지	0	0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	0	
4820500000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0	0	
4820900000	기타	0	0	
4821100000	인쇄한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821900000	기타	0	0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0	0	
4822900000	기타	0	0	
4823200000	여과용의 지와 판지	0	0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쉬트 및 다이알	0	0	
4823610000	대나무제의 것	0	0	
4823690000	기타	0	0	
4823700000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0	0	
4823901010	천공된 카드	0	0	
4823901090	기타	0	0	
4823902000	전기절연지	0	0	
4823903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3019	기타	0	0	
482390302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3029	기타	0	0	
4823903090	기타	0	0	
4823905000	자카드 직기용의 천공지	0	0	
4823909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9019	기타	0	0	
4823909090	기타	0	0	
4901101000	국문판	0	0	
4901109000	기타	0	0	
4901911000	국문판	0	0	
4901919000	기타	0	0	
4901991000	국문판	0	0	
4901999000	기타	0	0	
4902101010	신문	0	0	
4902101090	기타	0	0	
4902109000	기타	0	0	
4902901010	잡지	0	0	
4902901090	기타	0	0	
4902909010	잡지	0	0	
4902909090	기타	0	0	
4903000000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0	0	
49040000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905100000	지구의	0	0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	0	
4905919000	기타	0	0	
4905990000	기타	0	0	
4906001000	설계도	0	0	
4906002000	도안	0	0	
4906009000	기타	0	0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	0	
4907009000	기타	0	0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3.3	0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쿠션 후로링 쉬트용의 것	3.3	0	
4908909000	기타	3.3	0	
49090000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910001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것	4.7	0	
4910009000	기타	4.7	0	
4911100000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0	0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	0	
4911919000	기타	0	0	
4911990000	기타	0	0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51% 또는 5,276원/kg 양자중 고액 (율)	0	
5002001010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3	0	
5002001020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중 고액 (율)	0	
5002001030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중 고액 (율)	0	
5002001040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중 고액 (율)	0	
5002001050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중 고액 (율)	0	
5002002000	옥사	3	0	
5002009000	기타	8	0	
5003001100	누에고치 웨이스트	2	0	
5003001200	폴습	2	0	
5003001300	비수	2	0	
5003001400	생피저	2	0	
5003001900	기타	2	0	
5003009100	페니	2	0	
5003009200	견노일(부렛)	2	0	
5003009900	기타	2	0	
500400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8	0	
5005001000	견수방사	8	0	
5005002000	견방사	8	0	
5005003000	견방주사	8	0	
5006001000	견사	8	0	
5006002000	견수방사	8	0	
5006003000	견방사	8	0	
5006004000	견방주사	8	0	
5006005000	누에의 거트	8	0	
5007100000	견 노일직물	13	0	
50072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202010	홀치기가공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007202020	사틴	13	0	
5007202030	그레이프 데신	13	0	
5007202090	기타	13	0	
5007209000	기타	13	0	
50079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3000	기타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9000	기타	13	0	
5101110000	깎은 양모	0	0	
5101190000	기타	0	0	
5101210000	깎은 양모	0	0	
5101290000	기타	0	0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	0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2190000	기타	0	0	
5102200000	조수모	0	0	
51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0	0	
5103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0	0	
5103300000	조수모의 웨이스트	0	0	
5104000000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0	0	
5105100000	카드한 양모	0	0	
5105210000	코옴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0	0	
5105291000	순모울톱	0	0	
5105292000	혼방울톱	0	0	
5105293000	조사	0	0	
5105299000	기타	0	0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5390000	기타	0	0	
5105400000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0	0	
5106101000	순모의 것	8	0	
5106109000	기타	8	0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4000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9000	기타	8	0	
5107101000	순모의 것	8	7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109000	기타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4000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9000	기타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8100000	카드한 것	8	0	
5108200000	코옴한 것	8	0	
5109101000	양모사	8	0	
5109109000	섬수모사	8	0	
5109901000	양모사	8	0	
5109909000	섬수모사	8	0	
511000000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집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5111111000	양모의 것	13	0	
5111112000	섬수모의 것	13	0	
5111191000	양모의 것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111192000	섬수모의 것	13	0	
5111200000	기타(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1300000	기타(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1900000	기타	13	0	
5112111000	양모의 것	13	7	
5112112000	섬수모의 것	13	0	
5112191000	양모의 것	13	7	
5112192000	섬수모의 것	13	7	
5112200000	기타(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2300000	기타(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2900000	기타	13	7	
51130000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13	0	
5201001000	실면	0	0	
5201009010	섬유길이가 23.2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20	섬유길이가 23.2밀리미터 이상 25.4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30	섬유길이가 25.4밀리미터 이상 28.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50	섬유길이가 28.5밀리미터 이상 34.9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60	섬유길이가 34.9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5202100000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0	0	
5202910000	가아넷스톡	0	0	
5202990000	기타	0	0	
5203000000	면(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0	0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	8	0	
5204190000	기타	8	0	
5204200000	소매용의 것	8	0	
52051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19000	기타	8	0	
52051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의 것. 다만, 오픈·엔드사를 제외한다	4	0	
5205121090	기타	8	0	
5205129000	기타	8	0	
52051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39000	기타	8	0	
52051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49000	기타	8	0	
52051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59000	기타	8	0	
52052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19000	기타	8	0	
52052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29000	기타	8	0	
52052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39000	기타	8	0	
52052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49000	기타	8	0	
520526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69000	기타	8	0	
520527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7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20528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89000	기타	8	0	
52053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319000	기타	8	0	
5205321010	370.37데시텍스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 (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의 것. 다만, 오픈·엔드사를 제외한다	4	0	
5205321090	기타	8	0	
5205329000	기타	8	0	
52053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339000	기타	8	0	
52053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349000	기타	8	0	
52053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359000	기타	8	0	
52054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19000	기타	8	0	
52054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29000	기타	8	0	
52054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39000	기타	8	0	
52054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49000	기타	8	0	
520546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69000	기타	8	0	
520547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79000	기타	8	0	
520548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89000	기타	8	0	
52061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19000	기타	8	0	
52061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29000	기타	8	0	
52061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39000	기타	8	0	
52061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49000	기타	8	0	
52061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59000	기타	8	0	
52062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219000	기타	8	0	
52062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229000	기타	8	0	
52062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239000	기타	8	0	
52062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249000	기타	8	0	
52062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259000	기타	8	0	
52063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19000	기타	8	0	
52063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29000	기타	8	0	
52063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39000	기타	8	0	
52063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4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2063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59000	기타	8	0	
52064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419000	기타	8	0	
52064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429000	기타	8	0	
52064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439000	기타	8	0	
52064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449000	기타	8	0	
52064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459000	기타	8	0	
520710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7109000	기타	8	0	
520790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7909000	기타	8	0	
520811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1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13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190000	기타 직물의 것	10	0	
520821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2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23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290000	기타 직물의 것	10	0	
520831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3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33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390000	기타 직물	10	0	
520841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4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43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490000	기타 직물	10	0	
520851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5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591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599000	기타	10	0	
5209110000	평직물	10	0	
52091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190000	기타 직물	10	0	
5209210000	평직물	1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2092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290000	기타 직물	10	0	
5209310000	평직물	10	0	
52093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390000	기타 직물	10	0	
5209410000	평직물	10	0	
5209420000	데님	10	0	
5209430000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490000	기타 직물	10	0	
5209510000	평직물	10	0	
52095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590000	기타 직물	10	0	
5210110000	평직물	10	0	
5210191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199000	기타	10	0	
5210210000	평직물	10	0	
5210291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299000	기타	10	0	
5210310000	평직물	10	0	
52103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390000	기타 직물	10	0	
5210410000	평직물	10	0	
5210491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499000	기타	10	0	
5210510000	평직물	10	0	
5210590000	기타 직물	10	0	
5211110000	평직물	10	0	
52111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190000	기타 직물	10	0	
5211200000	표백한 것	10	0	
5211310000	평직물	10	0	
52113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390000	기타 직물	10	0	
5211410000	평직물	10	0	
5211420000	데님	10	0	
5211430000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490000	기타 직물	10	0	
5211510000	평직물	10	0	
52115200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590000	기타 직물	10	0	
521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10	0	
5212120000	표백한 것	10	0	
5212130000	염색한 것	10	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212150000	날염한 것	10	0	
5212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10	0	
5212220000	표백한 것	10	0	
5212230000	염색한 것	10	0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212250000	날염한 것	10	0	
5301100000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2	0	
5301210000	쇄경 또는 타마한 것	2	0	
5301290000	기타	2	0	
5301301000	아마의 토우	2	0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	2	0	
5302100000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2	0	
5302901000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직한 것을 제외한다)	2	0	
5302902010	대마의 토우	2	0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	2	0	
5303101000	황마	2	0	
5303102000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2	0	
5303901010	황마	2	0	
5303901090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2	0	
5303909010	황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2	0	
5303909090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의 토우 및 웨이스 트	2	0	
5305001010	생 것	2	0	
5305001090	기타	2	0	
5305002010	생 것	2	0	
5305002090	기타	2	0	
5305003010	생 것	2	0	
5305003090	기타	2	0	
5305009010	생 것	2	0	
5305009090	기타	2	0	
5306101000	순아마사	8	0	
5306102000	혼방아마사	8	0	
5306201000	순아마사	8	0	
5306202000	혼방아마사	8	0	
5307101000	황마사	8	0	
5307109000	기타	8	0	
5307201000	황마사	8	0	
5307209000	기타	8	0	
5308100000	코이어사	8	0	
5308200000	대마사	8	0	
5308901000	라미사	8	0	
5308909000	기타	8	0	
5309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	0	
5309190000	기타	2	0	
5309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	0	
5309290000	기타	2	0	
5310101000	황마직물	8	0	
5310109000	기타	8	0	
5310901000	황마직물	8	0	
5310909000	기타	8	0	
5311001000	라미의 것	8	0	
5311002000	대마의 것	8	0	
5311003000	지사의 것	8	0	
5311009000	기타	8	0	
5401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1109000	기타	8	0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0	
5401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401209000	기타	8	0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8	0	
5402190000	기타	8	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8	0	
540231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540232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에 한한다)	8	0	
540233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402390000	기타	8	0	
5402440000	탄성사	8	0	
5402450000	기타(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8	0	
5402460000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5402470000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8	0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8	0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499000	기타	8	0	
540251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599000	기타	8	0	
540261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2699000	기타	8	0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2	0	
5403311000	텍스처드사	2	0	
5403319000	기타	2	0	
5403321000	텍스처드사	2	0	
5403329000	기타	2	0	
540333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39000	기타	8	0	
54033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99000	기타	8	0	
5403411000	텍스처드사	2	0	
5403419000	기타	2	0	
540342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29000	기타	8	0	
54034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99000	기타	8	0	
5404110000	탄성사	8	0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8	0	
5404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8	0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4199000	기타	8	0	
5404901000	스트립상의 것	8	0	
5404909000	기타	8	0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405009000	기타	8	0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8	0	
54060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의 필라멘트사	8	0	
5407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의 것	8	0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200000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	0	
540730000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8	0	
5407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420000	염색한 것	8	0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440000	날염한 것	8	0	
54075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520000	염색한 것	8	0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540000	날염한 것	8	0	
54076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612000	염색한 것	8	0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614000	날염한 것	8	0	
54076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692000	염색한 것	8	0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694000	날염한 것	8	0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19000	기타	8	0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29000	기타	8	0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39000	기타	8	0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49000	기타	8	0	
54078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19000	기타	8	0	
54078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29000	기타	8	0	
540783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39000	기타	8	0	
540784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49000	기타	8	0	
5407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19000	기타	8	0	
54079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29000	기타	8	0	
540793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39000	기타	8	0	
540794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49000	기타	8	0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0	
5408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8220000	염색한 것	8	0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8240000	날염한 것	8	0	
5408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8320000	염색한 것	8	0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8340000	날염한 것	8	0	
550110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1301000	아크릴의 것	8	0	
550130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1900000	기타	8	0	
55020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7.5	0	
5502002010	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7.5	0	
5502002020	44,000데시텍스 이상의 것	7.5	0	
5502009000	기타	7.5	0	
550311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119000	기타	8	0	
550319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199000	기타	8	0	
550320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209000	기타	8	0	
5503301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의 것	8	0	
5503301090	기타	8	0	
5503302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의 것	8	0	
5503302090	기타	8	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3900000	기타	8	0	
5504101000	이형단면의 것	2	0	
5504102000	폴리노직 단면의 것	2	0	
5504109000	기타	2	0	
5504901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4902000	리오셀의 것	4	0	
5504909000	기타	8	0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2	0	
550520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2	0	
550610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109000	기타	8	0	
550620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209000	기타	8	0	
5506301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301020	콘쥬게이트단면의 것	8	0	
5506301090	기타	8	0	
5506302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302020	콘쥬게이트단면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506302090	기타	8	0	
5506900000	기타	8	0	
5507001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7001020	폴리노직단면의 것	8	0	
5507001090	기타	8	0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7009000	기타	8	0	
5508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8103000	아크릴 또는 모타크릴의 것	8	0	
5508109000	기타	8	0	
55082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08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8209000	기타	8	0	
5509111000	강력사	8	0	
5509119000	기타	8	0	
5509121000	강력사	8	0	
5509129000	기타	8	0	
5509211000	강력사	8	0	
5509219000	기타	8	0	
5509221000	강력사	8	0	
5509229000	기타	8	0	
550931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31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32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32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410000	단사	8	0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8	0	
5509510000	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8	0	
5509520000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8	0	
55095300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8	0	
5509590000	기타	8	0	
550961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61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62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62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691010	아크릴의 것	8	0	
550969102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692010	아크릴의 것	8	0	
550969202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9919000	기타	8	0	
55099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9929000	기타	8	0	
5509990000	기타	8	0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119000	기타	8	0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0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129000	기타	8	0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0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209000	기타	8	0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510309000	기타	8	0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909000	기타	8	0	
5511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10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8	0	
5511109000	기타	8	0	
55112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20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8	0	
5511209000	기타	8	0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1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1309000	기타	8	0	
551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2191000	염색한 것	10	0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512193000	날염한 것	10	0	
5512211000	아크릴의 것	10	0	
551221200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2290000	기타	10	0	
5512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19000	기타	10	0	
55129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99000	기타	10	0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	0	
5513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1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199000	기타	10	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3239000	기타	10	0	
55132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2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299000	기타	10	0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3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3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3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399000	기타	10	0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4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492010	아크릴의 것	1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5134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499000	기타	10	0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4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1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10	0	
5514199000	기타	10	0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	0	
55142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2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4299000	기타	10	0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	0	
55144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4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4499000	기타	10	0	
55151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19000	기타	10	0	
55151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29000	기타	10	0	
551513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39000	기타	10	0	
55151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99000	기타	10	0	
55152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219000	기타	10	0	
55152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229000	기타	10	0	
55152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299000	기타	10	0	
55159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919000	기타	10	0	
55159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999000	기타	10	0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19000	기타	10	0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29000	기타	1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39000	기타	10	0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49000	기타	10	0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19000	기타	10	0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29000	기타	10	0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39000	기타	10	0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49000	기타	10	0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19000	기타	10	0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29000	기타	10	0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39000	기타	10	0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49000	기타	10	0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19000	기타	10	0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29000	기타	10	0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39000	기타	10	0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49000	기타	10	0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19000	기타	10	0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29000	기타	10	0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39000	기타	10	0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49000	기타	10	0	
5601100000	위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8	0	
5601210000	면제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601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601290000	기타	8	0	
5601301000	섬유의 플록	8	0	
5601309000	기타	8	0	
5602101000	니들룸 펠트	8	0	
5602102000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8	0	
5602211000	피아노 펠트	8	0	
5602219000	기타	8	0	
5602290000	기타 섬유제의 것	8	0	
5602900000	기타	8	0	
560311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19000	기타	8	0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29000	기타	8	0	
560313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39000	기타	8	0	
560314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49000	기타	8	0	
56039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3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4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	8	0	
560410000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8	0	
5604901000	모조켓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에 한한다)	8	0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 또는 도포한 것)	8	0	
5604909000	기타	8	0	
5605000000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에 한한다)	8	0	
5606001000	짐프사	8	0	
5606002000	셔닐사	8	0	
5606003000	루프웨일사	8	0	
5606009000	기타	8	0	
5607210000	포장용 끈	10	0	
5607290000	기타	10	0	
5607410000	포장용 끈	10	0	
5607490000	기타	10	0	
5607500000	기타 합성섬유의 것	10	0	
5607901000	제5303호의 황마 또는 방직용 인피섬유의 것	1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607909000	기타	10	0	
56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0	0	
5608119000	기타	10	0	
5608191000	합성섬유제의 것	10	0	
5608199000	기타	10	0	
5608901000	면제의 것	10	0	
5608909000	기타	10	0	
5609001000	면제의 것	8	0	
5609002000	식물성섬유제의 것(면제의 것을 제외한다)	8	0	
5609003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609009000	기타	8	0	
5701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570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2100000	켈럼 · 슈맥 · 카라마니와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	10	0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제의 바닥 깔개	10	0	
5702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5702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570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2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57024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5702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2500000	기타(파일직물의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	10	0	
5702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5702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5702990000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5703200000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703300000	기타 인조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3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4100000	타일(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에 한한다)	10	0	
5704900000	기타	10	0	
5705000000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0	
5801101000	파일직물	13	0	
5801102000	셔닐직물	13	0	
5801210000	절단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13	0	
5801220000	절단된 코르덴	13	0	
5801230000	기타 위파일 직물	13	0	
5801240000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13	0	
5801250000	절단된 경파일 직물	13	0	
5801260000	셔닐직물	13	0	
5801310000	절단되지 아니한 위파일 직물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801320000	절단된 코르덴	13	0	
5801330000	기타 위파일 직물	13	0	
5801340000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13	0	
5801350000	절단된 경파일 직물	13	0	
5801360000	셔닐직물	13	0	
5801900000	기타 섬유제의 것	13	0	
580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8	0	
5802190000	기타	8	0	
5802200000	기타 섬유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8	0	
5802300000	터후트 직물	8	0	
58030000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8	0	
5804101000	견제의 것	13	0	
5804102000	면제의 것	13	0	
5804103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5804109000	기타	13	0	
580421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5804291000	견제의 것	13	0	
5804292000	면제의 것	13	0	
5804299000	기타	13	0	
5804300000	수제의 레이스	13	0	
58050010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5805001090	기타	8	0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	8	0	
580610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5806102000	면제의 것	8	0	
5806103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806109000	기타	8	0	
5806200000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에 한한다)	8	0	
5806310000	면제의 것	8	0	
5806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8063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5806392000	식물성섬유(면을 제외한다)제의 것	8	0	
5806399000	기타	8	0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볼덱)	8	0	
5807101000	레이블	8	0	
5807109000	기타	8	0	
5807901000	레이블	8	0	
5807909000	기타	8	0	
5808100000	브레이드(원단상에 한한다)	8	0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	8	0	
5808909000	기타	8	0	
5809000000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스를 사용한 직물(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곳에 열거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8	0	
5810100000	자수포(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13	0	
5810910000	면제의 것	13	0	
5810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5810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5811001000	견제의 것	8	0	
58110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811003000	면제의 것	8	0	
5811004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811009000	기타	8	0	
5901100000	서적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겹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8	0	
5901901000	트레이싱포	8	0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8	0	
5901903000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8	0	
590210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제의 것	8	0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8	0	
5902900000	기타	8	0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	0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0	
5903900000	기타	10	0	
5904100000	리놀륨	8	0	
5904900000	기타	8	0	
5905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8	0	
5906100000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	0	
5906910000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8	0	
5906990000	기타	8	0	
5907001000	건성유의 조제품 또는 기름을 도포·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8	0	
5907002000	극장용,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8	0	
5907009000	기타	8	0	
5908001000	심지	8	0	
5908009000	기타	8	0	
5909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5910000000	전동용과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5911101000	세폭직물의 것	8	0	
5911109000	기타	8	0	
5911200000	볼팅클로드(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59113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8	0	
59113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8	0	
5911400000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8	0	
5911900000	기타	8	0	
6001101000	면제의 것	10	0	
60011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6001109000	기타	10	0	
6001210000	면제의 것	10	0	
6001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6001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6001910000	면제의 것	10	0	
6001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6001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10	0	
6002900000	기타	1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0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6003200000	면제의 것	10	0	
6003300000	합성 섬유제의 것	10	0	
60034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0	0	
6003900000	기타	10	0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10	0	
6004900000	기타	10	0	
6005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5220000	염색한 것	10	0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5240000	날염한 것	10	0	
6005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5320000	염색한 것	10	0	
60053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5340000	날염한 것	10	0	
6005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5420000	염색한 것	10	0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5440000	날염한 것	10	0	
6005900000	기타	10	0	
6006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6006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6220000	염색한 것	10	0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6240000	날염한 것	10	0	
6006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6320000	염색한 것	10	0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6340000	날염한 것	10	0	
6006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6420000	염색한 것	10	0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6440000	날염한 것	10	0	
6006900000	기타	10	0	
6101200000	면제의 것	13	0	
6101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1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2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2200000	면제의 것	13	0	
6102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2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2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310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3102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3109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3220000	면제의 것	13	0	
6103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3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3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3320000	면제의 것	13	0	
6103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3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3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3420000	면제의 것	13	0	
6103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103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41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191000	면제의 것	13	0	
6104199000	기타	13	0	
6104220000	면제의 것	13	0	
6104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4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4320000	면제의 것	13	0	
6104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4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4420000	면제의 것	13	0	
6104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44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491000	견제의 것	13	0	
6104499000	기타	13	0	
61045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4520000	면제의 것	13	0	
61045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5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46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4620000	면제의 것	13	0	
61046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6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5100000	면제의 것	13	0	
61052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52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5901000	견제의 것	13	0	
6105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5909000	기타	13	0	
6106100000	면제의 것	13	0	
61062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62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6901000	견제의 것	13	0	
6106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6909000	기타	13	0	
6107110000	면제의 것	13	0	
61071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1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7210000	면제의 것	13	0	
6107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7910000	면제의 것	13	0	
61079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7999000	기타	13	0	
61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11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191000	면제의 것	13	0	
6108199000	기타	13	0	
6108210000	면제의 것	13	0	
6108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8310000	면제의 것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1083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3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8910000	면제의 것	13	0	
61089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9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9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8999000	기타	13	0	
6109101000	티셔츠	13	0	
6109109000	기타	13	0	
6109901010	티셔츠	13	0	
6109901090	기타	13	0	
6109902010	티셔츠	13	0	
6109902090	기타	13	0	
6109903010	티셔츠	13	0	
6109903090	기타	13	0	
6109909010	티셔츠	13	0	
6109909090	기타	13	0	
6110110000	양모의 것	13	0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13	0	
6110190000	기타	13	0	
6110200000	면제의 것	13	0	
6110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0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0901000	견제의 것	13	0	
6110909000	기타	13	0	
6111201000	의류	13	0	
6111202000	부속품	13	0	
6111301000	의류	13	0	
6111302000	부속품	13	0	
6111901000	의류	13	0	
6111902000	부속품	13	0	
6112110000	면제의 것	13	0	
6112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2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122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112209000	기타	13	0	
611231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1241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2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13001000	제5903호의 것	13	0	
6113002000	제5906호의 것	13	0	
6113003000	제5907호의 것	13	0	
6114200000	면제의 것	13	0	
6114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4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4901000	견제의 것	13	0	
6114909000	기타	13	0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	0	
6115210000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13	0	
6115220000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13	0	
6115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153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115309000	기타	13	0	
611594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15950000	면제의 것	13	0	
611596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5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16100000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8	0	
6116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6116921000	작업용 장갑	8	0	
6116929000	기타	8	0	
6116930000	합성섬유제의 것	8	0	
6116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117101000	견제의 것	13	0	
61171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17103000	면제의 것	13	0	
6117104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117109000	기타	13	0	
6117801000	넥타이류	13	0	
6117809000	기타	13	0	
6117900000	부분품	13	0	
6201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1120000	면제의 것	13	0	
62011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1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1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1920000	면제의 것	13	0	
62019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9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2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2120000	면제의 것	13	0	
62021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1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2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2920000	면제의 것	13	0	
62029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9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3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3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3220000	면제의 것	13	0	
6203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32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299000	기타	13	0	
6203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320000	면제의 것	13	0	
6203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3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3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0	
6203429000	기타	13	0	
6203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3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4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204120000	면제의 것	13	0	
62041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191000	견제의 것	13	0	
6204199000	기타	13	0	
62042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4220000	면제의 것	13	0	
6204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291000	견제의 것	13	0	
6204299000	기타	13	0	
6204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4320000	면제의 것	13	0	
6204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391000	견제의 것	13	0	
6204399000	기타	13	0	
6204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4420000	면제의 것	13	0	
6204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44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491000	견제의 것	13	0	
6204499000	기타	13	0	
62045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4520000	면제의 것	13	0	
62045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591000	견제의 것	13	0	
6204599000	기타	13	0	
62046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0	
6204629000	기타	13	0	
62046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691000	견제의 것	13	0	
6204699000	기타	13	0	
6205200000	면제의 것	13	0	
6205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5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5901000	견제의 것	13	0	
6205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5909000	기타	13	0	
6206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13	0	
6206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6300000	면제의 것	13	0	
62064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64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6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7110000	면제의 것	13	0	
620719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07199000	기타	13	0	
6207210000	면제의 것	13	0	
6207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7910000	면제의 것	13	0	
6207991000	견제의 것	13	0	
620799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799301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99302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999000	기타	13	0	
62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20811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191000	견제의 것	13	0	
6208192000	면제의 것	13	0	
6208199000	기타	13	0	
6208210000	면제의 것	13	0	
6208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8910000	면제의 것	13	0	
62089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9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991000	견제의 것	13	0	
620899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8999000	기타	13	0	
6209201000	의류	13	0	
6209202000	부속품	13	0	
6209301000	의류	13	0	
6209302000	부속품	13	0	
62099010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9901090	기타	13	0	
6209902000	부속품	13	0	
6210101000	제5602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201000	제5903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202000	제5906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203000	제5907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301000	제5903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302000	제5906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303000	제5907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401000	제5903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402000	제5906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403000	제5907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501000	제5903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502000	제5906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503000	제5907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111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1119000	기타	13	0	
621112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1129000	기타	13	0	
62112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1209000	기타	13	0	
6211321000	유도, 태권도 및 기타 동양 무술복	13	0	
6211329000	기타	13	0	
62113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3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3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11399000	기타	13	0	
6211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11421000	유도, 태권도 및 기타 동양 무술복	13	0	
6211429000	기타	13	0	
62114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4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12101000	면제의 것	13	0	
62121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2109000	기타	13	0	
6212201000	면제의 것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2122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2209000	기타	13	0	
6212300000	콜세렛트	13	0	
6212900000	기타	13	0	
6213200000	면제의 것	8	0	
6213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214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	0	
6214200000	양모제 또는 섬유모제의 것	8	0	
6214300000	합성섬유제의 것	8	0	
62144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8	0	
6214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215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	0	
6215200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6215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216001000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	8	0	
6216009000	기타	8	0	
6217100000	부속품	13	0	
6217900000	부분품	13	0	
6301100000	전기모포	10	0	
630120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	0	
6301300000	면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	0	
6301400000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	0	
6301900000	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10	0	
6302101000	면제의 것	13	0	
6302109000	기타	13	0	
6302210000	면제의 것	13	0	
6302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2310000	면제의 것	13	0	
6302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2400000	테이블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것에 한한다)	13	0	
6302510000	면제의 것	13	0	
630253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5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2600000	면제의 토틸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 지 기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한다)	13	0	
6302910000	면제의 것	13	0	
630293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3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3191000	면제의 것	13	0	
6303199000	기타	13	0	
6303910000	면제의 것	13	0	
63039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3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3	0	
6304190000	기타	13	0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3	0	
6304920000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304930000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13	0	
6304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13	0	
6305100000	황마 또는 제5303호의 기타 방직용 인피(鞣皮)섬유제의 것	8	0	
6305200000	면제의 것	8	0	
6305320000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한다)	8	0	
6305390000	기타	8	0	
6305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306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6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62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6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6300000	돗	13	0	
6306401000	면제의 것	13	0	
6306409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6910000	면제의 것	13	0	
630699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6999000	기타	13	0	
6307100000	마루닥이포 · 접시닥이포 ·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10	0	
6307200000	구멍재킷 및 구멍벨트	10	0	
6307901000	신발류 끈	10	0	
6307902000	보자기	10	0	
6307903000	드레스 패턴	10	0	
6307909000	기타	10	0	
6308000000	러그 · 태피스트리 ·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3	0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8	0	
6310100000	선별한 것	8	0	
6310900000	기타	8	0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8	0	
6401921000	스키부츠	8	0	
6401929010	고무제의 것	8	0	
6401929090	기타	8	0	
6401991010	고무제의 것	8	0	
6401991090	기타	8	0	
6401999000	기타	8	0	
6402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3	0	
6402190000	기타	13	0	
6402200000	신발(갑피끈을 플렉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13	0	
6402911000	방한화	13	0	
6402912000	정구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19000	기타	13	0	
6402991000	샌달 또는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1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402992000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99000	기타	13	0	
6403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스노보드 부츠	13	0	
6403190000	기타	13	0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13	0	
640340000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13	0	
6403511000	드레스화	13	0	
6403519000	기타	13	0	
6403591000	드레스화	13	0	
6403599000	기타	13	0	
6403911000	드레스화	13	0	
6403912000	등산화	13	0	
6403913000	평상화	13	0	
6403914000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3919000	기타	13	0	
6403991000	드레스화	13	0	
6403992000	등산화	13	0	
6403993000	평상화	13	0	
6403994000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3999000	기타	13	0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4191000	실내화	13	0	
6404199000	기타	13	0	
6404201000	실내화	13	0	
6404209000	기타	13	0	
6405100000	갑피가 가죽 또는 컴퓨터선레더인 것	13	3	
640520000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13	0	
6405900000	기타	13	5	
6406101000	갑피	8	0	
6406102000	부분품	8	0	
6406201000	바깥바닥	8	0	
6406202000	뒷굽	8	0	
6406910000	목재제의 것	8	0	
6406991000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8	0	
6406992000	힐 쿠션	8	0	
6406993000	각반	8	0	
6406994000	레깅	8	0	
6406999000	기타	8	0	
6501000000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맨손(슬릿맨손을 포함한다)	8	0	
6502000000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6505100000	헤어네트	8	0	
6505901010	합성섬유제의 것	8	0	
6505901090	기타 섬유제의 것	8	0	
6505902010	운동모	8	0	
6505902020	베레모	8	0	
6505902090	기타	8	0	
6505909000	기타	8	0	
6506100000	안전모자	8	0	
6506910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8	0	
6506991000	가죽제의 것	8	0	
6506992000	금속제의 것	8	0	
6506999000	기타	8	0	
6507000000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 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8	0	
6601100000	정원용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13	0	
6601910000	대가 절첩식의 것	13	0	
6601991000	지팡이겸용 우산	13	0	
6601992000	양산	13	0	
6601999000	기타	13	0	
6602001000	지팡이	8	0	
6602002000	시트스틱	8	0	
6602003000	채찍·승마용 채찍	8	0	
6602009000	기타	8	0	
660320000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	0	
6603900000	기타	13	0	
67010000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 분·우모와 그 부분·솜털 및 이들의 제품 (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 을 제외한다)	8	0	
6702100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6702901000	직물제의 것	8	0	
6702902000	지제의 것	8	0	
6702909000	기타	8	0	
6703001010	세척·정돈한 것	8	0	
6703001090	기타	8	0	
6703009000	기타	8	0	
6704110000	전체가발	8	0	
6704191000	부분가발	8	0	
6704192000	가수염	8	0	
6704193000	가눈썹	8	0	
6704194000	가속눈썹	8	0	
6704199000	기타	8	0	
6704201000	전체가발	8	0	
6704202000	부분가발	8	0	
6704203000	가수염	8	0	
6704204000	가눈썹	8	0	
6704205000	가속눈썹	8	0	
6704209000	기타	8	0	
6704900000	기타 재료제의 것	8	0	
6801000000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것에 한하 며, 슬레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80210000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세편 및 분	8	3	
6802211000	대리석	8	5	
6802212000	트래버틴	8	0	
6802213000	엘러바스터	8	0	
6802230000	화강암	8	5	
6802291000	기타 석회질 암석	8	0	
6802299000	기타	8	5	
6802911000	대리석	8	5	
6802912000	트래버틴	8	0	
6802913000	엘러바스터	8	0	
6802920000	기타 석회질 암석	8	0	
6802930000	화강암	8	5	
6802990000	기타석	8	5	
6803001000	벼루	8	5	
6803009000	기타	8	5	
680410000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그라인딩용 및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8	0	
6804210000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8	0	
6804220000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8	3	
6804230000	천연석제의 것	8	0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8	0	
6805100000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8	0	
6805200000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8	0	
6805300000	기타재료를 기제로 한 것	8	0	
6806101000	슬랙울	8	0	
6806102000	록울	8	3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8	0	
6806109000	기타	8	0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8	5	
6806202000	팽창점토	8	0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8	0	
6806209000	기타	8	0	
6806901000	내화피복재	8	0	
6806909000	기타	8	3	
6807100000	롤상의 것	8	0	
6807900000	기타	8	0	
6808000000	패널·보드·타일·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플라스터 또는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한한다)	8	0	
6809110000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0	
6809190000	기타	8	0	
6809900000	기타 제품	8	0	
6810111000	블록	8	0	
6810112000	벽돌	8	0	
6810191000	타일	8	0	
6810192000	판석	8	0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8	0	
681019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에 한한다)	8	0	
6810991000	빔 및 거더	8	0	
6810992000	파일	8	0	
6810993000	전주	8	0	
6810994000	철도침목	8	0	
6810995000	관	8	0	
6810999000	기타	8	0	
6811401010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8	0	
6811401090	기타	8	0	
6811402010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8	0	
6811402090	기타	8	0	
6811403000	관 및 관의 연결구류	8	0	
6811409010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8	0	
6811409090	기타	8	0	
6811810000	파형의 쉬트	8	0	
6811820000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8	0	
6811830000	관 및 관의 연결구류	8	0	
6811890000	기타 제품	8	0	
6812801000	의류·의류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8	0	
6812802000	지·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8	0	
6812803000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8	0	
6812809000	기타	8	0	
6812910000	의류·의류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8	0	
6812920000	지·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8	0	
6812930000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8	0	
6812990000	기타	8	0	
6813201010	자동차용	8	0	
6813201090	기타	8	0	
6813202010	자동차용	8	0	
6813202090	기타	8	0	
6813209010	자동차용	8	3	
6813209090	기타	8	3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8	0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8	0	
6813899000	기타	8	3	
6814100000	판·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6814900000	기타	8	0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8	0	
6815102000	탄소섬유	8	0	
6815109000	기타	8	0	
6815200000	이탄제품	8	0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	0	
6815990000	기타	8	5	
6901001000	벽돌	8	0	
6901002000	블록	8	0	
6901003000	타일	8	0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8	0	
690100909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902100000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및 산화크로뮴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5	
6902200000	알루미나·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5	
6902901000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을 기제로 한 것	8	0	
6902909000	기타	8	5	
6903101000	레토트	8	0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노용의 것	3	0	
6903102090	기타	8	0	
6903103000	반응그릇	8	0	
6903104000	머플	8	0	
6903105000	노즐	8	0	
6903106000	플러그	8	0	
6903107000	관	8	0	
6903108000	봉	8	0	
6903109000	기타	8	3	
6903201000	레토트	8	0	
6903202000	도가니	8	0	
6903203000	반응그릇	8	0	
6903204000	머플	8	0	
6903205000	노즐	8	0	
6903206000	플러그	8	0	
6903207000	관	8	0	
6903208000	봉	8	0	
6903209000	기타	8	0	
6903901000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을 기제로 한 것	8	0	
6903909010	레토트	8	0	
6903909020	도가니	8	0	
6903909030	반응그릇	8	0	
6903909040	머플	8	0	
6903909050	노즐	8	0	
6903909060	플러그	8	0	
6903909070	관	8	0	
6903909080	봉	8	0	
6903909090	기타	8	5	
6904100000	건축용 벽돌	8	0	
6904900000	기타	8	0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8	0	
6905901000	굴뚝통·굴뚝갓 및 굴뚝용 내장재	8	0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8	0	
6905909000	기타	8	0	
6906001000	관·도관 및 흡통	8	0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8	0	
69071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7109000	기타	8	0	
69079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7909000	기타	8	0	
69081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8109000	기타	8	3	
6908901000	자기제의 것	8	5	
6908909000	기타	8	5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	0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0	
6909190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909900000	기타	8	0	
6910101000	세면대	8	0	
6910102000	목욕통	8	0	
6910103000	수세식변기통	8	0	
6910104000	소변기	8	0	
6910109000	기타	8	3	
6910900000	기타	8	3	
6911101000	커피 세트 또는 티세트	8	5	
6911102000	공기, 대접 및 접시	8	3	
6911109000	기타	8	0	
6911901000	가정용품	8	0	
6911902000	화장용품	8	0	
6911909000	기타	8	0	
6912001010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8	3	
6912001020	공기, 대접 및 접시	8	3	
6912001090	기타	8	5	
6912002000	가정용품	8	0	
6912003000	화장용품	8	0	
6912009000	기타	8	0	
6913101000	상·소상 및 흉상	8	0	
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8	0	
6913109090	기타	8	0	
6913901000	상·소상 및 흉상	8	0	
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8	0	
6913909090	기타	8	3	
6914101000	화분	8	0	
6914109000	기타	8	0	
6914901000	화분	8	0	
6914909000	기타	8	0	
7001001000	과	5	0	
7001002000	웨이스트와 스크랩·파유리	3	0	
7002100000	구	8	0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 용되는 것	3	0	
7002209000	기타	8	0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 용되는 것	3	3	
7002319000	기타	8	3	
700232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제의 것	8	0	
7002390000	기타	8	0	
700312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00319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200000	망입 스위트유리	8	0	
7003300000	프로파일	8	0	
70042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49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21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00521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0	
7005291020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	0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0	
7005291090	기타	8	0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0	
7005292020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	0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0	
7005292090	기타	8	0	
700529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9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9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9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9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300000	망입유리	8	0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5	
7006002000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	5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5	
7006009000	기타	8	5	
7007110000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8	0	
7007190000	기타	8	0	
7007210000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8	0	
7007290000	기타	8	0	
70080000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8	0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8	0	
7009910000	틀이 붙지 아니한 것	8	0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8	0	
7010100000	애플	8	0	
7010200000	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	8	0	
7010900000	기타	8	0	
7011100000	전등용의 것	8	0	
7011201000	천연색용의 것	8	0	
7011209000	기타	8	0	
7011900000	기타	8	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8	0	
701322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280000	기타	8	5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01333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370000	기타	8	5	
701341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42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것	8	0	
7013490000	기타	8	5	
701391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990000	기타	8	0	
7014001000	실드빔 램프의 것	8	0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8	0	
7014009020	유리제의 광학용품	8	5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	0	
7015901000	선글라스용의 것	8	0	
7015902000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015909000	기타	8	0	
7016100000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8	0	
7016901000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	0	
7016909010	레드라이트	8	0	
7016909020	스테인그라스	8	0	
7016909090	기타	8	0	
7017100000	석영유리제의 것	8	0	
701720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제의 것	8	0	
7017900000	기타	8	0	
7018101000	비드	8	0	
7018102000	모조진주	8	0	
7018103000	모조귀석과 반귀석	8	0	
7018104000	모조산호	8	0	
7018109000	기타	8	0	
7018200000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8	0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을 제외한다)	8	0	
7018909000	기타	8	0	
7019110000	단연사(길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7019120000	로빙	8	0	
7019190000	기타	8	3	
7019310000	매트	8	0	
7019320000	얇은 쉬트(보일)	8	0	
7019390000	기타	8	0	
7019400000	로빙직물	8	0	
701951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3	
70195200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에 한한다)	8	0	
7019590000	기타	8	3	
7019901000	글라스울	8	3	
701990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으로 확산 및 산화로 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리액터 튜브와 홀더	0	0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노용의 석영도가니	3	0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 용되는 것	3	0	
7020001019	기타	8	0	
7020001090	기타	8	0	
7020009000	기타	8	0	
7101101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8	0	
7101102000	가공한 것	8	0	
71012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8	0	
7101220000	가공한 것	8	0	
7102100000	선별하지 아니한 것	1	0	
71022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 한다)	1	0	
7102290000	기타	5	0	
71023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 한다)	1	0	
7102390000	기타	5	0	
710310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1	0	
7103911000	공업용의 것	5	0	
7103919010	루비	5	0	
7103919020	사파이어	5	0	
7103919030	에메랄드	5	0	
7103991000	공업용의 것	5	0	
7103999010	오팔	5	0	
7103999020	비취	5	0	
7103999030	옥수	5	0	
7103999040	수정	5	0	
7103999090	기타	5	0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5	0	
7104201000	다이아몬드	5	0	
7104209000	기타	5	0	
7104901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1020	인조수정	5	0	
7104901090	기타	5	0	
7104909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9090	기타	5	0	
7105101000	천연의 것	5	0	
7105102000	합성의 것	5	0	
7105901000	석류석의 것	5	0	
7105909000	기타	5	0	
7106100000	분	3	0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 상인 것	3	0	
7106919000	기타	3	0	
7106921000	봉 및 형재	3	0	
7106922000	판·쉬트 및 스트립	3	0	
7106923000	선	3	0	
7106929000	기타	3	0	
7107001000	봉 및 형재	3	0	
7107002000	판·쉬트 및 스트립	3	0	
7107003000	선	3	0	
7107004000	관 및 중공봉	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107009000	기타	3	0	
7108110000	분	3	0	
7108121000	럼프 · 빌레트 및 입	3	0	
7108129000	기타	3	0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7108131090	기타	3	0	
7108139010	봉 및 형재	3	0	
7108139020	판 · 쉬트 및 스트립	3	0	
7108139090	기타	3	0	
7108200000	화폐용의 것	0	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0	
71101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190000	기타	3	0	
71102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290000	기타	3	0	
71103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390000	기타	3	0	
71104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490000	기타	3	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 · 은 또는 금(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0	
711230000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2	0	
711291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19000	기타	3	0	
711292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29000	기타	3	0	
711299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 페어링과 스크랩의 것	6.5	0	
7112999000	기타	3	0	
7113110000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5	
7113191000	백금제의 것	8	3	
7113192000	금제의 것	8	5	
7113199000	기타	8	5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8	0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8	3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8	3	
7113209000	기타	8	0	
7114111000	식탁용의 것	8	0	
7114112000	화장실용의 것	8	0	
711411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	0	
7114114000	깍연용의 것	8	0	
7114119000	기타	8	0	
7114191000	식탁용의 것	8	0	
7114192000	화장실용의 것	8	0	
711419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	0	
7114194000	깍연용의 것	8	0	
7114199000	기타	8	0	
7114201000	식탁용의 것	8	0	
7114202000	화장실용의 것	8	0	
711420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	0	
7114204000	깍연용의 것	8	0	
711420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115100000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드 또는 그릴 상의 것에 한한다)	8	0	
7115901010	백금도가니	8	0	
7115901090	기타	8	0	
7115909010	금제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20	은제의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90	기타	8	0	
7116101000	천연진주의 것	8	0	
7116102000	양식진주의 것	8	0	
7116201000	공업용의 것	8	0	
7116209010	신변장식용의 것	8	0	
7116209090	기타	8	0	
7117110000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8	0	
7117191000	목걸이	8	0	
7117192000	팔찌	8	0	
7117193000	귀걸이	8	0	
7117194000	브로우치	8	0	
7117195000	반지	8	0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	0	
7117199000	기타	8	0	
7117900000	기타	8	0	
7118100000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7118901000	금화	0	0	
7118902000	은화	0	0	
7118909000	기타	0	0	
7201101000	주물용의 것	0	0	
7201102000	제강용의 것	0	0	
7201109000	기타	0	0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0	0	
7201501000	합금선철	2	0	
7201502000	스피그라이즌	2	0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5	0	
7202190000	기타	5	0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3	0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3	0	
7202299000	기타	3	0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	5	0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3	0	
7202490000	기타	3	0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	3	0	
7202600000	페로니켈	3	0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움	3	0	
720280000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3	0	
7202910000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3	0	
7202920000	페로바나듐	3	0	
7202930000	페로니오븀	3	0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0	
7202999000	기타	3	0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7203900000	기타	1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204290000	기타	0	0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204410000	선삭·셰이빙·칩·밀링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04490000	기타	0	0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0	0	
7205101000	쇼트	5	0	
7205102000	그리트	5	0	
7205109000	기타	5	0	
7205210000	합금강의 것	5	0	
7205290000	기타	5	0	
7206100000	잉곳	0	0	
7206900000	기타	0	0	
7207111000	블룸	0	0	
7207112000	빌레트	0	0	
7207121000	슬래브	0	0	
7207122000	슈트바	0	0	
7207190000	기타	0	0	
7207201000	블룸	0	0	
7207202000	빌레트	0	0	
7207203000	슬래브	0	0	
7207204000	슈트바	0	0	
7207209000	기타	0	0	
7208101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08109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59000	기타	0	0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69000	기타	0	0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79000	기타	0	0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69000	기타	0	0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79000	기타	0	0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89000	기타	0	0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99000	기타	0	0	
720840000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0	0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19000	기타	0	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29000	기타	0	0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39000	기타	0	0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49000	기타	0	0	
7208900000	기타	0	0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59000	기타	0	0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209169000	기타	0	0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79000	기타	0	0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89000	기타	0	0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59000	기타	0	0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69000	기타	0	0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79000	기타	0	0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89000	기타	0	0	
7209900000	기타	0	0	
721011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012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0200000	납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0	0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309000	기타	0	0	
7210410000	파형의 것	0	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1090	기타	0	0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9090	기타	0	0	
7210500000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690000	기타	0	0	
721070000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210901000	니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902000	동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909000	기타	0	0	
7211130000	4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하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0	0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49000	기타	0	0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99000	기타	0	0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39000	기타	0	0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99000	기타	0	0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909000	기타	0	0	
7212101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2102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209000	기타	0	0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1090	기타	0	0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212309090	기타	0	0	
721240000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212501000	니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2502000	동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2509000	기타	0	0	
7212600000	클래드한 것	0	0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	0	0	
7213200000	기타(괘삭강의 것에 한한다)	0	0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	0	
7213911090	기타	0	0	
7213919000	기타	0	0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	0	
7213991090	기타	0	0	
7213999000	기타	0	0	
7214100000	단조한 것	0	0	
7214201000	철근	0	0	
7214209000	기타	0	0	
7214300000	기타(괘삭강의 것에 한한다)	0	0	
7214910000	황단면이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것을 제외한다)	0	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0	0	
7214999000	기타	0	0	
7215100000	괘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15500000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15900000	기타	0	0	
7216101000	유형강	0	0	
7216102000	아이형강	0	0	
7216103000	에치형강	0	0	
7216210000	엘형강	0	0	
7216220000	티형강	0	0	
7216310000	유형강	0	0	
7216320000	아이형강	0	0	
7216333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6334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216335000	높이가 6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216401000	엘형강	0	0	
7216402000	티형강	0	0	
7216500000	기타 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0	
7216690000	기타	0	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0	0	
7216990000	기타	0	0	
7217100000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7200000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7301000	동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217309000	기타	0	0	
7217900000	기타	0	0	
7218101000	잉곳	0	0	
7218109000	기타	0	0	
7218911000	슬래브	0	0	
7218912000	슈트바	0	0	
7218919000	기타	0	0	
7218991000	블룸	0	0	
7218992000	빌레트	0	0	
7218999000	기타	0	0	
721911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119000	기타	0	0	
721912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129000	기타	0	0	
721913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139000	기타	0	0	
721914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149000	기타	0	0	
721921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219000	기타	0	0	
721922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229000	기타	0	0	
721923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239000	기타	0	0	
721924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249000	기타	0	0	
7219310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932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329000	기타	0	0	
721933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339000	기타	0	0	
721934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349000	기타	0	0	
721935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9359000	기타	0	0	
7219900000	기타	0	0	
722011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20119000	기타	0	0	
722012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20129000	기타	0	0	
722020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220209000	기타	0	0	
7220901000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20909000	기타	0	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0	0	
7222110000	황단면이 원형인 것	0	0	
7222190000	기타	0	0	
7222200000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2300000	기타 봉	0	0	
7222400000	형강	0	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	0	0	
7224101000	잉곳	0	0	
7224109000	기타	0	0	
7224901000	블룸	0	0	
7224902000	빌레트	0	0	
7224903000	슬래브	0	0	
7224904000	슈트바	0	0	
7224909000	기타	0	0	
7225110000	방향성의 것	0	0	
7225190000	기타	0	0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309090	기타	0	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409090	기타	0	0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509000	기타	0	0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19090	기타	0	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19	기타	0	0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99	기타	0	0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99000	기타	0	0	
7226110000	방향성의 것	0	0	
7226190000	기타	0	0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6910000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0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0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미크론 미만인 것에 한한다)	0	0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전해 도포한 것	0	0	
7226993000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26999000	기타	0	0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	0	
7227909000	기타	0	0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0	0	
7228300000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840000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8500000	기타의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8600000	기타의 봉	0	0	
7228700000	형강	0	0	
7228800000	중공드릴봉	0	0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1090	기타	0	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2090	기타	0	0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9090	기타	0	0	
7301101000	유형	0	0	
7301109000	기타	0	0	
7301201000	유형강	0	0	
7301202000	에치형강	0	0	
7301203000	아이형강	0	0	
7301209000	기타	0	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1090	기타	0	0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2090	기타	0	0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3090	기타	0	0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4090	기타	0	0	
7302300000	첨단구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8	0	
7302400000	계목판과 저판	0	0	
7302900000	기타	0	0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제의 것	8	0	
7303001090	기타	8	0	
7303002000	중공 프로파일	8	0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	0	
7304190000	기타	0	0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0	0	
7304230000	기타 드릴파이프	0	0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4290000	기타	0	0	
73043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390000	기타	0	0	
73044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490000	기타	0	0	
73045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590000	기타	0	0	
7304900000	기타	0	0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에 한한다)	0	0	
7305190000	기타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30520000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0	0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0	0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 것	0	0	
7305319000	기타	0	0	
7305390000	기타	0	0	
7305900000	기타	0	0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6190000	기타	0	0	
7306211000	케이싱	0	0	
7306212000	튜브	0	0	
7306291000	케이싱	0	0	
7306292000	튜브	0	0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 또는 클래드한 것	0	0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1090	기타	0	0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 또는 클래드한 것	0	0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2090	기타	0	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11090	기타	0	0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	0	
7306613000	기타 합금강제의 것	0	0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91090	기타	0	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	0	
7306693000	기타 합금강제의 것	0	0	
7306901000	이중권 강관	0	0	
7306909000	기타	0	0	
7307110000	비가단주철제의 것	8	0	
7307190000	기타	8	0	
7307210000	플랜지	8	0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7229000	기타	8	0	
7307230000	바트용접용 연결구	8	0	
7307290000	기타	8	0	
7307910000	플랜지	8	0	
7307921000	나선가공한 슬리브(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7929000	기타	8	0	
7307930000	바트용접용 연결구	8	0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	3	
7307999000	기타	8	3	
7308100000	다리와 교량	0	0	
7308200000	탑과 격자주	8	0	
7308300000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308400000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광도받침에 사용 되는 기구	8	0	
7308901000	수문	0	0	
7308909000	기타	0	0	
730900000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 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8	0	
7310210000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통	8	0	
7310290000	기타	8	0	
731100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2000	용적이 3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7312101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1019	기타	0	0	
7312101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1099	기타	0	0	
7312102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2019	기타	0	0	
7312102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2099	기타	0	0	
7312900000	기타	0	0	
7313001000	유자선	0	0	
7313009000	기타	0	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14140000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14190000	기타	0	0	
731420000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0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314390000	기타	0	0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314490000	기타	0	0	
7314500000	익스팬디드메탈	0	0	
7315110000	롤러체인	8	0	
7315120000	기타체인	8	0	
7315190000	부분품	8	0	
7315200000	스키드체인	8	0	
7315810000	스터드링크	8	0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에 한한다)	8	0	
7315890000	기타	8	0	
7315900000	기타 부분품	8	0	
7316001000	닳	8	0	
7316002000	부분품	8	0	
7317001011	도금·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317001019	기타	0	0	
7317001021	도금·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29	기타	0	0	
7317002000	압정	0	0	
7317003000	제도용 및 사무용 핀	0	0	
7317004000	파형 못	0	0	
7317005000	스테이플	0	0	
7317009000	기타	0	0	
7318110000	코치스크루	8	0	
7318120000	기타 목재용 스크루	8	0	
7318130000	스크루혹과 스크루링	8	0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	8	0	
7318151000	머신스크루	8	0	
7318152000	볼 트	8	0	
7318153000	볼트와 너트(세트로 된 것에 한한다)	8	0	
7318159000	기타	8	0	
7318160000	너트	8	0	
7318190000	기타	8	0	
7318210000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8	0	
7318220000	기타 와셔	8	0	
7318230000	리벳	8	0	
7318240000	코터와 코터핀	8	0	
7318290000	기타	8	0	
7319200000	안전핀	8	0	
7319300000	기타 핀	8	0	
7319901010	수봉침	8	0	
7319901020	수편침	8	0	
7319901090	기타	8	0	
7319909000	기타	8	0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	0	
7320102000	기관차 및 철도 차량용 판상스프링	8	0	
7320109000	기타	8	0	
7320201000	자동차용의 것	8	3	
7320202000	충격 흡수용의 것	8	0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의 것	8	0	
7320204000	가구용의 것	8	0	
7320209000	기타	8	0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8	0	
7320909000	기타 스프링	8	0	
73211100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8	0	
7321120000	액체연료용의 것	8	0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8100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8	0	
7321820000	액체연료용의 것	8	0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900000	부분품	8	0	
7322111000	방열기	8	0	
7322112000	부분품	8	0	
7322191000	방열기	8	0	
7322192000	부분품	8	0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8	0	
7322909010	공기가열기	8	0	
7322909020	온풍배분기	8	0	
7322909030	부분품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32310000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323910000	주철제의 것으로 법령제가 아닌 것	8	0	
7323920000	주철제의 것으로 법령제의 것	8	3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8	0	
7323940000	철강(주철을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령제의 것	8	3	
7323990000	기타	8	0	
7324101000	설거지	8	0	
7324102000	세면대	8	0	
7324210000	주철제의 것(법령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8	0	
7324299000	기타	8	0	
7324901000	화장용세트	8	0	
7324908000	기타	8	0	
7324909000	부분품	8	0	
7325100000	비가단주철제의 것	8	0	
73259100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5991000	주철제의 것	8	0	
7325992000	주강제의 것	8	0	
7325993000	합금강제의 것	8	0	
7325999000	기타	8	0	
73261100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6190000	기타	8	0	
7326200000	철강선제의 제품	8	0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	8	0	
7326909000	기타	8	0	
7401001000	동의 매트	0	0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	0	
7402001000	정제하지 아니한 동	0	0	
7402002000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0	0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0	
7403120000	와이어바	5	0	
7403130000	빌레트	5	0	
7403191000	슬래브	5	0	
7403192000	잉곳	5	0	
7403199000	기타	5	0	
7403210000	동-아연의 합금(황동)	5	0	
7403220000	동-주석의 합금(청동)	5	0	
7403291010	동-니켈의 합금(백동)	5	0	
7403291020	동-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0	
7403299000	기타	5	0	
74040000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405000000	동의 마스터알로이	5	0	
7406100000	비총상조직의 분	8	5	
7406201000	총상조직의 분	8	5	
7406202000	플레이크	8	0	
7407100000	정제한 동의 것	8	0	
74072100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8	0	
7407291000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8	0	
7407292010	동-니켈의 합금의 것(백동)	8	0	
7407292020	동-니켈-아연의 합금의 것(양백)	8	0	
740729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408110000	황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5	
7408190000	기타	8	3	
74082100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8	0	
740822100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8	5	
7408222000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8	3	
7408291000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8	0	
7408299000	기타	8	0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5	
7409119000	기타	8	5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5	
7409199000	기타	8	3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219000	기타	8	0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5	
7409299000	기타	8	7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319000	기타	8	5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399000	기타	8	0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401090	기타	8	5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402090	기타	8	0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5	
7409909000	기타	8	0	
7410110000	정제한 동의 것	8	5	
7410120000	동합금의 것	8	5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형상의 것	8	0	
7410219000	기타	8	0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형상의 것	8	0	
7410229000	기타	8	0	
7411100000	정제한 동제의 것	8	3	
7411210000	동-아연 합금제의 것(황동)	8	0	
7411221000	동-니켈 합금제의 것(백동)	8	5	
7411222000	동-니켈-아연 합금제의 것(양백)	8	3	
7411291000	동-주석 합금제의 것(청동)	8	0	
7411299000	기타	8	0	
7412100000	정제한 동제의 것	3	0	
7412200000	동 합금제의 것	3	0	
7413000000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3	0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피복 또는 도포한 것	8	0	
7415109000	기타	8	0	
7415210000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8	0	
7415290000	기타	8	0	
7415330000	스크루, 볼트와 너트	8	0	
7415390000	기타	8	0	
7418110000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418191000	식탁용품·주방용품	8	0	
741819201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5	0	
7418192090	기타	8	0	
741819901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의 것	5	0	
741819909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418201000	위생용품	8	0	
7418202000	부분품	8	0	
7419101000	체인	8	0	
7419102000	부분품	8	0	
7419910000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419991010	클로드	8	0	
7419991090	기타	8	0	
7419992000	동제의 스프링	8	0	
7419999000	기타	8	0	
7501100000	니켈의 매트	0	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0	
7501201090	기타	0	0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0	
7501209090	기타	0	0	
7502101000	음극	3	0	
7502109000	기타	3	0	
7502200000	니켈 합금	3	0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504001000	분	5	0	
7504002000	플레이크	5	0	
75051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	0	
7505120000	니켈 합금의 것	5	0	
75052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	0	
7505220000	니켈 합금의 것	5	0	
7506101000	판·쉬트 및 스트립	5	0	
7506102000	박	5	0	
7506201000	판·쉬트 및 스트립	5	0	
7506202000	박	5	0	
75071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것	8	0	
7507120000	니켈 합금제의 것	8	0	
7507200000	관연결구류	8	0	
7508100000	니켈선제의 클로드·그릴 및 망	8	0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508909000	기타	8	0	
7601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1	0	
7601201000	캐스팅 엘로이	1	0	
7601202000	빌레트	3	0	
7601209000	기타	1	0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603100000	비충상조직의 분	8	5	
7603201000	분	8	3	
7603202000	플레이크	8	0	
7604101000	봉	8	3	
7604102010	중공프로파일	8	0	
7604102090	기타	8	3	
7604210000	중공프로파일	8	0	
7604291000	봉	8	3	
7604299000	기타 프로파일	8	0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605190000	기타	8	0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605290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3	
7606119000	기타	8	3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8	3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6919000	기타	8	0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8	3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7119000	기타	8	0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7199000	기타	8	0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7209000	기타	8	0	
7608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제의 것	8	0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	8	3	
76090000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8	3	
7610100000	문 · 창 및 이들의 통과 문지방	8	0	
7610901000	구조물	8	0	
7610908000	기타	8	3	
7610909000	부분품	8	5	
76110000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 탱크 ·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	0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8	0	
7612909010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	8	0	
7612909020	용적이 1리터 이상 20리터 미만인 것	8	3	
7612909030	용적이 20리터 이상인 것	8	0	
7613001000	압축가스용의 것	8	0	
7613002000	액화가스용의 것	8	0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	0	
7614900000	기타	8	0	
7615110000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61519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5	3	
7615192000	식탁용품 · 주방용품	8	0	
7615193000	기타 가정용 물품	8	0	
7615199000	부분품	8	0	
7615201000	위생용품	8	0	
7615202000	부분품	8	0	
7616100000	못 · 압정 ·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 · 스크루 · 볼트 · 너트 · 스크루홀 · 리벳 · 코터 · 코터핀 ·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616910000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 · 그릴 · 망 및 울타리	8	0	
7616991000	보빈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	8	0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	8	0	
7616999090	기타	8	0	
7801101000	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7801109000	기타	3	0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3	0	
7801991000	정제하지 아니한 것	1	0	
7801992010	연-주석 합금	3	0	
7801992090	기타	3	0	
78020000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804111000	슈트 및 스트립	8	0	
7804112000	박	8	0	
7804190000	기타	8	0	
7804201000	분	8	0	
7804202000	플레이크	8	0	
7806001000	연제용기	8	0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806003010	봉	8	0	
7806003020	프로파일	8	0	
7806003030	선	8	0	
7806004010	관	8	0	
7806004020	관연결구류	8	0	
7806009000	기타	8	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3	0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3	0	
7901202000	아연-동 합금	3	0	
7901209000	기타	3	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903100000	아연더스트	8	0	
7903901000	분	8	0	
7903902000	플레이크	8	0	
7904001000	봉	8	0	
7904002000	프로파일	8	0	
7904003000	선	8	0	
7905001000	판·슈트 및 스트립	8	0	
7905002000	박	8	0	
7907001000	아연제의 홈통·지붕덮개·채광 창틀 및 기타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8	0	
7907002010	관	8	0	
7907002020	관연결구류	8	0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907009090	기타	8	0	
8001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3	0	
8001200000	주석 합금	3	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003001010	합금하지 아니한 것	8	0	
8003001090	기타	8	0	
8003002010	합금하지 아니한 것	8	0	
8003002090	기타	8	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8007002000	판·슈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007003010	박	8	0	
8007003021	분	8	0	
8007003022	플레이크	8	0	
8007004000	관과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	8	0	
8007009000	기타	8	0	
8101100000	분	3	0	
8101940000	과(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	0	
8101961000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1969000	기타	8	0	
810197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1991010	붕	8	0	
8101991020	프로파일	8	0	
8101991030	판·쉬트 및 스트립	8	0	
8101991040	박	8	0	
8101999000	기타	8	0	
8102100000	분	3	0	
8102940000	과(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	0	
8102951000	붕	8	0	
8102952000	프로파일	8	0	
8102953000	판·쉬트 및 스트립	8	0	
8102954000	박	8	0	
8102961000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2969000	기타	8	0	
810297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2990000	기타	8	0	
8103201000	과	3	0	
8103202000	분	3	0	
8103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3900000	기타	8	0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3	0	
8104190000	기타	3	0	
81042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4301000	줄밥·연삭설 및 입	8	0	
8104302000	분	8	0	
8104901000	붕	8	0	
8104909000	기타	8	0	
8105201000	과	3	0	
8105202000	코발트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 생산물	3	0	
8105203000	분	3	0	
8105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5900000	기타	3	0	
8106001010	과	3	0	
810600102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6001030	분	3	0	
8106009000	기타	3	0	
8107201000	과	3	0	
8107202000	분	3	0	
8107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7900000	기타	3	0	
8108201000	과	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108202000	분	3	0	
8108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8901000	판과 스트립	8	0	
8108902000	관	8	0	
8108909000	기타	8	0	
8109201000	과	3	0	
8109202000	분	3	0	
8109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9901010	관	0	0	
8109901020	판, 스위트 및 스트립	0	0	
8109901030	봉	0	0	
8109901090	기타	0	0	
8109909000	기타	3	0	
8110100000	안티모니의 과, 분	3	0	
81102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0900000	기타	3	0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3	0	
8112120000	과, 분	3	0	
811213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2190000	기타	3	0	
8112210000	과, 분	3	0	
811222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2290000	기타	3	0	
8112510000	과, 분	3	0	
811252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2590000	기타	3	0	
8112921000	게르마늄	3	0	
8112922000	바나듐	3	0	
8112929000	기타	3	0	
8112991000	게르마늄	3	0	
8112992000	바나듐	3	0	
8112999000	기타	3	0	
81130000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3	0	
8201100000	가래 및 삽	8	0	
8201200000	포크	8	0	
8201300000	곡괭이 · 픽스 · 괭이와 쇠스랑	8	0	
8201400000	도끼 · 빌축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0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 (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8	0	
8201600000	울타리전단기 · 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	0	
8201901000	낫	8	0	
8201902000	초절기	8	0	
8201903000	제재용 쟁기	8	0	
8201909000	기타	8	0	
8202101000	목재용의 것	8	0	
8202102000	금속용의 것	8	0	
8202109000	기타	8	0	
8202200000	띠톱의 날	8	0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의 것	8	3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	8	0	
8202392000	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제의 것	8	0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8	0	
8202399000	부분품	8	0	
8202400000	전기톱의 날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202911000	쇠톱의 날	8	0	
8202919000	기타	8	0	
8202990000	기타	8	0	
8203101000	톱날용의 것	8	0	
8203109000	기타	8	0	
820320100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8	0	
8203202000	집게	8	0	
8203203000	핀셋	8	0	
8203204000	못뽑기	8	0	
8203209000	기타	8	0	
8203300000	금속 절단용의 가위와 유사한 공구	8	0	
8203401000	파이프커터	8	0	
8203402000	볼트크로퍼 및 클리퍼	8	0	
8203403000	천공펀치	8	0	
8203409000	기타	8	3	
8204110000	조정할 수 없는 것	8	0	
8204120000	조정할 수 있는 것	8	0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8205101000	드릴링용의 것	8	0	
8205102000	드레딩용의 것	8	0	
8205103000	태핑용의 것	8	0	
8205109000	기타	8	0	
8205200000	해머와 슬레즈해머	8	0	
8205300000	목재가공용의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	0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	8	0	
8205510000	가정용공구	8	0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8	0	
8205592000	땀인두	8	0	
8205593000	그리스 건	8	0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8	0	
8205596000	미장 및 도장용 공구	8	0	
8205597000	시계제조용 공구	8	0	
8205599000	기타	8	3	
8205600000	블로램프	8	0	
8205701000	바이스	8	0	
8205702000	클램프	8	0	
8205709000	기타	8	0	
8205801000	앵빌	8	0	
8205802000	가반식단야로	8	0	
8205803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작동식 그라인딩휠	8	0	
8205809000	기타	8	0	
8205900000	앞의 각 소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 물품의 세트	8	0	
8206000000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8	0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8	0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8	0	
8207199000	부분품	8	0	
8207201000	인발용의 것	8	0	
8207202000	압출용의 것	8	0	
8207301000	프레싱용의 것	8	0	
8207302000	스탬핑용의 것	8	0	
8207303000	펀칭용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207309000	기타	8	0	
8207401000	태핑용의 것	8	0	
8207402000	드레딩용의 것	8	0	
8207409000	기타	8	0	
8207501010	고속도강제의 것	8	0	
8207501090	기타	8	5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	8	0	
8207509000	기타	8	5	
8207601000	리머	8	0	
8207602000	랩	8	0	
8207603000	브로치	8	0	
8207609000	기타	8	3	
8207701000	기어커터	8	0	
8207702000	밀링커터	8	0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	8	0	
8207704000	로타리파일	8	0	
8207709000	기타	8	0	
8207801000	선반용 공구	8	0	
8207809000	기타	8	0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8	0	
8207909000	기타	8	3	
8208100000	금속 가공용의 것	8	0	
8208200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208300000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8	0	
8208400000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8	0	
8208900000	기타	8	0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으로 감마코팅 처리된 것	8	5	
8209001040	서메트제의 것	8	0	
8209001090	기타	8	0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	8	3	
8209002040	서메트제의 것	8	0	
8209002090	기타	8	3	
8210001000	분쇄기 및 마쇄기	8	0	
8210002000	추출기 및 압착기	8	0	
8210003000	비터 및 믹서	8	0	
8210004000	세절기 및 커터	8	0	
8210005000	오프너·코르크 및 실러	8	0	
8210008000	기타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8	0	
8210009000	부분품	8	0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	0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	0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8	0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	0	
8211940000	칼날	8	0	
8211950000	비(卑)금속제의 손잡이	8	0	
8212100000	면도기	8	0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브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8	3	
8212900000	기타의 부분품	8	0	
8213001000	가정용 또는 사무용 가위	8	0	
8213002010	재단용의 것	8	0	
8213002020	이발용의 것	8	0	
8213002090	기타	8	0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8	0	
8213004000	가위날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213009000	기타	8	0	
8214101000	연필깎기	8	0	
8214109000	기타	8	0	
8214200000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 줄을 포함한다)	8	0	
8214901000	조발기	8	0	
8214902000	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와 초퍼 및 민성 용 칼	8	0	
8214909000	기타	8	0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8	0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기타의 세트	8	0	
8215911000	스푼	8	0	
8215912000	포크	8	0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	8	0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15000	각종 집게	8	0	
8215919000	기타	8	0	
8215991000	스푼	8	0	
8215992000	포크	8	0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	8	0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95000	각종 집게	8	0	
8215999000	기타	8	0	
8301100000	자물쇠	8	0	
8301200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8	0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8	0	
8301401000	도아 록	8	0	
8301409000	기타	8	0	
8301500000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	0	
8301600000	부분품	8	0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	0	
8302100000	경첩	8	0	
8302200000	카스터	8	0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 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8302411000	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8	0	
8302419000	기타	8	0	
83024200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	0	
8302491000	트렁크·슈트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여 행용구에 적합한 것	8	0	
8302499000	기타	8	0	
8302500000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0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8	0	
8303001000	금고	8	0	
8303009000	기타	8	0	
8304000000	비(卑)금속제의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 ·페이퍼트레이·페이퍼레스트·펜트레이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 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를 제외한다)	8	0	
8305100000	서류철용 피팅	8	0	
830520000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8	0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0	
8306100000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306290000	기타	8	0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8	0	
8306302000	비금속제의 거울	8	0	
8307100000	철강제의 것	8	0	
8307900000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8	0	
8308101000	혹	8	0	
8308102000	아이 및 아이릿	8	0	
8308200000	관리벳 또는 이고리벳	8	0	
8308901000	유금 및 유금이 붙은 프레임	8	0	
8308902000	버클 및 버클유금	8	0	
8308903000	구슬	8	0	
8308904000	스팽글	8	0	
8308909000	기타	8	0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	8	0	
8309901000	캔뚜껑(E.O.E)	8	0	
8309909000	기타	8	0	
831000000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8	0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109000	기타	8	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209000	기타	8	0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땀납	8	0	
8311309090	기타	8	0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909000	기타	8	0	
8401100000	원자로	0	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0	0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	0	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0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8	3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보	8	0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8	0	
8402199000	기타	8	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	8	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8	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8	0	
8403101000	유류사용의 것	8	0	
8403102000	석탄사용의 것	8	0	
8403103000	가스사용의 것	8	0	
8403109000	기타	8	0	
8403900000	부분품	8	0	
8404101000	연료절약기	8	0	
8404102000	과열기	8	0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8	0	
8404104000	가스회수기	8	0	
8404109000	기타	8	0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	0	
8404901000	보일러용의 응축기의 것	8	0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의 것	8	0	
8404909000	기타	8	0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8	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8	0	
84051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05104000	산소 발생기	8	0	
8405109000	기타	8	0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8	0	
8405909000	기타	8	0	
8406103000	출력이 2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406109000	기타	5	0	
8406811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 1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812000	출력이 100메가와트 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5	
8406813000	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5	
8406820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8	3	
8406909000	기타	8	3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	0	
8407210000	아웃보드 모터	8	0	
8407290000	기타	8	0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19000	기타	8	0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29000	기타	8	0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39000	기타	8	0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49000	기타	8	0	
8407901000	철도차량용의 것	0	0	
8407909000	기타	8	0	
8408101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3	
8408102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3	
840810300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 초과 4,000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초과 10,000시시 이하인 것	8	5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	5	
8408901010	철도용기관차의 내연기관	0	0	
8408901090	기타	5	0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	3	
8408909021	400킬로와트 이상 출력의 발전기용의 것 [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 또는 1,800인 것에 한한다]	4	0	
8408909029	기타	8	0	
8408909030	제8429호용의 내연기관	8	0	
8408909090	기타	8	0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의 것	5	0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8	0	
8409912000	아웃보드 모터의 것	8	0	
8409919000	기타	8	0	
8409991000	철도차량용의 것	5	0	
8409992000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0999301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2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3	
840999303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8	3	
8409999010	발전용의 것	8	3	
8409999090	기타	8	3	
8410111000	수력터어빈	0	0	
8410119000	기타	8	0	
8410120000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8410130000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1090	기타	8	0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9090	기타	8	0	
84111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11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119090	기타	8	0	
841112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12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129090	기타	8	0	
84112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21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219090	기타	8	0	
841122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229010	선박용의 것	8	3	
8411229090	기타	8	0	
84118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819010	선박용의 것	8	3	
8411819090	기타	8	0	
841182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829010	선박용의 것	8	3	
8411829090	기타	8	3	
84119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919000	기타	8	0	
841199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999000	기타	8	0	
84121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5	0	
8412101090	기타	5	0	
8412109000	기타	8	0	
8412211000	액압실린더	8	3	
8412219000	기타	8	0	
8412290000	기타	8	0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8	0	
8412390000	기타	8	0	
8412800000	기타	8	0	
84129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의 것	5	0	
8412901090	기타	5	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	0	
8412909000	기타	8	0	
84131100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	8	0	
8413190000	기타	8	5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 또는 제8413.19호의 것을 제외한다)	8	0	
8413301000	항공기의 것	8	0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의 것	8	3	
8413303000	선박의 것	8	5	
84133040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8	3	
8413309000	기타	8	5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8	0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509010	플런저펌프	8	0	
8413509020	피스톤펌프	8	5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8	0	
8413509090	기타	8	5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609010	기어펌프	8	0	
8413609020	베인펌프	8	0	
8413609030	스크루펌프	8	0	
8413609090	기타	8	5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709010	터빈펌프	8	0	
8413709020	볼류트 펌프	8	0	
8413709090	기타	8	5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819000	기타	8	3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8	0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8	0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8	0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8	0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8	3	
8413915000	로타리펌프의 것	8	0	
8413919000	기타	8	3	
8413920000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8	0	
84141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3} 토르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3	0	
8414109090	기타	8	3	
8414200000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8	0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3	
8414400000	에인용의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 압축기	8	0	
841451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519000	기타	8	0	
841459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599000	기타	8	3	
84146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609000	기타	8	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0	
841480911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809190	기타	8	3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8	5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8	3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8	3	
8414809900	기타	8	3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14909010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의 것	8	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것을 제외한다)	8	0	
8414909090	기타	8	5	
8415101011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1012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1021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1022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200000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의 것에 한한다)	8	0	
8415810000	냉장 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	0	
8415820000	기타(냉장 유닛을 결합한 것에 한한다)	8	0	
8415830000	냉장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8	0	
8415900000	부분품	8	0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	0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8	0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8	0	
8416201000	분쇄한 고체연료용의 것	8	0	
8416202000	기체연료용의 것	8	0	
8416209000	기타	8	0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	0	
8416901000	노출 버너의 것	8	0	
8416909000	기타	8	0	
8417101010	철광석용의 것	8	0	
8417101090	기타	8	0	
8417102010	철강용의 것	8	0	
8417102090	기타	8	3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8	0	
8417801010	시멘트용의 것	8	0	
8417801020	유리용의 것	8	0	
8417801030	도자기용의 것	8	0	
8417801090	기타	8	0	
8417802000	이화학용의 것	8	3	
8417809000	기타	8	0	
8417900000	부분품	8	0	
8418101010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20	용량이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3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18109000	기타	8	0	
841821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8	0	
841821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8	0	
841821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8	0	
8418291000	흡수식의 것(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1829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18300000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8418501000	쇼케이스	8	0	
8418509000	기타	8	0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8	0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8	0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8	0	
8418692020	아이스큐버	8	0	
8418692030	냉수기	8	0	
8418692090	기타	8	0	
8418693000	열펌프	8	0	
8418910000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가구	8	0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8	0	
8418999000	기타	8	0	
8419110000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8	0	
8419190000	기타	8	0	
8419200000	내과용 ·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0	0	
8419310000	농산물용의 것	8	0	
8419320000	목재 · 제지용 펄프 · 지 또는 판지용의 것	8	0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3	0	
8419399000	기타	8	0	
8419400000	증류기 또는 정류기	8	0	
84195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9509000	기타	8	3	
8419600000	기체 액화용의 기기	8	0	
8419810000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8	0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	8	0	
8419899010	가열기	8	0	
8419899020	냉각기	8	0	
8419899030	증발기	8	0	
8419899040	응축기	8	0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 및 그 장치	8	0	
8419899060	고온 및 저온항온기	8	0	
8419899070	항온항습기	8	0	
8419899080	공기조절기	8	0	
8419899090	기타	8	0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의 것	8	0	
8419909010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8	0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40	내과용 · 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	0	
8419909090	기타	8	0	
8420101000	제지용의 것	8	0	
8420102000	직물용의 것	8	0	
8420103000	가죽용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20104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것	8	3	
8420109000	기타	8	0	
8420910000	실린더	8	0	
8420990000	기타	8	0	
8421110000	크림분리기	8	0	
8421120000	의류탈수기	8	0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 및 이화학용의 것	8	0	
8421192000	식품공업용의 것	8	0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의 것	8	0	
8421199000	기타	8	0	
8421211000	가정형의 것	8	0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 또는 청정기	8	0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3	0	
8421219090	기타	8	0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8	0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3	
8421232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239000	기타	8	0	
8421291000	낙농용의 것	8	0	
8421292000	유해성 폐수처리용의 것	8	3	
8421293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1294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299000	기타	8	0	
842131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0	
8421312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319000	기타	8	0	
8421391000	가정형의 것	8	0	
842139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것	8	0	
8421399010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것	8	0	
842139902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139903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399090	기타	8	3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	3	
842199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8	0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것	8	0	
8421999020	정수기 교체용 필터	8	0	
842199903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1999090	기타	8	3	
8422110000	가정형의 것	8	0	
8422190000	기타	8	0	
8422200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8	0	
8422301000	병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	8	0	
8422302000	병 기타 용기의 봉합용 또는 봉지용 기계	8	0	
8422303000	병 기타 용기의 캡슐 취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8	0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	0	
8422309000	기타	8	0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8	0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8	0	
8422409020	자동결속기	8	0	
8422409030	진공포장기	8	0	
8422409090	기타	8	0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8	0	
8422902000	기타 포장기계의 것	8	3	
842290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의 저울	8	0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8	0	
8423202000	휘이드 미터 또는 휘이드웨이더	8	0	
8423209000	기타	8	0	
8423300000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정량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8	0	
842381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2382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23891000	트럭 스케일	8	0	
8423899000	기타	8	0	
8423901010	정도등급을 가진 분동	8	0	
8423901090	기타	8	0	
8423909000	저울의 부분품	8	0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3	
8424201000	스프레이 건	8	0	
8424202010	로보트형의 것	8	0	
8424202090	기타	8	3	
8424209000	기타	8	3	
842430100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	8	0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8	0	
8424309000	기타	8	0	
8424811000	자주식 방제기	8	0	
8424812000	기타 방제기	8	0	
8424819000	기타	8	0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4899000	기타	8	5	
8424901000	소화기의 것	8	3	
8424902000	스프레이 건의 것	8	0	
8424903000	방제기의 것	8	0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4909090	기타	8	5	
8425111010	체인블록	0	0	
8425111090	기타	0	0	
8425112010	체인블록	0	0	
8425112090	기타	0	0	
8425190000	기타	0	0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윈치(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425319000	기타	0	0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윈치(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425399000	기타	0	0	
8425410000	차고용의 재킹시스템에 내장된 것	0	0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6110000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0	0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0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	0	0	
8426190000	기타	0	0	
8426200000	타워크레인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	0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	0	0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	0	
8426491000	신축붐식의 것	0	0	
8426492000	앵글식의 것	0	0	
8426499000	기타	0	0	
8426910000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0	
8426991000	선박의 데릭	0	0	
8426999000	기타	0	0	
8427101000	카운트 밸런스식의 것	8	7	
8427102000	카운트 밸런스식이 아닌 것	8	3	
8427109000	기타	8	3	
8427201010	적재중량이 3톤 이하인 것	8	5	
8427201020	적재중량이 3톤을 초과하는 것	8	5	
8427209000	기타	8	3	
8427901000	수동식 팰리트 트럭	8	3	
8427909000	기타	8	3	
8428101000	리프트	0	0	
8428102000	스킵 호이스트	0	0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	0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	0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설계제작된 것	0	0	
8428320000	기타 버켓형의 것	0	0	
8428331010	분당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	0	0	
8428331020	분당속도가 240미터 이상인 것	0	0	
8428332000	컨베이어	0	0	
8428390000	기타	0	0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	0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이동식 보도)	0	0	
8428600000	텔레페릭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 및 퓨니쿨러용의 견인장치	0	0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 ·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 화차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 화차 취급 장비	0	0	
8428909000	기타	0	0	
8429111000	불도우저	0	0	
8429112000	앵글도저	0	0	
8429190000	기타	0	0	
8429200000	그레이더와 레벨러	0	0	
8429300000	스크레이퍼	0	0	
8429401000	탐핑머신	0	0	
8429402000	로드롤러	0	0	
8429511010	로우더	0	0	
8429511020	백호우 로우더	0	0	
8429511030	스키드스티어 로우더	0	0	
8429511090	기타	0	0	
8429519000	기타	0	0	
8429521010	휠 타입의 것	0	0	
8429521020	무한궤도식의 것	0	0	
8429521090	기타	0	0	
8429529000	기타	0	0	
8429591000	메커니컬 셔블	0	0	
8429599000	기타	0	0	
8430100000	항타기와 항발기	0	0	
843020000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0	0	
8430310000	자주식의 것	0	0	
8430390000	기타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	0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	0	
8430491000	시추기	0	0	
8430499000	기타	0	0	
8430500000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30610000	탐핑용 또는 콤팩팅용의 기계	0	0	
8430690000	기타	0	0	
8431100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0	0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8	3	
8431310000	리프트·스킵 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0	0	
8431390000	기타	0	0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의 것	0	0	
8431419000	기타	0	0	
8431420000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0	0	
8431430000	소호 제8430.41호 또는 제8430.49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0	
8431491000	유압브레이크	0	0	
8431492000	크라샤	0	0	
8431499000	기타	0	0	
8432100000	플라우(쟁기)	0	0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	0	
8432292000	제초기	0	0	
8432299000	기타	0	0	
8432301000	파종기	0	0	
8432302000	식부기	0	0	
8432303000	이식기	0	0	
8432309000	기타	0	0	
8432401000	퇴비살포기	0	0	
8432402000	비료살포기	0	0	
8432800000	기타의 기계	0	0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	0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	0	
8432909000	기타	0	0	
8433110000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8433190000	기타	0	0	
8433200000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0	0	
8433300000	기타의 건조제조용 기계	0	0	
8433400000	짚 또는 건조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0	0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	0	
8433520000	기타의 탈곡기	0	0	
8433530000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0	0	
8433590000	기타	0	0	
8433601000	조란 선별기	0	0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	0	
8433609090	기타	0	0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	0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	0	
8433909000	기타	0	0	
8434100000	착유기	0	0	
8434201000	균질기	0	0	
8434209000	기타	0	0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0	
8434909000	기타	0	0	
8435101000	과즙 추출용의 프레스	8	0	
8435102000	과즙 추출용의 크러셔	8	0	
8435103000	과즙음료 제조용의 균질기	8	0	
8435109000	기타	8	0	
8435900000	부분품	8	0	
8436101000	사료절단기	8	0	
8436102000	사료분쇄기	8	0	
8436103000	사료배합기	8	3	
8436109000	기타	8	0	
8436211000	부란기	8	0	
8436219000	기타	8	0	
8436290000	기타	8	0	
8436800000	기타의 기계	8	3	
8436910000	가금 사육용 기계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 육기의 것	8	0	
8436990000	기타	8	0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8	0	
8437109000	기타	8	0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8	0	
8437802000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기계	8	0	
843790100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의 것	8	0	
8437909000	기타	8	0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8	0	
8438109000	기타	8	0	
843820000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	8	0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8	0	
8438400000	양조용 기계	8	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8	0	
8438509000	기타	8	0	
843860000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8	0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8	0	
8438809000	기타	8	0	
8438900000	부분품	8	3	
8439101000	쇄목기	8	0	
8439102000	절단기	8	0	
8439103000	스트레이너	8	0	
8439104000	프레스파아트기	8	0	
8439105000	비이터어	8	0	
8439109000	기타	8	0	
8439201000	초지 준비기	8	0	
8439202000	초지기	8	0	
8439209000	기타	8	0	
8439301000	권취기	8	0	
8439302000	표면 가공기	8	0	
8439303000	침투 가공기	8	0	
8439309000	기타	8	0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	0	
8439990000	기타	8	0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8	0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8	0	
8440109000	기타	8	0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8	0	
8440909000	기타	8	0	
8441100000	절단기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41201000	종이백 · 봉지 제조용 기계	8	0	
8441202000	봉투 제조기	8	0	
8441300000	카톤 · 박스 · 케이스 · 튜브 · 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8	0	
8441400000	제지용 펄프 · 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8	0	
8441801000	지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	8	0	
8441809000	기타	8	0	
8441900000	부분품	8	3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 장치	8	0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8	0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8	0	
8442304000	사진 식자기	8	0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의 기계류, 장치,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8442309000	기타	8	0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 · 장치의 것	8	0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 · 장치의 것	8	0	
8442409000	기타	8	0	
8442500000	플레이트 ·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평삭 · 그레이 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8	0	
8443110000	오프셋 인쇄기계(릴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120000	오프셋 인쇄기계(쉬이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번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번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아니한 상태의 쉬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	0	
8443130000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	8	0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을 제외한다)	8	0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을 제외한다)	8	0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8	3	
8443170000	그라비아인쇄용 기계	8	0	
8443191000	직물날염기	8	0	
8443192000	기타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름 등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 또는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8	0	
8443199000	기타	8	7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11090	기타	0	0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한다)	0	0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1.10호의 것을 제외한다)	8	0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21090	기타	0	0	
8443322000	팩시밀리	0	0	
8443323000	텔레프린터	0	0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43325090	기타	8	0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43391090	기타	8	0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	0	
8443393020	밀착식의 것	8	0	
8443394000	열식복사기	8	0	
8443399000	기타	8	0	
8443911010	자동급지기	8	0	
8443911020	접기, 폴칠, 천공 또는 지철용의 기계	8	0	
8443911030	연속번호기	8	0	
8443911090	기타	8	0	
8443919000	기타	8	0	
8443991000	제8443.31.10호 또는 제8443.32.10호의 것	0	0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	0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	0	
8443994020	지공급기	0	0	
8443994030	분류기	0	0	
8443994090	기타	0	0	
8443995000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 또는 제8443.39.1090호의 것	8	0	
8443999000	기타	8	0	
8444001000	방사기	5	0	
8444002000	연신기	5	0	
8444003000	텍스처기	5	0	
8444004000	절단기	5	0	
8444009000	기타	5	0	
8445110000	카드기	5	0	
8445120000	코밍기	5	0	
8445130000	연조기 또는 조방기	5	0	
8445191000	혼타면기	5	0	
8445192000	래프성형기	5	0	
8445193000	조면기	8	0	
8445199000	기타	5	0	
8445201010	정방기	5	3	
8445201090	기타	5	0	
8445202010	정방기	5	0	
8445202090	기타	5	0	
8445203000	견방의 것	5	0	
8445209000	기타	5	0	
8445301000	홀라멘트사용의 것	5	0	
8445302000	방적사용의 것	5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45309000	기타	5	0	
8445401000	콘 와인더	5	0	
8445402000	치이즈 와인더	5	0	
8445409000	기타	5	0	
8445901000	정경기	8	0	
8445902000	정경호부기	8	0	
8445903000	통경기	8	0	
8445904000	연경기	8	0	
8445909000	기타	8	0	
844610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	0	
8446211000	면직기	8	0	
8446212000	모직기	8	0	
8446213000	견직기	8	0	
8446219000	기타	8	0	
8446290000	기타	8	0	
8446301010	면직기	8	0	
8446301020	견직기	8	0	
8446301030	타올직기	8	0	
8446301090	기타	8	3	
8446302010	면직기	8	0	
8446302020	견직기	8	0	
8446302030	타올직기	8	0	
8446302090	기타	8	0	
8446303010	면직기	8	0	
8446303020	견직기	8	0	
8446303030	타올직기	8	0	
8446303090	기타	8	0	
8446309010	면직기	8	0	
8446309020	견직기	8	0	
8446309030	타올직기	8	0	
8446309090	기타	8	0	
8447111000	양말편기	8	0	
8447119000	기타	8	0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47201010	수편기(반자동 횡편기를 포함한다)	8	0	
8447201020	자동횡편기	8	3	
8447201090	기타	8	0	
8447202010	랏셀기	8	3	
8447202020	트리코트기	8	0	
8447202090	기타	8	0	
8447209000	기타	8	0	
8447901000	레이스기	8	0	
8447902010	자동자수기	8	0	
8447902090	기타	8	0	
8447903000	결망기	8	0	
8447909000	기타	8	0	
8448111000	도비기	8	0	
8448112000	자카드기	8	0	
8448113000	카드 천공기	8	0	
8448119000	기타	8	0	
8448191000	경사용 비임스탠드와 크리일	8	0	
8448192000	자동정지기	8	0	
8448193000	경사연접기	8	0	
8448199010	사(絲)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를 제외한다)	5	0	
844819909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48201000	방사 니플	5	0	
8448209000	기타	5	0	
8448310000	침포	8	0	
8448321000	소면기의 것(가닛와이어를 제외한다)	5	0	
8448329000	기타	8	0	
8448331000	스핀들플라이어	5	0	
8448339010	스핀들	8	0	
8448339020	스피닝링	8	0	
8448339030	링트래블러	8	0	
8448391000	경사비임	8	0	
8448399000	기타	8	0	
8448420000	직조기용의 바디·종광과 종광 프레임	8	3	
8448491000	셔틀	8	0	
8448499000	기타	8	0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8	0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8	0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8	0	
8448519000	기타	8	3	
8448590000	기타	8	3	
8449001010	펠트모자 제조용 기계	8	0	
8449001090	기타	8	0	
8449002000	모자제조용의 형	8	0	
8449009000	부분품	8	0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	0	
8450120000	기타 세탁기(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8	0	
8450190000	기타	8	0	
8450200000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	0	
8450900000	부분품	8	0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	0	
8451210000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51290000	기타	8	0	
8451301000	스티임 프레스	8	0	
8451309000	기타	8	0	
8451401000	세척기	8	0	
8451402000	표백기	8	0	
8451403000	염색기	8	0	
8451501000	권취기·재권취기	8	0	
8451502000	절단기	8	3	
8451509000	기타	8	0	
8451801000	열처리기	8	0	
8451802000	폭출기	8	0	
8451803000	머서라이징기	8	0	
8451809010	방축가공기	8	0	
8451809020	도포 또는 침투기	8	0	
8451809030	기모기	8	0	
8451809040	패딩기	8	0	
8451809090	기타	8	0	
8451901000	드라이클리닝기의 것	8	0	
8451902000	건조기의 것	8	0	
8451909000	기타	8	0	
8452101010	직진형의 것	8	0	
8452101020	지그재그형의 것	8	0	
8452101030	프리아암식의 것	8	0	
845210109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52102000	수동식의 것	8	0	
8452211000	신발제조용의 것	8	0	
8452212000	포장대 봉합용의 것	8	0	
8452213000	피혁 및 기타 후물용의 것	8	0	
8452214000	모피용의 것	8	0	
8452219000	기타	8	0	
8452291000	신발 제조용의 것	8	0	
8452292000	포장대 봉합용의 것	8	0	
8452293000	피혁 및 기타 후물용의 것	8	0	
8452294000	모피용의 것	8	0	
8452299000	기타	8	0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8	0	
8452400000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8	0	
8452900000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8	0	
8453101000	유피준비기계	8	0	
8453102000	유피기계	8	0	
8453103000	원피·모피 또는 피혁가공기계	8	0	
8453201000	신발제조기계	8	0	
8453202000	신발수선기계	8	0	
8453800000	기타의 기계	8	0	
8453900000	부분품	8	0	
8454100000	전로	8	0	
8454200000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8	0	
8454301010	다이캐스팅기	8	3	
8454301090	기타	8	0	
8454309000	기타	8	0	
8454901000	전로의 것	8	0	
8454909000	기타	8	0	
8455100000	관 압연기	8	0	
8455210000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압연기	8	0	
8455220000	냉간 압연기	8	0	
8455301000	주조제의 것	8	0	
8455302000	단조제의 것	8	0	
8455309000	기타	8	0	
8455900000	기타 부분품	8	0	
8456103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8	7	
8456109000	기타	8	7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8	0	
8456301090	기타	8	0	
8456309000	기타	8	0	
8456900000	기타	8	0	
8457101000	수직형	8	5	
8457102000	수평형	8	7	
8457103000	문형	8	5	
8457109000	기타	8	5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8	0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용의 트랜스퍼 머신	8	0	
84581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8190000	기타	8	0	
84589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8990000	기타	8	0	
8459100000	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	8	0	
84592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8	0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8	0	
8459299000	기타	8	0	
8459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9390000	기타	8	0	
8459401000	지그 보링머신	8	0	
8459402000	수평 보링머신	8	0	
8459409000	기타	8	0	
84595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9590000	기타	8	0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12000	평삭 밀링머신	8	0	
8459619000	기타	8	0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92000	평삭 밀링머신	8	0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8	0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8	3	
8459699000	기타	8	0	
8459701000	태핑머신	8	0	
8459709000	기타의 나사절삭기	8	0	
84601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0190000	기타	8	0	
846021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1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13000	무심연삭기	8	3	
8460214000	프로파일연삭기	8	3	
8460219000	기타	8	0	
846029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9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93000	무심연삭기	8	0	
8460294000	프로파일연삭기	8	0	
8460299000	기타	8	3	
8460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0390000	기타	8	0	
8460401000	호닝머신	8	0	
8460402000	래핑머신	8	0	
8460900000	기타	8	3	
8461200000	쉐이핑머신 또는 슬로팅머신	8	0	
8461300000	부로칭머신	8	0	
8461401010	수치제어식의 것	8	3	
8461401090	기타	8	0	
8461402000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8	3	
8461500000	톱기계 또는 절단기	8	0	
8461900000	기타	8	3	
8462101000	에어해머	8	0	
8462109000	기타	8	3	
84622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2290000	기타	8	0	
8462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2390000	기타	8	0	
846241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12000	낫칭기	8	0	
846249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92000	낫칭기	8	0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 1,0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8	0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초과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 6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메트릭톤 초과 1,5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90	기타	8	0	
8462999000	기타	8	0	
8463100000	드로우 벤치(봉·관·프로파일·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8	0	
8463200000	나사전조기	8	0	
8463300000	선가공기	8	0	
8463900000	기타	8	3	
8464100000	톱기계	8	0	
8464201000	광학용 또는 안경용 유리용의 것	8	0	
8464202000	기타 유리용의 것	8	0	
8464209000	기타	8	0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기계	8	0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기계	8	0	
8464903000	도자기 가공기계	8	0	
8464909000	기타	8	0	
846510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109000	기타	8	0	
846591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19000	기타	8	0	
846592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29000	기타	8	0	
846593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39000	기타	8	0	
846594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49000	기타	8	0	
846595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59000	기타	8	0	
846596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69000	기타	8	0	
846599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99000	기타	8	0	
8466100000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8	5	
84662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66209000	기타	8	0	
8466300000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8	0	
8466910000	제8464호의 기계용의 것	8	0	
8466920000	제8465호의 기계용의 것	8	0	
8466930000	제8456호 내지 제8461호의 기계용의 것	8	3	
8466940000	제8462호 또는 제8463호의 기계용의 것	8	0	
8467111000	착암기	8	0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8	0	
8467113000	그라인더	8	0	
8467114000	임팩트 렌치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67115000	드릴	8	0	
8467119000	기타	8	3	
8467191000	착암기	8	0	
8467199000	기타	8	0	
8467210000	각종의 드릴	8	0	
8467220000	톱	8	0	
8467290000	기타	8	0	
8467810000	체인톱	8	0	
8467891010	소호 제8430.49호 또는 제8479.10호의 것	0	0	
8467891020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또는 제8479.89.9091호의 것	8	0	
8467891090	기타	8	3	
8467899000	기타	8	0	
8467910000	체인톱의 것	8	0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0	
8467990000	기타	8	0	
8468100000	수지식 취관	8	0	
8468201000	가스 용접기	8	0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8	0	
8468209000	기타	8	0	
8468800000	기타의 기기	8	0	
8468900000	부분품	8	0	
8469001010	워드프로세싱 머신	0	0	
8469001020	자동타자기	8	0	
8469002000	기타의 전동식 타자기	8	0	
8469003000	기타의 수동식 타자기	8	0	
8470103010	17단위 미만인 것	0	0	
8470103020	17단위 이상인 것	0	0	
8470104010	제8472.90.9000호의 것	0	0	
8470104090	기타	0	0	
8470211000	17단위 미만인 것	0	0	
8470212000	17단위 이상인 것	0	0	
8470290000	기타	0	0	
8470300000	기타의 계산기	0	0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	0	
8470901000	우편요금계기	0	0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	0	
8470903000	회계기	0	0	
8470909000	기타	0	0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0	0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9000	기타	0	0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71491090	기타	0	0	
8471499000	기타	0	0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9000	기타	0	0	
8471601010	문자(표식)독취장치	0	0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	0	
8471601030	마우스	0	0	
8471601040	스캐너	0	0	
8471601090	기타	0	0	
8471602000	출력장치	0	0	
8471603020	비디오텍스 또는 텔레텍스	0	0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	0	
8471603090	기타	0	0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 및 롬)	0	0	
847170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	0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	0	
8471702039	기타	0	0	
8471702090	기타	0	0	
8471709000	기타	0	0	
8471800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계의 단위기기	0	0	
8471900000	기타	0	0	
8472100000	등사기	8	0	
8472301000	편지 분류기	8	0	
8472302000	소인기	8	0	
8472309000	기타	8	3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	0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	0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입금기	0	0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8	0	
8472901090	기타	8	0	
8472902000	등사용 또는 인쇄용 자동제판기	8	0	
8472903000	표권발행기	8	0	
8472904000	연필절삭기	8	0	
8472905000	서류절단기	8	0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8	0	
8472909000	기타	8	0	
8473101000	위드프로세싱머신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102000	위드프로세싱머신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473109000	기타	8	0	
8473210000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8473291000	소호 제8470.30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3000	소호 제8470.50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4000	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	0	0	
8473301000	자기헤드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73302000	주기관(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	0	
8473304010	사운드카드	0	0	
8473304020	비디오 카드	0	0	
8473304030	멀티미디어 카드	0	0	
8473304050	통신접속카드	0	0	
8473304060	디램 모듈	0	0	
8473304090	기타	0	0	
8473309000	기타	0	0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를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를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473409000	기타	8	0	
8473501000	소호 제8470.10호, 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473509000	기타	0	0	
847410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0	0	
8474201000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 이하인 것	0	0	
8474209000	기타	0	0	
8474311000	배치 플랜트	0	0	
8474319000	기타	0	0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	0	
8474329000	기타	0	0	
8474390000	기타	0	0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	0	
8474802000	조끼기·형입기와 성형기	0	0	
8474809000	기타	0	0	
8474900000	부분품	0	0	
847510000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8	0	
8475210000	광섬유 및 광섬유예비 성형품제조용의 기계	8	0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의 것	8	0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의 것	8	0	
8475299000	기타	8	0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의 것	8	0	
8475909000	기타	8	0	
8476210000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0	
8476290000	기타	8	0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19000	기타	8	0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93000	담배 자동판매기	8	0	
8476894000	화폐 교환기	8	0	
8476899000	기타	8	0	
8476900000	부분품	8	0	
8477101000	고무 공업용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8	0	
8477201000	고무 공업용의 것	8	0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8	0	
8477300000	취입 성형기	8	0	
8477400000	진공성형기 기타의 열성형기	8	0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와 기타의 이너튜브 성형기	8	0	
8477590000	기타	8	3	
8477800000	기타의 기계	8	0	
8477900000	부분품	8	0	
8478100000	기계	8	0	
8478900000	부분품	8	0	
8479101000	모울타르 또는 콘크리트 살포기	0	0	
8479102000	기타의 도로공사용 기계	0	0	
8479109000	기타	0	0	
84792000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류	8	0	
8479300000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 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 용의 기타의 기계	8	0	
847940000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8	0	
8479501000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 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40호, 제8479.89.9060호 또는 제8479.89.9091 호의 것	8	0	
84795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	0	
8479509000	기타	8	3	
8479600000	증발식 에어컨	8	0	
8479811000	금속 세척기	8	0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8479812090	기타	8	0	
8479813000	권선기	8	0	
8479814000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8	0	
8479819000	기타	8	0	
8479821000	혼합기	8	3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8	0	
8479823000	균질기	8	0	
8479824000	교반기	8	0	
8479829000	기타	8	3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8479891090	기타	8	0	
8479899010	프레스 또는 압출기	8	0	
8479899020	선박용 또는 어업용기기	8	3	
8479899030	아일레팅기 또는 튜우블러리베팅기	8	0	
847989904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8	0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8	0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8	0	
8479899080	조상기	8	0	
8479899091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8	0	
8479899092	전자부품장착기	16	7	
8479899099	기타	8	3	
8479901010	냉방기기의 것(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8	0	
8479901020	가정형 기기의 것	8	0	
8479901030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799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	0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	0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	0	
8479909020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의 것	8	0	
847990903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용의 것	8	0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8	3	
847990905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의 것	8	3	
8479909060	프레스 또는 압출기의 것	8	0	
8479909070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의 것	8	3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제조기의 것	8	0	
8479909090	기타	8	3	
8480100000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8	0	
8480200000	주형 베이스	8	0	
8480300000	주형 제조용의 모형	8	0	
84804100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8	0	
8480490000	기타	8	0	
8480500000	유리 성형용의 주형	8	0	
8480600000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8	0	
84807100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8	0	
8480790000	기타	8	0	
8481100000	감압밸브	8	3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8	5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8	5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8	7	
8481400000	안전밸브	8	3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8	5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8	5	
8481801030	기타 자동제어식의 것	8	7	
8481801090	기타	8	5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8	3	
8481809000	기타	8	3	
8481901000	액츄에이터	8	3	
8481909000	기타	8	3	
8482101000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5	
8482102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5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8	7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	8	3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	8	3	
8482500000	기타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8	3	
8482800000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5	
8482910000	볼·니들 및 롤러	8	3	
8482990000	기타	8	3	
84831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109010	제87류 차량용의 것	8	3	
8483109090	기타	8	5	
84832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209000	기타	8	0	
84833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309000	기타	8	3	
8483401010	롤러 스크루	3	0	
8483401090	기타	3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83409010	기어	8	3	
8483409020	기어박스	8	0	
8483409030	무단변속기	8	0	
8483409041	제87류 차량용의 것	8	0	
8483409049	기타	8	0	
8483409090	기타	8	3	
84835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83509000	기타	8	0	
84836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609000	기타	8	0	
84839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909000	기타	8	0	
8484101000	제87류 차량용의 것	8	3	
8484109000	기타	8	3	
8484200000	메커니컬 실	8	5	
8484900000	기타	8	0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86102000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성장시키는 기계	0	0	
8486103010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	0	0	
8486103020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103090	기타	8	0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104019	기타	8	7	
8486104020	반도체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마크 방식에 한한다)	0	0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0	0	
84861050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0	0	
8486105030	기타의 노와 오븐	0	0	
8486109000	기타	8	0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0	0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상의 반도체 소자 제조용의 것	0	0	
8486202290	기타	8	0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0	
8486202390	기타	0	0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0	
8486204000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0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190	기타	8	0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990	기타	8	0	
8486206010	웨이퍼 상(上)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0	
8486206020	스텝 앤 리프트 얼라이너	0	0	
8486206090	기타	0	0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86208110	반도체 제조공정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0	
8486208190	기타	8	7	
848620820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전기화학, 전자빔, 이온빔, 플라스마아크 방식에 한한다)	0	0	
848620830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스마아크 방식에 한한다)	0	0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 또는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0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 및 오염물질제거기	0	0	
8486209190	기타	0	0	
8486209200	포토리저스트를 도포·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209320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 또는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0	0	
8486209390	기타	8	0	
8486209400	웨이퍼, 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9500	웨이퍼상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0	
8486209600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	0	
8486209900	기타	8	0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	0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0	
848630301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8	7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8	0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8	0	
8486303041	건식식각기	8	0	
8486303049	기타	8	0	
8486304010	연마기 또는 광택기	8	0	
8486304020	스크라이빙머신	8	0	
8486304090	기타	8	0	
8486305010	도포기	8	0	
8486305020	도포·현상기	8	0	
8486305031	물리적방식의 것	8	0	
8486305032	화학적방식의 것	8	0	
8486305039	기타	8	0	
8486306010	실, 숏트, 스페이서 또는 액정 디스플레이	8	0	
8486306090	기타	8	0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	0	
8486308000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8	5	
8486309010	패널 어셈블러	8	0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봇트	8	3	
848630909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8640101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	0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	0	
8486401030	포토리저스트를 도포·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401090	기타	8	0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 접착기 및 와이어접착기	0	0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 또는 제거시키는 기계	8	0	
8486402031	반도체 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0	
8486402039	기타	8	0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 또는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3	0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 또는 분리하는 기계	8	0	
8486402061	사출성형기	8	0	
8486402062	진공성형기 및 기타의 열성형기	8	0	
8486402063	기타의 성형기(압출기, 취입성형기 및 공기를 넣은 타이어 성형기 또는 기타의 이너튜브 성형기를 제외한다)	8	3	
848640207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0	0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402091	굽힘·접음·교정·펼침용의 금속가공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8486402092	굽힘·접음·교정·펼침용의 금속가공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8486402099	기타	8	0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세트, 상자 및 기타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0	0	
8486403090	기타	0	0	
8486404011	입체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0	0	
8486404012	마이크로 사진용 기타의 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0	0	
848640402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0	0	
8486409000	기타	8	0	
8486901010	제8486.10.1000호, 제8486.10.2000호, 제8486.10.3010호, 제8486.10.3020호, 제8486.10.4011호, 제8486.10.4020호, 제8486.10.5010호, 제8486.10.5020호 또는 제8486.10.5030호의 것	0	0	
8486901020	제8486.10.3090호, 제8486.10.4019호 또는 제8486.10.9000호의 것	8		
	- 제8486.10.3090호의 것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 제8486.10.4019호의 것		3	
	- 제8486.10.9000호의 것		0	
8486902010	제8486.20.1000호, 제8486.20.2100호, 제8486.20.2210호, 제8486.20.2310호, 제8486.20.2390호, 제8486.20.3000호, 제8486.20.4000호, 제8486.20.5110호, 제8486.20.5910호, 제8486.20.6010호, 제8486.20.6020호, 제8486.20.6090호, 제8486.20.7000호, 제8486.20.8110호, 제8486.20.8200호, 제8486.20.8300호, 제8486.20.9110호, 제8486.20.9120호, 제8486.20.9190호, 제8486.20.9200호, 제8486.20.9310호, 제8486.20.9320호, 제8486.20.9400호, 제8486.20.9500호 또는 제8486.20.9600호의 것	0	0	
8486902020	제8486.20.2290호, 제8486.20.5190호, 제8486.20.5990호, 제8486.20.8190호, 제8486.20.9390호 또는 제8486.20.9900호의 것	8		
	- 제8486.20.9390호의 것		0	
	- 제8486.20.8190호의 것		3	
	- 제8486.20.5190호, 제8486.20.5990호의 것		0	
	- 제8486.20.2290호의 것		0	
	- 제8486.20.9900호의 것		0	
8486903010	제8486.30.1000호 또는 제8486.30.2000호의 것	0	0	
8486903020	제8486.30.3010호, 제8486.30.3020호, 제8486.30.3030호, 제8486.30.3041호, 제8486.30.3049호, 제8486.30.4010호, 제8486.30.4020호, 제8486.30.4090호, 제8486.30.7000호, 제8486.30.8000호, 제8486.30.9020호 또는 제8486.30.9090호의 것	8		
	- 제8486.30.7000호의 것		3	
	- 제8486.30.8000호의 것		5	
	- 제8486.30.4010호, 제8486.30.4020호, 제8486.30.4090호의 것		0	
	- 제8486.30.3010호, 제8486.30.3020호, 제8486.30.3030호, 제8486.30.3041호, 제8486.30.3049호의 것		3	
	- 제8486.30.9020호의 것		3	
	- 제8486.30.9090호의 것		0	
8486903030	제8486.30.5010호, 제8486.30.5020호, 제8486.30.5031호, 제8486.30.5032호, 제8486.30.5039호, 제8486.30.6010호, 제8486.30.6090호 또는 제8486.30.9010호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86904010	제8486.40.1010호, 제8486.40.1020호, 제8486.40.1030호, 제8486.40.2010호, 제8486.40.2031호, 제8486.40.2070호, 제8486.40.2080호, 제8486.40.2091호, 제8486.40.3010호, 제8486.40.3090호, 제8486.40.4011호, 제8486.40.4012호 또는 제8486.40.4020호의 것	0	0	
8486904020	제8486.40.1090호, 제8486.40.2020호, 제8486.40.2039호, 제8486.40.2040호, 제8486.40.2050호, 제8486.40.2061호, 제8486.40.2062호, 제8486.40.2063호, 제8486.40.2092호, 제8486.40.2099호 또는 제8486.40.9000호의 것	8	0	
8487100000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8	3	
8487901000	제87류 차량용의 것	8	3	
8487909010	오일 실링	8	3	
8487909090	기타	8	3	
850110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102000	교류 전동기	8	0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8	0	
850120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31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311090	기타	8	0	
8501312000	직류발전기	8	0	
8501321000	직류전동기	8	0	
8501322000	직류발전기	8	0	
8501331000	직류전동기	8	0	
8501332000	직류발전기	8	0	
8501341000	직류전동기	8	0	
8501342000	직류발전기	8	0	
85014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51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20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3	
8501531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3	
8501532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4000	출력이 1,5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3	
85016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3100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01639000	기타	8	0	
8501640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1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3	
8502131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131090	기타	8	0	
8502132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8502134000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20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3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203090	기타	8	0	
850220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31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239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9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9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9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2400000	회전변환기	8	0	
8503001000	전동기의 것	8	3	
8503002000	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8	0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8	0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8	3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1901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1902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2901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0422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30	용량이 5,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300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1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1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1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1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2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2901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9020	용량이 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3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3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20	용량이 3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4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4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4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9030	용량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1090	기타	8	0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19	기타	8	3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99	기타	8	0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403090	기타	8	0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404090	기타	8	3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405090	기타	8	0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	0	0	
8504409019	기타	0	0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9099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501090	기타	8	0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502090	기타	8	0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509090	기타	8	0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 및 제 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 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 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04909000	기타	8	0	
8505111000	알니코의 것	8	0	
8505119000	기타	8	0	
8505191000	산화철의 것	8	0	
8505199000	기타	8	0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 · 클러치와 브레이크	8	0	
8505901000	전자석	8	0	
8505902000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 · 클램프 · 바 이스와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8	0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	8	0	
8505909000	부분품	8	0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	0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	0	
8506109000	기타	8	0	
8506300000	산화수은제의 것	8	0	
8506400000	산화은제의 것	8	0	
8506500000	리튬제의 것	8	0	
8506600000	에어징크제의 것	8	0	
8506801000	산화아연제의 것	8	0	
8506809000	기타	8	0	
8506900000	부분품	8	0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鉛酸)축전지	8	0	
8507200000	기타의 연산 축전지	8	0	
8507300000	니켈 카드뮴 축전지	8	3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8	0	
8507801000	니켈수소 축전지	8	0	
8507802000	리튬이온 축전지	8	0	
8507803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8	0	
8507809000	기타	8	0	
8507901000	격리판	8	0	
8507909000	기타	8	0	
8508110000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기타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	0	
8508191000	가정용의 것	8	0	
8508199000	기타	8	3	
8508600000	기타의 진공청소기	8	3	
8508701000	제8508.11.0000호 또는 제8508.19.1000호의 것	8	0	
8508702000	제8508.19.9000호 또는 제8508.60.0000호의 것	8	3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09801000	커피분쇄기	8	0	
8509802000	얼음분쇄기	8	0	
8509803000	바닥광택기	8	0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	0	
8509809000	기타	8	0	
8509900000	부분품	8	0	
8510100000	면도기	8	0	
8510200000	이발기	8	0	
8510300000	모발제거기	8	0	
8510901000	면도기의 것	8	0	
8510902000	이발기의 것	8	0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8	0	
85111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109000	기타	8	0	
85112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209000	기타	8	0	
85113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309000	기타	8	0	
85114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409000	기타	8	0	
85115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509000	기타	8	0	
85118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809000	기타	8	0	
85119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909000	기타	8	0	
85121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 용 기구	8	0	
8512201000	조명용 기구	8	0	
8512202000	시각신호용 기구	8	0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8	0	
8512400000	윈드스크린 와이퍼 · 제상기와 제무기	8	0	
8512900000	부분품	8	0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8	0	
8513102000	손전등	8	0	
8513109000	기타	8	0	
8513900000	부분품	8	0	
8514101000	이화학용의 것	8	0	
8514102000	금속공업용의 것	8	0	
8514103000	식품공업용의 것	8	0	
8514109000	기타	8	0	
8514201000	이화학용의 것	8	0	
8514202000	금속공업용의 것	8	0	
8514203000	식품공업용의 것	8	0	
8514209000	기타	8	0	
8514300000	기타의 노와 오븐	8	3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514409000	기타	8	0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514909000	기타	8	0	
8515110000	납땜용의 인두와 건	8	0	
8515190000	기타	8	3	
8515211010	로봇트형의 것	8	0	
8515211090	기타	8	0	
8515212010	로봇트형의 것	8	0	
8515212090	기타	8	0	
8515213010	로봇트형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15213090	기타	8	0	
8515219010	로봇형태의 것	8	0	
8515219090	기타	8	0	
8515291000	점 용접기기	8	0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8	0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8	0	
8515299000	기타	8	0	
8515311010	로봇형태의 것	8	0	
8515311090	기타	8	0	
8515319010	로봇형태의 것	8	0	
8515319090	기타	8	3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8	0	
8515399000	기타	8	0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8	3	
8515802000	전자빔용기기	8	0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기기	8	0	
8515809000	기타	8	0	
8515901000	용접기의 것	8	0	
8515909000	기타	8	0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8	0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0	
8516290000	기타	8	0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8	0	
8516320000	기타의 이용기기	8	0	
8516330000	손 건조기	8	0	
8516400000	전기다리미	8	0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	0	
8516601000	전기오븐	8	0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8	0	
8516609000	기타	8	0	
8516710000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8	0	
8516720000	토스터	8	0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8	0	
8516799000	기타	8	0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8	0	
8516900000	부분품	8	0	
8517110000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셋이 있는 것에 한한다)	0	0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1090	기타	0	0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2090	기타	0	0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3090	기타	0	0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4090	기타	0	0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9090	기타	0	0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	0	
8517189000	기타	0	0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	0	
8517619000	기타	0	0	
8517621000	텔레프린터	0	0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	0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	0	
8517622090	기타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17623110	단국장치	0	0	
8517623120	중계장치	0	0	
8517623190	기타	0	0	
8517623210	단국장치	0	0	
8517623220	중계장치	0	0	
8517623290	기타	0	0	
8517623310	광중계장치	0	0	
8517623320	광단국장치	0	0	
8517623390	기타	0	0	
8517623410	에이/디, 디/에이변환기	0	0	
8517623420	코덱	0	0	
8517623430	모델(모델카드를 포함한다)	0	0	
8517623490	기타	0	0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인 것	0	0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인 것	0	0	
8517623590	기타	0	0	
8517623900	기타	0	0	
8517624010	키-폰	0	0	
8517624020	영상전신기	0	0	
8517624090	기타	0	0	
851762500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	0	
8517626010	인쇄전신기기	0	0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6031	위키토키 세트	0	0	
8517626039	기타	0	0	
8517626040	모사전송기기	0	0	
8517626050	무선통신용교환기	0	0	
8517626060	무선통신용중계기	0	0	
8517626090	기타	0	0	
8517627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8517629000	기타	0	0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8	0	
8517691211	휴대용의 것	0	0	
8517691219	기타	8	0	
8517691290	기타	8	0	
8517691900	기타	8	0	
8517692000	영상전화기	0	0	
8517699000	기타	0	0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	0	
8517701020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것	0	0	
8517701090	기타	0	0	
8517702000	소호 제8517.61호의 것	0	0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2	사선통신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9	기타	0	0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	0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	0	
8517703039	기타	0	0	
8517703041	영상전신기의 것	0	0	
8517703049	기타	0	0	
851770305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	0	
851770306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것(제8517.70.10호의 것을 제외한다)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1770307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계의 것	0	0	
8517703090	기타	0	0	
8517704011	호출, 경보 또는 페이지징용의 휴대용 수신기 기의 것	0	0	
8517704019	기타	8	0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	0	
8517704090	기타	8	0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 파수 대역이 300헤르츠 내지 3.4킬로헤르 츠인 것에 한한다)	0	0	
8518109000	기타	8	0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 한다)	8	0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 에 한한다)	8	3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 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 내지 3.4킬 로헤르츠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에 한한다)	0	0	
8518299000	기타	8	0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0	0	
8518309000	기타	8	0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8	0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8	0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제8518.10.1000호 및 제 8518.29.1000호의 것에 한한다)	0	0	
8518909000	기타	8	0	
8519201000	코인 혹은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	8	0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8	0	
8519309000	기타	8	0	
8519500000	전화응답기	0	0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12210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2220	휴대용의 것(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 정한 것을 제외한다)	8	0	
8519812290	기타	8	0	
8519812310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2320	휴대용의 것	8	0	
8519812390	기타	8	0	
8519812900	기타	8	0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 는 것에 한한다)	8	0	
8519814111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4112	휴대용의 것	8	0	
8519814119	기타	8	0	
8519814190	기타	8	0	
8519814210	자동차용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19814220	휴대용의 것	8	0	
8519814290	기타	8	0	
8519814310	릴형의 것	8	0	
8519814390	기타	8	0	
8519815010	릴형의 것	8	0	
8519815020	디스크형의 것	8	0	
8519815030	카세트형의 것	8	0	
8519815090	기타	8	0	
8519819000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8519891010	확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	8	0	
8519891090	기타	8	0	
8519892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8519899010	기타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99020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8521101000	폭이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521102000	폭이 12.7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8521901000	디스크형의 것	8	0	
8521909000	기타	8	0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8	0	
8522901010	오디오 녹음용	8	0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8	0	
8522901090	기타	8	0	
8522902000	레이저 픽업	8	0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 엘, 플라즈마,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 을 포함한다)	0	0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22909090	기타	8	0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저장한 카드(기록 여부를 불문한다)	8	0	
85232911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30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523291210	플로피 디스크	0	0	
8523291290	기타	0	0	
8523291900	기타	0	0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19	기타	0	0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29	기타	0	0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39	기타	0	0	
852329221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19	기타	8	0	
852329222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29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13% 또는 20원/분 (표준속도)	0	
8523292239	기타	8	0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919	기타	0	0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992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0	0	
8523292999	기타	8	0	
852340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40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02119	기타	0	0	
85234021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8	0	
8523402131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402139	기타	8	0	
852340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02919	기타	0	0	
852340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402992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402999	기타	8	0	
852351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12190	기타	0	0	
852351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12920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512990	기타	8	0	
8523521000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것 및 그 부분품	0	0	
8523529000	기타 및 그 부분품	8	0	
852359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92190	기타	0	0	
852359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92920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592990	기타	8	0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0	0	
852380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802100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8	0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802290	기타	0	0	
852380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23802920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802990	기타	8	0	
8525501000	라디오방송용의 것	8	0	
8525502000	텔레비전용의 것	8	0	
8525509000	기타	8	3	
8525601000	라디오방송용의 것	0	0	
8525602000	텔레비전용의 것	0	0	
8525609000	기타	0	0	
8525801010	녹화기용의 것	8	0	
8525801020	모니터용의 것	8	0	
8525801090	기타	8	0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	0	
8525802090	기타	0	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0	
8526101000	항공기용의 것	8	3	
8526109000	기타	8	0	
8526911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1090	기타	8	0	
8526912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2090	기타	8	0	
8526913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3020	자동차용의 것	8	0	
8526913090	기타	8	0	
8526914000	로오랑 리이시버	8	0	
8526919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9020	자동차용의 것	8	0	
8526919090	기타	8	0	
8526920000	무선원격조정기기	8	0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	0	
8527131000	카세트형의 것	8	0	
8527132000	디스크형의 것	8	0	
852713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139000	기타	8	0	
8527190000	기타	8	0	
8527211000	카세트형의 것	8	0	
8527212000	디스크형의 것	8	0	
852721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219000	기타	8	0	
8527290000	기타	8	0	
8527911010	카세트형의 것	8	0	
8527911020	디스크형의 것	8	0	
852791103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911090	기타	8	0	
8527919000	기타	8	0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8	0	
8527990000	기타	8	0	
852841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4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49109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284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492090	기타	8	0	
8528511000	액정모니터	0	0	
8528519000	기타	0	0	
85285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591090	기타	8	0	
85285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592090	기타	8	0	
852861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690000	기타	8	0	
8528711010	천연색의 것	8	0	
8528711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8	0	
8528712010	수직해상도 720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	8	0	
8528712090	기타	8	0	
8528719010	천연색의 것	8	0	
8528719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8	0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1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2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3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4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9000	기타	8	0	
8528731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센티미터 이상 45.72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8	0	
8528739000	기타	8	0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의 것	8	0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원격조절기용의 것	8	0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의 것	8	0	
8529109290	기타	8	0	
852910930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	0	
8529109900	기타	8	3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8	3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원격 조절기의 것	8	0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8	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8	0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8	0	
8529909610	천연색튜너	8	0	
8529909620	흑백 또는 단색튜너	8	0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8	0	
8529909640	기타 천연색용의 것	8	0	
8529909650	기타 흑백 또는 단색용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것 또는 디지털카메라의 것(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	0	
8529909920	소호 제8528.51호, 제8528.41.0000호 또는 제8528.61.0000호의 것	0	0	
8529909990	기타	8	0	
8530101010	지상장치용의 것	8	0	
8530101090	기타	8	0	
8530109000	기타	8	0	
8530800000	기타의 기기	8	0	
8530900000	부분품	8	0	
8531101000	도난경보기	8	0	
8531102000	화재경보기	8	0	
8531103000	가스경보기	8	0	
8531104000	전기식의 벨	8	0	
8531105000	사이렌	8	0	
8531109000	기타의 신호기기	8	0	
8531201000	액정표시단자(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단자(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801000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8	0	
8531809000	기타	8	0	
8531901000	소호 제8531.10호의 것	8	0	
8531902000	소호 제8531.20호의 것	0	0	
8531909000	기타	8	0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8532210000	탄탈륨의 것	0	0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0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0	
8532250000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0	
8532290000	기타	0	0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	0	
8532309000	기타	0	0	
8532901000	고정식의	0	0	
8532902000	가변식의 것	0	0	
8532909000	기타	0	0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0	0	
8533211000	칩형의 것	0	0	
8533219000	기타	0	0	
8533291000	칩형의 것	0	0	
8533299000	기타	0	0	
8533310000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0	
8533390000	기타	0	0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	0	
8533402000	써머스터	0	0	
8533403000	바리스터	0	0	
8533409000	기타	0	0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	0	
8533909000	기타의 것	0	0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 저항기, 축전지 등)이 형성된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34002000	테이프형 또는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	0	
8534009000	기타	0	0	
8535100000	퓨즈	8	0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4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400000	파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8	0	
8535901000	커넥터	8	0	
8535902000	터미널	8	0	
8535909000	기타	8	0	
8536101000	관형의 것	8	0	
8536109000	기타	8	0	
8536200000	자동차단기	8	0	
853630000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8	0	
853641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8	0	
8536490000	기타	8	3	
8536501000	회전형의 것	8	0	
8536502000	푸쉬 버튼형의 것	8	0	
8536503000	마이크로형의 것	8	0	
8536504000	전자계폐형의 것(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8	0	
8536509010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0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에 한한다)	0	0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36509090	기타	8	0	
8536610000	램프홀더	8	0	
8536691000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0	0	
8536699000	기타	8	0	
8536701000	플라스틱제의 것	8	3	
8536702000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의 것	8	0	
8536703010	주조 · 주형 ·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8536703090	기타	8	0	
8536901000	접속함	0	0	
8536909010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0	
8536909090	기타	8	0	
8537101000	배전반	8	3	
8537102000	자동제어반	8	0	
8537109000	기타	8	0	
8537201000	배전반	8	0	
8537202000	자동제어반	8	0	
853720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38100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7호의 물품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8	0	
8538901000	개폐기의 것	8	0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8	0	
8538903000	계전기의 것	8	0	
8538904000	자동제어반의 것	8	0	
8538909000	기타	8	0	
8539100000	실드빔 램프유닛	8	0	
8539210000	텅스텐 할로겐의 것	8	3	
8539221000	백열램프	8	0	
8539222000	장식용 램프	8	0	
8539223000	빔 램프	8	0	
8539224000	집어용 램프	8	0	
8539229000	기타	8	0	
8539290000	기타	8	0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8	0	
8539321000	수은램프	8	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8	0	
8539323000	메탈할라이드램프	8	3	
8539390000	기타	8	0	
8539410000	아크 램프	8	0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8539491090	기타	8	0	
8539492000	적외선 램프	8	0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8	0	
8539909000	기타	8	0	
8540110000	천연색의 것	8	0	
8540120000	흑백 또는 단색의 것	8	0	
8540201000	텔레비전용 촬상관	8	0	
8540209000	기타	8	0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인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85405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한다)	8	0	
8540601000	천연색의 것	8	0	
8540609000	기타	8	0	
8540710000	자전관	8	0	
8540720000	속도변조관	8	0	
8540790000	기타	8	0	
8540810000	수신관 또는 증폭관	8	0	
8540891000	송신기용의 열전자관	8	0	
8540892000	방전관	8	0	
8540893000	디지트론	8	0	
8540899000	기타	8	0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8	0	
8540912000	전자총	8	0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8	0	
8540919000	기타	8	0	
8540990000	기타	8	0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109000	기타	0	0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219000	기타	0	0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41299000	기타	0	0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302000	다이리스터	0	0	
8541303000	다이액	0	0	
8541304000	트라이액	0	0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402010	레이저소자	0	0	
8541402090	기타	0	0	
8541409010	광전도 셀	0	0	
8541409020	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펴 및 포토릴레이를 포함한다)	0	0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	0	
8541409090	기타	0	0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502000	정류소자	0	0	
8541509000	기타	0	0	
8541601000	수정전동자	0	0	
8541609000	기타	0	0	
8541901000	리드프레임	0	0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	0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	0	
8541909000	기타	0	0	
854231101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231102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싸피유)	0	0	
8542311030	마이크로컨트롤러	0	0	
8542311040	디지털신호처리기	0	0	
8542311090	기타	0	0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21010	디램	0	0	
8542321020	에스램	0	0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	0	
8542321090	기타	0	0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3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	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9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	0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901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1090	기타	0	0	
8542902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2090	기타	0	0	
8542903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3090	기타	0	0	
8543100000	입자가속기	8	0	
8543200000	신호발생기	8	0	
8543300000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 용 기기	8	0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라이저	8	0	
8543702010	이온정수기	8	0	
8543702020	미용기기	8	0	
8543702030	오디오믹서	8	0	
8543702040	이퀄라이저	8	0	
8543702050	오존 발생기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43702090	기타	8	0	
8543703000	전자변역기 또는 전자사전	0	0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8	0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8	0	
8543709030	전기신경자극기	0	0	
8543709090	기타	8	0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3909010	전자변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543909020	전자변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43909090	기타	8	0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8	0	
8544119000	기타	8	0	
8544190000	기타	8	0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8	0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8	0	
8544421010	전기통신용의 것	0	0	
8544421090	기타	8	0	
8544422010	전기통신용의 것	0	0	
8544422090	기타	8	0	
8544429010	전기통신용의 것	0	0	
8544429090	기타	8	0	
8544491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1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1090	기타	8	0	
8544492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2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3	
8544492090	기타	8	3	
8544499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9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9090	기타	8	0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1090	기타	8	3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2090	기타	8	0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3090	기타	8	0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	0	
8545110000	노용의 것	5	0	
8545190000	기타	5	0	
8545200000	브러시	8	0	
8545901000	탄소봉	8	0	
8545909000	기타	8	0	
8546101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	0	
8546102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46201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2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초과 10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3000	정격전압이 10킬로볼트 초과 100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4000	정격전압이 100킬로볼트 초과 300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46205000	정격전압이 300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46901000	플라스틱제의 애자	8	0	
8546909000	기타	8	0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0	
8547200000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8	0	
8547900000	기타	8	0	
8548101000	소호 제3824.90호의 것	6.5	0	
8548102000	소호 제7204.21호, 제7204.29호, 제7204.30호 또는 제7204.49호의 것	0	0	
8548103000	소호 제7404.00호의 것	0	0	
8548104010	소호 제7503.00호의 것	0	0	
8548104020	소호 제7902.00호의 것	0	0	
8548105000	소호 제7802.00호의 것	0	0	
8548106010	소호 제8107.30호의 것	3	0	
8548106020	소호 제8111.00호의 것	3	0	
8548107000	소호 제8506.10호, 제8506.30호, 제8506.40호, 제8506.50호, 제8506.60호 또는 제8506.80호의 것	8	0	
8548109000	기타	8	0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8909000	기타	8	0	
860110000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5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0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	0	
8602900000	기타	0	0	
8603101000	객차	5	5	
8603102000	화차	5	0	
8603901000	객차	5	0	
8603902000	화차	5	0	
8604001000	공작차	5	0	
8604002000	기중기차	5	3	
8604003000	검사차	5	0	
8604004000	궤도검사차	5	3	
8604009000	기타	5	0	
8605001010	침대차	5	0	
8605001090	기타	5	0	
8605002000	수하물차	5	0	
8605003000	우편차	5	0	
8605004000	병원차	5	0	
8605009000	기타	5	0	
8606100000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0	0	
8606300000	자기양하식의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을 제외한다)	0	0	
8606911000	단열 또는 냉동용의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을 제외한다)	0	0	
8606919000	기타	0	0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606990000	기타	0	0	
8607110000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	0	
8607120000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	0	
8607191000	차축	5	3	
8607192000	차륜	5	3	
8607193000	윤축	5	3	
8607199000	기타	5	0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5	
8607290000	기타	5	3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607301000	혹	5	0	
8607302000	연결장치	5	3	
8607303000	완충장치	5	3	
8607309000	기타	5	0	
8607910000	기관차용의 것	5	0	
8607990000	기타	5	3	
8608001000	철도 또는 궤도선로용 장치물	8	0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 관제용의 기기	8	0	
8608009000	부분품	8	0	
8609001000	액체 운반용의 것	0	0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의 것	0	0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의 것	0	0	
8609004000	동물 운반용의 것	0	0	
8609005000	냉동 및 냉장용의 것	0	0	
8609009000	기타	0	0	
8701100000	모행운전형 트랙터	8	0	
8701201000	신차	8	5	
8701202000	중고차	8	5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8701901010	신차	8	5	
8701901020	중고차	8	5	
8701909110	50마력 미만인 것	0	0	
8701909190	기타	0	0	
8701909900	기타	8	0	
8702101010	신차	10	0	
8702101020	중고차	10	0	
8702102010	신차	10	0	
8702102020	중고차	10	0	
8702103010	신차	10	0	
8702103020	중고차	10	0	
8702901010	신차	10	0	
8702901020	중고차	10	0	
8702902010	신차	10	0	
8702902020	중고차	10	0	
8702903010	신차	10	0	
8702903020	중고차	10	0	
8703101000	설상주행용의 것	8	0	
8703102000	골프용차	8	0	
8703109000	기타	8	0	
8703217000	신차	8	5	
8703218000	중고차	8	5	
8703227000	신차	8	5	
8703228000	중고차	8	5	
8703231010	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3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3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231020	중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3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3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239010	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3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3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239020	중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3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3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241010	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3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5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241020	중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3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5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249010	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3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5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249020	중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3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5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317000	신차	8	5	
8703318000	중고차	8	5	
8703321010	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5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5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321020	중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5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5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329010	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5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5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329020	중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5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5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3	
8703337000	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3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5	
	- 구급차		5	
	- 호움카		5	
	- 기타		5	
8703338000	중고차	8		
	- 세단형의 것		3	
	- 찰형의 것		3	
	- 케리올 트럭형·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5	
	- 스테이션 왜곤		5	
	- 구급차		5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 호우카		5	
	- 기타		5	
8703907000	전기자동차	8	5	
8703909000	기타	8	5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704211010	신차	10	0	
8704211020	중고차	10	0	
870421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219020	탱크차	10	0	
8704219090	기타	10	0	
8704221011	신차	10	3	
8704221012	중고차	10	3	
8704221091	신차	10	3	
8704221092	중고차	10	3	
870422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229020	탱크차	10	0	
8704229090	기타	10	0	
8704231010	신차	10	5	
8704231020	중고차	10	5	
870423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239020	탱크차	10	0	
8704239090	기타	10	3	
8704311010	신차	10	0	
8704311020	중고차	10	0	
870431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319020	탱크차	10	0	
8704319090	기타	10	0	
8704321010	신차	10	0	
8704321020	중고차	10	0	
870432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329020	탱크차	10	0	
8704329090	기타	10	0	
8704901010	신차	10	0	
8704901020	중고차	10	0	
870490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909020	탱크차	10	0	
8704909090	기타	10	0	
8705101000	신축붐식의 것	8	0	
8705102000	앵글식의 것	8	0	
8705109000	기타	8	0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8	0	
8705300000	소방차	8	0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	0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8	0	
8705901090	기타	8	0	
8705909010	구난차	8	0	
8705909020	도로청소차	8	0	
8705909030	이동공작차	8	0	
8705909040	이동방송차	8	0	
8705909050	이동진료차	8	0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8	0	
8705909070	제설차	8	0	
8705909090	기타	8	3	
8706001010	소호 제8701.20호 또는 제8701.90.10호의 것	8	0	
870600109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706002000	제8702호의 것	8	0	
8706003000	제8703호의 것	8	0	
8706004000	제8704호의 것	8	0	
8706005000	제8705호의 것	8	0	
8707100000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8	0	
8707901010	소호 제8701.20호 또는 제8701.90.10호의 것	8	0	
8707901090	기타	8	0	
8707902000	제8702호의 것	8	0	
8707903000	제8704호의 것	8	0	
8707904000	제8705호의 것	8	0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	0	
8708210000	안전벨트	8	0	
8708290000	기타	8	0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	0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8	0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	0	
8708309000	기타	8	0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	0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8	0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	0	
870870000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	0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8	0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	0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8	0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	0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	0	
8708951000	에어백	8	0	
8708959000	기타	8	0	
8708991010	제8701호의 것	8	0	
8708991020	제8702호의 것	8	0	
8708991030	제8703호의 것	8	0	
8708991040	제8704호의 것	8	0	
8708991050	제8705호의 것	8	0	
8708999000	기타	8	0	
8709110000	전기식의 것	8	0	
8709190000	기타	8	0	
8709900000	부분품	8	3	
8710001000	전차	0	0	
8710002000	기타의 장갑차량	0	0	
8710009000	부분품	0	0	
87111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102000	모페드	8	0	
8711103000	사이드카	8	0	
8711109000	기타	8	0	
87112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202000	사이드카	8	0	
8711209000	기타	8	0	
87113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302000	사이드카	8	0	
8711309000	기타	8	0	
87114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402000	사이드카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711409000	기타	8	0	
87115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502000	사이드카	8	0	
8711509000	기타	8	0	
87119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902000	사이드카	8	0	
8711909000	기타	8	0	
8712001000	경기용의 것	8	0	
8712009010	화물운반용의 것	8	0	
8712009020	삼륜자전거	8	0	
8712009090	기타	8	0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8713900000	기타	0	0	
8714110000	안장	8	0	
8714190000	기타	8	0	
8714200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	0	
8714911000	프레임	8	0	
8714912000	포크	8	0	
8714919000	기타 부분품	8	0	
8714921000	휠 림	8	0	
8714922000	스포크	8	0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8	0	
8714932000	프리 휠스프로킷 휠	8	0	
8714941000	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	8	0	
8714942000	기타 브레이크	8	0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50000	안장	8	0	
8714961000	페달	8	0	
8714962000	크랭크 기어	8	0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90000	기타	8	0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8	0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및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8	0	
8716200000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8	0	
8716390000	기타	8	0	
8716400000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801000	손수레	8	0	
8716802000	우마차	8	0	
8716803000	썰매	8	0	
8716809000	기타	8	0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	0	
8716909000	기타	8	0	
8801001010	글라이더	0	0	
8801001020	행글라이더	0	0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	0	
8801009090	기타	0	0	
8802111000	군용의 것	0	0	
8802119000	기타	0	0	
8802121000	군용의 것	0	0	
8802129000	기타	0	0	
88022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2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802209000	기타	0	0	
88023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3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	0	
8802309000	기타	0	0	
88024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4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	0	
8802409000	기타	0	0	
8802601010	인공위성	0	0	
8802601090	기타	0	0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	0	
8802603000	서보비틀	0	0	
880310000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0	0	
880320000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8803301000	비행기용의 것	0	0	
8803302000	헬리콥터용의 것	0	0	
8803901000	글라이더 또는 행글라이더용의 것	0	0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용의 것	0	0	
8803909000	기타	0	0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	0	
8804002000	로토슈트	0	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	0	
8804009020	로토슈트의 것	0	0	
8805101010	군·경찰용의 것	0	0	
8805101090	기타	5	0	
8805102010	군·경찰용의 것	0	0	
8805102090	기타	5	0	
8805109010	군·경찰용의 것	0	0	
8805109090	기타	5	0	
8805211010	군·경찰용의 것	0	0	
8805211090	기타	5	0	
8805212010	군·경찰용의 것	0	0	
8805212090	기타	5	0	
8805291010	군·경찰용의 것	0	0	
8805291090	기타	5	0	
8805292010	군·경찰용의 것	0	0	
8805292090	기타	5	0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트	0	0	
8901200000	탱커	0	0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을 제외한다)	0	0	
8901901000	화물선	0	0	
8901902000	화객선	0	0	
8902001010	철강선	0	0	
8902001020	에프·알·피선	0	0	
8902001030	목조선	0	0	
8902001090	기타	0	0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0	0	
8902002090	기타	0	0	
8903100000	인플래터블식의 것	8	0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를 제외한다)	8	0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	8	0	
8903999000	기타	8	0	
8904001000	예인선	5	0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	5	0	
8904009000	기타	5	0	
8905100000	준설선	5	0	
8905201000	시추대	5	0	
8905202000	작업대	5	0	
8905209000	기타	5	0	
8905901000	조명선	5	0	
8905902000	소방선	5	0	
8905903000	기중기선	5	0	
8905904000	발전선	5	0	
8905905000	해난구조선	5	0	
8905906000	공작선	5	0	
8905907000	시추선	5	0	
8905908000	부선거	5	0	
8905909000	기타	5	0	
8906100000	군함	0	0	
8906900000	기타	0	0	
8907100000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5	0	
8907901000	부교(소호 제8907.10호의 것을 제외한다)	5	0	
8907902000	탱크	5	0	
8907903000	코퍼댐	5	0	
8907904000	부잔교	5	0	
8907905000	부표	5	3	
8907906000	수로부표	5	0	
8907909000	기타	5	0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	0	
8908009000	기타	0	0	
9001101000	광섬유	8	0	
9001102000	광섬유다발	8	0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8	0	
9001200000	편광재료제의 판	8	0	
9001300000	콘택트렌즈	8	3	
9001401000	시력 교정용의 것	8	0	
9001409000	기타	8	0	
9001501000	시력 교정용의 것	8	0	
9001509000	기타	8	0	
9001901000	프리즘	8	3	
9001902000	반사경	8	0	
9001903000	기타의 렌즈	8	0	
9001909000	기타	8	0	
9002111000	사진기용의 것	8	0	
9002119010	촬영기 및 비디오카메라용의 것	8	0	
9002119020	영사기용의 것	8	3	
9002119090	기타	8	0	
9002191000	현미경용의 것	8	0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의 것	8	0	
9002199000	기타	8	3	
9002201000	사진기용의 것	8	0	
9002209000	기타	8	0	
9002901000	사진기용의 것	8	0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02909090	기타	8	0	
9003110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3199000	기타	8	0	
9003900000	부분품	8	3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109000	기타	8	3	
9004901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1090	기타	8	0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9090	기타	8	0	
9005100000	쌍안경	8	3	
9005801000	단안경	8	0	
9005802010	반사망원경	8	0	
9005802020	굴절식 천체 망원경	8	0	
9005802030	자오의 · 적도의 · 천경의와 경위의	8	0	
9005802090	기타	8	0	
9005809000	기타	8	0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	0	
9006100000	인쇄제판용 사진기	8	0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8	0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8	0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 또는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8	3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8	0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8	0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8	0	
9006409000	기타	8	0	
900651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19000	기타	8	0	
900652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2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8	0	
9006529090	기타	8	0	
900653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8	0	
900653902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8	0	
9006539090	기타	8	0	
900659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9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8	0	
9006599090	기타	8	0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8	0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9006699000	기타	8	0	
9006910000	카메라용의 것	8	3	
9006990000	기타	8	3	
9007110000	폭이 16밀리미터 미만 또는 더블 8밀리미터의 필름용인 것	8	0	
9007191000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	0	
9007199000	기타	8	0	
9007201000	폭이 16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	0	
9007209010	폭이 20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	0	
9007209020	폭이 2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용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007910000	촬영기용의 것	8	0	
9007920000	영사기용의 것	8	0	
9008100000	환등기	8	0	
900820000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를 불문 한다)	8	0	
9008300000	기타의 투영기	8	0	
9008401000	인쇄제판 조정용의 것	8	0	
9008402000	마이크로 필름용의 것	8	0	
9008409000	기타	8	0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0101000	인쇄 제판용의 것	8	3	
9010102000	마이크로필름용의 것	8	0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10109090	기타	8	0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	0	
9010509000	기타	8	0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8	0	
9010901010	제9010.50.1000호의 것	0	0	
9010901090	기타	0	0	
9010909000	기타	8	3	
9011100000	입체현미경	8	3	
9011201000	마이크로 사진용의 것	8	0	
9011209000	기타	8	0	
9011801000	편광 현미경	8	0	
9011802000	금속 현미경	8	0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8	0	
9011804000	생물 현미경	8	0	
9011805000	비교 현미경	8	0	
9011809000	기타	8	0	
9011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2101000	현미경	8	0	
9012102000	회절기기	8	0	
9012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3100000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및 이 류 또 는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8	0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8	0	
90138010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8	0	
9013801020	전자계산기용의 것	0	0	
9013801030	텔레비전용의 것	8	0	
9013801090	기타	8	0	
9013802000	확대경, 루페 및 섬유 카운터	8	0	
9013803000	도어아이	8	0	
9013809000	기타	8	0	
9013901000	제9013.80.1020호의 것	0	0	
9013909000	기타	8	0	
9014101010	항공기용의 것	8	0	
9014101090	기타	8	0	
9014102010	항공기용의 것	8	0	
9014102090	기타	8	0	
9014109000	기타	8	0	
901420000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를 제 외한다)	8	0	
9014800000	기타의 항행용 기기	8	0	
90149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9014909000	기타	8	0	
9015100000	거리측정기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015200000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8	0	
9015300000	수준기	8	3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8	0	
9015801000	토지 측량용의 것	8	0	
9015802000	수로 측량용의 것	8	0	
9015803000	해양 측량용의 것	8	0	
9015804000	수리 계측용의 것	8	0	
9015805000	기상 관측용의 것	8	0	
9015809000	기타	8	0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6001000	직시식의 것	8	0	
9016002000	전자식의 것	8	3	
9016008000	기타	8	0	
9016009000	부분품 및 부속품	8	0	
9017101000	플로터	0	0	
9017109000	기타	8	0	
9017201010	플로터	0	0	
9017201090	기타	8	0	
9017202010	플로터	0	0	
9017202090	기타	8	0	
9017203000	계산용구	8	0	
9017209000	기타	8	0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8	0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8	0	
9017303000	버니어 캘리퍼스	8	0	
9017309000	기타	8	0	
9017801000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8	0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17809090	기타	8	0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9017909090	기타	8	0	
9018111000	심전계	8	5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8	5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8	5	
90181400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8	0	
9018191000	뇌파계	8	0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8	0	
9018194000	혈압측정기기	8	0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8	5	
9018198000	기타	8	7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201000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8	3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310000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8	0	
9018321000	주사침	8	3	
9018322000	봉합침	8	0	
9018329000	기타	8	0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8	3	
9018392000	카테터	8	3	
9018398000	기타	8	3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8	3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491000	치과용 바아	8	3	
9018492000	치과용 유닛	8	3	
9018493000	치석 제거기	8	5	
9018498000	기타	8	5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5	
9018501000	안과용 기기	8	5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901000	임신진단기	8	0	
9018909010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8	5	
9018909020	산부인과용 기기	8	0	
901890903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 등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8	5	
9018909040	인공신장기	8	0	
9018909050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8	3	
9018909060	수의학 기기	8	0	
9018909080	기타	8	7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	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	0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0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	0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	0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	0	
9019204000	인공호흡기	0	0	
9019208000	기타	0	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0001000	가스마스크	8	0	
9020008000	기타의 호흡용 기기	8	0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1100000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0	0	
9021210000	의치	0	0	
9021290000	기타	0	0	
9021310000	인조관절	0	0	
9021390000	기타	0	0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0	0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0	0	
9021901000	스크루·스테이블·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	0	
9021908000	기타	0	0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8	3	
9022130000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8	3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8	5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8	3	
9022141090	기타	8	7	
9022142000	수의학의 것	8	0	
90221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8	3	
9022192000	공업용의 것	8	3	
9022199000	기타	8	0	
9022211010	감마사진기 장치	8	0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8	0	
9022211030	코발트 치료기	8	0	
9022211090	기타	8	3	
9022212000	수의학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0222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8	0	
9022292000	공업용의 것	8	0	
9022299000	기타	8	0	
9022300000	엑스선관	8	0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8	3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8	0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8	0	
9022901090	기타	8	0	
9022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5	
9023001000	인체 또는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8	0	
9023009000	기타	8	0	
9024101000	경도시험기	8	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8	0	
9024103000	압축시험기	8	0	
9024104000	피로시험기	8	0	
9024105000	만능시험기	8	0	
9024109000	기타	8	0	
9024801010	신축시험기	8	0	
9024801020	마모시험기	8	0	
9024801090	기타	8	0	
9024809010	탄성시험기	8	0	
9024809020	소성시험기	8	0	
9024809090	기타	8	0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9024909000	기타	8	0	
9025111000	의료용 또는 수의용 온도계	0	0	
9025119000	기타	8	0	
9025191000	온도계	8	0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8	0	
9025192090	기타	8	0	
9025801000	액체 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8	0	
9025802010	수은 기압계	8	0	
9025802090	기타	8	0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8	0	
9025803020	모발 습도계	8	0	
9025803090	기타	8	0	
9025809000	기타	8	0	
9025901100	온도센서	8	0	
9025901200	습도센서	8	0	
9025901900	기타센서	8	0	
9025909000	기타	8	0	
9026101000	유량계	0	0	
9026102000	액면계	0	0	
9026109000	기타	0	0	
9026201110	액체형의 것	0	0	
9026201120	금속형의 것	0	0	
9026201190	기타	0	0	
9026201900	기타	0	0	
9026209000	기타	0	0	
9026801000	열측정계	0	0	
9026802000	풍력계	0	0	
9026809000	기타	0	0	
9026901100	레벨센서	0	0	
9026901200	유량·유속센서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026901300	압력센서	0	0	
9026901400	열센서(온도센서 및 열량센서를 제외한다)	0	0	
9026901900	기타센서	0	0	
9026909000	기타	0	0	
902710000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8	0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9027301000	분광계	0	0	
9027302000	분광광도계	0	0	
9027303000	분광사진기	0	0	
9027501000	편광계	0	0	
9027502000	굴절계	0	0	
9027503000	비색계	0	0	
9027504000	조도계	0	0	
9027509000	기타	0	0	
9027801000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0	0	
9027802010	피 · 에이치 미터	0	0	
9027802020	열량계	0	0	
9027802030	점도계	0	0	
9027802040	팽창계	0	0	
9027802050	노출계	8	0	
9027802090	기타	0	0	
9027901000	마이크로톰	8	0	
9027909110	가스센서	8	0	
9027909121	분진센서	0	0	
9027909122	매연센서	8	0	
9027909130	열량센서	0	0	
9027909190	기타	0	0	
90279099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27909991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의 것	8	0	
9027909999	기타	0	0	
9028101010	디지털식의 것	8	0	
9028101090	기타	8	3	
90281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201010	디지털식의 것	8	0	
9028201090	기타	8	0	
90282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30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8	0	
902830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8	0	
90283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9101000	적산회전계	8	0	
9029102000	생산량계	8	0	
9029103000	택시미터	8	0	
9029104000	주행거리계	8	0	
9029105000	기계 등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계기	8	0	
9029109000	기타	8	0	
9029201010	시계식의 것	8	0	
9029201090	기타	8	0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	8	0	
9029901100	속도센서	8	5	
9029901200	회전센서	8	0	
9029901900	기타센서	8	0	
9029909000	기타	8	0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0	0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030201090	기타	8	0	
9030202010	음극선관의 것	8	0	
9030202090	기타	8	0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8	0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8	0	
9030331000	전압계	8	0	
9030332000	전류계	8	0	
9030333000	회로계	8	0	
9030334000	저항계	8	0	
9030335000	검류계	8	0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39000	기타	8	0	
9030391000	전압계	8	0	
9030392000	전류계	8	0	
9030393000	회로계	8	0	
9030394000	저항계	8	0	
9030395000	검류계	8	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99000	기타	8	0	
9030401000	누화계	0	0	
9030402000	계인측정계	0	0	
9030403000	만곡률계	0	0	
9030404000	잡음전압계	0	0	
9030409000	기타	0	0	
90308200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 용의 것	0	0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8	0	
9030890000	기타	8	0	
9030901100	전자기센서	8	0	
9030901200	방사선센서	8	0	
9030901900	기타센서	8	0	
9030909010	소호 제9030.82호의 것(소호 제9030.90호 의 센서를 포함한다)	0	0	
9030909090	기타	8	0	
9031100000	균형시험기	8	0	
9031200000	테스트벤치	8	0	
9031411000	포시미터	0	0	
9031419000	기타	0	0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8	0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와 앵글게이지	8	0	
9031493000	포시미터	8	0	
9031494010	반도체 제조공정의 것	0	0	
9031494090	기타	8	0	
903149901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오염상태 측정 용의 것	0	0	
9031499090	기타	8	0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8	0	
9031802000	로드셀	8	0	
9031809010	내연기관특성 시험기	8	0	
9031809020	기어 테스터	8	0	
9031809030	면적계	8	0	
9031809040	구면계	8	0	
9031809050	직물검사장치	8	0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8	0	
9031809070	흡·균열 등 측정기	8	0	
9031809080	동력시험기	8	0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031809099	기타	8	0	
903190111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	0	
9031901119	기타의 것	0	0	
9031901190	기타	8	0	
903190129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	0	
9031901292	기타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31901299	기타	8	0	
903190191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	0	
9031901919	기타의 것	0	0	
9031901990	기타	8	0	
9031909011	소호 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0	0	
9031909019	기타의 것	0	0	
9031909090	기타	8	0	
9032101010	냉장고용의 것	8	0	
903210102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101090	기타	8	0	
9032102000	고정식의 것	8	0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	8	0	
9032811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11090	기타	8	0	
9032812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32812099	기타	8	0	
9032819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19090	기타	8	0	
9032891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1090	기타	8	0	
9032892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2090	기타	8	0	
9032893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3090	기타	8	0	
9032899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9090	기타	8	0	
903290100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909000	기타	8	0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9000	기타	8	0	
9101210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01290000	기타	8	0	
91019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1990000	기타	8	0	
9102111000	맹인용의 것	8	0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11901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119090	기타	8	0	
910212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129010	맹인용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129090	기타	8	0	
9102191000	배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199010	맹인용의 것	8	0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199090	기타	8	0	
9102211000	맹인용의 것	8	0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219000	기타	8	0	
9102291000	맹인용의 것	8	0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299000	기타	8	0	
9102911000	스톱워치	8	0	
9102912000	맹인용의 것	8	0	
9102919010	배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919090	기타	8	0	
9102991000	스톱워치	8	0	
9102992000	맹인용의 것	8	0	
9102999000	기타	8	0	
9103101000	여행용시계	8	0	
9103109000	기타	8	0	
9103901000	여행용시계	8	0	
9103909000	기타	8	0	
9104001000	차량용의 것	8	0	
9104002000	항공기용의 것	8	0	
9104004000	선박용의 것	8	0	
9104009000	기타	8	0	
91051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5190000	기타	8	0	
91052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5290000	기타	8	0	
91059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5990000	기타	8	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8	0	
9106901000	순찰시계	8	0	
9106902000	타이머	8	0	
9106903000	주차시간 기록계	8	0	
9106909000	기타	8	0	
9107001000	동기 전동기를 갖춘 것	8	0	
9107009000	기타	8	0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0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0	
9108190000	기타	5	0	
9108200000	자동권식의 것	5	0	
9108900000	기타	5	0	
9109110000	자명종 시계용의 것	8	0	
9109190000	기타	8	0	
9109900000	기타	8	0	
9110111000	배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10112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10119000	기타	8	0	
9110121000	배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110122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10129000	기타	8	0	
911019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10192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10199000	기타	8	0	
911090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10909000	기타	8	0	
9111100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8	0	
9111200000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 여부를 불문한다)	8	0	
9111800000	기타의 케이스	8	0	
9111901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11909000	기타	8	0	
9112200000	케이스	8	0	
9112900000	부분품	8	0	
9113100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13200000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 여부를 불문한다)	8	0	
9113901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113902000	가죽 또는 콤팩트선레더제의 것	8	0	
9113909000	기타	8	0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8	0	
9114200000	시계용 보석	8	0	
9114300000	문자판	8	0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	8	0	
9114900000	기타	8	0	
9201101000	자동식의 것	8	0	
9201109000	기타	8	0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8	5	
9201901000	하프시코드	8	0	
9201909000	기타	8	0	
9202101000	바이올린	8	3	
9202102000	첼로	8	3	
9202109000	기타	8	3	
9202901000	기타	8	0	
9202902000	하프	8	0	
9202903000	만도린	8	0	
9202904000	밴조우	8	0	
9202909000	기타	8	0	
9205101000	트럼펫	8	0	
9205102000	트럼본	8	0	
9205109000	기타	8	0	
9205901010	플루트	8	0	
9205901020	클라리넷	8	0	
9205901030	섹스폰	8	0	
9205901040	리코오더	8	0	
9205901090	기타	8	0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8	0	
9205902020	리드 오르간	8	0	
9205902090	기타	8	0	
9205903010	아코디언	8	0	
9205903020	멜로디카	8	0	
9205903090	기타	8	0	
9205904000	하모니카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205909000	기타	8	0	
9206001000	북	8	0	
9206002000	목금	8	0	
9206003000	심벌	8	0	
9206004000	캐스터네츠	8	0	
9206005000	마라카스	8	0	
9206006000	탬버린	8	0	
9206009000	기타	8	0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8	0	
9207103000	피아노	8	0	
9207109000	기타	8	0	
9207901000	기타	8	0	
9207902000	아코디언	8	0	
9207903000	리듬박스	8	0	
9207909000	기타	8	0	
9208100000	뮤지컬박스	8	0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8	0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8	0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	8	0	
9208904000	뮤우지컬 소오	8	0	
9208909000	기타	8	0	
9209301000	금속선제의 것	8	0	
9209309000	기타	8	0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20000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40000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91000	뮤지컬 무브먼트의 것	8	0	
9209992000	박절기·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律管)	8	0	
9209993000	뮤지컬 박스용의 메커니즘	8	0	
9209999000	기타	8	0	
9301110000	자주식의 것	0	0	
9301190000	기타	0	0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 발사관 및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	0	
9301902010	노리쇠작동	0	0	
9301902020	반자동	0	0	
9301902030	완전자동	0	0	
9301902090	기타	0	0	
9301903000	기관총	0	0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	0	0	
9301904090	기타	0	0	
9301909000	기타	0	0	
9302001010	리볼버	0	0	
9302001021	반자동	0	0	
9302001029	기타	0	0	
9302001030	피스톨(다열총열)	0	0	
9302001090	기타	0	0	
9302009010	리볼버	0	0	
9302009021	반자동	0	0	
9302009029	기타	0	0	
9302009030	피스톨(다열총열)	0	0	
9302009090	기타	0	0	
9303100000	총 구장전화기	8	0	
9303201011	펌프작동	8	0	
9303201012	반자동	8	0	
9303201019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9303201090	기타	8	0	
9303209011	펌프작동	8	0	
9303209012	반자동	8	0	
9303209019	기타	8	0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9303209090	기타	8	0	
9303301010	단발	8	0	
9303301020	반자동	8	0	
9303301090	기타	8	0	
9303309010	단발	8	0	
9303309020	반자동	8	0	
9303309090	기타	8	0	
9303900000	기타	8	0	
9304001000	공기총	8	0	
9304009000	기타	8	0	
9305101010	격발장치	0	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101030	총열	0	0	
9305101040	피스톤·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0	0	
9305101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0	0	
9305101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0	0	
9305101070	개머리판·손잡이 및 플레이트	0	0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0	0	
9305101090	기타	0	0	
9305109010	격발장치	8	0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109030	총열	8	0	
9305109040	피스톤·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8	0	
9305109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8	0	
9305109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8	0	
9305109070	개머리판·손잡이 및 플레이트	8	0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8	0	
9305109090	기타	8	0	
9305210000	산탄총의 총열	8	0	
9305291000	격발장치	8	0	
930529200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293000	라이플 총열	8	0	
9305294000	피스톤·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8	0	
930529500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8	0	
930529600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8	0	
930529700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8	0	
9305298000	브리치·노리쇠 및 노리쇠집	8	0	
9305299000	기타	8	0	
9305911010	격발장치	0	0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911030	총열	0	0	
9305911040	피스톤·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0	0	
9305911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0	0	
9305911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0	0	
930591107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0	0	
9305911080	브리치·노리쇠 및 노리쇠집	0	0	
9305911090	기타	0	0	
9305919000	기타	0	0	
9305990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306210000	탄약	0	0	
9306290000	기타	0	0	
9306301000	리베팅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는 무 통 도살기용의 탄약 및 이들의 부분품	0	0	
9306309000	기타	0	0	
9306900000	기타	0	0	
93070000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 분품과 집	0	0	
9401100000	항공기용의 의자	0	0	
9401200000	차량용의 의자	8	0	
9401302000	등나무제의 것	0	0	
9401303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309000	기타	0	0	
9401401000	등나무제의 것	0	0	
9401402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409000	기타	0	0	
94015100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0	0	
9401591000	등나무제의 것	0	0	
9401599000	기타	0	0	
940161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19000	기타	0	0	
940169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99000	기타	0	0	
940171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19000	기타	0	0	
940179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99000	기타	0	0	
9401801000	석재의 것	0	0	
9401809000	기타	0	0	
9401901000	목재의 것	8	0	
9401902000	금속제의 것	8	3	
9401909000	기타	8	0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	0	
9402101020	안과용 의자	0	0	
9402101090	기타	0	0	
9402109010	이발용 또는 미용실용 의자	0	0	
9402109090	기타	0	0	
9402901000	수술대	0	0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	0	
9402903000	분만대	0	0	
9402908000	기타	0	0	
9402909000	부분품	0	0	
9403100000	사무실용 금속제가구	0	0	
9403201000	침대	0	0	
9403209000	기타	0	0	
9403301000	책상	0	0	
9403309000	기타	0	0	
9403401000	식탁	8	0	
9403409000	기타	8	5	
9403501000	침대	0	0	
9403509000	기타	0	0	
9403601010	문갑	0	0	
9403601020	화장대	0	0	
9403601030	장롱	0	0	
9403601090	기타	0	0	
9403609010	문갑	0	0	
9403609020	화장대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403609030	장롱	0	0	
9403609090	기타	0	0	
9403700000	플라스틱제의 가구	0	0	
94038100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0	0	
9403890000	기타	0	0	
9403900000	부분품	8	3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	8	0	
9404210000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8	0	
9404290000	기타 재료의 것	8	0	
9404300000	슬리핑 백	8	3	
9404900000	기타	8	0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109000	기타	8	0	
94052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209000	기타	8	0	
94053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309000	기타	8	0	
9405401000	방폭형의 것	8	0	
9405402000	투광형의 것	8	0	
9405403000	가로등의 것	8	0	
9405409000	기타	8	0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	0	
9405601000	네온관의 것	8	0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609000	기타	8	0	
9405911000	산데리아용의 것	8	0	
9405919000	기타	8	0	
9405921000	산데리아용의 것	8	0	
9405929000	기타	8	0	
9405991000	산데리아용의 것	8	0	
9405999000	기타	8	0	
9406001000	목제의 것	8	5	
940600901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406009020	철강제의 것	8	0	
9406009030	알루미늄제의 것	8	0	
9406009090	기타	8	3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	0	
9503001200	스쿠터	0	0	
9503001300	페달차	0	0	
9503001400	인형용의 차	0	0	
9503001500	보행기	0	0	
9503001800	기타	0	0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503002110	직물제의 것	8	0	
9503002120	고무제의 것	0	0	
950300213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	0	
9503002150	유리제의 것	0	0	
9503002160	목제의 것	0	0	
9503002190	기타	8	0	
9503002910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8	0	
9503002990	기타	0	0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503003190	부속품	0	0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503.00.31호의 것을 제외한다)	0	0	
9503003300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0	
9503003411	직물제의 것	8	0	
9503003419	기타	8	0	
9503003491	직물제의 것	8	0	
9503003492	고무제의 것	0	0	
9503003493	플라스틱제의 것	8	0	
9503003494	금속제의 것	8	0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	0	
9503003496	유리제의 것	0	0	
9503003497	목제의 것	0	0	
9503003499	기타	8	0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8	0	
9503003600	퍼즐	0	0	
9503003700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0	
9503003800	기타의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9503003919	기타	8	0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을 제외한다)	0	0	
9504100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	0	
9504201000	당구대	0	0	
9504202000	당구공	0	0	
9504209000	기타	0	0	
9504300000	기타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및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0	0	
9504400000	유희용 카드	0	0	
9504901010	핀 테이블	0	0	
9504901020	핀 세터	0	0	
9504901030	볼링 볼	0	0	
9504901040	레인	0	0	
9504901050	볼링 핀	0	0	
9504901090	기타	0	0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	0	
9504903000	기타의 용구	0	0	
9504909010	비디오 게임용구의 것	0	0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	0	
9504909090	기타	0	0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	0	
9505900000	기타	8	0	
9506110000	스키	8	0	
9506120000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8	0	
9506190000	기타	8	0	
9506210000	세일보드	8	0	
9506290000	기타	8	0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한다)	8	0	
9506320000	골프공	8	0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8	0	
9506399000	기타	8	0	
9506401000	탁구대	8	3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506402000	탁구라켓	8	0	
9506403000	탁구공	8	0	
9506409000	기타	8	0	
9506510000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8	0	
9506599000	기타	8	0	
9506610000	로온테니스 공	8	0	
9506621000	축구공	8	0	
9506622000	농구공	8	0	
9506623000	배구공	8	0	
9506624000	송구공	8	0	
9506625000	미식축구용	8	0	
9506629000	기타	8	0	
9506691000	배드민턴공	8	0	
9506692000	야구공	8	0	
9506699000	기타	8	0	
950670000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3	
9506910000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8	0	
9506990000	기타	8	0	
9507101000	유리섬유제의 것	8	0	
9507102000	카아본제의 것	8	0	
9507109000	기타	8	0	
9507200000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9507300000	낚시 릴	8	0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기타의 낚시용구	8	0	
9507909000	기타	8	0	
9508100000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8	0	
9508900000	기타	8	0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8	0	
9601901010	진주양식용 핵	0	0	
9601901090	기타	8	0	
9601902000	뿔로 된 것	8	0	
9601903000	뼈로 된 것	8	0	
9601904000	산호제의 것	8	0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	0	
9601909090	기타	8	0	
9602001000	젤라틴 캡슐	8	0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의 조각용재료(예 : 상아야자)와 식물성의 조각용재료의 제품	8	0	
9602009020	흑옥(광물성의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호박·해포석·응결한 호박·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8	0	
9602009090	기타	8	0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9603210000	치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8	0	
9603290000	기타	8	0	
9603300000	화화용의 붓·필기용의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붓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603400000	페인트용 · 디스토퍼용 · 바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를 제외한다) 및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8	0	
9603500000	기타의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8	0	
9603900000	기타	8	0	
9604000000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8	0	
9605000000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8	0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 · 스냅 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8	3	
9606210000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0	
9606220000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0	
9606291000	조개껍질제의 것	8	0	
9606299000	기타	8	0	
9606300000	단추의 몰드와 단추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8	0	
9607110000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8	3	
9607191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607199000	기타	8	0	
9607201000	비금속제의 것	8	0	
9607202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607209000	기타	8	0	
9608100000	볼펜	8	0	
9608200000	팁이 펄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8	0	
9608310000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펜	8	0	
9608391000	만년필	8	3	
9608399000	기타	8	0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	8	0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8	0	
9608402090	기타	8	0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3	
960860000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608911000	펜촉	8	0	
9608912000	납포인트	8	0	
9608991000	부분품	8	0	
9608999000	기타	8	0	
9609101000	연필	8	3	
9609102000	색연필	8	0	
9609103000	크레용	8	0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609901000	크레용 및 오일파스텔	8	0	
9609902000	파스텔	8	0	
9609903010	필기용의 것	8	0	
9609903090	기타	8	0	
9609909000	기타	8	0	
9610001000	석판	8	0	
9610002000	흑판	8	0	
9610009000	기타	8	0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611001000	스탬프	8	0	
9611002000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8	0	
9611009000	기타	8	0	
9612101000	타자기용의 것	8	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의 것	8	0	
9612109000	기타	8	0	
9612200000	잉크 패드	8	0	
96131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	0	
9613200000	포켓용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613800000	기타의ライター	8	0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8	0	
9613909000	기타	8	0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	8	0	
9614009000	기타	8	0	
9615111000	빗	8	0	
9615119000	기타	8	0	
9615191000	빗	8	0	
9615199000	기타	8	0	
9615901000	머리핀	8	0	
9615909000	기타	8	0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8	0	
9616200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8	0	
9617001000	보온병	8	0	
9617002000	보온 도시락	8	0	
9617008000	기타	8	0	
9617009000	부분품	8	0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	0	
9618002000	자동 인형	8	0	
9618009000	기타	8	0	
9701101000	회화	0	0	
9701102000	데생	0	0	
9701103000	파스텔	0	0	
9701900000	기타	0	0	
9702001000	판화	0	0	
9702002000	인쇄화	0	0	
9702003000	석판화	0	0	
9703001000	조각	0	0	
9703002000	조상	0	0	
9704001000	우표	0	0	
9704009000	기타	0	0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및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0	0	
9706001000	도자기류	0	0	
9706002000	악기류	0	0	
9706009000	기타	0	0	

1) HSK 0805201000은 온주밀감을 포함한다.

2) HSK 0805209000은 맨더린과 클레멘타인을 포함한다.

유럽공동체 당사자 관세양허표

일반 주해

1. 유럽공동체 통합 상품명 및 부호체계(CN)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C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C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CN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C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7년 5월 6일 발효 중인 유럽공동체의 공동관세율을 반영한다.

유럽공동체 당사자 양허표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1	제1류 산 동물			
0101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			
0101 10	- 번식용의 것			
0101 10 10	-- 말	Free	0	
0101 10 90	-- 기타	7.7	0	
0101 90	- 기타			
	-- 말			
0101 90 11	--- 도축용의 것	Free	0	
0101 90 19	--- 기타	11.5	0	
0101 90 30	-- 당나귀	7.7	0	
0101 90 90	-- 노새와 버새	10.9	0	
0102	소			
0102 10	- 번식용의 것			
0102 10 10	-- 어린 암소(송아지를 낳은 적이 없는 암소)	Free	0	
0102 10 30	-- 암소	Free	0	
0102 10 90	-- 기타	Free	0	
0102 90	- 기타			
	-- 가축용			
0102 90 05	--- 80킬로그램이하인 것	10,2 + 93,1 €/100 kg/net	0	
	--- 80킬로그램초과 160킬로그램이하인 것			
0102 90 21	---- 도축용의 것	10,2 + 93,1 €/100 kg/net	0	
0102 90 29	---- 기타	10,2 + 93,1 €/100 kg/net	0	
	--- 160킬로그램초과 300킬로그램이하인 것			
0102 90 41	---- 도축용의 것	10,2 + 93,1 €/100 kg/net	0	
0102 90 49	---- 기타	10,2 + 93,1 €/100 kg/net	0	
	--- 3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어린 암소(송아지를 낳은 적이 없는 암소)			
0102 90 51	----- 도축용의 것	10,2 + 93,1 €/100 kg/net	0	
0102 90 59	----- 기타	10,2 + 93,1 €/100 kg/net	0	
	---- 암소			
0102 90 61	----- 도축용의 것	10,2 + 93,1 €/100 kg/net	0	
0102 90 69	----- 기타	10,2 + 93,1 €/100 kg/net	0	
	---- 기타			
0102 90 71	----- 도축용의 것	10,2 + 93,1 €/100 kg/net	0	
0102 90 79	----- 기타	10,2 + 93,1 €/100 kg/net	0	
0102 90 90	-- 기타	Free	0	
0103	돼지			
0103 10 00	- 번식용의 것	Free	0	
	- 기타			
0103 91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0103 91 10	--- 가축용의 것	41,2 €/100 kg/net	0	
0103 91 90	--- 기타	Free	0	
0103 92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가축용의 것			
0103 92 11	---- 최소 한번 이상 새끼를 낳은 암돼지, 160킬로그램이상	35,1 €/100 kg/net	0	
0103 92 19	---- 기타	41,2 €/100 kg/net	0	
0103 92 90	--- 가축용 돼지 이외 기타	Free	0	
0104	면양과 산양			
0104 10	- 면양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104 10 10	-- 번식용의 것	Free	0	
	-- 기타			
0104 10 30	--- 1년이하의 면양	80,5 €/100 kg/net	0	
0104 10 80	--- 기타	80,5 €/100 kg/net	0	
0104 20	- 산양			
0104 20 10	-- 번식용의 것	3.2	0	
0104 20 90	-- 기타	80,5 €/100 kg/net	0	
0105	가금류(닭 · 오리 · 거위 · 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185그램이하인 것			
0105 11	-- 닭			
	--- 원종계 및 종계용 암탉			
0105 11 11	---- 종계용	52 €/1 000 p/st	0	
0105 11 19	---- 기타	52 €/1 000 p/st	0	
	--- 기타			
0105 11 91	---- 종계용	52 €/1 000 p/st	0	
0105 11 99	---- 기타	52 €/1 000 p/st	0	
0105 12 00	-- 칠면조	152 €/1 000 p/st	0	
0105 19	-- 거위			
0105 19 20	--- 오리	152 €/1 000 p/st	0	
0105 19 90	--- 오리 및 기니아새	52 €/1 000 p/st	0	
	- 기타			
0105 94 00	-- 닭	20,9 €/100 kg/net	0	
0105 99	-- 기타			
0105 99 10	--- 오리	32,3 €/100 kg/net	0	
0105 99 20	--- 거위	31,6 €/100 kg/net	0	
0105 99 30	--- 칠면조	23,8 €/100 kg/net	0	
0105 99 50	--- 기니아새	34,5 €/100 kg/net	0	
0106	기타의 산 동물			
	- 포유류			
0106 11 00	-- 영장류	Free	0	
0106 12 00	-- 고래와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Free	0	
0106 19	-- 기타			
0106 19 10	--- 가축용 토끼	3.8	0	
0106 19 90	--- 기타	Free	0	
0106 20 00	- 파충류(뱀과 거북류 포함)	Free	0	
	- 새			
0106 31 00	-- 맹금류	Free	0	
0106 32 00	-- 앵무류(파로트류, 파라키프류, 금강앵무류, 유황앵무류)	Free	0	
0106 39	-- 기타			
0106 39 10	--- 비둘기	6.4	0	
0106 39 90	--- 기타	Free	0	
0106 90 00	- 기타	Free	0	
02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1 10 00	- 도체와 이분도체	12,8 + 176,8 €/100 kg/net	5	
0201 2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0201 20 20	-- 사분도체	12,8 + 176,8 €/100 kg/net	5	
0201 20 30	-- 앞쪽 1/4부분	12,8 + 141,4 €/100 kg/net	5	
0201 20 50	-- 뒷다리와 우둔살	12,8 + 212,2 €/100 kg/net	5	
0201 20 90	-- 기타	12,8 + 265,2 €/100 kg/net	5	
0201 30 00	- 뼈없는 것	12,8 + 303,4 €/100 kg/net	5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2 10 00	- 도체와 이분도체	12,8 + 176,8 €/100 kg/net	5	
0202 2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202 20 10	-- 사분도체	12,8 + 176,8 €/100 kg/net	5	
0202 20 30	-- 앞쪽 1/4부분	12,8 + 141,4 €/100 kg/net	5	
0202 20 50	-- 뒷다리와 우둔살	12,8 + 221,1 €/100 kg/net	5	
0202 20 90	-- 기타	12,8 + 265,3 €/100 kg/net	5	
0202 30	- 뼈 없는 것			
0202 30 10	-- 쇠고기(냉동, 뼈없는 것, 앞쪽 1/4부분, 완전한 것 또는 최대 5부분으로 절단된 것, 사분도체(두덩어리로 하나는 완전하거나 최대 5부분으로 절단된 앞쪽 1/4부분, 다른 하나는 안심을 제외한 뒷다리와 우둔살 덩어리))	12,8 + 221,1 €/100 kg/net	5	
0202 30 50	-- 목살과 양지머리	12,8 + 221,1 €/100 kg/net	5	
0202 30 90	-- 기타	12,8 + 304,1 €/100 kg/net	5	
0203	돼지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신선 및 냉장			
0203 11	-- 도체와 이분도체			
0203 11 10	---- 가축용 돼지고기	53,6 €/100 kg/net	0	
0203 11 90	---- 기타	Free	0	
0203 12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함)			
	---- 가축용 돼지고기			
0203 12 11	---- 넓적다리와 이를 절단한 것	77,8 €/100 kg/net	0	
0203 12 19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	60,1 €/100 kg/net	0	
0203 12 90	---- 기타	Free	0	
0203 19	-- 기타			
	---- 가축용의 것			
0203 19 11	---- 포어엔드와 이를 절단한 것	60,1 €/100 kg/net	0	
0203 19 13	---- 등심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함)	86,9 €/100 kg/net	0	
0203 19 15	---- 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46,7 €/100 kg/net	0	
	---- 기타			
0203 19 55	----- 뼈없는 것	86,9 €/100 kg/net	0	
0203 19 59	----- 기타	86,9 €/100 kg/net	0	
0203 19 90	---- 기타	Free	0	
	- 냉동 돼지고기			
0203 21	-- 도체와 이분도체			
0203 21 10	---- 가축용의 것	53,6 €/100 kg/net	0	
0203 21 90	---- 기타	Free	0	
0203 22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함)			
	---- 가축용의 것			
0203 22 11	---- 넓적다리살과 이를 절단한 것	77,8 €/100 kg/net	0	
0203 22 19	---- 어깨살과 그 절단육	60,1 €/100 kg/net	0	
0203 22 90	---- 기타	Free	0	
0203 29	-- 기타			
	---- 가축용의 것			
0203 29 11	---- 포어엔드와 이를 절단한 것	60,1 €/100 kg/net	0	
0203 29 13	---- 등심과 이를 절단한 것	86,9 €/100 kg/net	0	
0203 29 15	---- 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46,7 €/100 kg/net	0	
	---- 기타			
0203 29 55	----- 뼈없는 것	86,9 €/100 kg/net	0	
0203 29 59	----- 기타	86,9 €/100 kg/net	0	
0203 29 90	---- 기타	Free	0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10 00	- 어린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2,8 + 171,3 €/100 kg/net	0	
	- 기타 면양의 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4 21 00	-- 도체와 이분도체	12,8 + 171,3 €/100 kg/net	0	
0204 22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204 22 10	--- 앞쪽 1/4부분	12,8 + 119,9 €/100 kg/net	0	
0204 22 30	--- 등뼈/등심 및 베스트엔드	12,8 + 188,5 €/100 kg/net	0	
0204 22 50	--- 다리살	12,8 + 222,7 €/100 kg/net	0	
0204 22 90	--- 기타	12,8 + 222,7 €/100 kg/net	0	
0204 23 00	-- 뼈없는 것	12,8 + 311,8 €/100 kg/net	0	
0204 30 00	- 어린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냉동)	12,8 + 128,8 €/100 kg/net	0	
	- 기타 면양 고기(냉장)			
0204 41 00	-- 도체와 이분도체	12,8 + 128,8 €/100 kg/net	0	
0204 42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0204 42 10	--- 앞쪽 1/4부분	12,8 + 90,2 €/100 kg/net	0	
0204 42 30	--- 등뼈/등심 및 베스트엔드	12,8 + 141,7 €/100 kg/net	0	
0204 42 50	--- 다리살	12,8 + 167,5 €/100 kg/net	0	
0204 42 90	--- 기타	12,8 + 167,5 €/100 kg/net	0	
0204 43	-- 뼈 없는 것			
0204 43 10	--- 어린면양의 것	12,8 + 234,5 €/100 kg/net	0	
0204 43 90	--- 기타	12,8 + 234,5 €/100 kg/net	0	
0204 50	- 산양의 고기			
	-- 신선 또는 냉장			
0204 50 11	--- 도체와 이분도체	12,8 + 171,3 €/100 kg/net	0	
0204 50 13	--- 앞쪽 1/4부분	12,8 + 119,9 €/100 kg/net	0	
0204 50 15	--- 등뼈/등심 및 베스트엔드	12,8 + 188,5 €/100 kg/net	0	
0204 50 19	--- 다리살	12,8 + 222,7 €/100 kg/net	0	
	--- 기타			
0204 50 31	---- 뼈채 절단한 것	12,8 + 222,7 €/100 kg/net	0	
0204 50 39	---- 뼈없는 것	12,8 + 311,8 €/100 kg/net	0	
	-- 냉동의 것			
0204 50 51	--- 도체와 이분도체	12,8 + 128,8 €/100 kg/net	0	
0204 50 53	--- 앞쪽 1/4부분	12,8 + 90,2 €/100 kg/net	0	
0204 50 55	--- 등뼈/등심 및 베스트엔드	12,8 + 141,7 €/100 kg/net	0	
0204 50 59	--- 다리살	12,8 + 167,5 €/100 kg/net	0	
	--- 기타			
0204 50 71	---- 뼈채 절단한 것	12,8 + 167,5 €/100 kg/net	0	
0204 50 79	---- 뼈없는 것	12,8 + 234,5 €/100 kg/net	0	
0205 00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00 20	- 신선 또는 냉장	5.1	0	
0205 00 80	- 냉동의 것	5.1	0	
0206	식용설육(屑肉)(소 · 돼지 · 면양 · 산양 ·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206 10	-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6 10 10	-- 제약용	Free	0	
	-- 기타			
0206 10 91	--- 간	Free	0	
0206 10 95	--- 치마살	12,8 + 303,4 €/100 kg/net	0	
0206 10 99	--- 기타	Free	0	
	- 소의 것(냉동)			
0206 21 00	-- 혀	Free	0	
0206 22 00	-- 간	Free	0	
0206 29	-- 기타			
0206 29 10	--- 제약용	Free	0	
	--- 기타			
0206 29 91	---- 치마살	12,8 + 304,1 €/100 kg/net	0	
0206 29 99	---- 기타	Free	0	
0206 30 00	-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	Free	0	
	- 돼지의 것(냉동)			
0206 41 00	-- 간	Free	0	
0206 49	-- 기타			
0206 49 20	--- 가축용의 것	Free	0	
0206 49 80	--- 기타	Free	0	
0206 80	-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6 80 10	-- 제약용	Free	0	
	-- 기타			
0206 80 91	--- 말, 당나귀, 노새, 버새의 것	6.4	0	
0206 80 99	--- 면양과 산양의 것	Free	0	
0206 90	-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90 10	-- 제약용	Free	0	
	-- 기타			
0206 90 91	--- 말, 당나귀, 노새, 버새의 것	6.4	0	
0206 90 99	--- 면양과 산양의 것	Free	0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닭의 것			
0207 11	--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 11 10	--- '83%의 닭'(털과 내장은 제거, 머리와 다리는 미 제거)	26,2 €/100 kg/net	0	
0207 11 30	--- '70%의 닭'(털, 머리 및 다리는 제거, 목, 심장, 간장 및 위장은 미 제거)	29,9 €/100 kg/net	0	
0207 11 90	--- '65%의 닭'(털, 머리, 다리, 목, 심장, 간장 및 위장 제거), 또는 기타	32,5 €/100 kg/net	0	
0207 12	--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12 10	--- '70%의 닭'(털, 머리 및 다리는 제거, 목, 심장, 간장 및 위장은 미 제거)	29,9 €/100 kg/net	0	
0207 12 90	--- '65%의 닭'(털, 머리, 다리, 목, 심장, 간장 및 위장 제거), 또는 기타	32,5 €/100 kg/net	0	
0207 13	--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절단한 것			
0207 13 10	---- 뼈없는 것	102,4 €/100 kg/net	0	
	---- 뼈있는 것			
0207 13 20	----- 이분도체 또는 사분도체	35,8 €/100 kg/net	0	
0207 13 30	----- 날개(날개끝 포함여부 불문)	26,9 €/100 kg/net	0	
0207 13 40	----- 등, 목, 목이 달린 등, 우둔살 및 날개 끝	18,7 €/100 kg/net	0	
0207 13 50	----- 가슴살 및 이를 절단한 것	60,2 €/100 kg/net	0	
0207 13 60	----- 다리와 이를 절단한 것	46,3 €/100 kg/net	0	
0207 13 70	----- 기타	100,8 €/100 kg/net	0	
	--- 식용설육			
0207 13 91	---- 간	6.4	0	
0207 13 99	---- 기타	18,7 €/100 kg/net	0	
0207 14	--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 절단육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207 14 10	---- 뼈없는 것	102,4 €/100 kg/net	0	
	---- 뼈있는 것			
0207 14 20	----- 이분도체 또는 사분도체	35,8 €/100 kg/net	0	
0207 14 30	---- 날개(날개 끝 포함여부 불문)	26,9 €/100 kg/net	0	
0207 14 40	----- 등, 목, 목이 달린 등, 우둔살 및 날개 끝	18,7 €/100 kg/net	0	
0207 14 50	----- 가슴살 및 이를 절단한 것	60,2 €/100 kg/net	0	
0207 14 60	----- 다리와 이를 절단한 것	46,3 €/100 kg/net	0	
0207 14 70	----- 기타	100,8 €/100 kg/net	0	
	--- 설육			
0207 14 91	---- 간	6,4	0	
0207 14 99	---- 기타	18,7 €/100 kg/net	0	
	- 칠면조의 것			
0207 24	--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 24 10	--- 머리 및 다리 미포함, 목, 심장, 간장, 위장 포함, 칠면조 80%	34 €/100 kg/net	0	
0207 24 90	--- 머리, 다리, 목, 심장, 간장, 위장 미포함, 칠면조 73%	37,3 €/100 kg/net	0	
0207 25	--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25 10	--- 머리 및 다리 미포함, 목, 심장, 간장, 위장 포함, 칠면조 80%	34 €/100 kg/net	0	
0207 25 90	--- 머리, 다리, 목, 심장, 간장, 위장 미포함, 칠면조 73%	37,3 €/100 kg/net	0	
0207 26	--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절단육			
0207 26 10	----- 뼈 없는 것	85,1 €/100 kg/net	0	
	----- 뼈 있는 것			
0207 26 20	----- 이분도체 또는 사분도체	41 €/100 kg/net	0	
0207 26 30	----- 날개(날개 끝 포함여부 불문)	26,9 €/100 kg/net	0	
0207 26 40	----- 등, 목, 목이 달린 등, 우둔살 및 날개 끝	18,7 €/100 kg/net	0	
0207 26 50	----- 가슴살 및 이를 절단한 것	67,9 €/100 kg/net	0	
	----- 다리와 이를 절단한 것			
0207 26 60	----- 드럼스틱과 이를 절단한 것	25,5 €/100 kg/net	0	
0207 26 70	----- 기타	46 €/100 kg/net	0	
0207 26 80	----- 기타	83 €/100 kg/net	0	
	--- 설육			
0207 26 91	---- 간	6,4	0	
0207 26 99	---- 기타	18,7 €/100 kg/net	0	
0207 27	--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 절단육			
0207 27 10	----- 뼈없는 것	85,1 €/100 kg/net	0	
	----- 뼈있는 것			
0207 27 20	----- 이분도체 또는 사분도체	41 €/100 kg/net	0	
0207 27 30	----- 날개(날개 끝 포함여부 불문)	26,9 €/100 kg/net	0	
0207 27 40	----- 등, 목, 목이 달린 등, 우둔살 및 날개 끝	18,7 €/100 kg/net	0	
0207 27 50	----- 가슴살 및 이를 절단한 것	67,9 €/100 kg/net	0	
	----- 다리와 이를 절단한 것			
0207 27 60	----- 드럼스틱과 이를 절단한 것	25,5 €/100 kg/net	0	
0207 27 70	----- 기타	46 €/100 kg/net	0	
0207 27 80	----- 기타	83 €/100 kg/net	0	
	--- 설육			
0207 27 91	---- 간	6,4	0	
0207 27 99	---- 기타	18,7 €/100 kg/net	0	
	- 오리, 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0207 32	--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오리의 것			
0207 32 11	---- '85%의 오리'(털, 피 및 내장은 제거, 머리 및 다리는 미 제거)	38 €/100 kg/net	0	
0207 32 15	---- '70%의 오리'(털, 머리 및 다리는 제거, 목, 심장, 간장, 위장은 미 제거)	46,2 €/100 kg/net	0	
0207 32 19	---- '63%의 오리'(털, 머리, 다리, 목, 심장, 간장 및 위장 제거), 또는 기타	51,3 €/100 kg/net	0	
	--- 거위의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207 32 51	---- '82%의 거위'(털과 피는 제거, 머리와 다리는 미 제거)	45,1 €/100 kg/net	0	
0207 32 59	---- '75%의 거위'(털, 머리 및 다리는 제거, 심장과 위장은 제거 또는 미 제거), 또는 기타	48,1 €/100 kg/net	0	
0207 32 90	--- 기니아새의 것	49,3 €/100 kg/net	0	
0207 33	--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 오리의 것			
0207 33 11	---- '70%의 오리'(털, 머리 및 다리는 제거, 목, 심장, 간장 및 위장은 미 제거)	46,2 €/100 kg/net	0	
0207 33 19	---- '63%의 오리'(털, 머리, 다리, 목, 심장, 간장 및 위장은 제거), 또는 기타	51,3 €/100 kg/net	0	
	--- 거위의 것			
0207 33 51	---- '82%의 거위'(털과 피는 제거, 머리와 다리는 미 제거)	45,1 €/100 kg/net	0	
0207 33 59	---- '75%의 거위'(털, 머리 및 다리는 제거, 심장과 위장은 제거 또는 미 제거), 또는 기타	48,1 €/100 kg/net	0	
0207 33 90	--- 기니아새의 것	49,3 €/100 kg/net	0	
0207 34	--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 34 10	--- 거위의 것	Free	0	
0207 34 90	--- 오리의 것	Free	0	
0207 35	--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절단육			
	---- 뼈없는 것			
0207 35 11	----- 거위의 것	110,5 €/100 kg/net	0	
0207 35 15	----- 오리 또는 기니아새의 것	128,3 €/100 kg/net	0	
	---- 뼈 있는 것			
	----- 이분도체 또는 사분도체			
0207 35 21	----- 오리의 것	56,4 €/100 kg/net	0	
0207 35 23	----- 거위의 것	52,9 €/100 kg/net	0	
0207 35 25	----- 기니아새의 것	54,2 €/100 kg/net	0	
0207 35 31	----- 날개(날개끝 포함여부 불문)	26,9 €/100 kg/net	0	
0207 35 41	----- 등, 목, 목이 달린 등, 우둔살 및 날개 끝	18,7 €/100 kg/net	0	
	----- 가슴살 및 이를 절단한 것			
0207 35 51	----- 거위의 것	86,5 €/100 kg/net	0	
0207 35 53	----- 오리 또는 기니아새의 것	115,5 €/100 kg/net	0	
	----- 다리와 이를 절단한 것			
0207 35 61	----- 거위의 것	69,7 €/100 kg/net	0	
0207 35 63	----- 오리 또는 기니아새의 것	46,3 €/100 kg/net	0	
0207 35 71	----- 거위 또는 오리 팔레토트	66 €/100 kg/net	0	
0207 35 79	----- 기타	123,2 €/100 kg/net	0	
	--- 설육			
0207 35 91	---- 간(기름진 간 제외)	6.4	0	
0207 35 99	---- 기타	18,7 €/100 kg/net	0	
0207 36	--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 절단육			
	---- 뼈없는 것			
0207 36 11	----- 거위의 것	110,5 €/100 kg/net	0	
0207 36 15	----- 오리 또는 기니아새의 것	128,3 €/100 kg/net	0	
	---- 뼈있는 것			
	----- 이분도체 또는 사분도체			
0207 36 21	----- 오리의 것	56,4 €/100 kg/net	0	
0207 36 23	----- 거위의 것	52,9 €/100 kg/net	0	
0207 36 25	----- 기니아새의 것	54,2 €/100 kg/net	0	
0207 36 31	----- 날개(날개끝 포함여부 불문)	26,9 €/100 kg/net	0	
0207 36 41	----- 등, 목, 목이 달린 등, 우둔살 및 날개 끝	18,7 €/100 kg/net	0	
	----- 가슴살 및 이를 절단한 것			
0207 36 51	----- 거위의 것	86,5 €/100 kg/net	0	
0207 36 53	----- 오리 또는 기니아새의 것	115,5 €/100 kg/net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다리와 이를 절단한 것			
0207 36 61	----- 거위의 것	69,7 €/100 kg/net	0	
0207 36 63	----- 오리 또는 기니아새의 것	46,3 €/100 kg/net	0	
0207 36 71	----- 팔레토트(거위 또는 오리의 것)	66 €/100 kg/net	0	
0207 36 79	----- 기타	123,2 €/100 kg/net	0	
	--- 설육			
	--- 간			
0207 36 81	----- 거위의 기름진 간	Free	0	
0207 36 85	----- 오리의 기름진 간	Free	0	
0207 36 89	----- 기타	6.4	0	
0207 36 90	---- 기타	18,7 €/100 kg/net	0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8 10	- 토끼의 것			
	-- 가축용 토끼의 것			
0208 10 11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6.4	0	
0208 10 19	--- 냉동한 것	6.4	0	
0208 10 90	-- 기타	Free	0	
0208 30 00	- 영장류의 것	9	0	
0208 40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208 40 10	-- 고래고기	6.4	0	
0208 40 90	-- 기타	9	0	
0208 50 00	- 파충류(뱀과 거북류 포함)	9	0	
0208 90	- 기타			
0208 90 10	-- 가축용 비둘기의 것	6.4	0	
	토끼를 제외한 사냥용 동물의 것			
0208 90 20	--- 메추라기의 것	Free	0	
0208 90 40	--- 기타	Free	0	
0208 90 55	-- 물범고기	6.4	0	
0208 90 60	-- 순록의 것	9	0	
0208 90 70	-- 개구리 다리	6.4	0	
0208 90 95	-- 기타	9	0	
0209 00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피하에 있는 돼지비계			
0209 00 11	--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염장 또는 브라인	21,4 €/100 kg/net	0	
0209 00 19	-- 건조 또는 훈제	23,6 €/100 kg/net	0	
0209 00 30	- 돼지비계(제0209.00.11호 또는 제0209.00.19호 제외의 것)	12,9 €/100 kg/net	0	
0209 00 90	- 가금육의 비계	41,5 €/100 kg/net	0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 분과 조분			
	- 돼지고기의 것			
0210 11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 가축용 돼지의 것			
	---- 염장 또는 브라인			
0210 11 11	----- 넓적다리살과 이를 절단한 것	77,8 €/100 kg/net	0	
0210 11 19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	60,1 €/100 kg/net	0	
	---- 건조 또는 훈제			
0210 11 31	----- 넓적다리살과 이를 절단한 것	151,2 €/100 kg/net	0	
0210 11 39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	119 €/100 kg/net	0	
0210 11 90	--- 기타	15.4	0	
0210 12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 가축용 돼지의 것			
0210 12 11	---- 염장 또는 브라인	46,7 €/100 kg/net	0	
0210 12 19	---- 건조 또는 훈제	77,8 €/100 kg/net	0	
0210 12 90	--- 기타	15.4	0	
0210 19	-- 기타			
	--- 가축용 돼지의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영장 또는 브라인			
0210 19 10	----- 베이컨 사이드 또는 스펜서	68,7 €/100 kg/net	0	
0210 19 20	----- 상분도체 사이드 또는 중간부분	75,1 €/100 kg/net	0	
0210 19 30	----- 포어엔드 및 이를 절단한 것	60,1 €/100 kg/net	0	
0210 19 40	----- 등심과 이를 절단한 것	86,9 €/100 kg/net	0	
0210 19 50	----- 기타	86,9 €/100 kg/net	0	
	---- 건조 또는 훈제			
0210 19 60	----- 포어엔드 및 이를 절단한 것	119 €/100 kg/net	0	
0210 19 70	----- 등심과 이를 절단한 것	149,6 €/100 kg/net	0	
	----- 기타			
0210 19 81	----- 뼈없는 것	151,2 €/100 kg/net	0	
0210 19 89	----- 기타	151,2 €/100 kg/net	0	
0210 19 90	--- 기타	15.4	0	
0210 20	- 쇠고기			
0210 20 10	-- 뼈있는 것	15,4 + 265,2 €/100 kg/net	0	
0210 20 90	-- 뼈없는 것	15,4 + 303,4 €/100 kg/net	0	
	- 기타(육과 식용설육의 분과 조분 포함, 식용)			
0210 91 00	-- 영장류의 것	15.4	0	
0210 92 00	-- 고래류와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 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15.4	0	
0210 93 00	-- 파충류(뱀과 거북류 포함)	15.4	0	
0210 99	-- 기타			
	--- 기타 육의 것			
0210 99 10	---- 말의 것(영장, 브라인 또는 건조)	6.4	0	
	---- 면양과 산양의 것			
0210 99 21	----- 뼈 있는 것	222,7 €/100 kg/net	0	
0210 99 29	----- 뼈 없는 것	311,8 €/100 kg/net	0	
0210 99 31	---- 순록의 것	15.4	0	
0210 99 39	---- 기타	15.4	0	
	--- 설육			
	---- 가축용 돼지의 것			
0210 99 41	----- 간	64,9 €/100 kg/net	0	
0210 99 49	----- 기타	47,2 €/100 kg/net	0	
	---- 소의 것			
0210 99 51	----- 치마살	15,4 + 303,4 €/100 kg/net	0	
0210 99 59	----- 기타	12.8	0	
0210 99 60	---- 면양과 산양의 것	15.4	0	
	---- 기타			
	----- 가금육의 간			
0210 99 71	----- 거위 또는 오리의 기름진 간(영장 혹은 염수장)	Free	0	
0210 99 79	----- 기타	6.4	0	
0210 99 80	----- 기타	15.4	0	
0210 99 90	--- 육과 식용설육의 분과 조분	15,4 + 303,4 €/100 kg/net	0	
03	제3류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301	활어			
0301 10	- 관상용의 것			
0301 10 10	-- 담수어류	Free	0	
0301 10 90	-- 해수어류	7.5	0	
	- 기타 산 어류			
0301 91	-- 송어(살모 트루타 · 양코링쿠스 미키스 · 양코링쿠스 클라키 ·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양코링쿠스 길레 ·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301 91 10	--- 송어(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8	3	
0301 91 90	--- 기타	12	3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301 92 00	-- 뱀장어(앵굴라종)	Free	0	
0301 93 00	-- 잉어	8	3	
0301 94 00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6	5	
0301 95 00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6	5	
0301 99	-- 기타			
	--- 담수어류			
0301 99 11	----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벨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초, 양코링쿠스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르스), 대서양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2	0	
0301 99 19	---- 기타	8	3	
0301 99 80	--- 염수어류	16	5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연어(간과 어란 제외)			
0302 11	-- 송어(살모 트루타 · 양코링쿠스 미키스 · 양코링쿠스 클라키 ·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양코링쿠스 길레 ·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0302 11 10	---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의 것	8	5	
0302 11 20	--- 양코링쿠스 미키스의 것(내장을 제거하고 머리와 아가미를 포함한 것으로 총량 1.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아가미, 내장, 지느러미, 꼬리, 머리를 제거한 것으로 총량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2	3	
0302 11 80	--- 기타	12	3	
0302 12 00	--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벨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초, 양코링쿠스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르스), 대서양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2	0	
0302 19 00	-- 기타	8	3	
	- 납치류(플루로 벵티대, 바디대, 사이노글로시대, 솔레이대, 스킵탈미대, 시타리대)(간과 어란 제외)			
0302 21	-- 납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0302 21 10	--- 레서 또는 그린랜드 가자미(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8	3	
0302 21 30	--- 대서양 가자미(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8	3	
0302 21 90	--- 태평양 가자미(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15	5	
0302 22 00	-- 가자미(플루로벵티스 플라테사)	7.5	0	
0302 23 00	-- 서대(솔레아종)	15	5	
0302 29	-- 기타			
0302 29 10	--- 납치류(레피도롬버스종)	15	5	
0302 29 90	--- 기타	15	5	
	- 다랑어(터너스 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간과 어란 제외)			
0302 31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0302 31 10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다랑어	22	0	
0302 31 90	--- 기타	22	5	
0302 32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0302 32 10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다랑어	22	0	
0302 32 90	--- 기타	22	5	
0302 33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0302 33 10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다랑어	22	0	
0302 33 90	--- 기타	22	5	
0302 34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0302 34 10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다랑어	22	0	
0302 34 90	--- 기타	22	5	
0302 35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0302 35 10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다랑어	22	0	
0302 35 90	--- 기타	22	5	
0302 36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0302 36 10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다랑어	22	0	
0302 36 90	--- 기타	22	5	
0302 39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302 39 10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다랑어	22	0	
0302 39 90	--- 기타	22	5	
0302 40 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15	3	
0302 50	-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 루스).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2 50 10	-- 가두스 모르화종의 것	12	3	
0302 50 90	-- 기타	12	3	
	- 기타 어류(간과 어란 제외)			
0302 61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 사르디노프스종) · 사르 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 스 스프라투스)			
0302 61 10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23	3	
0302 61 30	--- 정어리(사르디노프스종) 및 정어리류(사르디넬라종)	15	3	
0302 61 80	--- 청어류(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13	3	
0302 62 00	-- 해덕(멜라노그라투스 애그레피누스)	7.5	0	
0302 63 00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7.5	0	
0302 64 00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20	3	
0302 65	-- 곱상어와 기타 상어			
0302 65 20	--- 곱상어(스쿠알루스 아칸시아스)	6	0	
0302 65 50	--- 곱상어(실리오리누스 종)	6	0	
0302 65 90	--- 기타	8	3	
0302 66 00	-- 뱀장어(앵겔라종)	Free	0	
0302 67 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5	3	
0302 68 00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5	3	
0302 69	-- 기타			
	--- 담수어류			
0302 69 11	---- 잉어	8	3	
0302 69 19	---- 기타	8	3	
	--- 염수어류			
	---- 유티너스 속의 염수어류(소호 제0302.33호의 가다랑 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리미 스) 제외)			
0302 69 21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어류	22	0	
0302 69 25	----- 기타	22	3	
	---- 적어(세바스티스종)			
0302 69 31	----- 적어(세바스티스 마리너스)	7.5	0	
0302 69 33	----- 기타	7.5	0	
0302 69 35	---- 보레오가두스 사이다 종의 어류	12	3	
0302 69 41	---- 민대구류(메를랑구스 메를랑구스)	7.5	0	
0302 69 45	---- 수염대구(몰바종)	7.5	0	
0302 69 51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및 대구류(폴라치우스 폴 라치우스)	7.5	0	
0302 69 55	---- 멸치(엔그로리스종)	15	3	
0302 69 61	---- 돔(덴텍스 덴텍스 및 파겔루스종)	15	3	
	----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 민대구(메르키우스종)			
0302 69 66	----- 천해 민대구(메를루시우스 카펜시스) 및 심해 민대 구(메를루시우스)	15	3	
0302 69 67	----- 남방 민대구(메를루시우스 오스트랄리스)	15	3	
0302 69 68	----- 기타	15	3	
0302 69 69	----- 민대구(유르피키스종)	15	3	
0302 69 75	---- 가오리 돔(브라마종)	15	3	
0302 69 81	---- 아귀(로피너스종)	15	3	
0302 69 85	---- 청보리멸(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타소 또는 가두스 포타소)	7.5	0	
0302 69 86	---- 남방 청보리멸(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7.5	0	
0302 69 91	---- 전갱이(스캐드)(카랑스트라처러스, 트라처러스 트라 처러스)	15	3	
0302 69 92	---- 체장메기(제네티러스 블라코드)	7.5	0	
0302 69 94	---- 농어(디젠트라투스 라브락스)	15	3	
0302 69 95	---- 먹돔(스프라우스 오라타)	15	3	
0302 69 99	---- 기타	15	3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302 70 00	- 간과 어란	10	3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르스, 소크아이 연어(양코링쿠스 벨카)), 간과 어란 제외			
0303 11 00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양코링쿠스 벨카)	2	0	
0303 19 00	-- 기타	2	0	
	- 기타 연어과(간과 어란 제외)			
0303 21	-- 송어(살모 트루타 · 양코링쿠스 미키스 · 양코링쿠스 클라키 ·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양코링쿠스 길레 ·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0303 21 10	--- 송어(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9	3	
0303 21 20	--- 송어(양코링쿠스 미키스)(내장을 제거하고 머리와 아가미가 포함된 것으로 중량 1.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내장, 아가미, 머리를 제거한 것으로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2	3	
0303 21 80	--- 기타	12	3	
0303 22 00	--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2	0	
0303 29 00	-- 기타	9	3	
	- 넙치류(플루로 벡티대, 바디대, 사이노글로시대, 솔레이대, 스크프탈미대 및 시타리대), 간과 어란 제외			
0303 31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0303 31 10	--- 레서 또는 그린랜드 가자미(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서스)	7.5	0	
0303 31 30	--- 대서양 가자미(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7.5	0	
0303 31 90	--- 태평양 가자미(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15	5	
0303 32 00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15	5	
0303 33 00	-- 서대(솔레아종)	7.5	0	
0303 39	-- 기타			
0303 39 10	--- 흘림도다리(플라티츠치스 플레서스)	7.5	0	
0303 39 30	--- 롬보솔레아종 어류	7.5	0	
0303 39 70	--- 기타	15	5	
	- 다랑어류(터너스 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간과 어란 제외			
0303 41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날개다랑어			
0303 41 11	---- 전체상의 것	22	0	
0303 41 13	---- 내장 또는 아가미를 제거한 것	22	0	
0303 41 19	---- 기타(예: 머리 제거한 것)	22	0	
0303 41 90	---- 기타	22	5	
0303 42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황다랑어			
	---- 전체상의 것			
0303 42 12	-----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0	0	
0303 42 18	----- 기타	20	0	
	---- 내장 또는 아가미를 제거한 것			
0303 42 32	-----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2	0	
0303 42 38	----- 기타	22	0	
	---- 기타(예: 머리 제거한 것)			
0303 42 52	-----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2	0	
0303 42 58	----- 기타	22	0	
0303 42 90	---- 기타	22	3	
0303 43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0303 43 11	---- 전체상의 것	22	0	
0303 43 13	---- 내장 또는 아가미를 제거한 것	22	0	
0303 43 19	---- 기타(예: 머리 제거한 것)	22	0	
0303 43 90	---- 기타	22	5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303 44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눈다랑어			
0303 44 11	---- 전체상의 것	22	0	
0303 44 13	---- 내장 또는 아가미를 제거한 것	22	0	
0303 44 19	---- 기타(예: 머리 제거한 것)	22	0	
0303 44 90	--- 기타	22	3	
0303 45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참다랑어			
0303 45 11	---- 전체상의 것	22	0	
0303 45 13	---- 내장 또는 아가미를 제거한 것	22	0	
0303 45 19	---- 기타(예: 머리 제거한 것)	22	0	
0303 45 90	--- 기타	22	5	
0303 46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남방참다랑어			
0303 46 11	---- 전체상의 것	22	0	
0303 46 13	---- 내장 또는 아가미를 제거한 것	22	0	
0303 46 19	---- 기타(예: 머리 제거한 것)	22	0	
0303 46 90	--- 기타	22	5	
0303 49	-- 기타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 기타 다랑어			
0303 49 31	---- 전체상의 것	22	0	
0303 49 33	---- 내장 또는 아가미를 제거한 것	22	0	
0303 49 39	---- 기타(예: 머리 제거한 것)	22	0	
0303 49 80	--- 기타	22	5	
	- 청어(클루페아 하렌쿠스, 클루페아 팔라스)와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간과 어린 제외			
0303 51 00	-- 청어(클루페아 하렌쿠스, 클루페아 팔라스)	15	5	
0303 52	--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303 52 10	--- 대구(가두스 모르화)	12	0	
0303 52 30	--- 대구(가두스 오각)	12	0	
0303 52 90	--- 대구(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2	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및 이빨고기(사르디나 필차르두스), 간과 어린 제외			
0303 61 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7.5	3	
0303 62 00	-- 이빨고기(디소스티치스종)	15	5	
	- 기타 어류(간과 어린 제외)			
0303 71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 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벨라(사르디벨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0303 71 10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종)	23	5	
0303 71 30	--- 정어리(사르디노프스 속) 및 사르디벨라(사르디벨라종)	15	5	
0303 71 80	--- 브리스링 또는 청어류(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13	5	
0303 72 00	-- 해덕(멜라노그라투스 애그레피누스)	7.5	0	
0303 73 00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7.5	0	
0303 74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 스콤버 자포니쿠스)			
0303 74 30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20	5	
0303 74 90	--- 고등어(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15	5	
0303 75	-- 곱상어와 기타 상어			
0303 75 20	--- 곱상어(스쿠알루스 아칸시아스)	6	0	
0303 75 50	--- 곱상어(실리오리누스 종)	6	0	
0303 75 90	--- 기타	8	3	
0303 76 00	-- 뱀장어(앵귌라종)	Free	0	
0303 77 00	-- 농어(디젠티라투스 라브락스, 디젠티라투스 푼크타투스)	15	0	
0303 78	--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 민대구(메루키우스 속)			
0303 78 11	---- 천해 민대구(메를루시우스 카펜시스) 및 심해 민대구(심해 케이프 민대구, 메를루시우스 파라독서스)	15	5	
0303 78 12	---- 아르헨티나 민대구(남서대서양 민대구, 메를루시우스 협시)	15	5	
0303 78 13	---- 남방 민대구(메를루시우스 오스트랄리스)	15	5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303 78 19	---- 기타	15	5	
0303 78 90	--- 민대구(유로피키스 속)	15	5	
0303 79	-- 기타			
	--- 담수어류			
0303 79 11	---- 잉어	8	3	
0303 79 19	---- 기타	8	3	
	--- 염수어류			
	---- 유티너스 속의 해수어. 단, 제0303.43소호의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리미스) 제외			
	----- 제1604호에 해당하는 조제용의 것			
0303 79 21	----- 전채상의 것	22	0	
0303 79 23	----- 내장 또는 아가미를 제거한 것	22	0	
0303 79 29	----- 기타(머리 제거한 것 등)	22	0	
0303 79 31	----- 기타	22	5	
	---- 적어(세바스티스종)			
0303 79 35	----- 세바스티스 마리너스	7.5	0	
0303 79 37	----- 기타	7.5	0	
0303 79 41	---- 보레오가두스 사이다 종의 해수어	12	5	
0303 79 45	---- 유럽산 대구(메를랑기우스 메를랑구스)	7.5	0	
0303 79 51	---- 수염대구(몰바종)	7.5	0	
0303 79 55	---- 명태(데라그라 찰코그라마) 및 대구류(폴라치우스 폴라치우스)	15	5	
0303 79 58	---- 오르키놉시스 단색종 해수어	10	3	
0303 79 65	---- 멸치(엔그로리스종)	15	5	
0303 79 71	---- 돔(텐텍스 텐텍스 및 파겔루스종)	15	5	
0303 79 75	---- 가오리 돔(브라마종)	15	5	
0303 79 81	---- 아귀(로피너스종)	15	5	
0303 79 83	---- 청보리멸(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타소 또는 가두스 포타소)	7.5	0	
0303 79 85	---- 남방 청보리멸(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7.5	0	
0303 79 91	---- 전갱이(스캐드, 카랑스트라처러스, 트라처러스 트라처러스)	15	5	
0303 79 92	---- 청대구류(마크루로너스 노배질란대)	7.5	0	
0303 79 93	---- 체장메기(제넵티러스 블라코드)	7.5	3	
0303 79 94	---- 페로트레이스플라빌라투스 및 펠토람푸스 노배질란대)	7.5	0	
0303 79 98	---- 기타	15	3	
0303 80	- 간과 여란			
0303 80 10	-- 데옥시리보 핵산 또는 프로타민 황산염 조제를 위한 여란과 이리	Free	0	
0303 80 90	-- 기타	10	3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4 1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304 11 10	--- 황새치 피레트(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8	5	
0304 11 90	--- 기타 황새치의 어육(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잘게 다졌는지 여부는 불문)	15	5	
0304 12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0304 12 10	--- 이빨고기 피레트(디소스티처스종)	18	5	
0304 12 90	--- 기타 이빨고기 어육(디소스티처스종, 잘게 다졌는지 여부는 불문)	15	5	
0304 19	-- 기타			
	--- 피레트			
	--- 담수어류			
0304 19 13	-----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벨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차비차,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르스), 대서양연어(살모살라), 다뉴브 연어(후코후코)의 것	2	0	
	----- 송어류의 것(살모투루타, 앙코링쿠스미키스, 앙코링쿠스 글라키, 황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0304 19 15	----- 앙코링쿠스 미키스 종으로 400그램을 초과하는 것	12	3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304 19 17	----- 기타	12	3	
0304 19 19	----- 기타 담수어류의 것	9	3	
	---- 기타			
0304 19 31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및 보레오가두스 사이다 종의 것	18	5	
0304 19 3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의 것	18	5	
0304 19 35	----- 적어(세바스티스종)의 것	18	5	
0304 19 39	----- 기타	18	5	
	--- 기타 어육(잘게 다졌는지 여부는 불문)			
0304 19 91	---- 담수어 어육(잘게 다졌는지 여부는 불문)	8	3	
	---- 기타			
0304 19 97	----- 청어 날개의 것	15	3	
0304 19 99	----- 기타	15	5	
	- 냉동 필렛			
0304 21 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7.5	3	
0304 22 00	-- 이빨고기(디소스티치스종)	15	5	
0304 29	-- 기타			
	--- 담수어류의 것			
0304 29 13	----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르스), 대서양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2	0	
	---- 송어류의 것(살모투루타, 양코링쿠스미키스, 양코링쿠스 글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0304 29 15	----- 송어(양코링쿠스 미키스), 400그램을 초과하는 것	12	3	
0304 29 17	----- 기타	12	3	
0304 29 19	----- 기타 담수어류의 것	9	3	
	---- 기타			
	---- 대구류의 것(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가두스 오각) 및 보레오가두스 사이다 종의 것			
0304 29 21	----- 대구의 것(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7.5	3	
0304 29 29	----- 기타의 것	7.5	3	
0304 29 31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의 것	7.5	0	
0304 29 33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7.5	3	
	----- 적어(세바스티스종)			
0304 29 35	----- 세바스티스 마리너스	7.5	0	
0304 29 39	----- 기타	7.5	0	
0304 29 41	----- 대구(메를랑구서 메를랑구스)의 것	7.5	0	
0304 29 43	----- 수영대구(몰바종)	7.5	0	
0304 29 45	----- 다랑어(터너스 속의 것) 및 유티너스종의 것	18	3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및 오시놉시스 유니칼러 종의 것			
0304 29 51	----- 고등어(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15	5	
0304 29 53	----- 기타	15	5	
	----- 민대구(메를루시우스 종 및 유니칼러 종)의 것			
	----- 민대구(메를루시우스 종)			
0304 29 55	----- 천해 민대구(메를루시우스 카펜시스) 및 심해 민대구(메를루시우스 파라독서스)의 것	7.5	0	
0304 29 56	----- 아르헨티나 민대구(남서대서양 민대구, 메를루시우스 협시)	7.5	0	
0304 29 58	----- 기타	6.1	0	
0304 29 59	----- 민대구(유폴피시스 속)	7.5	0	
	----- 곱상어 및 기타 상어류			
0304 29 61	----- 곱상어(스쿠알루스 아칸시아스 및 실리오리누스 종)	7.5	0	
0304 29 69	----- 기타 상어류	7.5	0	
0304 29 71	----- 가자미(플로로벡테스 플라테사)	7.5	3	
0304 29 73	----- 넙치(플라티츠시스 플레서스)	7.5	0	
0304 29 75	----- 청어(글루페아 하렌쿠스·글루페아 팔라스)	15	5	
0304 29 79	----- 넙치류(레피도르홀부스 종)	15	5	
0304 29 83	----- 아귀(로피우스 종)	15	5	
0304 29 85	----- 명태(테라그라 칼코그라마)	13.7	5	
0304 29 91	----- 청대구류(마쿠로누스 노배질란대)	7.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304 29 99	---- 기타	15	5	
	- 기타			
0304 91 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7.5	0	
0304 92 00	-- 이빨고기(디소스티투스종)	7.5	3	
0304 99	-- 기타			
0304 99 10	--- 연육	14.2	5	
	--- 기타			
0304 99 21	---- 담수어의 것	8	3	
	---- 기타			
0304 99 23	----- 청어(클루페아 하렌쿠스·클루페아 팔라스)	15	5	
0304 99 29	----- 적어(세바스테스 종)	8	3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및 보레오가두스 사이다 종의 것			
0304 99 31	----- 대구(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7.5	0	
0304 99 33	----- 대구(가두스 모르화)	7.5	0	
0304 99 39	----- 기타	7.5	0	
0304 99 41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7.5	0	
0304 99 45	----- 해덕(멜라노그라투스 애그레피누스)	7.5	0	
0304 99 51	----- 민대구(메를루시우스 종, 유로피시스 종)	7.5	0	
0304 99 55	----- 대구류(메그림, 레피도르홍버스종)	15	5	
0304 99 61	----- 가오리돔(브라마종)	15	5	
0304 99 65	----- 아귀(로피우스 종)	7.5	0	
0304 99 71	----- 청보리멸(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타소, 가두스 포타소)	7.5	0	
0304 99 7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7.5	3	
0304 99 99	----- 기타	7.5	3	
0305	건조·염장·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 10 00	- 식용에 적합한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	13	5	
0305 20 00	- 간과 어란(건조, 훈제, 염장 또는 브라인한 것)	11	0	
0305 30	- 어류의 피레트(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 대구류의 것(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가두스 오각) 및 보레오가두스 사이다 종의 것			
0305 30 11	--- 대구(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6	5	
0305 30 19	--- 기타	20	5	
0305 30 30	-- 태평양 연어(양코링쿠스 벨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스,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르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초 후초), 염장 혹은 브라인	15	5	
0305 30 50	-- 레서 또는 그린랜드 가자미(라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서스), 염장 또는 브라인한 것	15	5	
0305 30 90	-- 기타	16	5	
	- 훈제 어류(피레트 포함)			
0305 41 00	-- 태평양 연어(양코링쿠스 벨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초,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르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초 후초)	13	5	
0305 42 00	-- 청어(클루피아 하렌쿠스, 클루피아 팔라시)	10	5	
0305 49	-- 기타			
0305 49 10	--- 레서 또는 그린랜드 가자미(라인하드티우스 히포글로소디스)	15	5	
0305 49 20	--- 대서양 가자미(히포글로소스 히포글로소스)	16	5	
0305 49 30	---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 스킴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킴버 자포니쿠스)	14	5	
0305 49 45	--- 송어(살모 투르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14	5	
0305 49 50	--- 뱀장어(앵귌라 종)	14	5	
0305 49 80	--- 기타	14	5	
	- 건조 어류(염장여부 불문/훈제한 것 제외)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305 51	--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305 51 10	--- 건조(염장제외)	13	5	
0305 51 90	--- 건조(염장된 것)	13	5	
0305 59	-- 기타			
	--- 보레오가두스 사이다 종의 것			
0305 59 11	---- 건조(염장제외)	13	5	
0305 59 19	---- 건조(염장된 것)	13	5	
0305 59 30	--- 청어(클루피아 하렌구스, 클루피아 팔라시)	12	5	
0305 59 50	--- 멸치(앵그로리스 종)	10	0	
0305 59 70	--- 대서양 가자미(히포글로소스 히포글로소스)	15	5	
0305 59 80	--- 기타	12	5	
	- 어류(염장 또는 브라인/건조 또는 훈제된 것 제외)			
0305 61 00	-- 청어(클루피아 하렌구스, 클루피아 팔라시)	12	5	
0305 62 00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3	5	
0305 63 00	-- 멸치(앵그로리스 종)	10	3	
0305 69	-- 기타			
0305 69 10	--- 보레오가두스 사이다 종	13	5	
0305 69 30	--- 대서양 가자미(히포글로소스 히포글로소스)	15	3	
0305 69 50	---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벨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차비차,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르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초 후초)	11	3	
0305 69 80	--- 기타	12	5	
0306	감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인지는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감각류의 분 ·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냉동			
0306 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피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0306 11 10	--- 가재(팔리누루스 종, 파누리루스 종, 자수스 종) 꼬리(냉동)	12.5	3	
0306 11 90	--- 기타	12.5	0	
0306 12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0306 12 10	--- 전체상의 것	6	3	
0306 12 90	--- 기타	16	3	
0306 13	-- 새우와 보리새우			
0306 13 10	--- 판달리대과의 것	12	0	
0306 13 30	--- 크란곤 속의 새우	18	5	
0306 13 40	--- 심해 장미 새우(파라페나우스 롱기로스트리스)	12	0	
0306 13 50	--- 페나우스 속 새우	12	0	
0306 13 80	--- 기타	12	0	
0306 14	-- 게			
0306 14 10	--- 게(팔라리토디스 캄차티쿠스, 치오노에세테스 종, 칼리벡테스 사피두스)	7.5	0	
0306 14 30	--- 게(켄서 파구루스)	7.5	0	
0306 14 90	--- 기타	7.5	0	
0306 19	--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 19 10	--- 민물가재(냉동)	7.5	0	
0306 19 30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롭스 노르베기쿠스)	12	5	
0306 19 90	--- 기타	12	0	
	- 냉동한것 이외의 것			
0306 21 00	-- 닭새우류 및 기타 바닷가재(팔리누루스 종, 파누리루스 종, 자수스 종)	12.5	3	
0306 22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0306 22 10	--- 살아있는 것	8	3	
	--- 기타			
0306 22 91	---- 전체상의 것	8	3	
0306 22 99	---- 기타	10	3	
0306 23	-- 새우와 보리새우			
0306 23 10	--- 판달리대과의 것	1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크란콘 속의 새우			
0306 23 31	---- 신선, 냉장 또는 물에 찌거나 삶은 것	18	5	
0306 23 39	---- 기타	18	5	
0306 23 90	--- 기타	12	0	
0306 24	-- 게			
0306 24 30	--- 캔서 파구루스종의 게	7.5	0	
0306 24 80	--- 기타	7.5	0	
0306 29	--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 29 10	--- 민물 가재	7.5	0	
0306 29 30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롭스 노르베기쿠스)	12	5	
0306 29 90	--- 기타	12	5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0307 10	- 굴			
0307 10 10	-- 굴(산 것/오스트레아 속/껍질포함 40그램 이하)	Free	0	
0307 10 90	-- 기타	9	3	
	- 가리비(팍텐, 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텍텐속의 여왕 가리비 포함)			
0307 21 00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8	3	
0307 29	-- 기타			
0307 29 10	--- 텍텐 막시무스(냉동)	8	0	
0307 29 90	--- 기타	8	0	
	- 홍합(미틸루스종 및 페르나 종)			
0307 31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 31 10	--- 미틸루스 종	10	0	
0307 31 90	--- 페르나 종	8	0	
0307 39	-- 기타			
0307 39 10	--- 미틸루스 종	10	0	
0307 39 90	--- 페르나 종	8	0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러시아 마크로소마, 세피올라 종)와 오징어(로리고, 옴마스트레페스, 노토타루스, 세피오투티스 종)			
0307 41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 41 10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러시아 마크로소마, 세피올라 종)	8	3	
	--- 오징어(로리고 종, 노토타루스 종, 옴마스트레페스 종, 세피오투티스 종)			
0307 41 91	---- 로리고 종, 옴마스트레페스 사기타투스	6	0	
0307 41 99	---- 기타	8	3	
0307 49	-- 기타			
	--- 냉동의 것			
	---- 갑오징어(세피올라 오피시날리스, 러시아 마크로소마, 세피올라 종)			
	----- 세피올라 속의 것			
0307 49 01	----- 소형 갑오징어(세피올라 룬데레티)	6	0	
0307 49 11	----- 기타	8	0	
0307 49 18	----- 기타	8	0	
	---- 오징어(로리고 종, 노토타루스 종, 옴마스트레페스 종, 세피오세우티스 종)			
	----- 로리고 종			
0307 49 31	----- 로리고 불가리스	6	3	
0307 49 33	----- 로리고 페알레이	6	0	
0307 49 35	----- 로리고 파타고니카	6	3	
0307 49 38	----- 기타	6	3	
0307 49 51	----- 옴마스트레페스 사기타투스	6	0	
0307 49 59	----- 기타	8	3	
	--- 기타			
0307 49 71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러시아 마크로소마, 세피올라 종)	8	3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오징어(옴파스트레페스 종, 로리고 종, 노토토다루스 종 및 세피아테우티스 종)			
0307 49 91	----- 로리고 종, 옴마스트레페스 사기타투스	6	3	
0307 49 99	----- 기타	8	3	
	- 문어(옥토퍼스 종)			
0307 51 00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8	0	
0307 59	-- 기타			
0307 59 10	--- 냉동	8	3	
0307 59 90	--- 기타	8	3	
0307 60 00	-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Free	0	
	- 기타(갑각류 이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를 포함)			
0307 91 00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1	3	
0307 99	-- 기타			
	--- 냉동			
0307 99 11	---- 일렉스 종	8	3	
0307 99 13	---- 줄비너스조개 및 베리다속의 기타 종	8	3	
0307 99 15	---- 해파리(로필레마종)	Free	0	
0307 99 18	---- 기타	11	3	
0307 99 90	--- 기타	11	0	
04	제4류 낙농품 · 조란(鳥卵) ·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1 1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인 것			
0401 10 10	-- 2리터이하 포장	13,8 €/100 kg/net	0	
0401 10 90	-- 기타	12,9 €/100 kg/net	0	
0401 2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이하인 것			
	-- 100분의 3이하인 것			
0401 20 11	--- 2리터이하 포장	18,8 €/100 kg/net	0	
0401 20 19	--- 기타	17,9 €/100 kg/net	0	
	--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것			
0401 20 91	--- 2리터이하 포장	22,7 €/100 kg/net	0	
0401 20 99	--- 기타	21,8 €/100 kg/net	0	
0401 3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 100분의 21이하인 것			
0401 30 11	--- 2리터이하 포장	57,5 €/100 kg/net	0	
0401 30 19	--- 기타	56,6 €/100 kg/net	0	
	-- 100분의 21초과 100분의 45이하인 것			
0401 30 31	--- 2리터이하 포장	110 €/100 kg/net	0	
0401 30 39	--- 기타	109,1 €/100 kg/net	0	
	--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것			
0401 30 91	--- 2리터이하 포장	183,7 €/100 kg/net	0	
0401 30 99	--- 기타	182,8 €/100 kg/net	0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2 10	- 분상 ·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 설탕 또는 감미료 미첨가			
0402 10 1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125,4 €/100 kg/net	5	
0402 10 19	--- 기타	118,8 €/100 kg/net	5	
	-- 기타			
0402 10 9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1,19 €/kg + 27,5 €/100 kg/net	5	
0402 10 99	--- 기타	1,19 €/kg + 21 €/100 kg/net	5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분상, 입상 및 기타 고체상태의 것)			
0402 21	--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27이하인 것			
0402 21 1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135,7 €/100 kg/net	5	
	---- 기타			
0402 21 17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1이하인 것	130,4 €/100 kg/net	5	
0402 21 19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1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0,4 €/100 kg/net	5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0402 21 9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167,2 €/100 kg/net	5	
0402 21 99	---- 기타	161,9 €/100 kg/net	5	
0402 29	-- 기타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27이하의 것			
0402 29 11	---- 유아용 특수 밀크, 밀봉된 것, 중량이 500그램 이하이며 지방분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1,31 €/kg + 22 €/100 kg/net	5	
	---- 기타			
0402 29 15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1,31 €/kg + 22 €/100 kg/net	5	
0402 29 19	----- 기타	1,31 €/kg + 16,8 €/100 kg/net	5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0402 29 9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1,62 €/kg + 22 €/100 kg/net	5	
0402 29 99	---- 기타	1,62 €/kg + 16,8 €/100 kg/net	5	
	- 기타			
0402 91	--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8이하인 것			
0402 91 1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34,7 €/100 kg/net	5	
0402 91 19	---- 기타	34,7 €/100 kg/net	5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8초과 100분의 10이하인 것			
0402 91 3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43,4 €/100 kg/net	5	
0402 91 39	---- 기타	43,4 €/100 kg/net	5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5이하			
0402 91 5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110 €/100 kg/net	5	
0402 91 59	---- 기타	109,1 €/100 kg/net	5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것			
0402 91 9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183,7 €/100 kg/net	5	
0402 91 99	---- 기타	182,8 €/100 kg/net	5	
0402 99	-- 기타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9.5이하인 것			
0402 99 11	--- 2.5킬로그램 이하 포장	57,2 €/100 kg/net	5	
0402 99 19	---- 기타	57,2 €/100 kg/net	5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9.5초과 100분의 45이하인 것			
0402 99 3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1,08 €/kg + 19,4 €/100 kg/net	5	
0402 99 39	---- 기타	1,08 €/kg + 18,5 €/100 kg/net	5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것			
0402 99 91	--- 2.5킬로그램이하 포장	1,81 €/kg + 19,4 €/100 kg/net	5	
0402 99 99	---- 기타	1,81 €/kg + 18,5 €/100 kg/net	5	
0403	버터밀크 · 응고유와 응고크림 · 요구르트 ·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403 10	- 요거트			
	--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하지 않은 것			
	--- 설탕 및 기타 감미료 미첨가			
0403 10 11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이하인 것	20,5 €/100 kg/net	0	
0403 10 13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초과 100분의 6이하인 것	24,4 €/100 kg/net	0	
0403 10 19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59,2 €/100 kg/net	0	
	--- 기타			
0403 10 31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이하인 것	0,17 €/kg + 21,1 €/100 kg/net	0	
0403 10 33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초과 100분의 6이하인 것	0,20 €/kg + 21,1 €/100 kg/net	0	
0403 10 39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0,54 €/kg + 21,1 €/100 kg/net	0	
	--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			
	--- 분상, 입상 및 기타 고체 상태의 것			
0403 10 51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8,3 + 95 €/100 kg/net	0	
0403 10 53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8,3 + 130,4 €/100 kg/net	0	
0403 10 59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8,3 + 168,8 €/100 kg/net	0	
	--- 기타			
0403 10 91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이하인 것	8,3 + 12,4 €/100 kg/net	0	
0403 10 93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초과 100분의 6이하인 것	8,3 + 17,1 €/100 kg/net	0	
0403 10 99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8,3 + 26,6 €/100 kg/net	0	
0403 90	- 기타			
	-- 향, 과일 견과류, 또는 코코아 첨가하지 않은 것			
	--- 분상, 입상 및 기타 고체 상태의 것			
	---- 설탕 및 기타 감미료 미첨가한 것			
0403 90 11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100,4 €/100 kg/net	0	
0403 90 13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5,7 €/100 kg/net	0	
0403 90 19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7,2 €/100 kg/net	0	
	---- 기타			
0403 90 31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95 €/kg + 22 €/100 kg/net	0	
0403 90 33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1 €/kg + 22 €/100 kg/net	0	
0403 90 39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2 €/kg + 22 €/100 kg/net	0	
	--- 기타			
	----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403 90 51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이하인 것	20,5 €/100 kg/net	0	
0403 90 53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초과 100분의 6이하인 것	24,4 €/100 kg/net	0	
0403 90 59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59,2 €/100 kg/net	0	
	--- 기타			
0403 90 61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이하인 것	0,17 €/kg + 21,1 €/100 kg/net	0	
0403 90 63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초과 100분의 6이하인 것	0,20 €/kg + 21,1 €/100 kg/net	0	
0403 90 69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0,54 €/kg + 21,1 €/100 kg/net	0	
	-- 향, 과일 견과류, 또는 코코아 첨가한 것			
	--- 분상, 입상 및 기타 고체 상태의 것			
0403 90 71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8,3 + 95 €/100 kg/net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403 90 73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8,3 + 130,4 €/100 kg/net	0	
0403 90 79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8,3 + 168,8 €/100 kg/net	0	
	--- 기타			
0403 90 91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이하인 것	8,3 + 12,4 €/100 kg/net	0	
0403 90 93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초과 100분의 6이하인 것	8,3 + 17,1 €/100 kg/net	0	
0403 90 99	----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8,3 + 26,6 €/100 kg/net	0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분상, 입상 및 기타 고체 상태의 것			
	---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			
	---- 단백질 함량(니트로겐 함량 x 6,38)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404 10 02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7 €/100 kg/net	0	
0404 10 04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5,7 €/100 kg/net	0	
0404 10 06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7,2 €/100 kg/net	0	
	---- 단백질 함량(니트로겐 함량 x 6,38)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초과인 것			
0404 10 12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100,4 €/100 kg/net	0	
0404 10 14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5,7 €/100 kg/net	0	
0404 10 16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7,2 €/100 kg/net	0	
	--- 기타			
	---- 단백질 함량(니트로겐 함량 x 6,38)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404 10 26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07 €/kg/net + 16,8 €/100 kg/net	0	
0404 10 28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1 €/kg/net + 22 €/100 kg/net	0	
0404 10 32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2 €/kg/net + 22 €/100 kg/net	0	
	---- 단백질 함량(니트로겐 함량 x 6,38)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4 10 34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95 €/kg/net + 22 €/100 kg/net	0	
0404 10 36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1 €/kg/net + 22 €/100 kg/net	0	
0404 10 38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2 €/kg/net + 22 €/100 kg/net	0	
	-- 기타			
	---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 단백질 함량(니트로겐 함량 x 6,38)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404 10 48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07 €/kg/net	0	
0404 10 52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5,7 €/100 kg/net	0	
0404 10 54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7,2 €/100 kg/net	0	
	---- 단백질 함량(니트로겐 함량 x 6,38)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초과인 것			
0404 10 56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100,4 €/100 kg/net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404 10 58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5,7 €/100 kg/net	0	
0404 10 62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7,2 €/100 kg/net	0	
	--- 기타			
	---- 단백질 함량(니트로겐 함량 x 6,38)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404 10 72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07 €/kg/net + 16,8 €/100 kg/net	0	
0404 10 74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1 €/kg/net + 22 €/100 kg/net	0	
0404 10 76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2 €/kg/net + 22 €/100 kg/net	0	
	---- 단백질 함량(니트로겐 함량 x 6,38)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4 10 78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95 €/kg/net + 22 €/100 kg/net	0	
0404 10 82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1 €/kg/net + 22 €/100 kg/net	0	
0404 10 84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2 €/kg/net + 22 €/100 kg/net	0	
0404 90	- 기타			
	-- 설탕 및 감미 첨가하지 않은 것			
0404 90 21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100,4 €/100 kg/net	0	
0404 90 23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5,7 €/100 kg/net	0	
0404 90 29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7,2 €/100 kg/net	0	
	-- 기타			
0404 90 81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95 €/kg/net + 22 €/100 kg/net	0	
0404 90 83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7이하인 것	1,31 €/kg/net + 22 €/100 kg/net	0	
0404 90 89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을 초과하는 것	1,62 €/kg/net + 22 €/100 kg/net	0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5 10	- 버터			
	-- 지방분 전중량의 100분의 85이하인 것			
	--- 천연버터			
0405 10 11	----- 1킬로그램이하 포장	189,6 €/100 kg/net	0	
0405 10 19	----- 기타	189,6 €/100 kg/net	0	
0405 10 30	--- 버터(재결합한 것)	189,6 €/100 kg/net	0	
0405 10 50	--- 유장버터	189,6 €/100 kg/net	0	
0405 10 90	-- 기타	231,3 €/100 kg/net	0	
0405 20	- 데어리 스프레드			
0405 20 10	-- 지방분 전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60미만인 것	9 + EA	0	
0405 20 30	-- 지방분 전중량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5이하	9 + EA	0	
0405 20 90	-- 지방분 전중량의 100분의 75초과 100분의 80미만	189,6 €/100 kg/net	0	
0405 90	- 기타			
0405 90 10	-- 지방분 전중량 중 100분의 99.3이상,수분 100분의 0.5이하의 것	231,3 €/100 kg/net	0	
0405 90 90	-- 기타	231,3 €/100 kg/net	0	
0406	치즈와 커드			
0406 10	-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406 10 2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이하인 것	185,2 €/100 kg/net	0	
0406 10 80	-- 기타	221,2 €/100 kg/net	0	
0406 20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0406 20 10	-- 글라루스 허브치즈 (샤브자이거/스킴밀크로 만들고 잘 같은 허브를 섞은 치즈)	7.7	0	
0406 20 90	-- 기타	188,2 €/100 kg/net	0	
0406 3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0406 30 10	-- 에멘탈,그뤼에르 및 아펜젤 생산시 사용,글라루스허브 치즈(샤브자이거)이외의 치즈 포함 제외,소매용,건조시 지방분 100분의 56이하	144,9 €/100 kg/net	0	
	-- 기타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6이하인 것			
0406 30 31	---- 건조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48이하인 것	139,1 €/100 kg/net	0	
0406 30 39	---- 건조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48을 초과하는 것	144,9 €/100 kg/net	0	
0406 30 90	--- 지방분 전중량의 100분의 36을 초과하는 것	215 €/100 kg/net	0	
0406 40	-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 을 함유한 기타 치즈			
0406 40 10	-- 로크포르	140,9 €/100 kg/net	0	
0406 40 50	-- 고르곤졸라	140,9 €/100 kg/net	0	
0406 40 90	-- 기타	140,9 €/100 kg/net	0	
0406 90	- 기타 치즈			
0406 90 01	-- 가공용	167,1 €/100 kg/net	0	
	-- 기타			
0406 90 13	--- 에멘탈	171,7 €/100 kg/net	0	
0406 90 15	--- 그뤼에르, 스브린즈 치즈	171,7 €/100 kg/net	0	
0406 90 17	--- 버그캐세, 아펜젤 치즈	171,7 €/100 kg/net	0	
0406 90 18	--- 프로마주 프리부루주아, 바슈랭 몽도르, 티드 드 무안 치 치즈	171,7 €/100 kg/net	0	
0406 90 19	--- 글라루스 허브치즈 (샤브자이거/스킴밀크로 만들고 잘 같은 허브를 섞은 치즈)	7.7	0	
0406 90 21	--- 체다	167,1 €/100 kg/net	0	
0406 90 23	--- 에담	151 €/100 kg/net	0	
0406 90 25	--- 탈시트	151 €/100 kg/net	0	
0406 90 27	--- 버터캐세	151 €/100 kg/net	0	
0406 90 29	--- 카슈카발	151 €/100 kg/net	0	
0406 90 32	--- 페타	151 €/100 kg/net	0	
0406 90 35	--- 케팔로-티리	151 €/100 kg/net	0	
0406 90 37	--- 핀란디아	151 €/100 kg/net	0	
0406 90 39	--- 잘스버그	151 €/100 kg/net	0	
	--- 기타			
0406 90 50	---- 면양 또는 버팔로 우유의 것, 염수장 용기 또는 양피 또는 염소가죽 병의 것	151 €/100 kg/net	0	
	---- 기타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이하인 것			
	----- 무지방상태에서 수분함량이 100분의 47이하인 것			
0406 90 61	----- 그라나 파다노, 파르미자노 레자노	188,2 €/100 kg/net	0	
0406 90 63	----- 피오레자르도, 페코리노	188,2 €/100 kg/net	0	
0406 90 69	----- 기타	188,2 €/100 kg/net	0	
	----- 100분의 47초과 100분의 72이하인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406 90 73	----- 프로볼로네	151 €/100 kg/net	0	
0406 90 75	----- 아지아고, 카치오카발로, 몬타지오, 라구자노	151 €/100 kg/net	0	
0406 90 76	----- 단보, 폰탈, 폰티나, 핀보, 하바티, 마리보, 삼소	151 €/100 kg/net	0	
0406 90 78	----- 고다	151 €/100 kg/net	0	
0406 90 79	----- 스롬, 이탈리아코, 컨헝, 생빅테르, 생쁠랭, 탈레지오 치즈	151 €/100 kg/net	0	
0406 90 81	----- 캄팔, 체서, 웬슬리데일, 랭커셔, 더블글로스터, 블라니, 콜비, 몬테레이	151 €/100 kg/net	0	
0406 90 82	----- 까망베르	151 €/100 kg/net	0	
0406 90 84	----- 브리	151 €/100 kg/net	0	
0406 90 85	----- 케팔로그라비에라, 카세리	151 €/100 kg/net	0	
	----- 기타 치즈			
0406 90 86	----- 무지방상태에서 수분함량이 100분의 47초과 100분의 52이하인 것	151 €/100 kg/net	0	
0406 90 87	----- 무지방상태에서 수분함량이 100분의 52초과 100분의 62이하인 것	151 €/100 kg/net	0	
0406 90 88	----- 무지방상태에서 수분함량이 100분의 62초과 100분의 72이하인 것	151 €/100 kg/net	0	
0406 90 93	----- 무지방상태에서 수분함량이 100분의 72를 초과하는 것	185,2 €/100 kg/net	0	
0406 90 99	----- 기타	221,2 €/100 kg/net	0	
0407 00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 가공류의 것			
	-- 부화용			
0407 00 11	--- 칠면조 및 거위의 것	105 €/1 000 p/st	0	
0407 00 19	--- 기타	35 €/1 000 p/st	0	
0407 00 30	-- 기타	30,4 €/100 kg/net	0	
0407 00 90	- 기타	7.7	0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난황			
	-- 건조한 것			
0408 11 20	--- 식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	Free	0	
0408 11 80	--- 기타	142,3 €/100 kg/net	0	
0408 19	-- 기타			
0408 19 20	--- 식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	Free	0	
	--- 기타			
0408 19 81	---- 액상의 것	62 €/100 kg/net	0	
0408 19 89	---- 기타(냉동 포함)	66,3 €/100 kg/net	0	
	- 기타			
	-- 건조한 것			
0408 91 20	--- 식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	Free	0	
0408 91 80	--- 기타	137,4 €/100 kg/net	0	
0408 99	-- 기타			
0408 99 20	--- 식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	Free	0	
0408 99 80	--- 기타	35,3 €/100 kg/net	0	
0409 00 00	천연꿀	17.3	5	
0410 00 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7.7	0	
05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 00 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것, 세척 세정여부 불문) 및 그 웨이스트	Free	0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0502 10 00	-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Free	0	
0502 90 00	- 기타	Free	0	
0504 00 00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505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0505 10	-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0505 10 10	-- 날것	Free	0	
0505 10 90	-- 기타	Free	0	
0505 90 00	- 기타	Free	0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6 10 00	-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	Free	0	
0506 90 00	- 기타	Free	0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10 00	- 아이보리 및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Free	0	
0507 90 00	- 기타	Free	0	
0508 00 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 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Free	0	
0510 00 00	용연향·해리향·시뽏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Free	0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511 10 00	- 소의 정자	Free	0	
	- 기타			
0511 91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0511 91 10	--- 어류의 부산물	Free	0	
0511 91 90	--- 기타	Free	0	
0511 99	-- 기타			
0511 99 10	--- 동물의 건과 근,원피의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Free	0	
	--- 동물성 천연 생해면			
0511 99 31	---- 날것	Free	0	
0511 99 39	---- 기타	5.1	3	
0511 99 85	---- 기타	Free	0	
06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切花)와 장식용의 잎			
060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1 10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0601 10 10	-- 하이신스	5.1	0	
0601 10 20	-- 수선	5.1	0	
0601 10 30	-- 튤립	5.1	0	
0601 10 40	-- 글라디올러스	5.1	0	
0601 10 90	-- 기타	5.1	0	
0601 20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0601 20 10	--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Free	0	
0601 20 30	-- 난, 히아신스, 수선, 튤립	9.6	0	
0601 20 90	-- 기타	6.4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삼수·접수 및 버섯의 중균			
0602 10	- 뿌리가 없는 삼수와 접수			
0602 10 10	-- 덩굴식물의 것	Free	0	
0602 10 90	-- 기타	4	0	
0602 20	-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일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602 20 10	-- 덩굴식물의 것(접목하거나 뿌리가 있는 것)	Free	0	
0602 20 90	-- 기타	8.3	0	
0602 30 00	-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여부불문)	8.3	0	
0602 40	- 접목여부 불문			
0602 40 10	-- 접목하거나 눈접하지 않은 것	8.3	0	
0602 40 90	-- 접목하거나 눈접한 것	8.3	0	
0602 90	- 기타			
0602 90 10	-- 버섯의 중균	8.3	0	
0602 90 20	-- 파인애플 나무	Free	0	
0602 90 30	-- 채소, 딸기나무	8.3	0	
	-- 기타			
	---- 실외식물			
	---- 수목 및 관목			
0602 90 41	----- 산림수	8.3	0	
	----- 기타			
0602 90 45	----- 뿌리가 없는 삼수 및 어린 식물	6.5	0	
0602 90 49	----- 기타	8.3	0	
	---- 기타 실외식물			
0602 90 51	----- 숙근초	8.3	0	
0602 90 59	----- 기타	8.3	0	
	---- 실내식물			
0602 90 70	---- 뿌리가 있는 삼수 및 어린식물(선인장 제외)	6.5	0	
	---- 기타			
0602 90 91	----- 꽃봉오리 또는 꽃이 있는 화훼류(선인장 제외)	6.5	0	
0602 90 99	----- 기타	6.5	0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신선			
0603 11 00	-- 장미	8.5	0	
0603 12 00	-- 카네이션	8.5	0	
0603 13 00	-- 난	8.5	0	
0603 14 00	-- 국화	8.5	0	
0603 19	-- 기타			
0603 19 10	--- 글라디올러스	8.5	0	
0603 19 90	--- 기타	8.5	0	
0603 90 00	- 기타	10	0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 색·표백·침투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 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 10	- 이끼와 지의			
0604 10 10	-- 레인디어모스	Free	0	
0604 10 90	-- 기타	5	0	
	- 기타			
0604 91	-- 신선한 것			
0604 91 20	--- 크리스마스트리	2.5	0	
0604 91 40	--- 침엽수 가지	2.5	0	
0604 91 90	--- 기타	2	0	
0604 99	-- 기타			
0604 99 10	--- 건조 이상의 처리를 하지 않은 것	Free	0	
0604 99 90	--- 기타	10.9	0	
07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1 10 00	- 종자용	4.5	0	
0701 90	- 기타			
0701 90 10	-- 녹말 제조용	5.8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701 90 50	--- 햇감자(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9.6	0	
0701 90 90	--- 기타	11.5	0	
0702 00 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703	양파 · 쪽파 · 마늘 ·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10	- 양파와 쪽파			
	-- 양파			
0703 10 11	--- 세트	9.6	5	
0703 10 19	--- 기타	9.6	5	
0703 10 90	-- 쪽파	9.6	0	
0703 20 00	- 마늘	9,6 + 120 €/100 kg/net	5	
0703 90 00	- 리크 및 기타 파속의 채소	10.4	0	
0704	양배추 · 꽃양배추 · 구경양배추 ·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 10 00	-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9,6 MIN 1,1 €/100 kg/net	3	
0704 20 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12	0	
0704 90	- 기타			
0704 90 10	-- 흰양배추 및 적양배추	12 MIN 0,4 €/100 kg/net	0	
0704 90 90	-- 기타	12	0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냉 장한 것에 한한다)			
	- 상추			
0705 11 00	-- 상추	10,4 MIN 1,3 €/100 kg/br	0	
0705 19 00	-- 기타	10.4	0	
	- 치커리			
0705 21 00	-- 워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10.4	0	
0705 29 00	-- 기타	10.4	0	
0706	당근 · 순무 · 셀러드용 사탕무뿌리 · 선모(仙茅) · 셀러리 악 · 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 10 00	- 당근과 순무	13.6	0	
0706 90	- 기타			
0706 90 10	-- 셀러리악(뿌리있는 것 또는 독일셀러리)	13.6	3	
0706 90 30	-- 겨자무	12	0	
0706 90 90	-- 기타	13.6	0	
0707 00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00 05	- 오이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707 00 90	- 작은오이	12.8	0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10 00	- 완두(피섬새티범)	8	3	
0708 20 00	- 콩(비그나종 · 파세러스종)	10,4 MIN 1,6 €/100 kg/net	3	
0708 90 00	- 기타 채두류	11.2	0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20 00	- 아스파라거스	10.2	0	
0709 30 00	- 가지(에그플랜트)	12.8	0	
0709 40 00	- 셀러리(셀러리악 제외)	12.8	0	
	- 버섯과 송로			
0709 51 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2.8	0	
0709 59	-- 기타			
0709 59 10	--- 살구버섯	3.2	0	
0709 59 30	--- 표고버섯	5.6	0	
0709 59 50	--- 송로	6.4	0	
0709 59 90	--- 기타	6.4	0	
0709 60	- 고추류(캡시쿰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709 60 10	-- 단고추	7.2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709 60 91	--- 캡사이컴속의 버섯(캡사이신 및 캡사이컴 올레오레진 염색 조제용)	Free	0	
0709 60 95	--- 정유 및 레지노이드 산업제조용	Free	0	
0709 60 99	--- 기타	6.4	5	
0709 70 00	- 시금치류, 뉴질랜드 시금치 및 가든 시금치	10.4	0	
0709 90	- 기타			
0709 90 10	-- 샐러드 채소(상추 및 치커리 제외)	10.4	0	
0709 90 20	-- 근대 및 카르둔	10.4	0	
	-- 올리브			
0709 90 31	--- 올리브 오일 생산용	4.5	0	
0709 90 39	--- 기타	13,1 €/100 kg/net	0	
0709 90 40	-- 케이퍼	5.6	0	
0709 90 50	-- 회향	8	0	
0709 90 60	-- 스위트콘	9,4 €/100 kg/net	0	
0709 90 70	-- 주키니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709 90 80	-- 솜영경귀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709 90 90	-- 기타	12.8	0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0 10 00	- 감자	14.4	0	
	- 채두류의 채소(탈각 또는 미탈각)			
0710 21 00	-- 완두(피섬 새티범)	14.4	0	
0710 22 00	-- 콩(비그나종 및 파세올루스종)	14.4	0	
0710 29 00	-- 기타	14.4	0	
0710 30 00	- 시금치류, 뉴질랜드 시금치 및 가든 시금치	14.4	0	
0710 40 00	- 스위트콘	5,1 + 9,4 €/100 kg/net	0	
0710 80	- 기타 채소			
0710 80 10	-- 올리브	15.2	0	
	-- 캡사이컴속 및 피멘타속의 것			
0710 80 51	--- 단고추	14.4	0	
0710 80 59	--- 기타	6.4	0	
	-- 버섯류			
0710 80 61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4.4	0	
0710 80 69	--- 기타	14.4	0	
0710 80 70	-- 토마토	14.4	0	
0710 80 80	-- 구상의 양영경귀	14.4	0	
0710 80 85	-- 아스파라거스	14.4	0	
0710 80 95	-- 기타	14.4	0	
0710 90 00	- 채소류 혼합물	14.4	0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 등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1 20	- 올리브			
0711 20 10	-- 올리브(오일생산용 제외)	6.4	0	
0711 20 90	-- 기타	13,1 €/100 kg/net	0	
0711 40 00	- 오이류	12	0	
	- 버섯과 송로			
0711 51 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9,6 + 191 €/100 kg/net eda	0	
0711 59 00	-- 기타	9.6	0	
0711 90	-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채소류			
0711 90 10	--- 캡사이컴속 또는 피멘타 속의 것	6.4	0	
0711 90 30	--- 스위트콘	5,1 + 9,4 €/100 kg/net	0	
0711 90 50	--- 양파	7.2	0	
0711 90 70	--- 케이퍼	4.8	0	
0711 90 80	--- 기타	9.6	0	
0711 90 90	-- 채소류 혼합물	12	5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2 20 00	- 양파	12.8	0	
	-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트레멜라종) 및 송로			
0712 31 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2.8	0	
0712 32 00	--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12.8	0	
0712 33 00	-- 젤리균류(트레멜라종)	12.8	0	
0712 39 00	-- 기타	12.8	0	
0712 90	-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0712 90 05	-- 감자(절단 및 얇게 썬 것 불문, 더 이상 조제하지 않은 것)	10.2	0	
	-- 스위트콘(지 메이스바 사카라타)			
0712 90 11	--- 종자용(하이브리드)	Free	0	
0712 90 19	--- 기타	9,4 €/100 kg/net	0	
0712 90 30	-- 토마토	12.8	0	
0712 90 50	-- 당근	12.8	0	
0712 90 90	-- 기타	12.8	0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3 10	- 완두(파섬새티범)			
0713 10 10	-- 종자용	Free	0	
0713 10 90	-- 기타	Free	0	
0713 20 00	- 이집트 콩(가반조스)	Free	0	
	- 콩(비그나종 · 파세러스종)			
0713 31 00	-- 녹두[비그나 명고(엘) 헤파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월크잭종]	Free	0	
0713 32 00	-- 팥(아주키, 파세러스 또는 비그나 앙구라리스)	Free	0	
0713 33	-- 강남콩(흰 완두콩 포함, 파세러스 불가리스)			
0713 33 10	--- 종자용	Free	0	
0713 33 90	--- 기타	Free	0	
0713 39 00	-- 기타	Free	0	
0713 40 00	- 렌즈콩	Free	0	
0713 50 00	-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와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3.2	0	
0713 90 00	- 기타	3.2	0	
0714	매니옥 · 칩뿌리 · 살렘 · 예루살렘 아티초크 ·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 냉장 · 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			
0714 10	- 매니옥(카사바)			
0714 10 10	-- 분, 조분의 펠리트	9,5 €/100 kg/net	0	
	-- 기타			
0714 10 91	---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28킬로그램이하 포장, 신선한 원상의 것 혹은 껍질없이 냉동한 것, 얇게 썬 것인지 여부는 불문)	9,5 €/100 kg/net	0	
0714 10 99	--- 기타	9,5 €/100 kg/net	0	
0714 20	- 고구마			
0714 20 10	-- 신선, 원상의 것, 식용	3.8	0	
0714 20 90	-- 기타	6,4 €/100 kg/net	0	
0714 90	- 기타			
	-- 칩뿌리, 살렘, 기타 뿌리와 결절(전분량이 많은 것)			
0714 90 11	---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28킬로그램이하 포장, 신선한 원상의 것 혹은 껍질없이 냉동한 것, 얇게 썬 것인지 여부는 불문)	9,5 €/100 kg/net	0	
0714 90 19	--- 기타	9,5 €/100 kg/net	0	
0714 90 90	--- 기타	3.8	0	
08	제8류 식용의 과일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 · 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코코넛			
0801 11 00	-- 말린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801 19 00	-- 기타	Free	0	
	- 브라질넛			
0801 21 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Free	0	
0801 22 00	-- 탈각	Free	0	
	- 캐슈넛			
0801 31 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Free	0	
0801 32 00	-- 탈각	Free	0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아몬드			
0802 11	-- 탈각하지 아니한 것			
0802 11 10	--- 쓴것	Free	0	
0802 11 90	--- 기타	5.6	0	
0802 12	-- 탈각한 것			
0802 12 10	--- 쓴것	Free	0	
0802 12 90	--- 기타	3.5	0	
	- 헤이즐넛 및 필버트(코리루스 종)			
0802 21 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3.2	0	
0802 22 00	-- 탈각	3.2	0	
	- 호두			
0802 31 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4	0	
0802 32 00	-- 탈각	5.1	0	
0802 40 00	- 밤(카스타네아종)	5.6	0	
0802 50 00	- 피스타치오	1.6	0	
0802 60 00	- 마카다미아	2	0	
0802 90	- 기타			
0802 90 20	-- 아레카(베텔), 콜라, 피칸	Free	0	
0802 90 50	-- 잣	2	0	
0802 90 85	-- 기타	2	0	
0803 00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신선한 것			
0803 00 11	-- 플랜틴	16	0	
0803 00 19	-- 기타	176 €/1 000 kg/net	0	
0803 00 90	- 건조한 것	16	0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애버카도우 · 과아버 · 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10 00	- 대추야자	7.7	0	
0804 20	- 무화과			
0804 20 10	-- 신선	5.6	0	
0804 20 90	-- 건조	8	0	
0804 30 00	- 파인애플	5.8	0	
0804 40 00	- 아보카도	4	0	
0804 50 00	- 과아버, 망고, 망고스틴	Free	0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10	- 오렌지			
0805 10 20	-- 스위트오렌지(신선)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805 10 80	-- 기타	16	5	
0805 20	-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 클레멘타인 ·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 20 10	-- 클레멘타인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805 20 30	-- 몬레알레 및 세트수머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805 20 50	-- 맨더린 및 월킹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805 20 70	-- 탄저린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805 20 90	-- 기타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805 40 00	-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1.5	0	
0805 50	- 레몬(시트리스 리몬 및 시트리스 리머눔)과 라임(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및 시트리스 라티폴리아)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805 50 10	-- 레몬(시트리스리몬·시트리스리머눔)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805 50 90	-- 라임(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시트리스 라티폴리아)	12.8	5	
0805 90 00	- 기타	12.8	0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10	- 신선한 것			
0806 10 10	-- 포도(식용)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806 10 90	-- 기타	14.4	0	
0806 20	- 건조한 것			
0806 20 10	-- 커런트	2.4	0	
0806 20 30	-- 솔다나	2.4	0	
0806 20 90	-- 기타	2.4	0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 멜론(수박포함)			
0807 11 00	-- 수박	8.8	0	
0807 19 00	-- 기타	8.8	0	
0807 20 00	- 포포우(파파야)	Free	0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10	- 사과			
0808 10 10	-- 사이더사과, 벌크, 9월16일~12월15일	7,2 MIN 0,36 € / 100 kg/net	5	
0808 10 80	-- 기타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808 20	- 배 및 마르멜로			
	-- 배			
0808 20 10	--- 페리배, 벌크, 8월1일 ~ 12월 31일	7,2 MIN 0,36 € / 100 kg/net	5	
0808 20 50	--- 기타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808 20 90	-- 마르멜로	7.2	0	
0809	살구·버찌·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10 00	- 살구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809 20	- 버찌			
0809 20 05	-- 신체리(프루누스 세라누스 종)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809 20 95	-- 기타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809 30	-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0809 30 10	-- 벡터린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809 30 90	-- 기타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809 40	- 자두와 슬로우			
0809 40 05	-- 자두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5	부록 2-가-2의 제3 항을 참조
0809 40 90	-- 슬로우	12	0	
0810	기타 과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10 00	- 딸기	11.2	0	
0810 2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			
0810 20 10	-- 나무딸기	8.8	0	
0810 20 90	-- 기타	9.6	0	
0810 40	- 크랜베리·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일			
0810 40 10	-- 카우베리, 폭스베리, 마운틴 크랜베리(박시니엄 비티스 이데아 종 과일)	Free	0	
0810 40 30	-- 박시니움 미틸러스 종	3.2	0	
0810 40 50	-- 박시니움 마크로카르푸류 및 박시니움 코림보숨종	3.2	0	
0810 40 90	-- 기타	9.6	0	
0810 50 00	- 키위	8.8	5	
0810 60 00	- 두리안	8.8	0	
0810 9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810 90 30	-- 타마린드, 캐슈애플, 리치, 잭프루트, 사포딜로 자두	Free	0	
0810 90 40	-- 패션프루트,카람볼라,피타야	Free	0	
	--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 및 구즈베리			
0810 90 50	--- 블랙커런트	8.8	0	
0810 90 60	--- 레드커런트	8.8	0	
0810 90 70	--- 기타	9.6	0	
0810 90 95	-- 기타	8.8	0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1 10	- 초본류 딸기			
	-- 설탕 및 감미 첨가한 것			
0811 10 11	--- 설탕 100분의 13이하 포함	20,8 + 8,4 €/100 kg/net	0	
0811 10 19	--- 기타	20.8	0	
0811 10 90	-- 기타	14.4	0	
0811 20	-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와 흑색 ·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 설탕 및 감미 첨가한 것			
0811 20 11	--- 설탕 100분의 13초과 포함	20,8 + 8,4 €/100 kg/net	0	
0811 20 19	--- 기타	20.8	0	
	-- 기타			
0811 20 31	--- 나무딸기	14.4	0	
0811 20 39	--- 블랙커런트	14.4	0	
0811 20 51	--- 레드커런트	12	0	
0811 20 59	--- 블랙베리와 오디	12	0	
0811 20 90	--- 기타	14.4	0	
0811 90	- 기타			
	-- 설탕 및 감미 첨가한 것			
	--- 설탕 100분의 13초과 포함			
0811 90 11	---- 열대과실 및 열대견과류	13 + 5,3 €/100 kg/net	0	
0811 90 19	---- 기타	20,8 + 8,4 €/100 kg/net	0	
	--- 기타			
0811 90 31	---- 열대과실 및 열대견과류	13	0	
0811 90 39	---- 기타	20.8	0	
	-- 기타			
0811 90 50	--- 박시니움 미르틸루스종 과실	12	0	
0811 90 70	--- 박시니움 미르틸로이데스류 및 박시니움 안구스티폴리움류 과실	3.2	0	
	--- 체리류			
0811 90 75	---- 산체리(프루누스 세라누스 종)	14.4	0	
0811 90 80	---- 기타	14.4	0	
0811 90 85	--- 열대과실 및 열대견과류	9	0	
0811 90 95	--- 기타	14.4	0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황가스 · 염수 ·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2 10 00	- 체리류	8.8	0	
0812 90	- 기타			
0812 90 10	-- 살구	12.8	0	
0812 90 20	-- 오렌지	12.8	0	
0812 90 30	-- 포포우(파파야)	2.3	0	
0812 90 40	-- 박시니움 미르틸루스종 과일	6.4	0	
0812 90 70	-- 구아바,맹고,맹고스틴,타마린드,캐슈애플,리치,잭프루트,사포딜로 자두,패션프루트,카람볼라,피타야 및 열대 견과류	5.5	0	
0812 90 98	-- 기타	8.8	0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 류의 견과류 혼합물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 10 00	- 살구	5.6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813 20 00	- 프룬	9.6	0	
0813 30 00	- 사과	3.2	0	
0813 40	- 기타 과실			
0813 40 10	-- 복숭아(넥타린을 포함한다)	5.6	0	
0813 40 30	-- 배	6.4	0	
0813 40 50	-- 포포우(파파야)	2	0	
0813 40 60	-- 타마린드	Free	0	
0813 40 70	-- 캐슈애플,리치,잭프루트,사포딜로 자두,패션프루트,카람볼라,피타야	Free	0	
0813 40 95	-- 기타	2.4	0	
0813 5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건조과실의 혼합물(제0801호에서 제0806호의 것을 제외한다)			
	--- 프룬을 포함하지 않은 것			
0813 50 12	---- 포포우(파파야),타마린드,캐슈애플,리치,잭프루트,사포딜로 자두,패션프루트,카람볼라,피타야의 것	4	0	
0813 50 15	---- 기타	6.4	0	
0813 50 19	--- 프룬을 포함한 것	9.6	0	
	-- 건조견과류(제0801호와 제0802호의 것)의 혼합물			
0813 50 31	--- 열대견과류의 것	4	0	
0813 50 39	--- 기타	6.4	0	
	-- 기타 혼합물			
0813 50 91	--- 프룬과 무화과를 포함하지 않는 것	8	0	
0813 50 99	--- 기타	9.6	0	
0814 00 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1.6	0	
09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커피(볶지 않은 것)			
0901 11 00	--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Free	0	
0901 12 00	-- 카페인 제거된 것	8.3	0	
	- 커피(볶은 것)			
0901 21 00	--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7.5	0	
0901 22 00	-- 카페인 제거된 것	9	0	
0901 90	- 기타			
0901 90 10	-- 커피의 각과 피	Free	0	
0901 90 90	-- 커피를 함유한 대용물	11.5	0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902 10 00	-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3.2	0	
0902 20 00	- 기타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	Free	0	
0902 30 00	-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Free	0	
0902 40 00	- 기타 홍차(발효차) 및 기타 부분 발효차	Free	0	
0903 00 00	마태	Free	0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후추			
0904 11 00	-- 분쇄 또는 파쇄하지 않은 것	Free	0	
0904 12 00	-- 분쇄 또는 파쇄한 것	4	0	
0904 20	-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 분쇄 또는 파쇄하지 않은 것			
0904 20 10	--- 단고추	9.6	0	
0904 20 30	--- 기타	Free	0	
0904 20 90	-- 분쇄 또는 파쇄한 것	5	0	
0905 00 00	바닐라	6	0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분쇄 또는 파쇄하지 않은 것			
0906 11 00	--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불룸)	Free	0	
0906 19 00	-- 기타	Free	0	
0906 20 00	- 분쇄 또는 파쇄한 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0907 00 00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함)	8	0	
0908	육두구 · 메이스 및 소두구			
0908 10 00	- 육두구	Free	0	
0908 20 00	- 메이스	Free	0	
0908 30 00	- 소두구	Free	0	
0909	아니스 · 대회향 · 회향 · 코리앤더 · 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0909 10 00	-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Free	0	
0909 20 00	- 코리앤더의 씨	Free	0	
0909 30 00	- 커민의 씨	Free	0	
0909 40 00	- 캐러웨이의 씨	Free	0	
0909 50 00	- 회향의 씨; 주니퍼의 열매	Free	0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 · 월계수의 잎 · 카레 및 기타 향신료			
0910 10 00	- 생강	Free	0	
0910 20	- 샤프란			
0910 20 10	-- 분쇄 또는 파쇄하지 않은 것	Free	0	
0910 20 90	-- 분쇄 또는 파쇄한 것	8.5	0	
0910 30 00	- 심황(강황)	Free	0	
	- 기타 종			
0910 91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0910 91 10	--- 분쇄 또는 파쇄하지 않은 것	Free	0	
0910 91 90	--- 분쇄 또는 파쇄한 것	12.5	0	
0910 99	-- 기타			
0910 99 10	--- 호로파 종자	Free	0	
	--- 타임			
	---- 분쇄 또는 파쇄하지 않은 것			
0910 99 31	----- 야생 타임	Free	0	
0910 99 33	----- 기타	7	0	
0910 99 39	---- 분쇄 또는 파쇄한 것	8.5	0	
0910 99 50	--- 월계수	7	0	
0910 99 60	--- 카레	Free	0	
	--- 기타			
0910 99 91	---- 분쇄 또는 파쇄하지 않은 것	Free	0	
0910 99 99	---- 분쇄 또는 파쇄한 것	12.5	0	
10	제10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			
1001 10 00	- 듀럼종의 밀	148 €/t	0	
1001 90	- 기타			
1001 90 10	-- 종자용 스펠트	12.8	0	
	-- 기타 스펠트, 일반 밀과 메슬린			
1001 90 91	--- 일반 밀과 메슬린 종자	95 €/t	0	
1001 90 99	--- 기타	95 €/t	0	
1002 00 00	호밀	93 €/t	0	
1003 00	보리			
1003 00 10	- 종자	93 €/t	0	
1003 00 90	- 기타	93 €/t	0	
1004 00 00	귀리	89 €/t	0	
1005	옥수수			
1005 10	- 종자용			
	-- 하이브리드			
1005 10 11	--- 더블 하이브리드와 톱크로스 하이브리드	Free	0	
1005 10 13	--- 쓰리크로스 하이브리드	Free	0	
1005 10 15	--- 심플 하이브리드	Free	0	
1005 10 19	--- 기타	Free	0	
1005 10 90	-- 기타	94 €/t	0	
1005 90 00	- 기타	94 €/t	0	
1006	쌀			
1006 10	- 벼			
1006 10 10	-- 종자용	7.7	E	
	-- 기타			
	--- 데친 것			
1006 10 21	---- 둥근 것	211 €/t	E	
1006 10 23	---- 종간의 것	211 €/t	E	
	---- 긴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006 10 25	----- 세로/가로 비율이 2초과 3미만	211 €/t	E	
1006 10 27	-----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211 €/t	E	
	--- 기타			
1006 10 92	---- 둥근 것	211 €/t	E	
1006 10 94	---- 중간의 것	211 €/t	E	
	---- 긴 것			
1006 10 96	----- 세로/가로 비율이 2초과 3미만	211 €/t	E	
1006 10 98	-----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211 €/t	E	
1006 20	- 현미			
	-- 데친 것			
1006 20 11	--- 둥근 것	264 €/t	E	
1006 20 13	--- 중간의 것	264 €/t	E	
	--- 긴 것			
1006 20 15	---- 세로/가로 비율이 2초과 3미만	264 €/t	E	
1006 20 17	----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264 €/t	E	
	-- 기타			
1006 20 92	---- 둥근 것	264 €/t	E	
1006 20 94	---- 중간의 것	264 €/t	E	
	---- 긴 것			
1006 20 96	----- 세로/가로 비율이 2초과 3미만	264 €/t	E	
1006 20 98	-----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264 €/t	E	
1006 30	- 정미(연마·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 부분 도정미			
	--- 데친 것			
1006 30 21	---- 둥근 것	416 €/t	E	
1006 30 23	---- 중간의 것	416 €/t	E	
	---- 긴 것			
1006 30 25	----- 세로/가로 비율이 2초과 3미만	416 €/t	E	
1006 30 27	-----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416 €/t	E	
	--- 기타			
1006 30 42	---- 둥근 것	416 €/t	E	
1006 30 44	---- 중간의 것	416 €/t	E	
	---- 긴 것			
1006 30 46	----- 세로/가로 비율이 2초과 3미만	416 €/t	E	
1006 30 48	-----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416 €/t	E	
	-- 완전 도정미			
	--- 데친 것			
1006 30 61	---- 둥근 것	416 €/t	E	
1006 30 63	---- 중간의 것	416 €/t	E	
	---- 긴 것			
1006 30 65	----- 세로/가로 비율이 2초과 3미만	416 €/t	E	
1006 30 67	-----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416 €/t	E	
	--- 기타			
1006 30 92	---- 둥근 것	416 €/t	E	
1006 30 94	---- 중간의 것	416 €/t	E	
	---- 긴 것			
1006 30 96	----- 세로/가로 비율이 2초과 3미만	416 €/t	E	
1006 30 98	-----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416 €/t	E	
1006 40 00	- 쌀	128 €/t	E	
1007 00	수수			
1007 00 10	- 종자용 하이브리드	6.4	0	
1007 00 90	- 기타	94 €/t	0	
1008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008 10 00	- 메밀	37 €/t	0	
1008 20 00	- 기장	56 €/t	0	
1008 30 00	- 카나리시드	Free	0	
1008 90	- 기타 곡물			
1008 90 10	-- 라이밀	93 €/t	0	
1008 90 90	-- 기타	37 €/t	0	
11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01 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밀가루			
1101 00 11	-- 듀럼종의 것	172 €/t	0	
1101 00 15	-- 일반밀 및 스펀트의 것	172 €/t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101 00 90	- 메슬린 가루	172 €/t	0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2 10 00	- 호밀가루	168 €/t	0	
1102 20	- 옥수수가루			
1102 20 1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	173 €/t	0	
1102 20 90	-- 기타	98 €/t	0	
1102 90	- 기타			
1102 90 10	-- 보리가루	171 €/t	0	
1102 90 30	-- 귀리가루	164 €/t	0	
1102 90 50	-- 쌀가루	138 €/t	E	
1102 90 90	-- 기타	98 €/t	0	
1103	곡물의 분쇄물 · 조분 및 펠리트			
	- 분쇄물 및 조분			
1103 11	-- 밀의 것			
1103 11 10	--- 듀럼종의 것	267 €/t	0	
1103 11 90	--- 일반밀 및 스펀트의 것	186 €/t	0	
1103 13	-- 옥수수의 것			
1103 13 1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	173 €/t	0	
1103 13 90	--- 기타	98 €/t	0	
1103 19	-- 기타 곡물의 것			
1103 19 10	--- 호밀의 것	171 €/t	0	
1103 19 30	--- 보리의 것	171 €/t	0	
1103 19 40	--- 귀리의 것	164 €/t	0	
1103 19 50	--- 쌀의 것	138 €/t	E	
1103 19 90	--- 기타	98 €/t	0	
1103 20	- 펠리트			
1103 20 10	-- 호밀의 것	171 €/t	0	
1103 20 20	-- 보리의 것	171 €/t	0	
1103 20 30	-- 귀리의 것	164 €/t	0	
1103 20 40	-- 옥수수의 것	173 €/t	0	
1103 20 50	-- 쌀의 것	138 €/t	E	
1103 20 60	-- 밀의 것	175 €/t	0	
1103 20 90	-- 기타	98 €/t	0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뿔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압착 또는 플레이크			
1104 12	-- 귀리의 것			
1104 12 10	--- 압착	93 €/t	0	
1104 12 90	--- 플레이크	182 €/t	0	
1104 19	-- 기타 곡물의 것			
1104 19 10	--- 밀의 것	175 €/t	0	
1104 19 30	--- 호밀의 것	171 €/t	0	
1104 19 50	--- 옥수수의 것	173 €/t	0	
	--- 보리의 것			
1104 19 61	---- 압착	97 €/t	0	
1104 19 69	---- 플레이크	189 €/t	0	
	--- 기타			
1104 19 91	---- 플레이크(쌀의 것)	234 €/t	E	
1104 19 99	---- 기타	173 €/t	0	
	- 기타 가공 곡물(껍질 벗긴것, 진주상의 것, 썰거나 뿔은 것 등)			
1104 22	-- 귀리의 것			
1104 22 20	--- 껍질 벗긴 것	162 €/t	0	
1104 22 30	--- 껍질 벗기고 얇은 조각으로 썰거나 거칠게 뿔은것	162 €/t	0	
1104 22 50	--- 진주상의 것	145 €/t	0	
1104 22 90	--- 거칠게 뿔은 것 이외의 것	93 €/t	0	
1104 22 98	--- 기타	93 €/t	0	
1104 23	-- 옥수수의 것			
1104 23 10	--- 껍질벗긴 것(얇은 조각으로 썬것 또는 거칠게 뿔은것 여부불문)	152 €/t	0	
1104 23 30	--- 진주상의 것	152 €/t	0	
1104 23 90	--- 거칠게 뿔은것 이외의 것	98 €/t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104 23 99	--- 기타	98 €/t	0	
1104 29	-- 기타 곡물의 것			
	--- 보리의 것			
1104 29 01	---- 껍질 벗긴 것	150 €/t	0	
1104 29 03	---- 껍질 벗기고 거칠게 빨거나 얇은 조각으로 썬 것	150 €/t	0	
1104 29 05	---- 진주상의 것	236 €/t	0	
1104 29 07	---- 꺼칠게 빨은 것 이외의 것	97 €/t	0	
1104 29 09	---- 기타	97 €/t	0	
	--- 기타			
	---- 껍질 벗긴것(얇은 조각으로 썬것 또는 거칠게 빨은것 여부불문)			
1104 29 11	----- 밀의 것	129 €/t	0	
1104 29 18	----- 기타	129 €/t	0	
1104 29 30	---- 진주상의 것	154 €/t	0	
	---- 꺼칠게 빨은것 이외의 것			
1104 29 51	----- 밀의 것	99 €/t	0	
1104 29 55	----- 호밀의 것	97 €/t	0	
1104 29 59	----- 기타	98 €/t	0	
	---- 기타			
1104 29 81	----- 밀의 것	99 €/t	0	
1104 29 85	----- 호밀의 것	97 €/t	0	
1104 29 89	----- 기타	98 €/t	0	
1104 30	-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 · 압축한 것 ·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에 한한다)			
1104 30 10	-- 밀의 것	76 €/t	0	
1104 30 90	-- 기타 곡물의 것	75 €/t	0	
1105	감자의 분 · 조분 · 분말 · 플레이크 · 입 및 펠리트			
1105 10 00	- 분, 조분과 분말	12.2	0	
1105 20 00	-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12.2	0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 조분과 분말			
1106 10 00	-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	7.7	0	
1106 20	- 사고 · 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에 한한다)			
1106 20 10	-- 변성한 것	95 €/t	0	
1106 20 90	-- 기타	166 €/t	0	
1106 30	- 제8류 물품의 것			
1106 30 10	-- 바나나의 것	10.9	0	
1106 30 90	-- 기타	8.3	0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7 10	- 볶지 아니한 것			
	-- 밀의 것			
1107 10 11	--- 분 형태의 것	177 €/t	0	
1107 10 19	--- 기타	134 €/t	0	
	-- 기타			
1107 10 91	--- 분 형태의 것	173 €/t	0	
1107 10 99	--- 기타	131 €/t	0	
1107 20 00	- 볶은 것	152 €/t	0	
1108	전분과 이눌린			
	- 전분			
1108 11 00	-- 밀 전분	224 €/t	0	
1108 12 00	-- 옥수수 전분	166 €/t	0	
1108 13 00	-- 감자 전분	166 €/t	0	
1108 14 00	-- 매니옥(카사바) 전분	166 €/t	0	
1108 19	-- 기타 전분			
1108 19 10	--- 쌀 전분	216 €/t	0	
1108 19 90	--- 기타	166 €/t	0	
1108 20 00	- 이눌린	19.2	0	
1109 00 00	밀 글루텐(건조 여부 불문)	512 €/t	0	
12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0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 00 10	- 종자용	Free	0	
1201 00 90	- 기타	Free	0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202 1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1202 10 10	-- 종자용	Free	0	
1202 10 90	-- 기타	Free	0	
1202 20 00	- 탈각한 것(파쇄여부 불문)	Free	0	
1203 00 00	코프라	Free	0	
1204 0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4 00 10	- 종자용	Free	0	
1204 00 90	- 기타	Free	0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 10	-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1205 10 10	-- 종자용	Free	0	
1205 10 90	-- 기타	Free	0	
1205 90 00	- 기타	Free	0	
1206 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6 00 10	- 종자용	Free	0	
	- 기타			
1206 00 91	-- 탈각한 것과 회색 및 백색 줄무늬 겹질에 있는 것	Free	0	
1206 00 99	-- 기타	Free	0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20	- 면실			
1207 20 10	-- 종자용	Free	0	
1207 20 90	-- 기타	Free	0	
1207 40	- 참깨			
1207 40 10	-- 종자용	Free	0	
1207 40 90	-- 기타	Free	0	
1207 50	- 겨자씨			
1207 50 10	-- 종자용	Free	0	
1207 50 90	-- 기타	Free	0	
	- 기타			
1207 91	-- 양귀비씨			
1207 91 10	--- 종자용	Free	0	
1207 91 90	--- 기타	Free	0	
1207 99	-- 기타			
1207 99 15	--- 종자용	Free	0	
	--- 기타			
1207 99 91	---- 대마씨	Free	0	
1207 99 97	---- 기타	Free	0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8 10 00	- 대두의 것	4.5	0	
1208 90 00	- 기타	Free	0	
1209	파종용의 종자 · 과실 및 포자			
1209 10 00	- 사탕무 종자	8.3	0	
	-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 21 00	-- 루우산(알팔파)종자	2.5	0	
1209 22	--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1209 22 10	--- 레드 클로버(트리폴리엄 프래텐스 엘) 종자	Free	0	
1209 22 80	--- 기타	Free	0	
1209 23	-- 페스큐 종자			
1209 23 11	--- 메도우 페스큐 (페스투카 프래텐시스 허드)종자	Free	0	
1209 23 15	--- 레드 페스큐(페스투카 루브라 엘)종자	Free	0	
1209 23 80	--- 기타	2.5	0	
1209 24 00	-- 캔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종자	Free	0	
1209 25	--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및 로오리엄 페레네 엘)			
1209 25 10	--- 이탈리아인 라이그래스(웨스터월드 포함)(로오리엄 멀티플로럼 엘)종자	Free	0	
1209 25 90	--- 페레네알 라이그래스(로오리엄 페레네 엘)종자	Free	0	
1209 29	-- 기타			
1209 29 10	--- 야생완두 종자, 포아 속 종자(포아 팔루스트리스 엘, 포아 트리발리스 엘), 콕스팻그래스 종자(닥틸리스 글로메라타 엘),겨이삭띠 종자(아그로티스)	Free	0	
1209 29 35	--- 티모디그래스 종자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209 29 50	--- 루핀 종자	2.5	0	
1209 29 60	--- 사료용 사탕무(베타 불가리스 바르 알바)종자	8.3	0	
1209 29 80	--- 기타	2.5	0	
1209 30 00	-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3	0	
	- 기타			
1209 91	-- 채소 종자			
1209 91 10	--- 구경 양배추(브라시카 올레라시아, 바르 콜오라파와 곡글리오드 엘 종)종자	3	0	
1209 91 30	--- 샐러드 비트 또는 근대뿌리(베타 불가리스 바르 콘디 비타)종자	8.3	0	
1209 91 90	--- 기타	3	0	
1209 99	-- 기타			
1209 99 10	--- 산림수 종자	Free	0	
	--- 기타			
1209 99 91	---- 화훼용 식물 종자(소호 제1209.30.00호의 것을 제외 한다)	3	0	
1209 99 99	---- 기타	4	0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루플린			
1210 10 00	- 호프(분쇄, 분상, 펠리트상의 것 제외)	5.8	0	
1210 20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에 한한다)와 루플린			
1210 20 10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에 한함, 루플린 함량 높은 것)와 루플린	5.8	0	
1210 20 90	-- 기타	5.8	0	
1211	주로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 20 00	- 인삼	Free	0	
1211 30 00	- 코카잎	Free	0	
1211 40 00	- 양귀비 줄기	Free	0	
1211 90	- 기타			
1211 90 30	-- 톤권콩	3	0	
1211 90 85	-- 기타	Free	0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 (신선 · 냉장 ·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 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212 20 00	- 해조류와 기타조류	Free	0	
	- 기타			
1212 91	-- 사탕무			
1212 91 20	--- 건조한 것(분쇄 여부 불문)	23 €/100 kg/net	0	
1212 91 80	--- 기타	6,7 €/100 kg/net	0	
1212 99	-- 기타			
1212 99 20	--- 사탕수수	4,6 €/100 kg/net	0	
1212 99 30	--- 로우커스트두	5.1	0	
	--- 로우커스트두 종자			
1212 99 41	---- 껍질 제거나 파쇄, 분쇄하지 않은 것	Free	0	
1212 99 49	---- 기타	5.8	0	
1212 99 70	--- 기타	Free	0	
1213 00 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1214	스워드 · 맹골드 · 사료용의 근채류 · 건조 · 루우산(알팔파) · 클로버 · 샌포인 · 케일 · 루핀 ·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4 10 00	-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Free	0	
1214 90	- 기타			
1214 90 10	-- 맹골드, 스워드 및 기타 사료용 근채류	5.8	0	
1214 90 90	-- 기타	Free	0	
13	제13류 락 · 검 ·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301	락과 천연검 · 수지 · 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 발삼)			
1301 20 00	- 아라비아 검	Free	0	
1301 90 00	- 기타	Free	0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2 11 00	-- 아편	Free	0	
1302 12 00	-- 감초의 것	3.2	0	
1302 13 00	-- 호프의 것	3.2	0	
1302 19	-- 기타			
1302 19 05	--- 바닐라 올레오레진	3	0	
1302 19 80	--- 기타	Free	0	
1302 20	- 펙틴질 ·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1302 20 10	-- 건조한 것	19.2	0	
1302 20 90	-- 기타	11.2	0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302 31 00	-- 한천	Free	0	
1302 32	-- 로우커스트두 · 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 32 10	--- 로우커스트두, 로우커스트두 종자의 것	Free	0	
1302 32 90	--- 구아씨의 것	Free	0	
1302 39 00	-- 기타	Free	0	
14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 대 · 등 · 갈대 · 골풀 · 양버드나무 · 라피아 및 청정 · 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1401 10 00	- 대	Free	0	
1401 20 00	- 등	Free	0	
1401 90 00	- 기타	Free	0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1404 20 00	- 면린터	Free	0	
1404 90 00	- 기타	Free	0	
15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1 00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돈지			
1501 00 11	--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Free	0	
1501 00 19	-- 기타	17,2 €/100 kg/net	0	
1501 00 90	- 가금지	11.5	0	
1502 00	소 · 연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1502 00 10	-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Free	0	
1502 00 90	- 기타	3.2	0	
1503 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탈로우유로서 유화 · 혼합 및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라드스테아린과 올레오스테아린			
1503 00 11	-- 산업용	Free	0	
1503 00 19	-- 기타	5.1	0	
1503 00 30	- 탈로우유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Free	0	
1503 00 90	- 기타	6.4	0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4 10	-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1504 10 10	-- 비타민A 2500 IU/g 이하 함유	3.8	0	
	-- 기타			
1504 10 91	--- 넙치류의 것	Free	0	
1504 10 99	--- 기타	Free	0	
1504 20	-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1504 20 10	-- 고체 분획물	10.9	0	
1504 20 90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504 30	-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1504 30 10	-- 고체 분획물	10.9	0	
1504 30 90	-- 기타	Free	0	
1505 00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1505 00 10	- 조상의 울그리스	3.2	0	
1505 00 90	- 기타	Free	0	
1506 00 00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 불문,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 제외)	Free	0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7 10	-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7 10 10	--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3.2	0	
1507 10 90	-- 기타	6.4	0	
1507 90	- 기타			
1507 90 10	--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1507 90 90	-- 기타	9.6	0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 10	- 조유			
1508 10 10	--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Free	0	
1508 10 90	-- 기타	6.4	0	
1508 90	- 기타			
1508 90 10	--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1508 90 90	-- 기타	9.6	0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 10	- 버어진			
1509 10 10	-- 람판테 올리브유	122,6 €/100 kg/net	0	
1509 10 90	-- 기타	124,5 €/100 kg/net	0	
1509 90 00	- 기타	134,6 €/100 kg/net	0	
1510 0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 00 10	- 조유	110,2 €/100 kg/net	0	
1510 00 90	- 기타	160,3 €/100 kg/net	0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1 10	- 조유			
1511 10 10	--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Free	0	
1511 10 90	-- 기타	3.8	0	
1511 90	- 기타			
	-- 고체 분획물			
1511 90 11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1511 90 19	---- 기타	10.9	0	
	-- 기타			
1511 90 91	---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1511 90 99	--- 기타	9	0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해바라기씨유,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1	-- 조유			
1512 11 10	---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3.2	0	
	--- 기타			
1512 11 91	---- 해바라기씨유	6.4	0	
1512 11 99	---- 잇꽃유	6.4	0	
1512 19	-- 기타			
1512 19 10	--- 산업용 또는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512 19 90	--- 기타	9.6	0	
	- 면실유와 그 분획물			
1512 21	-- 조유(고시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12 21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3.2	0	
1512 21 90	--- 기타	6.4	0	
1512 29	-- 기타			
1512 29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1512 29 90	--- 기타	9.6	0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1513 11	-- 조유			
1513 11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2.5	0	
	--- 기타			
1513 11 91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1513 11 99	---- 기타	6.4	0	
1513 19	-- 기타			
	--- 고체 분획물			
1513 19 11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1513 19 19	---- 기타	10.9	0	
	--- 기타			
1513 19 3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 기타			
1513 19 91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1513 19 99	----- 기타	9.6	0	
	-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1513 21	-- 조유			
1513 21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3.2	0	
	--- 기타			
1513 21 30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1513 21 90	---- 기타	6.4	0	
1513 29	-- 기타			
	--- 고체 분획물			
1513 29 11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1513 29 19	---- 기타	10.9	0	
	--- 기타			
1513 29 3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 기타			
1513 29 50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1513 29 90	----- 기타	9.6	0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저에크루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1514 11	-- 조유			
1514 11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3.2	0	
1514 11 90	--- 기타	6.4	0	
1514 19	-- 기타			
1514 19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1514 19 90	--- 기타	9.6	0	
	- 기타			
1514 91	-- 조유			
1514 91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3.2	0	
1514 91 90	--- 기타	6.4	0	
1514 99	-- 기타			
1514 99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1514 99 90	--- 기타	9.6	0	
1515	기타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1515 11 00	-- 조유	3.2	0	
1515 19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515 19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1515 19 90	--- 기타	9.6	0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 21	-- 조유			
1515 21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3.2	0	
1515 21 90	--- 기타	6.4	0	
1515 29	-- 기타			
1515 29 1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1515 29 90	--- 기타	9.6	0	
1515 3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1515 30 10	-- 인조성유 또는 인조플라스틱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아미노운데카노익산 생산용	Free	0	
1515 30 90	-- 기타	5.1	0	
1515 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조유			
1515 50 11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3.2	0	
1515 50 19	--- 기타	6.4	0	
	-- 기타			
1515 50 91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1515 50 99	--- 기타	9.6	0	
1515 90	- 기타			
1515 90 11	-- 동유, 호호바유, 오이티시카유, 머틀 밀랍과 목랍과 그 분획물	Free	0	
	-- 연초종자오일과 그 분획물			
	--- 조유			
1515 90 21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Free	0	
1515 90 29	---- 기타	6.4	0	
	--- 기타			
1515 90 31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Free	0	
1515 90 39	---- 기타	9.6	0	
	-- 기타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조유			
1515 90 4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3.2	0	
	---- 기타			
1515 90 51	----- 고체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1킬로그램이하 포장)	12.8	0	
1515 90 59	----- 고체, 기타, 액체	6.4	0	
	--- 기타			
1515 90 60	----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 기타			
1515 90 91	----- 고체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1킬로그램이하 포장)	12.8	0	
1515 90 99	----- 고체(기타) 및 액체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9.6	0	
1516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티에스테라화한 것, 리에스테라화한 것 또는 엘라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 여부를 불문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 10	-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1516 10 10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1516 10 90	-- 기타	10.9	0	
1516 2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1516 20 10	-- 수소첨가한 피마자유(오팔락스)	3.4	0	
	-- 기타			
1516 20 91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 기타			
1516 20 95	----- 콜자유,아마인유,레이프유,해바라기씨유,일리페,카리테,마코레,톨로우쿠나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5.1	0	
	---- 기타			
1516 20 96	----- 낙화생유,면실유,대두유,또는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기타 기름과 그들의 분획물(유리지방산 100분의 50 미만 포함)(팜핵유,일리페,야자유,콜자유,채종유,코파이바유 제외)	9.6	0	
1516 20 98	----- 기타	10.9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을 제외한다)			
1517 10	- 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1517 10 10	-- 유지방의 총량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8,3 + 28,4 €/100 kg/net	0	
1517 10 90	-- 기타	16	0	
1517 90	- 기타			
1517 90 10	-- 유지방의 총량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8,3 + 28,4 €/100 kg/net	0	
	-- 기타			
1517 90 91	--- 식용 비취발성 식물성 유지, 액상의 것, 혼합물	9.6	0	
1517 90 93	--- 몰드 이형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	2.9	0	
1517 90 99	--- 기타	16	0	
1518 00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1518 00 10	- 리놀신	7.7	0	
	- 비취발성 식물성유지(액상, 혼합, 산업용 또는 기술용)(식료품 생산용 제외)			
1518 00 31	-- 조상의 것	3.2	0	
1518 00 39	-- 기타	5.1	0	
	- 기타			
1518 00 91	-- 동물성 및 식물성유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 탈수, 황화, 취입, 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한다)(제1516호의 물품 제외)	7.7	0	
	-- 기타			
1518 00 95	---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혼합물 또는 조제품(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그 분획물의 것)	2	0	
1518 00 99	--- 기타	7.7	0	
1520 00 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페액	Free	0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랍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1 10 00	- 식물성 납	Free	0	
1521 90	- 기타			
1521 90 10	-- 경납(정제 또는 착색여부 불문)	Free	0	
	-- 밀납 기타 곤충납 (정제 또는 착색여부 불문)			
1521 90 91	--- 천연의 것	Free	0	
1521 90 99	--- 기타	2.5	0	
1522 00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522 00 10	- 데그라스	3.8	0	
	-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 올리브유의 특성을 가진 오일을 함유하는 것			
1522 00 31	--- 솥스톡	29,9 €/100 kg/net	0	
1522 00 39	--- 기타	47,8 €/100 kg/net	0	
	-- 기타			
1522 00 91	--- 오일풋, 드랙, 솥스톡	3.2	0	
1522 00 99	--- 기타	Free	0	
16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00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1601 00 10	- 간의 것	15.4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601 00 91	-- 소시지(건조 또는 스프레드용, 조리하지 않은 것)	149,4 €/100 kg/net	0	
1601 00 99	-- 기타	100,5 €/100 kg/net	0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602 10 00	- 균질화한 조제품	16.6	0	
1602 20	- 동물간의 것			
	-- 거위 및 오리류의 간			
1602 20 11	--- 기름진 간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5 이상	10.2	0	
1602 20 19	--- 기타	10.2	0	
1602 20 90	-- 기타	16	0	
	- 가공육의 것(제0105호의 것)			
1602 31	-- 칠면조의 것			
	--- 육과 설육 100분의 57이상 포함			
1602 31 11	---- 조리하지 않은 칠면조 고기만 포함	8.5	0	
1602 31 19	---- 기타	8.5	0	
1602 31 30	--- 가공육과 설육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57미만 포함	8.5	0	
1602 31 90	--- 기타	8.5	0	
1602 32	-- 닭의 것			
	--- 육과 설육 100분의 57이상 포함			
1602 32 11	---- 조리하지 않은 것	86,7 €/100 kg/net	0	
1602 32 19	---- 기타	10.9	0	
1602 32 30	--- 육과 설육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57미만 포함	10.9	0	
1602 32 90	--- 기타	10.9	0	
1602 39	-- 기타			
	--- 육과 설육 100분의 57이상 포함			
1602 39 21	---- 조리하지 않은 것	86,7 €/100 kg/net	0	
1602 39 29	---- 기타	10.9	0	
1602 39 40	--- 가공육의 육과 설육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57미만 포함	10.9	0	
1602 39 80	--- 기타	10.9	0	
	- 돼지의 것			
1602 41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602 41 10	--- 가축용 돼지의 것	156,8 €/100 kg/net	0	
1602 41 90	--- 기타	10.9	0	
1602 42	-- 어깨살과 그 절단육			
1602 42 10	--- 가축용 돼지의 것	129,3 €/100 kg/net	0	
1602 42 90	--- 기타	10.9	0	
1602 4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가축용 돼지의 것			
	---- 육과 설육 100분의 80이상(지방 포함)			
1602 49 11	----- 등심(목살 제외)과 그 절단육, 등심 및 넓적다리살의 혼합물 포함	156,8 €/100kg/net	0	
1602 49 13	----- 목살과 그 절단육, 목살 및 어깨살의 혼합물 포함	129,3 €/100 kg/net	0	
1602 49 15	----- 기타부위 혼합물(기타넓적다리살,어깨살,등심,목살과 그 절단육 혼합물)	129,3 €/100 kg/net	0	
1602 49 19	----- 기타	85,7 €/100 kg/net	0	
1602 49 30	---- 육과 설육(지방 포함)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80미만 포함	75 €/100 kg/net	0	
1602 49 50	---- 육과 설육(지방 포함) 100분의 40미만 포함	54,3 €/100 kg/net	0	
1602 49 90	--- 기타	10.9	0	
1602 50	- 소의 것			
1602 50 10	-- 조리되지 않은 것,조리된 육 또는 설육과 조리되지 않은 육 또는 설육의 혼합물	303,4 €/100 kg/net	0	
	-- 기타			
	---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 50 31	---- 콘비프	16.6	0	
1602 50 39	---- 기타	16.6	0	
1602 50 80	--- 기타	16.6	0	
1602 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1602 90 10	-- 동물의 피 조제품	16.6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1602 90 31	--- 업조류 또는 토끼의 육과 설육	10.9	0	
1602 90 41	--- 순록의 육과 설육	16.6	0	
	--- 기타			
1602 90 51	---- 가축용 돼지의 육과 설육을 포함한 것	85,7 €/100 kg/net	0	
	---- 기타			
	----- 소의 육과 설육을 포함한 것			
1602 90 61	----- 조리되지 않은 것, 조리된 육 또는 설육과 조리되지 않은 육 또는 설육의 혼합물	303,4 €/100 kg/net	0	
1602 90 69	----- 기타	16.6	0	
	----- 기타			
	----- 면양과 산양의 것			
	----- 조리되지 않은 것, 조리된 육 또는 설육과 조리되지 않은 육 또는 설육의 혼합물			
1602 90 72	----- 면양의 것	12.8	0	
1602 90 74	----- 산양의 것	16.6	0	
	----- 기타			
1602 90 76	----- 면양의 것	12.8	0	
1602 90 78	----- 산양의 것	16.6	0	
1602 90 98	----- 기타	16.6	0	
1603 00	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1603 00 10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1603 00 80	- 기타	Free	0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것은 제외한다)			
1604 11 00	-- 연어	5.5	3	
1604 12	-- 청어			
1604 12 10	--- 피레트(초벌 튀김여부 불문하고 반죽 또는 빵가루로 단순 코팅한 것, 냉동)	15	5	
	--- 기타			
1604 12 91	----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 12 99	---- 기타	20	5	
1604 13	-- 정어리 · 사르디넬라 · 브리스링 또는 스프렛			
	--- 정어리			
1604 13 11	---- 올리브유로 저장처리한 것	12.5	3	
1604 13 19	---- 기타	12.5	5	
1604 13 90	--- 기타	12.5	3	
1604 14	-- 다랑어 · 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 종)			
	--- 다랑어와 가다랑어			
1604 14 11	---- 식물성 기름으로 저장처리한 것	24	5	
	---- 기타			
1604 14 16	----- 로인 피레트	24	5	
1604 14 18	----- 기타	24	5	
1604 14 90	--- 버니토우(사르다 종)	25	5	
1604 15	-- 고등어			
	--- 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자포니쿠스의 것			
1604 15 11	---- 피레트	25	3	
1604 15 19	---- 기타	25	3	
1604 15 90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의 것	20	3	
1604 16 00	-- 멸치	25	5	
1604 19	-- 기타			
1604 19 10	--- 연어류(연어 제외)	7	0	
	--- 유티누스 속 어류(가다랑어유티누스(카츠위누스) 펠라미스 제외)			
1604 19 31	---- 로인 피레트	24	5	
1604 19 39	---- 기타	24	5	
1604 19 50	--- 단색의 오르시놉시스 종의 어류	12.5	3	
	--- 기타			
1604 19 91	---- 피레트(초벌 튀김여부 불문하고 반죽 또는 빵가루로 단순 코팅한 것, 냉동)	7.5	3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604 19 92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	3	
1604 19 9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20	3	
1604 19 94	----- 민대구(메를루시우스 종, 유로피시스 종)	20	3	
1604 19 9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와 대구류(폴라치우스 폴라치우스)	20	3	
1604 19 98	----- 기타	20	3	
1604 2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1604 20 05	-- 연육 조제품	20	3	
	-- 기타			
1604 20 10	--- 연어의 것	5.5	3	
1604 20 30	--- 연어류의 것(연어 제외)	7	0	
1604 20 40	--- 멸치의 것	25	5	
1604 20 50	--- 정어리, 버니토우, 스콤버 스콤브루스 및 자포니쿠스 종 고등어, 단색의 오르시놉시스 종 어류	25	5	
1604 20 70	--- 다랑어, 가다랑어 또는 기타 유티누스 속 어류	24	5	
1604 20 90	--- 기타 어류	14	5	
1604 30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 30 10	-- 캐비아	20	3	
1604 30 90	-- 캐비아 대용물	20	3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 10 00	- 게	8	0	
1605 20	- 새우와 보리새우			
1605 20 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 기타			
1605 20 91	--- 2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	3	
1605 20 99	--- 기타	20	3	
1605 30	- 바닷가재			
1605 30 10	-- 바닷가재 살(바닷가재 반죽, 페이스트, 파테이, 수프나 소스 제조를 위해 조리한 것)	Free	0	
1605 30 90	-- 기타	20	0	
1605 40 00	- 기타 갑각류	20	0	
1605 90	- 기타			
	-- 연체동물			
	--- 미틸루스, 페르나 종의 혼합			
1605 90 11	----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5 90 19	---- 기타	20	3	
1605 90 30	---- 기타	20	3	
1605 90 90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6	3	
17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701 11	-- 사탕수수당			
1701 11 10	--- 정제용	33,9 €/100 kg/net	0	
1701 11 90	--- 기타	41,9 €/100 kg/net	0	
1701 12	-- 사탕무당			
1701 12 10	--- 정제용	33,9 €/100 kg/net	0	
1701 12 90	--- 기타	41,9 €/100 kg/net	0	
	- 기타			
1701 91 00	--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41,9 €/100 kg/net	5	
1701 99	-- 기타			
1701 99 10	--- 백설탕	41,9 €/100 kg/net	5	
1701 99 90	--- 기타	41,9 €/100 kg/net	0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유당과 유당시럽			
1702 11 00	-- 건조상태에서 측정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이상인 것	14 €/100 kg/net	0	
1702 19 00	-- 기타	14 €/100 kg/net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702 2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1702 20 10	-- 고체형(향미 또는 착색제 첨가)	0,4 €/100 kg/net	0	
1702 20 90	-- 기타	8	0	
1702 3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에 한한다)			
1702 30 10	-- 이소글루코오스	50,7 €/100 kg/net mas	0	
	-- 기타			
	--- 건조상태에서 포도당 100분의 99이상 포함			
1702 30 51	---- 백색투명파우더형태(덩어리 여부 불문)	26,8 €/100 kg/net	0	
1702 30 59	---- 기타	20 €/100 kg/net	0	
	--- 기타			
1702 30 91	---- 백색투명파우더형태(덩어리 여부 불문)	26,8 €/100 kg/net	0	
1702 30 99	---- 기타	20 €/100 kg/net	0	
1702 4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100분의 50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전화당을 제외한다.			
1702 40 10	-- 이소글루코오스	50,7 €/100 kg/net mas	0	
1702 40 90	-- 기타	20 €/100 kg/net	0	
1702 50 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16 + 50,7 €/100 kg/net mas	0	
1702 60	-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전화당을 제외한다.			
1702 60 10	-- 이소글루코오스	50,7 €/100 kg/net mas	0	
1702 60 80	-- 이눌린 시럽	0,4 €/100 kg/net	0	
1702 60 95	-- 기타	0,4 €/100 kg/net	0	
1702 90	-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1702 90 10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12.8	0	
1702 90 30	-- 이소글루코오스	50,7 €/100 kg/net mas	0	
1702 90 50	-- 말토덱스트린 및 말토덱스트린시럽	20 €/100 kg/net	0	
1702 90 60	-- 인조꿀(천연꿀 함유여부 불문)	0,4 €/100 kg/net	0	
	-- 캐러멜			
1702 90 71	---- 건조한 상태에서 자당 100분의 50이상인 것	0,4 €/100 kg/net	0	
	---- 기타			
1702 90 75	---- 분 형태의 것(덩어리 여부 불문)	27,7 €/100 kg/net	0	
1702 90 79	---- 기타	19,2 €/100 kg/net	0	
1702 90 80	-- 이눌린 시럽	0,4 €/100 kg/net	0	
1702 90 99	-- 기타	0,4 €/100 kg/net	0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1703 10 0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0,35 €/100 kg/net	0	
1703 90 00	- 기타	0,35 €/100 kg/net	0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704 10	-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자당 100분의 60미만(전화당 포함)			
1704 10 11	---- 스트립으로 된 것	6,2 + 27,1 €/100 kg/net MAX 17,9	0	
1704 10 19	---- 기타	6,2 + 27,1 €/100 kg/net MAX 17,9	0	
	-- 자당 100분의 60이상(전화당 포함)			
1704 10 91	---- 스트립으로 된 것	6,3 + 30,9 €/100 kg/net MAX 18,2	0	
1704 10 99	---- 기타	6,3 + 30,9 €/100 kg/net MAX 18,2	0	
1704 90	- 기타			
1704 90 10	-- 감초엑스(자당 100분의 10이상 포함, 기타 물질은 포함하지 않음)	13.4	5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704 90 30	-- 화이트 초콜릿	9,1 + 45,1 €/100 kg/net MAX 18,9 + 16,5 €/100 kg/net	0	
	-- 기타			
1704 90 51	--- 페이스트(마르지판 포함, 1킬로그램이상 포장한 것)	9 + EA MAX 18,7 + AD S/Z	0	
1704 90 55	--- 쓰로트 파스텔, 진해정	9 + EA MAX 18,7 + AD S/Z	0	
1704 90 61	--- 당으로 도포한 것	9 + EA MAX 18,7 + AD S/Z	0	
	--- 기타			
1704 90 65	---- 껌과자,젤리과자(사탕과자형태의 과일페이스트포함)	9 + EA MAX 18,7 + AD S/Z	0	
1704 90 71	---- 딱딱한 사탕	9 + EA MAX 18,7 + AD S/Z	0	
1704 90 75	---- 토피, 캐러멜, 유사 사탕류	9 + EA MAX 18,7 + AD S/Z	0	
	---- 기타			
1704 90 81	----- 압축 태블릿	9 + EA MAX 18,7 + AD S/Z	0	
1704 90 99	----- 기타	9 + EA MAX 18,7 + AD S/Z	0	
18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00 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Free	0	
1802 00 00	코코아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Free	0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3 10 00	- 탈지하지 아니한 것	9.6	0	
1803 20 00	-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9.6	0	
1804 00 00	코코아버터(지 또는 유)	7.7	0	
1805 00 00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8	0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1806 10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1806 10 15	-- 자당 미포함 또는 자당(자당으로 표현된 전화당) 또는 자당으로 표현된 이소글루코오스 100분의 5미만 포함	8	0	
1806 10 20	-- 자당(자당으로 표현된 전화당) 또는 자당으로 표현된 이소글루코오스 100분의 5이상 100분의 65미만 포함	8 + 25,2 €/100 kg/net	0	
1806 10 30	-- 자당(자당으로 표현된 전화당) 또는 자당으로 표현된 이소글루코오스 100분의 65이상 100분의 80미만 포함	8 + 31,4 €/100 kg/net	0	
1806 10 90	-- 자당(자당으로 표현된 전화당) 또는 자당으로 표현된 이소글루코오스 100분의 80이상 포함	8 + 41,9 €/100 kg/net	0	
1806 20	-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1806 20 10	-- 코코아 버터와 유지방 혼합 중량이 100분의 31 이상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20 30	-- 코코아 버터와 유지방 혼합 중량이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31미만	8,3 + EA MAX 18,7 + AD S/Z	0	
	-- 기타			
1806 20 50	--- 코코아버터가 100분의 18이상인 것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20 70	--- 초코렛 밀크 크림	15,4 + EA	0	
1806 20 80	--- 초코렛 향 코팅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20 95	--- 기타	8,3 + EA MAX 18,7 + AD S/Z	0	
	- 기타 블록상 또는 슬랩상 또는 바상			
1806 31 00	-- 속을 채운 것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32	--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806 32 10	--- 곡물, 과일, 견과류가 첨가된 것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32 90	--- 기타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90	- 기타			
	-- 초콜릿 및 초콜릿 형태의 제품			
	--- 초콜릿(프랄린 포함, 속이 채워졌는지 여부는 불문)			
1806 90 11	---- 알코올 포함한 것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90 19	---- 기타	8,3 + EA MAX 18,7 + AD S/Z	0	
	--- 기타			
1806 90 31	---- 속을 채운 것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90 39	----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90 50	-- 설탕과자 및 대용품(코코아 포함)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90 60	-- 코코아를 포함한 스프레드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90 70	--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품(음료 제조용)	8,3 + EA MAX 18,7 + AD S/Z	0	
1806 90 90	-- 기타	8,3 + EA MAX 18,7 + AD S/Z	0	
19	제19류 곡물 · 분 ·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엑스와 분 · 분쇄물 · 조분 ·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901 10 00	-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7,6 + EA	5	
1901 20 0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7,6 + EA	3	
1901 90	- 기타			
	-- 맥아엑스			
1901 90 11	--- 건조엑스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	5,1 + 18 €/100 kg/net	0	
1901 90 19	--- 기타	5,1 + 14,7 €/100 kg/net	0	
	-- 기타			
1901 90 91	--- 유지방, 자당, 이소글루코오스, 글루코오스 또는 전분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 또는 100분의 1.5미만의 유지방, 100분의 5미만의 자당(전화당 포함) 또는 이소글루코오스, 100분의 5미만의 글루코오스 또는 전분을 포함한 것 (제0401호에서 제0404호의 분상 조제식료품 제외)	12.8	0	
1901 90 99	--- 기타	7,6 + EA	E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 마카로니 · 누들 · 라자니아 · 뇨끼 · 레비오리 · 카벨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1902 11 00	-- 조란을 넣은 것	7,7 + 24,6 €/100 kg/net	0	
1902 19	-- 기타			
1902 19 10	--- 일반밀분 또는 조분을 포함한 것	7,7 + 24,6 €/100 kg/net	0	
1902 19 90	--- 기타	7,7 + 21,1 €/100 kg/net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902 2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2 20 10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초과인 것	8.5	3	
1902 20 30	--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것, 육, 설육 또는 이들의 혼합물의 함량(모든지방 포함)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초과인 것	54,3 €/100 kg/net	0	
	-- 기타			
1902 20 91	--- 조리된 것	8,3 + 6,1 €/100 kg/net	0	
1902 20 99	--- 기타	8,3 + 17,1 €/100 kg/net	0	
1902 30	- 기타의 파스타			
1902 30 10	-- 건조한 것	6,4 + 24,6 €/100 kg/net	0	
1902 30 90	-- 기타	6,4 + 9,7 €/100 kg/net	0	
1902 40	- 쿠우스쿠우스			
1902 40 10	-- 조제하지 않은 것	7,7 + 24,6 €/100 kg/net	0	
1902 40 90	-- 기타	6,4 + 9,7 €/100 kg/net	0	
1903 00 00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 낱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만 해당)	6,4 + 15,1 €/100 kg/net	0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4 10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1904 10 10	-- 옥수수에서 얻은 것	3,8 + 20 €/100 kg/net	0	
1904 10 30	-- 쌀에서 얻은 것	5,1 + 46 €/100 kg/net	0	
1904 10 90	-- 기타	5,1 + 33,6 €/100 kg/net	0	
1904 20	-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1904 20 10	-- 무슬리 형태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를 기제로 한 것)	9 + EA	0	
	-- 기타			
1904 20 91	--- 옥수수에서 얻은 것	3,8 + 20 €/100 kg/net	0	
1904 20 95	--- 쌀에서 얻은 것	5,1 + 46 €/100 kg/net	0	
1904 20 99	--- 기타	5,1 + 33,6 €/100 kg/net	0	
1904 30 00	- 불거소맥	8,3 + 25,7 €/100 kg/net	0	
1904 90	- 기타			
1904 90 10	-- 쌀	8,3 + 46 €/100 kg/net	5	
1904 90 80	-- 기타	8,3 + 25,7 €/100 kg/net	0	
1905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실링웨이퍼 ·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905 10 00	- 귀리빵	5,8 + 13 €/100 kg/net	5	
1905 20	-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1905 20 10	-- 자당 함유량 100분의 30미만 포함(자당으로 표시된 전화당 포함)	9,4 + 18,3 €/100 kg/net	5	
1905 20 30	-- 자당 함유량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 포함(자당으로 표시된 전화당 포함)	9,8 + 24,6 €/100 kg/net	5	
1905 20 90	-- 자당 함유량 100분의 50이상 포함(자당으로 표시된 전화당 포함)	10,1 + 31,4 €/100 kg/net	5	
	-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1905 31	-- 스위트 비스킷			
	--- 초콜릿 또는 코코아포함 조제식료품으로 전체 또는 일부 도포된 것			
1905 31 11	---- 85그램이하 포장한 것	9 + EA MAX 24,2 + AD S/Z	0	
1905 31 19	---- 기타	9 + EA MAX 24,2 + AD S/Z	0	
	--- 기타			
1905 31 30	---- 유지방 100분의 8이상 포함	9 + EA MAX 24,2 + AD S/Z	0	
	---- 기타			
1905 31 91	----- 샌드위치 비스킷	9 + EA MAX 24,2 + AD S/Z	0	
1905 31 99	----- 기타	9 + EA MAX 24,2 + AD S/Z	0	
1905 32	-- 와플과 웨이퍼			
1905 32 05	--- 수분함유량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9 + EA MAX 20,7 + AD F/M	0	
	--- 기타			
	---- 초콜릿 또는 코코아포함 조제식료품으로 전체 또는 일부 도포된 것			
1905 32 11	----- 85그램이하 포장한 것	9 + EA MAX 24,2 + AD S/Z	0	
1905 32 19	----- 기타	9 + EA MAX 24,2 + AD S/Z	0	
	---- 기타			
1905 32 91	----- 염분 있음, 속이 채워진지 여부 불문	9 + EA MAX 20,7 + AD F/M	0	
1905 32 99	----- 기타	9 + EA MAX 24,2 + AD S/Z	0	
1905 40	- 러스크 · 토우스트브레드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1905 40 10	-- 러스크	9,7 + EA	0	
1905 40 90	-- 기타	9,7 + EA	0	
1905 90	- 기타			
1905 90 10	-- 무교병	3,8 + 15,9 €/100 kg/net	0	
1905 90 20	--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유사한 물품	4,5 + 60,5 €/100 kg/net	0	
	-- 기타			
1905 90 30	--- 빵 (꿀, 조란, 치즈, 과일 미함유)(건조상태에서 설탕과 지방 함유량이 100분의 5이하인 것)	9,7 + EA	0	
1905 90 45	--- 비스킷	9 + EA MAX 20,7 + AD F/M	0	
1905 90 55	--- 압출 또는 부풀린 제품(첨미 또는 염장한 것)	9 + EA MAX 20,7 + AD F/M	0	
	--- 기타			
1905 90 60	---- 감미료가 첨가된 것	9 + EA MAX 24,2 + AD S/Z	0	
1905 90 90	---- 기타	9 + EA MAX 20,7 + AD F/M	0	
20	제20류 채소 · 과일 ·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 과일 ·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 10 00	- 오이류	17.6	0	
2001 90	- 기타			
2001 90 10	-- 맹고 처트니	Free	0	
2001 90 20	-- 고추류(단고추, 피망류 제외)	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001 90 30	-- 스위트콘	5,1 + 9,4 €/100 kg/net	0	
2001 90 40	-- 양, 고구마 및 유사한 식용 식물 부분(전분 100분의 5이상 함유)	8,3 + 3,8 €/100 kg/net	0	
2001 90 50	-- 버섯류	16	0	
2001 90 60	-- 팡하트	10	0	
2001 90 65	-- 올리브류	16	0	
2001 90 70	-- 단고추류	16	0	
2001 90 91	-- 열대 과실류 및 열대견과류	10	0	
2001 90 93	-- 양파	16	0	
2001 90 99	-- 기타	16	0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2 10	-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2002 10 10	-- 탈피한 것	14.4	0	
2002 10 90	-- 기타	14.4	0	
2002 90	- 기타			
	-- 건조분 함량 100분의 12미만인 것			
2002 90 11	---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14.4	0	
2002 90 19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4.4	0	
	-- 건조분 함량 100분의 12이상 100분의 30미만인 것			
2002 90 31	---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14.4	0	
2002 90 39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4.4	0	
	-- 건조분 함량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2002 90 91	---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14.4	0	
2002 90 99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4.4	0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3 1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003 10 20	-- 일시 저장처리 및 완전조리한 것	18,4 + 191 €/100 kg/net eda	0	
2003 10 30	-- 기타	18,4 + 222 €/100 kg/net eda	0	
2003 20 00	- 송로	14.4	0	
2003 90 00	- 기타	18.4	0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2004 10	- 감자			
2004 10 10	-- 조리된 것	14.4	0	
	-- 기타			
2004 10 91	--- 분, 조분 또는 플레이크의 형태의 것	7,6 + EA	0	
2004 10 99	--- 기타	17.6	0	
2004 90	-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2004 90 10	-- 스위트콘	5,1 + 9,4 €/100 kg/net	0	
2004 90 30	-- 사우어크라이트, 케이퍼, 올리브류	16	0	
2004 90 50	-- 완두(피성 새티범)과 미성숙 콩류 (파셀러스 종), 꼬투리안의 콩 포함	19.2	0	
	-- 기타, 혼합물 포함			
2004 90 91	--- 양파(조리된 것, 기타 방법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	14.4	0	
2004 90 98	--- 기타	17.6	0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2005 10 00	- 균질화한 채소	17.6	0	
2005 20	- 감자			
2005 20 10	-- 분, 조분 또는 플레이크의 형태의 것	8,8 + EA	0	
	-- 기타			
2005 20 20	--- 얇게 슬라이스한 것, 튀기거나 구운 것, 염장 또는 가향 여부 불문, 밀폐 용기에 넣은 것,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것	14.1	0	
2005 20 80	--- 기타	14.1	0	
2005 40 00	- 완두(피성 새티범)	19.2	0	
	- 콩(비그나 종, 파세러스 종)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005 51 00	-- 탈각한 콩	17.6	0	
2005 59 00	-- 기타	19.2	0	
2005 60 00	- 아스파라거스	17.6	0	
2005 70	- 올리브			
2005 70 10	-- 5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12.8	0	
2005 70 90	-- 기타	12.8	0	
2005 80 0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5,1 + 9,4 €/100 kg/net	0	
	- 기타 채소류 및 채소혼합물			
2005 91 00	-- 죽순	17.6	0	
2005 99	-- 기타			
2005 99 10	--- 고추류(단고추, 피망류 제외)	6.4	0	
2005 99 20	--- 케이퍼	16	0	
2005 99 30	--- 아티초크	17.6	0	
2005 99 40	--- 당근	17.6	0	
2005 99 50	--- 채소혼합물	17.6	0	
2005 99 60	--- 사우어크라이트	16	0	
2005 99 90	--- 기타	17.6	0	
2006 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6 00 10	- 생강	Free	0	
	- 기타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을 초과하는 것			
2006 00 31	--- 체리	20 + 23,9 €/100 kg/net	0	
2006 00 35	--- 열대 과실류 및 열대견과류	12,5 + 15 €/100 kg/net	0	
2006 00 38	--- 기타	20 + 23,9 €/100 kg/net	0	
	-- 기타			
2006 00 91	--- 열대 과실류 및 열대견과류	12.5	0	
2006 00 99	--- 기타	20	0	
2007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7 10	- 균질화한 조제품			
2007 10 10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을 초과하는 것	24 + 4,2 €/100 kg/net	0	
	-- 기타			
2007 10 91	--- 열대과실류	15	0	
2007 10 99	--- 기타	24	0	
	- 기타			
2007 91	-- 감귤류의 과실			
2007 91 10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20 + 23 €/100 kg/net	0	
2007 91 30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초과 100분의 30 이하인 것	20 + 4,2 €/100 kg/net	0	
2007 91 90	--- 기타	21.6	0	
2007 99	-- 기타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를 초과하는 것			
2007 99 10	---- 자두와 푸룬의 퓨레 및 페이스트 (100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산업가공용)	22.4	0	
2007 99 20	---- 밤의 퓨레 및 페이스트	24 + 19,7 €/100 kg/net	0	
	---- 기타			
2007 99 31	----- 체리의 것	24 + 23 €/100 kg/net	0	
2007 99 33	----- 딸기의 것	24 + 23 €/100 kg/net	0	
2007 99 35	----- 라즈베리의 것	24 + 23 €/100 kg/net	0	
2007 99 39	----- 기타	24 + 23 €/100 kg/net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초과 100분의 30 이하인 것			
2007 99 55	---- 사과퓨레(설탕에 절인 것 포함)	24 + 4,2 €/100 kg/net	0	
2007 99 57	---- 기타	24 + 4,2 €/100 kg/net	0	
	--- 기타			
2007 99 91	---- 사과퓨레(설탕에 절인 것 포함)	24	0	
2007 99 93	---- 열대 과실류 및 열대견과류의 것	15	0	
2007 99 98	---- 기타	24	0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8 11	-- 낙화생			
2008 11 10	--- 피넛 버터	12.8	5	
	--- 기타, 포장한 것			
	----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008 11 92	----- 볶은 것	11.2	0	
2008 11 94	----- 기타	11.2	0	
	---- 1킬로그램이하인 것			
2008 11 96	----- 볶은 것	12	0	
2008 11 98	----- 기타	12.8	0	
2008 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2008 19 11	---- 열대견과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7	0	
	---- 기타			
2008 19 13	----- 볶은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9	0	
2008 19 19	----- 기타	11.2	0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19 91	---- 열대견과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8	0	
	---- 기타			
	----- 볶은 견과류			
2008 19 93	-----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10.2	0	
2008 19 95	----- 기타	12	0	
2008 19 99	----- 기타	12.8	0	
2008 20	- 파인애플			
	-- 주정을 포함한 것			
	---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2008 20 1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것	25,6 + 2,5 €/100 kg/net	0	
2008 20 19	---- 기타	25.6	0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20 3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9를 초과하는 것	25,6 + 2,5 €/100 kg/net	0	
2008 20 39	---- 기타	25.6	0	
	-- 주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			
	--- 설탕 포함한 것,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2008 20 5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것	19.2	0	
2008 20 59	---- 기타	17.6	0	
	--- 설탕 포함한 것,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20 7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9를 초과하는 것	20.8	0	
2008 20 79	---- 기타	19.2	0	
2008 20 90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8.4	0	
2008 30	- 감귤류 과실			
	-- 주정을 포함한 것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것			
2008 30 1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5.6	0	
2008 30 19	---- 기타	25,6 + 4,2 €/100 kg/net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008 30 3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4	0	
2008 30 39	---- 기타	25.6	0	
	-- 주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			
	--- 설당을 포함한 것, 1킬로그램 초과 포장한 것			
2008 30 51	---- 그레이프프루트 세그먼트	15.2	0	
2008 30 55	---- 맨더린(탄제린, 세트수머 클레멘타인,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을 포함)	18.4	0	
2008 30 59	---- 기타	17.6	0	
	--- 설당을 포함한 것,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30 71	---- 그레이프프루트 세그먼트	15.2	0	
2008 30 75	---- 맨더린(탄제린, 세트수머 클레멘타인,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을 포함)	17.6	0	
2008 30 79	---- 기타	20.8	0	
2008 30 90	--- 설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	18.4	0	
2008 40	- 배			
	-- 주정을 포함한 것			
	---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을 초과하는 것			
2008 40 1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5.6	0	
2008 40 19	----- 기타	25,6 + 4,2 €/100 kg/net	0	
	---- 기타			
2008 40 2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4	0	
2008 40 29	----- 기타	25.6	0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40 31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25,6 + 4,2 €/100 kg/net	0	
2008 40 39	---- 기타	25.6	0	
	-- 주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			
	--- 설당을 포함한 것,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2008 40 51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을 초과하는 것	17.6	0	
2008 40 59	---- 기타	16	0	
	--- 설당을 포함하는 것,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40 71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19.2	0	
2008 40 79	---- 기타	17.6	0	
2008 40 90	--- 설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	16.8	0	
2008 50	- 살구			
	-- 주정을 포함한 것			
	---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을 초과하는 것			
2008 50 1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5.6	0	
2008 50 19	----- 기타	25,6 + 4,2 €/100 kg/net	0	
	---- 기타			
2008 50 3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4	0	
2008 50 39	----- 기타	25.6	0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50 51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25,6 + 4,2 €/100 kg/net	0	
2008 50 59	---- 기타	25.6	0	
	-- 주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			
	--- 설당을 포함한 것,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2008 50 61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을 초과하는 것	19.2	0	
2008 50 69	---- 기타	17.6	0	
	--- 설당 포함한 것,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50 71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20.8	0	
2008 50 79	---- 기타	19.2	0	
	--- 설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 포장한 것			
2008 50 92	---- 5킬로그램이상인 것	13.6	0	
2008 50 94	---- 4,5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미만인 것	17	0	
2008 50 99	---- 4,5킬로그램미만인 것	18.4	0	
2008 60	- 체리			
	-- 주정을 포함한 것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것			
2008 60 1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5.6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008 60 19	---- 기타	25,6 + 4,2 €/100 kg/net	0	
	--- 기타			
2008 60 3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4	0	
2008 60 39	---- 기타	25.6	0	
	-- 주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			
	--- 설당을 포함한 것, 포장한 것			
2008 60 50	----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7.6	0	
2008 60 60	---- 1킬로그램이하인 것	20.8	0	
	--- 설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 포장한 것			
2008 60 70	---- 4,5킬로그램이상인 것	18.4	0	
2008 60 90	---- 4,5킬로그램미만인 것	18.4	0	
2008 70	-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 주정을 포함한 것			
	---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을 초과하는 것			
2008 70 1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5.6	0	
2008 70 19	----- 기타	25,6 + 4,2 €/100 kg/net	0	
	---- 기타			
2008 70 3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4	0	
2008 70 39	----- 기타	25.6	0	
	---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70 51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25,6 + 4,2 €/100 kg/net	0	
2008 70 59	---- 기타	25.6	0	
	-- 주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			
	--- 설당을 포함한 것,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2008 70 61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을 초과하는 것	19.2	0	
2008 70 69	---- 기타	17.6	0	
	--- 설당 포함한 것,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70 71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19.2	0	
2008 70 79	---- 기타	17.6	0	
	--- 설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 포장한 것			
2008 70 92	---- 5킬로그램이상인 것	15.2	0	
2008 70 98	---- 5킬로그램미만인 것	18.4	0	
2008 80	- 딸기			
	-- 주정을 포함한 것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것			
2008 80 1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5.6	0	
2008 80 19	---- 기타	25,6 + 4,2 €/100 kg/net	0	
	--- 기타			
2008 80 31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4	0	
2008 80 39	---- 기타	25.6	0	
	-- 주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			
2008 80 50	--- 설당을 포함한 것,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17.6	0	
2008 80 70	--- 설당을 포함한 것,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8	0	
2008 80 90	--- 설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	18.4	0	
	- 기타(혼합물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 91 00	-- 팜하트	10	5	
2008 92	-- 혼합물			
	--- 주정을 포함한 것			
	---- 설당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것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008 92 12	----- 열대과실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의 것	16	0	
2008 92 14	----- 기타	25.6	0	
	----- 기타			
2008 92 16	----- 열대과실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의 것	16 + 2,6 €/100 kg/net	0	
2008 92 18	----- 기타	25,6 + 4,2 €/100 kg/net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008 92 32	----- 열대과실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의 것	15	0	
2008 92 34	----- 기타	24	0	
	----- 기타			
2008 92 36	----- 열대과실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의 것	16	0	
2008 92 38	----- 기타	25.6	0	
	--- 주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			
	--- 설탕을 포함한 것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2008 92 51	----- 열대과실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의 것	11	0	
2008 92 59	----- 기타	17.6	0	
	----- 기타			
	----- 과실혼합물(단품과실의 무게가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8 92 72	----- 열대과실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의 것	8.5	0	
2008 92 74	----- 기타	13.6	0	
	----- 기타			
2008 92 76	----- 열대과실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의 것	12	0	
2008 92 78	----- 기타	19.2	0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포장한 것			
	----- 5킬로그램이상인 것			
2008 92 92	----- 열대과실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의 것	11.5	0	
2008 92 93	----- 기타	18.4	0	
	----- 4,5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미만인 것			
2008 92 94	----- 열대과실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의 것	11.5	0	
2008 92 96	----- 기타	18.4	0	
	----- 4.5킬로그램 미만인 것			
2008 92 97	----- 열대과실류(열대 과실류와 견과류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의 것	11.5	0	
2008 92 98	----- 기타	18.4	0	
2008 99	-- 기타			
	--- 주정을 포함한 것			
	----- 생강			
2008 99 11	----- 실제 알코올 농도 1100분의 11.85이하인 것	10	0	
2008 99 19	----- 기타	16	0	
	----- 포도			
2008 99 2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3을 초과하는 것	25,6 + 3,8 €/100 kg/net	0	
2008 99 23	----- 기타	25.6	0	
	----- 기타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것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008 99 24	----- 열대과실류	16	0	
2008 99 28	----- 기타	25.6	0	
	----- 기타			
2008 99 31	----- 열대과실류	16 + 2,6 €/100 kg/net	0	
2008 99 34	----- 기타	25,6 + 4,2 €/100 kg/net	0	
	----- 기타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1.85이하인 것			
2008 99 36	----- 열대과실류	15	0	
2008 99 37	----- 기타	24	0	
	----- 기타			
2008 99 38	----- 열대과실류	16	0	
2008 99 40	----- 기타	25.6	0	
	--- 주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			
	--- 설탕을 포함한 것, 1킬로그램초과 포장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008 99 41	----- 생강	Free	0	
2008 99 43	----- 포도	19.2	0	
2008 99 45	----- 자두와 프룬	17.6	0	
2008 99 46	----- 패션프루트, 과아버, 타마린드	11	0	
2008 99 47	----- 앵고, 앵고스틴, 파파야, 캐슈애플, 리치, 잭프루트, 사포딜로 자두, 카람볼라와 피타야	11	0	
2008 99 49	----- 기타	17.6	0	
	---- 설탕을 포함한 것,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2008 99 51	----- 생강	Free	0	
2008 99 61	----- 패션프루트, 과아버	13	0	
2008 99 62	----- 앵고, 앵고스틴, 파파야, 타마린드, 캐슈애플, 리치, 잭프루트, 사포딜로 자두, 카람볼라, 피타야	13	0	
2008 99 67	----- 기타	20.8	0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 플럼과 프룬, 포장한 것			
2008 99 72	----- 5킬로그램이상인 것	15.2	0	
2008 99 78	----- 5킬로그램미만인 것	18.4	0	
2008 99 85	----- 옥수수(스위트콘 제외)	5,1 + 9,4 €/100 kg/net	5	
2008 99 91	----- 양, 고구마, 유사한 식용 식물부분(전분 100분의 50 이상 함유)	8,3 + 3,8 €/100 kg/net	5	
2008 99 99	----- 기타	18.4	0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오렌지 주스			
2009 11	-- 냉동한 것			
	--- 브릭스 값이 67초과하는 것			
2009 11 11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33,6 + 20,6 €/100 kg/net	0	
2009 11 19	---- 기타	33.6	0	
	--- 브릭스 값이 67이하인 것			
2009 11 91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15,2 + 20,6 €/100 kg/net	0	
2009 11 99	---- 기타	15.2	0	
2009 12 00	-- 냉동하지 않은 것, 브릭스 값이 20이하인 것	12.2	0	
2009 19	-- 기타			
	--- 브릭스 값이 67초과하는 것			
2009 19 11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33,6 + 20,6 €/100 kg/net	0	
2009 19 19	---- 기타	33.6	0	
	--- 브릭스 값이 20초과 67이하인 것			
2009 19 91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15,2 + 20,6 €/100 kg/net	0	
2009 19 98	---- 기타	12.2	0	
	-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 포함)주스			
2009 21 00	-- 브릭스 값이 20이하인 것	12	0	
2009 29	-- 기타			
	--- 브릭스 값이 67초과하는 것			
2009 29 11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33,6 + 20,6 €/100 kg/net	0	
2009 29 19	---- 기타	33.6	0	
	--- 브릭스 값이 20초과 67이하인 것			
2009 29 91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12 + 20,6 €/100 kg/net	0	
2009 29 99	---- 기타	12	0	
	- 단일 감귤류 주스			
2009 31	-- 브릭스 값이 20이하인 것			
	--- 100킬로그램당 €30를 초과하는 것			
2009 31 11	---- 설탕을 포함한 것	14.4	0	
2009 31 1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5.2	0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 레몬주스			
2009 31 51	----- 설탕을 포함한 것	14.4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009 31 5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5.2	0	
	---- 기타 감귤류 주스			
2009 31 91	----- 설탕을 포함한 것	14.4	0	
2009 31 9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5.2	0	
2009 39	-- 기타			
	--- 브릭스 값이 67초과하는 것			
2009 39 11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33,6 + 20,6 €/100 kg/net	0	
2009 39 19	---- 기타	33.6	0	
	--- 브릭스 값이 20초과 67이하인 것			
	---- 100킬로그램당 €30를 초과하는 것			
2009 39 31	----- 설탕을 포함한 것	14.4	0	
2009 39 3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5.2	0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 레몬주스			
2009 39 5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14,4 + 20,6 €/100 kg/net	0	
2009 39 55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14.4	0	
2009 39 5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5.2	0	
	---- 기타 감귤류 주스			
2009 39 9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14,4 + 20,6 €/100 kg/net	0	
2009 39 95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14.4	0	
2009 39 9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5.2	0	
	- 파인애플 주스			
2009 41	-- 브릭스 값이 20이하인 것			
2009 41 10	--- 100킬로그램당 €30를 초과하는 것, 설탕을 포함한 것	15.2	0	
	---- 기타			
2009 41 91	---- 설탕을 포함한 것	15.2	0	
2009 41 9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6	0	
2009 49	-- 기타			
	--- 브릭스 값이 67초과하는 것			
2009 49 11	---- 100킬로그램당 €30 이하인 것	33,6 + 20,6 €/100 kg/net	0	
2009 49 19	---- 기타	33.6	0	
	--- 브릭스 값이 20초과 67이하인 것			
2009 49 30	---- 100킬로그램당 €30를 초과하는 것, 설탕을 포함한 것	15.2	0	
	---- 기타			
2009 49 9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15,2 + 20,6 €/100 kg/net	0	
2009 49 93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15.2	0	
2009 49 9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6	0	
2009 50	- 토마토 주스			
2009 50 10	-- 설탕을 포함한 것	16	0	
2009 50 90	-- 기타	16.8	0	
	- 포도 주스(포도 포함)			
2009 61	-- 브릭스 값이 30이하인 것			
2009 61 10	--- 100킬로그램당 €18를 초과하는 것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2009 61 90	--- 100킬로그램당 €18이하인 것	22,4 + 27 €/hl	0	
2009 69	-- 기타			
	--- 브릭스 값이 67초과하는 것			
2009 69 11	---- 100킬로그램당 €22이하인 것	40 + 121 €/hl + 20,6 €/100 kg/net	0	
2009 69 19	---- 기타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 브릭스 값이 30초과 67이하인 것			
	---- 100킬로그램당 €18를 초과하는 것			
2009 69 51	----- 농축된 것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2009 69 59	----- 기타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 100킬로그램당 €18이하인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2009 69 71	----- 농축된 것	22,4 + 131 €/hl + 20,6 €/100 kg/net	0	
2009 69 79	----- 기타	22,4 + 27 €/hl + 20,6 €/100 kg/net	0	
2009 69 90	----- 기타	22,4 + 27 €/hl	0	
	- 사과 주스			
2009 7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2009 71 10	--- 100킬로그램당 €18를 초과하는 것, 설탕을 포함한 것	18	0	
	--- 기타			
2009 71 91	---- 설탕을 포함한 것	18	0	
2009 71 9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8	0	
2009 79	-- 기타			
	--- 브릭스 값이 67초과하는 것			
2009 79 11	---- 100킬로그램당 €22이하인 것	30 + 18,4 €/100 kg/net	0	
2009 79 19	---- 기타	30	0	
	--- 브릭스 값이 20초과 67이하인 것			
2009 79 30	---- 100킬로그램당 €18를 초과하는 것, 설탕을 포함한 것	18	0	
	---- 기타			
2009 79 9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18 + 19,3 €/100 kg/net	0	
2009 79 93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18	0	
2009 79 9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18	0	
2009 80	- 기타 단일의 과일 또는 채소의 주스			
	-- 브릭스 값이 67초과하는 것			
	--- 배 주스			
2009 80 11	---- 100킬로그램당 €22이하인 것	33,6 + 20,6 €/100 kg/net	0	
2009 80 19	---- 기타	33.6	0	
	--- 기타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2009 80 34	----- 열대과실류 주스	21 + 12,9 €/100 kg/net	0	
2009 80 35	----- 기타	33,6 + 20,6 €/100 kg/net	0	
	---- 기타			
2009 80 36	----- 열대과실류 주스	21	0	
2009 80 38	----- 기타	33.6	0	
	-- 브릭스 값이 67 이하			
	--- 배 주스			
2009 80 50	---- 100킬로그램당 €18를 초과하는 것, 설탕을 포함한 것	19.2	0	
	---- 기타			
2009 80 6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19,2 + 20,6 €/100 kg/net	0	
2009 80 63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19.2	0	
2009 80 69	----- 설탕을 포함하지 않은 것	20	0	
	--- 기타			
	---- 100킬로그램당 €30를 초과하는 것, 설탕을 포함한 것			
2009 80 71	----- 체리 주스	16.8	0	
2009 80 73	----- 열대과실류 주스	10.5	0	
2009 80 79	----- 기타	16.8	0	
	---- 기타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2009 80 85	----- 열대과실류 주스	10,5 + 12,9 €/100 kg/net	0	
2009 80 86	----- 기타	16,8 + 20,6 €/100 kg/net	0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2009 80 88	----- 열대과실류 주스	10.5	0	
2009 80 89	----- 기타	16.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설탕을 포함하지 않는 것			
2009 80 95	----- 박시니움 마크로카르폰류 주스	14	0	
2009 80 96	----- 체리 주스	17.6	0	
2009 80 97	----- 열대과실류 주스	11	0	
2009 80 99	----- 기타	17.6	0	
2009 90	- 혼합주스			
	-- 브릭스 값이 67초과하는 것			
	--- 사과, 배 혼합주스			
2009 90 11	---- 100킬로그램당 €22이하인 것	33,6 + 20,6 €/100 kg/net	0	
2009 90 19	---- 기타	33.6	0	
	--- 기타			
2009 90 21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33,6 + 20,6 €/100 kg/net	0	
2009 90 29	---- 기타	33.6	0	
	-- 브릭스 값이 67이하인 것			
	--- 사과, 배 혼합주스			
2009 90 31	---- 100킬로그램당 €18이하인 것,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20 + 20,6 €/100 kg/net	0	
2009 90 39	---- 기타	20	0	
	--- 기타			
	---- 100킬로그램당 €30를 초과하는 것			
	----- 감귤류, 파인애플 혼합주스			
2009 90 41	----- 설탕을 포함한 것	15.2	0	
2009 90 49	----- 기타	16	0	
	----- 기타			
2009 90 51	----- 설탕을 포함한 것	16.8	0	
2009 90 59	----- 기타	17.6	0	
	---- 100킬로그램당 €30이하인 것			
	----- 감귤류, 파인애플 혼합주스			
2009 90 71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15,2 + 20,6 €/100 kg/net	0	
2009 90 73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15.2	0	
2009 90 79	----- 설탕을 포함하지 않는 것	16	0	
	----- 기타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2009 90 92	----- 열대과실류 혼합주스	10,5 + 12,9 €/100 kg/net	0	
2009 90 94	----- 기타	16,8 + 20,6 €/100 kg/net	0	
	----- 설탕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2009 90 95	----- 열대과실류 혼합주스	10.5	0	
2009 90 96	----- 기타	16.8	0	
	----- 설탕을 포함하지 않는 것			
2009 90 97	----- 열대과실류 혼합주스	11	0	
2009 90 98	----- 기타	17.6	0	
21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커피 · 차 또는 마태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 차 ·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 커피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1 11	--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2101 11 11	---- 커피를 기제로한 건조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95 이상	9	0	
2101 11 19	---- 기타	9	0	
2101 12	-- 엑스 ·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1 12 92	---- 커피의 엑스·에센스,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11.5	0	
2101 12 98	---- 기타	9 + EA	0	
2101 20	- 차 또는 마태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1 20 20	-- 차 혹은 마태의 엑스, 에센스, 농축물	6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조제품			
2101 20 92	--- 차 혹은 마태의 엑스, 에센스, 농축물을 기재로한 조제품	6	0	
2101 20 98	--- 기타	6,5 + EA	0	
2101 30	-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2101 30 11	--- 볶은 치커리	11.5	0	
2101 30 19	--- 기타	5,1 + 12,7 €/100 kg/net	0	
	--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의 엑스, 에센스, 농축물			
2101 30 91	--- 볶은 치커리의 것	14.1	0	
2101 30 99	--- 기타	10,8 + 22,7 €/100 kg/net	0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 10	- 활성효모			
2102 10 10	-- 배양효모	10.9	0	
	-- 제빵효모			
2102 10 31	--- 건조한 것	12 + 49,2 €/100 kg/net	0	
2102 10 39	--- 기타	12 + 14,5 €/100 kg/net	0	
2102 10 90	-- 기타	14.7	0	
2102 20	- 불활성 효모와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 불활성 효모			
2102 20 11	--- 태블릿, 큐브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1킬로그램이하 포장한 것	8.3	0	
2102 20 19	--- 기타	5.1	0	
2102 20 90	-- 기타	Free	0	
2102 30 0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6.1	0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 · 조분과 그 조제품			
2103 10 00	- 간장	7.7	0	
2103 20 00	- 토마토 케첩과 기타 토마토의 소스	10.2	0	
2103 30	- 겨자의 분 · 조분과 조제한 겨자			
2103 30 10	-- 겨자의 분 · 조분	Free	0	
2103 30 90	-- 조제한 겨자	9	0	
2103 90	- 기타			
2103 90 10	-- 맵고 처트니(엑상)	Free	0	
2103 90 30	-- 향성 비터스 (알코올 농도 100분의 44.2이상 100분의 49.2이하, 중량 기준 젤라틴, 향신료 및 기타 원료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6이하 함유, 설탕 100분의 4이상 100분의 10이하 함유, 0.5리터 이하 용기)	Free	0	
2103 90 90	-- 기타	7.7	0	
2104	수프 · 브로드와 수프 · 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4 10	- 수프 · 브로드와 수프 · 브로드용 조제품			
2104 10 10	-- 건조한 것	11.5	0	
2104 10 90	-- 기타	11.5	0	
2104 20 00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14.1	0	
2105 00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5 00 10	- 유지방 미함유 또는 100분의 3미만 함유한 것	8,6 + 20,2 €/100 kg/net MAX 19,4 + 9,4 €/100 kg/net	0	
	- 유지방 포함하는 것			
2105 00 91	-- 100분의 3이상 100분의 7미만인 것	8 + 38,5 €/100 kg/net MAX 18,1 + 7 €/100 kg/net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105 00 99	-- 100분의 7이상인 것	7,9 + 54 €/100 kg/net MAX 17,8 + 6,9 €/100 kg/net	0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106 1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2106 10 20	-- 유지방, 자당, 이소글루코오스, 포도당,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중량 기준 유지방 100분의 1.5미만, 자당 혹은 이소글루코오스 100분의 5미만, 포도당 및 전분 100분의 5미만 함유한 것	12.8	0	
2106 10 80	-- 기타	EA	0	
2106 90	- 기타			
2106 90 20	-- 혼합 알코올 조제품(음료조제용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재로 한 것 제외)	17,3 MIN 1 €/ % vol/hl	0	
	-- 향료나 착색제 첨가한 것			
2106 90 30	--- 이소글루코오스 시럽	42,7 €/100 kg/net mas	0	
	--- 기타			
2106 90 51	---- 유당 시럽	14 €/100 kg/net	0	
2106 90 55	---- 포도당 시럽과 말토덱스트린 시럽	20 €/100 kg/net	0	
2106 90 59	---- 기타	0,4 €/100 kg/net	0	
	-- 기타			
2106 90 92	--- 유지방, 자당, 이소글루코오스 혹은 포도당을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중량 기준 유지방 100분의 1.5미만, 자당 혹은 이소글루코오스 100분의 5미만, 포도당 혹은 전분 100분의 5미만을 함유한 것	12.8	0	
2106 90 98	--- 기타	9 + EA	0	
22	제22류 음료 · 알코올 및 식초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1 10	- 광수와 탄산수			
	-- 광수			
2201 10 11	--- 탄화처리하지 않은 것	Free	0	
2201 10 19	--- 기타	Free	0	
2201 10 90	-- 기타	Free	0	
2201 90 00	- 기타	Free	0	
2202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2202 10 00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 포함)	9.6	0	
2202 90	- 기타			
2202 90 10	-- 제0401호부터 제0404호 혹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로부터 추출된 지방을 포함하지 않은 것	9.6	0	
	-- 제0401호부터 제0404호로 추출된 지방 함유			
2202 90 91	--- 0.2퍼센트미만인 것	6,4 + 13,7 €/100 kg/net	0	
2202 90 95	--- 0.2퍼센트이상 2퍼센트미만인 것	5,5 + 12,1 €/100 kg/net	0	
2202 90 99	--- 100분의 2이상인 것	5,4 + 21,2 €/100 kg/net	0	
2203 00	맥주			
	- 10리터 이하 용기에 담긴 것			
2203 00 01	-- 병에 담긴 것	Free	0	
2203 00 09	-- 기타	Free	0	
2203 00 10	- 10리터 초과 용기에 담긴 것	Free	0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4 10	- 발포성 포도주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8.5이상의 것			
2204 10 11	--- 샴페인	32 €/hl	0	
2204 10 19	--- 기타	32 €/hl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204 10 91	--- 아스티 스푸만테	32 €/hl	0	
2204 10 99	--- 기타	32 €/hl	0	
	-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것만 해당한다)			
2204 2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 21 10	--- 포도주(소호 제2204.10호의 것 제외)(병에 버섯 마개로 육인 것, 그렇지 않으면 섭씨 20도에서 측정시 1바 이상 3바 미만의 용해 이산화탄소에 기인하여 잉여 압력으로 저장된 와인)	32 €/hl	0	
	--- 기타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3이하의 것			
	-----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고급 포도주			
	----- 백포도주			
2204 21 11	----- 알자스 산	13,1 €/hl	0	
2204 21 12	----- 보르도 산	13,1 €/hl	0	
2204 21 13	----- 브루곤 산	13,1 €/hl	0	
2204 21 17	----- 발드 루아르 산	13,1 €/hl	0	
2204 21 18	----- 오젤 자르 루베어 산	13,1 €/hl	0	
2204 21 19	----- 팔츠 산	13,1 €/hl	0	
2204 21 22	----- 라이헤센 산	13,1 €/hl	0	
2204 21 23	----- 토카이 산	14,8 €/hl	0	
2204 21 24	----- 라치오(라티움) 산	13,1 €/hl	0	
2204 21 26	----- 토스카나(투스카니) 산	13,1 €/hl	0	
2204 21 27	-----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프리울리 산	13,1 €/hl	0	
2204 21 28	----- 베네토 산	13,1 €/hl	0	
2204 21 32	----- 베뉴 베르드 종	13,1 €/hl	0	
2204 21 34	----- 페네데스 산	13,1 €/hl	0	
2204 21 36	----- 리호아 산	13,1 €/hl	0	
2204 21 37	----- 발렌시아 산	13,1 €/hl	0	
2204 21 38	----- 기타	13,1 €/hl	0	
	----- 기타			
2204 21 42	----- 보르도 산	13,1 €/hl	0	
2204 21 43	----- 브루곤 산	13,1 €/hl	0	
2204 21 44	----- 보졸레 산	13,1 €/hl	0	
2204 21 46	----- 코뜨 뒤 론 산	13,1 €/hl	0	
2204 21 47	----- 랑그도크루시용주 산	13,1 €/hl	0	
2204 21 48	----- 발 드 루아르 산	13,1 €/hl	0	
2204 21 62	----- 피에몬테(피에몬트) 산	13,1 €/hl	0	
2204 21 66	----- 토스카나(투스카니) 산	13,1 €/hl	0	
2204 21 67	----- 트렌티노 및 알토 아디제 산	13,1 €/hl	0	
2204 21 68	----- 베네토 산	13,1 €/hl	0	
2204 21 69	----- 다움, 바이하다, 도호루 산	13,1 €/hl	0	
2204 21 71	----- 나바라 산	13,1 €/hl	0	
2204 21 74	----- 페네데스 산	13,1 €/hl	0	
2204 21 76	----- 리호아 산	13,1 €/hl	0	
2204 21 77	----- 발데페나스 산	13,1 €/hl	0	
2204 21 78	----- 기타	13,1 €/hl	0	
	----- 기타			
2204 21 79	----- 백포도주	13,1 €/hl	0	
2204 21 80	----- 기타	13,1 €/hl	0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3초과 100분의 15이하의 것			
	-----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고급 포도주			
	----- 백포도주			
2204 21 81	----- 토카이 산	15,8 €/hl	0	
2204 21 82	----- 기타	15,4 €/hl	0	
2204 21 83	----- 기타	15,4 €/hl	0	
	----- 기타			
2204 21 84	----- 백포도주	15,4 €/hl	0	
2204 21 85	----- 기타	15,4 €/hl	0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18이하의 것			
2204 21 87	----- 마르살라	18,6 €/hl	0	
2204 21 88	----- 사모스 및 레몬 머스캇	18,6 €/hl	0	
2204 21 89	----- 포트	14,8 €/hl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204 21 91	----- 마데이라 및 세투발 무스카텔	14,8 €/hl	0	
2204 21 92	----- 세리	14,8 €/hl	0	
2204 21 94	----- 기타	18,6 €/hl	0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8초과 100분의 22이하의 것			
2204 21 95	----- 포트	15,8 €/hl	0	
2204 21 96	----- 마데이라, 세리, 세투발 무스카텔	15,8 €/hl	0	
2204 21 98	----- 기타	20,9 €/hl	0	
2204 21 99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22초과의 것	1,75 €/ % vol/hl	0	
2204 29	-- 기타			
2204 29 10	--- 기타 포도주(소호 제2204.10호의 것 제외)(병에 버섯 마개로 육인 것, 그렇지 않으면 20°C에서 측정시 1바 이상 3바 미만의 용해 이산화탄소에 기인하여 잉여 압력으로 저장된 와인)	32 €/hl	0	
	--- 기타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3이하의 것			
	-----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고급 포도주			
	----- 백포도주			
2204 29 11	----- 토카이 산	13,1 €/hl	0	
2204 29 12	----- 보르도 산	9,9 €/hl	0	
2204 29 13	----- 브루곤 산	9,9 €/hl	0	
2204 29 17	----- 발 드 루아르 산	9,9 €/hl	0	
2204 29 18	----- 기타	9,9 €/hl	0	
	----- 기타			
2204 29 42	----- 보르도 산	9,9 €/hl	0	
2204 29 43	----- 브루곤 산	9,9 €/hl	0	
2204 29 44	----- 보졸레 산	9,9 €/hl	0	
2204 29 46	----- 코뜨 뒤 론 산	9,9 €/hl	0	
2204 29 47	----- 랑그도크루시옹주 산	9,9 €/hl	0	
2204 29 48	----- 발 드 루아르 산	9,9 €/hl	0	
2204 29 58	----- 기타	9,9 €/hl	0	
	----- 기타			
	----- 백포도주			
2204 29 62	----- 시칠리 산	9,9 €/hl	0	
2204 29 64	----- 베네토 산	9,9 €/hl	0	
2204 29 65	----- 기타	9,9 €/hl	0	
	----- 기타			
2204 29 71	----- 폴리야(아폴리아) 산	9,9 €/hl	0	
2204 29 72	----- 시칠리 산	9,9 €/hl	0	
2204 29 75	----- 기타	9,9 €/hl	0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3초과 100분의 15이하의 것			
	-----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고급 포도주			
	----- 백포도주			
2204 29 77	----- 토카이 산	14,2 €/hl	0	
2204 29 78	----- 기타	12,1 €/hl	0	
2204 29 82	----- 기타	12,1 €/hl	0	
	----- 기타			
2204 29 83	----- 백포도주	12,1 €/hl	0	
2204 29 84	----- 기타	12,1 €/hl	0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18이하의 것			
2204 29 87	----- 마르살라	15,4 €/hl	0	
2204 29 88	----- 사모스 및 레몬 머스캇	15,4 €/hl	0	
2204 29 89	----- 포트	12,1 €/hl	0	
2204 29 91	----- 마데이라 및 세투발 무스카텔	12,1 €/hl	0	
2204 29 92	----- 세리	12,1 €/hl	0	
2204 29 94	----- 기타	15,4 €/hl	0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8초과 100분의 22이하의 것			
2204 29 95	----- 포트	13,1 €/hl	0	
2204 29 96	----- 마데이라, 세리, 세투발 무스카텔	13,1 €/hl	0	
2204 29 98	----- 기타	20,9 €/hl	0	
2204 29 99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22초과의 것	1,75 €/ % vol/hl	0	
2204 30	- 기타 포도즙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204 30 10	-- 알코올 첨가 이외의 방법으로 발효중지된 것	32	0	
	-- 기타			
	--- 섬세 20도에서 1.33 g/cm³농도 이하,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이하의 것			
2204 30 92	---- 농축된 것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2204 30 94	---- 기타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 기타			
2204 30 96	---- 농축된 것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2204 30 98	---- 기타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0	부록 2-가-2의 제3항을 참조
2205	베르못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5 1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5 10 10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8이하인 것	10,9 €/hl	5	
2205 10 90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8초과의 것	0,9 €/ % vol/hl + 6,4 €/hl	5	
2205 90	- 기타			
2205 90 10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8이하인 것	9 €/hl	5	
2205 90 90	--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8초과의 것	0,9 €/ % vol/hl	5	
2206 00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 · 배술 · 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6 00 10	- 피케트	1,3 €/ % vol/hl MIN 7,2 €/hl	0	
	- 기타			
	-- 발포성의 것			
2206 00 31	---- 사과주 및 배술	19,2 €/hl	0	
2206 00 39	---- 기타	19,2 €/hl	0	
	-- 포장용기의 것			
	--- 2리터 이하			
2206 00 51	---- 사과주 및 배술	7,7 €/hl	0	
2206 00 59	---- 기타	7,7 €/hl	0	
	--- 2리터 초과			
2206 00 81	---- 사과주 및 배술	5,76 €/hl	0	
2206 00 89	---- 기타	5,76 €/hl	0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 10 00	- 변성되지 아니한 에틸 알코올(알코올 용량이 100분의 80이상인 것)	19,2 €/hl	5	
2207 20 00	-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10,2 €/hl	5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 · 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8 20	-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수			
	-- 2리터 이하 용기에 넣은 것			
2208 20 12	--- 코냑	Free	0	
2208 20 14	--- 아르마냑	Free	0	
2208 20 26	--- 그라파	Free	0	
2208 20 27	--- 헤레즈 브랜디	Free	0	
2208 20 29	--- 기타	Free	0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2208 20 40	--- 미처리 증류액	Free	0	
	--- 기타			
2208 20 62	---- 코냑	Free	0	
2208 20 64	---- 아르마냑	Free	0	
2208 20 86	---- 그라파	Free	0	
2208 20 87	---- 헤레즈 브랜디	Free	0	
2208 20 89	---- 기타	Free	0	
2208 30	- 위스키류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버번 위스키(포장 용기의 것)			
2208 30 1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30 19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 스카치 위스키			
	--- 몰트 위스키(포장용기의 것)			
2208 30 32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30 38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 혼합위스키			
2208 30 52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30 58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 기타(포장 용기의 것)			
2208 30 72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30 78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 기타(포장 용기의 것)			
2208 30 82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30 88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40	-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8 40 11	--- 순 알코올 헤кто리터당 H3408 휘발성 물질(에틸,메틸 알코올 제외)을 함유하고 있는 럼(톨로런스 10%)	0,6 €/ % vol/hl + 3,2 €/hl	0	
	--- 기타			
2208 40 31	---- 순 알코올 가치가 리터당 €7,9 초과인 것	Free	0	
2208 40 39	---- 기타	0,6 €/ % vol/hl + 3,2 €/hl	0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2208 40 51	--- 순수 알코올 헤кто리터당 225그램이상의 휘발성 물질(에틸,메틸 알코올 제외)을 함유하고 있는 럼	0,6 €/ % vol/hl	0	
	--- 기타			
2208 40 91	---- 순 알코올 가치가 리터당 € 2 초과인 것	Free	0	
2208 40 99	---- 기타	0,6 €/ % vol/hl	0	
2208 50	- 진 및 제네바			
	-- 진(포장 용기의 것)			
2208 50 11	--- 2리터 이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50 19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 제네바(포장 용기의 것)			
2208 50 91	--- 2리터 이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50 99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60	- 보드카			
	-- 알코올 농도 100분의 45.4이하, 포장용기의 것			
2208 60 1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60 19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 알코올 농도 100분의 45.4초과, 포장용기의 것			
2208 60 9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60 99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70	- 리큐르 및 코디얼			
2208 70 1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70 90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90	- 기타			
	-- 아락(포장용기의 것)			
2208 90 1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90 19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 자두, 배,체리 주정(리큐르 제외)포장 용기의 것			
2208 90 33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Free	0	
2208 90 38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Free	0	
	-- 기타 스피릿 및 기타 증류 음료(포장 용기의 것)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8 90 41	---- 우조	Free	0	
	---- 기타			
	----- 스피릿(리큐르 제외)			
	----- 과일에서 증류한 것			
2208 90 45	----- 칼바도스	Free	0	
2208 90 48	----- 기타	Free	0	
	----- 기타			
2208 90 52	----- 콘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208 90 54	----- 데킬라	Free	0	
2208 90 56	----- 기타	Free	0	
2208 90 69	----- 기타 증류 음료	Free	0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 스피릿(리큐르 제외)			
2208 90 71	----- 과실에서 증류한 것	Free	0	
2208 90 75	----- 데킬라	Free	0	
2208 90 77	----- 기타	Free	0	
2208 90 78	----- 기타 증류 음료	Free	0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 알코올(알코올 농도 100분의 80 미만, 포장 용기의 것)			
2208 90 91	--- 2리터 이하 용기에 넣은 것	1 €/ % vol/hl + 6,4 €/hl	0	
2208 90 99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1 €/ % vol/hl	0	
2209 00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와인 비니거(포장 용기의 것)			
2209 00 11	-- 2리터 이하 용기에 넣은 것	6,4 €/hl	0	
2209 00 19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4,8 €/hl	0	
	- 기타 (포장 용기의 것)			
2209 00 91	-- 2리터 이하 용기에 넣은 것	5,12 €/hl	0	
2209 00 99	-- 2리터 초과 용기에 넣은 것	3,84 €/hl	0	
23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 사료			
2301	육 · 설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2301 10 00	- 육 또는 설육의 분, 조분, 펠리트 및 수지박	Free	0	
2301 20 00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	Free	0	
2302	밀기울 ·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 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2 10	- 옥수수의 것			
2302 10 10	-- 전분 전중량의 100분의 35이하 포함	44 €/t	0	
2302 10 90	-- 기타	89 €/t	0	
2302 30	- 밀의 것			
2302 30 10	-- 전분 함량이 100분의 28이하인 것과 틸이 0.2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이거나 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시에는 그 통과한 내용물의 회분 함량이 건조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중량의 100분의 1.5이상인 것	44 €/t	0	
2302 30 90	-- 기타	89 €/t	0	
2302 40	- 기타 곡물의 것			
	-- 쌀의 것			
2302 40 02	--- 전분 전중량의 100분의 35이하 포함	44 €/t	0	
2302 40 08	--- 기타	89 €/t	0	
	-- 기타			
2302 40 10	--- 전분 함량 100분의 28이하. 단, 틸이 0.2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거나, 혹은 0.2 mm 인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초과할 시 그 통과한 내용물의 회분 함량이 건조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중량의 100분의 1.5이상인 것	44 €/t	0	
2302 40 90	--- 기타	89 €/t	0	
2302 50 00	- 채두류의 것	5.1	0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3 1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 전분박 (옥수수 전분/농축되어 우려낸 리큐르 제외)			
2303 10 11	--- 건조상태에서의 단백질 함량 100분의 40초과의 것	320 €/t	0	
2303 10 19	--- 건조상태에서의 단백질 함량 100분의 40이하의 것	Free	0	
2303 10 90	-- 기타	Free	0	
2303 20	- 비트펄프 · 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303 20 10	-- 비트펄프	Free	0	
2303 20 90	-- 기타	Free	0	
2303 30 00	- 양조 또는 증류시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Free	0	
2304 00 00	대두유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2305 00 00	낙화생유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자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6 10 00	- 면실의 것	Free	0	
2306 20 00	- 아마인의 것	Free	0	
2306 30 00	- 해바라기씨의 것	Free	0	
	- 레이프 및 콜자씨의 것			
2306 41 00	--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Free	0	
2306 49 00	-- 기타	Free	0	
2306 50 00	-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Free	0	
2306 60 00	- 팜넛 또는 핵의 것	Free	0	
2306 90	- 기타			
2306 90 05	-- 옥수수 배아의 것	Free	0	
	-- 기타			
	--- 올리브오일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유박			
2306 90 11	---- 올리브오일 전중량의 100분의 3이하 함유한 것	Free	0	
2306 90 19	---- 올리브오일 전중량의 100분의 3초과 함유한 것	48 €/t	0	
2306 90 90	---- 기타	Free	0	
2307 00	포도주박과 생주석			
	- 포도주박			
2307 00 11	-- 총량 기준 알코올 함량이 100분의 7.9이하, 건조성분이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2307 00 19	-- 기타	1,62 €/kg/tot, alc,	0	
2307 00 90	- 생주석	Free	0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 ·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포도 찌꺼기			
2308 00 11	-- 총량 기준 알코올 함량이 100분의 4.3이하, 건조성분이 100분의 40이상인 것	Free	0	
2308 00 19	-- 기타	1,62 €/kg/tot, alc,	0	
2308 00 40	- 도토리,마로니에 열매, 포마스 또는 과일의 찌꺼기(포도의 것 제외)	Free	0	
2308 00 90	- 기타	1.6	0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10	- 개 및 고양이 사료(소매용)			
	-- 전분, 글루코스, 글루코스 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 시럽 함유(제1702.30.51호에서 제1702.30.99호의 것 및 제1702.90. 50 및 2106 90 55 또는 유제품)			
	--- 전분, 글루코스, 글루코스 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토덱스트린 시럽 함유한 것			
	---- 전중량 중 전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100분의 10이하인 것			
2309 10 11	-----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Free	0	
2309 10 13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 함유한 것	498 €/t	0	
2309 10 15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미만 함유한 것	730 €/t	0	
2309 10 19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75이상 함유한 것	948 €/t	0	
	---- 전중량 중 전분을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 함유한 것			
2309 10 31	-----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1100분의 10미만인 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309 10 33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 함유한 것	530 €/t	0	
2309 10 39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50이상 함유한 것	888 €/t	0	
	---- 전중량 중 전분을 100분의 30초과 함유한 것			
2309 10 51	-----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100분의 10미만 인 것	102 €/t	0	
2309 10 53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 함유인 것	577 €/t	0	
2309 10 59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50초과 함유인 것	730 €/t	0	
2309 10 70	--- 전분, 글루코스, 글로코스 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 토덱스트린 시럽을 함유하지 않으나, 유제품을 함유한 것	948 €/t	0	
2309 10 90	-- 기타	9.6	0	
2309 90	- 기타			
2309 90 10	-- 어류 및 해양 포유류 사료	3.8	0	
2309 90 20	-- 제 23류 주 제5호에 명기된 품목의 것	Free	0	
	-- 기타(프리믹스를 포함한다)			
	--- 전분, 글루코스, 글루코스 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 토덱스트린 시럽 함유(제1702.30.51호 내지 제1702.30. 99호의 것 및 제1702.40.90호, 제1702.90.50호, 제 2106.90.55호 또는 유제품)			
	---- 전분, 글루코스, 글루코스 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 토덱스트린 시럽 함유한 것			
	----- 전중량 중 전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100분의 10이하 함유한 것			
2309 90 31	-----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100분의 10미 만인 것	23 €/t	0	
2309 90 33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 함유한 것	498 €/t	0	
2309 90 35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미만 함유한 것	730 €/t	0	
2309 90 39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75이상 함유인 것	948 €/t	0	
	---- 전중량 중 전분을 1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 함유한 것			
2309 90 41	-----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100분의 10미 만인 것	55 €/t	0	
2309 90 43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 함유한 것	530 €/t	0	
2309 90 49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50이상 함유인 것	888 €/t	0	
	---- 전중량 중 전분을 100분의 30초과 함유한 것			
2309 90 51	-----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거나 전중량의 100분의 10미 만인 것	102 €/t	0	
2309 90 53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 함유한 것	577 €/t	0	
2309 90 59	----- 유제품을 전중량의 100분을 50이상 함유한 것	730 €/t	0	
2309 90 70	--- 전분, 글루코스, 글로코스 시럽, 말토덱스트린 또는 말 토덱스트린 시럽을 함유하지 않으나, 유제품을 함유한 것	948 €/t	0	
	---기타			
2309 90 91	---- 비트펄프(당밀이 첨가 된 것)	12	0	
	---- 기타			
2309 90 95	----- 염화콜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9이상인 것, 유 기농 또는 비유기농 베이스의 것	9.6	0	
2309 90 99	----- 기타	9.6	0	
24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1 10	-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잎담배(황색종 버지니아 타입, 라이트 에어-큐어드 버 어리 타입(버어리 하이브리드 포함), 라이트 에어 큐어드 메릴랜드 타입 및 파이어 큐어드)			
2401 10 10	--- 황색종 버지니아 타입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5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401 10 20	--- 라이트 에어 큐어드 버어리 타입(버어리 하이브리드 포함)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3	
2401 10 30	--- 라이트 에어 큐어드 메릴랜드 타입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5	
	--- 파이어 큐어드 앞담배			
2401 10 41	---- 켄터키 타입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5	
2401 10 49	---- 기타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5	
	-- 기타			
2401 10 50	--- 라이트 에어 큐어드 앞담배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5	
2401 10 60	--- 선 큐어드 오리엔탈종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5	
2401 10 70	--- 다크 에어 큐어드 앞담배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5	
2401 10 80	--- 플루 큐어드의 것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5	
2401 10 90	--- 기타 앞담배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5	
2401 20	- 앞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에 한한다)			
	-- 앞담배(황색종 버지니아 타입, 라이트 에어-큐어드 버어리 타입(버어리 하이브리드 포함), 라이트 에어 큐어드 메릴랜드 타입 및 파이어 큐어드)			
2401 20 10	--- 플루 큐어드 버지니아 타입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5	
2401 20 20	--- 라이트 에어 큐어드 버어리 타입(버어리 하이브리드 포함)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5	
2401 20 30	--- 라이트 에어 큐어드 메릴랜드 타입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5	
	--- 파이어 큐어드 앞담배			
2401 20 41	---- 켄터키 타입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5	
2401 20 49	---- 기타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5	
	-- 기타			
2401 20 50	--- 라이트 에어 큐어드 앞담배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3	
2401 20 60	--- 선 큐어드 오리엔탈종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5	
2401 20 70	--- 다크 에어 큐어드 앞담배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5	
2401 20 80	--- 황색종의 것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3	
2401 20 90	--- 기타 앞담배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3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401 30 00	- 담배 부산물	11,2 MIN 22 €/100 kg/net MAX 56 €/100 kg/net	5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궤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2 10 00	-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26	5	
2402 20	- 궤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2402 20 10	-- 정향을 함유한 것	10	5	
2402 20 90	-- 기타	57.6	3	
2402 90 00	- 기타	57.6	5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2403 10	-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불문한다)			
2403 10 10	-- 500그램이하 포장한 것	74.9	5	
2403 10 90	-- 기타	74.9	5	
	- 기타			
2403 91 00	-- 균질화 또는 재구성 담배	16.6	5	
2403 99	-- 기타			
2403 99 10	--- 씹는담배 및 코담배	41.6	5	
2403 99 90	--- 기타	16.6	5	
25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 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2501 00 10	- 해수 및 염액	Free	0	
	- 소금(식탁염, 변성염을 포함한다) 및 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2501 00 31	-- 기타 제품의 제조를 위해 나트륨과 염소가 분리된 화학적 변형이 발생한 것	Free	0	
	-- 기타			
2501 00 51	--- 정제된 것을 포함한 소금·변성염 및 기타 산업적 용도의 소금(화학적 변형 또는 인간 및 동물의 소비를 위한 식재료의 보존 및 조리를 위한 것은 제외)	1,7 €/1 000 kg/net	0	
	--- 기타			
2501 00 91	---- 식용에 적합한 소금	2,6 €/1 000 kg/net	0	
2501 00 99	---- 기타	2,6 €/1 000 kg/net	0	
2502 00 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Free	0	
2503 00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2503 00 10	- 천연 그대로의 또는 정제되지 않은 황	Free	0	
2503 00 90	- 기타	1.7	0	
2504	천연흑연			
2504 10 00	-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Free	0	
2504 90 00	- 기타	Free	0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2505 10 00	- 규사	Free	0	
2505 90 00	- 기타	Free	0	
2506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06 10 00	- 석영	Free	0	
2506 20 00	- 규암	Free	0	
2507 00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07 00 20	- 고령토	Free	0	
2507 00 80	- 기타 고령점토	Free	0	
2508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를 제외한다)·홍주석·남정석과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물라이트 및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2508 10 00	- 벤토나이트	Free	0	
2508 30 00	- 내화점토	Free	0	
2508 40 00	- 기타점토	Free	0	
2508 50 00	- 홍주석·남정석 및 규선석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508 60 00	- 몰라이트	Free	0	
2508 70 00	- 사모트 또는 다이아스어드	Free	0	
2509 00 00	초크	Free	0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 10 00	- 분쇄하지 아니한 것	Free	0	
2510 20 00	- 분쇄한 것	Free	0	
251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및 천연탄산바륨(독중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을 제외한다)			
2511 10 00	- 천연황산바륨(중정석)	Free	0	
2511 20 00	- 천연탄산바륨(독중석)	Free	0	
2512 00 00	규조토(예: 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겔보기 비중이 1이하인 것에 한한다)	Free	0	
2513	부석, 금강사 및 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3 10 00	- 부석	Free	0	
2513 20 00	- 금강사·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	Free	0	
2514 00 00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은 것이나 단순 절단 또는 블록이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	Free	0	
2515	대리석·트래버틴·에코신 및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겔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앨러바스터[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리석 및 트래버틴			
2515 11 00	--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Free	0	
2515 12	--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2515 12 20	--- 두께가 4센티미터이하인 것	Free	0	
2515 12 50	--- 두께가 4센티미터초과 25센티미터이하인 것	Free	0	
2515 12 90	--- 기타	Free	0	
2515 20 00	-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및 앨러바스터	Free	0	
2516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화강암			
2516 11 00	--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Free	0	
2516 12	--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2516 12 10	--- 두께가 25센티미터이하인 것	Free	0	
2516 12 90	--- 기타	Free	0	
2516 20 00	- 사암	Free	0	
2516 90 00	-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Free	0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7 10	-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7 10 10	-- 자갈, 왕자갈, 싱글과 플린트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517 10 20	-- 석회석, 백운석 및 기타 석회질의 암석(깨지거나 부서진 것)	Free	0	
2517 10 80	-- 기타	Free	0	
2517 20 00	-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2517.10호의 재료들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2517 30 00	- 타르매카담	Free	0	
	- 제2515 및 제2516호의 암석들의 입상·파편상·분상(열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7 41 00	-- 대리석의 것	Free	0	
2517 49 00	-- 기타	Free	0	
2518	백운석[하소 또는 소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및 응결백운석			
2518 10 00	-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Free	0	
2518 20 00	-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Free	0	
2518 30 00	- 응결백운석	Free	0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9 10 0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Free	0	
2519 90	- 기타			
2519 90 10	-- 산화마그네슘(하소된 천연 탄산 마그네슘은 제외)	1.7	0	
2519 90 30	-- 소결된 마그네슘	Free	0	
2519 90 90	-- 기타	Free	0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0 10 00	- 석고와 무수석고	Free	0	
2520 20	- 플라스터			
2520 20 10	-- 건축용	Free	0	
2520 20 90	-- 기타	Free	0	
2521 00 00	석회석용제 및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Free	0	
2522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다)			
2522 10 00	- 생석회	1.7	0	
2522 20 00	- 소석회	1.7	0	
2522 30 00	- 수경성 석회	1.7	0	
2523	포트랜드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슬랙시멘트·수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3 10 00	- 시멘트 클링커	1.7	0	
	- 포트랜드 시멘트			
2523 21 00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7	0	
2523 29 00	-- 기타	1.7	0	
2523 30 00	- 알루미나시멘트	1.7	0	
2523 9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2523 90 10	-- 고로시멘트	1.7	0	
2523 90 80	-- 기타	1.7	0	
2524	석면			
2524 10 00	- 청석면	Free	0	
2524 90 00	- 기타	Free	0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및 운모 웨이스트			
2525 10 00	-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 운모	Free	0	
2525 20 00	- 운모분	Free	0	
2525 30 00	- 운모 웨이스트	Free	0	
2526	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활석			
2526 10 00	- 분쇄 또는 분말화하지 아니한 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526 20 00	- 분쇄 또는 분말화한 것	Free	0	
2528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을 제외한다) 및 천연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하인 것에 한한다)			
2528 10 00	- 천연붕산나트륨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2528 90 00	- 기타	Free	0	
2529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성장암 및 형석			
2529 10 00	- 장석	Free	0	
	- 형석			
2529 21 00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이하인 것	Free	0	
2529 22 00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Free	0	
2529 30 00	- 백류석, 하석과 하석성장암	Free	0	
253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2530 10	-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530 10 10	-- 진주암	Free	0	
2530 10 90	-- 질석과 녹니석	Free	0	
2530 20 0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Free	0	
2530 90	- 기타			
2530 90 20	-- 해판석	Free	0	
2530 90 98	-- 기타	Free	0	
26	제26류 광 · 슬랙 및 회			
260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제외한다)			
2601 11 00	-- 응결하지 아니한 것	Free	0	
2601 12 00	-- 응결한 것	Free	0	
2601 20 00	- 배소한 황화철광	Free	0	
2602 00 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Free	0	
2603 00 00	동광과 그 정광	Free	0	
2604 00 00	니켈광과 그 정광	Free	0	
2605 00 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Free	0	
2606 00 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Free	0	
2607 00 00	연광과 그 정광	Free	0	
2608 00 00	아연광과 그 정광	Free	0	
2609 00 00	주석광과 그 정광	Free	0	
2610 00 00	크롬광과 그 정광	Free	0	
2611 00 00	텅스텐과 그 정광	Free	0	
2612	우라늄광 또는 토륨광과 그 정광			
2612 10	- 우라늄광과 그 정광			
2612 10 10	-- 우라늄광과 역청우라늄광(전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우라늄을 포함한다)(유라튬)	Free	0	
2612 10 90	-- 기타	Free	0	
2612 20	- 토륨광과 그 정광			
2612 20 10	-- 모나자이트와 토리아나이트 및 토륨광(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우라늄을 포함한다)(유라튬)	Free	0	
2612 20 90	-- 기타	Free	0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2613 10 00	- 배소한 것	Free	0	
2613 90 00	- 기타	Free	0	
2614 00	티타늄광과 그 정광			
2614 00 10	- 티타늄철석과 그 정광	Free	0	
2614 00 90	- 기타	Free	0	
2615	니오븀광 · 탄탈륨광 · 바나듐광 또는 지르코늄광과 그들의 정광			
2615 10 0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Free	0	
2615 90	- 기타			
2615 90 10	-- 니오븀광 및 탄탈륨광과 그 정광	Free	0	
2615 90 90	-- 바나듐광과 그 정광	Free	0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			
2616 10 00	- 은광과 그 정광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616 90 00	- 기타	Free	0	
2617	기타의 광과 그 정광			
2617 10 0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Free	0	
2617 90 00	- 기타	Free	0	
2618 00 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Free	0	
2619 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드로스(입상의 슬랙을 제외한다)·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2619 00 20	- 폐기물(철강의 재생용도에 한한다)	Free	0	
2619 00 40	- 슬랙(산화 티타늄의 채취시에 한한다)	Free	0	
2619 00 80	- 기타	Free	0	
2620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 11 00	-- 경아연 스펠타	Free	0	
2620 19 00	-- 기타	Free	0	
	- 주로 아연을 포함한 것			
2620 21 00	--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Free	0	
2620 29 00	-- 기타	Free	0	
2620 30 00	- 주로 동을 포함한 것	Free	0	
2620 40 00	- 주로 알루미늄을 포함한 것	Free	0	
2620 60 00	-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Free	0	
	- 기타			
2620 91 00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Free	0	
2620 99	-- 기타			
2620 99 10	--- 주로 니켈을 함유한 것	Free	0	
2620 99 20	--- 주로 니오브와 탄탈륨을 함유한 것	Free	0	
2620 99 40	--- 주로 주석을 함유한 것	Free	0	
2620 99 60	--- 주로 티타늄을 함유한 것	Free	0	
2620 99 95	--- 기타	Free	0	
2621	기타 슬랙과 회[해초의 회(켄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2621 10 0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Free	0	
2621 90 00	- 기타	Free	0	
27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2701	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책탄 및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2701 11	-- 무연탄			
2701 11 10	--- 휘발성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Free	0	
2701 11 90	--- 기타	Free	0	
2701 12	-- 유연탄			
2701 12 10	--- 코크스용탄	Free	0	
2701 12 90	--- 기타	Free	0	
2701 19 00	-- 기타 석탄	Free	0	
2701 20 00	-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책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 연료	Free	0	
2702	갈탄(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을 제외한다)			
2702 10 00	-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Free	0	
2702 20 00	- 응결한 갈탄	Free	0	
2703 00 00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2704 00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레토르트 카본			
	- 석탄용 코크스와 반성코크스			
2704 00 11	-- 전극봉으로 제조한 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704 00 19	-- 기타	Free	0	
2704 00 30	- 석탄용 코크스와 반성코크스	Free	0	
2704 00 90	- 기타	Free	0	
2705 00 00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 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를 제외한다)	Free	0	
2706 00 00	석탄, 갈탄,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의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 한다)	Free	0	
2707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 한다)			
2707 10	- 벤조올(벤젠)			
2707 10 10	-- 전력 또는 열연료용	3	0	
2707 10 90	-- 기타 목적의 것	Free	0	
2707 20	- 톨루올(톨루엔)			
2707 20 10	-- 전력 또는 열연료용	3	0	
2707 20 90	-- 기타 목적의 것	Free	0	
2707 30	- 크실올(크실렌)			
2707 30 10	-- 전력 또는 열연료용	3	0	
2707 30 90	-- 기타 목적의 것	Free	0	
2707 40 00	- 나프탈렌	Free	0	
2707 50	-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에이· 에스·티·엠·디(ASTM D)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이상인 것에 한한다]			
2707 50 10	-- 전력 또는 열연료용	3	0	
2707 50 90	-- 기타 목적의 것	Free	0	
	- 기타			
2707 91 00	-- 크레오소트유	1.7	0	
2707 99	-- 기타			
	--- 원유			
2707 99 11	---- 경질원유(최대 섭씨 200도에서 증류한 총량이 100분 의 90이상인 것에 한한다)	1.7	0	
2707 99 19	---- 기타	Free	0	
2707 99 30	--- 상압증류	Free	0	
2707 99 50	--- 기초 제품	1.7	0	
2707 99 70	--- 안트라센	Free	0	
2707 99 80	--- 페놀	1.2	0	
	--- 기타			
2707 99 91	---- 제2803호의 생산품의 제조용	Free	0	
2707 99 99	---- 기타	1.7	0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성 타르에서 얻 어지는 것에 한한다)			
2708 10 00	- 피치	Free	0	
2708 20 00	- 피치코크스	Free	0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2709 00 10	- 천연가스 응축액	Free	0	
2709 00 90	- 기타	Free	0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 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 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트오일			
	-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 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 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웨이트오일을 제 외한다)			
2710 11	-- 경질석유 및 조제품			
2710 11 11	--- 특정 절차를 거친 것	4.7	0	
2710 11 15	--- 공정에 의한 화학적 변형을 거친 것(소호 제 2710.11.11호에 명시된 것을 거친 것은 제외)	4.7	0	
	--- 기타 목적의 것			
	---- 특수유			
2710 11 21	----- 백유	4.7	0	
2710 11 25	----- 기타	4.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 모터 휘발유			
2710 11 31	----- 항공 휘발유	4.7	0	
	----- 기타, 납성분이 함유량이			
	----- 1리터당 0.013그램이하인 것			
2710 11 41	----- 옥탄가가 95미만인 것	4.7	0	
2710 11 45	----- 옥탄가가 95이상 98미만인 것	4.7	0	
2710 11 49	----- 옥탄가가 98이상인 것	4.7	0	
	----- 1리터당 0.013그램을 초과하는 것			
2710 11 51	----- 옥탄가가 98미만인 것	4.7	0	
2710 11 59	----- 옥탄가가 98이상인 것	4.7	0	
2710 11 70	----- 제트 연료유	4.7	0	
2710 11 90	----- 기타 경질석유	4.7	0	
2710 19	-- 기타			
	--- 중간유			
2710 19 11	---- 특정 절차를 거친 것	4.7	0	
2710 19 15	---- 공정에 의한 화학적 변형을 거친 것(제2710.19.11호 에 명시된 것을 거친 것은 제외)	4.7	0	
	---- 기타 목적용			
	----- 등유			
2710 19 21	----- 제트 연료유	4.7	0	
2710 19 25	----- 기타	4.7	0	
2710 19 29	----- 기타	4.7	0	
	--- 중유			
	--- 경유			
2710 19 31	---- 특정 절차를 거친 것	3.5	0	
2710 19 35	---- 공정에 의한 화학적 변형을 거친 것(제2710.19.31호 상에 명시된 것을 거친 것은 제외)	3.5	0	
	---- 기타 목적의 것			
2710 19 41	----- 황의 함유량이 중량의 0.05퍼센트이하인 것	3.5	0	
2710 19 45	----- 황의 함유량이 중량의 0.05퍼센트초과 0.2퍼센트이하인 것	3.5	0	
2710 19 49	----- 황의 함유량이 중량의 0.2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5	0	
	--- 중유			
2710 19 51	---- 특정 절차를 거친 것	3.5	0	
2710 19 55	---- 공정에 의한 화학적 변형을 거친 것(제2710.19.51호 에 명시된 것을 거친 것은 제외)	3.5	0	
	---- 기타 목적의 것			
2710 19 61	----- 황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1이하인 것	3.5	0	
2710 19 63	----- 황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1초과 100분의 2이하인 것	3.5	0	
2710 19 65	----- 황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 2초과 100분의 2.8이하인 것	3.5	0	
2710 19 69	----- 황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8을 초과하는 것	3.5	0	
	--- 윤활유 및 기타유			
2710 19 71	---- 특정 절차를 거친 것	3.7	0	
2710 19 75	---- 공정에 의한 화학적 변형을 거친 것(제2710.19.71호 에 명시된 것을 거친 것은 제외)	3.7	0	
	---- 기타 목적의 것			
2710 19 81	----- 모터 오일, 압축기 윤활유 및 터빈 윤활유	3.7	0	
2710 19 83	----- 수경성 유동유	3.7	0	
2710 19 85	----- 백유·유동 파란핀	3.7	0	
2710 19 87	----- 기어 오일·환원장치 오일	3.7	0	
2710 19 91	----- 금속세공 화합물, 몰드릴리즈 오일, 부식방지 오일	3.7	0	
2710 19 93	----- 전기절연 오일	3.7	0	
2710 19 99	----- 기타 윤활유 오일 및 기타 오일	3.7	0	
	- 폐기물 오일			
2710 91 00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3.5	0	
2710 99 00	-- 기타	3.5	0	
2711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 액화한 것			
2711 11 00	-- 천연가스	0.7	0	
2711 12	-- 프로판			
	--- 순도 100분의 99이상인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711 12 11	---- 전력 또는 열연료용	8	3	
2711 12 19	---- 기타 목적의 것	Free	0	
	--- 기타			
2711 12 91	---- 특정 공정을 거친 것	0.7	0	
2711 12 93	---- 제2711.12.91호에 대해 지정된 공정이 아닌 공정에 의해 화학적 변형을 거친 것	0.7	0	
	---- 기타 목적용			
2711 12 94	---- 순도 100분의 90초과 100분의 99미만인 것	0.7	0	
2711 12 97	----- 기타	0.7	0	
2711 13	-- 부탄			
2711 13 10	---- 특정 공정을 거친 것	0.7	0	
2711 13 30	---- 제2711.13.10호에 대해 지정된 공정이 아닌 공정에 의해 화학적 변형을 거친 것	0.7	0	
	--- 기타 목적의 것			
2711 13 91	---- 순도 100분의 90초과 100분의 95미만인 것	0.7	0	
2711 13 97	----- 기타	0.7	0	
2711 14 00	--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및 부타디엔	0.7	0	
2711 19 00	-- 기타	0.7	0	
	- 가스상의 것			
2711 21 00	-- 천연가스	0.7	0	
2711 29 00	-- 기타	0.7	0	
2712	석유젤리 및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크리스탈린석유왁스 · 슬랙왁스 · 오우조커라이트 · 갈탄왁스 · 토탄왁스 기타 광물성왁스와 합성 또는 기타의 공정에 따라 얻어지는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의 여부를 불문한다)			
2712 10	- 석유젤리			
2712 10 10	-- 조유	0.7	0	
2712 10 90	-- 기타	2.2	0	
2712 2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75미만인 것에 한한다)			
2712 20 10	-- 합성 파라핀 왁스(분자의 중량이 460이상 1,560이하인 것에 한한다)	Free	0	
2712 20 90	-- 기타	2.2	0	
2712 90	- 기타			
	-- 오조커라이트, 갈탄왁스 또는 토탄왁스(천연제품)			
2712 90 11	---- 조유	0.7	0	
2712 90 19	---- 기타	2.2	0	
	-- 기타			
	--- 원유			
2712 90 31	---- 특정 절차를 거친 것	0.7	0	
2712 90 33	---- 공정에 의한 화학적 변형을 거친 것(제2712.90.31호 상에 명시된 것을 거친 것은 제외)	0.7	0	
2712 90 39	---- 기타 목적의 것	0.7	0	
	--- 기타			
2712 90 91	---- 1-알켄 혼합물(탄소원자의 고리길이가 24 이상 28 이하인 1-알켄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Free	0	
2712 90 99	---- 기타	2.2	0	
2713	석유코크스 · 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 석유코크스			
2713 11 00	-- 하소하지 않은 것	Free	0	
2713 12 00	-- 하소한 것	Free	0	
2713 20 00	- 석유아스팔트	Free	0	
2713 90	-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2713 90 10	-- 제2803호의 생산품의 제조용	Free	0	
2713 90 90	-- 기타	0.7	0	
2714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 · 유모혈암 및 타르 샌드,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 10 00	- 역청질혈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Free	0	
2714 90 00	- 기타	Free	0	
2715 00 00	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트 · 천연역청 · 석유아스팔트 ·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예 : 역청질매스틱 및 컷백)]	Free	0	
2716 00 00	전기에너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8	제28류 무기화합물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1절 원소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 및 요드			
2801 10 00	- 염소	5.5	0	
2801 20 00	- 요드	Free	0	
2801 30	- 플루오르 및 브롬			
2801 30 10	-- 플루오르	5	0	
2801 30 90	-- 브롬	5.5	0	
2802 00 00	황(승화황, 침강황 및 콜로이드황)	4.6	0	
2803 00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 00 10	- 메탄블랙	Free	0	
2803 00 80	- 기타	Free	0	
2804	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2804 10 00	- 수소	3.7	0	
	- 희가스			
2804 21 00	-- 아르곤	5	0	
2804 29	-- 기타			
2804 29 10	--- 헬륨	Free	0	
2804 29 90	--- 기타	5	0	
2804 30 00	- 질트로겐	5.5	0	
2804 40 00	- 산소	5	0	
2804 50	- 붕소와 텔루르			
2804 50 10	-- 붕소	5.5	0	
2804 50 90	-- 텔루르	2.1	0	
	- 실리콘			
2804 61 00	-- 실리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Free	0	
2804 69 00	-- 기타	5.5	0	
2804 70 00	- 인	5.5	0	
2804 80 00	- 비소	2.1	0	
2804 90 00	- 셀렌	Free	0	
2805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수은			
	- 알칼리 또는 알칼리토류 금속			
2805 11 00	-- 나트륨	5	0	
2805 12 00	-- 칼슘	5.5	0	
2805 19	-- 기타			
2805 19 10	--- 스트론튬 및 바륨	5.5	0	
2805 19 90	--- 기타	4.1	0	
2805 30	- 희토류금속·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05 30 10	-- 상호혼합 또는 상호합금된 것	5.5	0	
2805 30 90	-- 기타	2.7	0	
2805 40	- 수은			
2805 40 10	-- 34.5킬로그램(표준 중량)의 본선인도가격이 플라스틱 당 €224 이하인 것	3	0	
2805 40 90	-- 기타	Free	0	
	제2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6 10 00	- 염화수소(염산)	5.5	0	
2806 20 00	- 클로로황산	5.5	0	
2807 00	황산과 발연황산			
2807 00 10	- 황산	3	0	
2807 00 90	- 발연황산	3	0	
2808 00 00	질산과 황질산	5.5	0	
2809	오산화인과 인산 및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09 10 00	- 오산화인	5.5	0	
2809 20 00	- 인산과 폴리인산	5.5	0	
2810 0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2810 00 10	- 삼산화 이붕소	Free	0	
2810 00 90	- 기타	3.7	0	
2811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무기산			
2811 11 00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5.5	0	
2811 19	-- 기타			
2811 19 10	--- 브롬수소(브롬수소산)	Free	0	
2811 19 20	--- 시안수소(시안수소산)	5.3	0	
2811 19 80	--- 기타	5.3	0	
	- 비금속 무기산 화합물			
2811 21 00	-- 이산화탄소	5.5	0	
2811 22 00	-- 이산화 규소	4.6	0	
2811 29	-- 기타			
2811 29 05	--- 이산화 황	5.5	0	
2811 29 10	--- 삼산화 황(황산 무수물), 삼산화이비소	4.6	0	
2811 29 30	--- 산화 니트로겐	5	0	
2811 29 90	--- 기타	5.3	0	
	제3절 비(非)금속의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2812	비(非)금속의 할로겐화합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 10	-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 염화물 및 인산염화물			
2812 10 11	--- 산화삼염화인(삼염화포스포릴)	5.5	0	
2812 10 15	--- 삼염화인	5.5	0	
2812 10 16	--- 오염화인	5.5	0	
2812 10 18	--- 기타	5.5	0	
	-- 기타			
2812 10 91	--- 이염화이인	5.5	0	
2812 10 93	--- 이염화인	5.5	0	
2812 10 94	--- 포스겐(카르보닐 클로라이드)	5.5	0	
2812 10 95	--- 티오닐 디클로라이드(티오닐 클로라이드)	5.5	0	
2812 10 99	--- 기타	5.5	0	
2812 90 00	- 기타	5.5	0	
2813	비(非)금속의 황화물과 상관습상의 삼황화인			
2813 10 00	- 이황화탄소	5.5	0	
2813 90	- 기타			
2813 90 10	-- 황화인(상관습상의 삼황화인을 포함한다)	5.3	0	
2813 90 90	-- 기타	3.7	0	
	제4절 무기염기 및 금속의 산화물 ·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2814 10 00	- 무수암모니아	5.5	0	
2814 20 00	- 암모니아수	5.5	0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 수산화칼륨(가성칼륨) 및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2815 11 00	-- 고체의 것	5.5	0	
2815 12 00	--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5.5	0	
2815 20	- 수산화칼륨(가성칼륨)			
2815 20 10	-- 고체의 것	5.5	0	
2815 20 90	-- 액체의 것(칼륨 또는 액상 칼륨)	5.5	0	
2815 30 00	- 과산화 나트륨 또는 과산화 칼륨	5.5	0	
2816	수산화마그네슘 · 과산화마그네슘과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2816 10 00	- 수산화 및 과산화 마그네슘	4.1	0	
2816 40 00	- 산화, 수산화 및 과산화 스트론튬 또는 바륨	5.5	0	
2817 00 00	산화 아연과 과산화 아연	5.5	0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 10	-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18 10 10	-- 백색·핑크색 또는 루비색, 화학적으로 정의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 알루미늄 포함이 전중량의 100분의 97.5를 초과하는 것	5.2	0	
2818 10 90	-- 기타	5.2	0	
2818 20 00	-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4	0	
2818 30 00	- 수산화 알루미늄	5.5	0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 10 00	- 삼산화크로뮴	5.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819 90	- 기타			
2819 90 10	-- 이산화크롬	3.7	0	
2819 90 90	-- 기타	5.5	0	
2820	산화망간			
2820 10 00	- 이산화망간	5.3	0	
2820 90	- 기타			
2820 90 10	-- 산화망간(망간이 전중량의 100분의 77이상 포함한 것에 한한다)	Free	0	
2820 90 90	-- 기타	5.5	0	
2821	산화철 · 수산화철과 어드컬러(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2철로서 계산하여 전중량이 100분의 70이상인 것에 한한다)			
2821 10 00	- 산화철과 수산화철	4.6	0	
2821 20 00	- 어드컬러	4.6	0	
2822 00 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4.6	0	
2823 00 00	산화티타늄	5.5	0	
2824	산화연 · 연단 및 오렌지연			
2824 10 00	- 일산화연(리티지, 메시코트)	5.5	0	
2824 90	- 기타			
2824 90 10	-- 연단 및 오렌지연	5.5	0	
2824 90 90	-- 기타	5.5	0	
2825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과 기타 무기염기 ·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2825 10 00	-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5.5	0	
2825 20 00	- 산화리튬 및 수산화 리튬	5.3	0	
2825 30 00	- 산화바다늄 및 수산화바다늄	5.5	0	
2825 40 00	- 산화니켈 및 수산화니켈	Free	0	
2825 50 00	- 산화동 및 수산화동	3.2	0	
2825 60 00	- 산화게르마늄 및 이산화지르코늄	5.5	0	
2825 70 00	- 산화몰리브덴 및 수산화 몰리브덴	5.3	0	
2825 80 00	- 산화안티몬	5.5	0	
2825 90	- 기타			
	-- 수산화칼슘 및 과산화칼슘			
2825 90 11	--- 수산화 칼슘(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순도가 전 중량의 100분의 98이상이고, 입자의 형태가 전 중량의 100분의1이상 입자크기는 75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것 및 입자의 형태가 전중량의 100분의 4이상 입자크기가 1.3마이크로미터 미만인것에 한한다)	Free	0	
2825 90 19	--- 기타	4.6	0	
2825 90 20	-- 산화베릴륨 및 수산화 베릴륨	5.3	0	
2825 90 30	-- 산화주석	5.5	0	
2825 90 40	-- 산화텅스텐	4.6	0	
2825 90 60	-- 산화카드뮴	Free	0	
2825 90 80	-- 기타	5.5	0	
	제5절 무기산 및 금속의 염과 과산화염			
2826	플루오르화물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 및 기타 플루오르착염			
	- 플루오르화물			
2826 12 00	-- 알루미늄의 것	5.3	0	
2826 19	--- 기타			
2826 19 10	--- 기타	5.5	0	
2826 19 90	- 기타	5.3	0	
2826 30 0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5.5	0	
2826 90	-- 기타			
2826 90 10	- 염화암모늄	5	0	
2826 90 80	- 염화칼슘	5.5	0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 · 수산화염화물 · 브롬화물 · 산화브롬화물 및 요드화물 · 산화요드화물			
2827 10 00	-- 염화암모늄	5.5	0	
2827 20 00	-- 염화칼슘	4.6	0	
	- 기타 염화물			
2827 31 00	--- 마그네슘 염화물	4.6	0	
2827 32 00	--- 알루미늄 염화물	5.5	0	
2827 35 00	--- 니켈 염화물	5.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827 39	-- 기타			
2827 39 10	--- 주석 염화물	4.1	0	
2827 39 20	--- 철 염화물	2.1	0	
2827 39 30	-- 코발트 염화물	5.5	0	
2827 39 85	-- 기타	5.5	0	
	- 산화 및 수산화 염화물			
2827 41 00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3.2	0	
2827 49	- 기타			
2827 49 10	-- 산화염화납	3.2	0	
2827 49 90	-- 기타	5.3	0	
	- 브롬화물 및 산화 브롬화물			
2827 51 00	-- 브롬화나트륨 또는 브롬화칼륨	5.5	0	
2827 59 00	-- 기타	5.5	0	
2827 60 0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5.5	0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아염소산염 및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 10 00	--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및 기타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5	0	
2828 90 00	- 기타	5.5	0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및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 염소산염			
2829 11 00	-- 염소산나트륨	5.5	0	
2829 19 00	-- 기타	5.5	0	
2829 90	- 기타			
2829 90 10	-- 과염소산	4.8	0	
2829 90 40	-- 브롬산칼륨 또는 브롬산나트륨	Free	0	
2829 90 80	-- 기타	5.5	0	
283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0 10 00	- 황화나트륨	5.5	0	
2830 90	- 기타			
2830 90 11	-- 황화물칼슘·황화안티몬 및 황화철	4.6	0	
2830 90 85	-- 기타	5.5	0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폰산염			
2831 10 00	- 아이티온산나트륨 및 술폰산나트륨	5.5	0	
2831 90 00	- 기타	5.5	0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2 10 00	- 아황산나트륨	5.5	0	
2832 20 00	- 기타 아황산염	5.5	0	
2832 30 00	- 티오황산나트륨	5.5	0	
2833	황산염 · 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황산나트륨			
2833 11 00	-- 티오황산염	5.5	0	
2833 19 00	-- 기타	5.5	0	
	- 기타 황산염			
2833 21 00	-- 황산마그네슘	5.5	0	
2833 22 00	-- 황산알루미늄	5.5	0	
2833 24 00	-- 황산니켈	5	0	
2833 25 00	-- 황산동	3.2	0	
2833 27 00	-- 황산바륨	5.5	0	
2833 29	-- 기타			
2833 29 20	--- 황산카드뮴·황산크로뮴·황산아연	5.5	0	
2833 29 30	--- 황산코발트·황산티타늄	5.3	0	
2833 29 50	--- 황산철	5	0	
2833 29 60	--- 황산납	4.6	0	
2833 29 90	--- 기타	5	0	
2833 30 00	- 명반	5.5	0	
2833 40 0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5.5	0	
2834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4 10 00	- 아질산염	5.5	0	
	- 질산염			
2834 21 00	-- 질산칼륨	5.5	0	
2834 29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834 29 20	--- 질산바륨·질산베릴륨·질산카드뮴·질산코발트·질산니켈·질산납	5.5	0	
2834 29 40	--- 질산동	4.6	0	
2834 29 80	--- 기타	3	0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및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5 10 0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5.5	0	
	- 인산염			
2835 22 00	-- 인산일나트륨 또는 인산이나트륨	5.5	0	
2835 24 00	-- 인산칼륨	5.5	0	
2835 25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2835 25 10	--- 건조한 제품상태에서 불소함유가 0,005퍼센트 미만인 것	5.5	0	
2835 25 90	--- 건조한 제품상태에서 불소함유가 0,005퍼센트 이상 0.2퍼센트미만인 것	5.5	0	
2835 26	-- 기타 인산칼슘			
2835 26 10	--- 건조한 제품상태에서 불소함유가 0.005퍼센트미만인 것	5.5	0	
2835 26 90	--- 건조한 제품상태에서 불소함유가 0.005퍼센트이상인 것	5.5	0	
2835 29	-- 기타			
2835 29 10	--- 인산삼암모늄	5.3	0	
2835 29 30	--- 인산삼나트륨	5.5	0	
2835 29 90	--- 기타	5.5	0	
	- 폴리인산염			
2835 31 00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5	0	
2835 39 00	-- 기타	5.5	0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미드)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2836 20 00	- 탄산이나트륨	5.5	0	
2836 30 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0	
2836 40 00	- 탄산칼륨	5.5	0	
2836 50 00	- 탄산칼슘	5	0	
2836 60 00	- 탄산바륨	5.5	0	
	- 기타			
2836 91 00	-- 탄산리튬	5.5	0	
2836 92 00	-- 탄산스트론튬	5.5	0	
2836 99	-- 기타			
	--- 탄산염			
2836 99 11	---- 마그네슘 및 동의 것	3.7	0	
2836 99 17	---- 기타	5.5	0	
2836 99 90	---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5.5	0	
2837	시아나화물·산화시아나화물과 시안착염			
	- 시안화물과 산화시아나화물			
2837 11 00	-- 시안화나트륨 및 산화시아나화나트륨	5.5	0	
2837 19 00	-- 기타	5.5	0	
2837 20 00	- 시안착염	5.5	0	
2839	규산염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 규산나트륨			
2839 11 00	-- 메타규산나트륨	5	0	
2839 19 00	-- 기타	5	0	
2839 90	- 기타			
2839 90 10	-- 규산칼륨	5	0	
2839 90 90	-- 기타	5	0	
2840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			
2840 11 00	-- 무수물	Free	0	
2840 19	-- 기타			
2840 19 10	--- 사붕산이나트륨 오수화물	Free	0	
2840 19 90	--- 기타	5.3	0	
2840 20	- 기타 붕산염			
2840 20 10	-- 붕산나트륨 무수물	Free	0	
2840 20 90	-- 기타	5.3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840 30 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5	0	
2841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2841 30 00	- 중크롬산나트륨	5.5	0	
2841 50 00	- 기타 크롬산염·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5.5	0	
	- 아망간산염·망간산염 및 과망간산염			
2841 61 00	-- 과망간칼륨	5.5	0	
2841 69 00	-- 기타	5.5	0	
2841 70 00	- 몰리브덴산염	5.5	0	
2841 80 0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	5.5	0	
2841 90	- 기타			
2841 90 30	-- 아연산염 및 바나듐산염	4.6	0	
2841 90 85	-- 기타	5.5	0	
2842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아지화물을 제외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 10 00	- 무기산 또는 과산화산의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5	0	
2842 90	- 기타			
2842 90 10	-- 셀렌산 또는 텔루르산의 겹염 또는 착염	5.3	0	
2842 90 80	-- 기타	5.5	0	
	제6절 기타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귀금속의 아말감			
2843 10	- 콜로이드 귀금속			
2843 10 10	-- 은	5.3	0	
2843 10 90	-- 기타	3.7	0	
	- 은화합물			
2843 21 00	-- 질산은	5.5	0	
2843 29 00	-- 기타	5.5	0	
2843 30 00	- 금 화합물	3	0	
2843 90	- 기타 화합물 및 아말감			
2843 90 10	-- 아말감	5.3	0	
2843 90 90	-- 기타	3	0	
2844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 또는 연료핵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화합물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 및 잔재물			
2844 10	-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 ·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천연 우라늄			
2844 10 10	--- 가공하지 않은 것, 웨이스트 및 스크랩(유라튬)	Free	0	
2844 10 30	--- 가공된 것(유라튬)	Free	0	
2844 10 50	-- 페로우라늄	Free	0	
2844 10 90	-- 기타(유라튬)	Free	0	
2844 20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 ·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우라늄235를 농축한 우라늄을 포함한 우라늄의 혼합물 또는 이 제품의 화합물			
2844 20 25	---- 페로우라늄	Free	0	
2844 20 35	---- 기타(유라튬)	Free	0	
	--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 ·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혼합물			
2844 20 51	---- 페로우라늄	Free	0	
2844 20 59	---- 기타(유라튬)	Free	0	
2844 20 99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844 30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우라늄(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것에 한한다)·합금·분산물·도자제품과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또는 이제품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2844 30 11	--- 서메트	5.5	0	
2844 30 19	--- 기타	2.9	0	
	-- 토륨(가공된 것)·합금·분산물·도자제품·토륨 함유 혼합물·이 제품의 화합물			
2844 30 51	--- 서메트	5.5	0	
	--- 기타			
2844 30 55	---- 가공하지 않은 것, 웨이스트 및 스크랩(유라튬)	Free	0	
	---- 가공된 것			
2844 30 61	----- 토륨의 바·봉·형강·쉬트·스트랩(유라튬)	Free	0	
2844 30 69	----- 기타(유라튬)	Free	0	
	-- 토륨 또는 우라늄의 화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것에 한하며 함께 혼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44 30 91	--- 토륨 또는 우라늄의 것(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것에 한하며 함께 혼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유라튬] (토륨염은 제외)	Free	0	
2844 30 99	--- 기타	Free	0	
2844 40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 제2844.20호 또는 제2844.30호의 것을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 또는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및 방사성 잔재물			
2844 40 10	-- 우라늄 233에서 제조된 우라늄과 그 화합물·합금(서메트 포함)·도자제품 및 우라늄 233에서 제조된 우라늄을 함유하는 혼합물 또는 이들 제품의 화합물	Free	0	
	-- 기타			
2844 40 20	--- 인공방사성동위원소(유라튬)	Free	0	
2844 40 30	--- 인공방사성동위원소의 화합물(유라튬)	Free	0	
2844 40 80	--- 기타	Free	0	
2844 50 0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유라튬)	Free	0	
2845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45 10 00	- 중수(산화 중수소)(유라튬)	5.5	0	
2845 90	- 기타			
2845 90 10	-- 중수소 및 기타 중수소의 화합물·수소 및 중수소가 농축된 화합물 및 이들 제품을 함유하는 혼합물 및 용액(유라튬)	5.5	0	
2845 90 90	-- 기타	5.5	0	
2846	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2846 10 00	- 세륨 화합물	3.2	0	
2846 90 00	- 기타	3.2	0	
2847 00 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5	0	
2848 00 00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은 제외한다)	5.5	0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49 10 00	- 탄화칼슘	5.5	0	
2849 20 00	- 탄화규소	5.5	0	
2849 90	- 기타			
2849 90 10	-- 탄화붕소	4.1	0	
2849 90 30	-- 탄화텅스텐	5.5	0	
2849 90 50	-- 탄화알루미늄·탄화크롬·탄화몰리브덴·탄화바나듐·탄화탄탈륨·탄화티타늄	5.5	0	
2849 90 90	-- 기타	5.3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850 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 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화 물을 제외한다)			
2850 00 20	- 수소화물·질화물	4.6	0	
2850 00 50	- 아지화물	5.5	0	
2850 00 70	- 규화물	5.5	0	
2850 00 90	- 붕화물	5.3	0	
2852 00 00	무기 또는 유기 수산화물(아말감은 제외)	5.5	0	
2853 00	기타 무기화합물(중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 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및 아말감(귀금속의 아 말감을 제외한다)			
2853 00 10	- 중류수 또는 전도도수 및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2.7	0	
2853 00 30	-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압축공기	4.1	0	
2853 00 50	- 사이어노겐 클로라이드	5.5	0	
2853 00 90	- 기타	5.5	0	
29	제29류 유기화합물			
	제1절 탄화수소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산화유도체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 10 00	- 포화식의 것	Free	0	
	- 불포화식의 것			
2901 21 00	-- 에틸렌	Free	0	
2901 22 00	-- 프로펜(프로필렌)	Free	0	
2901 23	--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2901 23 10	--- 1-부텐과 2-부텐	Free	0	
2901 23 90	--- 기타	Free	0	
2901 24	--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2901 24 10	--- 1,3-부타디엔	Free	0	
2901 24 90	--- 이소프렌	Free	0	
2901 29 00	-- 기타	Free	0	
2902	환식탄화수소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및 시클로테르펜			
2902 11 00	-- 시클로hexan	Free	0	
2902 19	-- 기타			
2902 19 10	--- 시클로테르펜	Free	0	
2902 19 80	--- 기타	Free	0	
2902 20 00	- 벤젠	Free	0	
2902 30 00	- 톨루엔	Free	0	
	- 크실렌			
2902 41 00	-- 오르토-크실렌	Free	0	
2902 42 00	-- 메타-크실렌	Free	0	
2902 43 00	-- 파라-크실렌	Free	0	
2902 44 00	-- 혼합크실렌이성체	Free	0	
2902 50 00	- 스타렌	Free	0	
2902 60 00	- 에틸벤젠	Free	0	
2902 70 00	- 큐멘	Free	0	
2902 90	- 기타			
2902 90 10	-- 나프탈렌 및 안트라센	Free	0	
2902 90 30	-- 비페닐 및 테페닐	Free	0	
2902 90 90	-- 기타	Free	0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 11 00	--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5.5	0	
2903 12 00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0	
2903 13 00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0	
2903 14 00	-- 사염화탄소	5.5	0	
2903 15 00	-- 이염화에틸렌(ISO) (1,2-이염화에탄)	5.5	0	
2903 19	-- 기타			
2903 19 10	--- 1,1,1-삼염화에탄(메틸클로로포름)	5.5	0	
2903 19 80	--- 기타	5.5	0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			
2903 21 00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0	
2903 22 00	-- 삼염화에틸렌	5.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03 23 00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0	
2903 29 00	-- 기타	5.5	0	
	-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 또는 요오드화 유도체			
2903 31 00	-- 디브로마에틸렌(ISO) (1,2-디브로모에탄)	5.5	0	
2903 39	-- 기타			
	---- 브롬화물			
2903 39 11	---- 브로모에탄(브롬화메틸)	5.5	0	
2903 39 15	---- 디브로모에탄	Free	0	
2903 39 19	---- 기타	5.5	0	
2903 39 90	--- 플루오르화물과 요오드화물	5.5	0	
	-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종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2903 41 00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0	
2903 42 00	--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 43 00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5.5	0	
2903 44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및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2903 44 10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5.5	0	
2903 44 90	---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5.5	0	
2903 45	-- 불소 및 염소만을 가지는 퍼할로겐화 기타유도체			
2903 45 10	---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5.5	0	
2903 45 15	--- 펜타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0	
2903 45 20	---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 45 25	---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 45 30	---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 45 35	---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 45 40	---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 45 45	---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 45 50	---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 45 55	---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 45 90	--- 기타	5.5	0	
2903 4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2903 46 1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 46 20	---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5.5	0	
2903 46 90	---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5.5	0	
2903 47 00	-- 기타 퍼할로겐화 유도체	5.5	0	
2903 49	-- 기타			
	--- 불소 및 염소만을 가지는 할로겐화의 것			
2903 49 10	----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의 것	5.5	0	
2903 49 20	---- 기타	5.5	0	
	--- 불소 및 브롬만을 가지는 할로겐화의 것			
2903 49 30	----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의 것	5.5	0	
2903 49 40	---- 기타	5.5	0	
2903 49 80	--- 기타	5.5	0	
	- 포화지환식,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 51 00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덴(ISO) (INN)을 포함한다)	5.5	0	
2903 52 00	-- 알드린(ISO), 클로르덴(ISO) 과 헵타클로르(ISO)	5.5	0	
2903 59	-- 기타			
2903 59 10	--- 1,2-디브로모-4-(1,2-디브로모에틸)시클로헥산	Free	0	
2903 59 30	--- 테트라브로모시클로옥탄	Free	0	
2903 59 80	--- 기타	5.5	0	
	-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 61 00	-- 콜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및 파라-디클로로벤젠	5.5	0	
2903 62 00	-- 헥사클로로벤젠(ISO) 및 디·디·티(ISO) (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5	0	
2903 69	-- 기타			
2903 69 10	--- 2,3,4,5,6-펜타브로모에틸벤젠	Free	0	
2903 69 90	--- 기타	5.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2904 10 00	-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그들의 염 및 에틸에스테르	5.5	0	
2904 20 00	-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5.5	0	
2904 90	- 기타			
2904 90 20	-- 술폰할로겐화유도체	5.5	0	
2904 90 40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5	0	
2904 90 85	-- 기타	5.5	0	
	제2절 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화 1가알코올			
2905 11 00	-- 메탄올(메틸알코올)	5.5	0	
2905 12 00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및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5.5	0	
2905 13 00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5	0	
2905 14	-- 기타 부탄올			
2905 14 10	--- 2-메틸프로판-2-올(테르트-부틸알코올)	4.6	0	
2905 14 90	--- 기타	5.5	0	
2905 16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2905 16 10	--- 2-에틸헥산-1-올	5.5	0	
2905 16 20	--- 2-옥탄올	Free	0	
2905 16 80	--- 기타	5.5	0	
2905 17 00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5	0	
2905 19 00	-- 기타	5.5	0	
	- 불포화 1가알코올			
2905 22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2905 22 10	--- 게라니올, 시트로네올, 리날롤, 로디놀 및 네올	5.5	0	
2905 22 90	--- 기타	5.5	0	
2905 29	-- 기타			
2905 29 10	--- 알릴알코올	5.5	0	
2905 29 90	--- 기타	5.5	0	
	- 2가알코올			
2905 31 00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5.5	0	
2905 32 00	-- 프로필렌글리콜(1,2-프로판디올)	5.5	0	
2905 39	-- 기타			
2905 39 10	--- 2-메틸펜탄-2,4-디올(헥실렌글리콜)	5.5	0	
2905 39 20	--- 1,3-부탄디올	Free	0	
2905 39 25	--- 1,4-부탄디올	5.5	0	
2905 39 30	--- 2,4,7,9-테트라메틸데크-5-인-4,7-디올	Free	0	
2905 39 85	--- 기타	5.5	0	
	- 기타 다가알코올			
2905 41 00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 (트리메틸올 프로판)	5.5	0	
2905 42 00	-- 펜타에리트리톨	5.5	0	
2905 43 00	-- 만니톨	9,6 + 125,8 €/100 kg/net	0	
2905 44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 수용액의 것			
2905 44 11	---- 만니톨을 중량의 총중량의 100분의 2이하 포함한 것 (디글루시톨 성분으로 계산한 것)	7,7 + 16,1 €/100 kg/net	0	
2905 44 19	---- 기타	9,6 + 37,8 €/100 kg/net	0	
	--- 기타			
2905 44 91	---- 만니톨을 중량의 총중량의 100분의 2이하 포함한 것(디글루시톨 성분으로 계산한 것)	7,7 + 23 €/100 kg/net	0	
2905 44 99	---- 기타	9,6 + 53,7 €/100 kg/net	0	
2905 45 00	-- 글리세롤	3.8	0	
2905 49	-- 기타			
2905 49 10	--- 트리올과 테트롤	5.5	0	
2905 49 80	--- 기타	5.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51 00	-- 에스클로비놀(INN)	Free	0	
2905 59	-- 기타			
2905 59 10	--- 1가 알코올의 것	5.5	0	
	--- 다가알코올의 것			
2905 59 91	---- 2,2-비스(브로모메틸) 프로판디올	Free	0	
2905 59 99	---- 기타	5.5	0	
2906	환식알코올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			
2906 11 00	-- 멘톨	5.5	0	
2906 12 00	--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0	
2906 13	스테롤과 이노시톨			
2906 13 10	--- 스테롤	5.5	0	
2906 13 90	--- 이노시톨	Free	0	
2906 19 00	-- 기타	5.5	0	
	- 방향족			
2906 21 00	-- 벤질알코올	5.5	0	
2906 29 00	-- 기타	5.5	0	
	제3절 페놀 · 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 1가페놀			
2907 11 00	-- 페놀(석탄산) 및 그 염	3	0	
2907 12 00	-- 크레솔 및 그들의 염	2.1	0	
2907 13 00	-- 옥틸페놀·노닐페놀과 그들의 이성질체 및 그들의 염	5.5	0	
2907 15	나프톨과 그들의 염			
2907 15 10	--- 1-나프톨	Free	0	
2907 15 90	--- 기타	5.5	0	
2907 19	-- 기타			
2907 19 10	--- 크실레놀 및 그들의 염	2.1	0	
2907 19 90	--- 기타	5.5	0	
	- 다가페놀 및 페놀알코올			
2907 21 00	-- 레소르시놀과 그 염	5.5	0	
2907 22 00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5.5	0	
2907 23 00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5.5	0	
2907 29 00	-- 기타	5.5	0	
2908	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할로겐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2908 11 00	-- 펜타클로로페놀(ISO)	5.5	0	
2908 19 00	-- 기타	5.5	0	
	- 기타			
2908 91 00	-- 디노셀(ISO) 및 그 염	5.5	0	
2908 99	-- 기타			
2908 99 10	--- 술폰기 만을 포함하는 유도체, 그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5.5	0	
2908 99 90	--- 기타	5.5	0	
	제4절 에테르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 · 3원고리의에폭사이드 ·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11 00	-- 디에틸에테르	5.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09 19 00	-- 기타	5.5	0	
2909 20 00	- 포화지환식,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5	0	
2909 30	- 방향족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30 10	-- 디페닐 에테르	Free	0	
	-- 브롬화유도체			
2909 30 31	---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1,2,4,5-테트라브로모-3,6-비스(펜타브로모페녹시)벤젠	Free	0	
2909 30 35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의 제조용 1,2-비스(2,4,6-트리브로모페녹시)에탄	Free	0	
2909 30 38	--- 기타	5.5	0	
2909 30 90	-- 기타	5.5	0	
	- 에테르 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41 00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5	0	
2909 43 00	-- 에틸렌글리콜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0	
2909 44 00	--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5.5	0	
2909 49	-- 기타			
	--- 비환식의 것			
2909 49 11	---- 2-(2-클로로에톡시)에탄올	Free	0	
2909 49 18	---- 기타	5.5	0	
2909 49 90	---- 환식	5.5	0	
2909 5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50 10	-- 구아이나콜 및 구아이나콜술폰화칼륨	5.5	0	
2909 50 90	-- 기타	5.5	0	
2909 60 00	- 과산화알코올, 과산화에테르, 과산화케톤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5.5	0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 10 0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5	0	
2910 20 0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0	
2910 30 0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히드린)	5.5	0	
2910 40 00	- 디엘드린(ISO) (INN)	5.5	0	
2910 90 00	- 기타	5.5	0	
2911 00 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 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	0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2912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및 파라포름알데히드			
	- 비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2 11 00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0	
2912 12 00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 19	-- 기타			
2912 19 10	---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5.5	0	
2912 19 90	--- 기타	5.5	0	
	- 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2 21 00	-- 벤즈알데히드	5.5	0	
2912 29 00	-- 기타	5.5	0	
2912 30 00	- 알데히드-알코올	5.5	0	
	- 알데히드-에테르 · 알데히드-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알데히드			
2912 41 00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 42 00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 49 00	-- 기타	5.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12 50 0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5.5	0	
2912 60 00	- 파라포름알데히드	5.5	0	
2913 00 00	제2912호 생산품의 할로겐화 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5.5	0	
	제6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2914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 11 00	-- 아세톤	5.5	0	
2914 12 00	-- 부타논(메틸에틸케톤)	5.5	0	
2914 13 00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0	
2914 19	-- 기타			
2914 19 10	--- 5-메틸헥산-2-온	Free	0	
2914 19 90	--- 기타	5.5	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 21 00	-- 장뇌	5.5	0	
2914 22 00	-- 씨클로헥사논 및 메틸씨클로헥사논	5.5	0	
2914 23 00	-- 이오논 및 메틸이오논	5.5	0	
2914 29 00	-- 기타	5.5	0	
	- 방향족 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 31 00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0	
2914 39 00	-- 기타	5.5	0	
2914 4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2914 40 10	-- 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디아세톤 알코올)	5.5	0	
2914 40 90	-- 기타	3	0	
2914 50 00	-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5.5	0	
	- 퀴논			
2914 61 00	-- 안트라퀴논	5.5	0	
2914 69	-- 기타			
2914 69 10	--- 1,4-나프토퀴논	Free	0	
2914 69 90	--- 기타	5.5	0	
2914 70 00	-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5	0	
	제7절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과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2915 11 00	-- 포름산	5.5	0	
2915 12 00	-- 포름산염	5.5	0	
2915 13 00	-- 포름산의 에스테르	5.5	0	
	- 초산과 그 염 및 무수초산			
2915 21 00	-- 초산	5.5	0	
2915 24 00	-- 무수초산	5.5	0	
2915 29 00	-- 기타	5.5	0	
	- 초산에스테르			
2915 31 00	-- 초산에틸	5.5	0	
2915 32 00	-- 초산비닐	5.5	0	
2915 33 00	-- 초산노르말부틸	5.5	0	
2915 36 00	-- 초산디노셀(ISO)	5.5	0	
2915 39	-- 기타			
2915 39 10	--- 초산프로필 및 초산이소프로필	5.5	0	
2915 39 30	--- 초산메틸, 초산펜틸(초산아밀)·초산이소펜틸(초산이소아밀) 및 초산글리세롤	5.5	0	
2915 39 50	--- 초산파라톨릴, 초산페닐프로필, 초산벤질, 초산로디닐, 초산산탈릴 및 페닐에탄-1,2-디올의 초산물	5.5	0	
2915 39 80	--- 기타	5.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15 40 0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디클로로 아세트산, 트리클로로 아세트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5.5	0	
2915 50 00	- 프로피온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4.2	0	
2915 60	- 부탄산 · 펜탄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 부탄산 ·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2915 60 11	--- 1-이소프로필-2,2-디메틸트리메틸렌 디이소부티레이트	Free	0	
2915 60 19	--- 기타	5.5	0	
2915 60 90	-- 펜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5.5	0	
2915 70	- 팔미트산 · 스테아르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2915 70 15	-- 팔미트산	5.5	0	
2915 70 20	-- 팔미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5.5	0	
2915 70 25	-- 스테아르산	5.5	0	
2915 70 30	-- 스테아르산의 염	5.5	0	
2915 70 80	-- 스테아르산의 에스테르	5.5	0	
2915 90	- 기타			
2915 90 10	-- 라우르산	5.5	0	
2915 90 20	-- 클로로포르메이트	5.5	0	
2915 90 80	-- 기타	5.5	0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6 11 00	-- 아크릴산과 그 염	6.5	0	
2916 12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2916 12 10	--- 메틸아크릴산	6.5	0	
2916 12 20	--- 에틸아크릴산	6.5	0	
2916 12 90	--- 기타	6.5	0	
2916 13 00	--메타크릴산과 그 염	6.5	0	
2916 14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2916 14 10	--- 메틸메타크릴산	6.5	0	
2916 14 90	--- 기타	6.5	0	
2916 15 00	--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그들의 염과 에스테르	6.5	0	
2916 19	-- 기타			
2916 19 10	--- 운데센산과 그들의 염과 에스테르	5.9	0	
2916 19 30	--- 2,4-헥사디엔산(소르빈산)	6.5	0	
2916 19 40	--- 크로톤산	Free	0	
2916 19 70	--- 기타	6.5	0	
2916 20 00	- 포화지환식,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5	0	
	-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6 31 00	-- 벤조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6 32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2916 32 10	--- 과산화벤조일	6.5	0	
2916 32 90	--- 염화벤조일	6.5	0	
2916 34 00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Free	0	
2916 35 00	--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Free	0	
2916 36 00	-- 비나파크릴(ISO)	6.5	0	
2916 39 00	-- 기타	6.5	0	
291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7 11 00	-- 옥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7 12	-- 아디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2917 12 10	--- 아디프산과 그 염	6.5	0	
2917 12 90	--- 아디프산의 에스테르	6.5	0	
2917 13	-- 아젤라산 · 세바스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2917 13 10	--- 세바스산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17 13 90	--- 기타	6	0	
2917 14 00	-- 무수말레산	6.5	0	
2917 19	-- 기타			
2917 19 10	--- 말레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7 19 90	--- 기타	6.3	0	
2917 20 00	- 포화지환식,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그들의 유도체	6	0	
	-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7 32 00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6.5	0	
2917 33 00	--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5	0	
2917 34	--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2917 34 10	--- 오르토프탈산디부틸	6.5	0	
2917 34 90	--- 기타	6.5	0	
2917 35 00	-- 무수프탈산	6.5	0	
2917 36 00	-- 테레프탈산과 그 염	6.5	3	
2917 37 00	-- 테레프탈산디메틸	6.5	0	
2917 39	-- 기타			
	--- 브롬화유도체			
2917 39 11	---- 테트라브로모프탈산의 에스테르 또는 무수물	Free	0	
2917 39 19	---- 기타	6.5	0	
	--- 기타			
2917 39 30	---- 벤젠-1,2,4-트리카르복시산	Free	0	
2917 39 40	---- 이염화이소프탈로일(이염화테레프탈로일 총량의 0.8 퍼센트이하인 것	Free	0	
2917 39 50	---- 나프탈렌-1,4,5,8-테트라카르복시산	Free	0	
2917 39 60	---- 무수테트라클로로프탈산	Free	0	
2917 39 70	---- 나트륨 3,5-비스(메톡시카르보닐)벤젠술폰산	Free	0	
2917 39 80	---- 기타	6.5	0	
2918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8 11 00	-- 락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 12 00	-- 타르타르산	6.5	0	
2918 13 00	-- 타르타르산의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 14 00	-- 시트르산	6.5	0	
2918 15 00	-- 시트르산의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 16 00	-- 글루콘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 18 00	-- 클로로벤질산(ISO)	6.5	0	
2918 19	-- 기타			
2918 19 30	--- 콜린산 및 3-알파, 12-알파-디히드록시-5-베타-콜란-24-오산(데옥시콜린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3	0	
2918 19 40	--- 2,2-비스(히드록시메틸)프로피온산	Free	0	
2918 19 85	--- 기타	6.5	0	
	-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8 21 00	-- 살리실산과 그 염	6.5	0	
2918 22 00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 23	-- 기타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2918 23 10	--- 살리실산메틸 및 살리실산페닐(살롤)	6.5	0	
2918 23 90	--- 기타	6.5	0	
2918 29	-- 기타			
2918 29 10	--- 술폰살리실산, 히드록시나프토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 29 30	--- 4-히드록시벤조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 29 80	--- 기타	6.5	0	
2918 30 00	-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5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18 91 00	-- 2,4,5-T(ISO)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 99	-- 기타			
2918 99 10	--- 2,6-디메톡시벤조산	Free	0	
2918 99 20	--- 디캄바(ISO)	Free	0	
2918 99 30	--- 페녹시아세트산나트륨	Free	0	
2918 99 90	--- 기타	6.5	0	
	제8절 비(非)금속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10 0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인산	6.5	0	
2919 90	- 기타			
2919 90 10	-- 트리부틸 인산, 트리페닐 인산, 트리톨릴 인산, 트리크실릴 인산, 그리고 트리스(2-크로로에틸)인산	6.5	0	
2919 90 90	-- 기타	6.5	0	
2920	기타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티오에이트)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1 00	-- 파라티온(ISO) 및 파라티온-메틸(ISO) (메틸-파라티온)	6.5	0	
2920 19 00	-- 기타	6.5	0	
2920 90	- 기타			
2920 90 10	-- 황산에스테르 및 탄산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5	0	
2920 90 20	-- 아인산디메틸(디메틸포스파이트)	6.5	0	
2920 90 30	-- 아인산트리메틸(트리메틸포스파이트)	6.5	0	
2920 90 40	-- 아인산트리에틸	6.5	0	
2920 90 50	-- 아인산디에틸(디에틸하이드로겐포스파이트) (디에틸포스파이트)	6.5	0	
2920 90 85	-- 기타 생산품	6.5	0	
	제9절 질소관능화합물			
2921	아민관능화합물			
	- 비환식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1 11	--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 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2921 11 10	--- 메틸아민과 디- 또는 트리메틸아민	6.5	0	
2921 11 90	--- 염	6.5	0	
2921 19	-- 기타			
2921 19 10	--- 트리에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 19 30	--- 이소프로필아민과 그 염	6.5	0	
2921 19 40	--- 1,1,3,3-테트라메틸부틸아민	Free	0	
2921 19 50	--- 디에틸아민과 그 염	5.7	0	
2921 19 80	--- 기타	6.5	0	
	- 비환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1 21 00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6	0	
2921 22 00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6.5	0	
2921 29 00	-- 기타	6	0	
2921 30	- 포화지환식아민, 불포화지환식아민,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및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1 30 10	-- 씨클로헥실아민 및 씨클로헥실디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6.3	0	
2921 30 91	-- 씨클로헥스-1,3-일렌디아민(1,3-디아미노씨클로헥산)	Free	0	
2921 30 99	-- 기타	6.5	0	
	- 방향족 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1 41 00	-- 아닐린과 그 염	6.5	0	
2921 42	--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2921 42 10	--- 아닐린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및 니트로소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21 42 90	--- 기타	6.5	0	
2921 43 00	--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5	0	
2921 44 00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및 그 염	6.5	0	
2921 45 00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5	0	
2921 46 00	--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펜터민(INN)과 그들의 염	Free	0	
2921 49	-- 기타			
2921 49 10	--- 크살리딘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5	0	
2921 49 80	--- 기타	6.5	0	
	- 방향족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1 51	--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1 51 11	---- 메타-페닐렌디아민(전중량의 100분의 99이상인 순도를 가진 것, 물중량의 100분의 1이하, 오르토-페닐렌디아민의 1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이하 및 파라-페닐렌디아민의 1킬로그램당 450밀리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Free	0	
2921 51 19	---- 기타	6.5	0	
2921 51 90	--- 기타	6.5	0	
2921 59	-- 기타			
2921 59 10	--- 메타-페닐렌비스(메틸아민)	Free	0	
2921 59 20	---2,2'-디클로로-4,4'-메틸렌디아닐린	Free	0	
2921 59 30	--- 4,4'-비-오르트-톨루이딘	Free	0	
2921 59 40	--- 1,8-나프틸렌디아민	Free	0	
2921 59 90	--- 기타	6.5	0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에테르와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922 11 00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6.5	0	
2922 12 00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5	0	
2922 13	--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2922 13 10	--- 트리에탄올아민	6.5	0	
2922 13 90	--- 트리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 14 00	--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Free	0	
2922 19	-- 기타			
2922 19 10	--- N-에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 19 20	--- 2,2'-메틸이미노디에탄올(N-메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 19 80	--- 기타	6.5	0	
	- 아미노나프톨 · 기타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들의 에테르 ·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922 21 00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그들의 염	6.5	0	
2922 29 00	-- 기타	6.5	0	
	- 아미노-알데히드 · 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들의 염			
2922 31 00	--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과 그들의 염	Free	0	
2922 39 00	-- 기타	6.5	0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922 41 00	-- 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6.3	0	
2922 42 00	-- 글루탐산과 그 염	6.5	0	
2922 43 00	-- 안트라닐산과 그 염	6.5	0	
2922 44 00	-- 틸리딘(INN)과 그 염	Free	0	
2922 49	-- 기타			
2922 49 10	--- 글리신	6.5	0	
2922 49 20	--- 베타-알라닌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22 49 95	--- 기타	6.5	0	
2922 50 00	- 아미노-알코올-페놀, 아미노산-페놀 및 기타 산소관능을 가지는 아미노화합물	6.5	0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23 10 00	- 콜린과 그 염	6.5	0	
2923 20 00	- 레시틴 및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5.7	0	
2923 90 00	- 기타	6.5	0	
2924	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및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4 11 00	-- 메프로바메이트(INN)	Free	0	
2924 12 00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6.5	0	
2924 19 00	-- 기타	6.5	0	
	-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4 21	--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4 21 10	--- 이소프로투론(ISO)	6.5	0	
2924 21 90	--- 기타	6.5	0	
2924 23 00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안트라닐산)과 그 염	6.5	0	
2924 24 00	-- 에치나메이트(INN)	Free	0	
2924 29	-- 기타			
2924 29 10	--- 리도카인(INN)	Free	0	
2924 29 30	--- 파라세타몰(INN)	6.5	0	
2924 29 95	--- 기타	6.5	0	
2925	카복시 아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 및 이민관능화합물			
	- 이미드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5 11 00	-- 사카린과 그 염	6.5	0	
2925 12 00	-- 구루테치미드(INN)	Free	0	
2925 19	-- 기타			
2925 19 10	--- 3,3',4,4',5,5',6,6'-옥타브로모-N,N'-에틸렌디프탈아미드	Free	0	
2925 19 30	--- N,N'-에틸렌비스(4,5-디브로모헥사히드로-3,6-메타노프탈아미드)	Free	0	
2925 19 95	--- 기타	6.5	0	
	- 이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5 21 00	-- 클로르디메포름(ISO)	6.5	0	
2925 29 00	-- 기타	6.5	0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 10 00	- 아크릴로니트릴	6.5	0	
2926 20 0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5	0	
2926 30 00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및 메사돈(INN)-매개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 4-디페닐부탄)	6.5	0	
2926 90	- 기타			
2926 90 20	-- 이소프탈로니트릴	6	0	
2926 90 95	-- 기타	6.5	0	
2927 00 00	디아조화합물, 아조화합물과 아조시화합물	6.5	0	
2928 00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8 00 10	- N,N-비스(2-메톡시에틸)히드록실아민	Free	0	
2928 00 90	- 기타	6.5	0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2929 10	- 이소시아네이트			
2929 10 10	-- 메틸페닐렌디아소시아네이트(톨루엔디아소시아네이트)	6.5	0	
2929 10 90	-- 기타	6.5	0	
2929 90 00	- 기타	6.5	0	
	제10절 유기-무기화합물 · 헤테로고리화합물 · 핵산 및 그들의 염과 술폰아미드			
2930	유기-황화합물			
2930 20 00	- 티오키르바메이트 및 디티오키르바메이트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30 30 00	- 티우람모노술폰아이드, 티우람디술폰아이드 및 티우람테트라술폰아이드	6.5	0	
2930 40	- 메티오닌			
2930 40 10	-- 메티오닌(INN)	Free	0	
2930 40 90	-- 기타	6.5	0	
2930 50 00	-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6.5	0	
2930 90	- 기타			
2930 90 13	-- 시스테인 및 시스틴	6.5	0	
2930 90 16	-- 시스테인 유도체와 시스틴 유도체	6.5	0	
2930 90 20	-- 티오디글리콜(INN) (2,2'-티오디에탄올)	6.5	0	
2930 90 30	-- DL-2-히드록시-4-(메틸티오)부티르산	Free	0	
2930 90 40	-- 2,2'-티오디에틸 비스[3-(3,5-디-테르트-부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오네이트]	Free	0	
2930 90 50	-- 4-메틸-2,6-비스(메틸티오)-m-페닐렌디아민 및 2-메틸-4,6-비스(메틸티오)-m-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한 이성질체 혼합물	Free	0	
2930 90 85	-- 기타	6.5	0	
2931 00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2931 00 10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 00 20	- 메틸포스포노일디플루오라이드(메틸포스포닉디플루오라이드)	6.5	0	
2931 00 30	- 메틸포스포노일디클로라이드(메틸포스포닉디클로라이드)	6.5	0	
2931 00 95	- 기타	6.5	0	
2932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불지 아니한 푸란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 11 00	-- 테트라히드로푸란	6.5	0	
2932 12 00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5	0	
2932 13 00	--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 19 00	-- 기타	6.5	0	
	- 락톤			
2932 21 00	-- 쿠마린·메틸쿠마린 및 에틸쿠마린	6.5	0	
2932 29	-- 기타 락톤			
2932 29 10	--- 페놀프탈레인	Free	0	
2932 29 20	--- 1-히드록시-4-[1-(4-히드록시-3-메톡시카르보닐-1-나프틸)-3-옥소-1H, 3H-벤조[데]이소크로멘-1-일]-6-옥타데씨클록시-2-나프토산	Free	0	
2932 29 30	--- 3'-클로로-6'-씨클로헥실아미노스피로[이소벤조푸란-1(3H), 9'-크산텐]-3-온	Free	0	
2932 29 40	--- 6'-(N-에틸-p-톨루이디노)-2'-메틸스피로[이소벤조푸란-1(3H), 9'-크산텐]-3-온	Free	0	
2932 29 50	--- 메틸-6-도코실옥시-1-히드록시-4-[1-(4-히드록시-3-메틸-1-페난트릴)-3-옥소-1H, 3H-나프토[1,8-cd]피란-1-일]나프탈렌-2-카르복시레이트	Free	0	
2932 29 60	--- 감마-부티로락톤	6.5	0	
2932 29 85	--- 기타	6.5	0	
	- 기타			
2932 91 00	-- 이소사프롤	6.5	0	
2932 92 00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0	
2932 93 00	-- 피페로날	6.5	0	
2932 94 00	-- 사프롤	6.5	0	
2932 95 00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0	
2932 99	-- 기타			
2932 99 50	--- 4원고리의 에폭사이드	6.5	0	
2932 99 70	--- 기타 환식아세탈 및 내부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5	0	
2932 99 85	--- 기타	6.5	0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불지 아니한 피라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11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2933 11 10	--- 프로피페나존(INN)	Free	0	
2933 11 90	--- 기타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33 19	-- 기타			
2933 19 10	--- 페닐부타존(INN)	Free	0	
2933 19 90	--- 기타	6.5	0	
	- 불지 아니한 이미다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21 00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6.5	0	
2933 29	-- 기타			
2933 29 10	--- 염산나파졸린(INNM) 및 질산나파졸린(INNM), 펜톨아민(INN), 염산톨라졸린(INNM)	Free	0	
2933 29 90	--- 기타	6.5	0	
	- 불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31 00	-- 피리딘과 그 염	5.3	0	
2933 32 00	-- 피페리딘과 그 염	6.5	0	
2933 33 00	-- 알펜타닐(INN), 알페타닐(INN), 베지트라마이드(INN), 브로마제팜(INN), 디페녹신(INN), 디펜옥실레이트(INN), 디피파논(INN) 펜타닐(INN), 케토베미돈(INN), 메틸페니데이트(INN), 펜타조신(INN), 페치딘(INN), 페치딘(INN), 인터미디에이트에이, 펜시클리딘(INN), (PCP), 페노페리딘(INN), 피프라돌(INN), 피리트라마이드(INN), 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다인(INN) 및 그들의 염	6.5	0	
2933 39	-- 기타			
2933 39 10	--- 이프로니아지드(INN), 염산케토베미돈(INNM), 브롬화 피로도스티그민(INN)	Free	0	
2933 39 20	---2,3,5,6-테트라클로로피리딘	Free	0	
2933 39 25	--- 3,6-디클로로피리딘-2-카르복시산	Free	0	
2933 39 35	--- 2-히드록시메틸암모늄-3,6-디클로로피리딘-2-카르복시레이트	Free	0	
2933 39 40	--- 2-부톡시메틸(3,5,6-트리클로로-2-피리딜록시)아세트이트	Free	0	
2933 39 45	--- 3,5-디클로로-2,4,6-트리플루오로피리딘	Free	0	
2933 39 50	--- 플루록시피르(ISO)메틸에스테르	4	0	
2933 39 55	--- 4-메틸피리딘	Free	0	
2933 39 99	--- 기타	6.5	0	
	- 퀴놀린고리 또는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3 41 00	-- 레보르파놀(INN)과 그 염	Free	0	
2933 49	-- 기타			
2933 49 10	--- 퀴놀린의 할로겐유도체; 퀴놀린카르복시산 유도체	5.5	0	
2933 49 30	--- 덱스트로메토르판(INN)과 그 염	Free	0	
2933 49 90	--- 기타	6.5	0	
	-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52 00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과 그 염	6.5	0	
2933 53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 부도바르비탈(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 펜도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비닐비탈(INN) 및 그들의 염			
2933 53 10	--- 페노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과 그들의 염	Free	0	
2933 53 90	--- 기타	6.5	0	
2933 54 00	--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와 그들의 염	6.5	0	
2933 55 00	-- 로프라졸람(INN), 메크로파론(INN), 메타과론(INN) 및 지페프롤(INN)과 그들의 염	Free	0	
2933 59	-- 기타			
2933 59 10	--- 디아지논(ISO)	Free	0	
2933 59 20	--- 1,4-디아자비세클로[2.2.2]옥탄(트리메탈렌디아민)	Free	0	
2933 59 95	--- 기타	6.5	0	
	- 불지 아니한 트리아진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61 00	-- 멜라민	6.5	0	
2933 69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33 69 10	--- 아트라진(ISO), 프로파진(ISO), 시마진(ISO), 헥사히드로-1,3,5-트리니트로-1,3,5-트리아진 (헥소겐,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5.5	0	
2933 69 20	--- 메텐아민(INN)(헥사메틸렌테트라민)	Free	0	
2933 69 30	--- 2,6-디-테르트-부탈-4-[4,6-비스(옥틸티오)-1,3,5-트리아진-2-일아미노]페놀	Free	0	
2933 69 80	--- 기타	6.5	0	
	- 락탐			
2933 71 00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6.5	0	
2933 72 00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Free	0	
2933 79 00	-- 기타 락탐	6.5	0	
	- 기타			
2933 91	--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라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트리아졸람(INN) 및 그들의 염			
2933 91 10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Free	0	
2933 91 90	--- 기타	6.5	0	
2933 99	-- 기타			
2933 99 10	--- 벤지미다졸-2-티올(머캅토벤지미다졸)	6.5	0	
2933 99 20	--- 인돌, 3-메틸인돌, (스카톨), 6-알릴-6,7-디히드로-5H-디벤조[c,e]아제핀 (아자페틴), 페닌아민(INN)과 그들의 염; 염산이미프라민(INNM)	5.5	0	
2933 99 30	--- 모노아제핀	6.5	0	
2933 99 40	--- 디아제핀	6.5	0	
2933 99 50	--- 2,4-디-테르트-부탈-6-(5-클로로벤조트리아졸-2-일)페놀	Free	0	
2933 99 90	--- 기타	6.5	0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10 00	- 불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6.5	0	
2934 2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4 20 20	-- 디(벤조티아졸-2-일)디술파이드, 벤조티아졸-2-티올(머캅토벤조티아졸)과 그 염	6.5	0	
2934 20 80	-- 기타	6.5	0	
2934 30	- 페노티아진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4 30 10	-- 티에틸페라진(INN), 티오리다진(INN)과 그 염	Free	0	
2934 30 90	-- 기타	6.5	0	
	- 기타			
2934 91 00	--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맥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올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 및 그들의 염	Free	0	
2934 99	-- 기타			
2934 99 10	--- 클로르프로티센(INN), 테날리딘(INN)과 그 타르타르산 및 말레산	Free	0	
2934 99 20	--- 푸라졸리돈(INN)	Free	0	
2934 99 30	---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Free	0	
2934 99 40	--- (6R, 7R)-3-아세트옥시메탈-7-[(R)-2-포르밀옥시-2-페닐아세트아미도]-8-옥소-5-티아-1-아자비시클로[4.2.0]옥트-2-엔-2-카르복시산	Free	0	
2934 99 50	--- 1-[2-(1,3-디옥산-2-일)에틸]-2-메틸피리디늄브로마이드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34 99 90	--- 기타	6.5	0	
2935 00	솔폰아미드			
2935 00 10	- 3-[1-[7-(헥사데실설폰닐아미노)-1H-인돌-3-일]-3-옥소-1H, 3H-나프토[1,8-cd]피란-1-일]-N,N-디메틸-1H-인돌-7-솔폰아미드	Free	0	
2935 00 20	- 메토솔람(ISO)	Free	0	
2935 00 90	- 기타	6.5	0	
	XI. PROVITAMINS, VITAMINS AND HORMONES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6 21 00	--비타민A와 그들의 유도체	Free	0	
2936 22 00	-- 비타민B1와 그들의 유도체	Free	0	
2936 23 00	-- 비타민B2와 그들의 유도체	Free	0	
2936 24 00	-- D-판토텐산 또는 DL-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B5)와 그들의 유도체	Free	0	
2936 25 00	-- 비타민B6와 그들의 유도체	Free	0	
2936 26 00	-- 비타민B12와 그들의 유도체	Free	0	
2936 27 00	-- 비타민C와 그들의 유도체	Free	0	
2936 28 00	-- 비타민E와 그들의 유도체	Free	0	
2936 29	-- 기타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			
2936 29 10	--- 비타민B9와 그들의 유도체	Free	0	
2936 29 30	--- 비타민H와 그들의 유도체	Free	0	
2936 29 90	--- 기타	Free	0	
2936 9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 및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 천연 비타민 농축물			
2936 90 11	--- 천연 비타민a+D 농축물	Free	0	
2936 90 19	--- 기타	Free	0	
2936 90 80	-- 기타	Free	0	
2937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과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 11 00	-- 소마트로핀과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Free	0	
2937 12 00	-- 인슐린과 그 염	Free	0	
2937 19 00	-- 기타	Free	0	
	-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 21 00	-- 코르티손,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및 프레드니손(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Free	0	
2937 22 00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Free	0	
2937 23 00	--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	Free	0	
2937 29 00	-- 기타	Free	0	
	- 카테콜라민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 31 00	-- 에피네프린	Free	0	
2937 39 00	-- 기타	Free	0	
2937 40 00	- 아미노산 유도체	Free	0	
2937 50 00	-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그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Free	0	
2937 90 00	- 기타	Free	0	
	제12절 글리코시드와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2938 10 00	- 루토시드(루틴)과 그 유도체	6.5	0	
2938 90	- 기타			
2938 90 10	--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	0	
2938 90 30	-- 글리시리진산 및 글리시리제이트	5.7	0	
2938 90 90	-- 기타	6.5	0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39 11 00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INN), 에틸모르핀, 에토르핀(INN), 헤로인, 히드로코돈(INN), 히드로모르핀(INN), 모르핀, 니코모르핀(INN), 옥시코돈(INN), 옥시모르핀(INN), 풀코딘(INN), 테바코(INN)과 테바인 및 그들의 염	Free	0	
2939 19 00	-- 기타	Free	0	
2939 20 0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Free	0	
2939 30 00	- 카페인과 그 염	Free	0	
	-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2939 41 00	-- 에페드린과 그 염	Free	0	
2939 42 00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Free	0	
2939 43 00	-- 캐친(INN)과 그 염	Free	0	
2939 49 00	-- 기타	Free	0	
	- 테오피린과 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 및 그들의 유도체와 그들의 염			
2939 51 00	-- 페네틸린(INN)과 그 염	Free	0	
2939 59 00	-- 기타	Free	0	
	-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39 61 00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Free	0	
2939 62 00	-- 엘고타민(INN)과 그 염	Free	0	
2939 63 00	-- 리세르그산과 그 염	Free	0	
2939 69 00	-- 기타	Free	0	
	- 기타			
2939 91	-- 코카인, 에코코닌, 레보메탐페타민, 메탐페타민(INN),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그들의 염, 그들의 에스테르와 기타 그들의 유도체			
	--- 코카인과 그것의 염			
2939 91 11	---- 조상의 코카인	Free	0	
2939 91 19	---- 기타	Free	0	
2939 91 90	--- 기타	Free	0	
2939 99 00	-- 기타	Free	0	
	제13절 기타 유기화합물			
2940 00 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젓당·엿당·포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와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 및 제29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6.5	0	
2941	항생물질			
2941 10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41 10 10	-- 아목시실린(INN)과 그 염	Free	0	
2941 10 20	-- 암피실린(INN), 메탐피실린(INN), 피밤피실린(INN)과 그들의 염	Free	0	
2941 10 90	-- 기타	Free	0	
2941 20	-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41 20 30	--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그 염, 에스테르 및 수화물	5.3	0	
2941 20 80	-- 기타	Free	0	
2941 30 00	-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Free	0	
2941 40 0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Free	0	
2941 50 00	-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Free	0	
2941 90 00	- 기타	Free	0	
2942 00 00	기타 유기 화합물	6.5	0	
30	제30류 의약품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001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 · 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3001 20	- 선 · 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3001 20 10	-- 인체 유래의 것	Free	0	
3001 20 90	-- 기타	Free	0	
3001 90	- 기타			
3001 90 20	-- 인체 유래의 것	Free	0	
	-- 기타			
3001 90 91	--- 헤파린과 그 염	Free	0	
3001 90 98	--- 기타	Free	0	
3002	인혈, 치료용 ·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 · 독소 ·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 10	-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02 10 10	-- 면역혈청	Free	0	
	-- 기타			
3002 10 91	--- 헤모글로빈, 혈액 글로부린 및 혈청 글로부린	Free	0	
	--- 기타			
3002 10 95	-- 인체 유래의 것	Free	0	
3002 10 99	---- 기타	Free	0	
3002 20 00	- 백신(인체의약품의 것에 한한다)	Free	0	
3002 30 00	- 백신(동물의약품의 것에 한한다)	Free	0	
3002 90	- 기타			
3002 90 10	-- 인혈	Free	0	
3002 90 30	--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Free	0	
3002 90 50	-- 미생물 배양체	Free	0	
3002 90 90	-- 기타	Free	0	
3003	의약품(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3003 10 00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Free	0	
3003 20 00	-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Free	0	
	- 호르몬 또는 제 2937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3 31 00	-- 인슐린을 함유한 것	Free	0	
3003 39 00	-- 기타	Free	0	
3003 40 00	- 알칼로이드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또는 기타 제2937호의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Free	0	
3003 90	- 기타			
3003 90 10	-- 요오드 또는 요오드화합물을 함유한 것	Free	0	
3003 90 90	-- 기타	Free	0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004 10	-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및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 10 10	-- 활성물질로 페니실린 또는 페니실린산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Free	0	
3004 10 90	-- 기타	Free	0	
3004 20	-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004 20 10	--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Free	0	
3004 20 90	-- 기타	Free	0	
	- 호르몬 또는 제2937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4 31	-- 인슐린을 함유한 것			
3004 31 10	---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Free	0	
3004 31 90	--- 기타	Free	0	
3004 3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3004 32 10	---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Free	0	
3004 32 90	--- 기타	Free	0	
3004 39	-- 기타			
3004 39 10	---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Free	0	
3004 39 90	--- 기타	Free	0	
3004 40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 제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4 40 10	--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Free	0	
3004 40 90	-- 기타	Free	0	
3004 50	- 비타민 또는 제2936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3004 50 10	--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Free	0	
3004 50 90	-- 기타	Free	0	
3004 90	- 기타			
	--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4 90 11	--- 요오드 또는 요오드화합물을 함유한 것	Free	0	
3004 90 19	--- 기타	Free	0	
	-- 기타			
3004 90 91	-- 요오드 또는 요오드화합물을 함유한 것	Free	0	
3004 90 99	--- 기타	Free	0	
3005	탈지면 · 거즈 ·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 피복재 · 반창고 · 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 10 00	- 접착성피복제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물품	Free	0	
3005 90	- 기타			
3005 90 10	-- 탈지면과 그 제품	Free	0	
	-- 기타			
	--- 방직 재료의 것			
3005 90 31	---- 거즈 및 거즈제품	Free	0	
	---- 기타			
3005 90 51	----- 부직포제품의 것	Free	0	
3005 90 55	----- 기타	Free	0	
3005 90 99	--- 기타	Free	0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석 제4호의 물품에 한한다)			
3006 10	- 살균한 외과용의 커터트,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를 포함한다] ·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06 10 10	-- 살균한 외과용의 커터트	Free	0	
3006 10 30	--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접착장벽(흡수성 여부를 불문한다)	6.5	0	
3006 10 90	-- 기타	Free	0	
3006 20 0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Free	0	
3006 30 0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Free	0	
3006 40 00	-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및 뼈형성용 시멘트	Free	0	
3006 50 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Free	0	
3006 60	- 호르몬 · 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호르몬 · 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006 60 11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의 것	Free	0	
3006 60 19	--- 기타	Free	0	
3006 60 90	--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것	Free	0	
3006 70 00	-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촉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학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6.5	0	
	- 기타			
3006 91 00	-- 장루용 기구	6.5	0	
3006 92 00	-- 폐 의료용품	Free	0	
31	제31류 비료			
3101 00 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Free	0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2 1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102 10 10	-- 요소(건조 상태의 상품의 중량 대비 질소를 100분의 45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6.5	0	
3102 10 90	-- 기타	6.5	0	
	- 황산암모늄 및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3102 21 00	-- 황산암모늄	6.5	0	
3102 29 00	-- 기타	6.5	0	
3102 3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102 30 10	-- 수용액의 것	6.5	0	
3102 30 90	-- 기타	6.5	0	
3102 4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에 한한다)			
3102 40 10	-- 중량의 100분의 28이하의 질산을 포함하는 것	6.5	0	
3102 40 90	-- 중량의 100분의 28초과의 질산을 포함하는 것	6.5	0	
3102 50	- 질산나트륨			
3102 50 10	-- 천연질산나트륨	Free	0	
3102 50 90	-- 기타	6.5	0	
3102 60 00	-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6.5	0	
3102 80 00	-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6.5	0	
3102 90 0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혼합물을 포함한다)	6.5	0	
3103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3 10	- 과인산석회			
3103 10 10	-- 오산화인의 총중량의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오산화인을 포함하는 것	4.8	0	
3103 10 90	-- 기타	4.8	0	
3103 90 00	- 기타	Free	0	
3104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4 20	- 염화칼륨			
3104 20 10	-- 건조 상품의 중량 대비 일산화칼륨을 100분의 40이하 포함하는 것	Free	0	
3104 20 50	-- 건조 상품의 중량 대비 일산화칼륨을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2이하 포함하는 것	Free	0	
3104 20 90	-- 건조 상품의 중량 대비 일산화칼륨을 100분의 62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Free	0	
3104 30 00	- 황산칼륨	Free	0	
3104 90 00	- 기타	Free	0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 10 00	-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5	0	
3105 20	-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3105 20 10	-- 건조 상품의 중량 대비 질산이 100분의 10초과하는 것	6.5	0	
3105 20 90	-- 기타	6.5	0	
3105 30 0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105 40 0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6.5	0	
	- 질소와 인을 함유한 기타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3105 51 00	-- 질산염과 인산염을 포함한 것	6.5	0	
3105 59 00	-- 기타	6.5	0	
3105 6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3105 60 10	-- 과인산석회칼륨	3.2	0	
3105 60 90	-- 기타	3.2	0	
3105 90	- 기타			
3105 90 10	-- 천연 질산나트륨칼륨[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의 천연 혼합물로 구성된 것(질산칼륨의 비율이 최대 100분의 44 인 것)으로, 건조 상품의 중량 대비 질산이 100분의 16.3 이하인 것]	Free	0	
	-- 기타			
3105 90 91	--- 건조 상품의 중량 대비 질산이 100분의 10초과하는 것	6.5	0	
3105 90 99	--- 기타	3.2	0	
32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3201 10 00	- 케브라초 엑스	Free	0	
3201 20 00	- 왁스 엑스	6.5	0	
3201 90	- 기타			
3201 90 20	-- 수마크, 발로니아, 참나무 또는 밤나무 엑스	5.8	0	
3201 90 90	-- 기타	5.3	0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3202 10 00	- 합성 유기 유연 물질	5.3	0	
3202 90 00	- 기타	5.3	0	
3203 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석 제3호의 것에 한한다)			
3203 00 10	-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Free	0	
3203 00 90	- 동물 유래의 착색제 및 이들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 식료품	2.5	0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석 제3호의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석 제3호의 것에 한한다)			
3204 11 00	--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5	0	
3204 12 00	--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5	0	
3204 13 00	--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5	0	
3204 14 00	--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5	0	
3204 15 00	-- 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5	0	
3204 16 00	--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5	0	
3204 17 00	--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5	0	
3204 19 00	-- 기타(소호 제3204.11호 내지 제3204.19호 중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6.5	0	
3204 20 00	- 합성유기형광증백제	6	0	
3204 90 00	- 기타	6.5	0	
3205 00 00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석 제3호의 것에 한한다)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206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석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3206 11 00	--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이상 함유된 것	6	0	
3206 19 00	-- 기타	6.5	0	
3206 20 00	- 크롬화합물을 기제로 한 염료와 조제품	6.5	0	
	-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3206 41 00	-- 군청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6.5	0	
3206 42 00	-- 황아연을 기제로 한 리도폰·기타안료와 조제품	6.5	0	
3206 49	-- 기타			
3206 49 10	--- 자철광	Free	0	
3206 49 30	--- 카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5	0	
3206 49 80	--- 기타	6.5	0	
3206 50 00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5.3	0	
3207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3207 10 00	-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207 20	- 법랑과 유약·유약용의 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3207 20 10	-- 슬립	5.3	0	
3207 20 90	-- 기타	6.3	0	
3207 30 00	- 액상라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5.3	0	
3207 40	-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3207 40 10	-- '에나멜'유리로 알려진 종류의 유리	3.7	0	
3207 40 20	-- 플레이크상의 유리(길이가 0.1밀리미터이상 3.5밀리미터이하이고, 두께는 2마이크로미터이상 5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Free	0	
3207 40 30	-- 분상 또는 입상의 유리 (이산화실리콘의 중량의 100분의 99이상을 포함한다)	Free	0	
3207 40 80	-- 기타	3.7	0	
3208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석 제4호의 용액			
3208 10	-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			
3208 10 10	-- 이 류의 주석 제4호에 정의된 용액	6.5	0	
3208 10 90	-- 기타	6.5	0	
3208 20	-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3208 20 10	-- 이 류의 주석 제4호에 정의된 용액	6.5	0	
3208 20 90	-- 기타	6.5	0	
3208 90	- 기타			
	-- 이 류의 주석 제4호에 정의된 용액			
3208 90 11	--- 폴리우레탄 (2,2'-(테르트-부틸이미노)디에탄올 및 4,4'-메틸렌디씨클로헥실디이소시아네이트의 폴리우레탄 (N,N-디메틸아세타미드에서 용액의 형태인 것), 중량으로 100분의 48이상이지만 100분의 50이하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것)	Free	0	
3208 90 13	--- 파라-크레솔의 공중합체와 디비닐벤젠 (N,N-디메틸아세타미드에서 용액의 형태인 것), 중량으로 100분의 48이상이지만 100분의 50이하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것)	Free	0	
3208 90 19	--- 기타	6.5	0	
	-- 기타			
3208 90 91	--- 합성 중합체를 기제로 하는 것	6.5	0	
3208 90 99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천연 중합체를 기제로 하는 것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209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3209 10 00	-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하는 것	6.5	0	
3209 90 00	- 기타	6.5	0	
3210 00	기타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 래커 및 디스템퍼를 포함한다) 및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3210 00 10	- 오일 페인트와 바니쉬 (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10 00 90	- 기타	6.5	0	
3211 00 00	조제드라이어	6.5	0	
3212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 · 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한다), 스템프용의 박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3212 10	- 스템프용의 박			
3212 10 10	-- 금속을 기제로 한 것	6.5	0	
3212 10 90	-- 기타	6.5	0	
3212 90	- 기타			
	--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 · 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한다)			
3212 90 31	--- 알루미늄의 분을 기제로 한 것	6.5	0	
3212 90 38	--- 기타	6.5	0	
3212 90 90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착색제	6.5	0	
3213	화가용 · 학생용 · 간판도장공용 · 정색용 · 유흥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 · 튜브들이 · 병들이 · 접시들이 및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한다)			
3213 10 00	- 회구류 세트	6.5	0	
3213 90 00	- 기타	6.5	0	
3214	초자용의 퍼티 · 접목용의 퍼티 · 수지시멘트 · 코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 · 실내벽 · 마루 · 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 10	- 초자용의 퍼티 · 접목용의 퍼티 · 수지시멘트 · 코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3214 10 10	--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코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5	0	
3214 10 90	-- 도장용 충전제	5	0	
3214 90 00	- 기타	5	0	
3215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 (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인쇄용 잉크			
3215 11 00	-- 검정색	6.5	0	
3215 19 00	-- 기타	6.5	0	
3215 90	- 기타			
3215 90 10	-- 필기용 또는 제도용 잉크	6.5	0	
3215 90 80	-- 기타	6.5	0	
33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항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품품류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애플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 · 불휘발성유 ·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 감귤류의 정유			
3301 12	-- 오렌지유			
3301 12 10	--- 테르펜을 제거하지 않은 것	7	0	
3301 12 90	--- 테르펜을 제거한 것	4.4	0	
3301 13	-- 레몬유			
3301 13 10	--- 테르펜을 제거하지 않은 것	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301 13 90	--- 테르펜을 제거한 것	4.4	0	
3301 19	-- 기타			
3301 19 20	--- 테르펜을 제거하지 않은 것	7	0	
3301 19 80	--- 테르펜을 제거한 것	4.4	0	
	- 감귤류 이외의 정유			
3301 24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3301 24 10	--- 테르펜을 제거하지 않은 것	Free	0	
3301 24 90	--- 테르펜을 제거한 것	2.9	0	
3301 25	-- 기타 민트류의 것			
3301 25 10	--- 테르펜을 제거하지 않은 것	Free	0	
3301 25 90	--- 테르펜을 제거한 것	2.9	0	
3301 29	-- 기타			
	--- 정향, 일랑일랑, 니아올리의 것			
3301 29 11	--- 테르펜을 제거하지 않은 것	Free	0	
3301 29 31	--- 테르펜을 제거한 것	2.3	0	
	--- 기타			
3301 29 41	--- 테르펜을 제거하지 않은 것	Free	0	
	--- 테르펜을 제거한 것			
3301 29 71	----- 제라늄, 자스민, 베티베리아유	2.3	0	
3301 29 79	----- 라벤더유	2.9	0	
3301 29 91	----- 기타	2.3	0	
3301 30 00	- 레지노이드	2	0	
3301 90	- 기타			
3301 90 10	-- 정유에서 테르펜 제거시 발생한 테르펜 부산물	2.3	0	
	-- 추출한 올레오레진			
3301 90 21	--- 감초와 호프의 것	3.2	0	
3301 90 30	--- 기타	Free	0	
3301 90 90	-- 기타	3	0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 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 타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302 10	-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			
	-- 음료공업용의 것			
	--- 음료용의 모든 감미제를 포함			
3302 10 10	---- 실제 알코올 용량이 전체의 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17.3 MIN 1 €/ % vol/hl	0	
	---- 기타			
3302 10 21	----- 유지방, 자당, 이소글루코스, 포도당 또는 전분 미함 유, 유지방 100분의 1.5미만, 자당 또는 이소글루코스 100 분의 5미만, 포도당 또는 전분 100분의 5미만 함유	12.8	0	
3302 10 29	----- 기타	9 + EA	0	
3302 10 40	--- 기타	Free	0	
3302 10 90	-- 식품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	Free	0	
3302 90	- 기타			
3302 90 10	-- 알코올의 용액	Free	0	
3302 90 90	-- 기타	Free	0	
3303 00	향수 및 화장수			
3303 00 10	- 향수	Free	0	
3303 00 90	- 화장수	Free	0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 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 10 00	- 입술화장용 제품류	Free	0	
3304 20 00	- 눈화장용 제품류	Free	0	
3304 30 00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Free	0	
	- 기타			
3304 91 00	--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3304 99 00	-- 기타	Free	0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 10 00	- 샴푸	Free	0	
3305 20 00	-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Free	0	
3305 30 00	- 헤어 래커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305 90	- 기타			
3305 90 10	-- 헤어 로션	Free	0	
3305 90 90	-- 기타	Free	0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분을 포함한다) 및 치간 청결용 사로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한 것(덴탈 플로스)			
3306 10 00	- 치약	Free	0	
3306 20 00	- 치아사이를 청결히 하는데 사용되는 실(덴탈 플로스)	4	0	
3306 90 00	- 기타	Free	0	
3307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 · 목욕용 조제품 · 탈모제와 기타 조제항료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307 10 00	- 면도용 제품류	6.5	0	
3307 20 00	-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6.5	0	
3307 30 00	-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과 샤워용 제품류	6.5	0	
	-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 41 00	--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6.5	0	
3307 49 00	-- 기타	6.5	0	
3307 90 00	- 기타	6.5	0	
34	제34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세제 · 조제윤활제 · 인조왁스 · 조제왁스 · 광택 또는 연마조제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형용 페이스트 · 치과용왁스와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봉상 ·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 워딩 · 펠트와 부직포			
	-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봉상 ·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 워딩 · 펠트와 부직포			
3401 11 00	--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Free	0	
3401 19 00	-- 기타	Free	0	
3401 20	- 기타 형상의 비누			
3401 20 10	-- 플레이크상, 웨이퍼상, 입상 또는 분말상	Free	0	
3401 20 90	-- 기타	Free	0	
3401 30 00	-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0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402 11	-- 음이온성의 것			
3402 11 10	--- 중량으로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디소듐알킬[옥시디(벤젠설포네이트)]를 함유하는 수용액	Free	0	
3402 11 90	--- 기타	4	0	
3402 12 00	-- 양이온성의 것	4	0	
3402 13 00	-- 비이온성의 것	4	0	
3402 19 00	-- 기타	4	0	
3402 20	-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3402 20 20	-- 조제계면활성제	4	0	
3402 20 90	--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	4	0	
3402 90	- 기타			
3402 90 10	-- 계면활성제	4	0	
3402 90 90	--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	4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3403 11 00	-- 방직용 재료, 가죽,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를 위한 조제품	4.6	0	
3403 19	-- 기타			
3403 19 10	--- 100분의 70이상의 석유 또는 역청유로 된 윤활제를 기제로 한 것	6.5	0	
	--- 기타			
3403 19 91	---- 기계, 기구 및 차량을 위한 조제윤활유	4.6	0	
3403 19 99	---- 기타	4.6	0	
	- 기타			
3403 91 00	-- 방직용 재료, 가죽,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를 위한 조제품	4.6	0	
3403 99	-- 기타			
3403 99 10	--- 기계, 기구 및 차량을 위한 조제윤활유	4.6	0	
3403 99 90	--- 기타	4.6	0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 20 00	-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Free	0	
3404 90	- 기타			
3404 90 10	-- 조제왁스 (봉랍를 포함한다)	Free	0	
3404 90 80	-- 기타	Free	0	
3405	신발·가구·마루·자동차 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트·부직포·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3405 10 00	- 신발 또는 가죽용의 광택제·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Free	0	
3405 20 00	- 목재가구·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Free	0	
3405 30 00	-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 광택제는 제외한다)	Free	0	
3405 40 00	- 조제연마페이스트·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	Free	0	
3405 90	- 기타			
3405 90 10	-- 금속 광택제	Free	0	
3405 90 90	-- 기타	Free	0	
3406 00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양초			
3406 00 11	-- 플레인, 무향의 것	Free	0	
3406 00 19	-- 기타	Free	0	
3406 00 90	- 기타	Free	0	
3407 00 00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말굽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Free	0	
35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3501 10	- 카세인			
3501 10 10	-- 인조 섬유 제조용	Free	0	
3501 10 50	-- 식품제조, 사료 제조용을 제외한 산업용	3.2	0	
3501 10 90	-- 기타	9	0	
3501 90	- 기타			
3501 90 10	-- 카세인 글루	8.3	0	
3501 90 90	-- 기타	6.4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 난 알부민			
3502 11	-- 건조한 것			
3502 11 10	--- 식용으로 부적합한 것	Free	0	
3502 11 90	--- 기타	123,5 €/100 kg/net	0	
3502 19	-- 기타			
3502 19 10	--- 식용으로 부적합한 것	Free	0	
3502 19 90	--- 기타	16,7 €/100 kg/net	0	
3502 2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3502 20 10	--- 식용으로 부적합한 것	Free	0	
	-- 기타			
3502 20 91	--- 건조한 것(시트, 스케일, 플레이크, 파우더 상의 것 등)	123,5 €/100 kg/net	0	
3502 20 99	--- 기타	16,7 €/100 kg/net	0	
3502 90	- 기타			
	-- 알부민(우유 및 난알부민 제외)(락탈부민)			
3502 90 20	--- 식용으로 부적합한 것	Free	0	
3502 90 70	--- 기타	6.4	0	
3502 90 90	-- 알부미네이트와 기타 알부민 유도체	7.7	0	
3503 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세인글루를 제외한다)			
3503 00 10	- 젤라틴 및 그 유도체	7.7	0	
3503 00 80	- 기타	7.7	0	
3504 00 00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4	0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징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 10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3505 10 10	-- 덱스트린	9 + 17,7 €/100 kg/net	5	
	-- 기타 변성전분			
3505 10 50	---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한 전분류	7.7	5	
3505 10 90	--- 기타	9 + 17,7 €/100 kg/net	5	
3505 20	- 글루			
3505 20 10	-- 중량의 25퍼센트미만의 전분 또는 덱스트린 또는 변형전분으로 구성된 것	8,3 + 4,5 €/100 kg/net MAX 11,5	5	
3505 20 30	-- 중량의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55미만의 전분 또는 덱스트린 또는 변형전분으로 구성된 것	8,3 + 8,9 €/100 kg/net MAX 11,5	5	
3505 20 50	-- 중량의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80미만의 전분 또는 덱스트린 또는 변형전분으로 구성된 것	8,3 + 14,2 €/100 kg/net MAX 11,5	5	
3505 20 90	-- 중량의 100분의 80이상의 전분 또는 덱스트린 또는 변형전분으로 구성된 것	8,3 + 17,7 €/100 kg/net MAX 11,5	5	
3506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3506 10 00	-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것)	6.5	0	
	- 기타			
3506 91 00	--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6.5	0	
3506 99 00	-- 기타	6.5	0	
3507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507 10 00	-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6.3	0	
3507 90	- 기타			
3507 90 10	-- 리포단백질 리파제	Free	0	
3507 90 20	-- 아스페르길루스 알카라인 프로티에이스	Free	0	
3507 90 90	-- 기타	6.3	0	
36	제36류 화약류 · 화공품 · 성냥 · 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00 00	화약	5.7	0	
3602 00 00	폭약(화약을 제외)	6.5	0	
3603 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및 전기뇌관			
3603 00 10	- 도화선, 도폭선	6	0	
3603 00 90	- 기타	6.5	0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 · 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			
3604 10 00	- 불꽃제품	6.5	0	
3604 90 00	- 기타	6.5	0	
3605 00 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을 제외)	6.5	0	
3606	페로세륨 · 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하를 불문한다)과 이류의 주석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 10 00	- 깍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6.5	0	
3606 90	- 기타			
3606 90 10	-- 페로세륨·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하를 불문한다)	6	0	
3606 90 90	-- 기타	6.5	0	
37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 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체 · 판지체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1 10	- 엑스선용의 것			
3701 10 10	-- 의료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	6.5	0	
3701 10 90	-- 기타	6.5	0	
3701 20 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1 30 00	-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름(한 면이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5	0	
	- 기타			
3701 91 00	--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6.5	0	
3701 99 00	-- 기타	6.5	0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체 · 판지체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2 10 00	- 엑스레이용	6.5	0	
	- 기타 필름(구멍이 없는 것, 폭이 105밀리미터 이하의 것)			
3702 31	--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3702 31 20	---- 길이가 30미터이하인 것	6.5	0	
	----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3702 31 91	---- 컬러 네가티브 필름 (폭이 75밀리미터이상 105밀리미터이하이고, 인스턴트 사진 필름 팩을 가공하기 위해 길이가 100미터이상인 것)	Free	0	
3702 31 98	---- 기타	6.5	0	
3702 32	-- 기타(할로겐화는 에멀전으로 된 것에 한한다)			
	---- 폭이 35밀리미터이하인 것			
3702 32 10	---- 인쇄 제판용의 마이크로필름	6.5	0	
3702 32 20	---- 기타	5.3	0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702 32 31	---- 마이크로필름	6.5	0	
3702 32 50	---- 인쇄 제판용의 필름	6.5	0	
3702 32 80	---- 기타	6.5	0	
3702 39 00	-- 기타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필름(구멍이 없는 것,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702 41 00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6.5	0	
3702 42 00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 단색 사진용의 것	6.5	0	
3702 43 00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의 것	6.5	0	
3702 44 00	-- 폭이 105밀리미터 초과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6.5	0	
	- 기타 필름[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3702 51 00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미터 이하인 것	5.3	0	
3702 52 00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미터 초과인 것	5.3	0	
3702 53 00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인 것,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	5.3	0	
3702 54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은 제외한다)			
3702 54 10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3702 54 90	--- 폭이 24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3702 55 00	-- 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인 것	5.3	0	
3702 56 00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5	0	
	- 기타			
3702 91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3702 91 20	--- 인쇄 제판용의 필름	6.5	0	
3702 91 80	--- 기타	5.3	0	
3702 93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3702 93 10	--- 인쇄 제판용의 마이크로필름	6.5	0	
3702 93 90	--- 기타	5.3	0	
3702 94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3702 94 10	--- 인쇄 제판용의 마이크로필름	6.5	0	
3702 94 90	--- 기타	5.3	0	
3702 95 00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5	0	
3703	사진인화지 · 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3 10 00	- 롤상의 것으로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5	0	
3703 20	- 기타[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에 한한다]			
3703 20 10	-- 반전 타입의 필름의 사진용의 것	6.5	0	
3703 20 90	-- 기타	6.5	0	
3703 90	- 기타			
3703 90 10	-- 은 또는 백금의 염으로 감광한 것	6.5	0	
3703 90 90	-- 기타	6.5	0	
3704 00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4 00 10	- 플레이트와 필름	Free	0	
3704 00 90	- 기타	6.5	0	
3705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다)			
3705 10 00	- 오프셋 복사용의 것	5.3	0	
3705 90	- 기타			
3705 90 10	-- 마이크로필름	3.2	0	
3705 90 90	-- 기타	5.3	0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6 10	-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3706 10 10	--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	Free	0	
	-- 기타			
3706 10 91	--- 네가티브와 중간 포지티브의 영화필름	Free	0	
3706 10 99	--- 기타 포지티브의 것	5 €/100 m	0	
3706 90	- 기타			
3706 90 10	--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	Free	0	
	-- 기타			
3706 90 31	--- 네가티브와 중간 포지티브의 것	Free	0	
	--- 기타 포지티브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706 90 51	---- 뉴스영화	Free	0	
	---- 기타, 너비가			
3706 90 91	----- 10밀리미터미만의 것	Free	0	
3706 90 99	----- 10밀리미터이상인 것	3,5 €/100 m	0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 · 글루 · 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3707 10 00	- 감광유제	6	0	
3707 90	- 기타			
	-- 현상제와 정착제			
	---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3707 90 11	---- 필름과 사진 플레이트를 위한 것	6	0	
3707 90 19	---- 기타	6	0	
3707 90 30	--- 기타	6	0	
3707 90 90	-- 기타	6	0	
38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 · 블록상 · 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			
3801 10 00	- 인조흑연	3.6	0	
3801 20	-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3801 20 10	-- 콜로이드흑연 오일현탁액; 반콜로이드흑연	6.5	0	
3801 20 90	-- 기타	4.1	0	
3801 30 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5.3	0	
3801 90 00	- 기타	3.7	0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및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3802 10 00	- 활성탄	3.2	0	
3802 90 00	- 기타	5.7	0	
3803 00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3803 00 10	- 조상의 것	Free	0	
3803 00 90	- 기타	4.1	0	
3804 00	목재펠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			
3804 00 10	- 농축 아황산액	5	0	
3804 00 90	- 기타	5	0	
3805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및 기타 테르펜계유(증류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에 한한다), 조상의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기타 조상의 파라시멘 및 파인유(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에 한한다)			
3805 10	-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3805 10 10	-- 검테레빈	4	0	
3805 10 30	-- 우드테레빈	3.7	0	
3805 10 90	-- 황산테레빈	3.2	0	
3805 90	- 기타			
3805 90 10	-- 파인유	3.7	0	
3805 90 90	-- 기타	3.4	0	
3806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및련검			
3806 10	- 로진과 수지산			
3806 10 10	-- 신선한 올레오레진으로 만든 것	5	0	
3806 10 90	-- 기타	5	0	
3806 20 00	- 로진, 수지산 또는 그들의 유도체(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	4.2	0	
3806 30 00	- 에스테르 검	6.5	0	
3806 90 00	- 기타	4.2	0	
3807 00	목타르 · 목타르유 · 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 수지산 또는 식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3807 00 10	- 목타르	2.1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807 00 90	- 기타	4.6	0	
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3808 50 00	- 이 류의 소호 주석 제1호의 물품	6	0	
	- 기타			
3808 91	-- 살충제			
3808 91 10	--- 피레스로이드를 기제로 한 것	6	0	
3808 91 20	--- 염화탄화수소를 기제로 한 것	6	0	
3808 91 30	--- 카르바메이트를 기제로 한 것	6	0	
3808 91 40	--- 유기인계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6	0	
3808 91 90	--- 기타	6	0	
3808 92	-- 살균제			
	--- 무기물			
3808 92 10	---- 구리화합물을 기제로 한것	4.6	0	
3808 92 20	---- 기타	6	0	
	--- 기타			
3808 92 30	----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제로 한 것	6	0	
3808 92 40	---- 벤지미다졸을 기제로 한 것	6	0	
3808 92 50	---- 디아졸 또는 트리아졸을 기제로 한 것	6	0	
3808 92 60	---- 디아진 또는 모르포린을 기제로 한 것	6	0	
3808 92 90	---- 기타	6	0	
3808 93	-- 제초제, 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 제초제			
3808 93 11	---- 페녹시-피토호르몬을 기제로 한 것	6	0	
3808 93 13	---- 트리아진을 기제로 한 것	6	0	
3808 93 15	---- 아미드를 기제로 한 것	6	0	
3808 93 17	---- 카르바메이트를 기제로 한 것	6	0	
3808 93 21	---- 디니트로아닐린유도체를 기제로 한 것	6	0	
3808 93 23	---- 우레아유도체, 우라실유도체 또는 술폰일우레아유도체를 기제로 한 것	6	0	
3808 93 27	---- 기타	6	0	
3808 93 30	--- 발아억제제	6	0	
3808 93 90	--- 식물성장조절제	6.5	0	
3808 94	-- 소독제			
3808 94 10	--- 4차 암모늄염을 기제로 한 것	6	0	
3808 94 20	--- 할로겐화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6	0	
3808 94 90	--- 기타	6	0	
3808 99	-- 기타			
3808 99 10	--- 살서제	6	0	
3808 99 90	--- 기타	6	0	
3809	완성가공제 ·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 제지공업 ·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809 10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3809 10 10	-- 그 물질을 중량의 100분의 55미만 함유한 것	8,3 + 8,9 €/100 kg/net MAX 12,8	0	
3809 10 30	-- 그 물질을 중량의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0미만 함유한 것	8,3 + 12,4 €/100 kg/net MAX 12,8	0	
3809 10 50	-- 그 물질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3미만 함유한 것	8,3 + 15,1 €/100 kg/net MAX 12,8	0	
3809 10 90	-- 그 물질을 중량의 100분의 83이상 함유한 것	8,3 + 17,7 €/100 kg/net MAX 12,8	0	
	- 기타			
3809 91 00	-- 섬유공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	6.3	0	
3809 92 00	-- 제지공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	6.3	0	
3809 93 00	-- 피혁공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	6.3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땜임 · 땜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땜임 · 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 10 00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땜임, 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6.5	0	
3810 90	- 기타			
3810 90 10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4.1	0	
3810 90 90	-- 기타	5	0	
3811	안티녹제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 안티녹제			
3811 11	-- 납화합물을 기재로 한 것			
3811 11 10	--- 테트라에틸-납을 기재로 한 것	6.5	0	
3811 11 90	--- 기타	5.8	0	
3811 19 00	-- 기타	5.8	0	
	- 윤활유용 첨가제			
3811 21 00	--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한 것	5.3	0	
3811 29 00	-- 기타	5.8	0	
3811 90 00	- 기타	5.8	0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 10 0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6.3	0	
3812 20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3812 20 10	-- 벤질 3-이소부틸릴옥시-1-이소프로필-2,2-디메틸프로필프탈레이트 및 벤질 3-이소부틸릴옥시-2,2,4-트리메틸펜틸프탈레이트를 함유한 반응혼합물	Free	0	
3812 20 90	-- 기타	6.5	0	
3812 30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 30 20	--황산화제	6.5	0	
3812 30 80	-- 기타	6.5	0	
3813 00 00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6.5	0	
3814 00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제			
3814 00 10	- 초산부틸을 기재로 한 것	6.5	0	
3814 00 90	- 기타	6.5	0	
3815	반응시작제 · 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서포트된 촉매			
3815 11 00	--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6.5	0	
3815 12 00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6.5	0	
3815 19	-- 기타			
3815 19 10	---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의 그레인형상의 촉매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크기를 나타내며 마그네슘-규산염 서포트에 대한 옥사이드 혼합물로 구성된 것(전중량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5이하의 동 및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비스머드를 가진 것 및 0.2이상 1.0이하의 겔보기 중력을 가진 것에 한한다)	Free	0	
3815 19 90	--- 기타	6.5	0	
3815 90	- 기타			
3815 90 10	-- 메탄올 용액 형태에 초산에틸트리페닐포스포늄을 함유한 촉매	Free	0	
3815 90 90	-- 기타	6.5	0	
3816 00 00	내화시멘트, 내화모르타르, 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2.7	0	
3817 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817 00 50	- 선형 알킬벤젠	6.3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817 00 80	- 기타	6.3	0	
3818 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3818 00 10	- 도프처리된 실리콘	Free	0	
3818 00 90	- 기타	Free	0	
3819 00 00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에 한한다)	6.5	0	
3820 00 0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6.5	0	
3821 00 00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5	0	
3822 00 00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Free	0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3823 11 00	-- 스테아린산	5.1	0	
3823 12 00	-- 올레인산	4.5	0	
3823 13 00	-- 톨유 지방산	2.9	0	
3823 19	-- 기타			
3823 19 10	--- 증류 지방산	2.9	0	
3823 19 30	--- 지방산 증류액	2.9	0	
3823 19 90	--- 기타	2.9	0	
3823 70 0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	0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10 00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6.5	0	
3824 30 00	-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5.3	0	
3824 40 00	- 시멘트용, 모르타르용 및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6.5	0	
3824 5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3824 50 10	-- 주입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	6.5	0	
3824 50 90	-- 기타	6.5	0	
3824 60	- 솔비톨(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수용액의 것			
3824 60 11	--- 디글루시톨내에 디만니톨 중량이 100분의 2이하인 것	7,7 + 16,1 €/100kg/net	0	
3824 60 19	--- 기타	9,6 + 37,8 €/100 kg/net	0	
	-- 기타			
3824 60 91	--- 디글루시톨내에 디만니톨 중량이 100분의 2이하인 것	7,7 + 23 €/100kg/net	0	
3824 60 99	--- 기타	9,6 + 53,7 €/100 kg/net	0	
	-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하는 혼합물			
3824 71 00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6.5	0	
3824 72 0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 73 00	-- 수소브로모플루오로카본(HBFCs)를 함유하는 것	6.5	0	
3824 74 00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0	
3824 75 00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혼합물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824 76 00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 77 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 78 00	--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6.5	0	
3824 79 00	-- 기타	6.5	0	
	-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3824 81 00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0	
3824 82 00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0	
3824 83 0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0	
3824 90	- 기타			
3824 90 10	-- 석유 술폰산(알칼리 금속류, 암모늄 또는 에탄올아민의 것 제외), 역청유의 티오페네이트된 황산과 그들의 염	5.7	0	
3824 90 15	-- 이온교환체	6.5	0	
3824 90 20	-- 진공관용 겐타	6	0	
3824 90 25	-- 칼슘의 목초산과 같은 목초산; 조상의 타르타르산칼슘; 조상의 시트르산칼슘	5.1	0	
3824 90 30	-- 나프텐산 및 그들의 수불용성염과 그들의 에스테르	3.2	0	
3824 90 35	-- 활성성분으로 아민을 함유하는 방청제	6.5	0	
3824 90 40	-- 바니쉬 및 유사한 제품용의 무기혼합용제와 신나	6.5	0	
	-- 기타			
3824 90 45	--- 스케일방지제 및 유사한 화합물	6.5	0	
3824 90 50	--- 전기도금용 조제품	6.5	0	
3824 90 55	--- 글리세롤(지방유화제)의 모노-,디- 및 트리-, 지방산 에스테르의 혼합물	6.5	0	
	--- 의약품제조용 또는 화학제품용 제품 및 조제품			
3824 90 61	---- 스트렙토마이세스 테네브라리우스 발효에서 얻어진 항생물질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건조여부를 불문하며, 제3004호의 인체 의약품 제조용에 한한다)	Free	0	
3824 90 62	---- 모넨신염 제조에서 발생한 중간생산물	Free	0	
3824 90 64	---- 기타	6.5	0	
3824 90 65	--- 구조용 보조제품(소호 제3824.10.00호의 것을 제외한 다)	6.5	0	
3824 90 70	--- 건축공업용 방화, 방수 및 유사한 화학보호조제품	6.5	0	
	--- 기타			
3824 90 75	---- 리튬 니오브산 웨이퍼(도프처리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Free	0	
3824 90 80	---- 평균분자량 520이상 550이하의 디머화지방산 유래의 아민 혼합물	Free	0	
3824 90 85	---- 3-"1-에틸-1-메틸프로필"이속사졸-5-일아민(톨루엔에서 용액 형상에 한한다)	Free	0	
3824 90 98	---- 기타	6.5	0	
3825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및 이 류의 주석 제6호의 기타 폐기물			
3825 10 00	- 생활폐기물	6.5	0	
3825 20 00	- 하수 찌꺼기	6.5	0	
3825 30 00	- 감염성폐기물	6.5	0	
	- 폐 유기용제			
3825 41 00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 49 00	-- 기타	6.5	0	
3825 50 0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6.5	0	
	-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기타 폐기물			
3825 61 00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 69 00	-- 기타	6.5	0	
3825 90	- 기타			
3825 90 10	-- 가스 정화용 알칼리 산화철	5	0	
3825 90 90	-- 기타	6.5	0	
39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제1절 일차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1 1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에 한한다)			
3901 10 10	-- 선형 폴리에틸렌	6.5	0	
3901 10 90	-- 기타	6.5	0	
3901 2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에 한한다)			
3901 20 10	-- 폴리에틸렌[이 류의 주석 제6(b)호에 언급된 형태의 것 중 하나로, 클로로술폰산염 폴리에틸렌 제작용의 것(섬씨 23도에서 비중이 0.958이상이며, 알루미늄 1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이하, 칼슘, 크로뮴, 철, 니켈 및 티타늄이 각각 1킬로그램당 2밀리그램이하, 바나듐이 1킬로그램당 8밀리그램이하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Free	0	
3901 20 90	-- 기타	6.5	0	
3901 30 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1 90	- 기타			
3901 90 10	-- 이오노머 수지(에틸렌 삼량체와 이소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산으로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Free	0	
3901 90 20	-- 폴리스티렌 에틸렌의 A-B-A 블록 공중합체, 에틸렌-부틸렌 공중합체 및 폴리스티렌(이 류의 주석 제6(b)호에서 언급된 형상 중 하나인 것으로, 스티렌 중량의 100분의 35이하를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3901 90 90	-- 기타	6.5	0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 10 00	- 폴리프로필렌	6.5	0	
3902 20 00	- 폴리이소부틸	6.5	0	
3902 30 00	- 프로필렌 공중합	6.5	0	
3902 90	- 기타			
3902 90 10	-- 프로필렌 또는 기타 올레핀, 폴리스티렌의 A-B-A 블록 공중합체, 에틸렌-부틸렌 공중합체 및 폴리스티렌(이 류의 주석 제6(b)호에 언급된 형상 중 하나인 것으로, 스티렌 중량의 100분의 35이하를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3902 90 20	-- 1-폴리부텐, 1-부텐과 에틸렌의 공중합체(에틸렌 중량의 100분의 10이하를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폴리에틸렌 및/ 또는 폴리프로필렌과 1-폴리부텐의 혼합물(폴리 에틸렌 중량의 100분의 10이하 및/ 또는 폴리프로필렌 100분의 25이하를 함유하는 것으로 이 류의 주석 제6항 나호에 언급된 형상 중 하나인 것에 한한다)	Free	0	
3902 90 90	-- 기타	6.5	0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폴리스티렌			
3903 11 00	-- 발포성의 것	6.5	3	
3903 19 00	-- 기타	6.5	0	
3903 20 0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6.5	0	
3903 30 0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5	3	
3903 90	- 기타			
3903 90 10	-- 알릴알코올과 스티렌의 공중합체(아세틸 수치가 175이상인 것으로 일차 제품의 것에 한한다)	Free	0	
3903 90 20	-- 브롬화 폴리스티렌(브롬 중량의 100분의 58이상 100분의 71이하를 함유하는 것으로 이 류의 주석 제6(b)호에 언급된 형상 중 하나인 것에 한한다)	Free	0	
3903 90 90	-- 기타	6.5	0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4 10 00	- 폴리(염화비닐)(어떠한 기타 성분을 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6.5	0	
	- 기타 폴리(염화비닐)			
3904 21 00	-- 비가소성의 것	6.5	0	
3904 22 00	-- 가소성의 것	6.5	0	
3904 30 0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4 40 00	-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0	
3904 5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904 50 10	-- 아크릴로니트릴과 영화비닐리덴의 공중합체(직경 4마이크로미터 이상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발포성 비드상에 한한다)	Free	0	
3904 50 90	-- 기타	6.5	0	
	- 플루오르 중합체			
3904 61 00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6.5	0	
3904 69	-- 기타			
3904 69 10	--- 폴리(비닐플루오리드)(이 류의 주석 제6(b)호에 언급된 형상 중 하나인 것에 한한다)	Free	0	
3904 69 90	--- 기타	6.5	0	
3904 90 00	- 기타	6.5	0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와 기타 비닐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폴리(초산비닐)			
3905 12 00	--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 19 00	-- 기타	6.5	0	
	-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 21 00	--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 29 00	-- 기타	6.5	0	
3905 30 0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된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6.5	0	
	- 기타			
3905 91 00	-- 공중합체	6.5	0	
3905 99	-- 기타			
3905 99 10	--- 폴리(비닐포르말)(불규칙한 형상, 럼프상, 분말상, 입상, 플레이크상 및 유사한 벌크상 블록의 것에 한하며, 분자량 10,000이상 40,000이하이고 초산비닐로 측정된 초산기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3이하 및 비닐알코올로 측정된 히드록시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6.5이하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Free	0	
3905 99 90	--- 기타	6.5	0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6 10 00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6.5	0	
3906 90	- 기타			
3906 90 10	-- 폴리[N-(3-히드록시아미노-1,1-디메틸부틸)아크릴아미드]	Free	0	
3906 90 20	-- 데실 메타크릴레이트와 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타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에서 용액상이며 공중합체의 100분의 55이상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3906 90 30	-- 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와 아크릴산의 공중합체(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 중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1이하를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3906 90 40	-- 메틸아크릴레이트와 아크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폴리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 "NBR"과 변성된 것에 한한다)	Free	0	
3906 90 50	-- 알킬메타크릴레이트 및 소량의 기타 단량체(모노머)와 아크릴산의 중합체(방직인쇄페이스트 제조의 티크너용)	Free	0	
3906 90 60	-- 에틸렌 및 치환기로 비말단 카르복시기를 함유하는 단량체(모노머)와 메틸아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메틸아크릴레이트 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규사 화합물 여부를 불문한다)	5	0	
3906 90 90	-- 기타	6.5	0	
3907	폴리아세탈수지 · 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 10 00	- 폴리아세탈	6.5	0	
3907 20	- 기타 폴리에테르			
	-- 폴리에테르 알코올			
3907 20 11	--- 폴리에틸렌 글리콜	6.5	0	
	--- 기타			
3907 20 21	---- 수산기가 100이하인 것	6.5	0	
3907 20 29	---- 기타	6.5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907 20 91	--- 에틸렌옥사이드와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의 공중합	Free	0	
3907 20 99	--- 기타	6.5	0	
3907 30 00	- 에폭시수지	6.5	0	
3907 40 00	- 폴리카보네이트	6.5	0	
3907 50 00	- 알키드수지	6.5	0	
3907 6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 60 20	-- 점성도수 1그램당 78밀리리터 이상인 것	6.5	3	
3907 60 80	-- 기타	6.5	3	
3907 70 00	- 폴리(젯산)	6.5	0	
	- 기타 폴리에스테르			
3907 91	-- 불포화의 것			
3907 91 10	--- 액체의 것	6.5	0	
3907 91 90	--- 기타	6.5	0	
3907 99	-- 기타			
	--- 수산기가 100 이하인 것			
3907 99 11	---- 폴리(에틸렌나프탈렌-2,6-디카르복시레이트)	Free	0	
3907 99 19	---- 기타	6.5	0	
	---- 기타			
3907 99 91	---- 폴리(에틸렌나프탈렌-2,6-디카르복시레이트)	Free	0	
3907 99 98	---- 기타	6.5	0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8 10 00	-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6.5	0	
3908 90 00	- 기타	6.5	0	
3909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9 10 00	- 요소수지 및 티오요소수지	6.5	0	
3909 20 00	- 멜라민수지	6.5	0	
3909 30 00	- 기타 아미노수지	6.5	0	
3909 40 00	- 페놀수지	6.5	0	
3909 50	- 폴리우레탄			
3909 50 10	-- 2,2'-(테르트-부틸아미노)디에탄올 및 4,4'-메틸렌디씨클로헥실디이소시아네이트의 폴리우레탄(N,N-디메틸아세타미드에서 용액의 형태인 것으로 중합체 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3909 50 90	-- 기타	6.5	0	
3910 00 00	실리콘(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6.5	0	
3911	석유수지 · 쿠마론-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 폴리술폰파이드 · 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석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911 10 00	- 석유수지, 쿠마론, 인덴수지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6.5	0	
3911 90	- 기타			
	-- 응축제 또는 재배치중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여부를 불문한다)			
3911 90 11	--- 폴리(옥시-1,4-페닐렌술폰-1,4-페닐렌옥시-1,4-페닐렌이소프로필렌-1,4-페닐렌)(이 류의 주 제6(b)호의 언급된 형상 중 하나인 것에 한한다)	3.5	0	
3911 90 13	--- 폴리(티오-1,4-페닐렌)	Free	0	
3911 90 19	--- 기타	6.5	0	
	-- 기타			
3911 90 91	--- 파라-크레솔 및 디비닐벤젠의 공중합체(N,N-디메틸아세타미드에서 용액 형상인 것으로 중합체 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3911 90 93	--- 비닐톨루엔과 알파-메틸스티렌의 수소첨가된 공중합체	Free	0	
3911 90 99	--- 기타	6.5	0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초산셀룰로오스			
3912 11 00	--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6.5	0	
3912 12 00	-- 가소화 한 것	6.5	0	
3912 20	-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3912 20 11	--- 콜로디온 및 셀로이딘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912 20 19	--- 기타	6	0	
3912 20 90	-- 가소화 한 것	6.5	0	
	-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 31 00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및 그 염	6.5	0	
3912 39	-- 기타			
3912 39 10	--- 에틸셀룰로스	6.5	0	
3912 39 20	---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Free	0	
3912 39 80	--- 기타	6.5	0	
3912 90	- 기타			
3912 90 10	--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6.4	0	
3912 90 90	-- 기타	6.5	0	
3913	천연중합체(예 :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913 10 00	-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5	0	
3913 90 00	- 기타	6.5	0	
3914 00 00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를 기재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6.5	0	
	제2절 웨이스트 · 페어링 · 스크랩과 반제품 및 완제품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 페어링과 스크랩			
3915 10 0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 20 00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 30 00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 9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첨가중합체의 것			
3915 90 11	---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 90 18	--- 기타	6.5	0	
3915 90 90	-- 기타	6.5	0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봉 · 스틱 및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3916 10 00	- 에틸렌중합체의 것	6.5	0	
3916 20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3916 20 10	-- 폴리"염화비닐"의 것	6.5	0	
3916 20 90	-- 기타	6.5	0	
3916 9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응축제 또는 재배치중합체의 것(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여부를 불문한다)			
3916 90 11	---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16 90 13	---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16 90 15	--- 에폭시수지의 것	6.5	0	
3916 90 19	--- 기타	6.5	0	
	-- 첨가중합체의 것			
3916 90 51	--- 프로필렌중합체의 것	6.5	0	
3916 90 59	--- 기타	6.5	0	
3916 90 90	-- 기타	6.5	0	
3917	플라스틱의 관 · 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 조인트 · 엘보 · 플랜지)			
3917 10	- 경화 단백질 또는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거트(소시지 케이싱)			
3917 10 10	-- 경화단백질의 것	5.3	0	
3917 10 90	-- 셀룰로스 재료의 것	6.5	0	
	- 경질의 관, 파이프 및 호스			
3917 21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3917 21 10	--- 시임리스 및 횡단면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6.5	0	
3917 21 90	--- 기타	6.5	0	
3917 22	--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3917 22 10	--- 시임리스 및 횡단면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6.5	0	
3917 22 90	--- 기타	6.5	0	
3917 23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3917 23 10	--- 시암리스 및 횡단면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6.5	0	
3917 23 90	--- 기타	6.5	0	
3917 29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시암리스 및 횡단면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			
3917 29 12	---- 응축제 또는 재배치중합제의 생산품(화학적으로 변성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	0	
3917 29 15	---- 첨가중합제의 생산품	6.5	0	
3917 29 19	---- 기타	6.5	0	
3917 29 90	--- 기타	6.5	0	
	- 기타의 관, 파이프 및 호스			
3917 31 00	-- 플라스틱의 연질의 관, 파이프 및 호스(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6.5	0	
3917 32	--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시암리스 및 횡단면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			
3917 32 10	---- 응축제 또는 재배치중합제의 생산품((화학적으로 변경 여부는 불문한다)	6.5	0	
	---- 첨가중합제의 것			
3917 32 31	----- 에틸렌중합체의 것	6.5	0	
3917 32 35	----- 염화비닐중합체의 것	6.5	0	
3917 32 39	----- 기타	6.5	0	
3917 32 51	---- 기타	6.5	0	
	--- 기타			
3917 32 91	---- 인조 소시지케이싱	6.5	0	
3917 32 99	---- 기타	6.5	0	
3917 33 00	-- 기타(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연결구류의 것)	6.5	0	
3917 39	-- 기타			
	--- 시암리스 및 횡단면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			
3917 39 12	---- 응축제 또는 재배치중합제의생산품(화학적으로 변경 여부를 불문한다)	6.5	0	
3917 39 15	---- 첨가중합제 생산품의 것	6.5	0	
3917 39 19	---- 기타	6.5	0	
3917 39 90	--- 기타	6.5	0	
3917 40 00	- 연결구류	6.5	0	
3918	플라스틱제의 바닥 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의 주석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3918 10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3918 10 10	-- 서포트가 주악 처리, 방수 가공 또는 폴리 "염화비닐"로 도포된 것	6.5	0	
3918 10 90	-- 기타	6.5	0	
3918 90 0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6.5	0	
3919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			
3919 10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스트립(가황하지 아니한 천연 또는 합성 고무로 피복된 것에 한한다)			
3919 10 11	--- 가소성 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 에틸렌의 것	6.3	0	
3919 10 13	--- 비가소성 폴리(염화비닐)의 것	6.3	0	
3919 10 15	--- 폴리프로필렌의 것	6.3	0	
3919 10 19	--- 기타	6.3	0	
	-- 기타			
	--- 응축제 또는 재배치중합제의생산품(화학적으로 변경 여부를 불문한다)			
3919 10 31	----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19 10 38	---- 기타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첨가중합제 생산품의 것			
3919 10 61	---- 가소성 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의 것	6.5	0	
3919 10 69	---- 기타	6.5	0	
3919 10 90	--- 기타	6.5	0	
3919 90	- 기타			
3919 90 10	-- 표면가공 외의 기타 가공을 한 것 또는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자르기만 한 것 이외의 것	6.5	0	
	-- 기타			
	--- 응축제 또는 재배치중합제의생산품(화학적으로 변경 여부를 불문한다)			
3919 90 31	----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 에스테르 또는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19 90 38	---- 기타	6.5	0	
	--- 첨가중합제 생산품의 것			
3919 90 61	---- 가소성 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의 것	6.5	0	
3919 90 69	---- 기타	6.5	0	
3919 90 90	--- 기타	6.5	0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 쉬트 · 필름 · 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 적층 ·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0 1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 두께가 0.125밀리미터이하인 것			
	--- 특정 비중을 가지는 폴리에틸렌의 것			
	---- 0.94미만인 것			
3920 10 23	----- 폴리에틸렌 필름(두께 20마이크로미터 이상 4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반도체 또는 인쇄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필름 생산용에 한한다)	Free	0	
	----- 기타			
	----- 인쇄를 제외한 것			
3920 10 24	----- 스트레치 필름	6.5	0	
3920 10 26	----- 기타	6.5	0	
3920 10 27	----- 인쇄된 것	6.5	0	
3920 10 28	---- 0.94이상인 것	6.5	0	
3920 10 40	--- 기타	6.5	0	
	-- 두께가 0.1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920 10 81	--- 합성제지용펄프(연결되지 않은 미세하게 분지된 셀룰라 이외의 폴리에틸렌 피브릴로 만든 습성시트형태인 것으로, 100분의 15 이하의 양으로 셀룰로스 섬유와의 혼합 여부를 불문하며, 모이스테닌으로 물에 용해된 폴리"비닐 알코올"을 함유하는 것	Free	0	
3920 10 89	--- 기타	6.5	0	
3920 20	-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 두께가 0.10밀리미터이하인 것			
3920 20 21	--- 2축성의 것	6.5	0	
3920 20 29	--- 기타	6.5	0	
	-- 두께가 0.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폭이 5밀리미터 초과 20밀리미터이하인 포장용 스트립			
3920 20 71	---- 장식용 스트립	6.5	0	
3920 20 79	---- 기타	6.5	0	
3920 20 90	--- 기타	6.5	0	
3920 30 00	- 스티렌중합체의 것	6.5	0	
	- 염화비닐중합체의 것			
3920 43	-- 가소제 중량의 100분의 6이상을 포함하는 것			
3920 43 10	--- 두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	6.5	0	
3920 43 90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5	0	
3920 49	-- 기타			
3920 49 10	--- 두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	6.5	0	
3920 49 90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5	0	
	- 아크릴 중합체의 것			
3920 51 00	--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것	6.5	0	
3920 59	-- 기타			
3920 59 10	--- 아크릴산 및 메타크릴릭에스테르의 공중합체(두께 1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필름 형태인 것에 한한다)	Free	0	
3920 59 90	--- 기타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수지, 폴리아릴 에스테르 또는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3920 61 00	--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20 62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 두께가 0.35밀리미터이하인 것			
3920 62 11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두께 72마이크로미터이상 79마이크로미터이하이며, 연질자기디스크 제조용에 한한다)	Free	0	
3920 62 13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두께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 1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감광성중합체 인쇄판 제조용에 한한다)	Free	0	
3920 62 19	---- 기타	6.5	0	
3920 62 90	--- 두께가 0.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5	0	
3920 63 00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0 69 00	--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 셀룰로오스 또는 그 화학적 유도체의 것			
3920 71	--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3920 71 10	---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코일여부를 불문하며 두께 0.75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5	0	
3920 71 90	--- 기타	6.5	0	
3920 73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3920 73 10	--- 롤 또는 스트립 필름(영화용 또는 사진용의 것)	6.3	0	
3920 73 50	---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코일여부를 불문하며 두께 0.75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5	0	
3920 73 90	--- 기타	6.5	0	
3920 79	-- 기타 셀룰로오스유도체의 것			
3920 79 10	--- 가황된 섬유의 것	5.7	0	
3920 79 90	--- 기타	6.5	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3920 91 00	-- 폴리(비닐부티랄)의 것	6.1	0	
3920 92 00	--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20 93 00	-- 아미노-수지의 것	6.5	0	
3920 94 00	-- 페놀수지의 것	6.5	0	
3920 99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응축제 또는 재배치중합체의 생산품(화학적으로 변성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920 99 21	---- 셀룰라 이외의 도포되지 않거나 플라스틱제로만 도포 또는 피복된 것	Free	0	
3920 99 28	---- 기타	6.5	0	
	--- 첨가중합체의 생산품			
3920 99 51	---- 폴리(비닐플루오리드)쉬트	Free	0	
3920 99 53	---- 플루오르화 셀룰라 이외의 플라스틱 재료의 이온교환막(클로르-알칼리 세포용에 한한다)	Free	0	
3920 99 55	---- 셀룰라 이외의 이축연신 폴리(비닐알코올)필름(폴리"비닐알코올" 중량의 100분의 97이상을 함유하고, 도포되지 않으며, 두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3920 99 59	---- 기타	6.5	0	
3920 99 90	--- 기타	6.5	0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 셀룰라의 것			
3921 11 00	-- 연질폴리우레탄의 것	6.5	0	
3921 12 00	-- 염화비닐중합체의 것	6.5	0	
3921 13	-- 폴리우레탄의 것			
3921 13 10	--- 연질의 것	6.5	0	
3921 13 90	--- 기타	6.5	0	
3921 14 00	--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 19 0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6.5	0	
3921 90	- 기타			
	-- 응축제 또는 재배치중합체의 생산품(화학적으로 변성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폴리에스테르의 것			
3921 90 11	---- 파형쉬트 및 판	6.5	0	
3921 90 19	---- 기타	6.5	0	
3921 90 30	--- 페놀수지의 것	6.5	0	
	--- 아미노수지의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적중한 것			
3921 90 41	----- 아미노수지의 고압판(장식용 단면 또는 양면을 가진 것)	6.5	0	
3921 90 43	----- 기타	6.5	0	
3921 90 49	---- 기타	6.5	0	
3921 90 55	--- 기타	6.5	0	
3921 90 60	-- 첨가중합체 생산품의 것	6.5	0	
3921 90 90	-- 기타	6.5	0	
3922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와 커버·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 10 00	- 목욕통, 샤워통, 설거지통, 세면기	6.5	0	
3922 20 00	- 변기용 시트 및 커버	6.5	0	
3922 90 00	- 기타	6.5	0	
3923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10 00	- 상자, 케이스,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			
3923 21 00	-- 에틸렌중합체의 것	6.5	0	
3923 29	-- 기타 플라스틱의 것			
3923 29 10	--- 폴리(염화비닐)의 것	6.5	0	
3923 29 90	--- 기타	6.5	0	
3923 3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30 10	-- 용량이 2리터이하인 것	6.5	0	
3923 30 90	--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는 것	6.5	0	
3923 40	- 스포·컵·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40 10	-- 스포, 릴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진용 및 영화용 필름의 것 또는 테이프, 필름과 제8523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것)	5.3	0	
3923 40 90	-- 기타	6.5	0	
3923 50	-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50 10	-- 병용 캡 및 캡슐	6.5	0	
3923 50 90	-- 기타	6.5	0	
3923 90	- 기타			
3923 90 10	-- 관상으로 돌출된 망	6.5	0	
3923 90 90	-- 기타	6.5	0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3924 10 00	-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6.5	0	
3924 90	- 기타			
	-- 재생셀룰로스의 것			
3924 90 11	--- 해면	6.5	0	
3924 90 19	--- 기타	6.5	0	
3924 90 90	-- 기타	6.5	0	
3925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925 10 00	- 저장기, 탱크,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5	0	
3925 20 00	- 문·창문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6.5	0	
3925 30 00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5	0	
3925 90	- 기타			
3925 90 10	-- 문·창문·계단·벽 또는 건물의 기타 부분의 영구설치용 부착구 및 장착구	6.5	0	
3925 90 20	-- 전기회로용 트렁킹·덕팅 및 케이블 트레이	6.5	0	
3925 90 80	-- 기타	6.5	0	
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10 00	-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6.5	0	
3926 20 00	-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6.5	0	
3926 30 00	- 가구용 부착구, 코우치 워크 및 이와 유사한 것	6.5	0	
3926 40 00	-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6.5	0	
3926 90	- 기타			
3926 90 50	-- 천공버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배구수에서 물을 여과하는 데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3926 90 92	--- 쉬트로 된 것	6.5	0	
3926 90 97	--- 기타	6.5	0	
40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울·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경(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1 10 0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벨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형상의 천연고무			
4001 21 00	-- 스모크드 쉬트	Free	0	
4001 22 00	-- 공업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Free	0	
4001 29 00	-- 기타	Free	0	
4001 30 00	-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울, 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경	Free	0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 11 00	-- 라텍스	Free	0	
4002 19	- 기타			
4002 19 10	--- 스티렌-부타디엔고무(베일상의 에멀전 중합으로 생산된 [E-SBR]에 한한다)	Free	0	
4002 19 20	---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임자, 조각, 분말상의 용액 중합으로 생산된 "SBS, 열가소성 탄성사"에 한한다)	Free	0	
4002 19 30	--- 스티렌-부타디엔고무(베일상의 용액 중합으로 생산된 [S-SBR]에 한한다)	Free	0	
4002 19 90	--- 기타	Free	0	
4002 20 00	- 부타디엔 고무(BR)	Free	0	
	-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 또는 BIIR)			
4002 31 00	--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Free	0	
4002 39 00	-- 기타	Free	0	
	-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 41 00	-- 라텍스	Free	0	
4002 49 00	-- 기타	Free	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 51 00	-- 라텍스	Free	0	
4002 59 00	-- 기타	Free	0	
4002 60 00	- 이소프렌 고무(IR)	Free	0	
4002 70 0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Free	0	
4002 80 00	-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Free	0	
	- 기타			
4002 91 00	-- 라텍스	Free	0	
4002 99	- 기타			
4002 99 10	--- 플라스틱제의 결합으로 변성된 천연고무제품	2.9	0	
4002 99 90	--- 기타	Free	0	
4003 00 00	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Free	0	
4004 00 00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Free	0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5 10 00	-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것	Free	0	
4005 20 00	-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Free	0	
	- 기타			
4005 91 00	-- 판·쉬트 및 스트립	Free	0	
4005 99 00	-- 기타	Free	0	
4006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 봉·관 및 형재) 및 제품(예 : 디스크 및 링)			
4006 10 00	-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 스트립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006 90 00	- 기타	Free	0	
4007 00 00	가황한 고무사와 고무끈	3	0	
4008	고무제의 판·шит·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셀룰라 고무의 것			
4008 11 00	-- 판·шит 및 스트립	3	0	
4008 19 00	-- 기타	2.9	0	
	- 셀룰라 고무 외의 것			
4008 21	-- 판·шит 및 스트립			
4008 21 10	---바닥 깔개 및 매트	3	0	
4008 21 90	--- 기타	3	0	
4008 29 00	-- 기타	2.9	0	
4009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 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			
4009 11 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3	0	
4009 1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3	0	
	- 금속으로만 보강 또는 결합된 것			
4009 21 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3	0	
4009 2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3	0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 또는 결합된 것			
4009 31 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3	0	
4009 3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3	0	
	-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된 것			
4009 41 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3	0	
4009 4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3	0	
4010	고무제의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			
4010 11 00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6.5	0	
4010 12 00	--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된 것	6.5	0	
4010 19 00	-- 기타	6.5	0	
	- 전동용 벨트 또는 벨팅			
4010 31 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초과 180센티미터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6.5	0	
4010 32 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초과 180센티미터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6.5	0	
4010 33 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초과 240센티미터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6.5	0	
4010 34 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초과 240센티미터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6.5	0	
4010 35 00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초과 150센티미터이하인 것	6.5	0	
4010 36 00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초과 198센티미터이하인 것	6.5	0	
4010 39 00	-- 기타	6.5	0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4011 10 00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4.5	3	
4011 20	- 버스용 및 화물차용의 것			
4011 20 10	-- 하중지수 121이하인 것	4.5	3	
4011 20 90	-- 하중지수 121를 초과하는 것	4.5	3	
4011 30 00	- 항공기용의 것	4.5	0	
4011 40	- 모터사이클용의 것			
4011 40 20	-- 림의 지름이 33센티미터이하인 것	4.5	3	
4011 40 80	-- 기타	4.5	3	
4011 50 00	- 자전거용의 것	4	3	
	- 기타("헤링본" 또는 이와 유사한 트레드가 있는 것에 한한다)			
4011 61 00	--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용의 것	4	3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011 62 00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용의 것(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3	
4011 63 00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용의 것(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3	
4011 69 00	-- 기타	4	3	
	- 기타			
4011 92 00	--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용의 것	4	3	
4011 93 00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용의 것(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3	
4011 94 00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용의 것(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3	
4011 99 00	-- 기타	4	3	
4012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중고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 플랩			
	재생타이어			
4012 11 00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4.5	3	
4012 12 00	--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4.5	3	
4012 13 00	-- 항공기용의 것	4.5	0	
4012 19 00	-- 기타	4.5	3	
4012 20 00	- 공기타이어(중고품에 한한다)	4.5	3	
4012 90	- 기타			
4012 90 20	-- 솔리드 또는 쿠션 타이어	2.5	3	
4012 90 30	-- 타이어트래드	2.5	0	
4012 90 90	-- 타이어플랩	4	0	
4013	고무제의 이너튜브			
4013 10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4013 10 10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4	3	
4013 10 90	--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4	3	
4013 20 00	- 자전거용의 것	4	0	
4013 90 00	- 기타	4	3	
4014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 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한다. 다만, 경질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014 10 00	- 콘돔	Free	0	
4014 90	- 기타			
4014 90 10	-- 젓꼭지, 유두보호기 및 이와 유사한 아기용품	Free	0	
4014 90 90	-- 기타	Free	0	
4015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방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용도를 불문한다)			
	- 장갑, 방어리장갑			
4015 11 00	-- 외과용의 것	2	0	
4015 19	- 기타			
4015 19 10	--- 가정용 장갑	2.7	0	
4015 19 90	--- 기타	2.7	0	
4015 90 00	- 기타	5	0	
4016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4016 10 00	- 셀룰라 고무의 것	3.5	0	
	- 기타			
4016 91 00	-- 바닥 깔개와 매트	2.5	0	
4016 92 00	-- 지우개	2.5	0	
4016 93 00	-- 가스켓·워셔 및 기타 실	2.5	0	
4016 94 00	--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	0	
4016 95 00	-- 기타 팽창성제품	2.5	0	
4016 99	- 기타			
4016 99 20	---- 익스팬더 슬리이브	2.5	0	
	---- 기타			
	-----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모터차량용			
4016 99 52	----- 고무제의 고무-금속 결합부	2.5	0	
4016 99 58	----- 기타	2.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4016 99 91	----- 고무제의 고무-금속 결합부	2.5	0	
4016 99 99	----- 기타	2.5	0	
4017 00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4017 00 10	-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Free	0	
4017 00 90	- 경질고무의 제품	Free	0	
41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 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101 20	-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 · 습식염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4101 20 10	-- 생것	Free	0	
4101 20 30	-- 습식염장	Free	0	
4101 20 50	-- 건조 및 건식염장	Free	0	
4101 20 90	-- 기타	Free	0	
4101 50	-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101 50 10	-- 생것	Free	0	
4101 50 30	-- 습식염장	Free	0	
4101 50 50	-- 건조 및 건식염장	Free	0	
4101 50 90	-- 기타	Free	0	
4101 90 00	- 기타(버트, 밴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Free	0	
4102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석 제1(c)호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102 10	- 탈모하지 아니한 것			
4102 10 10	-- 어린양의 것	Free	0	
4102 10 90	-- 기타	Free	0	
	- 탈모한 것			
4102 21 00	-- 산처리한 것	Free	0	
4102 29 00	-- 기타	Free	0	
4103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석 제1(b)호 또는 제1(c)호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103 20 00	- 파충류의 것	Free	0	
4103 30 00	- 돼지의 것	Free	0	
4103 90	- 기타			
4103 90 10	-- 산양의 것	Free	0	
4103 90 90	-- 기타	Free	0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104 11	-- 폴 그레이인, 언스프릿 및 그레이인 스프릿			
4104 11 10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의 통가죽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제곱피트(2.6제곱미터) 이하인 것	Free	0	
	---- 기타			
	----- 소의 것(버팔로를 포함한다)			
4104 11 51	----- 통가죽의 것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제곱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4104 11 59	----- 기타	Free	0	
4104 11 90	---- 기타	5.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104 19	- 기타			
4104 19 10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의 통가족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제곱피트(2.6제곱미터)이하인 것	Free	0	
	---- 기타			
	---- 소의 것(버팔로를 포함한다)			
4104 19 51	----- 통가족의 것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 제곱피트(2.6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4104 19 59	----- 기타	Free	0	
4104 19 90	---- 기타	5.5	0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 41	-- 폴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의 통가족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 제곱피트(2.6 제곱미터)이하인 것			
4104 41 11	---- 동인도의 킵가족, 통가족, 머리와 다리의 제거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의 중량이 4.5킬로그램이하이고 식물성 유연처리 이상 가공하지 않았으며 특별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가족 제품 제조에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것	Free	0	
4104 41 19	---- 기타	6.5	0	
	---- 기타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의 것			
4104 41 51	----- 통가족의 것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제곱피트(2.6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5	0	
4104 41 59	----- 기타	6.5	0	
4104 41 90	---- 기타	5.5	0	
4104 49	- 기타			
	---- 통가족의 것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 제곱피트(2.6 제곱미터)이하인 것			
4104 49 11	---- 동인도의 킵가족, 통가족, 머리와 다리의 제거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의 중량이 4.5킬로그램 이하이고 식물성 유연처리 이상 가공하지 않았으며 특별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가족 제품 제조에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것	Free	0	
4104 49 19	---- 기타	6.5	0	
	---- 기타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의 것			
4104 49 51	----- 통가족의 것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제곱피트(2.6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5	0	
4104 49 59	----- 기타	6.5	0	
4104 49 90	---- 기타	5.5	0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5 10	-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105 10 10	-- 스프릿하지 않은 것	2	0	
4105 10 90	-- 스프릿한 것	2	0	
4105 30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4105 30 10	-- 식물성 유연처리가 된 인도 해어 면양(특정 처리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지만, 그 상태로는 가족 제품 가공에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것)	Free	0	
	-- 기타			
4105 30 91	---- 스프릿하지 않은 것	2	0	
4105 30 99	---- 스프릿한 것	2	0	
4106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산양의 것			
4106 21	--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106 21 10	---- 스프릿하지 않은 것	2	0	
4106 21 90	---- 스프릿한 것	2	0	
4106 22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4106 22 10	---- 식물성 유연처리가 된 인도 산양(특정 처리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지만, 그 상태로는 가족 제품 가공에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것)	Free	0	
4106 22 90	---- 기타	2	0	
	- 돼지의 것			
4106 31	--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106 31 10	--- 스프릿하지 않은 것	2	0	
4106 31 90	--- 스프릿한 것	2	0	
4106 32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4106 32 10	--- 스프릿하지 않은 것	2	0	
4106 32 90	--- 스프릿한 것	2	0	
4106 40	- 파충류의 것			
4106 40 10	-- 식물성 유연처리한 것	Free	0	
4106 40 90	-- 기타	2	0	
	- 기타			
4106 91 00	-- 습윤상태의 것(웨트-볼루를 포함한다)	2	0	
4106 92 00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2	0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전신가죽			
4107 11	-- 폴그레인, 언스프릿			
	--- 통가죽의 것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 제곱피트(2.6 제곱미터)이하인 것			
4107 11 11	---- 박스 카프	6.5	0	
4107 11 19	---- 기타	6.5	0	
4107 11 90	--- 기타	6.5	0	
4107 12	-- 그레인 스프릿			
	--- 통가죽의 것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 제곱피트(2.6 제곱미터)이하인 것			
4107 12 11	---- 박스 카프	6.5	0	
4107 12 19	---- 기타	6.5	0	
	--- 기타			
4107 12 91	--- 소의 가죽(버팔로를 포함한다)	5.5	0	
4107 12 99	--- 마속동물의 가죽	6.5	0	
4107 19	- 기타			
4107 19 10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의 가죽으로 단위 표면 면적이 28제곱피트(2.6제곱미터)이하인 것	6.5	0	
4107 19 90	--- 기타	6.5	0	
	- 기타(반신의 것을 포함한다)			
4107 91	-- 폴그레인, 언스프릿			
4107 91 10	--- 구두창용 가죽	6.5	0	
4107 91 90	--- 기타	6.5	0	
4107 92	-- 그레인 스프릿			
4107 92 10	--- 소의 가죽(버팔로를 포함한다)	5.5	0	
4107 92 90	--- 마속동물의 가죽	6.5	0	
4107 99	- 기타			
4107 99 10	--- 소의 가죽(버팔로를 포함한다)	6.5	0	
4107 99 90	--- 마속동물의 가죽	6.5	0	
4112 00 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3.5	0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기타 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4113 10 00	- 산양의 것	3.5	0	
4113 20 00	- 돼지의 것	2	0	
4113 30 00	- 파충류의 것	2	0	
4113 90 00	- 기타	2	0	
4114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패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 및 메탈라이즈드 레더			
4114 10	-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4114 10 10	-- 면양 또는 어린면양의 것	2.5	0	
4114 10 90	-- 기타 동물의 것	2.5	0	
4114 20 00	- 패이턴트 가죽,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2.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115	컴퍼지션 리더(가죽 또는 가죽성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슈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리더의 패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가죽의 더스트와 분			
4115 10 00	- 컴퍼지션 리더(가죽 또는 가죽성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 슈트상 또는 스트립상인 것에 한한다)	2.5	0	
4115 20 00	- 가죽이나 컴퍼지션 리더의 패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가죽의 더스트와 분	Free	0	
42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201 00 00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건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2.7	0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리더·플라스틱의 슈트·방직용 섬유제·벨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또는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202 11	-- 외부표면이 가죽·컴퍼지션 리더 또는 페이턴트 리더제인 것			
4202 11 10	--- 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3	0	
4202 11 90	--- 기타	3	0	
4202 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플라스틱 슈트제의 형태의 것			
4202 12 11	--- 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9.7	3	
4202 12 19	---- 기타	9.7	3	
4202 12 50	--- 성형한 플라스틱 재료의 것	5.2	0	
	--- 기타 재료제의 것(벨커나이즈드 파이버 포함)			
4202 12 91	--- 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3.7	0	
4202 12 99	---- 기타	3.7	0	
4202 19	- 기타			
4202 19 10	--- 알루미늄의 것	5.7	0	
4202 19 90	--- 기타 재료의 것	3.7	0	
	- 핸드백(벨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 21 00	-- 외부 표면이 가죽, 컴퍼지션 리더 또는 페이턴트 리더제의 것	3	3	
4202 22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202 22 10	--- 플라스틱 슈트제의 것	9.7	3	
4202 22 90	---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3.7	0	
4202 29 00	-- 기타	3.7	0	
	-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			
4202 31 00	-- 외부 표면이 가죽, 컴퍼지션 리더 또는 페이턴트 리더제의 것	3	0	
4202 32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4202 32 10	--- 플라스틱 슈트제의 것	9.7	3	
4202 32 90	---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3.7	0	
4202 39 00	-- 기타	3.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4202 91	-- 외부표면이 가죽 · 콤팩트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 재인 것			
4202 91 10	--- 여행가방·화장갑·배낭·운동용구백	3	0	
4202 91 80	--- 기타	3	0	
4202 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 플라스틱 슈트제의 것			
4202 92 11	--- 여행가방·화장갑·배낭·운동용구백	9.7	3	
4202 92 15	---- 악기케이스	6.7	0	
4202 92 19	---- 기타	9.7	3	
	---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202 92 91	--- 여행가방·화장갑·배낭·운동용구백	2.7	0	
4202 92 98	---- 기타	2.7	0	
4202 99 00	-- 기타	3.7	0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팩트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4203 10 00	- 의류	4	0	
	- 장갑류			
4203 21 00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9	3	
4203 29	- 기타			
4203 29 10	--- 모든 무역용 보호용	9	3	
	--- 기타			
4203 29 91	---- 남성 및 남자어린이용	7	0	
4203 29 99	---- 기타	7	0	
4203 30 00	- 벨트 및 띠	5	0	
4203 40 00	- 기타 의류부속품	5	0	
4205 00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팩트션 레더제품			
	-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4205 00 11	--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또는 벨팅	2	0	
4205 00 19	-- 기타	3	0	
4205 00 90	- 기타	2.5	0	
4206 00 00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방광 또는 건의 제품	1.7	0	
43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 · 꼬리부분 · 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 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4301 10 00	-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Free	0	
4301 30 0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Free	0	
4301 60 00	-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Free	0	
4301 80	-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301 80 30	-- 마멋의 것	Free	0	
4301 80 50	-- 야생 고양이과의 것	Free	0	
4301 80 70	-- 기타	Free	0	
4301 90 00	- 모피업용의 것(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및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	Free	0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302 11 00	-- 밍크의 것	Free	0	
4302 19	- 기타			
4302 19 10	--- 해리의 것	Free	0	
4302 19 20	--- 사향뒤쥐의 것	Free	0	
4302 19 30	--- 여우의 것	Free	0	
4302 19 35	--- 토끼의 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바다표범의 것			
4302 19 41	---- 하프바다표범의 화이트코트 새끼 또는 푸른등 두건바다표범 새끼의 것	2.2	0	
4302 19 49	---- 기타	2.2	0	
4302 19 50	--- 바다수달 또는 뉴트리아(코이푸)의 것	2.2	0	
4302 19 60	--- 마멋의 것	2.2	0	
4302 19 70	--- 야생 고양이과의 것	2.2	0	
	--- 양 또는 어린 양의 것			
4302 19 75	---- 아스트라칸, 카라쿨, 페르시아, 브로드테일, 인도, 중국, 몽고 또는 티베트의 것	Free	0	
4302 19 80	---- 기타	2.2	0	
4302 19 95	--- 기타	2.2	0	
4302 20 00	- 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 및 기타 부위의 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Free	0	
4302 30	-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4302 30 10	-- 드롭 모피	2.7	0	
	-- 기타			
4302 30 21	--- 밍크의 것	2.2	0	
4302 30 25	--- 토끼의 것	2.2	0	
4302 30 31	--- 아스트라칸, 카라쿨, 페르시아, 브로드테일, 인도, 중국, 몽고 또는 티베트의 것	2.2	0	
4302 30 41	--- 마멋의 것	2.2	0	
4302 30 45	--- 여우의 것	2.2	0	
	--- 바다표범의 것			
4302 30 51	---- 하프바다표범의 화이트코트 새끼 또는 푸른등 두건바다표범 새끼의 것	2.2	0	
4302 30 55	---- 기타	2.2	0	
4302 30 61	--- 바다수달 또는 뉴트리아(코이푸)의 것	2.2	0	
4302 30 71	--- 야생 고양이과의 것	2.2	0	
4302 30 95	--- 기타	2.2	0	
4303	모피의류 ·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4303 10	-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303 10 10	-- 하프바다표범의 화이트코트 새끼 또는 푸른등 두건바다표범 새끼의 것	3.7	0	
4303 10 90	-- 기타	3.7	0	
4303 90 00	- 기타	3.7	0	
4304 00 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3.2	0	
44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01	떨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 · 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 · 브리케트 ·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1 10 00	- 떨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Free	0	
	-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4401 21 00	-- 침엽수류	Free	0	
4401 22 00	-- 활엽수류	Free	0	
4401 30	-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 · 브리케트 ·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1 30 10	-- 톱밥	Free	0	
4401 30 90	-- 기타	Free	0	
4402	목탄(셀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2 10 00	- 대나무제의 것	Free	0	
4402 90 00	- 기타	Free	0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3 10 00	- 페인트, 착색, 방부처리 또는 기타 보존처리 된 것	Free	0	
4403 20	-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 독일 가문비나무 또는 실버 전나무(에이비즈 알바)			
4403 20 11	--- 제재용재	Free	0	
4403 20 19	--- 기타	Free	0	
	-- 소나무류의 소스나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403 20 31	--- 제재용재	Free	0	
4403 20 39	--- 기타	Free	0	
	-- 기타			
4403 20 91	--- 제재용재	Free	0	
4403 20 99	--- 기타	Free	0	
	- 기타(이 류의 소호 주석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에 한한다)			
4403 41 00	--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Free	0	
4403 49	- 기타			
4403 49 10	--- 아까쥬다푸리케·이로코 및 사뵈리	Free	0	
4403 49 20	--- 오크메	Free	0	
4403 49 40	--- 시뵈	Free	0	
4403 49 95	--- 기타	Free	0	
	- 기타			
4403 91	--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403 91 10	--- 제재용재	Free	0	
4403 91 90	--- 기타	Free	0	
4403 92	--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4403 92 10	--- 제재용재	Free	0	
4403 92 90	--- 기타	Free	0	
4403 99	- 기타			
4403 99 10	--- 포플러의 것	Free	0	
4403 99 30	--- 유칼립투스의 것	Free	0	
	--- 껍질의 것			
4403 99 51	---- 제재용재	Free	0	
4403 99 59	---- 기타	Free	0	
4403 99 95	---- 기타	Free	0	
4404	후프우드·쪼갠말뚝,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과 휜 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침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4404 10 00	- 침엽수류	Free	0	
4404 20 00	- 활엽수류	Free	0	
4405 00 00	목모와 목본	Free	0	
4406	궤도용 침목			
4406 10 00	- 주악처리하지 아니한 것	Free	0	
4406 90 00	- 기타	Free	0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7 10	- 침엽수류			
4407 10 15	-- 샌딩처리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 대패질한 것			
4407 10 31	---- 독일 가문비나무 또는 실버 전나무(에이비즈 알바)	Free	0	
4407 10 33	---- 소나무류의 소스나	Free	0	
4407 10 38	---- 기타	Free	0	
	--- 기타			
4407 10 91	---- 독일 가문비나무 또는 실버 전나무(에이비즈 알바)	Free	0	
4407 10 93	---- 소나무류의 소스나	Free	0	
4407 10 98	---- 기타	Free	0	
	- 기타(이 류의 소호 주석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에 한한다)			
4407 21	--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4407 21 10	--- 샌딩처리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	0	
	--- 기타			
4407 21 91	---- 대패질한 것	2	0	
4407 21 99	---- 기타	Free	0	
4407 22	-- 비롤라·임부아 및 발사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407 22 10	--- 샌딩처리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	0	
	--- 기타			
4407 22 91	---- 대패질한 것	2	0	
4407 22 99	---- 기타	Free	0	
4407 25	-- 다크레드메란티 ·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4407 25 10	---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	0	
	--- 기타			
4407 25 30	---- 대패질한 것	2	0	
4407 25 50	---- 샌딩처리한 것	2.5	0	
4407 25 90	---- 기타	Free	0	
4407 26	-- 화이트라왕 · 화이트메란티 · 화이트세라야 · 옐로메란티 및 아란			
4407 26 10	--- 엔드 조인트한 것(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	0	
	--- 기타			
4407 26 30	---- 대패질한 것	2	0	
4407 26 50	---- 샌딩처리한 것	2.5	0	
4407 26 90	---- 기타	Free	0	
4407 27	-- 사팔리			
4407 27 10	--- 샌딩처리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	0	
	--- 기타			
4407 27 91	---- 대패질한 것	2	0	
4407 27 99	---- 기타	Free	0	
4407 28	-- 이로코			
4407 28 10	--- 샌딩처리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	0	
	--- 기타			
4407 28 91	---- 대패질한 것	2	0	
4407 28 99	---- 기타	Free	0	
4407 29	- 기타			
4407 29 15	---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	0	
	--- 기타			
	---- 아까주다푸리케 · 아조베 · 디벤토우 · 이룸바 · 제루통 · 종콩 · 카폴 · 캄파스 · 케루잉 · 림바 · 마코레 · 만소니아 · 멜바우 · 오베체 · 오꾸메 · 파리산드레드레오 · 파리산드레드로세 · 라민 · 티크 및 티아마			
	----- 대패질한 것			
4407 29 20	----- 팔리산드레디리오·팔리산드레디파라·팔레산드레디로즈	2	0	
4407 29 25	----- 기타	2	0	
4407 29 45	----- 샌딩처리한 것	2.5	0	
	----- 기타			
4407 29 61	----- 아조베	Free	0	
4407 29 68	----- 기타	Free	0	
	---- 기타			
4407 29 83	----- 대패질한 것	2	0	
4407 29 85	----- 샌딩처리한 것	2.5	0	
4407 29 95	----- 기타	Free	0	
	- 기타			
4407 91	--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407 91 15	--- 샌딩처리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 대패질한 것			
4407 91 31	----- 조립하지 아니한 파아케트 또는 목재 블록 바닥재를 위한 블록, 스트립과 프리즈	Free	0	
4407 91 39	----- 기타	Free	0	
4407 91 90	---- 기타	Free	0	
4407 92 00	-- 너도밤나무류의 것	Free	0	
4407 93	--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407 93 10	--- 대패질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4407 93 91	---- 샌딩처리한 것	2.5	0	
4407 93 99	---- 기타	Free	0	
4407 94	--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4407 94 10	--- 대패질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4407 94 91	---- 샌딩처리한 것	2.5	0	
4407 94 99	---- 기타	Free	0	
4407 95	-- 몰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4407 95 10	--- 대패질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4407 95 91	---- 샌딩처리한 것	2.5	0	
4407 95 99	---- 기타	Free	0	
4407 99	- 기타			
4407 99 20	---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4407 99 25	---- 대패질한 것	Free	0	
4407 99 40	---- 샌딩처리한 것	2.5	0	
	--- 기타			
4407 99 91	----- 포플러의 것	Free	0	
4407 99 96	----- 열대 목재의 것	Free	0	
4407 99 98	----- 기타	Free	0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8 10	- 침엽수류			
4408 10 15	-- 대패질·샌딩 처리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3	0	
	-- 기타			
4408 10 91	--- 연필 가공을 위한 소형 보드	Free	0	
	--- 기타			
4408 10 93	---- 두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	4	0	
4408 10 99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0	
	- 기타(이 류의 소호 주석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에 한한다)			
4408 31	--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4408 31 11	---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4.9	0	
	--- 기타			
4408 31 21	---- 대패질한 것	4	0	
4408 31 25	---- 샌딩처리한 것	4.9	0	
4408 31 30	---- 기타	6	0	
4408 39	- 기타			
	--- 아까쥬다푸리케·림바·마호가니·오베체·오꾸메·파리산드레드파라·파리산드레드리오·파리산드레드로세·사펠리·시포·비롤라 및 화이트라왕			
4408 39 15	---- 샌딩 처리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4.9	0	
	---- 기타			
4408 39 21	----- 대패질한 것	4	0	
	----- 기타			
4408 39 31	----- 두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	6	0	
4408 39 35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	0	
	--- 기타			
4408 39 55	---- 대패질·샌딩 처리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3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4408 39 70	-----연필 가공을 위한 소형 보드	Free	0	
	---- 기타			
4408 39 85	----- 두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	4	0	
4408 39 95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0	
4408 90	- 기타			
4408 90 15	-- 대패질·샌딩 처리 및 엔드 조인트한 것, 대패질 및 샌딩 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3	0	
	-- 기타			
4408 90 35	---연필 가공을 위한 소형 보드	Free	0	
	--- 기타			
4408 90 85	---- 두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	4	0	
4408 90 95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0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불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9 10	- 침엽수류			
4409 10 11	-- 그림틀·사진틀·거울 및 유사품용 몰딩	Free	0	
4409 10 18	-- 기타	Free	0	
	- 활엽수류			
4409 21 00	-- 대나무제의 것	Free	0	
4409 29	- 기타			
4409 29 10	-- 그림틀·사진틀·거울 및 유사품용 몰딩	Free	0	
	--- 기타			
4409 29 91	----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	Free	0	
4409 29 99	---- 기타	Free	0	
4410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예 : 웨이퍼보드)(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목재의 것			
4410 11	-- 파티클보드			
4410 11 10	--- 샌딩 처리 이상 하지 아니한 것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	3	
4410 11 30	---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7	3	
4410 11 50	---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7	3	
4410 11 90	--- 기타	7	3	
4410 12	--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4410 12 10	--- 샌딩 처리 이상 하지 아니한 것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	3	
4410 12 90	--- 기타	7	3	
4410 19 00	-- 기타	7	3	
4410 90 00	- 기타	7	3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중밀도 섬유판(MDF)			
4411 12	-- 두께가 5밀리미터이하인 것			
4411 12 10	--- 피복처리 또는 미기계처리	7	3	
4411 12 90	--- 기타	7	3	
4411 13	-- 두께가 5밀리미터초과 9밀리미터이하인 것			
4411 13 10	--- 피복처리 또는 미기계처리	7	3	
4411 13 90	--- 기타	7	3	
4411 14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411 14 10	--- 피복처리 또는 미기계처리	7	3	
4411 14 90	--- 기타	7	3	
	- 기타			
4411 92	-- 밀도가 0.8g/cm³을 초과하는 것			
4411 92 10	--- 피복처리 또는 미기계처리	7	3	
4411 92 90	--- 기타	7	3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411 93	-- 밀도가 0.5g/cm³초과 0.8g/cm³이하인 것			
4411 93 10	--- 피복처리 또는 미기계처리	7	3	
4411 93 90	--- 기타	7	3	
4411 94	-- 밀도가 0.5g/cm³이하인 것			
4411 94 10	--- 피복처리 또는 미기계처리	7	3	
4411 94 90	--- 기타	7	3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제품			
4412 10 00	- 대나무제의 것	10	3	
	- 기타 합판(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이하의 목재шит만으로 구성된 것에 한하며, 대나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4412 3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 주석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412 31 10	--- 아까쥬다푸리케·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마호가니(스위테니아 류)·오베체·오구메·리싼드레 데 파라·팔리싼드레 데 로세·시뵘·비롤라 및 화이트라왕	10	3	
4412 31 90	--- 기타	7	3	
4412 32 00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의 것	7	3	
4412 39 00	-- 기타	7	3	
	- 기타			
4412 94	-- 블록보드, 라민보드와 배튼보드			
4412 94 10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가 아닌 것	10	3	
4412 94 90	--- 기타	6	3	
4412 99	- 기타			
4412 99 30	--- 적어도 한 층이 파티클보드인 것	6	3	
4412 99 70	--- 기타	10	3	
4413 00 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Free	0	
4414 00	목재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4414 00 10	- 이 류의 추가 주석 제2호에 특정된 열대 목재의 것	2.5	0	
4414 00 90	- 기타 목재의 것	Free	0	
4415	목재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의 케이블드럼, 목재의 페렛·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목재의 페렛칼러			
4415 10	-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와 케이블드럼			
4415 10 10	-- 목재의 케이스, 상자, 틀, 드럼	4	0	
4415 10 90	-- 케이블 드럼	3	0	
4415 20	- 페렛, 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페렛칼러			
4415 20 20	-- 페렛과 페렛칼러	3	0	
4415 20 90	-- 기타	4	0	
4416 00 00	통·배럴·배트·텀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Free	0	
4417 00 00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부러쉬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재골	Free	0	
4418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셀룰라우드패널·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 10	- 창문과 창문틀			
4418 10 10	- 이 류의 추가 주석 제2호에 특정된 열대 목재의 것	3	0	
4418 10 50	-- 침엽수	3	0	
4418 10 90	-- 기타	3	0	
4418 20	- 문·문틀 및 문지방			
4418 20 10	- 이 류의 추가 주석 제2호에 특정된 열대 목재의 것	3	0	
4418 20 50	-- 침엽수	Free	0	
4418 20 80	-- 기타 목재의 것	Free	0	
4418 40 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섯터	Free	0	
4418 50 00	- 지붕이는 판자	Free	0	
4418 60 00	- 기둥 및 들보	Free	0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 71 00	-- 모자이크 마루용	3	0	
4418 72 00	-- 기타(다층의 것에 한한다)	Free	0	
4418 79 00	-- 기타	Free	0	
4418 90	- 기타			
4418 90 10	-- 글루 적층의 것	Free	0	
4418 90 80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419 00	목재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4419 00 10	- 이 류의 추가 주석 제2호에 특정된 열대 목재의 것	Free	0	
4419 00 90	- 기타 목재의 것	Free	0	
4420	기목세공과 상감세공한 목재,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 목재의 카스켓과 케이스, 목재의 조상과 기타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의 가구			
4420 10	- 목재의 조상 및 기타의 장식품			
4420 10 11	- 이 류의 추가 주석 제2호에 특정된 열대 목재의 것	3	0	
4420 10 19	-- 기타 목재의 것	Free	0	
4420 90	- 기타			
4420 90 10	-- 기목세공 및 상감세공한 목재	4	0	
	-- 기타			
4420 90 91	- 이 류의 추가 주석 제2호에 특정된 열대 목재의 것	3	0	
4420 90 99	--- 기타	Free	0	
4421	기타 목제품			
4421 10 00	- 옷걸이	Free	0	
4421 90	- 기타			
4421 90 91	-- 섬유판의 것	4	0	
4421 90 98	-- 기타	Free	0	
45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4501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코르크의 웨이스트 및 파쇄·입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4501 10 00	-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	Free	0	
4501 90 00	- 기타	Free	0	
4502 00 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각을 만든 것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과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브랭크를 포함한다]	Free	0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4503 10	- 마개			
4503 10 10	-- 원통형	4.7	0	
4503 10 90	-- 기타	4.7	0	
4503 90 00	- 기타	4.7	0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4504 10	- 블록·판·쉬트·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및 슬라이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 마개			
4504 10 11	--- 스파클링 와인용(응집코르크의 것으로 천연코르크의 디스크를 포함한다)	4.7	0	
4504 10 19	--- 기타	4.7	0	
	-- 기타			
4504 10 91	--- 결합체가 있는 것	4.7	0	
4504 10 99	--- 기타	4.7	0	
4504 90	- 기타			
4504 90 20	-- 마개	4.7	0	
4504 90 80	-- 기타	4.7	0	
46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601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매트류 및 발(식물성 재료의 것에 한한다)			
4601 21	-- 대나무제의 것			
4601 21 10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	3.7	0	
4601 21 90	--- 기타	2.2	0	
4601 22	-- 등나무제의 것			
4601 22 10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	3.7	0	
4601 22 90	--- 기타	2.2	0	
4601 29	- 기타			
4601 29 10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	3.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601 29 90	--- 기타	2.2	0	
	- 기타			
4601 92	-- 대나무제의 것			
4601 92 05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스트립으로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4601 92 10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	3.7	0	
4601 92 90	---- 기타	2.2	0	
4601 93	-- 등나무제의 것			
4601 93 05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스트립으로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4601 93 10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	3.7	0	
4601 93 90	---- 기타	2.2	0	
4601 94	-- 기타 식물성 재료의 것			
4601 94 05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스트립으로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4601 94 10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	3.7	0	
4601 94 90	---- 기타	2.2	0	
4601 99	- 기타			
4601 99 05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스트립으로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7	0	
	--- 기타			
4601 99 10	---- 조물재료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것	4.7	0	
4601 99 90	---- 기타	2.7	0	
4602	농세공품·지조세공물 및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과 수세미제품			
	- 식물성 재료의 것			
4602 11 00	-- 대나무제의 것	3.7	0	
4602 12 00	-- 등나무의 것	3.7	0	
4602 19	- 기타			
4602 19 10	--- 스트로의 보틀 엔빌로프	1.7	0	
	--- 기타			
4602 19 91	----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농세공품·지조세공물 및 기타의 제품과 수세미제품	3.7	0	
4602 19 99	---- 기타	3.7	0	
4602 90 00	- 기타	4.7	0	
47	제47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1 00	기계목재펠프			
4701 00 10	- 열기계목재펠프	Free	0	
4701 00 90	- 기타	Free	0	
4702 00 00	화학목재펠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Free	0	
4703	화학목재펠프(소다펠프 또는 황산펠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 표백하지 아니한 것			
4703 11 00	-- 침엽수	Free	0	
4703 19 00	-- 비침엽수	Free	0	
	-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4703 21 00	-- 침엽수	Free	0	
4703 29 00	-- 비침엽수	Free	0	
4704	화학목재펠프(아황산펠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 표백하지 아니한 것			
4704 11 00	-- 침엽수	Free	0	
4704 19 00	-- 비침엽수	Free	0	
	-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4704 21 00	-- 침엽수	Free	0	
4704 29 00	-- 비침엽수	Free	0	
4705 00 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펠프	Free	0	
4706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펠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 10 00	- 연린터펠프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706 20 00	-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펠프	Free	0	
4706 30 00	- 기타 대나무의 것	Free	0	
	- 기타			
4706 91 00	-- 기계펠프	Free	0	
4706 92 00	-- 화학펠프	Free	0	
4706 93 00	-- 반화학펠프	Free	0	
4707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7 10 00	-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Free	0	
4707 20 00	- 기타의 주로 표백화학펠프로 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제의(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Free	0	
4707 30	-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펠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4707 30 10	-- 오래된 미판매 신문과 잡지, 전화번호부, 소책자와 프린트된 광고선전물	Free	0	
4707 30 90	-- 기타	Free	0	
4707 90	-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707 90 10	-- 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것	Free	0	
4707 90 90	-- 분류한 것	Free	0	
48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1 00 00	신문용지(롤상 또는 스위트상의 것)	Free	0	
4802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 래픽용의 것에 한한다), 천공되지 아니한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 및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스위트상의 것에 한한다] 및 수제지와 판지			
4802 10 00	- 수제지 또는 판지	Free	0	
4802 20 00	- 사진감광성, 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 지와 판지	Free	0	
4802 40	- 벽지용의 원지			
4802 40 10	-- 기계공정에 의한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것	Free	0	
4802 40 90	-- 기타	Free	0	
	- 기타 지 및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적인 공정에 의한 것 또는 직물의 100분의 10이하를 차지하는 섬유를 함유하지 않는다)			
4802 54 00	-- 중량이 40g/m ² 미만인 것	Free	0	
4802 55	-- 롤상의 것으로서 40g/m ² 이상 150g/m ² 이하인 것			
4802 55 15	--- 중량이 40g/m ² 이상 60g/m ² 미만인 것	Free	0	
4802 55 25	--- 중량이 60g/m ² 이상 75g/m ² 미만인 것	Free	0	
4802 55 30	--- 중량이 75g/m ² 이상 80g/m ² 미만인 것	Free	0	
4802 55 90	--- 중량이 80g/m ² 이상인 것	Free	0	
4802 56	-- 스위트상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g/m ² 이상 150g/m ² 이하이고,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802 56 20	--- 한쪽면이 297밀리미터고 다른쪽 면이 210밀리미터(A4포맷)인 것	Free	0	
4802 56 80	--- 기타	Free	0	
4802 57 00	-- 기타의 것으로서 중량이 40g/m ² 이상 150g/m ² 이하인 것	Free	0	
4802 58	-- 150g/m ² 을 초과하는 것			
4802 58 10	--- 롤상의 것	Free	0	
4802 58 90	--- 기타	Free	0	
	- 기타의 지 및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량이 전섬유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4802 61	-- 롤상의 것			
4802 61 15	--- 중량이 72g/m ² 미만이고, 기계공정에 의한 직물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Free	0	
4802 61 80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802 62 00	-- 슈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Free	0	
4802 69 00	-- 기타	Free	0	
4803 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 · 타월 또는 냅킨스톡 ·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지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축유한 것 · 압형한 것 · 천공한 것 · 착색한 것 ·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 또는 슈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3 00 10	- 셀룰로오스워딩	Free	0	
	- 크레프 지 및 셀룰로스 섬유 웨브(티슈), 장 당			
4803 00 31	-- 25g/m ² 이하인 것	Free	0	
4803 00 39	-- 25g/m ² 을 초과하는 것	Free	0	
4803 00 90	- 기타	Free	0	
4804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슈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크라프트 라이너			
4804 1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4804 11 11	---- 중량이 150g/m ² 미만인 것	Free	0	
4804 11 15	---- 중량이 150g/m ² 이상 175g/m ² 미만인 것	Free	0	
4804 11 19	---- 중량이 175g/m ² 이상인 것	Free	0	
4804 11 90	--- 기타	Free	0	
4804 19	-- 기타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층이 표백되지 아니하고 바깥층이 표백된 것, 반표백 또는 색깔이 있는 것, 중량이 제곱미터당			
4804 19 11	----- 150그램미만인 것	Free	0	
4804 19 15	----- 150그램이상 175그램미만인 것	Free	0	
4804 19 19	----- 175그램이상인 것	Free	0	
	---- 기타, 중량이 제곱미터당			
4804 19 31	----- 150그램미만인 것	Free	0	
4804 19 38	----- 175그램이상인 것	Free	0	
4804 19 90	--- 기타	Free	0	
	- 지대용 크라프트지			
4804 2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4804 21 10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Free	0	
4804 21 90	--- 기타	Free	0	
4804 29	-- 기타			
4804 29 10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Free	0	
4804 29 90	--- 기타	Free	0	
	- 중량이 150g/m ² 이하인 기타 크라프트 지 또는 판지			
4804 3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4804 31 51	---- 크라프트 전기절연지	Free	0	
4804 31 58	---- 기타	Free	0	
4804 31 80	--- 기타	Free	0	
4804 39	-- 기타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4804 39 51	---- 균일하게 표백한 것	Free	0	
4804 39 58	---- 기타	Free	0	
4804 39 80	--- 기타	Free	0	
	- 중량이 150g/m ² 초과 225g/m ² 미만인 기타 크라프트 지 또는 판지			
4804 4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804 41 10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 기타	Free	0	
4804 41 91	---- 포화 크라프트	Free	0	
4804 41 99	---- 기타	Free	0	
4804 42	--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4804 42 10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Free	0	
4804 42 90	--- 기타	Free	0	
4804 49	-- 기타			
4804 49 10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Free	0	
4804 49 90	--- 기타	Free	0	
	- 중량이 225g/m ² 이상인 기타 크라프트 지 또는 판지			
4804 5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4804 51 10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Free	0	
4804 51 90	--- 기타	Free	0	
4804 52	--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4804 52 10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Free	0	
4804 52 90	--- 기타	Free	0	
4804 59	-- 기타			
4804 59 10	--- 황산 또는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섬유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Free	0	
4804 59 90	--- 기타	Free	0	
4805	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이 류의 주석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후로팅지			
4805 11 00	-- 반화학 후로팅지	Free	0	
4805 12 00	-- 스트로 후로팅지	Free	0	
4805 19	-- 기타			
4805 19 10	--- 웰른스토프	Free	0	
4805 19 90	--- 기타	Free	0	
	- 테스트라이너(재생라이너판)			
4805 24 00	-- 중량이 150g/m ² 이하인 것	Free	0	
4805 25 00	-- 중량이 150g/m ² 를 초과하는 것	Free	0	
4805 30	- 아황산포장지			
4805 30 10	-- 중량이 30g/m ² 미만인 것	Free	0	
4805 30 90	-- 중량이 30g/m ² 이상인 것	Free	0	
4805 40 00	- 여과지와 판지	Free	0	
4805 50 00	- 펄트지와 판지	Free	0	
	- 기타			
4805 91 00	-- 중량이 150g/m ² 이하인 것	Free	0	
4805 92 00	-- 중량이 150g/m ² 초과 225g/m ² 미만인 것	Free	0	
4805 93	-- 중량이 225g/m ² 이상인 것			
4805 93 20	--- 재활용지로 만들어진 것	Free	0	
4805 93 80	--- 기타	Free	0	
4806	황산지 · 내지지 · 트래싱지 ·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광택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6 10 00	- 황산지	Free	0	
4806 20 00	- 내지지	Free	0	
4806 30 00	- 트래싱지	Free	0	
4806 40	-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			
4806 40 10	-- 그라신지	Free	0	
4806 40 90	-- 기타	Free	0	
4807 0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807 00 30	- 재활용지로 만들어진 것(종이로 덮여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4807 00 80	- 기타	Free	0	
4808	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축유 · 압형 또는 천공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4808 10 00	-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의 여부와 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4808 20 00	- 지대용 크라프트지 (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4808 30 00	- 기타의 크라프트지 (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4808 90 00	- 기타	Free	0	
4809	카본지 · 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등사원지 또는 오프세트플레이트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9 20	- 셀프복사지			
4809 20 10	-- 롤상의 것	Free	0	
4809 20 90	-- 쉬트상의 것	Free	0	
4809 90	- 기타			
4809 90 10	-- 카본 및 이와 유사한 복사지	Free	0	
4809 90 90	-- 기타	Free	0	
4810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결합재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카오린(차이나 클레이)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기타 다른 물질로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 ·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필기용 · 인쇄용 또는 기타 그라프용의 지와 판지(기계 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의한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것에 한한다)			
4810 13	-- 롤상의 것			
4810 13 20	--- 열감응성 및 감광성 지와 판지에 사용하는 지와 판지 (중량이 15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Free	0	
4810 13 80	--- 기타	Free	0	
4810 14	-- 쉬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810 14 20	--- 열감응성 및 감광성 지와 판지에 사용하는 지와 판지 (중량이 15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Free	0	
4810 14 80	--- 기타	Free	0	
4810 19	- 기타			
4810 19 10	--- 열감응성 및 감광성 지와 판지에 사용하는 지와 판지 (중량이 15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Free	0	
4810 19 90	--- 기타	Free	0	
	- 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에 사용하는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의한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4810 22	--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4810 22 10	--- 롤상으로서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거나 쉬트로서 접하지 아니한 한쪽 면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쪽면이 15센티미터 초과하는 것	Free	0	
4810 22 90	--- 기타	Free	0	
4810 29	- 기타			
4810 29 30	--- 롤상의 것	Free	0	
4810 29 80	--- 기타	Free	0	
	- 크라프트 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제외한다)			
4810 31 00	--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의한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고 중량이 15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810 32	--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중량이 150g/m ²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810 32 10	--- 고령토로 코팅한 것	Free	0	
4810 32 90	--- 기타	Free	0	
4810 39 00	-- 기타	Free	0	
	- 기타의 지와 판지			
4810 92	-- 여러 겹의 것			
4810 92 10	--- 각층을 표백한 것	Free	0	
4810 92 30	--- 한쪽 외면만 표백한 것	Free	0	
4810 92 90	--- 기타	Free	0	
4810 99	- 기타			
4810 99 10	--- 표백한 지와 판지(고령토로 코팅한 것)	Free	0	
4810 99 30	--- 운모분으로 코팅한 것	Free	0	
4810 99 90	--- 기타	Free	0	
4811	지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 · 침투 · 피복 · 표면착색 ·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 · 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4811 10 00	- 타르·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한 지와 판지	Free	0	
	- 접착지와 판지			
4811 41	-- 셀프접착지			
4811 41 20	--- 가로 길이가 1센티미터 이하이고, 가황하지 아니한 것	Free	0	
4811 41 90	--- 기타	Free	0	
4811 49 00	-- 기타	Free	0	
	- 플라스틱으로 도포 · 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접착제를 제외한다)			
4811 51 00	-- 표백한 것(중량이 150g/m ²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4811 59 00	-- 기타	Free	0	
4811 60 00	-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글리세롤을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	Free	0	
4811 90 00	- 기타의 지와 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의 섬유의 웹	Free	0	
4812 00 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Free	0	
4813	꺾린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3 10 00	-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	Free	0	
4813 20 00	- 폭이 5센티미터이하인 롤상의 것	Free	0	
4813 90	- 기타			
4813 90 10	-- 폭이 5센티미터를 초과 15센티미터이하인 롤상의 것	Free	0	
4813 90 90	-- 기타	Free	0	
4814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문용 투명지			
4814 10 00	- '인그레인'지	Free	0	
4814 20 00	-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지로 된 것에 한한다)	Free	0	
4814 90	- 기타			
4814 90 10	--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으로 투명 보호플라스틱으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Free	0	
4814 90 80	-- 기타	Free	0	
4816	카본지 · 셀프복사지 ·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제48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셋플레이트(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6 20 00	- 셀프복사지	Free	0	
4816 90 00	- 기타	Free	0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 · 봉함엽서 · 우편엽서 · 통신용 카드와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 · 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817 10 00	- 봉투	Free	0	
4817 20 00	- 봉합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Free	0	
4817 30 00	-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Free	0	
4818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 손수건 · 크렌싱티슈 · 타올 · 책상보 · 서비에트 · 유아용 냅킨 · 탐폰 · 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 · 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 · 의류 및 의류부속품 (제지용 펄프 · 지제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4818 10	- 화장지			
4818 10 10	-- 종량이 25g/m ² 이하인 것	Free	0	
4818 10 90	-- 종량이 25g/m ² 를 초과하는 것	Free	0	
4818 20	- 지제의 손수건 · 크렌싱티슈 · 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4818 20 10	-- 손수건·크렌싱 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Free	0	
	-- 손수건			
4818 20 91	--- 롤상의 것	Free	0	
4818 20 99	--- 기타	Free	0	
4818 30 00	- 책상보 및 서비에트	Free	0	
4818 40	- 위생 타올과 탐폰 ·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위생타올·탐폰 및 이와 유사한 제품			
4818 40 11	--- 위생 타올	Free	0	
4818 40 13	--- 탐폰	Free	0	
4818 40 19	--- 기타	Free	0	
4818 40 90	-- 유아용냅킨과 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제품	Free	0	
4818 50 00	- 의류 및 의류부속품	Free	0	
4818 90	- 기타			
4818 90 10	-- 외과용, 내과용 또는 위생용 목적의 제품(도매용의 물품은 제외한다)	Free	0	
4818 90 90	-- 기타	Free	0	
4819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제의 상자 · 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지제의 서류상자 · 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4819 10 00	-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Free	0	
4819 20 00	-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을 제외)	Free	0	
4819 30 00	- 폭이 40센티미터이상인 포장대	Free	0	
4819 40 00	-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Free	0	
4819 50 00	- 기타 포장용기	Free	0	
4819 60 00	-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4820	지와 판지제의 장부 · 회계부 · 노트북 · 주문장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연습장 · 흡취지장 · 바인더(예 : 루우즈리이프 등) · 홀더 · 서철표지 · 각종 사무용 양식 · 삽입식 카본세트 및 기타 문구류와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책커버			
4820 10	- 장부 · 회계부 · 노트북 · 주문장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820 10 10	-- 지와 판지제의 장부·회계부·주문장·영수장	Free	0	
4820 10 30	-- 노트북·편지지철과 메모철	Free	0	
4820 10 50	-- 다이어리	Free	0	
4820 10 90	-- 기타	Free	0	
4820 20 00	- 연습장	Free	0	
4820 30 00	- 바인더(책표지를 제외)·홀더 및 서류철표지	Free	0	
4820 4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4820 40 10	-- 연속 용지 세트	Free	0	
4820 40 90	-- 기타	Free	0	
4820 50 00	- 지와 판지제의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Free	0	
4820 90 00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821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1 10	- 인쇄한 것			
4821 10 10	-- 셀프 접착의 것	Free	0	
4821 10 90	-- 기타	Free	0	
4821 90	- 기타			
4821 90 10	-- 셀프 접착의 것	Free	0	
4821 90 90	-- 기타	Free	0	
4822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스폴·컴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2 10 0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Free	0	
4822 90 00	- 기타	Free	0	
4823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			
4823 20 00	- 여과지와 판지	Free	0	
4823 40 0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 쉬트 및 다이알	Free	0	
	- 지 또는 판지제의 쟁반·접시·플레이트·컵 및 이와 유사한 것			
4823 61 00	-- 대나무제의 것	Free	0	
4823 69	-- 기타			
4823 69 10	--- 쟁반·접시 및 플레이트	Free	0	
4823 69 90	--- 기타	Free	0	
4823 70	-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4823 70 10	-- 제지용 펄프제의 모울드 또는 압형한 제품	Free	0	
4823 70 90	-- 기타	Free	0	
4823 90	- 기타			
4823 90 40	-- 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지와 판지	Free	0	
4823 90 85	-- 기타	Free	0	
49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1 10 00	- 단매의 것으로, 접어포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4901 91 00	-- 사전·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Free	0	
4901 99 00	-- 기타	Free	0	
490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2 10 00	-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Free	0	
4902 90	- 기타			
4902 90 10	-- 1주에 1회 간행되는 것	Free	0	
4902 90 30	-- 1달에 1회 간행되는 것	Free	0	
4902 90 90	-- 기타	Free	0	
4903 00 00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Free	0	
4904 00 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4905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5 10 00	- 지구의	Free	0	
	- 기타			
4905 91 00	-- 책자로 된 것	Free	0	
4905 99 00	-- 기타	Free	0	
4906 00 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Free	0	
4907 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4907 00 10	- 우표, 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Free	0	
4907 00 30	- 은행권	Free	0	
4907 00 90	- 기타	Free	0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4908 10 0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Free	0	
4908 90 00	- 기타	Free	0	
4909 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9 00 10	-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Free	0	
4909 00 90	- 기타	Free	0	
4910 00 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Free	0	
4911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 10	-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달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4911 10 10	-- 상업용 카달로그	Free	0	
4911 10 90	-- 기타	Free	0	
	- 기타			
4911 91 00	-- 서화·디자인 및 사진	Free	0	
4911 99 00	-- 기타	Free	0	
50	제50류 권			
5001 00 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것)	Free	0	
5002 00 00	생사(곤 것 제외)	Free	0	
5003 00 00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 사웨이스트 및 가야넷스톡을 포함)	Free	0	
5004 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004 00 10	- 미표백, 세척 또는 표백한 것	4	0	
5004 00 90	- 기타	4	0	
5005 00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005 00 10	- 미표백, 세척 또는 표백한 것	2.9	0	
5005 00 90	- 기타	2.9	0	
5006 00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및 누에의 거트			
5006 00 10	- 견사	5	0	
5006 00 90	- 견방주사 또는 기타 견방사 및 예의 거트	2.9	0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5007 10 00	- 노일직물	3	0	
5007 20	- 기타 직물(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의 것을 제외한다)			
	-- 크레페			
5007 20 11	--- 미표백, 세척 또는 표백한 것	6.9	0	
5007 20 19	--- 기타	6.9	0	
	-- 폰지, 하부타이, 호난, 산통, 코라, 그리고 이와 유사한 극동의 직물(순수 견, 평직물, 미표백 또는 세탁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노일 또는 기타 부장사 또는 기타 방직용 재료와 혼합된 것을 제외)			
5007 20 21	--- 평직물, 미표백 또는 세탁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5.3	0	
	--- 기타			
5007 20 31	---- 평직물	7.5	0	
5007 20 39	---- 기타	7.5	0	
	-- 기타			
5007 20 41	--- 다이아파노스 직물(오픈워브)	7.2	0	
	--- 기타			
5007 20 51	---- 미표백, 세척 또는 표백한 것	7.2	0	
5007 20 59	---- 염색한 것	7.2	0	
	---- 다양한 색상의 지사로 만들어진 것			
5007 20 61	----- 폭이 57센티미터초과 75센티미터이하인 것	7.2	0	
5007 20 69	----- 기타	7.2	0	
5007 20 71	---- 인쇄한 것	7.2	0	
5007 90	- 기타 직물			
5007 90 10	-- 미표백, 세척 또는 표백한 것	6.9	0	
5007 90 30	-- 염색한 것	6.9	0	
5007 90 50	-- 다양한 색의 사의 것	6.9	0	
5007 90 90	-- 인쇄한 것	6.9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1	제51류 양모 · 섬수모 또는 조수모 ·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그리지(폴리스와시한 양모를 포함한다)			
5101 11 00	-- 깎은 양모	Free	0	
5101 19 00	-- 기타	Free	0	
	-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5101 21 00	-- 깎은 양모	Free	0	
5101 29 00	-- 기타	Free	0	
5101 30 00	- 탄화 처리한 것	Free	0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섬수모			
5102 11 00	-- 캐시미어 산양의 것	Free	0	
5102 19	-- 기타			
5102 19 10	--- 앙고라 토끼의 것	Free	0	
5102 19 30	--- 알파카, 리마, 비쿠냐의 것	Free	0	
5102 19 40	--- 낙타(단봉낙타 포함), 야크, 앙고라, 티베트 산양 및 이와 유사한 염소의 것	Free	0	
5102 19 90	--- 토끼(앙고라 토끼 제외), 비버, 뉴트리아, 사향쥐의 것	Free	0	
5102 20 00	- 조수모	Free	0	
5103	양모 ·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5103 1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5103 10 10	-- 탄화처리하지 않은 것	Free	0	
5103 10 90	-- 탄화처리한 것	Free	0	
5103 2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5103 20 10	-- 사웨이스트	Free	0	
	-- 기타			
5103 20 91	--- 탄화처리하지 않은 것	Free	0	
5103 20 99	--- 탄화처리한 것	Free	0	
5103 30 00	- 조수모의 웨이스트	Free	0	
5104 00 00	양모의 가아넷스톡 또는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것	Free	0	
5105	양모 ·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5105 10 00	- 카드한 양모	2	0	
	- 울톱과 기타 코움한 양모			
5105 21 00	-- 코움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2	0	
5105 29 00	-- 기타	2	0	
	- 섬수모, 카드 또는 코움된 것			
5105 31 00	--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0	
5105 39	-- 기타			
5105 39 10	--- 카드한 것	2	0	
5105 39 90	--- 코움한 것	2	0	
5105 40 00	-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2	0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6 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106 10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3.8	0	
5106 10 90	-- 기타	3.8	0	
5106 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			
5106 20 10	-- 양모 및 섬수모의 중량이 100분의 85이상을 포함한 것	3.8	0	
	-- 기타			
5106 20 9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0	
5106 20 99	--- 기타	4	0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7 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107 10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3.8	5	
5107 10 90	-- 기타	3.8	5	
5107 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			
	-- 양모 및 섬수모의 중량이 100분의 85이상을 포함한 것			
5107 20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0	
5107 20 30	--- 기타	4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주로 합성스테이플성유로와 혼방한 것			
5107 20 5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0	
5107 20 59	---- 기타	4	0	
	--- 기타의 방법으로 혼방한 것			
5107 20 9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0	
5107 20 99	---- 기타	4	0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8 10	- 카드한 것			
5108 10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3.2	0	
5108 10 90	-- 기타	3.2	0	
5108 20	- 코옴한 것			
5108 20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3.2	0	
5108 20 90	-- 기타	3.2	0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109 1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109 10 10	-- 뭉치, 묶음 또는 타래, 중량이 125그램초과 500그램이하인 것	3.8	0	
5109 10 90	-- 기타	5	0	
5109 90	- 기타			
5109 90 10	-- 뭉치, 묶음 또는 타래, 중량이 125그램초과 500그램이하인 것	5	0	
5109 90 90	-- 기타	5	0	
5110 00 0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5	0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111 11 00	-- 중량이 300g/m ²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8	0	
5111 19	-- 기타			
5111 19 10	--- 중량이 300g/m ² 초과 450g/m ² 이하인 것	8	0	
5111 19 90	--- 중량이 450g/m ² 을 초과하는 것	8	0	
5111 20 00	- 기타(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8	0	
5111 30	- 기타(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성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5111 30 10	-- 중량이 300g/m ² 이하인 것	8	0	
5111 30 30	-- 중량이 300g/m ² 초과 450g/m ² 이하인 것	8	0	
5111 30 90	-- 중량이 450g/m ² 을 초과하는 것	8	0	
5111 90	- 기타			
5111 90 10	-- 제50류의 직물 재료의 총 중량이 100분의 10이상을 포함하는 것	7.2	0	
	-- 기타			
5111 90 91	--- 중량이 300g/m ² 이하인 것	8	0	
5111 90 93	--- 중량이 300g/m ² 초과 450g/m ² 이하인 것	8	0	
5111 90 99	--- 중량이 450g/m ² 을 초과하는 것	8	0	
5112	직물(코옴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112 11 00	-- 중량이 200g/m ² 이하인 것	8	5	
5112 19	-- 기타			
5112 19 10	--- 중량이 200g/m ² 초과 375g/m ² 이하인 것	8	5	
5112 19 90	--- 중량이 375g/m ² 을 초과하는 것	8	5	
5112 20 00	- 기타(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8	5	
5112 30	- 기타(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성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5112 30 10	-- 중량이 200g/m ² 이하인 것	8	0	
5112 30 30	-- 중량이 200g/m ² 초과 375g/m ² 이하인 것	8	0	
5112 30 90	-- 중량이 375g/m ² 을 초과하는 것	8	0	
5112 90	- 기타			
5112 90 10	-- 제50류의 직물 재료의 총 중량이 100분의 10이상을 포함하는 것	7.2	0	
	-- 기타			
5112 90 91	--- 중량이 200g/m ² 이하인 것	8	0	
5112 90 93	--- 중량이 200g/m ² 초과 375g/m ² 이하인 것	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112 90 99	--- 중량이 375g/m ² 을 초과하는 것	8	0	
5113 00 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5.3	0	
52	제52류 면			
5201 00	면(카드 또는 코옴한 것은 제외한다)			
5201 00 10	- 흡착처리한 것 또는 표백한 것	Free	0	
5201 00 90	- 기타	Free	0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202 10 00	- 사 웨이스트(실 웨이스트 포함)	Free	0	
	- 기타			
5202 91 00	-- 가아넷스톡	Free	0	
5202 99 00	-- 기타	Free	0	
5203 00 00	면(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Free	0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소매용이 아닌 것			
5204 11 00	-- 면의 중량이 100분의 85이상인 것	4	0	
5204 19 00	-- 기타	4	0	
5204 20 00	- 소매용	5	0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단사(코옴하지 아니한 섬유에 한한다)			
5205 11 00	-- 714.29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이하)	4	0	
5205 12 00	-- 714.29데시텍스미만 232.56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초과 43수이하)	4	0	
5205 13 00	-- 232.56데시텍스미만 192.31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수초과 52수이하)	4	0	
5205 14 00	-- 192.31데시텍스미만 125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수초과 80수이하)	4	0	
5205 15	-- 125데시텍스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수초과)			
5205 15 10	-- 83.33 데시텍스이상 125 데시텍스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수초과 120수이하)	4.4	0	
5205 15 90	-- 83.33 데시텍스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120수를 초과하는 것)	4	0	
	- 단사(코옴한 섬유에 한한다)			
5205 21 00	-- 714.29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이하)	4	0	
5205 22 00	-- 714.29데시텍스미만 232.56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초과 43수이하)	4	0	
5205 23 00	-- 232.56데시텍스미만 192.31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수초과 52수이하)	4	0	
5205 24 00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수초과 80수이하)	4	0	
5205 26 00	-- 125데시텍스미만 106.38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80수초과 94수이하)	4	0	
5205 27 00	-- 106.38데시텍스미만 83.33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94수초과 120수 이하)	4	0	
5205 28 00	-- 83.33 데시텍스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120수초과)	4	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옴하지 아니한 섬유에 한한다)			
5205 31 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이하)	4	0	
5205 32 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초과 43수이하)	4	0	
5205 33 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초과 52수이하)	4	0	
5205 34 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초과 80수이하)	4	0	
5205 35 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초과)	4	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옴한 섬유에 한한다)			
5205 41 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이하)	4	0	
5205 42 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초과 43수이하)	4	0	
5205 43 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초과 52수이하)	4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205 44 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초과 80수이하)	4	0	
5205 46 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초과 94수이하)	4	0	
5205 47 00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수초과 120수이하)	4	0	
5205 48 00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수초과)	4	0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 11 00	-- 714.29데시텍스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이하)	4	0	
5206 12 00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초과 43수이하)	4	0	
5206 13 00	-- 232.56데시텍스미만 192.31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수초과 52수이하)	4	0	
5206 14 00	-- 192.31데시텍스미만 125데시텍스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초과 80수이하)	4	0	
5206 15 00	-- 125데시텍스미만인 것(미터식번수 80수초과) - 단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4	0	
5206 21 00	-- 714.29데시텍스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이하)	4	0	
5206 22 00	-- 714.29데시텍스미만 232.56데시텍스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초과 43수이하)	4	0	
5206 23 00	-- 232.56데시텍스미만 192.31데시텍스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초과 52수이하)	4	0	
5206 24 00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초과 80수이하)	4	0	
5206 25 00	-- 125데시텍스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초과)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בל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4	0	
5206 31 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이하)	4	0	
5206 32 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초과 43수이하)	4	0	
5206 33 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초과 52수이하)	4	0	
5206 34 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초과 80수이하)	4	0	
5206 35 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초과)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בל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4	0	
5206 41 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이하)	4	0	
5206 42 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초과 43수이하)	4	0	
5206 43 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초과 52수이하)	4	0	
5206 44 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초과 80수이하)	4	0	
5206 45 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초과)	4	0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207 10 00	- 면을 중량이 100분의 85이상 포함한 것	5	0	
5207 90 00	- 기타	5	0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중량이 20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08 11	-- 평직물(중량이 10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08 11 10	---- 봉대, 드레싱 및 내과용 거즈 제조용 섬유	8	0	
5208 11 90	---- 기타	8	0	
5208 12	-- 평직물(중량이 100g/m ² 초과인 것에 한한다)			
	---- 평직 면직물, 중량이 100g/m ² 초과 130g/m ² 이하이고, 너비가			
5208 12 16	----- 165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208 12 19	---- 16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 평직 면직물, 중량이 130g/m ² 초과하고, 너비가			
5208 12 96	---- 165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5208 12 99	---- 16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5208 13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08 19 00	-- 기타 섬유	8	0	
	- 표백한 것			
5208 21	-- 평직물(중량이 10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08 21 10	--- 봉대, 드레싱 및 내과용 거즈 제조용 섬유	8	0	
5208 21 90	--- 기타	8	0	
5208 22	-- 평직물(중량이 100g/m ² 초과인 것에 한한다)			
	--- 평직 면직물, 중량이 100g/m ² 이상 130g/m ² 이하, 너비가			
	가			
5208 22 16	---- 165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5208 22 19	---- 16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 평직 면직물, 중량이 130g/m ² 이상, 너비가			
5208 22 96	---- 165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5208 22 99	---- 16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5208 23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08 29 00	-- 기타 섬유	8	0	
	- 염색한 것			
5208 31 00	-- 평직물(중량이 10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5208 32	-- 평직물(중량이 100g/m ² 초과인 것에 한한다)			
	--- 평직 면직물, 중량이 100g/m ² 초과 130g/m ² 이하, 너비가			
	가			
5208 32 16	---- 165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5208 32 19	---- 16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 평직 면직물, 중량이 130g/m ² 를 초과하고, 너비가			
5208 32 96	---- 165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5208 32 99	---- 16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5208 33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08 39 00	-- 기타 섬유	8	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08 41 00	-- 평직물(중량이 10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5208 42 00	-- 평직물(중량이 100g/m ² 초과인 것에 한한다)	8	0	
5208 43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08 49 00	-- 기타 섬유	8	0	
	- 날염한 것			
5208 51 00	-- 평직물(중량이 10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5208 52 00	-- 평직물(중량이 100g/m ² 초과인 것에 한한다)	8	0	
5208 59	-- 기타 직물			
5208 59 1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08 59 90	--- 기타	8	0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중량이 200g/m ²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09 11 00	-- 평직물	8	0	
5209 12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09 19 00	-- 기타 섬유	8	0	
	- 표백한 것			
5209 21 00	-- 평직물	8	0	
5209 22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09 29 00	-- 기타 섬유	8	0	
	- 염색한 것			
5209 31 00	-- 평직물	8	0	
5209 32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09 39 00	-- 기타 섬유	8	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09 41 00	-- 평직물	8	0	
5209 42 00	-- 데님	8	0	
5209 43 00	-- 기타의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다)			
5209 49 00	-- 기타 섬유	8	0	
	- 날염한 것			
5209 51 00	-- 평직물	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209 52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09 59 00	-- 기타 섬유	8	0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20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10 11 00	-- 평직물	8	0	
5210 19 00	-- 기타 직물	8	0	
	- 표백한 것			
5210 21 00	-- 평직물	8	0	
5210 29 00	-- 기타 직물	8	0	
	- 염색한 것			
5210 31 00	-- 평직물	8	0	
5210 32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10 39 00	-- 기타 직물	8	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10 41 00	-- 평직물	8	0	
5210 49 00	-- 기타 직물	8	0	
	- 날염한 것			
5210 51 00	-- 평직물	8	0	
5210 59 00	-- 기타 직물	8	0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200g/m ²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11 11 00	-- 평직물	8	0	
5211 12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11 19 00	-- 기타 직물	8	0	
5211 20 00	- 표백한 것	8	0	
	- 염색한 것			
5211 31 00	-- 평직물	8	0	
5211 32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11 39 00	-- 기타 직물	8	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11 41 00	-- 평직물	8	0	
5211 42 00	-- 데님	8	0	
5211 43 00	-- 기타의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11 49	-- 기타 직물			
5211 49 10	--- 자카드 섬유	8	0	
5211 49 90	--- 기타	8	0	
	- 날염한 것			
5211 51 00	-- 평직물	8	0	
5211 52 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5211 59 00	-- 기타 직물	8	0	
5212	기타 면직물			
	- 중량이 200g/m ² 이하인 것			
5212 1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12 11 10	--- 아마가 주로 혼합되거나 유일한 것	8	0	
5212 11 90	--- 기타 혼합된 것	8	0	
5212 12	-- 표백한 것			
5212 12 10	--- 아마가 주로 혼합되거나 유일한 것	8	0	
5212 12 90	--- 기타 혼합된 것	8	0	
5212 13	-- 염색한 것			
5212 13 10	--- 아마가 주로 혼합되거나 유일한 것	8	0	
5212 13 90	--- 기타 혼합된 것	8	0	
5212 14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12 14 10	--- 아마가 주로 혼합되거나 유일한 것	8	0	
5212 14 90	--- 기타 혼합된 것	8	0	
5212 15	-- 날염한 것			
5212 15 10	--- 아마가 주로 혼합되거나 유일한 것	8	0	
5212 15 90	--- 기타 혼합된 것	8	0	
	- 중량이 200g/m ² 를 초과하는 것			
5212 2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12 21 10	--- 아마가 주로 혼합되거나 유일한 것	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212 21 90	--- 기타 혼합된 것	8	0	
5212 22	-- 표백한 것			
5212 22 10	--- 아마가 주로 혼합되거나 유일한 것	8	0	
5212 22 90	--- 기타 혼합된 것	8	0	
5212 23	-- 염색한 것			
5212 23 10	--- 아마가 주로 혼합되거나 유일한 것	8	0	
5212 23 90	--- 기타 혼합된 것	8	0	
5212 24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12 24 10	--- 아마가 주로 혼합되거나 유일한 것	8	0	
5212 24 90	--- 기타 혼합된 것	8	0	
5212 25	-- 날염한 것			
5212 25 10	--- 아마가 주로 혼합되거나 유일한 것	8	0	
5212 25 90	--- 기타 혼합된 것	8	0	
53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1 10 00	--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Free	0	
	- 쇄경(碎莖)·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직한 것을 제외한다)			
5301 21 00	-- 쇄경 또는 타마한것	Free	0	
5301 29 00	-- 기타	Free	0	
5301 30	-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5301 30 10	-- 토우	Free	0	
5301 30 90	-- 아마의 웨이스트	Free	0	
5302	대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2 10 00	-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Free	0	
5302 90 00	- 기타	Free	0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 및 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3 10 00	-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에 한한다)	Free	0	
5303 90 00	- 기타	Free	0	
5305 00 00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생 것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Free	0	
5306	아마사			
5306 10	- 단사			
	-- 비소매용			
5306 10 10	--- 833.3데시텍스이상(미터식 변수 12수이하)인 것	4	0	
5306 10 30	--- 277.8데시텍스이상 833.3데시텍스미만(미터식 변수 12수초과 36이하)인 것	4	0	
5306 10 50	--- 277.8 데시텍스미만(미터식 변수 36수초과)인 것	3.8	0	
5306 10 90	-- 소매용	5	0	
5306 2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306 20 10	-- 비소매용	4	0	
5306 20 90	-- 소매용의 것	5	0	
5307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사			
5307 10	- 단사			
5307 10 10	-- 1,000 데시텍스이하(미터식 변수 10수이상인 것	Free	0	
5307 10 90	-- 1,000 데시텍스이상(미터식 변수 10수미만)인 것	Free	0	
5307 20 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Free	0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5308 10 00	- 코이어사	Free	0	
5308 20	- 대마사			
5308 20 10	-- 비소매용	3	0	
5308 20 90	-- 소매용	4.9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308 90	- 기타			
	-- 모직사			
5308 90 12	--- 277.8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36수이하)인 것	4	0	
5308 90 19	--- 277.8 데시텍스 미만(미터식 변수 36수초과)인 것	3.8	0	
5308 90 50	-- 지사	4	0	
5308 90 90	-- 기타	3.8	0	
5309	아마직물			
	-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309 1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309 11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8	0	
5309 11 90	--- 표백한 것	8	0	
5309 19 00	-- 기타	8	0	
	-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			
5309 2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309 21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8	0	
5309 21 90	--- 표백한 것	8	0	
5309 29 00	-- 기타	8	0	
5310	제5303호의 황마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5310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5310 10 10	-- 폭이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4	0	
5310 10 90	-- 폭이 1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0	
5310 90 00	- 기타	4	0	
5311 00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직물과 지사의 직물			
5311 00 10	- 라미의 것	8	0	
5311 00 90	- 기타	5.8	0	
54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401 10	- 합성필라멘트의 것			
	-- 비소매용			
	--- 코어사			
5401 10 12	---- 면섬유로 둘러싸인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4	0	
5401 10 14	---- 기타	4	0	
	--- 기타			
5401 10 16	---- 텍스처드 재봉사	4	0	
5401 10 18	---- 기타	4	0	
5401 10 90	-- 소매용	5	0	
5401 20	-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의 것			
5401 20 10	-- 비소매용	4	0	
5401 20 90	-- 소매용	5	0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5402 11 00	-- 아라미드의 것	4	0	
5402 19 00	-- 기타	4	0	
5402 20 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4	0	
	- 텍스처드사			
5402 31 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단사당 측정치가 50텍스이하의 것	4	0	
5402 32 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단사당 측정치가 50텍스이상인 것	4	0	
5402 33 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4	0	
5402 34 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4	0	
5402 39 00	-- 기타	4	0	
	- 기타의 사(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에 한한다)			
5402 44 00	-- 탄성사	4	0	
5402 45 00	-- 기타(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4	0	
5402 46 00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0	
5402 47 00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4	0	
5402 48 00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4	0	
5402 49 00	-- 기타	4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의 사(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402 51 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4	0	
5402 52 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4	0	
5402 59	-- 기타			
5402 59 10	--- 폴리프로필렌의 것	4	0	
5402 59 90	--- 기타	4	0	
	-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2 61 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4	0	
5402 62 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4	0	
5402 69	-- 기타			
5402 69 10	--- 폴리프로필렌의 것	4	0	
5402 69 90	--- 기타	4	0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 10 0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4	0	
	- 기타의 사(단사)			
5403 31 00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또는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의 것)	4	0	
5403 32 00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	4	0	
5403 33 0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4	0	
5403 39 00	-- 기타	4	0	
	-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3 41 00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4	0	
5403 42 0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4	0	
5403 49 00	-- 기타	4	0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모노필라멘트			
5404 11 00	-- 엘라스토머	4	0	
5404 12 00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4	0	
5404 19 00	-- 기타	4	0	
5404 90	- 기타			
	-- 폴리프로필렌의 것			
5404 90 11	---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포장용 스트립	4	0	
5404 90 19	--- 기타	4	0	
5404 90 90	-- 기타	4	0	
5405 00 00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3.8	0	
5406 00 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	0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 10 00	-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및 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의 직물	8	0	
5407 20	-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것(너비가)			
5407 20 11	--- 3미터미만인 것	8	0	
5407 20 19	--- 3미터이상인 것	8	0	
5407 20 90	-- 기타	8	0	
5407 30 00	-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8	0	
	- 기타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 4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 42 00	-- 염색한 것	8	0	
5407 43 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 44 00	-- 날염한 것	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 5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 52 00	-- 염색한 것	8	0	
5407 53 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 54 00	-- 날염한 것	8	0	
	- 기타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 61	--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407 61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 61 30	--- 염색한 것	8	0	
5407 61 5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 61 90	--- 날염한 것	8	0	
5407 69	-- 기타			
5407 69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 69 90	--- 기타	8	0	
	- 기타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 7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 72 00	-- 염색한 것	8	0	
5407 73 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 74 00	-- 날염한 것	8	0	
	- 기타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5407 8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 82 00	-- 염색한 것	8	0	
5407 83 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 84 00	-- 날염한 것	8	0	
	- 기타 직물			
5407 9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 92 00	-- 염색한 것	8	0	
5407 93 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 94 00	-- 날염한 것	8	0	
5408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 10 00	-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0	
	- 기타 직물(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 ·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8 2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8 22	-- 염색한 것			
5408 22 10	--- 폭이 135센티미터초과 155센티미터이하인 것, 평직물, 능직물, 교차된 능직물 또는 사탄직물	8	0	
5408 22 90	--- 기타	8	0	
5408 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408 23 10	--- 폭이 115센티미터초과 140센티미터미만 지카드 직물, 중량이 250g/m ² 을 초과하는 것	8	0	
5408 23 90	--- 기타	8	0	
5408 24 00	-- 날염한 것	8	0	
	- 기타 직물			
5408 31 00	-- 표백하지 아니하거나 표백한 것	8	0	
5408 32 00	-- 염색한 것	8	0	
5408 33 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8 34 00	-- 날염한 것	8	0	
55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두루			
5501 10 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4	0	
5501 20 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4	0	
5501 30 0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4	0	
5501 40 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4	0	
5501 90 00	- 기타	4	0	
5502 00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두루			
5502 00 10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4	0	
5502 00 40	- 초산의 것	4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502 00 80	- 기타	4	0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503 11 00	-- 아라미드의 것	4	0	
5503 19 00	-- 기타	4	0	
5503 20 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4	0	
5503 30 0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4	0	
5503 40 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4	0	
5503 90	- 기타			
5503 90 10	-- 클로로섬유	4	0	
5503 90 90	-- 기타	4	0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5504 10 00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4	0	
5504 90 00	- 기타	4	0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505 10	- 합성 섬유의 것			
5505 10 1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4	0	
5505 10 30	-- 폴리에스테르의 것	4	0	
5505 10 50	-- 아크릴 또는 모다아크릴	4	0	
5505 10 70	-- 폴리프로필렌의 것	4	0	
5505 10 90	-- 기타	4	0	
5505 20 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것	4	0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5506 10 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4	0	
5506 20 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4	0	
5506 30 0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4	0	
5506 90	- 기타			
5506 90 10	-- 클로로섬유	4	0	
5506 90 90	-- 기타	4	0	
5507 00 0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4	0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508 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5508 10 10	-- 비소매용	4	0	
5508 10 90	-- 소매용	5	0	
5508 20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5508 20 10	-- 비소매용	4	0	
5508 20 90	-- 소매용	5	0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509 11 00	-- 단사	4	0	
5509 12 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בל사	4	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509 21 00	-- 단사	4	0	
5509 22 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בל사	4	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509 31 00	-- 단사	4	0	
5509 32 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בל사	4	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509 41 00	-- 단사	4	0	
5509 42 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בל사	4	0	
	- 기타의 사(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5509 51 00	-- 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0	
5509 52 00	-- 주로 양모 또는 섬유모와 혼방한 것	4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509 53 00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0	
5509 59 00	-- 기타	4	0	
	- 기타의 사(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5509 61 00	--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0	
5509 62 00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0	
5509 69 00	-- 기타	4	0	
	- 기타의 사			
5509 91 00	--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0	
5509 92 00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0	
5509 99 00	-- 기타	4	0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510 11 00	-- 단사	4	0	
5510 12 00	-- 조합사	4	0	
5510 20 00	- 기타 사, 양모 또는 섬수모를 주로 혼합하거나 유일한 것	4	0	
5510 30 00	- 기타 사, 면을 주로 혼합하거나 유일한 것	4	0	
5510 90 00	- 기타 사	4	0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511 10 00	- 합성 짧은 섬유의 것, 그러한 섬유의 중량이 100분의 85 이상을 포함하는 것	5	0	
5511 20 00	- 합성 짧은 섬유의 것, 그러한 섬유의 중량이 100분의 85 미만을 포함하는 것	5	0	
5511 30 00	- 재생 또는 반합성 짧은 섬유의 것	5	0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한다)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512 11 00	-- 표백하지 아니하거나 표백한 것	8	0	
5512 19	-- 기타			
5512 19 10	--- 인쇄한 것	8	0	
5512 19 90	--- 기타	8	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512 21 00	-- 표백하지 아니하거나 표백한 것	8	0	
5512 29	-- 기타			
5512 29 10	--- 인쇄한 것	8	0	
5512 29 90	--- 기타	8	0	
	- 기타			
5512 91 00	-- 표백하지 아니하거나 표백한 것	8	0	
5512 99	-- 기타			
5512 99 10	--- 인쇄한 것	8	0	
5512 99 90	--- 기타	8	0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중량이 170g/m ² 이하인 것에 한한다)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513 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5513 11 20	--- 폭이 165센티미터이하인 것	8	0	
5513 11 90	--- 폭이 165센티미터이상인 것	8	0	
5513 12 00	-- 교차된 능직을 포함한 3 또는 4 번으로 짜여진 것,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의 것	8	0	
5513 13 0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의 기타 직물	8	0	
5513 19 00	-- 기타 직물	8	0	
	- 염색한 것			
5513 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5513 21 10	--- 폭이 135센티미터이하인 것	8	0	
5513 21 30	--- 폭이 135센티미터초과 165센티미터이하인 것	8	0	
5513 21 90	--- 폭이 16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5513 2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5513 23 1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513 23 90	--- 기타	8	0	
5513 29 00	-- 기타 직물	8	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513 31 0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평직물	8	0	
5513 39 00	-- 기타 직물	8	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평직물			
5513 41 0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평직물	8	0	
5513 49 00	-- 기타 직물	8	0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중량이 170g/m ²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514 11 0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평직물	8	0	
5514 12 00	-- 교차된 능직을 포함한 3 또는 4 번으로 짜여진 것,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8	0	
5514 19	-- 기타 직물			
5514 19 1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8	0	
5514 19 90	--- 기타	8	0	
	- 염색한 것			
5514 21 0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평직물	8	0	
5514 22 00	-- 교차된 능직을 포함한 3 또는 4 번으로 짜여진 것,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8	0	
5514 23 0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기타 직물	8	0	
5514 29 00	-- 기타 직물	8	0	
5514 3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514 30 1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평직물	8	0	
5514 30 30	-- 교차된 능직을 포함한 3 또는 4 번으로 짜여진 것,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8	0	
5514 30 5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기타 직물	8	0	
5514 30 90	-- 기타 직물	8	0	
	- 날염한 것			
5514 41 0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평직물	8	0	
5514 42 00	-- 교차된 능직을 포함한 3 또는 4 번으로 짜여진 것,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것	8	0	
5514 43 00	-- 폴리에스테르 짧은 섬유 의 기타 직물	8	0	
5514 49 00	-- 기타 직물	8	0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 11	-- 주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515 11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5 11 30	--- 인쇄한 것	8	0	
5515 11 90	--- 기타	8	0	
5515 12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515 12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5 12 30	--- 인쇄한 것	8	0	
5515 12 90	--- 기타	8	0	
5515 13	--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 주로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모직물의 것)			
5515 13 1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5 13 19	---- 기타	8	0	
	--- 주로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소모사의 것)			
5515 13 9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5 13 99	---- 기타	8	0	
5515 19	-- 기타			
5515 19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5 19 30	--- 인쇄한 것	8	0	
5515 19 90	--- 기타	8	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 21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515 21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5 21 30	--- 인쇄한 것	8	0	
5515 21 90	--- 기타	8	0	
5515 22	--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주로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모직물의 것)			
5515 22 1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5 22 19	---- 기타	8	0	
	--- 주로 코옴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소모사의 것)			
5515 22 9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5 22 99	---- 기타	8	0	
5515 29 00	-- 기타	8	0	
	- 기타 직물			
5515 91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515 91 1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5 91 30	--- 인색한 것	8	0	
5515 91 90	--- 기타	8	0	
5515 99	-- 기타			
5515 99 2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5 99 40	--- 인색한 것	8	0	
5515 99 80	--- 기타	8	0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5516 1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6 12 00	-- 염색한 것	8	0	
5516 13 00	-- 다양한 색의 사의 것	8	0	
5516 14 00	-- 인색한 것	8	0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			
5516 2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6 22 00	-- 염색한 것	8	0	
5516 23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516 23 10	--- 폭이 140센티미터이상의 자카드 직물(매트리스 티킹)	8	0	
5516 23 90	--- 기타	8	0	
5516 24 00	-- 인색한 것	8	0	
	-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			
5516 3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6 32 00	-- 염색한 것	8	0	
5516 33 00	-- 다양한 색의 사의 것	8	0	
5516 34 00	-- 인색한 것	8	0	
	-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			
5516 4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6 42 00	-- 염색한 것	8	0	
5516 43 00	-- 다양한 색의 사의 것	8	0	
5516 44 00	-- 인색한 것	8	0	
	- 기타			
5516 9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516 92 00	-- 염색한 것	8	0	
5516 93 00	-- 다양한 색의 사의 것	8	0	
5516 94 00	-- 인색한 것	8	0	
56	제56류 워딩 · 펠트 및 부직포 · 특수사 · 끈 · 코디지 ·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5601 10	- 워딩제의 워딩타올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5601 10 10	-- 인조 섬유의 것	5	0	
5601 10 90	-- 기타 방직물 재료의 것	3.8	0	
	- 워딩과 워딩의 기타 제품			
5601 21	-- 면제의 것			
5601 21 10	--- 흡수한 것	3.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601 21 90	--- 기타	3.8	0	
5601 22	-- 인조섬유제의 것			
5601 22 10	--- 지름이 8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롤	3.8	0	
	--- 기타			
5601 22 91	---- 합성 섬유제의 것	4	0	
5601 22 99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4	0	
5601 29 00	-- 기타	3.8	0	
5601 30 00	- 섬유의 플록, 더스트 및 말네프	3.2	0	
5602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602 10	- 니들룸펠트와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니들룸 펠트			
5602 10 11	---- 주트 또는 제 5303호의 다른 직물 인피 섬유의 것	6.7	0	
5602 10 19	---- 기타 방직물 재료의 것	6.7	0	
	---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5602 10 31	---- 양모 또는 섬유모의 것	6.7	0	
5602 10 35	---- 조수모의 것	6.7	0	
5602 10 39	---- 기타 방직물 재료의 것	6.7	0	
5602 10 90	--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6.7	0	
	- 기타의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602 21 00	-- 양모 또는 섬유모의 것	6.7	0	
5602 29 00	-- 조수모의 것	6.7	0	
5602 90 00	- 기타	6.7	0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 11	-- 총량이 25g/m ² 이하인 것			
5603 11 10	--- 도포 또는 피복한 것	4.3	0	
5603 11 90	--- 기타	4.3	0	
5603 12	-- 총량이 25g/m ² 초과 70g/m ² 이하인 것			
5603 12 10	--- 도포 또는 피복한 것	4.3	0	
5603 12 90	--- 기타	4.3	0	
5603 13	-- 총량이 70g/m ² 초과 150g/m ² 이하인 것			
5603 13 10	--- 도포 또는 피복한 것	4.3	0	
5603 13 90	--- 기타	4.3	0	
5603 14	-- 총량이 150g/m ² 를 초과하는 것			
5603 14 10	--- 도포 또는 피복한 것	4.3	0	
5603 14 90	--- 기타	4.3	0	
	- 기타			
5603 91	-- 총량이 25g/m ² 이하인 것			
5603 91 10	--- 도포 또는 피복한 것	4.3	0	
5603 91 90	--- 기타	4.3	0	
5603 92	-- 총량이 25g/m ² 초과 70g/m ² 이하인 것			
5603 92 10	--- 도포 또는 피복한 것	4.3	0	
5603 92 90	--- 기타	4.3	0	
5603 93	-- 총량이 70g/m ² 초과 150g/m ² 이하인 것			
5603 93 10	--- 도포 또는 피복한 것	4.3	0	
5603 93 90	--- 기타	4.3	0	
5603 94	-- 총량이 150g/m ² 를 초과하는 것			
5603 94 10	--- 도포 또는 피복한 것	4.3	0	
5603 94 90	--- 기타	4.3	0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한다)			
5604 10 00	- 고무사와 고무끈, 직물이 피복된 것	4	0	
5604 90	- 기타			
5604 90 10	-- 폴리에스테르의 강력사,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또는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침투 또는 도포한 것	4	0	
5604 90 90	-- 기타	4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605 00 00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에 한한다)	4	0	
5606 00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5606 00 10	- 루프웨일사	8	0	
	- 기타			
5606 00 91	-- 짐프사	5.3	0	
5606 00 99	-- 기타	5.3	0	
5607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또는 짚 것인지의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및 시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사이잘마 또는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5607 21 00	-- 포장용 끈	12	0	
5607 29	-- 기타			
5607 29 10	--- 100,000 데시텍스(1미터당 10그램)를 초과하는 것	12	0	
5607 29 90	--- 100,000 데시텍스(1미터당 10그램) 이하의 것	12	0	
	-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것			
5607 41 00	-- 포장용 끈	8	0	
5607 49	-- 기타			
	--- 50,000데시텍스(1미터당 5그램)를 초과하는 것			
5607 49 11	---- 엮거나 꼬은 것	8	0	
5607 49 19	---- 기타	8	0	
5607 49 90	---- 50,000데시텍스(1미터당 5그램) 이하의 것	8	0	
5607 50	- 기타 합성 섬유의 것			
	-- 나일론의 것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			
	--- 50,000데시텍스(1미터당 5그램)를 초과하는 것			
5607 50 11	---- 엮거나 꼬은 것	8	0	
5607 50 19	---- 기타	8	0	
5607 50 30	--- 측정치가 50,000 데시텍스(1미터당 5그램) 이하인 것	8	0	
5607 50 90	-- 기타 합성 섬유의 것	8	0	
5607 90	- 기타			
5607 90 20	-- 생 마닐라 삼 식물 (마닐라 대마, 무사 식물) 또는 기타 단단한 잎으로 된 식물; 주트 또는 제 5303호의 다른 식물 인피 섬유의 것	6	0	
5607 90 90	-- 기타	8	0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된 망			
	- 인조섬유제의 것			
5608 11	-- 제품으로 된 어망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608 11 11	----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의 것	8	0	
5608 11 19	---- 사의 것	8	0	
	--- 기타			
5608 11 91	----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의 것	8	0	
5608 11 99	---- 사의 것	8	0	
5608 19	-- 기타			
	--- 망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608 19 11	-----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의 것	8	0	
5608 19 19	----- 기타	8	0	
5608 19 30	---- 기타	8	0	
5608 19 90	--- 기타	8	0	
5608 90 00	- 기타	8	0	
5609 00 00	방직사, 스트립과 제5404호와 제5405호의 그와 유사한 것들 또는 제5607호의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과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	5.8	0	
57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701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1 10	- 양모 또는 섬유모의 것			
5701 10 10	-- 견 또는 노일을 제외한 웨이스트건의 총 중량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8	0	
5701 10 90	-- 기타	8 MAX 2,8 €/m2	0	
5701 9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5701 90 10	-- 견의 것, 노일을 제외한 웨이스트건의 것, 합성 섬유, 제 5605 호의 사의 것 또는 금속 끈을 포함한 직물 재료의 것	8	0	
5701 90 9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3.5	0	
5702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직조한 것에 한하고, 터후트 또는 풀룩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슈맥·카라마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를 포함한다)			
5702 10 00	- "켈렘", "슈맥스" 및 "카라마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 러그	3	0	
5702 20 00	- 야자 섬유 "코이어"로 된 바닥 깔개	4	0	
	- 기타(파일직물의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			
5702 31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5702 31 10	--- 엑스민스터 카펫	8	0	
5702 31 80	--- 기타	8	0	
5702 32	-- 인조섬유제의 것			
5702 32 10	--- 엑스민스터 카펫	8	0	
5702 32 90	--- 기타	8	0	
5702 39 0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8	0	
	- 기타(파일직물의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한다)			
5702 41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5702 41 10	--- 엑스민스터 카펫	8	0	
5702 41 90	--- 기타	8	0	
5702 42	-- 인조섬유제의 것			
5702 42 10	--- 엑스민스터 카펫	8	0	
5702 42 90	--- 기타	8	0	
5702 49 0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8	0	
5702 50	- 기타(파일직물의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			
5702 50 10	-- 양모 또는 섬유모의 것	8	0	
	- 인조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			
5702 50 31	---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702 50 39	--- 기타	8	0	
5702 50 9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8	0	
	- 기타, 파일조직이 아닌 것, 제조된 것			
5702 91 00	-- 양모 또는 섬유모의 것	8	0	
5702 92	-- 인조섬유제의 것			
5702 92 10	---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702 92 90	--- 기타	8	0	
5702 99 0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8	0	
5703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3 10 00	- 양모 또는 섬유모의 것	8	0	
5703 20	-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의 것			
	-- 날염한 누빈것			
5703 20 11	--- 타일, 최대 단위 표면 면적이 0.3제곱미터의 것	8	0	
5703 20 19	--- 기타	8	0	
	-- 기타			
5703 20 91	--- 타일, 최대 단위 표면 면적이 0.3제곱미터의 것	8	0	
5703 20 99	--- 기타	8	0	
5703 30	- 기타 인조방직용 섬유제의 것			
	- 폴리프로필렌의 것			
5703 30 11	--- 타일, 최대 단위 표면 면적이 0.3제곱미터의 것	8	0	
5703 30 19	--- 기타	8	0	
	-- 기타			
5703 30 81	--- 타일, 최대 단위 표면 면적이 0.3제곱미터의 것	8	0	
5703 30 89	--- 기타	8	0	
5703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703 90 10	-- 타일, 최대 단위 표면 면적이 0.3제곱미터의 것	8	0	
5703 90 90	-- 기타	8	0	
5704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펠트제의 것에 한하며, 터후트 및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4 10 00	- 타일, 최대 단위 표면 면적이 0.3제곱미터의 것	6.7	0	
5704 90 00	- 기타	6.7	0	
5705 00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5 00 10	- 양모 또는 섬유모의 것	8	0	
5705 00 30	- 인조 직물 재료의 것	8	0	
5705 00 9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8	0	
58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801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			
5801 10 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8	0	
	- 면제의 것			
5801 21 00	-- 절단하지 않은 웨프트 파일 직물	8	0	
5801 22 00	-- 절단된 코르덴	8	0	
5801 23 00	-- 기타 웨프트 파일 직물	8	0	
5801 24 00	-- 경파일 직물 (절단하지 아니한 것)	8	0	
5801 25 00	-- 경파일 직물 (절단한 것)	8	0	
5801 26 00	-- 셔닐 직물	8	0	
	- 인조섬유제의 것			
5801 31 00	-- 절단되지 아니한 위파일 직물	8	0	
5801 32 00	-- 절단된 코르덴	8	0	
5801 33 00	-- 기타 위파일 직물	8	0	
5801 34 00	--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8	0	
5801 35 00	-- 절단된 경파일 직물	8	0	
5801 36 00	-- 셔닐 직물	8	0	
5801 90	- 기타 섬유제의 것			
5801 90 10	-- 아마의 것	8	0	
5801 90 90	-- 기타	8	0	
5802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과 터후트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면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802 1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8	0	
5802 19 00	-- 기타	8	0	
5802 20 00	- 기타 섬유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8	0	
5802 30 00	- 터후트 직물	8	0	
5803 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5803 00 10	- 면제의 것	5.8	0	
5803 00 30	- 선 또는 선 웨이스트의 것	7.2	0	
5803 00 90	- 기타	8	0	
5804	튜올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레이스(원단상·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편물을 제외한다)			
5804 10	- 튜올 및 기타 망직물			
	-- Plain			
5804 10 11	--- 결절한 망직물	6.5	0	
5804 10 19	--- 기타	6.5	0	
5804 10 90	-- 기타	8	0	
	- 기계직 레이스			
5804 21	-- 인조 섬유의 것			
5804 21 10	--- 보빈 기계를 사용한 것	8	0	
5804 21 90	--- 기타	8	0	
5804 29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5804 29 10	--- 보빈 기계를 사용한 것	8	0	
5804 29 90	--- 기타	8	0	
5804 30 00	- 수제의 레이스	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805 00 00	고우벌린직 · 플란더스직 · 오버션직 · 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예 : 파티포인트 · 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6	0	
5806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덱)			
5806 10 00	- 파일직물(테리타올지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과 셔닐 직물	6.3	0	
5806 20 00	-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에 한한다)	7.5	0	
	- 기타 직물			
5806 31 00	-- 면제의 것	7.5	0	
5806 32	-- 인조섬유제의 것			
5806 32 10	--- 식서를 포함한 것	7.5	0	
5806 32 90	--- 기타	7.5	0	
5806 3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7.5	0	
5806 40 00	-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볼덱)	6.2	0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5807 10	- 직조한 것			
5807 10 10	-- 직조된 명	6.2	0	
5807 10 90	-- 기타	6.2	0	
5807 90	- 기타			
5807 90 10	-- 펠트형 또는 직조되지 아니한 것	6.3	0	
5807 90 90	-- 기타	8	0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및 술, 품퐁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 10 00	- 브레이드(원단상에 한한다)	5	0	
5808 90 00	- 기타	5.3	0	
5809 00 00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 · 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곳에 열거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5.6	0	
5810	자수포(원단상 · 스트립상 또는 모티프상으로 된 것에 한한다)			
5810 10	- 자수포(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5810 10 10	-- 1킬로그램(순중량)당 €35를 초과하는 것	5.8	0	
5810 10 90	-- 기타	8	0	
	- 기타 자수포			
5810 91	-- 면제의 것			
5810 91 10	--- 1킬로그램(순중량)당 €17.50를 초과하는 것	5.8	0	
5810 91 90	--- 기타	7.2	0	
5810 92	-- 인조섬유제의 것			
5810 92 10	--- 1킬로그램(순중량)당 €17.50를 초과하는 것	5.8	0	
5810 92 90	--- 기타	7.2	0	
5810 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5810 99 10	--- 1킬로그램(순중량)당 €17.50를 초과하는 것	5.8	0	
5810 99 90	--- 기타	7.2	0	
5811 00 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8	0	
59	제59류 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절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 10 00	- 서적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6.5	0	
5901 90 00	- 기타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 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5902 1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제의 것			
5902 10 10	-- 고무가 주입된 것	5.6	0	
5902 10 90	-- 기타	8	0	
5902 20	-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5902 20 10	-- 고무가 주입된 것	5.6	0	
5902 20 90	-- 기타	8	0	
5902 90	- 기타			
5902 90 10	-- 고무가 주입된 것	5.6	0	
5902 90 90	-- 기타	8	0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 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5903 10	- 폴리(염화비닐)의 것			
5903 10 10	-- 주입된 것	8	0	
5903 10 90	--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903 20	- 폴리우레탄의 것			
5903 20 10	-- 주입된 것	8	0	
5903 20 90	--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903 90	- 기타			
5903 90 10	-- 주입된 것	8	0	
	--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5903 90 91	--- 셀룰로오스 유도치 또는 기타 플라스틱의 것, 직물이 표면에 형성된 것	8	0	
5903 90 99	--- 기타	8	0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 으로 만든 바닥갈래(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5904 10 00	- 리놀륨	5.3	0	
5904 90 00	- 기타	5.3	0	
5905 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5905 00 10	- 어떤 물질의 뒷면에 고정되어 있는 평행실로 이루어진 것	5.8	0	
	- 기타			
5905 00 30	-- 아마의 것	8	0	
5905 00 50	-- 주트의 것	4	0	
5905 00 70	-- 인조 섬유의 것	8	0	
5905 00 90	-- 기타	6	0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 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5906 10 00	-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 테이프	4.6	0	
	- 기타			
5906 91 00	--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6.5	0	
5906 99	-- 기타			
5906 99 10	--- 이 류의 주석 제4(c)호에서 언급된 섬유	8	0	
5906 99 90	--- 기타	5.6	0	
5907 00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 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5907 00 10	- 건성유의 주성분으로 조제하여 도포한 유포 및 기타 직 물	4.9	0	
5907 00 90	- 기타	4.9	0	
5908 00 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 직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5.6	0	
5909 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909 00 10	- 합성 섬유의 것	6.5	0	
5909 00 9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6.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5910 00 00	전동용과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1	0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석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5911 10 00	-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기타의 물품으로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물품으로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 [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5.3	0	
5911 20 00	- 불팅클로드(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6	0	
	- 제지용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펄프 또는 석면-시멘트 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류			
5911 31	-- 중량이 650g/m ² 미만인 것			
	--- 견 또는 인조 섬유의 것			
5911 31 11	---- 직물, 펠트형인지 여부 불문, 합성 섬유의 것, 제지용 기계용으로 사용되는 것	5.8	0	
5911 31 19	---- 기타	5.8	0	
5911 31 9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4.4	0	
5911 32	-- 중량이 650g/m ² 이상인 것			
5911 32 10	--- 견 또는 인조 섬유의 것	5.8	0	
5911 32 9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4.4	0	
5911 40 00	-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6	0	
5911 90	- 기타			
5911 90 10	-- 펠트의 것	6	0	
5911 90 90	-- 기타	6	0	
60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001 10 00	- '롱 파일' 편물	8	0	
	- 루푸파일 편물			
6001 21 00	-- 면제의 것	8	0	
6001 22 00	-- 인조 섬유의 것	8	0	
6001 2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 기타			
6001 91 00	-- 면제의 것	8	0	
6001 92 00	-- 인조 섬유의 것	8	0	
6001 99 0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8	0	
6002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을 제외한다)			
6002 40 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8	0	
6002 90 00	- 기타	6.5	0	
6003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제6001호 또는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 10 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8	0	
6003 20 00	- 면제의 것	8	0	
6003 30	- 합성 섬유의 것			
6003 30 10	-- 라셀 레이스	8	0	
6003 30 90	-- 기타	8	0	
6003 40 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8	0	
6003 90 00	- 기타	8	0	
6004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을 제외한다)			
6004 10 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8	0	
6004 90 00	- 기타	6.5	0	
6005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 내지 제6004호의 것은 제외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면제의 것			
6005 2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6005 22 00	-- 염색한 것	8	0	
6005 23 00	-- 서로 다른 색사의 것	8	0	
6005 24 00	-- 날염한 것	8	0	
	- 합성섬유제의 것			
6005 3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6005 31 10	--- 네트 커튼 섬유를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5 31 50	--- 커튼 또는 네트 커튼 섬유를 제외한 라셀 레이스	8	0	
6005 31 90	--- 기타	8	0	
6005 32	-- 염색한 것			
6005 32 10	--- 네트 커튼 섬유를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5 32 50	--- 커튼 또는 네트 커튼 섬유를 제외한 라셀 레이스	8	0	
6005 32 90	--- 기타	8	0	
6005 33	-- 서로 다른 색사의 것			
6005 33 10	--- 네트 커튼 섬유를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5 33 50	--- 커튼 또는 네트 커튼 섬유를 제외한 라셀 레이스	8	0	
6005 33 90	--- 기타	8	0	
6005 34	-- 날염한 것			
6005 34 10	--- 네트 커튼 섬유를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5 34 50	--- 커튼 또는 네트 커튼 섬유를 제외한 라셀 레이스	8	0	
6005 34 90	--- 기타	8	0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005 4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6005 42 00	-- 염색한 것	8	0	
6005 43 00	-- 다양한 색의 사의 것	8	0	
6005 44 00	-- 인쇄한 것	8	0	
6005 90	- 기타			
6005 90 1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	8	0	
6005 90 90	-- 기타	8	0	
6006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6 10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 면제의 것			
6006 2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6006 22 00	-- 염색한 것	8	0	
6006 23 00	-- 서로 다른 색사의 것	8	0	
6006 24 00	-- 인쇄한 것	8	0	
	- 합성섬유제의 것			
6006 3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6006 31 10	--- 네트 커튼 섬유를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6 31 90	--- 기타	8	0	
6006 32	-- 염색한 것			
6006 32 10	--- 네트 커튼 섬유를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6 32 90	--- 기타	8	0	
6006 33	-- 서로 다른 색사의 것			
6006 33 10	--- 네트 커튼 섬유를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6 33 90	--- 기타	8	0	
6006 34	-- 날염한 것			
6006 34 10	--- 네트 커튼 섬유를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6 34 90	--- 기타	8	0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006 41 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6006 42 00	-- 염색한 것	8	0	
6006 43 00	-- 서로 다른 색사의 것	8	0	
6006 44 00	-- 날염한 것	8	0	
6006 90 00	- 기타	8	0	
61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6101 20	- 면제의 것			
6101 20 10	--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101 20 90	-- 스키 자켓을 포함한 아노락, 윈드 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1 30	- 인조섬유제의 것			
6101 30 10	--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1 30 90	-- 스키 자켓을 포함한 아노락, 윈드 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1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01 90 20	--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1 90 80	-- 스키 자켓을 포함한 아노락, 윈드 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룩 · 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6102 1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6102 10 10	--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2 10 90	-- 스키 자켓을 포함한 아노락, 윈드 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2 20	- 면제의 것			
6102 20 10	--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2 20 90	-- 스키 자켓을 포함한 아노락, 윈드 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2 30	- 인조섬유제의 것			
6102 30 10	--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2 30 90	-- 스키 자켓을 포함한 아노락, 윈드 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2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02 90 10	--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2 90 90	-- 스키 자켓을 포함한 아노락, 윈드 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 양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6103 10 00	- 슈트	12	0	
	- 양상블			
6103 22 00	-- 면제의 것	12	0	
6103 2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03 2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재킷과 블레이저			
6103 31 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2	0	
6103 32 00	- 면제의 것	12	0	
6103 3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03 3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103 41 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2	0	
6103 42 00	- 면제의 것	12	0	
6103 4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03 4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 양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 슈트			
6104 1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04 1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양상블			
6104 22 00	- 면제의 것	12	0	
6104 2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04 2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재킷 및 블레이저			
6104 31 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2	0	
6104 32 00	- 면제의 것	1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104 3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04 3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드레스			
6104 4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	12	0	
6104 42 00	- 면제의 것	12	0	
6104 4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04 44 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것	12	0	
6104 4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 5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	12	0	
6104 52 00	- 면제의 것	12	0	
6104 5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04 5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104 6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	12	0	
6104 62 00	- 면제의 것	12	0	
6104 6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04 6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5 10 00	- 면제의 것	12	0	
6105 20	- 인조섬유제의 것			
6105 20 1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05 20 9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것	12	0	
6105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05 90 1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	12	0	
6105 90 90	-- 기타	12	0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 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6 10 00	- 면제의 것	12	0	
6106 20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106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06 90 1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	12	0	
6106 90 30	-- 견 또는 견 웨이스트의 것	12	0	
6106 90 50	-- 아마의 것 또는 모시의 것	12	0	
6106 90 90	-- 기타	12	0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 · 브리프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언더팬츠와 브리프			
6107 11 00	- 면제의 것	12	0	
6107 12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107 1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나이트셔츠 및 파자마			
6107 21 00	- 면제의 것	12	0	
6107 22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107 2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기타			
6107 91 00	- 면제의 것	12	0	
6107 9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 · 페티코트 · 브리프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슬립과 페티코트			
6108 11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108 1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브리프 및 팬티			
6108 21 00	- 면제의 것	12	0	
6108 22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108 2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 31 00	- 면제의 것	12	0	
6108 32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108 3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기타			
6108 91 00	- 면제의 것	12	0	
6108 92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108 9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109	티셔츠 · 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9 10 00	- 면제의 것	12	0	
6109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09 90 1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	12	0	
6109 90 3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109 90 90	-- 기타	12	0	
6110	저지 · 폴오버 · 카디건 · 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110 11	-- 양모의 것			
6110 11 10	--- 양모가 총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각 물품당 600그램 이상인 저지 및 폴오버	10.5	0	
	--- 기타			
6110 11 30	---- 남자 또는 소년용	12	0	
6110 11 90	---- 여자 또는 소녀용	12	0	
6110 12	-- 캐시미어 산양의 것			
6110 12 10	--- 남자 또는 소년용	12	0	
6110 12 90	--- 여자 또는 소녀용	12	0	
6110 19	-- 기타			
6110 19 10	--- 남자 또는 소년용	12	0	
6110 19 90	--- 여자 또는 소녀용	12	0	
6110 20	- 면제의 것			
6110 20 10	-- 라이트웨이트 고급 니트 룰, 폴로 또는 터틀넥 점퍼 및 폴오버	12	0	
	-- 기타			
6110 20 91	--- 남자 또는 소년용	12	0	
6110 20 99	--- 여자 또는 소녀용	12	0	
6110 30	- 인조섬유제의 것			
6110 30 10	-- 라이트웨이트 고급 니트 룰, 폴로 또는 터틀넥 점퍼 및 폴오버	12	0	
	-- 기타			
6110 30 91	--- 남자 또는 소년용	12	0	
6110 30 99	--- 여자 또는 소녀용	12	0	
6110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10 90 10	-- 아마 또는 모시의 것	12	0	
6110 90 90	-- 기타	12	0	
6111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1 20	- 면제의 것			
6111 20 10	-- 장갑,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	8.9	0	
6111 20 90	-- 기타	12	0	
6111 30	- 합성섬유제의 것			
6111 30 10	-- 장갑,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	8.9	0	
6111 30 90	-- 기타	12	0	
6111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			
6111 90 11	-- 장갑,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	8.9	0	
6111 90 19	--- 기타	12	0	
6111 90 90	-- 기타	12	0	
6112	트랙슈트 · 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트랙슈트			
6112 11 00	- 면제의 것	12	0	
6112 12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112 1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112 20 00	- 스키 슈트	12	0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수영복			
6112 31	-- 합성섬유제의 것			
6112 31 10	--- 고무사를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 포함하는 것	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112 31 90	--- 기타	12	0	
6112 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12 39 10	--- 고무사를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 포함하는 것	8	0	
6112 39 90	--- 기타	12	0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수영복			
6112 41	-- 합성섬유제의 것			
6112 41 10	--- 고무사를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 포함하는 것	8	0	
6112 41 90	--- 기타	12	0	
6112 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12 49 10	--- 고무사를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 포함하는 것	8	0	
6112 49 90	--- 기타	12	0	
6113 00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113 00 10	- 제5906호의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	8	0	
6113 00 90	- 기타	12	0	
6114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4 20 00	- 면제의 것	12	0	
6114 30 00	- 인조 섬유의 것	12	0	
6114 90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115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5 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6115 10 10	-- 합성 섬유의 하지정맥류의 스타킹	8	0	
6115 10 90	-- 기타	12	0	
	-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			
6115 21 00	-- 합성 섬유의 것, 단사당 67 데시텍스미만의 것	12	0	
6115 22 00	-- 합성 섬유의 것, 단사당 67 데시텍스이상의 것	12	0	
6115 2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115 30	- 기타의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미만인 것에 한한다)			
	-- 합성섬유제의 것			
6115 30 11	--- 무릎 길이의 스타킹	12	0	
6115 30 19	--- 기타	12	0	
6115 30 90	-- 기타 직물 재료의 것	12	0	
	- 기타			
6115 94 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2	0	
6115 95 00	- 면제의 것	12	0	
6115 96	-- 합성 섬유제의 것			
6115 96 10	--- 무릎 길이의 스타킹	12	0	
	--- 기타			
6115 96 91	---- 여성용 스타킹	12	0	
6115 96 99	---- 기타	12	0	
6115 9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6 10	-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6116 10 20	-- 고무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글러브	8	0	
6116 10 80	-- 기타	8.9	0	
	- 기타			
6116 91 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8.9	0	
6116 92 00	- 면제의 것	8.9	0	
6116 93 00	-- 합성섬유제의 것	8.9	0	
6116 9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9	0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 10 00	-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17 80	- 기타 부속품			
6117 80 10	--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으로 한 탄성 또는 고무성	8	0	
6117 80 80	-- 기타	12	0	
6117 90 00	- 부분품	1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2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 및 이와 유사한 의류			
6201 1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1 12	-- 면제의 것			
6201 12 10	--- 1벌당 중량이 1킬로그램이하인 것	12	0	
6201 12 90	--- 1벌당 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2	0	
6201 13	-- 인조섬유제의 것			
6201 13 10	--- 1벌당 중량이 1킬로그램이하인 것	12	0	
6201 13 90	--- 1벌당 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2	0	
6201 1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기타			
6201 9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1 92 00	-- 면제의 것	12	0	
6201 93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1 9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 및 이와 유사한 의류			
6202 1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2 12	-- 면제의 것			
6202 12 10	--- 1벌당 중량이 1킬로그램이하인 것	12	0	
6202 12 90	--- 1벌당 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2	0	
6202 13	-- 인조섬유제의 것			
6202 13 10	--- 1벌당 중량이 1킬로그램이하인 것	12	0	
6202 13 90	--- 1벌당 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2	0	
6202 1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기타			
6202 9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2 92 00	-- 면제의 것	12	0	
6202 93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2 9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슈트			
6203 1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3 12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203 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3 19 10	--- 면제의 것	12	0	
6203 19 3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3 19 90	--- 기타	12	0	
	- 양상블			
6203 22	-- 면제의 것			
6203 22 10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3 22 80	--- 기타	12	0	
6203 23	-- 합성섬유제의 것			
6203 23 10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3 23 80	--- 기타	12	0	
6203 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인조섬유제의 것			
6203 29 1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3 29 18	---- 기타	12	0	
6203 29 3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3 29 90	--- 기타	12	0	
	- 자켓 및 블레이저			
6203 3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3 32	-- 면제의 것			
6203 32 10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203 32 90	--- 기타	12	0	
6203 33	-- 합성섬유제의 것			
6203 33 10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3 33 90	--- 기타	12	0	
6203 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인조섬유제의 것			
6203 39 1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3 39 19	---- 기타	12	0	
6203 39 90	--- 기타	12	0	
	- 긴바지, 가슴받이, 멜빵바지, 승마용 바지 및 반바지			
6203 41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6203 41 10	--- 긴바지 및 승마용 바지	12	0	
6203 41 30	--- 가슴받이 및 멜빵바지	12	0	
6203 41 90	--- 기타	12	0	
6203 42	-- 면제의 것			
	--- 긴바지 및 승마용 바지			
6203 42 1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 기타			
6203 42 31	----- 데님의 것	12	0	
6203 42 33	----- 절단된 코르덴제의 것	12	0	
6203 42 35	----- 기타	12	0	
	--- 가슴받이 및 멜빵바지			
6203 42 5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3 42 59	---- 기타	12	0	
6203 42 90	--- 기타	12	0	
6203 43	-- 합성섬유제의 것			
	--- 긴바지 및 승마용바지			
6203 43 1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3 43 19	---- 기타	12	0	
	--- 가슴받이 및 멜빵바지			
6203 43 3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3 43 39	---- 기타	12	0	
6203 43 90	--- 기타	12	0	
6203 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인조섬유제의 것			
	---- 긴바지 및 승마용바지			
6203 49 1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3 49 19	----- 기타	12	0	
	---- 가슴받이 및 멜빵바지			
6203 49 3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3 49 39	----- 기타	12	0	
6203 49 50	---- 기타	12	0	
6203 49 90	--- 기타	12	0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 다)			
	슈트			
6204 11 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2	0	
6204 12 00	-- 면제의 것	12	0	
6204 1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204 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4 19 1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4 19 90	--- 기타	12	0	
	- 양상블			
6204 21 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2	0	
6204 22	-- 면제의 것			
6204 22 10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4 22 80	--- 기타	12	0	
6204 23	-- 합성섬유제의 것			
6204 23 10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4 23 80	--- 기타	12	0	
6204 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인조섬유제의 것			
6204 29 1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204 29 18	---- 기타	12	0	
6204 29 90	--- 기타	12	0	
	- 자켓 및 블레이저			
6204 3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4 32	-- 면제의 것			
6204 32 10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4 32 90	--- 기타	12	0	
6204 33	-- 합성섬유제의 것			
6204 33 10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4 33 90	--- 기타	12	0	
6204 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인조섬유제의 것			
6204 39 1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4 39 19	---- 기타	12	0	
6204 39 90	--- 기타	12	0	
	- 드레스			
6204 4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4 42 00	-- 면제의 것	12	0	
6204 4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204 44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4 4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치마 또는 치마 바지			
6204 5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4 52 00	-- 면제의 것	12	0	
6204 53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204 5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4 59 1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4 59 90	--- 기타	12	0	
	- 긴바지, 가슴받이, 멜빵바지, 승마용 바지 및 반바지			
6204 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204 61 10	--- 긴바지 및 승마용 바지	12	0	
6204 61 85	--- 기타	12	0	
6204 62	-- 면제의 것			
	--- 긴바지 및 승마용 바지			
6204 62 1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 기타			
6204 62 31	----- 데님의 것	12	0	
6204 62 33	----- 절단된 코르덴제의 것	12	0	
6204 62 39	----- 기타	12	0	
	--- 가슴받이 및 멜빵바지			
6204 62 5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4 62 59	---- 기타	12	0	
6204 62 90	--- 기타	12	0	
6204 63	-- 합성섬유제의 것			
	--- 긴바지 및 승마용 바지			
6204 63 1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4 63 18	---- 기타	12	0	
	--- 가슴받이 및 멜빵바지			
6204 63 3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4 63 39	---- 기타	12	0	
6204 63 90	--- 기타	12	0	
6204 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인조섬유제의 것			
	---- 긴바지 및 승마용 바지			
6204 69 1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4 69 18	----- 기타	12	0	
	--- 가슴받이 및 멜빵바지			
6204 69 31	----- 공업용 및 직업용	12	0	
6204 69 39	----- 기타	12	0	
6204 69 50	---- 기타	12	0	
6204 69 90	--- 기타	12	0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205 20 00	- 면제의 것	12	0	
6205 30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5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205 90 10	-- 아마 또는 모시제의 것	12	0	
6205 90 80	-- 기타	12	0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 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6206 10 0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12	0	
6206 20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06 30 00	- 면제의 것	12	0	
6206 40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6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6 90 10	-- 아마 또는 모시제의 것	12	0	
6206 90 90	-- 기타	12	0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언더팬츠 및 브리프			
6207 11 00	-- 면제의 것	12	0	
6207 1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 21 00	-- 면제의 것	12	0	
6207 22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7 2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기타			
6207 91 00	-- 면제의 것	12	0	
6207 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7 99 1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7 99 90	--- 기타	12	0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 · 슬립 · 페티코트 · 브리프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슬립 및 페티코트			
6208 11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8 1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잠옷 및 파자마			
6208 21 00	-- 면제의 것	12	0	
6208 22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8 2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기타			
6208 91 00	-- 면제의 것	12	0	
6208 92 00	-- 인조섬유제의 것	12	0	
6208 9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209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6209 20 00	- 면제의 것	10.5	0	
6209 30 00	- 합성섬유제의 것	10.5	0	
6209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9 90 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5	0	
6209 90 90	-- 기타	10.5	0	
6210	의류(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6210 10	- 제5602호 또는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			
6210 10 10	-- 제5602호의 직물제의 것	12	0	
6210 10 90	--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	12	0	
6210 20 00	- 기타 의류(소호 제6201.11호 내지 제6201.19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에 한한다)	12	0	
6210 30 00	- 기타 의류(소호 제6202.11호 내지 제6202.19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에 한한다)	12	0	
6210 40 00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12	0	
6210 50 00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12	0	
6211	트랙슈트 · 스키슈트 · 수영복 및 기타 의류			
	수영복			
6211 11 00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12	0	
6211 12 00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12	0	
6211 20 00	- 스키슈트	12	0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6211 32	-- 면제의 것			
6211 32 10	--- 공업용 및 직업용 옷	12	0	
	--- 안감을 댄 운동복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211 32 31	---- 외피가 동일한 직물로 되어있는 것	12	0	
	---- 기타			
6211 32 41	----- 상의	12	0	
6211 32 42	----- 하의	12	0	
6211 32 90	--- 기타	12	0	
6211 33	-- 인조섬유제의 것			
6211 33 10	--- 공업용 및 작업용 옷	12	0	
	--- 안감을 댄 운동복			
6211 33 31	---- 외피가 동일한 직물로 되어있는 것	12	0	
	---- 기타			
6211 33 41	----- 상의	12	0	
6211 33 42	----- 하의	12	0	
6211 33 90	--- 기타	12	0	
6211 3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211 41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2	0	
6211 42	-- 면제의 것			
6211 42 10	--- 애이프린, 작업복, 스목 작업복 및 기타 공업용 및 작업용 옷 (가정용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	0	
	--- 안감을 댄 운동복			
6211 42 31	---- 외피가 동일한 직물로 되어있는 것	12	0	
	---- 기타			
6211 42 41	----- 상의	12	0	
6211 42 42	----- 하의	12	0	
6211 42 90	--- 기타	12	0	
6211 43	-- 인조섬유제의 것			
6211 43 10	--- 애이프린, 작업복, 스목 작업복 및 기타 공업용 및 작업용 옷 (가정용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	0	
	--- 안감을 댄 운동복			
6211 43 31	---- 외피가 동일한 직물로 되어있는 것	12	0	
	---- 기타			
6211 43 41	----- 상의	12	0	
6211 43 42	----- 하의	12	0	
6211 43 90	--- 기타	12	0	
6211 4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콜렛 · 브레이스 · 서스펜더 · 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 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212 10	- 브래지어			
6212 10 10	-- 브래지어 및 브리프를 포함하는 소매용의 세트 상의 것	6.5	0	
6212 10 90	-- 기타	6.5	0	
6212 20 00	- 거들 및 팬티거들	6.5	0	
6212 30 00	- 콜세렛	6.5	0	
6212 90 00	- 기타	6.5	0	
6213	손수건			
6213 20 00	- 면제의 것	10	0	
6213 90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6214	쇼울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 ·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14 10 0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	0	
6214 20 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6214 30 00	- 합성섬유제의 것	8	0	
6214 40 00	- 인조섬유제의 것	8	0	
6214 90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215	넥타이류			
6215 10 0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6.3	0	
6215 20 00	- 인조섬유제의 것	6.3	0	
6215 90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	0	
6216 00 00	장갑류	7.6	0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217 10 00	- 부속품	6.3	0	
6217 90 00	- 부분품	1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3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의류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낚시			
	제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의류의 기타 물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6301 10 00	- 전기모포	6.9	0	
6301 2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6301 20 10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6301 20 90	-- 기타	12	0	
6301 30	- 면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6301 30 10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6301 30 90	-- 기타	7.5	0	
6301 40	-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6301 40 10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6301 40 90	-- 기타	12	0	
6301 90	- 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6301 90 10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6301 90 90	-- 기타	12	0	
6302	베드린넨 · 테이블린넨 ·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6302 10 00	- 베드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2	0	
	- 기타 베드린넨(날염된 것에 한한다)			
6302 21 00	-- 면제의 것	12	0	
6302 22	-- 인조섬유제의 것			
6302 22 10	--- 부직포	6.9	0	
6302 22 90	--- 기타	12	0	
6302 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02 29 10	--- 아마 또는 모시제의 것	12	0	
6302 29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기타 베드린넨			
6302 31 00	-- 면제의 것	12	0	
6302 32	-- 인조섬유제의 것			
6302 32 10	--- 부직포	6.9	0	
6302 32 90	--- 기타	12	0	
6302 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02 39 20	--- 아마 또는 모시제의 것	12	0	
6302 39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302 40 00	- 테이블린넨,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 기타 테이블린넨			
6302 51 00	-- 면제의 것	12	0	
6302 53	-- 인조섬유제의 것			
6302 53 10	--- 부직포	6.9	0	
6302 53 90	--- 기타	12	0	
6302 5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02 59 10	--- 아마제의 것	12	0	
6302 59 90	--- 기타	12	0	
6302 60 00	-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한다)	12	0	
	- 기타			
6302 91 00	-- 면제의 것	12	0	
6302 93	-- 인조섬유제의 것			
6302 93 10	--- 부직포	6.9	0	
6302 93 90	--- 기타	12	0	
6302 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02 99 10	--- 아마제의 것	12	0	
6302 99 90	--- 기타	12	0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 · 실내용 블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빨란스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303 12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303 1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기타			
6303 91 00	-- 면제의 것	1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303 92	-- 합성섬유제의 것			
6303 92 10	--- 부직포	6.9	0	
6303 92 90	--- 기타	12	0	
6303 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03 99 10	--- 부직포	6.9	0	
6303 99 90	--- 기타	12	0	
6304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침대덮개			
6304 11 00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6304 19	-- 기타			
6304 19 10	--- 면제의 것	12	0	
6304 19 30	--- 아마 또는 모시제의 것	12	0	
6304 19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기타			
6304 91 00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6304 92 00	--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12	0	
6304 93 00	--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12	0	
6304 9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12	0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6305 10	- 황마 또는 제5303호의 기타 방직용 인피(鞣皮)섬유제의 것			
6305 10 10	-- 충고	2	0	
6305 10 90	-- 기타	4	0	
6305 20 00	- 면제의 것	7.2	0	
	- 인조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05 32	--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6305 32 11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 기타			
6305 32 81	----- 중량이 120g/m ² 이하인 직물의 것	7.2	0	
6305 32 89	----- 중량이 120g/m ² 을 초과하는 직물의 것	7.2	0	
6305 32 90	--- 기타	7.2	0	
6305 33	--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한다)			
6305 33 10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 기타			
6305 33 91	---- 중량이 120g/m ² 이하인 직물의 것	7.2	0	
6305 33 99	---- 중량이 120g/m ² 을 초과하는 직물의 것	7.2	0	
6305 39 00	-- 기타	7.2	0	
6305 90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	0	
6306	타포린 · 천막 · 차양 · 텐트 · 돛 및 캠프용품			
	타포린 · 천막 및 차양			
6306 12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306 1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 텐트			
6306 22 00	-- 합성섬유제의 것	12	0	
6306 2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306 30 00	- 돛	12	0	
6306 40 0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12	0	
	- 기타			
6306 91 00	-- 면제의 것	12	0	
6306 99 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2	0	
6307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6307 10	- 마루닥이포 · 접시닥이포 ·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6307 10 10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6307 10 30	-- 부직포	6.9	0	
6307 10 90	-- 기타	7.7	0	
6307 20 00	- 구멍재킷 및 구멍벨트	6.3	0	
6307 90	- 기타			
6307 90 10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6307 90 91	--- 펠트제의 것	6.3	0	
6307 90 99	--- 기타	6.3	0	
	제2절 세트			
6308 00 00	러그 · 태피스트리 ·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2	0	
	제3절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 냄마			
6309 00 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5.3	0	
6310	냄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에 한한다) 및 끈 · 코디지 · 로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 · 코디지 · 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6310 10	- 선별한 것			
6310 10 10	-- 양모 · 섬수모 또는 조수모제의 것	Free	0	
6310 10 30	-- 아마 또는 면제의 것	Free	0	
6310 10 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Free	0	
6310 90 00	- 기타	Free	0	
64	제64류 신발류 ·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 · 리베팅 · 네일링 · 스크루잉 · 플러킹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6401 10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6401 10 10	-- 갑피가 고무제인 것	17	0	
6401 10 90	-- 갑피가 플라스틱제인 것	17	0	
	- 기타 신발			
6401 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6401 92 10	--- 갑피가 고무제인 것	17	0	
6401 92 90	--- 갑피가 플라스틱제인 것	17	0	
6401 99 00	-- 기타	17	0	
6402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6402 12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6402 12 10	--- 스키부츠 및 크로스컨트리스키화	17	0	
6402 12 90	--- 스노보드부츠	17	0	
6402 19 00	-- 기타	16.9	0	
6402 20 00	- 신발(갑피끈을 플렉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17	0	
	- 기타 신발			
6402 91	-- 발목을 덮는 것			
6402 91 10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	17	0	
6402 91 90	--- 기타	16.9	0	
6402 99	-- 기타			
6402 99 05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	17	0	
	--- 기타			
6402 99 10	---- 갑피가 고무제인 것	16.8	0	
	---- 갑피가 플라스틱제인 것			
	----- 앞쪽 등가죽은 갑피끈으로 제조되었거나 1개 이상의 부분이 잘려나간 것			
6402 99 31	----- 바닥과 힐을 합친 높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것	16.8	0	
6402 99 39	----- 기타	16.8	0	
6402 99 50	----- 슬리퍼 및 기타 실내용 신발류	16.8	0	
	----- 기타, 안창의 길이			
6402 99 91	----- 24센티미터미만인 것	16.8	0	
	----- 24센티미터이상인 것			
6402 99 93	----- 신발류(남자용 또는 여자용의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16.8	3	
	----- 기타			
6402 99 96	----- 남자용	16.8	0	
6402 99 98	----- 여자용	16.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폼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감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6403 12 00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8	0	
6403 19 00	-- 기타	8	0	
6403 20 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감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8	0	
6403 40 0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8	0	
	-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 51	-- 발목을 덮는 것			
6403 51 05	--- 목재 플랫폼에서 제조된 것(안쪽 바닥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0	
	--- 기타			
	---- 발목을 덮는 것(종아리를 덮는 것은 제외한다), 안창의 길이			
6403 51 11	----- 24센티미터미만인 것	8	0	
	----- 24센티미터이상인 것			
6403 51 15	----- 남자용	8	0	
6403 51 19	----- 여자용	8	0	
	---- 기타, 안창의 길이			
6403 51 91	----- 24센티미터미만인 것	8	0	
	----- 24센티미터이상인 것			
6403 51 95	----- 남자용	8	0	
6403 51 99	----- 여자용	8	0	
6403 59	-- 기타			
6403 59 05	--- 목재 플랫폼에서 제조된 것(안쪽 바닥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0	
	--- 기타			
	---- 앞쪽 등가죽은 감피끈으로 제조되었거나 1개 이상의 부분이 잘려나간 것			
6403 59 11	----- 바닥과 힐을 합친 높이가 3 센티미터이상인 것	5	0	
	----- 기타, 안창의 길이			
6403 59 31	----- 24센티미터미만인 것	8	0	
	----- 24센티미터이상인 것			
6403 59 35	----- 남자용	8	0	
6403 59 39	----- 여자용	8	0	
6403 59 50	---- 슬리퍼 및 기타 실내용 신발류	8	0	
	---- 기타, 안창의 길이			
6403 59 91	----- 24센티미터미만인 것	8	0	
	----- 24센티미터이상인 것			
6403 59 95	----- 남자용	8	0	
6403 59 99	----- 여자용	8	0	
	- 기타 신발류			
6403 91	-- 발목을 덮는 것			
6403 91 05	--- 목재 플랫폼에서 제조된 것(안쪽 바닥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0	
	--- 기타			
	---- 발목을 덮는 것(종아리를 덮는 것은 제외한다), 안창의 길이			
6403 91 11	----- 24센티미터미만인 것	8	0	
	----- 24센티미터이상인 것			
6403 91 13	----- 신발류(남자용 또는 여자용의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	3	
	----- 기타			
6403 91 16	----- 남자용	8	0	
6403 91 18	----- 여자용	8	0	
	---- 기타, 안창의 길이			
6403 91 91	----- 24센티미터미만인 것	8	0	
	----- 24센티미터이상인 것			
6403 91 93	----- 신발류(남자용 또는 여자용의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	0	
	----- 기타			
6403 91 96	----- 남자용	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403 91 98	----- 여자용	5	0	
6403 99	-- 기타			
6403 99 05	--- 목재 플랫폼에서 제조된 것(안쪽 바닥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0	
	--- 기타			
	---- 앞쪽 등가죽은 갑피끈으로 제조되었거나 1개 이상의 부분이 잘려나간 것			
6403 99 11	----- 바닥과 힐을 합친 높이가 3 센티미터이상인 것	8	0	
	----- 기타, 안창의 길이			
6403 99 31	----- 24센티미터미만인 것	8	0	
	----- 24센티미터이상인 것			
6403 99 33	----- 신발류(남자용 또는 여자용의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	3	
	----- 기타			
6403 99 36	----- 남자용	8	0	
6403 99 38	----- 여자용	5	0	
6403 99 50	---- 슬리퍼 및 기타 실내용 신발류	8	0	
	---- 기타, 안창의 길이			
6403 99 91	----- 24센티미터미만인 것	8	0	
	----- 24센티미터이상인 것			
6403 99 93	----- 신발류(남자용 또는 여자용의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	0	
	----- 기타			
6403 99 96	----- 남자용	8	0	
6403 99 98	----- 여자용	7	0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또는 콤팩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4 11 00	--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6.9	0	
6404 19	-- 기타			
6404 19 10	--- 슬리퍼 및 기타 실내용 신발류	16.9	0	
6404 19 90	--- 기타	17	0	
6404 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콤팩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4 20 10	-- 슬리퍼 및 기타 실내용 신발류	17	0	
6404 20 90	-- 기타	17	0	
6405	기타 신발류			
6405 10 00	- 갑피가 가죽 또는 콤팩지션레더인 것	3.5	0	
6405 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6405 20 10	-- 바깥 바닥이 목재 또는 코르크제인 것	3.5	0	
	-- 바깥 바닥(기타 재료제의 것)			
6405 20 91	--- 슬리퍼 및 기타 실내용 신발류	4	0	
6405 20 99	--- 기타	4	0	
6405 90	- 기타			
6405 90 10	-- 바깥 바닥이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또는 콤팩지션레더제인 것	17	0	
6405 90 90	-- 바깥 바닥(기타 재료제의 것)	4	0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 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를 제외한다)			
	-- 가죽제의 것			
6406 10 11	--- 갑피	3	0	
6406 10 19	--- 갑피 부분품	3	0	
6406 10 90	-- 기타 재료제의 것	3	0	
6406 20	-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6406 20 10	-- 고무제의 것	3	0	
6406 20 90	-- 플라스틱제의 것	3	0	
	- 기타			
6406 91 00	-- 목재제의 것	3	0	
6406 99	-- 기타 재료제의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406 99 10	--- 각반, 레깅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3	0	
6406 99 30	--- 안쪽 바닥 또는 기타 바닥 구성품에 첨부된 갑피의 조립 부품(바깥 바닥이 없는 것)	3	0	
6406 99 50	--- 제거 가능한 안창 및 기타 제거 가능한 부속품	3	0	
6406 99 60	--- 바깥 바닥(가죽 및 컴퍼지션가죽의 것)	3	0	
6406 99 80	--- 기타	3	0	
65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00 00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래도우 및 맨손(슬릿맨손을 포함한다)	2.7	0	
6502 00 00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Free	0	
6504 00 00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6505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5 10 00	- 헤어네트	2.7	0	
6505 90	- 기타			
6505 90 05	-- 모피 펠트 또는 양모 및 모피의 펠트의 제6501호에 해당하는 모체·두건 또는 플래도우에서 제작된 것	5.7	0	
	-- 기타			
6505 90 10	--- 베레모, 보닛, 작은 테두리 없는 모자, 페즈모, 터키 모자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7	0	
6505 90 30	--- 뽕족한 모자	2.7	0	
6505 90 80	--- 기타	2.7	0	
6506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6 10	- 안전모자			
6506 10 10	-- 플라스틱제의 것	2.7	0	
6506 10 80	-- 기타 재료제의 것	2.7	0	
	- 기타			
6506 91 00	--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2.7	0	
6506 99	-- 기타 재료제의 것			
6506 99 10	--- 모피 펠트 또는 양모 및 모피의 펠트의 제6501호에 해당하는 모체·두건 또는 플래도우에서 제작된 것	5.7	0	
6506 99 90	--- 기타	2.7	0	
6507 00 00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 프레임·챙 및 턱끈	2.7	0	
66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6601 10 00	- 정원용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4.7	0	
	- 기타			
6601 91 00	-- 대가 절첩식의 것	4.7	0	
6601 99	-- 기타			
	--- 덮개가 직물로 된 것			
6601 99 11	---- 인조섬유제의 것	4.7	0	
6601 99 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4.7	0	
6601 99 90	--- 기타	4.7	0	
6602 00 00	지팡이·시트 스틱·채찍·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7	0	
6603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6603 20 00	-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5.2	0	
6603 90	- 기타			
6603 90 10	-- 손잡이 및 노브	2.7	0	
6603 90 90	-- 기타	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7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 00 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우모와 그 부분·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을 제외한다)	2.7	0	
6702	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및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6702 10 00	- 플라스틱제의 것	4.7	0	
6702 90 00	- 기타 재료제의 것	4.7	0	
6703 00 00	인모(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와 가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제조한 양모나 기타의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	1.7	0	
6704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인모제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704 11 00	-- 전체가발	2.2	0	
6704 19 00	-- 기타	2.2	0	
6704 20 00	- 인모제의 것	2.2	0	
6704 90 00	- 기타 재료제의 것	2.2	0	
68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00 00	천연 석재의 포석, 연석 및 판석(석판은 제외)	Free	0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분			
6802 10 00	-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세편 및 분	Free	0	
	- 기타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상 또는 수평상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에 한한다)			
6802 21 00	-- 대리석·트래버틴 및 앨러바스터	1.7	0	
6802 23 00	-- 화강암	1.7	0	
6802 29 00	-- 기타석	1.7	0	
	- 기타			
6802 91	-- 대리석·트래버틴 및 앨러바스터			
6802 91 10	--- 장식·가공되었으나 조각되지 아니한 연마된 석화석고	1.7	0	
6802 91 90	--- 기타	1.7	0	
6802 92	-- 기타 석회질 암석			
6802 92 10	--- 연마·장식·가공되었으나 조각되지 아니한 것	1.7	0	
6802 92 90	--- 기타	1.7	0	
6802 93	-- 화강암			
6802 93 10	--- 연마·장식·가공되었으나 조각되지 아니한, 순중량 10킬로그램이상인 것	Free	0	
6802 93 90	--- 기타	1.7	0	
6802 99	-- 기타석			
6802 99 10	--- 연마·장식·가공되었으나 조각되지 아니한, 순중량 10킬로그램이상인 것	Free	0	
6802 99 90	--- 기타	1.7	0	
6803 00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6803 00 10	- 지붕 및 벽에 사용되는 점판암	1.7	0	
6803 00 90	- 기타	1.7	0	
6804	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연마·버리기·광택·정형 또는 절단용의 것으로 프레임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지석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 연마제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제의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804 10 00	-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 · 그라인딩용 및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Free	0	
	- 기타 밀스톤 · 그라인드스톤 · 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			
6804 21 00	--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	1.7	0	
6804 22	--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인조 연마재료, 결합제가			
	---- 합성 또는 인조 수지의 것			
6804 22 12	----- 보강하지 아니한 것	Free	0	
6804 22 18	----- 보강한 것	Free	0	
6804 22 30	----- 도자기류 또는 규산염제의 것	Free	0	
6804 22 50	----- 기타 재료제의 것	Free	0	
6804 22 90	--- 기타	Free	0	
6804 23 00	-- 천연석제의 것	Free	0	
6804 30 00	- 수지석	Free	0	
6805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 · 지 · 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특정의 형상으로 절단 · 봉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05 10 0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1.7	0	
6805 20 00	-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1.7	0	
6805 30	- 기타재료를 기제로 한 것			
6805 30 10	--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 또는 판지를 혼합한 것을 기제로 한 것	1.7	0	
6805 30 20	-- 경화섬유를 기제로 한 것	1.7	0	
6805 30 80	-- 기타	1.7	0	
6806	슬랙울 · 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 팽창점토 ·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 · 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1호 · 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			
6806 10 00	- 슬랙울 · 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상 · 쉬트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Free	0	
6806 20	-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 팽창점토 ·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6806 20 10	-- 팽창된 점토	Free	0	
6806 20 90	-- 기타	Free	0	
6806 90 00	- 기타	Free	0	
6807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			
6807 10	- 롤상의 것			
6807 10 10	-- 지붕 및 결단장용 제품	Free	0	
6807 10 90	-- 기타	Free	0	
6807 90 00	- 기타	Free	0	
6808 00 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 목재의 대패밥 · 칩 · 파티클 · 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 · 폴리스터 또는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한한다)	1.7	0	
6809	플라스터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보드 · 쉬트 · 패널 ·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을 제외한다)			
6809 11 00	--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1.7	0	
6809 19 00	-- 기타	1.7	0	
6809 90 00	- 기타 제품	1.7	0	
6810	시멘트 제품 · 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일 · 판석 ·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810 11	-- 건축용 블록 및 벽돌			
6810 11 10	--- 분쇄한 부석 또는 입상의 슬래그를 기초로 한 가벼운 콘크리트의 것	1.7	0	
6810 11 90	--- 기타	1.7	0	
6810 19	-- 기타			
6810 19 10	--- 지붕용 타일	1.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타일 및 포장			
6810 19 31	---- 콘크리트제의 것	1.7	0	
6810 19 39	---- 기타	1.7	0	
6810 19 90	--- 기타	1.7	0	
	- 기타 제품			
6810 91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에 한한다)			
6810 91 10	--- 바닥 조립제품	1.7	0	
6810 91 90	--- 기타	1.7	0	
6810 99 00	-- 기타	1.7	0	
6811	석면 시멘트제품 · 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6811 40 00	- 석면을 함유한 것	1.7	0	
	- 석면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6811 81 00	-- 파형의 쉬트	1.7	0	
6811 82	-- 기타 쉬트 · 패널 ·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811 82 10	--- 지붕 또는 벽용 쉬트, 40 × 60c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1.7	0	
6811 82 90	--- 기타	1.7	0	
6811 83 00	-- 관 및 관의 연결구류	1.7	0	
6811 89 00	-- 기타 제품	1.7	0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이들 혼합물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석면의 사 · 직물 · 의류 · 모자 · 신발 또는 가스켓)(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6811호 및 제681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6812 80	- 청석면의 것			
6812 80 10	-- 가공한 섬유, 석면을 기제로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1.7	0	
6812 80 90	-- 기타	3.7	0	
	- 기타			
6812 91 00	--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및 모자류	3.7	0	
6812 92 00	-- 지 · 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3.7	0	
6812 93 00	--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3.7	0	
6812 99	-- 기타			
6812 99 10	----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1.7	0	
6812 99 90	---- 기타	3.7	0	
6813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쉬트 · 롤 · 스트립 · 세그먼트 · 디스크 · 와셔 · 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 ·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 · 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6813 20 00	- 석면을 함유한 것	2.7	0	
	- 석면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6813 81 00	--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2.7	0	
6813 89 00	-- 기타	2.7	0	
6814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 운모를 포함하며 지 ·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14 10 00	- 판 · 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7	0	
6814 90 00	- 기타	1.7	0	
6815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 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6815 10	- 비전기용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품			
6815 10 10	--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의 제품	Free	0	
6815 10 90	-- 기타	Free	0	
6815 20 00	- 이탄제품	Free	0	
	- 기타 제품			
6815 91 00	--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Free	0	
6815 99	-- 기타			
6815 99 10	---- 내화재료제의 것, 화학적 결합된 것	Free	0	
6815 99 90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9	제69류 도자제품			
	제1절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6901 00 00	벽돌 · 블록 · 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아토마이트)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2	0	
6902	내화벽돌 · 내화블록 · 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6902 10 00	마그네슘 · 칼슘 · 크로뮴원소(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및 산화크로뮴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2	0	
6902 20	- 알루미늄 ·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902 20 10	--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3인 것	2	0	
	-- 기타			
6902 20 91	---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초과 100분의 45이하인 것	2	0	
6902 20 99	--- 기타	2	0	
6902 90 00	- 기타	2	0	
6903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 레토트 · 도가니 · 머플 · 노즐 · 플러그 · 서포트 · 큐펠 · 관 · 쉬드 및 봉)(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6903 10 00	- 흑연이나 기타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5	0	
6903 20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과 실리카의 혼합물 또는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903 20 10	--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5미만인 것	5	0	
6903 20 90	--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5이상인 것	5	0	
6903 90	- 기타			
6903 90 10	-- 흑연이나 기타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50이하인 것	5	0	
6903 90 90	-- 기타	5	0	
	제2절 기타의 도자제품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 · 바닥 깔개용 블록 · 서포트타일 · 필러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6904 10 00	- 건축용 벽돌	2	0	
6904 90 00	- 기타	2	0	
6905	기와 ·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 및 기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 10 00	- 지붕타일	Free	0	
6905 90 00	- 기타	Free	0	
6906 00 00	도자제의 관 · 도관 · 홍통 및 관의 연결구류	Free	0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907 10 00	- 타일 ·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5	0	
6907 90	- 기타			
6907 90 10	-- '스팔트플라튼' 유형 2중 타일	5	0	
	-- 기타			
6907 90 91	--- 석재류	5	0	
6907 90 93	--- 점토 또는 도기류	5	0	
6907 90 99	--- 기타	5	0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908 10	- 타일 ·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6908 10 10	-- 도기류의 것	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908 10 90	-- 기타	7	0	
6908 90	- 기타			
	-- 도기류의 것			
6908 90 11	--- '스팔트플라튼' 유형 2중 타일	6	0	
	--- 기타, 최대 두께가			
6908 90 21	----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6908 90 29	---- 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 기타			
6908 90 31	--- '스팔트플라튼' 유형 2중 타일	5	0	
	--- 기타			
6908 90 51	---- 한 면이 90제곱센티미터이하인 것	7	0	
	---- 기타			
6908 90 91	----- 석재류	5	0	
6908 90 93	----- 점토 또는 도기류	5	0	
6908 90 99	----- 기타	5	0	
6909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품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6909 11 00	-- 자기제의 것	5	0	
6909 12 00	-- 모스 경도가 9이상인 물품	5	3	
6909 19 00	-- 기타	5	0	
6909 90 00	- 기타	5	3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변기통·수세식변기용 물통·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 10 00	- 자기제의 것	7	0	
6910 90 00	- 기타	7	0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1 10 00	-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12	3	
6911 90 00	- 기타	12	3	
6912 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			
6912 00 10	- 도기류의 것	5	0	
6912 00 30	- 석재류	5.5	3	
6912 00 50	- 점토 또는 도기류	9	0	
6912 00 90	- 기타	7	0	
6913	도자제의 소상 및 기타 장식용 제품			
6913 10 00	- 자기제의 것	6	0	
6913 90	- 기타			
6913 90 10	-- 도기류의 것	3.5	0	
	-- 기타			
6913 90 91	--- 석재류	6	0	
6913 90 93	--- 점토 또는 도기류	6	0	
6913 90 99	--- 기타	6	0	
6914	도자제의 기타 제품			
6914 10 00	- 자기제의 것	5	3	
6914 90	- 기타			
6914 90 10	-- 도기류의 것	3	0	
6914 90 90	-- 기타	3	0	
70	제70류 유리 및 유리제품			
7001 00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유리괴			
7001 00 10	-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 유리괴			
7001 00 91	-- 광유리	3	0	
7001 00 99	-- 기타	Free	0	
7002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외한다), 봉 또는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2 10 00	- 구	3	0	
7002 20	- 봉			
7002 20 10	-- 광유리제의 것	3	0	
7002 20 90	-- 기타	3	0	
	- 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002 31 00	-- 석영의 관	3	0	
7002 32 0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 의 것	3	0	
7002 39 00	-- 기타	3	0	
7003	주입법 및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슈트상 또는 프로파일상 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			
	망입하지 아니한 슈트유리			
7003 12	-- 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 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 반사 또는 무 반사층을 갖는 것			
7003 12 10	--- 광유리제의 것	3	0	
	--- 기타			
7003 12 91	---- 무반사층을 갖는 것	3	0	
7003 12 99	---- 기타	3,8 MIN 0,6 €/100 kg/br	0	
7003 19	-- 기타			
7003 19 10	--- 광유리제의 것	3	0	
7003 19 90	--- 기타	3,8 MIN 0,6 €/100 kg/br	0	
7003 20 00	- 망입 슈트유리	3,8 MIN 0,4 €/100 kg/br	0	
7003 30 00	- 프로파일	3	0	
7004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슈트상의 것에 한하 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4 20	- 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도 포함한다)· 불투 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 반사 또는 무 반사층을 갖는 것			
7004 20 10	-- 광유리	3	0	
	-- 기타			
7004 20 91	--- 무반사층을 갖는 것	3	0	
7004 20 99	--- 기타	4,4 MIN 0,4 €/100 kg/br	0	
7004 90	- 기타 유리			
7004 90 10	-- 광유리	3	0	
7004 90 70	-- 원예슈트유리	4,4 MIN 0,4 €/100 kg/br	0	
	-- 기타, 두께가			
7004 90 92	--- 2.5밀리미터 이하인 것	4,4 MIN 0,4 €/100 kg/br	0	
7004 90 98	---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4 MIN 0,4 €/100 kg/br	0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슈트상의 것에 한하 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5 10	-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 고 있는 것에 한한다)			
7005 10 05	-- 무반사층을 갖는 것	3	0	
	-- 기타, 두께가			
7005 10 25	--- 3.5밀리미터 이하인 것	2	0	
7005 10 30	--- 3.5밀리미터 초과 4.5밀리미터 이하인 것	2	0	
7005 10 80	--- 4.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	0	
	-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7005 21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하 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7005 21 25	--- 3.5밀리미터 이하인 것	2	0	
7005 21 30	--- 3.5밀리미터초과 4.5밀리미터이하인 것	2	0	
7005 21 80	--- 4.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	0	
7005 29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005 29 25	--- 3.5밀리미터 이하인 것	2	0	
7005 29 35	--- 3.5밀리미터초과 4.5밀리미터이하인 것	2	0	
7005 29 80	--- 4.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	0	
7005 30 00	- 망입 스위트유리	2	0	
7006 00	제7003호 · 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 · 가장자리 가공한 것 · 조각한 것 · 구멍을 뚫은 것 ·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에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7006 00 10	- 광유리	3	0	
7006 00 90	- 기타	3	0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강화 안전유리			
7007 11	-- 차량 · 항공기 ·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7007 11 10	--- 자동차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3	0	
7007 11 90	--- 기타	3	0	
7007 19	-- 기타			
7007 19 10	--- 에나멜을 칠한 것	3	0	
7007 19 20	--- 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 불투명한 것 ·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 흡수 · 반사층을 갖는것	3	0	
7007 19 80	--- 기타	3	0	
	- 접합 안전유리			
7007 21	-- 차량 · 항공기 ·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7007 21 20	--- 자동차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3	3	
7007 21 80	--- 기타	3	0	
7007 29 00	-- 기타	3	0	
7008 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7008 00 20	- 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 불투명한 것 ·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 흡수 · 반사층을 갖는것	3	0	
	- 기타			
7008 00 81	-- 밀폐조인트에 의해 가장자리가 시일드된 및 기체 · 기타 가스 또는 진공의 층에 의해 분리된 유리의 두 개의 판넬로 이루어진 것	3	0	
7008 00 89	-- 기타	3	0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009 10 00	- 백미러(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4	0	
	- 기타			
7009 91 00	-- 틀이 붙지 아니한 것	4	0	
7009 92 00	-- 틀이 붙은 것	4	0	
7010	유리제의 카보이 · 병 · 플라스크 · 단지 · 항아리 · 약병 · 앰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유리제의 보존병 및 유리제의 마개 · 뚜껑 및 기타 마개류			
7010 10 00	- 앰플	3	0	
7010 20 00	- 마개 · 뚜껑 및 기타 마개류	5	0	
7010 90	- 기타			
7010 90 10	-- 보존병(살균병)	5	0	
	-- 기타			
7010 90 21	--- 유리관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5	0	
	--- 기타, 명목 용량이			
7010 90 31	----- 2.5리터이상의 것	5	0	
	----- 2.5리터미만의 것			
	----- 식품 및 음료용			
	----- 병			
	----- 색깔이 없는 유리, 명목 용량이			
7010 90 41	----- 1리터이상	5	0	
7010 90 43	----- 0.33리터이상 1리터미만	5	0	
7010 90 45	----- 0.15리터이상 0.33리터이하	5	0	
7010 90 47	----- 0.15리터미만	5	0	
	----- 색깔이 없는 유리, 명목 용량이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010 90 51	----- 1리터이상	5	0	
7010 90 53	----- 0.33리터이상 1리터미만	5	0	
7010 90 55	----- 0.15리터이상 0.33리터이하	5	0	
7010 90 57	----- 0.15리터미만	5	0	
	----- 기타, 명목 용량이			
7010 90 61	----- 2.5리터이상인 것	5	0	
7010 90 67	----- 2.5리터미만인 것	5	0	
	----- 제약용, 명목 용량이			
7010 90 71	----- 0.055리터를 초과하는 것	5	0	
7010 90 79	----- 0.055리터 이하인 것	5	0	
	----- 기타 제품용			
7010 90 91	----- 색깔이 없는 유리의 것	5	0	
7010 90 99	----- 색깔이 있는 유리의 것	5	0	
7011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에 한한다)			
7011 10 00	- 전등용의 것	4	0	
7011 20 00	- 음극선관용의 것	4	0	
7011 90 00	- 기타	4	0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			
7013 10 00	- 유리 도자제의 것	11	0	
	- 굽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 22	-- 납 크리스탈제의 것			
7013 22 10	---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11	0	
7013 22 90	--- 기계로 잡을 수 있는 것	11	0	
7013 28	기타			
7013 28 10	---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11	0	
7013 28 90	--- 기계로 잡을 수 있는 것	11	0	
	- 기타 음료용 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 33	-- 납 크리스탈제의 것			
	---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7013 33 11	---- 절단 또는 기타 장식 된 것	11	0	
7013 33 19	---- 기타	11	0	
	---- 기계로 잡을 수 있는 것			
7013 33 91	---- 절단 또는 기타 장식 된 것	11	0	
7013 33 99	---- 기타	11	0	
7013 37	- 기타			
7013 37 10	--- 강화유리제의 것	11	0	
	--- 기타			
	---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7013 37 51	----- 절단 또는 기타 장식 된 것	11	0	
7013 37 59	----- 기타	11	0	
	----- 기계로 잡을 수 있는 것			
7013 37 91	----- 절단 또는 기타 장식 된 것	11	0	
7013 37 99	----- 기타	11	0	
	- 식탁용의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 및 주방용 유리제품(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 41	-- 납 크리스탈제의 것			
7013 41 10	---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11	0	
7013 41 90	--- 기계로 잡을 수 있는 것	11	0	
7013 42 0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의 것	11	0	
7013 49	-- 기타			
7013 49 10	--- 강화유리제의 것	11	0	
	--- 기타			
7013 49 91	----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11	0	
7013 49 99	---- 기계로 잡을 수 있는 것	11	0	
	- 기타 유리제품			
7013 91	-- 납 크리스탈제의 것			
7013 91 10	---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11	0	
7013 91 90	--- 기계로 잡을 수 있는 것	11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013 99 00	-- 기타	11	0	
7014 00 00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을 제외한다)	3	0	
7015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 · 구부린 것 · 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 10 0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3	0	
7015 90 00	- 기타	3	0	
7016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 · 슬래브 · 벽돌 · 스퀘어 · 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 · 패널 · 플레이트 · 셀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 유리			
7016 10 00	-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8	0	
7016 90	- 기타			
7016 90 10	--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	3	0	
7016 90 80	-- 기타	3 MIN 1,2 €/100 kg/br	0	
7017	이화학용 · 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017 10 00	- 석영제 또는 기타 석영 실리카의 것	3	0	
7017 20 0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의 것	3	0	
7017 90 00	- 기타	3	0	
7018	유리제의 비드 · 모조진주 · 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 스피어			
7018 10	- 유리제의 비드 · 모조진주 · 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			
	-- 유리제의 비드			
7018 10 11	--- 절단 및 기계로 광택낸 것	Free	0	
7018 10 19	--- 기타	7	0	
7018 10 30	-- 모조진주	Free	0	
	-- 모조귀석과 반귀석			
7018 10 51	--- 절단 및 기계로 광택낸 것	Free	0	
7018 10 59	--- 기타	3	0	
7018 10 90	-- 기타	3	0	
7018 20 00	-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 스피어	3	0	
7018 90	- 기타			
7018 90 10	-- 유리안구; 유리세공품의 제품	3	0	
7018 90 90	-- 기타	6	0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 · 직물)			
	슬라이버 · 로빙 · 실 및 단연사			
7019 11 00	-- 단연사(길이 50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7	0	
7019 12 00	-- 로빙	7	0	
7019 19	-- 기타			
7019 19 10	--- 필라멘트의 것	7	0	
7019 19 90	--- 짧은 직물의 것	7	0	
	- 얇은 쉬트(보일) · 웹 · 매트 · 매트리스 · 보드 및 이와 유사한 부직포			
7019 31 00	-- 매트	7	0	
7019 32 00	-- 얇은 쉬트(보일)	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019 39 00	-- 기타	5	0	
7019 40 00	- 로빙직물	7	0	
	- 기타 직물			
7019 51 00	-- 폭이 20센티미터이하인 것	7	0	
7019 52 00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평직물로서 중량이 250g/m ²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에 한한다)	7	0	
7019 59 00	-- 기타	7	0	
7019 90	- 기타			
7019 90 10	-- 벌크 또는 플록 내의 직물이 아닌 섬유	7	0	
7019 90 30	-- 유리섬유의 절연 관용 패드 및 케이싱	7	0	
	-- 기타			
7019 90 91	--- 기타 직물섬유의 것	7	0	
7019 90 99	--- 기타	7	0	
7020 00	유리제의 기타 제품			
7020 00 05	- 반도체 물질 제조용으로 확산 및 산화로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리액터 튜브와 홀더	Free	0	
	- 진공플라스크의 또는 기타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재			
7020 00 07	-- 완료되지 아니한 것	3	0	
7020 00 08	-- 완료된 것	6	0	
	- 기타			
7020 00 10	-- 석영제 또는 기타 석영 실리카의 것	3	0	
7020 00 30	-- 선팅창계수가 섬세 0도에서 섬세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의 것	3	0	
7020 00 80	-- 기타	3	0	
71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 · 귀석 또는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1절 천연 또는 양식진주 및 귀석 또는 반귀석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켜진 것 ·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7101 10 00	- 천연진주	Free	0	
	- 양식진주			
7101 21 00	-- 가공되지 아니한 것	Free	0	
7101 22 00	-- 가공된 것	Free	0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7102 10 00	- 선별하지 아니한 것	Free	0	
	- 공업용의 것			
7102 21 00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Free	0	
7102 29 00	-- 기타	Free	0	
	- 공업용이 아닌 것			
7102 31 00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Free	0	
7102 39 00	-- 기타	Free	0	
7103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켜진 것 ·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7103 10 00	-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Free	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 91 00	-- 루비 · 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Free	0	
7103 99 00	-- 기타	Free	0	
7104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켜진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7104 10 00	- 압전기용 석영	Free	0	
7104 20 0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104 90 00	- 기타	Free	0	
7105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7105 10 00	- 다이아몬드의 것	Free	0	
7105 90 00	- 기타	Free	0	
7106	제2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7106 10 00	- 분	Free	0	
	- 기타			
7106 91	-- 가공하지 아니한 것			
7106 91 10	--- 순도가 1,000당 999이상의 것	Free	0	
7106 91 90	--- 순도가 1,000당 999미만의 것	Free	0	
7106 92	-- 일차제품의 것			
7106 92 20	--- 순도가 1,000당 750 이상의 것	Free	0	
7106 92 80	--- 순도가 1,000당 750 미만의 것	Free	0	
7107 00 00	은을 입힌 비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Free	0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화폐용이 아닌 것			
7108 11 00	-- 분	Free	0	
7108 12 00	--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Free	0	
7108 13	--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것			
7108 13 10	--- 봉 · 형재 · 선 및 섹션; 판; 스위트 및 스트립(보강재를 제외하고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7108 13 80	--- 기타	Free	0	
7108 20 00	- 화폐용의 것	Free	0	
7109 00 00	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Free	0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플라티늄			
7110 11 0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Free	0	
7110 19	-- 기타			
7110 19 10	--- 봉 · 형재 · 선 및 섹션; 판; 스위트 및 스트립(보강재를 제외하고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7110 19 80	--- 기타	Free	0	
	- 팔라듐			
7110 21 0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Free	0	
7110 29 00	-- 기타	Free	0	
	- 로듐			
7110 31 0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Free	0	
7110 39 00	-- 기타	Free	0	
	- 이리듐 · 오스뮴 및 루테튬			
7110 41 0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Free	0	
7110 49 00	-- 기타	Free	0	
7111 00 00	백금을 입힌 비금속 · 은 또는 금(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Free	0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7112 30 00	-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Free	0	
	- 기타			
7112 91 00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Free	0	
7112 92 00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Free	0	
7112 99 00	-- 기타	Free	0	
	제3절 신변장식용품 · 금세공품과 은세공품 및 기타의 제품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113 11 00	--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	0	
7113 19 00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	0	
7113 20 00	- 귀금속을 입힌 비귀금속제의 것	4	0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114 11 00	--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0	
7114 19 00	-- 기타 귀금속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0	
7114 20 00	- 귀금속을 입힌 비귀금속제의 것	2	0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7115 10 00	-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드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Free	0	
7115 90	- 기타			
7115 90 10	-- 귀금속의 것	3	0	
7115 90 90	--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3	0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의 제품			
7116 10 0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Free	0	
7116 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 전적으로 천연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만들어진 것			
7116 20 11	--- 목걸이·팔찌 및 천연귀석 또는 반귀석의 기타 제품(파스너 또는 기타 악세서리 없이 단순히 실을 꿰는 것)	Free	0	
7116 20 19	--- 기타	2.5	0	
7116 20 90	-- 기타	2.5	0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비(卑)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117 11 00	-- 거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4	0	
7117 19	-- 기타			
7117 19 10	--- 유리의 부분품을 포함하는 것	4	0	
	--- 유리의 부분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7117 19 91	---- 은 또는 백금도금	4	0	
7117 19 99	---- 기타	4	0	
7117 90 00	- 기타	4	0	
7118	주화			
7118 10	-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7118 10 10	-- 은제의 것	Free	0	
7118 10 90	-- 기타	Free	0	
7118 90 00	- 기타	Free	0	
72	제72류 철강			
	제1절 일차재료와 입상 또는 분상의 제품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1 1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중량의 0.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망간의 함유량이 중량의 0.4퍼센트 이상인 것			
7201 10 11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1.7	0	
7201 10 19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것	1.7	0	
7201 10 30	-- 망간의 함유량이 중량의 0.1퍼센트 이상 0.4퍼센트미만인 것	1.7	0	
7201 10 90	-- 망간의 함유량이 중량의 0.1퍼센트미만인 것	Free	0	
7201 20 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중량의 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2	0	
7201 50	-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			
7201 50 10	-- 비합금선철(티타늄의 함유량이 중량의 0.3퍼센트 이상이나 1퍼센트 이하인 것 및 바나듐의 함유량이 중량의 0.5퍼센트 이상 1퍼센트 이하인 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201 50 90	-- 기타	1.7	0	
7202	페로알로이			
	페로망간			
7202 11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7202 11 20	--- 그레놀로메트리 5밀리미터 이하 및 망간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하는 것	2.7	0	
7202 11 80	--- 기타	2.7	0	
7202 19 00	-- 기타	2.7	0	
	- 페로실리콘			
7202 21 00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5.7	0	
7202 29	-- 기타			
7202 29 10	---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이상이나 100분의 10이하인 것	5.7	0	
7202 29 90	--- 기타	5.7	0	
7202 30 00	- 페로실리코망간	3.7	0	
	- 페로크로뮴			
7202 41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7202 41 1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고 100분의 6이하인 것	4	0	
7202 41 9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4	0	
7202 49	-- 기타			
7202 49 1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05퍼센트이하인 것	7	0	
7202 49 5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05퍼센트초과 0.5퍼센트이하인 것	7	0	
7202 49 9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5퍼센트초과 4퍼센트이하인 것	7	0	
7202 50 00	- 페로실리코크로뮴	2.7	0	
7202 60 00	- 페로니켈	Free	0	
7202 70 00	- 페로몰리브데늄	2.7	0	
7202 80 00	-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Free	0	
	- 기타			
7202 91 00	--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2.7	0	
7202 92 00	-- 페로바나듐	2.7	0	
7202 93 00	-- 페로니오븀	Free	0	
7202 99	-- 기타			
7202 99 10	--- 인철	Free	0	
7202 99 30	--- 페로실리코망간	2.7	0	
7202 99 80	--- 기타	2.7	0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철의 철제품(럼프 · 펄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순도가 최저 전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 · 펄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3 10 0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Free	0	
7203 90 00	- 기타	Free	0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4 10 00	-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 합금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 21	-- 스테인리스강의 것			
7204 21 10	---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 이상인 것	Free	0	
7204 21 90	--- 기타	Free	0	
7204 29 00	-- 기타	Free	0	
7204 30 0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 41	-- 선삭 · 세이빙 · 칩 · 밀링웨이스트 · 톱밥 · 파일링 · 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204 41 10	--- 선삭 · 세이빙 · 칩 · 밀링웨이스트 · 톱밥 및 파일링	Free	0	
	--- 트리밍 및 스탬핑			
7204 41 91	---- 번들상의 것	Free	0	
7204 41 99	---- 기타	Free	0	
7204 49	-- 기타			
7204 49 10	--- 절단된 파편	Free	0	
	--- 기타			
7204 49 30	---- 번들상의 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204 49 90	---- 기타	Free	0	
7204 50 0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Free	0	
7205	입과 분(선철·스피그라이즈 및 철강의 것에 한한다)			
7205 10 00	- 입	Free	0	
	- 분			
7205 21 00	-- 합금강의 것	Free	0	
7205 29 00	-- 기타	Free	0	
	제2절 철과 비합금강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을 제외한다)			
7206 10 00	- 잉곳	Free	0	
7206 90 00	- 기타	Free	0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인 것			
7207 11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연속주조방식으로 압연 또는 획득되는 것			
7207 11 11	---- 궤삭광의 것	Free	0	
	---- 기타			
7207 11 14	----- 두께가 130밀리미터 이하인 것	Free	0	
7207 11 16	----- 두께가 13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7207 11 90	--- 단조된 것	Free	0	
7207 12	-- 기타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7207 12 10	--- 연속된 주물에 의해 압착 또는 획득되는 것	Free	0	
7207 12 90	--- 단조된 것	Free	0	
7207 19	-- 기타			
	--- 단면이 원형 또는 다각형의 것			
7207 19 12	---- 연속된 주물에 의해 압착 또는 획득되는 것	Free	0	
7207 19 19	---- 단조된 것	Free	0	
7207 19 80	--- 기타	Free	0	
7207 2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이상인 것			
	-- 단면이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 포함), 폭이 두께의 2배 이상의 것			
	--- 연속된 주물에 의해 압착 또는 획득되는 것			
7207 20 11	---- 궤삭광의 것	Free	0	
	---- 기타, 함유량의 중량이			
7207 20 15	----- 0.25퍼센트이상 0.6퍼센트미만인 탄소의 것	Free	0	
7207 20 17	----- 0.6퍼센트이상인 탄소의 것	Free	0	
7207 20 19	--- 단조된 것	Free	0	
	-- 기타, 직사각형(정사각형 제외)의 단면의 것			
7207 20 32	--- 연속된 주물에 의해 압착 또는 획득되는 것	Free	0	
7207 20 39	--- 단조된 것	Free	0	
	-- 단면이 원형 또는 다각형의 것			
7207 20 52	--- 연속된 주물에 의해 압착 또는 획득되는 것	Free	0	
7207 20 59	--- 단조된 것	Free	0	
7207 20 80	-- 기타	Free	0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08 10 00	- 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Free	0	
	-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산세한 것에 한한다)			
7208 25 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Free	0	
7208 26 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Free	0	
7208 27 00	--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08 36 00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7208 37 00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 10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208 38 00	--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 4.75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08 39 00	--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08 40 00	-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코일상이 아닌 것으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08 5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08 51 20	--- 두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 두께가 10밀리미터초과 15밀리미터미만인 것, 폭이			
7208 51 91	---- 2,050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08 51 98	---- 2,050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08 52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 10밀리미터이하인 것			
7208 52 10	--- 4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 폭이 1,250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 기타, 폭이			
7208 52 91	---- 2,050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08 52 99	---- 2,050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08 53	--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 4.75밀리미터미만인 것			
7208 53 10	--- 4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 폭이 1,250밀리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4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08 53 90	--- 기타	Free	0	
7208 54 00	--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08 90	- 기타			
7208 90 20	-- 천공한 것	Free	0	
7208 90 80	-- 기타	Free	0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코일상의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7209 15 00	--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09 16	-- 두께가 1밀리미터초과 3밀리미터미만인 것			
7209 16 10	--- '전기의 것'	Free	0	
7209 16 90	--- 기타	Free	0	
7209 17	-- 두께가 0.5밀리미터이상 1밀리미터이하인 것			
7209 17 10	--- '전기의 것'	Free	0	
7209 17 90	--- 기타	Free	0	
7209 18	-- 두께가 0.5밀리미터미만인 것			
7209 18 10	--- '전기의 것'	Free	0	
	--- 기타			
7209 18 91	---- 두께가 0.35밀리미터이상 0.5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09 18 99	---- 두께가 0.35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09 25 00	--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09 26	-- 두께가 1밀리미터초과 3밀리미터미만인 것			
7209 26 10	--- '전기의 것'	Free	0	
7209 26 90	--- 기타	Free	0	
7209 27	-- 두께가 0.5밀리미터이상 1밀리미터이하인 것			
7209 27 10	--- '전기의 것'	Free	0	
7209 27 90	--- 기타	Free	0	
7209 28	-- 두께가 0.5밀리미터미만인 것			
7209 28 10	--- '전기의 것'	Free	0	
7209 28 90	--- 기타	Free	0	
7209 90	- 기타			
7209 90 20	-- 천공한 것	Free	0	
7209 90 80	-- 기타	Free	0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주석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 11 00	-- 두께가 0.5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10 12	-- 두께가 0.5밀리미터미만인 것			
7210 12 20	--- 양철판	Free	0	
7210 12 80	--- 기타	Free	0	
7210 20 00	- 납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Free	0	
7210 30 00	-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210 41 00	-- 파형의 것	Free	0	
7210 49 00	-- 기타	Free	0	
7210 50 00	-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 알루미늄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 61 00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210 69 00	-- 기타	Free	0	
7210 70	- 페인트한 것 ·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7210 70 10	-- 양철판, 바니시한 것;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 바니시한 것	Free	0	
7210 70 80	-- 기타	Free	0	
7210 90	- 기타			
7210 90 30	-- 클래드한 것	Free	0	
7210 90 40	-- 도금한 것 및 프린트한 것	Free	0	
7210 90 80	-- 기타	Free	0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드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1 13 00	-- 4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하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Free	0	
7211 14 00	--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Free	0	
7211 19 00	-- 기타	Free	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1 23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미만인 것			
7211 23 20	--- '전기의 것'	Free	0	
	--- 기타			
7211 23 30	---- 두께가 0.35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11 23 80	---- 두께가 0.35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11 29 00	-- 기타	Free	0	
7211 90	- 기타			
7211 90 20	-- 천공한 것	Free	0	
7211 90 80	-- 기타	Free	0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2 10	- 주석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2 10 10	-- 양철판(표면처리 이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것)	Free	0	
7212 10 90	-- 기타	Free	0	
7212 20 00	-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212 30 0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212 40	- 페인트한 것 ·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7212 40 20	-- 양철판, 바니시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 바니시한 것	Free	0	
7212 40 80	-- 기타	Free	0	
7212 5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2 50 20	--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212 50 30	-- 크로뮴 또는 니켈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212 50 40	-- 동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 알루미늄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2 50 61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212 50 69	--- 기타	Free	0	
7212 50 90	-- 기타	Free	0	
7212 60 00	- 클래드한 것	Free	0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3 10 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 리브 · 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	Free	0	
7213 20 00	- 기타, 쾌삭광의 것	Free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213 91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미만인 것			
7213 91 10	--- 콘크리트 강화에 사용되는 유형의 것	Free	0	
7213 91 20	--- 타이코드에 사용되는 유형의 것	Free	0	
	--- 기타			
7213 91 41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06퍼센트이하인 것	Free	0	
7213 91 49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06퍼센트초과 0.25퍼센트미만인 것	Free	0	
7213 91 7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초과 0.75퍼센트이하인 것	Free	0	
7213 91 9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Free	0	
7213 99	--기타			
7213 99 1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미만인 것	Free	0	
7213 99 9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이상인 것	Free	0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 10 00	- 단조한 것	Free	0	
7214 20 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흠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Free	0	
7214 30 00	- 기타(괘삭광의 것에 한한다)	Free	0	
	- 기타			
7214 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것을 제외한다)			
7214 91 1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미만인 것	Free	0	
7214 91 9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이상인 것	Free	0	
7214 99	-- 기타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미만인 것			
7214 99 10	---- 콘크리트 강화에 사용되는 유형의 것	Free	0	
	---- 기타, 횡단면이 원형인 지름이			
7214 99 31	----- 80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14 99 39	----- 80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14 99 50	---- 기타	Free	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이상인 것			
	---- 횡단면이 원형인 지름이			
7214 99 71	----- 80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14 99 79	----- 80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14 99 95	---- 기타	Free	0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5 10 00	- 괘삭광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Free	0	
7215 50	-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미만인 것			
7215 50 11	--- 직사각형(정사각형 제외)의 단면의 것	Free	0	
7215 50 19	--- 기타	Free	0	
7215 50 8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이상인 것	Free	0	
7215 90 00	- 기타	Free	0	
72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7216 10 00	- 유·아이 또는 에이치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Free	0	
	- 엘 또는 티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7216 21 00	-- 엘형강	Free	0	
7216 22 00	-- 티형강	Free	0	
	- 유·아이 또는 에이치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7216 31	-- 유형강			
7216 31 10	--- 높이가 80밀리미터이상 220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216 31 90	--- 높이가 22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7216 32	-- 아이형강			
	--- 높이가 80밀리미터이상 220밀리미터이하인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216 32 11	---- 평행 플랜지 표면을 포함하는 것	Free	0	
7216 32 19	---- 기타	Free	0	
	--- 높이가 22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16 32 91	---- 평행 플랜지 표면을 포함하는 것	Free	0	
7216 32 99	---- 기타	Free	0	
7216 33	-- 에이치형강			
7216 33 10	--- 높이가 80밀리미터이상 180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216 33 90	--- 높이가 18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7216 40	- 엘 또는 티형강(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16 40 10	--엘형강	Free	0	
7216 40 90	-- 티형강	Free	0	
7216 50	- 기타 형강(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16 50 10	-- 80밀리미터의 정사각형사이드를 포함할 수 있는 횡단면의 것	Free	0	
	-- 기타			
7216 50 91	--- 벌브형강	Free	0	
7216 50 99	--- 기타	Free	0	
	- 형강(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6 6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7216 61 10	--- 씨 · 엘 · 유 · 지 · 오메가 또는 오픈엔드 형강	Free	0	
7216 61 90	--- 기타	Free	0	
7216 69 00	-- 기타	Free	0	
	- 기타			
7216 9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7216 91 10	--- 프로파일(벨트) 쉬트	Free	0	
7216 91 80	--- 기타	Free	0	
7216 99 00	-- 기타	Free	0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7 10	-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미만인 것			
7217 10 10	--- 횡단면의 최대 지수가 0.8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 횡단면의 최대 지수가 0.8밀리미터이상의 것			
7217 10 31	---- 압축 과정에서의 톱니 모양 · 립스 · 홈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하는 것	Free	0	
7217 10 39	---- 기타	Free	0	
7217 10 5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이상 0.6퍼센트미만인 것	Free	0	
7217 10 9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6퍼센트이상인 것	Free	0	
7217 20	-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미만인 것			
7217 20 10	--- 횡단면의 최대 지수가 0.8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217 20 30	--- 횡단면의 최대 지수가 0.8밀리미터이상의 것	Free	0	
7217 20 5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이상 0.6퍼센트미만인 것	Free	0	
7217 20 9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6퍼센트이상인 것	Free	0	
7217 30	- 기타 비(卑)금속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미만인 것			
7217 30 41	--- 동으로 도포한 것	Free	0	
7217 30 49	--- 기타	Free	0	
7217 30 5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이상 0.6퍼센트미만인 것	Free	0	
7217 30 9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6퍼센트이상인 것	Free	0	
7217 90	- 기타			
7217 90 2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미만인 것	Free	0	
7217 90 5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25퍼센트이상 0.6퍼센트미만인 것	Free	0	
7217 90 9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6퍼센트이상인 것	Free	0	
	제3절 스테인리스강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218 10 00	-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Free	0	
	- 기타			
7218 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의 것을 제외한다)			
7218 91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18 91 8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18 99	-- 기타			
	--- 단면이 정사각형의 것			
7218 99 11	---- 연속된 주물에 의해 압착 또는 획득되는 것	Free	0	
7218 99 19	---- 단조된 것	Free	0	
	--- 기타			
7218 99 20	---- 연속된 주물에 의해 압착 또는 획득되는 것	Free	0	
7218 99 80	---- 단조된 것	Free	0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9 11 00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7219 12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 10밀리미터이하인 것			
7219 12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19 12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19 1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미만인 것			
7219 13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19 13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19 14	--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인 것			
7219 14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19 14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 열간압연한 것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코일상의 것이 아닌 것)			
7219 2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19 21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19 21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19 22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 10밀리미터이하인 것			
7219 22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19 22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19 23 00	--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 4.75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19 24 00	-- 두께가 3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9 31 00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19 32	--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 4.75밀리미터미만인 것			
7219 32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19 32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19 33	-- 두께가 1밀리미터초과 3밀리미터미만인 것			
7219 33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19 33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19 34	-- 두께가 0.5밀리미터이상 1밀리미터이하인 것			
7219 34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19 34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19 35	-- 두께가 0.5밀리미터미만인 것			
7219 35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19 35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19 90	기타			
7219 90 20	-- 천공한 것	Free	0	
7219 90 80	-- 기타	Free	0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20 11 00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20 12 00	-- 두께가 4.75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20 2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인 것, 함유량이			
7220 20 21	--- 100분의 2.5이상의 니켈인 것	Free	0	
7220 20 29	--- 100분의 2.5미만의 니켈인 것	Free	0	
	-- 두께가 0.35밀리미터초과 3밀리미터미만인 것, 함유량이 중량의			
7220 20 41	--- 100분의 2.5이상의 니켈인 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220 20 49	--- 100분의 2.5미만의 니켈인 것	Free	0	
	-- 두께가 0.35밀리미터 이하인 것, 함유량이 중량의			
7220 20 81	--- 100분의 2.5이상의 니켈인 것	Free	0	
7220 20 89	--- 100분의 2.5미만의 니켈인 것	Free	0	
7220 90	- 기타			
7220 90 20	-- 천공한 것	Free	0	
7220 90 80	-- 기타	Free	0	
7221 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1 00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Free	0	
7221 00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22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봉(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2 11	-- 횡단면이 원형인 것			
	--- 지름이 80밀리미터이상인 것, 함유량이 중량의			
7222 11 11	---- 100분의 2.5이상의 니켈인 것	Free	0	
7222 11 19	---- 100분의 2.5미만의 니켈인 것	Free	0	
	--- 지름이 80밀리미터미만인 것, 함유량의 중량이			
7222 11 81	---- 100분의 2.5이상의 니켈인 것	Free	0	
7222 11 89	---- 100분의 2.5미만의 니켈인 것	Free	0	
7222 19	-- 기타			
7222 19 1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	Free	0	
7222 19 9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Free	0	
7222 20	-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횡단면이 원형인 것			
	--- 지름이 80밀리미터이상인 것, 함유량의 중량이			
7222 20 11	---- 100분의 2.5이상의 니켈인 것	Free	0	
7222 20 19	---- 100분의 2.5미만의 니켈인 것	Free	0	
	--- 지름이 25밀리미터이상 80밀리미터미만인 것, 함유량의 중량이			
7222 20 21	---- 100분의 2.5이상의 니켈인 것	Free	0	
7222 20 29	---- 100분의 2.5미만의 니켈인 것	Free	0	
	---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함유량의 중량이			
7222 20 31	---- 100분의 2.5이상의 니켈인 것	Free	0	
7222 20 39	---- 100분의 2.5미만의 니켈인 것	Free	0	
	-- 기타, 함유량의 중량이			
7222 20 81	--- 100분의 2.5이상의 니켈인 것	Free	0	
7222 20 89	--- 100분의 2.5미만의 니켈인 것	Free	0	
7222 30	- 기타 봉			
	-- 단조된 것, 함유량의 중량이			
7222 30 51	--- 100분의 2.5이상의 니켈인 것	Free	0	
7222 30 91	--- 100분의 2.5미만의 니켈인 것	Free	0	
7222 30 97	-- 기타	Free	0	
7222 40	- 형강			
7222 40 10	-- 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Free	0	
7222 40 50	--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Free	0	
7222 40 90	-- 기타	Free	0	
7223 00	스테인리스강의 선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것			
7223 00 11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8이상 100분의 31이하인 것 및 크로뮴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2 이하인 것	Free	0	
7223 00 19	-- 기타	Free	0	
	-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것			
7223 00 91	-- 크로뮴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25이하인 것 및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6이하인 것	Free	0	
7223 00 99	-- 기타	Free	0	
	제4절 기타 합금강 및 합금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224 10	-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7224 10 10	-- 공구강의 것	Free	0	
7224 10 90	-- 기타	Free	0	
7224 90	- 기타			
7224 90 02	-- 공구강의 것	Free	0	
	-- 기타			
	---- 단면이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 포함)			
	---- 연속된 주물에 의해 열간압연 또는 획득되는 것			
	----- 폭이 두께의 2배 이상의 것			
7224 90 03	----- 고속도강의 것	Free	0	
7224 90 05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7퍼센트이하인 것, 망간의 0.5퍼센트이상 1.2퍼센트이하인 것, 실리콘의 0.6퍼센트이상 2.3퍼센트이하인 것; 보론의 함유량이 중량의 0.0008퍼센트이상인 것으로 기타 성분이 제72류의 주 제 1(f)호에서 언급한 내용물의 최소치 미만인 것	Free	0	
7224 90 07	----- 기타	Free	0	
7224 90 14	----- 기타	Free	0	
7224 90 18	---- 단조된 것	Free	0	
	---- 기타			
	---- 연속된 주물에 의해 열간압연 또는 획득되는 것			
7224 90 31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0.9이상 100분의 1.15이하인 것, 크로뮴의 100분의 0.5이상 100분의 3이하인 것, 몰리브데넘이 100분의 0.5이하로 포함된 것	Free	0	
7224 90 38	----- 기타	Free	0	
7224 90 90	---- 단조된 것	Free	0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규소전기강의 것			
7225 11 00	-- 방향성의 것	Free	0	
7225 19	-- 기타			
7225 19 10	--- 열간압연한 것	Free	0	
7225 19 90	--- 냉간압연한 것	Free	0	
7225 30	-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5 30 10	-- 공구강의 것	Free	0	
7225 30 30	-- 고속도강의 것	Free	0	
7225 30 90	-- 기타	Free	0	
7225 40	- 기타(코일상의 것을 제외하며,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5 40 12	-- 공구강의 것	Free	0	
7225 40 15	-- 고속도강의 것	Free	0	
	-- 기타			
7225 40 40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7225 40 60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 10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225 40 90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Free	0	
7225 5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5 50 20	-- 고속도강의 것	Free	0	
7225 50 80	-- 기타	Free	0	
	- 기타			
7225 91 00	--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225 92 0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225 99 00	-- 기타	Free	0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규소전기강의 것			
7226 11 00	-- 방향성의 것	Free	0	
7226 19	-- 기타			
7226 19 10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Free	0	
7226 19 80	--- 기타	Free	0	
7226 20 00	- 고속도강의 것	Free	0	
	- 기타			
7226 91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26 91 20	--- 공구강의 것	Free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226 91 91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26 91 99	---- 두께가 4.75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26 92 0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Free	0	
7226 99	-- 기타			
7226 99 10	---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226 99 3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226 99 70	--- 기타	Free	0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7 10 00	- 고속도강의 것	Free	0	
7227 20 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Free	0	
7227 90	- 기타			
7227 90 10	-- 보론의 함유량이 중량의 0.0008퍼센트이상인 것으로 기타 성분이 제72류의 주석 제1(f)호에서 언급한 내용물의 최소치 미만인 것	Free	0	
7227 90 5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9퍼센트이상 1.15퍼센트이하인 것, 크로뮴의 0.5퍼센트이상 2퍼센트이하인 것, 몰리브덴이 0.5퍼센트이하로 포함된 것	Free	0	
7227 90 95	-- 기타	Free	0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8 10	- 고속도강의 봉			
7228 10 20	-- 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한 것으로, 클래드보다 그 이상 가공하지 아니한 것	Free	0	
7228 10 50	-- 단조된 것	Free	0	
7228 10 90	-- 기타	Free	0	
7228 20	- 실리코망간강의 봉			
7228 20 10	-- 직사각형(정사각형 제외)의 단면의 것, 4면이 열간압연된 것	Free	0	
	-- 기타			
7228 20 91	--- 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한 것으로, 클래드보다 그 이상 가공하지 아니한 것	Free	0	
7228 20 99	--- 기타	Free	0	
7228 30	- 기타의 봉(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8 30 20	-- 공구강의 것	Free	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9퍼센트이상 1.15퍼센트이하인 것, 크로뮴의 0.5퍼센트이상 2퍼센트이하인 것, 몰리브덴이 0.5퍼센트이하로 포함된 것			
7228 30 41	--- 횡단면이 원형인 지름이 80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28 30 49	--- 기타	Free	0	
	-- 기타			
	--- 횡단면이 원형인 것, 지름이			
7228 30 61	---- 80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28 30 69	---- 80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28 30 70	--- 직사각형(정사각형 제외)의 단면의 것, 4면이 열간압연된 것	Free	0	
7228 30 89	--- 기타	Free	0	
7228 40	-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8 40 10	-- 공구강의 것	Free	0	
7228 40 90	-- 기타	Free	0	
7228 50	- 기타의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8 50 20	-- 공구강의 것	Free	0	
7228 50 4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9퍼센트이상 1.15퍼센트이하인 것, 크로뮴의 0.5퍼센트이상 2퍼센트이하인 것, 몰리브덴이 0.5퍼센트이하로 포함된 것	Free	0	
	-- 기타			
	--- 횡단면이 원형인 것, 지름이			
7228 50 61	---- 80밀리미터이상인 것	Free	0	
7228 50 69	---- 80밀리미터미만인 것	Free	0	
7228 50 80	--- 기타	Free	0	
7228 60	- 기타의 봉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228 60 20	-- 공구강의 것	Free	0	
7228 60 80	-- 기타	Free	0	
7228 70	- 형강			
7228 70 10	-- 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Free	0	
7228 70 90	-- 기타	Free	0	
7228 80 00	- 중공드릴봉	Free	0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7229 20 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Free	0	
7229 90	- 기타			
7229 90 20	-- 고속도강의 것	Free	0	
	-- 기타			
7229 90 50	---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9퍼센트이상 1.15퍼센트이하인 것, 크로뮴의 0.5퍼센트이상 2퍼센트이하인 것, 몰리브데넘이 0.5퍼센트이하로 포함된 것	Free	0	
7229 90 90	-- 기타	Free	0	
73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7301 10 00	- 강시판	Free	0	
7301 20 00	- 형강	Free	0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 책궤조와 치형궤조 · 첨단궤조 · 교차구류 ·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 침목(크로스 타이) · 계목판 · 좌철 · 좌철쇄기 · 저판(베이스플레이트) · 궤조클립 · 노반 ·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2 10	- 궤조			
7302 10 10	-- 전류 도전의 것(비철금속의 부분품을 포함하는 것)	Free	0	
	-- 기타			
	--- 새것			
	---- 비그놀 레일			
7302 10 21	----- 1미터당 중량이 46킬로그램이상의 것	Free	0	
7302 10 23	----- 1미터당 중량이 27킬로그램이상 46킬로그램미만의 것	Free	0	
7302 10 29	----- 1미터당 중량이 27킬로그램미만의 것	Free	0	
7302 10 40	---- 홈 레일	Free	0	
7302 10 50	---- 기타	Free	0	
7302 10 90	--- 중고	Free	0	
7302 30 00	- 첨단궤조 · 교차구류 ·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2.7	0	
7302 40 00	- 계목판과 저판	Free	0	
7302 90 00	- 기타	Free	0	
7303 00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3 00 10	- 압축 시스템에 사용되는 종류의 관	3.2	0	
7303 00 90	- 기타	3.2	0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4 11 0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Free	0	
7304 19	-- 기타			
7304 19 10	--- 바깥지름이 168.3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4 19 30	--- 바깥지름이 168.3밀리미터를 초과하고 406.4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4 19 90	---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 · 튜빙과 드릴파이프			
7304 22 00	--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Free	0	
7304 23 00	-- 기타 드릴파이프	Free	0	
7304 24 00	-- 기타,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Free	0	
7304 29	-- 기타			
7304 29 10	--- 바깥지름이 168.3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4 29 30	--- 바깥지름이 168.3밀리미터 초과 406.4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4 29 90	---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304 31	--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7304 31 20	---- 정밀튜브	Free	0	
7304 31 80	---- 기타	Free	0	
7304 39	-- 기타			
7304 39 1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균일한 벽의 두께의 것, 기타 횡단면과 벽 두께의 전적으로 관 제조용	Free	0	
	---- 기타			
7304 39 30	----- 바깥지름이 42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벽의 두께가 1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 기타			
	----- 나선 가공 또는 나선 가공할 수 있는 튜브(가스 파이프)			
7304 39 52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304 39 58	----- 기타	Free	0	
	----- 기타, 바깥지름이			
7304 39 92	----- 168.3밀리미터 이하인 것	Free	0	
7304 39 93	----- 168.3밀리미터초과 406.4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4 39 99	-----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 41 00	--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Free	0	
7304 49	-- 기타			
7304 49 10	--가공하지 아니한 것, 균일한 벽의 두께의 것, 기타 횡단면과 벽 두께의 전적으로 관 제조용	Free	0	
	---- 기타			
7304 49 92	----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4 49 99	----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 51	--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균일한 벽의 두께의 것, 합금강의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9퍼센트이상 1.15퍼센트이하인 것, 크로뮴의 0.5퍼센트이상 2퍼센트이하인 것, 몰리브데넘이 0.5퍼센트이하로 포함된 것, 길이가			
7304 51 12	---- 0.5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4 51 18	---- 0.5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 기타			
7304 51 81	---- 정밀튜브	Free	0	
7304 51 89	---- 기타	Free	0	
7304 59	-- 기타			
7304 59 1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균일한 벽의 두께의 것, 기타 횡단면과 벽 두께의 전적으로 관 제조용	Free	0	
	---- 기타(균일한 벽의 두께의 것, 합금강의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0.9퍼센트이상 1.15퍼센트이하인 것, 크로뮴의 0.5퍼센트이상 2퍼센트이하인 것, 몰리브데넘이 0.5퍼센트이하로 포함된 것), 길이가			
7304 59 32	---- 0.5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4 59 38	---- 0.5미터 초과하는 것	Free	0	
	---- 기타			
7304 59 92	---- 바깥지름이 168.3밀리미터 이하인 것	Free	0	
7304 59 93	---- 바깥지름이 168.3밀리미터초과 406.4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4 59 99	----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7304 90 00	- 기타	Free	0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예: 용접 ·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5 11 00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Free	0	
7305 12 00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에 한한다)	Free	0	
7305 19 00	-- 기타	Free	0	
7305 20 00	-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Free	0	
	- 기타(용접한 것에 한한다)			
7305 31 00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Free	0	
7305 39 00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305 90 00	- 기타	Free	0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6 11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6 11 10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Free	0	
7306 11 90	--- 나선 용접한 것	Free	0	
7306 19	-- 기타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7306 19 11	---- 바깥지름이 168.3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6 19 19	---- 바깥지름이 168.3밀리미터초과 406.4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6 19 90	--- 나선 용접한 것	Free	0	
	- 오일 또는 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종류의 케이싱 및 튜브, 용접한 것,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7306 21 00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Free	0	
7306 29 00	-- 기타	Free	0	
7306 30	-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 정밀튜브, 벽의 두께가			
7306 30 11	--- 2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6 30 19	--- 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 기타			
	--- 나선 가공 또는 나선 가공할 수 있는 튜브(가스 파이프)			
7306 30 41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306 30 49	---- 기타	Free	0	
	--- 기타, 바깥지름이			
	---- 168.3밀리미터이하인 것			
7306 30 72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306 30 77	----- 기타	Free	0	
7306 30 80	---- 168.3밀리미터초과 406.4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06 40	-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 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6 40 20	--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Free	0	
7306 40 80	-- 기타	Free	0	
7306 50	-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6 50 20	-- 정밀튜브	Free	0	
7306 50 80	-- 기타	Free	0	
	-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에 한 한다)			
7306 61	--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 벽의 두께가 2밀리미터이하인 것			
7306 61 11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Free	0	
7306 61 19	---- 기타	Free	0	
	--- 벽의 두께가 2밀리미터이하인 것			
7306 61 91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Free	0	
7306 61 99	---- 기타	Free	0	
7306 69	--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7306 69 1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Free	0	
7306 69 90	--- 기타	Free	0	
7306 90 00	- 기타	Free	0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 주조한 연결구류			
7307 11	-- 비가단주철제의 것			
7307 11 10	--- 압축시스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3.7	0	
7307 11 90	--- 기타	3.7	0	
7307 19	-- 기타			
7307 19 10	--- 가단주철제의 것	3.7	0	
7307 19 90	--- 기타	3.7	0	
	- 기타,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7307 21 00	-- 플랜지	3.7	0	
7307 22	-- 나선가공한 엘보 · 벤드와 슬리브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307 22 10	--- 슬리브	Free	0	
7307 22 90	--- 엘보 및 벤드	3.7	0	
7307 23	-- 바트용접용 연결구			
7307 23 10	--- 엘보 및 벤드	3.7	0	
7307 23 90	--- 기타	3.7	0	
7307 29	-- 기타			
7307 29 10	--- 나선가공한 것	3.7	0	
7307 29 30	--- 용접용	3.7	0	
7307 29 90	--- 기타	3.7	0	
	- 기타			
7307 91 00	-- 플랜지	3.7	0	
7307 92	-- 나선가공한 엘보·벤드와 슬리브			
7307 92 10	--- 슬리브	Free	0	
7307 92 90	--- 엘보 및 벤드	3.7	0	
7307 93	-- 바트용접용 연결구			
	--- 최대 바깥지름이 609.6밀리미터이하인 것			
7307 93 11	---- 엘보 및 벤드	3.7	0	
7307 93 19	---- 기타	3.7	0	
	--- 최대 바깥지름이 609.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7 93 91	---- 엘보 및 벤드	3.7	0	
7307 93 99	---- 기타	3.7	0	
7307 99	-- 기타			
7307 99 10	--- 나선가공한 것	3.7	0	
7307 99 30	--- 용접용	3.7	0	
7307 99 90	--- 기타	3.7	0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8 10 00	- 다리와 교량	Free	0	
7308 20 00	- 탑과 격자주	Free	0	
7308 30 00	-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Free	0	
7308 40	-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광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7308 40 10	-- 광도받침대	Free	0	
7308 40 90	-- 기타	Free	0	
7308 90	- 기타			
7308 90 10	-- 독·보·록게이트·부잔교·고정된 부두 및 기타 해운 및 수로 구조물	Free	0	
	-- 기타			
	--- 전적으로 또는 주로 쉬트상의 것			
7308 90 51	---- 프로파일(벨트) 쉬트의 두 겹으로 이루어진 판넬(절연 코어 포함)	Free	0	
7308 90 59	---- 기타	Free	0	
7308 90 99	---- 기타	Free	0	
7309 0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09 00 10	- 가스용(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한다)	2.2	0	
	- 액체용			
7309 00 30	-- 안을 댄 것 또는 가열 절연용	2.2	0	
	-- 기타, 용적이			
7309 00 51	--- 100,000리터를 초과하는 것	2.2	0	
7309 00 59	--- 100,000리터이하인 것	2.2	0	
7309 00 90	- 고체용	2.2	0	
731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0 10 00	- 용적이 50리터이상인 것	2.7	0	
	- 용적이 50리터미만인 것			
7310 21	--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통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310 21 11	--- 음식 보존용 캔	2.7	0	
7310 21 19	--- 음료 보존용 캔	2.7	0	
	--- 기타, 벽의 두께가			
7310 21 91	---- 0.5밀리미터미만인 것	2.7	0	
7310 21 99	---- 0.5밀리미터이상인 것	2.7	0	
7310 29	-- 기타			
7310 29 10	--- 벽의 두께가 0.5밀리미터미만인 것	2.7	0	
7310 29 90	--- 벽의 두께가 0.5밀리미터이상인 것	2.7	0	
7311 00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7311 00 10	- 이음매가 없는 것	2.7	0	
	- 기타, 용적이			
7311 00 91	-- 1,000리터미만인 것	2.7	0	
7311 00 99	-- 1,000리터이상인 것	2.7	0	
7312	철강제의 연선 · 로프 · 케이블 · 엮은 밴드 · 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7312 10	- 연선 · 로프 및 케이블			
7312 10 2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Free	0	
	-- 기타, 횡단면의 최대지수가			
	---- 3밀리미터이하인 것			
7312 10 41	---- 동-아연 합금제(황동)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312 10 49	---- 기타	Free	0	
	---- 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연선			
7312 10 61	----- 도포하지 아니한 것	Free	0	
	----- 도포한 것			
7312 10 65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312 10 69	----- 기타	Free	0	
	----- 로프 및 케이블(록코일 로프 포함)			
	----- 도포하지 않았거나 아연으로만 도금 또는 도포한 것, 횡단면의 최대지수가			
7312 10 81	----- 3밀리미터초과 12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12 10 83	----- 12밀리미터초과 24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12 10 85	----- 24밀리미터초과 48밀리미터이하인 것	Free	0	
7312 10 89	----- 48밀리미터초과의 것	Free	0	
7312 10 98	----- 기타	Free	0	
7312 90 00	- 기타	Free	0	
7313 00 00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Free	0	
7314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			
	직조한 클로드			
7314 12 00	-- 기계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Free	0	
7314 14 00	--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Free	0	
7314 19 00	-- 기타	Free	0	
7314 20	- 그릴 · 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7314 20 10	-- 벨트선의 것	Free	0	
7314 20 90	-- 기타	Free	0	
	- 기타 그릴 · 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에 한한다)			
7314 31 00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314 39 00	-- 기타	Free	0	
	- 기타 클로드 · 그릴 · 망 및 울타리			
7314 41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314 41 10	---- 6각형의 망	Free	0	
7314 41 90	---- 기타	Free	0	
7314 42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7314 42 10	---- 6각형의 망	Free	0	
7314 42 90	---- 기타	Free	0	
7314 49 00	-- 기타	Free	0	
7314 50 00	- 익스팬디드메탈	Free	0	
7315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과 그 부분품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315 11	-- 롤러체인			
7315 11 10	--- 자전거 및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2.7	0	
7315 11 90	--- 기타	2.7	0	
7315 12 00	-- 기타체인	2.7	0	
7315 19 00	-- 부분품	2.7	0	
7315 20 00	- 스키드체인	2.7	0	
	- 기타체인			
7315 81 00	-- 스테드링크	2.7	0	
7315 82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에 한한다)			
7315 82 10	--- 횡단면의 최대지수가 16밀리미터이하인 조성분의 물질	2.7	0	
7315 82 90	--- 횡단면의 최대지수가 16밀리미터초과인 조성분의 물질	2.7	0	
7315 89 00	-- 기타	2.7	0	
7315 90 00	- 기타 부분품	2.7	0	
7316 00 00	철강제의 닳과 그 부분품	2.7	0	
7317 00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테이플(제 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을 제외한다)			
7317 00 10	- 제도용 핀	Free	0	
	- 기타			
	-- 선으로부터 자온추출한 것			
7317 00 20	--- 선 또는 코일상의 못	Free	0	
7317 00 40	--- 철강선의 못(탄소가 중량의 0.5퍼센트이상의 것, 경화 시킨 것)	Free	0	
	--- 기타			
7317 00 61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Free	0	
7317 00 69	---- 기타	Free	0	
7317 00 90	-- 기타	Free	0	
7318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혹·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나선가공한 제품			
7318 11 00	-- 코치스크루	3.7	0	
7318 12	-- 기타 목재용 스크루			
7318 12 1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3.7	0	
7318 12 90	--- 기타	3.7	0	
7318 13 00	-- 스크루혹과 스크루링	3.7	0	
7318 14	-- 셀프타핑 스크루			
7318 14 1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3.7	0	
	--- 기타			
7318 14 91	---- 스페이스드 나선가공 스크루	3.7	0	
7318 14 99	---- 기타	3.7	0	
7318 15	-- 기타 스크루와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8 15 10	--- 스크루, 봉·프로파일 또는 선으로부터 변형된 것, 고체면의 것, 생크 두께가 6밀리미터이하인 것	3.7	0	
	--- 기타			
7318 15 20	---- 철도용 선로 건설 수리용	3.7	0	
	---- 기타			
	----- 머리부분 제외			
7318 15 3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3.7	0	
	----- 기타, 장력의 강도가			
7318 15 41	----- 800MPa미만인 것	3.7	0	
7318 15 49	----- 800MPa이상인 것	3.7	0	
	----- 머리부분 포함			
	----- 슬로트 및 횡단스크루			
7318 15 51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3.7	0	
7318 15 59	----- 기타	3.7	0	
	----- 육각형의 소켓 헤드 스크루			
7318 15 61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3.7	0	
7318 15 69	----- 기타	3.7	0	
	----- 육각형의 볼트			
7318 15 7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3.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장력의 강도가			
7318 15 81	----- 800MPa미만의 것	3.7	0	
7318 15 89	----- 800MPa이상의 것	3.7	0	
7318 15 90	----- 기타	3.7	0	
7318 16	-- 너트			
7318 16 10	--- 봉 · 프로파일 또는 선으로부터 변형된 것, 교체면의 것, 구멍의 지름이 6밀리미터이하인 것	3.7	0	
	--- 기타			
7318 16 3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3.7	0	
	---- 기타			
7318 16 50	----- 셀프로킹 너트	3.7	0	
	----- 기타, 내경이			
7318 16 91	----- 12밀리미터이하인 것	3.7	0	
7318 16 99	-----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7	0	
7318 19 00	-- 기타	3.7	0	
	- 나선가공하지 아니한 제품			
7318 21 00	--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3.7	0	
7318 22 00	-- 기타 와셔	3.7	0	
7318 23 00	-- 리벳	3.7	0	
7318 24 00	-- 코터와 코터핀	3.7	0	
7318 29 00	-- 기타	3.7	0	
7319	철강제의 수봉침 · 수편침 · 뿔바늘 · 크로세 뜨개질의 바늘 · 자수용 천공수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제의 안전핀과 기타의 핀(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7319 20 00	- 안전핀	2.7	0	
7319 30 00	- 기타 핀	2.7	0	
7319 90	- 기타			
7319 90 10	-- 수봉침 · 수편침 또는 자수용 천공수침	2.7	0	
7319 90 90	-- 기타	2.7	0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 10	- 판상스프링과 그 판			
	-- 열처리 가공한 것			
7320 10 11	--- 적층 스프링과 그 판	2.7	0	
7320 10 19	--- 기타	2.7	0	
7320 10 90	-- 기타	2.7	0	
7320 20	- 나선용 스프링			
7320 20 20	-- 열처리 가공한 것	2.7	0	
	-- 기타			
7320 20 81	--- 코일 압축 스프링	2.7	0	
7320 20 85	--- 코일 텐션 스프링	2.7	0	
7320 20 89	--- 기타	2.7	0	
7320 90	- 기타			
7320 90 10	-- 평면 나선형 스프링	2.7	0	
7320 90 30	-- 디스크 스프링	2.7	0	
7320 90 90	-- 기타	2.7	0	
7321	철강제의 스토브 · 레인지 · 화상 · 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비큐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 11	--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7321 11 10	--- 오븐을 포함하는 것(분리된 오븐 포함)	2.7	0	
7321 11 90	--- 기타	2.7	0	
7321 12 00	-- 액체연료용의 것	2.7	0	
7321 19 00	--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2.7	0	
	- 기타 기구			
7321 81	--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7321 81 10	--- 배기 아울렛	2.7	0	
7321 81 90	--- 기타	2.7	0	
7321 82	-- 액체연료용의 것			
7321 82 10	--- 배기 아울렛	2.7	0	
7321 82 90	--- 기타	2.7	0	
7321 89 00	--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321 90 00	- 부분품	2.7	0	
7322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 11 00	-- 주철제의 것	3.2	0	
7322 19 00	-- 기타	3.2	0	
7322 90 00	- 기타	3.2	0	
7323	철강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7323 10 00	-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3.2	0	
	- 기타			
7323 91 00	--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3.2	0	
7323 92 00	--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3.2	0	
7323 93	-- 스테인리스강의 것			
7323 93 10	--- 식탁용 제품	3.2	0	
7323 93 90	--- 기타	3.2	0	
7323 94	-- 철강(주철을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7323 94 10	--- 식탁용 제품	3.2	0	
7323 94 90	--- 기타	3.2	0	
7323 99	-- 기타			
7323 99 10	--- 식탁용 제품	3.2	0	
	--- 기타			
7323 99 91	---- 바니시 또는 페인트칠 한 것	3.2	0	
7323 99 99	---- 기타	3.2	0	
7324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 10 00	- 설거지와 세면대(스테인리스강의 것에 한한다)	2.7	0	
	- 욕조			
7324 21 00	--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	0	
7324 29 00	-- 기타	3.2	0	
7324 90 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3.2	0	
7325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7325 10	비가단주철제의 것			
7325 10 50	-- 표면 및 밸브 박스	1.7	0	
	-- 기타			
7325 10 92	--- 오수 · 물 기타 시스템	1.7	0	
7325 10 99	--- 기타	1.7	0	
	- 기타			
7325 91 00	--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7	0	
7325 99	-- 기타			
7325 99 10	--- 가단주철제의 것	2.7	0	
7325 99 90	--- 기타	2.7	0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단조물(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26 11 00	--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7	0	
7326 19	-- 기타			
7326 19 10	--- 오픈-다이 단조한 것	2.7	0	
7326 19 90	--- 기타	2.7	0	
7326 20	- 철강선제의 제품			
7326 20 30	-- 작은 새장 및 큰 새장	2.7	0	
7326 20 50	-- 선 바구니	2.7	0	
7326 20 80	-- 기타	2.7	0	
7326 90	- 기타			
7326 90 10	-- 코담배갑 · 담배 상자 · 화장 및 분 상자 · 및 유사한 주머니의 제품	2.7	0	
7326 90 30	-- 사다리 및 스텝	2.7	0	
7326 90 40	-- 펠리트 및 유사한 플랫폼(취급용품용)	2.7	0	
7326 90 50	-- 케이블, 파이핑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릴	2.7	0	
7326 90 60	-- 기계의 것이 아닌 통풍기 홀통 · 흑 및 건물 산업에 사용되는 제품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326 90 70	-- 천공된 버킷 및 유사한 강 슈트의 품목, 배수기 입구의 여과용으로 사용되는 것	2.7	0	
	-- 기타 제품(철 또는 강의 것)			
7326 90 91	--- 오픈-다이 단조된 것	2.7	0	
7326 90 93	--- 클로즈-다이 단조된 것	2.7	0	
7326 90 95	--- 소결한 것	2.7	0	
7326 90 98	--- 기타	2.7	0	
74	제74류 동과 그 제품			
7401 00 00	동의 매트와 시멘트동(침전동)	Free	0	
7402 00 00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Free	0	
7403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정제한 동			
7403 11 00	-- 음극과 음극의 형재	Free	0	
7403 12 00	-- 와이어바	Free	0	
7403 13 00	-- 빌레트	Free	0	
7403 19 00	-- 기타	Free	0	
	- 동합금의 것			
7403 21 00	-- 동-아연의 합금의 것(황동)	Free	0	
7403 22 00	-- 동-주석의 합금의 것(청동)	Free	0	
7403 29 00	-- 기타 동합금(제7405호의 마스터알로이는 제외한다)	Free	0	
7404 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404 00 10	- 정제한 동의 것	Free	0	
	- 동합금의 것			
7404 00 91	-- 동-아연의 합금의 것(황동)	Free	0	
7404 00 99	-- 기타	Free	0	
7405 00 00	동의 마스터알로이	Free	0	
7406	동의 분과 플레이크			
7406 10 00	- 비충상조직의 분	Free	0	
7406 20 00	- 충상조직의 분과 플레이크	Free	0	
7407	동의 봉과 프로파일			
7407 10 00	- 정제한 동의 것	4.8	0	
	- 동합금의 것			
7407 21	--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7407 21 10	--- 봉	4.8	0	
7407 21 90	--- 프로파일	4.8	0	
7407 29	-- 기타			
7407 29 10	---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8	0	
7407 29 90	--- 기타	4.8	0	
7408	동의 선			
	정제한 동의 것			
7408 11 0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8	0	
7408 19	-- 기타			
7408 19 1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8	0	
7408 19 9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것	4.8	0	
	- 동합금			
7408 21 00	-- 동-아연의 합금의 것(황동)	4.8	0	
7408 22 00	--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8	0	
7408 29 00	-- 기타	4.8	0	
7409	동의 판·슈트 및 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정제한 동의 것			
7409 11 00	-- 코일상의 것	4.8	0	
7409 19 00	-- 기타	4.8	0	
	- 동-아연의 합금의 것(황동)			
7409 21 00	-- 코일상의 것	4.8	0	
7409 29 00	-- 기타	4.8	0	
	- 동-주석의 합금의 것(청동)			
7409 31 00	-- 코일상의 것	4.8	0	
7409 39 00	-- 기타	4.8	0	
7409 40	-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7409 40 10	--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4.8	0	
7409 40 90	--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8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409 90 00	- 기타 동 합금의 것	4.8	0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			
7410 11 00	-- 정제한 동의 것	5.2	0	
7410 12 00	-- 동합금의 것	5.2	0	
	- 뒷면을 붙인 것			
7410 21 00	-- 정제한 동의 것	5.2	3	
7410 22 00	-- 동합금의 것	5.2	0	
7411	동제의 관			
7411 10	- 정제한 동제의 것			
	-- 직선형, 벽 두께가			
7411 10 11	--- 0.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8	3	
7411 10 19	--- 0.6밀리미터이하인 것	4.8	0	
7411 10 90	-- 기타	4.8	0	
	- 동합금의 것			
7411 21	-- 동-아연 합금제의 것(황동)			
7411 21 10	--- 직선형	4.8	0	
7411 21 90	--- 기타	4.8	0	
7411 22 00	-- 동-니켈 합금제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제의 것(양백)	4.8	0	
7411 29 00	-- 기타	4.8	0	
7412	동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7412 10 00	- 정제한 동의 것	5.2	0	
7412 20 00	- 동합금의 것	5.2	0	
7413 00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7413 00 20	- 정제한 동의 것	5.2	0	
7413 00 80	- 동합금의 것	5.2	0	
7415	동제의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동제 또는 동제의 두부를 가지는 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동제의 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축·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 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415 10 00	- 못과 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0	
	- 나선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의 물품			
7415 21 00	--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3	0	
7415 29 00	-- 기타	3	0	
	- 기타 나선가공한 물품			
7415 33 00	-- 스크루, 볼트와 너트	3	0	
7415 39 00	-- 기타	3	0	
7418	동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동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동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7418 11 00	--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3	0	
7418 19	-- 기타			
7418 19 10	--- 동제의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용 기구 및 가열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4	0	
7418 19 90	--- 기타	3	0	
7418 20 00	- 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3	0	
7419	동제의 기타 제품			
7419 10 00	- 체인과 그 부분품	3	3	
	- 기타			
7419 91 00	--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3	
7419 99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419 99 10	--- 천(엔드리스 밴드 포함) · 그릴 및 망,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확장금속	4.3	0	
7419 99 30	--- 스프링	4	0	
7419 99 90	--- 기타	3	0	
75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 ·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7501 10 00	- 니켈의 매트	Free	0	
7501 20 00	-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Free	0	
7502	니켈의 과			
7502 10 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Free	0	
7502 20 00	- 니켈 합금	Free	0	
7503 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503 00 1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Free	0	
7503 00 90	- 니켈 합금	Free	0	
7504 00 00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Free	0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 및 선			
	봉과 프로파일			
7505 11 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Free	0	
7505 12 00	-- 니켈 합금	2.9	0	
	- 선			
7505 21 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Free	0	
7505 22 00	-- 니켈 합금	2.9	0	
7506	니켈의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7506 10 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Free	0	
7506 20 00	- 니켈 합금	3.3	0	
7507	니켈제의 관 또는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관			
7507 11 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Free	0	
7507 12 00	-- 니켈 합금	Free	0	
7507 20 00	- 관연결구류	2.5	0	
7508	니켈제의 기타 제품			
7508 10 00	- 니켈선제의 클로드 · 그릴 및 망	Free	0	
7508 90 00	- 기타	Free	0	
76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과			
7601 10 00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6	0	
7601 20	- 알루미늄 합금			
7601 20 10	-- 1차	6	0	
	-- 2차			
7601 20 91	--- 잉곳 또는 액상의 것	6	0	
7601 20 99	--- 기타	6	0	
7602 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웨이스트			
7602 00 11	-- 선삭 · 세이빙 · 칩 · 밀링웨이스트 · 톱밥 및 파일링(알루미늄의 것에 한한다); 채색, 도포 또는 결합된 알루미늄 시트 및 박(보강재 두께를 제외하고 두께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의 웨이스트	Free	0	
7602 00 19	-- 기타 (공장 불량품을 포함한다)	Free	0	
7602 00 90	- 스크랩	Free	0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7603 10 00	- 비충상조직의 분	5	0	
7603 20 00	- 충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5	0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4 10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7604 10 10	-- 봉	7.5	0	
7604 10 90	-- 프로파일	7.5	0	
	- 알루미늄 합금의 것			
7604 21 00	-- 중공프로파일	7.5	0	
7604 29	-- 기타			
7604 29 10	--- 봉	7.5	0	
7604 29 90	--- 프로파일	7.5	0	
7605	알루미늄의 선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605 11 0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5	0	
7605 19 00	-- 기타	7.5	0	
	- 알루미늄 합금의 것			
7605 21 0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5	0	
7605 29 00	-- 기타	7.5	0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7606 11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7606 11 10	----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7.5	0	
	---- 기타, 두께가			
7606 11 91	----- 3밀리미터미만인 것	7.5	0	
7606 11 93	----- 3밀리미터이상 6밀리미터미만인 것	7.5	0	
7606 11 99	----- 6밀리미터이상인 것	7.5	0	
7606 12	-- 알루미늄 합금의 것			
7606 12 10	---- 베네치안 블라인드용 스트립	7.5	0	
	---- 기타			
7606 12 50	----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7.5	0	
	---- 기타, 두께가			
7606 12 91	----- 3밀리미터미만인 것	7.5	0	
7606 12 93	----- 3밀리미터이상 6밀리미터미만인 것	7.5	0	
7606 12 99	----- 6밀리미터 이상인 것	7.5	0	
	- 기타			
7606 91 00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7.5	0	
7606 92 00	-- 알루미늄 합금의 것	7.5	0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			
7607 11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607 11 10	--- 두께가 0.021밀리미터 미만인 것	7.5	0	
7607 11 90	--- 두께가 0.021밀리미터이상 0.2밀리미터이하인 것	7.5	0	
7607 19	-- 기타			
7607 19 10	--- 두께가 0.021밀리미터미만인 것	7.5	0	
	--- 두께가 0.021밀리미터이상 0.2밀리미터이하인 것			
7607 19 91	---- 접착성이 있는 것	7.5	0	
7607 19 99	---- 기타	7.5	0	
7607 20	- 뒷면을 붙인 것			
7607 20 10	-- 두께(뒷면에 붙인 것 제외)가 0.021밀리미터미만인 것	10	0	
	-- 두께(뒷면에 붙인 것 제외)가 0.021밀리미터 이상 0.2밀리미터 이하인 것			
7607 20 91	--- 접착성이 있는 것	7.5	0	
7607 20 99	--- 기타	7.5	0	
7608	알루미늄제의 관			
7608 10 00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제의 것	7.5	0	
7608 20	-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			
7608 20 20	-- 용접한 것	7.5	0	
	-- 기타			
7608 20 81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5	0	
7608 20 89	--- 기타	7.5	0	
7609 00 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5.9	0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0 10 00	-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6	0	
7610 90	- 기타			
7610 90 10	-- 다리와 교량, 탑과 격자주	7	0	
7610 90 90	-- 기타	6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611 00 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0	
7612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 10 0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6	0	
7612 90	- 기타			
7612 90 10	-- 경질의 튜브형 용기	6	0	
7612 90 20	-- 에어로졸용의 용기	6	0	
	-- 기타, 용적이			
7612 90 91	--- 50리터이상인 것	6	0	
7612 90 98	--- 50리터미만인 것	6	0	
7613 00 00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6	0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7614 10 00	-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6	0	
7614 90 00	- 기타	6	0	
7615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7615 11 00	--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6	0	
7615 19	-- 기타			
7615 19 10	--- 주조한 것	6	0	
7615 19 90	--- 기타	6	0	
7615 20 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6	0	
7616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7616 10 00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축·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	0	
	- 기타			
7616 91 00	--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	6	0	
7616 99	-- 기타			
7616 99 10	--- 주조한 것	6	0	
7616 99 90	--- 기타	6	0	
78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7801	연의괴			
7801 10 00	- 정제한 것	2.5	0	
	- 기타			
7801 91 00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2.5	0	
7801 99	-- 기타			
7801 99 10	--- 정제용, 은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0.02퍼센트이상인 것(조연)	Free	0	
	--- 기타			
7801 99 91	---- 연 합금	2.5	0	
7801 99 99	---- 기타	2.5	0	
7802 00 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7804	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분과 플레이크			
	판·쉬트·스트립 및 박			
7804 11 00	-- 쉬트·스트립 및 박[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7804 19 00	-- 기타	5	0	
7804 20 00	- 분과 플레이크	Free	0	
7806 00	연제의 기타 제품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7806 00 10	- 방사능차단의 연 덮개를 가진 용기, 방사능 물질(유라늄)의 운송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것	Free	0	
7806 00 30	- 봉 · 프로파일 및 선	5	0	
7806 00 50	-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5	0	
7806 00 90	- 기타	5	0	
79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			
	합금하지 아니한 아연			
7901 11 00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인 것	2.5	0	
7901 12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미만인 것			
7901 12 10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5이상 100분의 99.99미만인 것	2.5	0	
7901 12 30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8.5이상 99.95미만인 것	2.5	0	
7901 12 90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5이상 98.5미만인 것	2.5	0	
7901 20 00	- 아연 합금	2.5	0	
7902 00 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7903	아연의 더스트 · 분과 플레이크			
7903 10 00	- 아연더스트	2.5	0	
7903 90 00	- 기타	2.5	0	
7904 00 00	아연의 봉 · 프로파일 및 선	5	0	
7905 00 00	아연의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5	0	
7907 00	아연제의 기타 제품			
7907 00 10	-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5	0	
7907 00 90	- 기타	5	0	
80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			
8001 10 00	-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Free	0	
8001 20 00	- 주석 합금	Free	0	
8002 00 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003 00 00	주석의 봉 · 프로파일 및 선	Free	0	
8007 00	주석제의 기타 제품			
8007 00 10	- 판 · 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Free	0	
8007 00 30	- 박(지 · 판지 ·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 불문)	Free	0	
8007 00 50	-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Free	0	
8007 00 90	- 기타	Free	0	
81	제81류 기타 비(卑)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1 10 00	- 분	5	0	
	- 기타			
8101 94 00	--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5	0	
8101 96 00	-- 선	6	0	
8101 97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01 99	-- 기타			
8101 99 10	--- 붕(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 제외) · 프로파일 · 판 · 시트 · 스트립 및 박	6	0	
8101 99 90	--- 기타	7	0	
8102	몰리브데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2 10 00	- 분	4	0	
	- 기타			
8102 94 00	--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	0	
8102 95 00	-- 붕(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을 제외한다), 프로파일 ·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5	0	
8102 96 00	-- 선	6.1	0	
8102 97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02 99 00	-- 기타	7	0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3 20 00	-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분	Free	0	
8103 30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03 9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103 90 10	--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을 제외한다), 프로파일 ·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3	0	
8103 90 90	-- 기타	4	0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과			
8104 11 00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5.3	0	
8104 19 00	-- 기타	4	0	
8104 20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04 30 0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출발 · 연삭설 및 입, 분	4	0	
8104 90 00	- 기타	4	0	
8105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 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5 20 00	- 코발트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 생산물;과;분	Free	0	
8105 30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05 90 00	- 기타	3	0	
8106 00	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6 00 10	- 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Free	0	
8106 00 90	- 기타	2	0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7 20 00	- 비스머드의 과, 분	3	0	
8107 30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07 90 00	- 기타	4	0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8 20 00	- 티타늄의 과, 분	5	0	
8108 30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0	
8108 90	- 기타			
8108 90 30	-- 봉 · 프로파일 및 선	7	0	
8108 90 50	--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7	0	
8108 90 60	-- 관	7	0	
8108 90 90	-- 기타	7	0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9 20 00	- 지르코늄의 과, 분	5	0	
8109 30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09 90 00	- 기타	9	0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0 10 00	- 안티모니의 과, 분	7	0	
8110 20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10 90 00	- 기타	7	0	
8111 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망간의 과,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8111 00 11	-- 망간의 과, 분	Free	0	
8111 00 19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11 00 90	- 기타	5	0	
8112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hafnium · 인 동 · 니오븀(컬럼븀) · 레늄 · 탈륨과 이들 금속의 제품(웨 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베릴륨			
8112 12 00	-- 과, 분	Free	0	
8112 13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12 19 00	-- 기타	3	0	
	- 크로뮴			
8112 21	-- 과, 분			
8112 21 10	---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니켈의 합금	Free	0	
8112 21 90	--- 기타	3	0	
8112 22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12 29 00	-- 기타	5	0	
	- 탈륨			
8112 51 00	-- 과, 분	1.5	0	
8112 52 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12 59 00	-- 기타	3	0	
	- 기타			
8112 92	-- 과,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8112 92 10	--- hafnium(셀시움)	3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니오븀(컬럼븀), 레늄, 갈륨, 인듐, 바나듐, 게르마늄			
8112 92 21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 기타			
8112 92 31	----- 니오븀(컬럼븀), 레늄	3	0	
8112 92 81	----- 인듐	2	0	
8112 92 89	----- 갈륨	1.5	0	
8112 92 91	----- 바나듐	Free	0	
8112 92 95	----- 게르마늄	4.5	0	
8112 99	-- 기타			
8112 99 20	--- 하프늄(셀시움), 게르마늄	7	0	
8112 99 30	--- 니오븀(컬럼븀), 레늄	9	0	
8112 99 70	--- 갈륨, 인듐, 바나듐	3	0	
8113 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3 00 20	- 괴	4	0	
8113 00 40	- 웨이스트와 스크랩	Free	0	
8113 00 90	- 기타	5	0	
82	제82류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201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록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의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썰기 및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공구			
8201 10 00	- 가래 및 삽	1.7	0	
8201 20 00	- 포크	1.7	0	
8201 30 00	- 곡괭이·픽스·괭이와 쇠스랑	1.7	0	
8201 40 00	- 도끼·빌록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1.7	0	
8201 50 00	-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1.7	0	
8201 60 00	- 울타리전단기·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1.7	0	
8201 90 00	-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수도구	1.7	0	
8202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 10 00	- 수동식 톱	1.7	0	
8202 20 00	- 띠톱의 날	1.7	0	
	- 원형톱날(슬리팅 또는 슬로팅 톱날을 포함한다)			
8202 31 00	--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의 것	2.7	0	
8202 39 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2.7	0	
8202 40 00	- 전기톱의 날	1.7	0	
	- 기타의 톱날			
8202 91 00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2.7	0	
8202 99	-- 기타			
	---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의 것			
8202 99 11	---- 금속 가공용	2.7	0	
8202 99 19	---- 기타 재료 가공용	2.7	0	
8202 99 90	----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2.7	0	
8203	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볼트크로퍼·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 10 0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1.7	0	
8203 20	-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8203 20 10	-- 핀셋	1.7	0	
8203 20 90	-- 기타	1.7	0	
8203 30 00	- 금속 절단용의 가위와 유사한 공구	1.7	0	
8203 40 00	- 파이프 커터·볼트 크로퍼·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공구	1.7	0	
8204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를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동식의 스패너와 렌치			
8204 11 00	-- 조정할 수 없는 것	1.7	0	
8204 12 00	-- 조정할 수 있는 것	1.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204 20 00	-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7	0	
8205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앤빌, 가반식단야로,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8205 10 00	- 드릴링·드레딩 또는 태핑용 공구	1.7	0	
8205 20 00	- 해머와 슬레즈해머	3.7	0	
8205 30 00	- 목재가공용의 대패·끌·동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3.7	0	
8205 40 00	- 스크루드라이버	3.7	0	
	- 기타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 51 00	-- 가정용공구	3.7	0	
8205 59	-- 기타			
8205 59 10	---- 석공·조형·시멘트 근로자·석고 세공인과 페인트 칠하는 사람용 공구	3.7	0	
8205 59 30	---- 카트리지에 의하여 작동하는 대갈못, 방음벽 등	2.7	0	
8205 59 90	---- 기타	2.7	0	
8205 60 00	- 블로램프	2.7	0	
8205 70 00	-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3.7	0	
8205 80 00	- 앤빌, 가반식 단야로,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2.7	0	
8205 90 00	- 앞의 각 소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 물품의 세트	3.7	0	
8206 00 00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3.7	0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스탬핑·편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8207 13 00	--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2.7	0	
8207 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207 19 10	---- 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 또는 덩어리로 된 다이아몬드로 된 것	2.7	0	
8207 19 90	---- 기타	2.7	0	
8207 20	- 금속의 인발 및 압출용 다이			
8207 20 10	-- 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 또는 덩어리로 된 다이아몬드로 된 것	2.7	0	
8207 20 90	--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2.7	0	
8207 30	- 프레싱·스탬핑 또는 편칭용의 공구			
8207 30 10	-- 작업금속용	2.7	0	
8207 30 90	-- 기타	2.7	0	
8207 40	- 태핑 또는 드레딩용의 공구			
	-- 작업금속용			
8207 40 10	---- 탭핑용 공구	2.7	0	
8207 40 30	---- 드리딩용 공구	2.7	0	
8207 40 90	-- 기타	2.7	0	
8207 50	- 드릴링용의 공구(착암기용의 것을 제외한다)			
8207 50 10	-- 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 또는 덩어리로 된 다이아몬드로 된 것	2.7	0	
	--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8207 50 30	---- 석공용 드릴	2.7	0	
	---- 기타			
	----- 작업금속용, 작용하는 부분이			
8207 50 50	----- 서메트의 것	2.7	0	
8207 50 60	----- 고속도강의 것	2.7	0	
8207 50 70	----- 기타 재료제의 것	2.7	0	
8207 50 90	---- 기타	2.7	0	
8207 60	- 보링 또는 브로칭용의 공구			
8207 60 10	-- 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 또는 덩어리로 된 다이아몬드로 된 것	2.7	0	
	--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 보링용의 공구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207 60 30	---- 작업금속용	2.7	0	
8207 60 50	---- 기타	2.7	0	
	--- 브로칭용의 공구			
8207 60 70	---- 작업금속용	2.7	0	
8207 60 90	---- 기타	2.7	0	
8207 70	- 밀링용의 공구			
	-- 작업금속용, 작용하는 부분이			
8207 70 10	--- 서메트의 것	2.7	0	
	--- 기타 재료제의 것			
8207 70 31	---- 생크형	2.7	0	
8207 70 35	---- 호브	2.7	0	
8207 70 38	---- 기타	2.7	0	
8207 70 90	-- 기타	2.7	0	
8207 80	- 터닝용의 공구			
	-- 작업금속용, 작용하는 부분이			
8207 80 11	--- 서메트의 것	2.7	0	
8207 80 19	--- 기타 재료제의 것	2.7	0	
8207 80 90	-- 기타	2.7	0	
8207 90	- 기타 호완성 공구			
8207 90 10	-- 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 또는 덩어리로 된 다이아 몬드로 된 것	2.7	0	
	--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8207 90 30	--- 스크루드라이버 비트	2.7	0	
8207 90 50	--- 기어 절단 공구	2.7	0	
	--- 기타, 작용하는 부분이			
	---- 서메트의 것			
8207 90 71	----- 작업금속용	2.7	0	
8207 90 78	----- 기타	2.7	0	
	---- 기타 재료제의 것			
8207 90 91	----- 작업금속용	2.7	0	
8207 90 99	----- 기타	2.7	0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8208 10 00	- 금속 가공용의 것	1.7	0	
8208 20 00	- 목재 가공용의 것	1.7	0	
8208 30	-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8208 30 10	-- 원형칼	1.7	0	
8208 30 90	-- 기타	1.7	0	
8208 40 00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1.7	0	
8208 90 00	- 기타	1.7	0	
8209 00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것으 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209 00 20	- 색인 삽입	2.7	0	
8209 00 80	- 기타	2.7	0	
8210 00 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 으로 한 개의 총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2.7	0	
8211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 춘 것에 한하며, 전정용 칼을 포함하고, 제8208호의 칼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날			
8211 10 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5	3	
	- 기타			
8211 91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211 91 30	--- 칼날과 손잡이가 있는 식탁용 칼(스테인리스강제의 것)	8.5	0	
8211 91 80	--- 기타	8.5	3	
8211 92 00	--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8.5	3	
8211 93 00	--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5	3	
8211 94 00	-- 칼날	6.7	0	
8211 95 00	-- 비금속제의 손잡이	2.7	0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브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8212 10	- 면도기			
8212 10 10	-- 안전면도날(날이 교체가 불가능한 것)	2.7	0	
8212 10 90	-- 기타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212 20 0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브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2.7	0	
8212 90 00	- 기타의 부분품	2.7	0	
8213 00 00	가위 · 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4.2	0	
8214	칼붙이의 기타 제품(예 : 조발기 · 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 붙이 · 초퍼 및 민성용 칼 · 종이용 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 10 00	- 종이용 칼 · 편지개봉기 · 지우개용 칼 · 연필깎기와 그 날	2.7	0	
8214 20 00	-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2.7	0	
8214 90 00	- 기타	2.7	0	
8215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키머 · 케이크서버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8215 1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8215 10 20	-- 귀금속으로 도금된 제품만 포함	4.7	0	
	-- 기타			
8215 10 3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8.5	3	
8215 10 80	--- 기타	4.7	0	
8215 20	- 위 물품이 조합된 기타의 세트			
8215 20 1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8.5	0	
8215 20 90	-- 기타	4.7	0	
	- 기타			
8215 91 00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7	0	
8215 99	-- 기타			
8215 99 1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8.5	0	
8215 99 90	--- 기타	4.7	0	
83	제83류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8301	비(卑)금속제의 자물쇠(열쇠 · 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제의 열쇠			
8301 10 00	- 자물쇠	2.7	0	
8301 20 00	- 모터 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2.7	0	
8301 30 00	-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2.7	0	
8301 40	- 기타의 자물쇠			
	-- 건물 내 문에 사용되는 자물쇠 종류의 것			
8301 40 11	--- 실린더	2.7	0	
8301 40 19	--- 기타	2.7	0	
8301 40 90	-- 기타 자물쇠	2.7	0	
8301 50 00	-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2.7	0	
8301 60 00	- 부분품	2.7	0	
8301 70 0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2.7	0	
8302	비(卑)금속제의 장착구 ·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 문 · 계단 · 창 · 차일구 · 마차 · 마구 · 트렁크 · 장 · 항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 ·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			
8302 10 00	- 경첩	2.7	0	
8302 20 00	- 카스터	2.7	0	
8302 30 00	- 모터 차량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7	0	
	- 기타의 장착구 ·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302 41 00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2.7	0	
8302 42 00	--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7	0	
8302 49 00	-- 기타	2.7	0	
8302 50 00	- 모자걸이 ·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2.7	0	
8302 60 00	- 자동도어 폐지기	2.7	0	
8303 00	비(卑)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 · 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저장실 · 현금함 또는 손금고 및 이와 유사한 것			
8303 00 10	-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 스트롱 박스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303 00 30	- 스트롱룸용의 보강한 금고, 현금함 또는 손금고	2.7	0	
8303 00 90	- 금속 현금 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것	2.7	0	
8304 00 00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트레이 · 페이퍼레스트 · 펜트레이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를 제외한다)	2.7	0	
8305	비(卑)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 · 서신용 클립 · 레터코너 · 서류용 클립 · 색인용 태그 및 이와 유사한 비(卑)금속제의 사무용품,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예 : 사무실용 · 가구류용 · 포장용의 것에 한한다)			
8305 10 00	- 서류철용 피팅	2.7	0	
8305 20 00	-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2.7	0	
8305 90 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2.7	0	
8306	비(卑)금속제의 벨 · 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비(卑)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 비(卑)금속제의 사진틀 · 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비(卑)금속제의 거울			
8306 10 00	- 벨 · 징 및 이와 유사한 것	Free	0	
	- 소상과 기타 장식품			
8306 21 00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Free	0	
8306 29	-- 기타			
8306 29 10	--- 동제의 것	Free	0	
8306 29 90	--- 기타 비금속제의 것	Free	0	
8306 30 00	- 사진틀 · 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2.7	0	
8307	비(卑)금속제의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307 10 00	- 철강제의 것	2.7	0	
8307 90 00	- 기타 비금속제의 것	2.7	0	
8308	비(卑)금속제의 유금 · 유금이 붙은 프레임 · 버클 · 버클 유금 · 훅 · 아이 · 아이릿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 · 신발류 · 차일 · 핸드백 · 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관리벨 또는 이고(二股)리벨, 구슬과 스팅글			
8308 10 00	- 훅 · 아이 및 아이릿	2.7	0	
8308 20 00	- 관리벨 또는 이고리벨	2.7	0	
8308 90 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2.7	0	
8309	비(卑)금속제의 전(栓) · 캡과 뚜껑(병마개 · 스크루캡 및 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 · 병용의 캡슐 · 나선형의 마개 · 마개용 커버 · 실 및 기타의 포장용 부속품			
8309 10 00	- 크라운코르크	2.7	0	
8309 90	- 기타			
8309 90 10	-- 납 캡슐; 직경이 2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알루미늄의 캡슐	3.7	0	
8309 90 90	-- 기타	2.7	0	
8310 00 00	비금속제의 사인판 · 명판 · 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 · 숫자 · 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2.7	0	
8311	비(卑)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 · 봉 · 관 · 판 · 용접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납땜 · 납접 · 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렉스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과 비(卑)금속분을 응결하여 제조한 금속취부용의 선 및 봉			
8311 10	- 비(卑)금속제의 용접봉(플렉스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8311 10 10	-- 쇠나 강철로 되고 내화제로 도포된 용접봉	2.7	0	
8311 10 90	-- 기타	2.7	0	
8311 20 00	- 비금속제의 선(플렉스를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2.7	0	
8311 30 00	- 비금속제의 봉과 선(플렉스를 봉에 도포한 것이거나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 · 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에 한한다)	2.7	0	
8311 90 00	- 기타	2.7	0	
84	제84류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8401 10 00	- 원자로(유럽원자로공동체)	5.7	0	
8401 20 00	-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유럽원자로공동체)	3.7	0	
8401 30 00	-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유럽원자로공동체)	3.7	0	
8401 40 00	- 원자로의 부분품(유라늄)	3.7	0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증기발생보일러			
8402 11 00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2.7	0	
8402 12 00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이하인 수관보일러	2.7	0	
8402 19	--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8402 19 10	--- 연관보일러	2.7	0	
8402 19 90	--- 기타	2.7	0	
8402 20 00	- 과열수보일러	2.7	0	
8402 90 00	- 부분품	2.7	0	
8403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을 제외한다)			
8403 10	- 보일러			
8403 10 10	-- 주철제의 것	2.7	0	
8403 10 90	-- 기타	2.7	0	
8403 90	- 부분품			
8403 90 10	-- 주철제의 것	2.7	0	
8403 90 90	-- 기타	2.7	0	
8404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404 10 00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2.7	0	
8404 20 00	-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2.7	0	
8404 90 00	- 부분품	2.7	0	
8405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05 10 00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7	0	
8405 90 00	- 부분품	1.7	0	
8406	증기터빈			
8406 10 00	- 선박추진용 터빈	2.7	0	
	- 기타 터빈			
8406 81	--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8406 81 10	--- 전기 발전기용 스팀터빈	2.7	0	
8406 81 90	--- 기타	2.7	0	
8406 82	-- 출력이 40메가와트이하인 것			
	--- 전기 발전기용 스팀터빈, 출력이			
8406 82 11	---- 10메가와트이하인 것	2.7	0	
8406 82 19	---- 10메가와트초과인 것	2.7	0	
8406 82 90	--- 기타	2.7	0	
8406 90	- 부분품			
8406 90 10	-- 고정날, 회전자와 그 날	2.7	0	
8406 90 90	-- 기타	2.7	0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407 10 00	- 항공기용 엔진	1.7	0	
	- 선박추진용 엔진			
8407 21	-- 아웃보드 모터			
8407 21 10	--- 실린더의 용량이 325cm³이하인 것	6.2	0	
	--- 실린더의 용량이 325cm³를 초과하는 것			
8407 21 91	---- 전력이 3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7 21 99	---- 전력이 30킬로와트초과하는 것	4.2	0	
8407 29	-- 기타			
8407 29 20	--- 전력이 20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7 29 80	--- 전력이 2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2	0	
	- 제 87류의 차량추진용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엔진			
8407 31 00	-- 실린더 용량이 50cm³이하인 것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07 32	-- 실린더용량이 50cm³초과 250cm³이하인 것			
8407 32 10	--- 실린더 용량이 50cm³초과 125cm³이하인 것에 한한다	2.7	0	
8407 32 90	--- 실린더 용량이 125cm³초과 250cm³이하인 것에 한한다	2.7	0	
8407 33	-- 실린더용량이 250cm³초과 1,000cm³이하인 것			
8407 33 10	--- 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전용 트랙터의 산업 조립품과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에 해당하는 차량용	2.7	0	
8407 33 90	--- 기타	2.7	0	
8407 34	-- 실린더용량이 1,000cm³를 초과하는 것			
8407 34 10	--- 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보행 운전용 트랙터, 제8703호에 해당하는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량이 2,800cm³미만인 차량의 엔진과 제8705호의 차량	2.7	0	
	--- 기타			
8407 34 30	---- 중고	4.2	0	
	---- 새것, 실린더 용량이			
8407 34 91	----- 1,500cm³이하인 것	4.2	0	
8407 34 99	----- 1,500cm³를 초과하는 것	4.2	0	
8407 90	- 기타의 엔진			
8407 90 10	-- 실린더 용량이 250cm³이하인 것	2.7	0	
	-- 실린더 용량이 260cm³를 초과하는 것			
8407 90 50	--- 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보행 운전용 트랙터, 제8703호에 해당하는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량이 2,800cm³미만인 차량의 엔진과 제8705호의 차량	2.7	0	
	--- 기타			
8407 90 80	---- 전력이 1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7 90 90	---- 전력이 1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2	0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8408 10	- 선박추진용 엔진			
	-- 중고			
8408 10 11	---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하는 원양항해선박, 제8904.00.10호에 해당하는 예인선과 제8906.00.10호에 해당하는 군함	Free	0	
8408 10 19	--- 기타	2.7	0	
	-- 새것, 전력이			
	---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8408 10 22	----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하는 원양항해선박, 제8904.00.10호에 해당하는 예인선과 제8906.00.10호에 해당하는 군함	Free	0	
8408 10 24	---- 기타	2.7	0	
	--- 15킬로와트초과 50킬로와트이하인 것			
8408 10 26	----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하는 원양항해선박, 제8904.00.10호에 해당하는 예인선과 제8906.00.10호에 해당하는 군함	Free	0	
8408 10 28	---- 기타	2.7	0	
	--- 50킬로와트초과 100킬로와트이하인 것			
8408 10 31	----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하는 원양항해선박, 제8904.00.10호에 해당하는 예인선과 제8906.00.10호에 해당하는 군함	Free	0	
8408 10 39	---- 기타	2.7	0	
	--- 100킬로와트초과 200킬로와트이하인 것			
8408 10 41	----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하는 원양항해선박, 제8904.00.10호에 해당하는 예인선과 제8906.00.10호에 해당하는 군함	Free	0	
8408 10 49	---- 기타	2.7	0	
	--- 200킬로와트초과 300킬로와트이하인 것			
8408 10 51	----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하는 원양항해선박, 제8904.00.10호에 해당하는 예인선과 제8906.00.10호에 해당하는 군함	Free	0	
8408 10 59	---- 기타	2.7	0	
	--- 300킬로와트초과 500킬로와트이하인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08 10 61	----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하는 원양항해선박, 제8904.00.10호에 해당하는 예인선과 제8906.00.10호에 해당하는 군함	Free	0	
8408 10 69	---- 기타	2.7	0	
	--- 500킬로와트초과 100킬로와트이하인 것			
8408 10 71	----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하는 원양항해선박, 제8904.00.10호에 해당하는 예인선과 제8906.00.10호에 해당하는 군함	Free	0	
8408 10 79	---- 기타	2.7	0	
	--- 1,000킬로와트초과 5,000킬로와트이하인 것			
8408 10 81	----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하는 원양항해선박, 제8904.00.10호에 해당하는 예인선과 제8906.00.10호에 해당하는 군함	Free	0	
8408 10 89	---- 기타	2.7	0	
	--- 5,000 킬로와트초과인 것			
8408 10 91	----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하는 원양항해선박, 제8904.00.10호에 해당하는 예인선과 제8906.00.10호에 해당하는 군함	Free	0	
8408 10 99	---- 기타	2.7	0	
8408 20	-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8408 20 10	-- 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보행 운전용 트랙터, 제 8703호에 해당하는 차량, 제8704류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량이 2,500cm³미만인 차량의 엔진과 제8705호의 차량	2.7	0	
	-- 기타			
	--- 바퀴달린 농업 및 임업 트랙터용, 전력이			
8408 20 31	---- 5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20 35	---- 50킬로와트초과 10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20 37	---- 100킬로와트를 초과인 것	4.2	0	
	--- 제87류에 해당하는 기타 차량, 전력이			
8408 20 51	---- 5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20 55	---- 50킬로와트초과 10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20 57	---- 100킬로와트초과 20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20 99	---- 2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2	0	
8408 90	- 기타의 엔진			
8408 90 21	-- 철도 기관차용	4.2	0	
	-- 기타			
8408 90 27	--- 중고	4.2	0	
	--- 새것, 전력이			
8408 90 41	----15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90 43	---- 15킬로와트초과 3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90 45	---- 30킬로와트초과 5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90 47	---- 50킬로와트초과 10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90 61	---- 100킬로와트초과 20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90 65	---- 200킬로와트초과 30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90 67	---- 300킬로와트초과 50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90 81	---- 500킬로와트초과 1,000킬로와트이하인 것	4.2	0	
8408 90 85	---- 1,000킬로와트 초과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4.2	0	
8408 90 89	---- 5,000킬로와트 초과인 것	4.2	0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			
8409 10 00	- 항공기 엔진용의 것	1.7	0	
	- 기타			
8409 91 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2.7	0	
8409 99 00	-- 기타	2.7	0	
8410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수력터빈과 수차			
8410 11 00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4.5	0	
8410 12 00	-- 동력이 1,000킬로와트초과 10,000킬로와트이하인 것	4.5	0	
8410 13 00	--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5	0	
8410 9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8410 90 1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4.5	0	
8410 90 90	-- 기타	4.5	0	
8411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 터보제트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11 11 00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이하인 것	3.2	0	
8411 12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8411 12 10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초과 44킬로뉴턴이하인 것	2.7	0	
8411 12 30	--- 추진력이 44킬로뉴턴초과 132킬로뉴턴이하인 것	2.7	0	
8411 12 80	--- 추진력이 132킬로뉴턴초과인 것	2.7	0	
	- 터보프로펠러			
8411 21 00	-- 전력이 1100킬로와트이하인 것	3.6	0	
8411 22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411 22 20	--- 전력이 1,100킬로와트초과 3730킬로와트이하인 것	2.7	0	
8411 22 80	--- 전력이 3,7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7	0	
	- 기타(가스터빈)			
8411 81 00	-- 전력이 5,000킬로와트이하인 것	4.1	0	
8411 82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411 82 20	--- 전력이 5,000킬로와트초과 20,000킬로와트이하인 것	4.1	0	
8411 82 60	--- 전력이 20,000킬로와트초과 50,000킬로와트이하인 것	4.1	0	
8411 82 80	--- 5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1	0	
	- 부분품			
8411 91 00	--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2.7	0	
8411 99 00	-- 기타	4.1	0	
8412	기타의 엔진과 모터			
8412 10 00	- 터보제트 외의 역추진 엔진	2.2	0	
	-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 21	--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8412 21 20	--- 수력시스템	2.7	0	
8412 21 80	--- 기타	2.7	0	
8412 29	-- 기타			
8412 29 20	--- 수력시스템	4.2	0	
	--- 기타			
8412 29 81	---- 수력유체전원모터	4.2	0	
8412 29 89	---- 기타	4.2	0	
	- 공압식 엔진과 모터			
8412 31 00	-- 선형 작동식(실린더)	4.2	0	
8412 39 00	-- 기타	4.2	0	
8412 80	- 기타			
8412 80 10	-- 스탬 및 기타 증기력엔진	2.7	0	
8412 80 80	-- 기타	4.2	0	
8412 90	- 부분품			
8412 90 20	-- 역추진엔진(단, 터보제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7	0	
8412 90 40	-- 수력엔진과 모터의 것	2.7	0	
8412 90 80	-- 기타	2.7	0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 엘리베이터			
	- 펌프(계기를 갖춘 것 또는 갖추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8413 11 00	--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유형의 것에 한한다)	1.7	0	
8413 19 00	-- 기타	1.7	0	
8413 20 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 또는 제8413.19호의 것을 제외한다)	1.7	0	
8413 30	-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8413 30 20	-- 인젝션펌프	1.7	0	
8413 30 80	-- 기타	1.7	0	
8413 40 00	- 콘크리트 펌프	1.7	0	
8413 50	-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 50 20	-- 수력장치	1.7	0	
8413 50 40	-- 도장 및 배합에 사용되는 펌프	1.7	0	
	-- 기타			
	--- 피스톤펌프			
8413 50 61	---- 수력유체전원	1.7	0	
8413 50 69	---- 기타	1.7	0	
8413 50 80	--- 기타	1.7	0	
8413 60	-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13 60 20	-- 수력장치	1.7	0	
	-- 기타			
	--- 기어펌프			
8413 60 31	---- 수력유체전원	1.7	0	
8413 60 39	---- 기타	1.7	0	
	--- 베인펌프			
8413 60 61	---- 수력유체전원	1.7	0	
8413 60 69	---- 기타	1.7	0	
8413 60 70	--- 스크루펌프	1.7	0	
8413 60 80	--- 기타	1.7	0	
8413 70	- 기타의 원심펌프			
	-- 잠수가 가능한 펌프			
8413 70 21	--- 싱글 스테이지	1.7	0	
8413 70 29	--- 멀티 스테이지	1.7	0	
8413 70 30	-- 열 시스템과 온수 공급용 놀림쇄가 없는 임펠러 펌프	1.7	0	
	-- 기타, 방전구 직경이			
8413 70 35	--- 15밀리미터이하인 것	1.7	0	
	--- 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413 70 45	---- 채널 압축기와 사이드 채널 펌프	1.7	0	
	---- 방사유동펌프			
	----- 싱글 스테이지			
	----- 싱글엔트리압축기가 있는 것			
8413 70 51	----- 단일블록	1.7	0	
8413 70 59	----- 기타	1.7	0	
8413 70 65	----- 한 개 이상의 엔트리압축기를 장착한 것	1.7	0	
8413 70 75	----- 멀티 스테이지	1.7	0	
	---- 기타 원심펌프			
8413 70 81	----- 싱글 스테이지	1.7	0	
8413 70 89	----- 멀티 스테이지	1.7	0	
	- 기타 펌프; 액체 엘리베이터			
8413 81 00	-- 펌프	1.7	0	
8413 82 00	-- 액체 엘리베이터	1.7	0	
	- 부분품			
8413 91 00	-- 펌프의 것	1.7	0	
8413 92 00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1.7	0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 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8414 10	- 진공펌프			
8414 10 20	-- 반도체 제조용	1.7	0	
	-- 기타			
8414 10 25	--- 로터리 피스톤 진공 펌프 · 슬라이딩 베인 로터리 펌프 · 분자 드래그 펌프와 루트펌프	1.7	0	
	--- 기타			
8414 10 81	---- 방산펌프 · 저온펌프 · 흡착펌프	1.7	0	
8414 10 89	---- 기타	1.7	0	
8414 20	-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8414 20 20	-- 순환용 수펌프	1.7	0	
8414 20 80	-- 기타	2.2	0	
8414 30	-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8414 30 20	--사용동력이 0.4킬로와트이하인 것	2.2	0	
	-- 사용동력이 0.4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414 30 81	--- 밀봉 및 반밀봉	2.2	0	
8414 30 89	--- 기타	2.2	0	
8414 40	- 예인용의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414 40 10	-- 분당 전류가 2m³이하인 것	2.2	0	
8414 40 90	-- 분당 전류가 2m³를 초과하는 것	2.2	0	
	- 팬			
8414 51 00	-- 테이블 · 바닥 · 벽 · 창문 · 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 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3.2	0	
8414 59	-- 기타			
8414 59 20	--- 굴대팬	2.3	0	
8414 59 40	--- 원심팬	2.3	0	
8414 59 80	--- 기타	2.3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14 60 00	-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7	0	
8414 80	- 기타			
	-- 터보압축기			
8414 80 11	--- 싱글 스테이지	2.2	0	
8414 80 19	--- 멀티 스테이지	2.2	0	
	-- 용적형 왕복 압축기, 게이지 압축력이			
	--- 15바이하인 것, 시간당 유동이			
8414 80 22	---- 60m³ 이하인 것	2.2	0	
8414 80 28	---- 60m³를 초과하는 것	2.2	0	
	--- 15바를 초과하는 것, 시간당 유동이			
8414 80 51	---- 120m³이하인 것	2.2	0	
8414 80 59	---- 120m³를 초과하는 것	2.2	0	
	-- 로터리 배수 압축기			
8414 80 73	--- 단축	2.2	0	
	--- 다축			
8414 80 75	---- 스크루 압축기	2.2	0	
8414 80 78	---- 기타	2.2	0	
8414 80 80	-- 기타	2.2	0	
8414 90 00	- 부분품	2.2	0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 10	-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8415 10 10	-- 자장식의 것	2.2	0	
8415 10 90	-- 분리형의 것	2.7	0	
8415 20 00	-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의 것에 한한다)	2.7	0	
	- 기타			
8415 81 00	-- 냉장 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 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2.7	0	
8415 82 00	-- 기타(냉장 유닛을 결합한 것에 한한다)	2.7	0	
8415 83 00	-- 냉장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2.7	0	
8415 90 00	- 부분품	2.7	0	
8416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 10	- 액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8416 10 10	-- 자동조절장치가 장착된 것	1.7	0	
8416 10 90	-- 기타	1.7	0	
8416 20	- 기타의 노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를 포함한다)			
8416 20 10	-- 가스용, 단일불록 (환기장치 및 조절장치가 장착된 것)	1.7	0	
	-- 기타	1.7	0	
8416 30 00	-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1.7	0	
8416 90 00	- 부분품	1.7	0	
8417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 10 00	- 배소·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 노와 오븐(광석·황철강 또는 기타 금속 처리용의 것에 한한다)	1.7	0	
8417 2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8417 20 10	-- 터널오븐	1.7	0	
8417 20 90	-- 기타	1.7	0	
8417 80	- 기타			
8417 80 10	-- 쓰레기 소각용 난방로와 오븐	1.7	0	
8417 80 20	-- 자기제품 연소용 터널오븐과 머플난방로	1.7	0	
8417 80 80	-- 기타	1.7	0	
8417 90 00	- 부분품	1.7	0	
8418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8418 10	-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에 한한다)			
8418 10 20	-- 용량이 340리터를 초과하는 것	1.9	0	
8418 10 80	-- 기타	1.9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가정형 냉장고			
8418 21	-- 압축식의 것			
8418 21 10	--- 용량이 340리터를 초과하는 것	1.5	0	
	--- 기타			
8418 21 51	---- 탁자모델	2.5	0	
8418 21 59	---- 건축형	1.9	0	
	---- 기타, 용량이			
8418 21 91	----- 250리터이하인 것	2.5	0	
8418 21 99	----- 250리터초과 340리터이하인 것	1.9	0	
8418 29 00	-- 기타	2.2	0	
8418 30	- 체크트형의 냉동고(용량이 800리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418 30 20	-- 용량이 400리터이하인 것	2.2	0	
8418 30 80	-- 용량이 400리터초과 800리터이하인 것	2.2	0	
8418 40	-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418 40 20	-- 용량이 250리터이하인 것	2.2	0	
8418 40 80	-- 용량이 250리터초과 900리터이하인 것	2.2	0	
8418 50	- 냉장 또는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목적의 기타 가구(체크트, 캐비닛, 전시용카운터, 쇼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 냉동용 쇼케이스 와 카운터(냉장장치 및 증발기를 갖춘 것)			
8418 50 11	--- 냉동음식저장고	2.2	0	
8418 50 19	--- 기타	2.2	0	
	-- 기타 냉장가구			
8418 50 91	--- 급속냉동용(소호 제8418.30호와 제8418.40호의 것을 제외한다)	2.2	0	
8418 50 99	--- 기타	2.2	0	
	- 기타 냉장 또는 냉동장비; 열펌프			
8418 61 00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2.2	0	
8418 69 00	-- 기타	2.2	0	
	- 부분품			
8418 91 00	--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가구	2.2	0	
8418 99	-- 기타			
8418 99 10	--- 냉장 기구용 증발기와 콘덴서(단, 가정형 냉장고 제외)	2.2	0	
8418 99 90	--- 기타	2.2	0	
8419	가열 · 조리 · 배소 · 증류 · 정류 · 살균 · 저온살균 · 증기 가열 · 건조 · 증발 · 응축 ·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 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 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8419 11 00	--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2.6	0	
8419 19 00	-- 기타	2.6	0	
8419 20 00	- 내과용 ·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Free	0	
	- 건조기			
8419 31 00	-- 농산물용의 것	1.7	0	
8419 32 00	-- 목재 · 제지용 펄프 · 지 또는 판지용의 것	1.7	0	
8419 39	-- 기타			
8419 39 10	--- 도자제품용	1.7	0	
8419 39 90	--- 기타	1.7	0	
8419 40 00	- 증류기 또는 정류기	1.7	0	
8419 50 00	- 열교환기	1.7	0	
8419 60 00	- 기체 액화용의 기기	1.7	0	
	- 기타의 기기			
8419 81	--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8419 81 20	--- 커피메이커 및 기타 뜨거운 음료용 여과기와 기타 장치	2.7	0	
8419 81 80	--- 기타	1.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19 89	-- 기타			
8419 89 10	--- 냉각수 재순환의 수단인 냉각타워 및 이와 유사한 직접 냉각용 설비(별개로 벽이 있지 않는 것)	1.7	0	
8419 89 30	--- 금속의 침전용 진공증기설비	2.4	0	
8419 89 98	--- 기타	2.4	0	
8419 90	부분품			
8419 90 15	-- 제8419.20.00호의 살균장치의 것	Free	0	
8419 90 85	-- 기타	1.7	0	
8420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 10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			
8420 10 10	-- 섬유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7	0	
8420 10 30	-- 제지산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7	0	
8420 10 50	-- 플라스틱산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7	0	
8420 10 90	-- 기타	1.7	0	
	- 부분품			
8420 91	-- 실린더			
8420 91 10	--- 주철제의 것	1.7	0	
8420 91 80	--- 기타	2.2	0	
8420 99 00	-- 기타	2.2	0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 11 00	-- 크림분리기	2.2	0	
8421 12 00	-- 의류탈수기	2.7	0	
8421 19	-- 기타			
8421 19 20	--- 실험실에 사용하는 종류의 원심기	1.5	0	
8421 19 70	--- 기타	Free	0	
	-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8421 21 00	--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1.7	0	
8421 22 00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1.7	0	
8421 23 00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1.7	0	
8421 29 00	-- 기타	1.7	0	
	-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8421 31 00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1.7	0	
8421 39	-- 기타			
8421 39 20	--- 공기 여과기와 청정기	1.7	0	
	---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8421 39 40	---- 유동공정	1.7	0	
8421 39 60	---- 촉매작용	1.7	0	
8421 39 90	---- 기타	1.7	0	
	- 부분품			
8421 91 00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1.7	0	
8421 99 00	-- 기타	1.7	0	
8422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 · 광통 · 상자 · 자루 ·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합,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 · 단지 ·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접시세척기			
8422 11 00	-- 가정형의 것	2.7	0	
8422 19 00	-- 기타	1.7	0	
8422 20 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1.7	0	
8422 30 00	- 병 · 광통 · 상자 · 자루 ·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합,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 및 병 · 단지 ·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1.7	0	
8422 40 00	-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1.7	0	
8422 90	- 부분품			
8422 90 10	-- 접시세척기의 것	1.7	0	
8422 90 90	-- 기타	1.7	0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			
8423 1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의 저울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23 10 10	-- 가정형의 저울	1.7	0	
8423 10 90	-- 기타	1.7	0	
8423 20 00	- 컨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1.7	0	
8423 30 00	-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정량 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1.7	0	
	- 기타의 중량측정기기			
8423 81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8423 81 10	--- 설정된 중량을 재는 자동 중량측정기기	1.7	0	
8423 81 30	--- 가포장 제품의 중량 측정과 라벨을 위한 기기	1.7	0	
8423 81 50	--- 상점용 저울	1.7	0	
8423 81 90	--- 기타	1.7	0	
8423 82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8423 82 10	--- 설정된 중량을 재는 자동 중량측정기기	1.7	0	
8423 82 90	--- 기타	1.7	0	
8423 89 00	-- 기타	1.7	0	
8423 90 00	- 각종의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1.7	0	
8424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 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24 10 20	-- 중량이 21킬로그램 이하인 것	1.7	0	
8424 10 80	-- 기타	1.7	0	
8424 20 00	-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1.7	0	
8424 30	-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모터가 내장된 물 세척기			
8424 30 01	--- 열도구가 포함된 것	1.7	0	
	--- 기타, 엔진의 힘이			
8424 30 05	----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1.7	0	
8424 30 09	----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7	0	
	-- 기타의 기계			
8424 30 10	--- 공기압축로 작동하는 것	1.7	0	
8424 30 90	--- 기타	1.7	0	
	- 기타 기기			
8424 81	--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것			
8424 81 10	--- 분무기	1.7	0	
	--- 기타			
8424 81 30	---- 휴대용 기기	1.7	0	
	---- 기타			
8424 81 91	----- 트랙터에 사용되는 액체 또는 분말 살포용의 분무기	1.7	0	
8424 81 99	----- 기타	1.7	0	
8424 89 00	-- 기타	1.7	0	
8424 90 00	- 부분품	1.7	0	
8425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			
	-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 호이스트 또는 차량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8425 11 00	-- 전동식의 것	Free	0	
8425 19	-- 기타			
8425 19 20	--- 수동용 체인 호이스트	Free	0	
8425 19 80	--- 기타	Free	0	
	- 기타 윈치; 캡스턴			
8425 31 00	-- 전동식의 것	Free	0	
8425 39	-- 기타			
8425 39 30	--- 내부 연소 피스톤 엔진으로 작동하는 것	Free	0	
8425 39 90	--- 기타	Free	0	
	- 잭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			
8425 41 00	-- 차고용의 재킹시스템에 내장된 것	Free	0	
8425 42 00	-- 기타의 잭과 호이스트(액압식의 것에 한한다)	Free	0	
8425 49 00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26	선박의 데크,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천장주행 크레인 · 트랜스포터 크레인 · 갠트리 크레인 · 교각형 크레인 ·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8426 11 00	--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Free	0	
8426 12 00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Free	0	
8426 19 00	-- 기타	Free	0	
8426 20 00	- 타워크레인	Free	0	
8426 30 00	-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Free	0	
	-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8426 41 00	-- 타이어가 달린 것	Free	0	
8426 49 00	-- 기타	Free	0	
	- 기타의 기계			
8426 91	--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8426 91 10	---- 차량 적재용 수력의 크레인	Free	0	
8426 91 90	---- 기타	Free	0	
8426 99 00	-- 기타	Free	0	
8427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8427 1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8427 10 10	-- 최대권양높이 1미터이상의 것	4.5	3	
8427 10 90	-- 기타	4.5	3	
8427 20	- 기타의 자주식 작업트럭			
	-- 최대권양높이 1미터이상의 것			
8427 20 11	---- 자주식 협지용 지게차 및 스택킹 트럭	4.5	3	
8427 20 19	---- 기타	4.5	3	
8427 20 90	-- 기타	4.5	0	
8427 90 00	- 기타의 작업트럭	4	0	
8428	기타의 권양용 · 하역용 ·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 · 에스컬레이터 · 컨베이어 · 텔레페릭)			
8428 10	-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8428 10 20	-- 전기구동식	Free	0	
8428 10 80	-- 기타	Free	0	
8428 20	- 뉴매틱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 20 30	-- 농업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것	Free	0	
	-- 기타			
8428 20 91	---- 화물용	Free	0	
8428 20 98	---- 기타	Free	0	
	- 기타의 연속자동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물품 또는 재료용)			
8428 31 00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설계제작된 것	Free	0	
8428 32 00	-- 기타 버켓형의 것	Free	0	
8428 33 00	-- 기타 벨트형의 것	Free	0	
8428 39	기타			
8428 39 20	---- 롤러 컨베이어	Free	0	
8428 39 90	---- 기타	Free	0	
8428 40 0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Free	0	
8428 60 00	- 텔레페릭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 및 퓨니쿨러용의 견인장치	Free	0	
8428 90	- 기타의 기계			
8428 90 30	-- 압연기 기기: 제품을 부양하고 제거하기 위한 롤러 테이블; 잉곳 · 볼 · 봉 · 슬랩용 조종기	Free	0	
	-- 기타			
	---- 농업용으로 특수제작설계된 로더			
8428 90 71	---- 농업용 트랙터에 부착하기 위해 설계된 것	Free	0	
8428 90 79	---- 기타	Free	0	
	---- 기타			
8428 90 91	---- 화물에 사용되는 기계 로더	Free	0	
8428 90 95	---- 기타	Free	0	
8429	자주식의 불도저 · 앵글도저 · 그레이더 · 레벨러 · 스크레이퍼 · 메커니컬 셔블 · 엑스커베이터 · 셔블로더 ·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불도저와 앵글도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29 11 00	-- 무한 케도식의 것	Free	0	
8429 19 00	-- 기타	Free	0	
8429 20 00	- 그레이더와 레벨러	Free	0	
8429 30 00	- 스크레이퍼	Free	0	
8429 40	-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 로드롤러			
8429 40 10	--- 진동인 것	Free	0	
8429 40 30	--- 기타	Free	0	
8429 40 90	-- 탬핑머신	Free	0	
	- 메커니컬 셔블 · 엑스커베이터와 셔블로더			
8429 51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8429 51 10	--- 지하 작업용으로 특별설계된 로더	Free	0	
	--- 기타			
8429 51 91	---- 크롤러 셔블로더	Free	0	
8429 51 99	---- 기타	Free	0	
8429 52	--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8429 52 10	--- 무한케도식 굴삭기	Free	0	
8429 52 90	--- 기타	Free	0	
8429 59 00	-- 기타	Free	0	
8430	기타의 이동 · 정지 · 지균 · 스크레이핑 · 굴착 · 탬핑 · 콤팩팅 · 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 · 광석 또는 광물 용의 것에 한한다), 향타기와 향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8430 10 00	- 향타기와 향발기	Free	0	
8430 20 00	-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Free	0	
	- 석탄 또는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 31 00	-- 자주식의 것	Free	0	
8430 39 00	-- 기타	Free	0	
	- 기타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			
8430 41 00	-- 자주식의 것	Free	0	
8430 49 00	-- 기타	Free	0	
8430 50 00	-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Free	0	
	- 기타의 기계(자주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8430 61 00	-- 탬핑용 또는 콤팩팅용의 기계	Free	0	
8430 69 00	-- 기타	Free	0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			
8431 10 00	- 제8425호의 기계의 것	Free	0	
8431 20 00	- 제8427호의 기계의 것	4	0	
	- 제8428호의 기계의 것			
8431 31 00	--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Free	0	
8431 39	-- 기타			
8431 39 10	--- 제8428.90.30호에 해당하는 압연기 기기의 부분품	Free	0	
8431 39 70	--- 기타	Free	0	
	- 제8426호 · 제8429호 또는 제8430호의 기계의 것			
8431 41 00	-- 버켓 · 셔블 · 그랩과 그립	Free	0	
8431 42 00	--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Free	0	
8431 43 00	-- 소호 제8430.41호 또는 제8430.49호의 천공 또는 시굴 용 기계의 부분품	Free	0	
8431 49	-- 기타			
8431 49 2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Free	0	
8431 49 80	--- 기타	Free	0	
8432	농업 · 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8432 10	- 플라우(쟁기)			
8432 10 10	-- 불도저의 흙밀이 쟁기	Free	0	
8432 10 90	-- 기타	Free	0	
	- 하로우(쇄토기) · 스카리파이어 · 컬티베이터(중경기) · 제초기와 호우			
8432 21 00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Free	0	
8432 29	-- 기타			
8432 29 10	--- 파쇄기 및 경운기	Free	0	
8432 29 30	--- 하로우	Free	0	
8432 29 50	--- 회전경운기	Free	0	
8432 29 90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32 30	- 파종기 · 식부기와 이식기			
	-- 파종기			
8432 30 11	--- 중심력 정밀 파종기	Free	0	
8432 30 19	--- 기타	Free	0	
8432 30 90	-- 식부기 및 이식기	Free	0	
8432 40	- 퇴비살포기와 비료살포기			
8432 40 10	-- 광물성 또는 화학성 비료 살포기	Free	0	
8432 40 90	-- 기타	Free	0	
8432 80 00	- 기타의 기계	Free	0	
8432 90 00	- 부분품	Free	0	
8433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 다), 풀베는 기계, 조란 · 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 · 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 공원 또는 운동장의 잔디깎는 기계			
8433 11	--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8433 11 10	--- 전동식	Free	0	
	--- 기타			
	---- 자주식의 것			
8433 11 51	----- 좌석 보유	Free	0	
8433 11 59	----- 기타	Free	0	
8433 11 90	---- 기타	Free	0	
8433 19	-- 기타			
	--- 모터가 있는 것			
8433 19 10	---- 전동식	Free	0	
	---- 기타			
	----- 자주식의 것			
8433 19 51	----- 좌석 보유	Free	0	
8433 19 59	----- 기타	Free	0	
8433 19 70	----- 기타	Free	0	
8433 19 90	--- 모터가 없는 것	Free	0	
8433 20	-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 다)			
8433 20 10	-- 모터가 있는 것	Free	0	
	-- 기타			
	--- 트랙터에 운반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8433 20 51	---- 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 장치를 갖춘 것	Free	0	
8433 20 59	---- 기타	Free	0	
8433 20 90	--- 기타	Free	0	
8433 30	- 기타의 건초제조용 기계			
8433 30 10	-- 주걱 · 측면 방출용 갈퀴 · 건조기	Free	0	
8433 30 90	-- 기타	Free	0	
8433 40	-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8433 40 10	-- 결속기	Free	0	
8433 40 90	-- 기타	Free	0	
	- 기타의 수확기와 탈곡기			
8433 51 00	-- 수확 · 탈곡 겸용기	Free	0	
8433 52 00	-- 기타의 탈곡기	Free	0	
8433 53	-- 구경 또는 과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8433 53 10	--- 감자 굴착용 및 수확용 기기	Free	0	
8433 53 30	--- 사탕무 절단용 및 수확용 기기	Free	0	
8433 53 90	--- 기타	Free	0	
8433 59	-- 기타			
	--- 마초 수확기			
8433 59 11	---- 자주식의 것	Free	0	
8433 59 19	---- 기타	Free	0	
8433 59 30	--- 포도 수확기	Free	0	
8433 59 80	--- 기타	Free	0	
8433 60 00	- 조란 · 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 · 분류 또는 선별 기	Free	0	
8433 90 00	- 부분품	Free	0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 10 00	- 착유기	Free	0	
8434 20 00	- 낙농기계	Free	0	
8434 90 00	- 부분품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35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8435 10 00	- 기계	1.7	0	
8435 90 00	- 부분품	1.7	0	
8436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 10 0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1.7	0	
	- 가금의 사육용 기계,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 21 00	--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1.7	0	
8436 29 00	-- 기타	1.7	0	
8436 80	- 기타의 기계			
8436 80 10	-- 임업용 기계	1.7	0	
	-- 기타			
8436 80 91	--- 자동 음료용 사발	1.7	0	
8436 80 99	--- 기타	1.7	0	
	- 부분품			
8436 91 00	-- 가금 사육용 기계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1.7	0	
8436 99 00	-- 기타	1.7	0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농장형의 것을 제외한다)			
8437 10 00	-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1.7	0	
8437 80 00	- 기타의 기계	1.7	0	
8437 90 00	- 부분품	1.7	0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 기계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한다)			
8438 10	- 베이커리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 기타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8438 10 10	-- 베이커리 기계	1.7	0	
8438 10 90	-- 마카로니·스파게티 기타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1.7	0	
8438 20 00	-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	1.7	0	
8438 30 00	- 설탕 제조용 기계	1.7	0	
8438 40 00	- 양조용 기계	1.7	0	
8438 50 00	-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용의 기계	1.7	0	
8438 60 00	- 과일·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1.7	0	
8438 80	- 기타의 기계			
8438 80 10	-- 차 또는 커피의 조제용	1.7	0	
	-- 기타			
8438 80 91	--- 음료의 조제용	1.7	0	
8438 80 99	--- 기타	1.7	0	
8438 90 00	- 부분품	1.7	0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8439 10 0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1.7	0	
8439 20 00	-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1.7	0	
8439 30 00	-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1.7	0	
	- 부분품			
8439 91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439 91 1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1.7	0	
8439 91 90	--- 기타	1.7	0	
8439 99	-- 기타			
8439 99 1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1.7	0	
8439 99 90	--- 기타	1.7	0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 10	- 기계			
8440 10 10	-- 접음 기계	1.7	0	
8440 10 20	-- 대조 및 수집 기계	1.7	0	
8440 10 30	-- 재봉기·철사기	1.7	0	
8440 10 40	-- 봉제되지 않은(완전) 재책기	1.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40 10 90	-- 기타	1.7	0	
8440 90 00	- 부분품	1.7	0	
8441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 10	- 절단기			
8441 10 10	-- 릴 슬리터 및 릴 복합 기기	1.7	0	
8441 10 20	-- 기타 슬리터 및 크로스커팅 기기	1.7	0	
8441 10 30	-- 재단기	1.7	0	
8441 10 40	-- 트리머	1.7	0	
8441 10 80	-- 기타	1.7	0	
8441 20 00	-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1.7	0	
8441 30 00	- 카톤·박스·케이스·튜브·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물당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7	0	
8441 40 00	-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 제품의 물당용 기계	1.7	0	
8441 80 00	- 기타의 기계	1.7	0	
8441 90	- 부분품			
8441 90 10	-- 절단기계의 것	1.7	0	
8441 90 90	-- 기타	1.7	0	
8442	플레이트·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 30	- 기계류·장치 및 장비			
8442 30 10	-- 사진 식자기 및 인쇄 식자기	1.7	0	
	-- 기타			
8442 30 91	--- 활자 주조 및 식자 복합기(예: 라이노타이프·모노타이프 및 인 자동타이프)(활자기기의 유무를 불문한다)	Free	0	
8442 30 99	--- 기타	1.7	0	
8442 40 00	- 상기한 기계류·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1.7	0	
8442 50	-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 인쇄용 형상이 있는 것			
8442 50 21	--- 철판인쇄용	1.7	0	
8442 50 23	--- 평판인쇄용	1.7	0	
8442 50 29	--- 기타	1.7	0	
8442 50 80	-- 기타	1.7	0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 11 00	-- 오프셋 인쇄기계(릴식의 것)	1.7	0	
8443 12 00	-- 오프셋 인쇄기계(쉬이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번이 22센티미터이하, 다른 번이 36센티미터이하인 제본되지 아니한 상태의 쉬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7	0	
8443 13	--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			
	--- 쉬이트식			
8443 13 10	---- 중고	1.7	0	
	---- 새것, 쉬이트 사이즈가			
8443 13 31	----- 52 X 74센티미터 이하인 것	1.7	0	
8443 13 35	----- 52 X 74센티미터초과 74 X 107센티미터이하인 것	1.7	0	
8443 13 39	----- 74 X 10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7	0	
8443 13 90	---- 기타	1.7	0	
8443 14 00	-- 활판인쇄용 기계(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을 제외한다)	1.7	0	
8443 15 00	-- 활판인쇄용 기계(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을 제외한다)	1.7	0	
8443 16 00	-- 곡면인쇄용 기계	1.7	0	
8443 17 00	-- 그라비아인쇄용 기계	1.7	0	
8443 19	-- 기타			
8443 19 20	--- 직물인쇄용	1.7	0	
8443 19 40	--- 반도체제조용	1.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43 19 70	--- 기타	1.7	0	
	-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443 31	--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8443 31 10	---- 인쇄 기능과 무관하게 복사 및 사진전송이 가능한 기기 (복사 속도가 분당 12모노크롬이하인 것에 한한다)	Free	0	
	--- 기타			
8443 31 91	---- 원본 스캔 및 정전기 인쇄 엔진을 사용하여 복사물을 인쇄 가능한 복사 기능이 있는 기기	6	0	
8443 31 99	---- 기타	Free	0	
8443 32	--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8443 32 10	--- 인쇄기	Free	0	
8443 32 30	--- 팩시밀리	Free	0	
	--- 기타			
8443 32 91	---- 원본 스캔 및 정전기 인쇄 엔진을 사용하여 복사물을 인쇄 가능한 복사 기능이 있는 기기	6	0	
8443 32 93	---- 광학계를 통한 복사 기능이 있는 기타 기계	Free	0	
8443 32 99	---- 기타	2.2	0	
8443 39	-- 기타			
8443 39 10	--- 원본 스캔 및 정전기 인쇄 엔진을 사용하여 복사물을 인쇄 가능한 복사 기능이 있는 기기	6	0	
	--- 기타의 복사기계			
8443 39 31	---- 광학계를 갖추고 있는 것	Free	0	
8443 39 39	---- 기타	3	0	
8443 39 90	--- 기타	2.2	0	
	- 부분품 및 부속품			
8443 91	-- 제8442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 91 10	--- 제8443.19.40호의 기기의 것	1.7	0	
	--- 기타			
8443 91 91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1.7	0	
8443 91 99	---- 기타	1.7	0	
8443 99	-- 기타			
8443 99 10	--- 전자 조립품	Free	0	
8443 99 90	--- 기타	Free	0	
8444 00	인조섬유의 방사 · 연신 · 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			
8444 00 10	- 방사용의 기계	1.7	0	
8444 00 90	- 기타	1.7	0	
8445	방직준비기계, 방직기 · 합사기 · 연사기와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방직준비기계			
8445 11 00	-- 카드기	1.7	0	
8445 12 00	-- 코망기	1.7	0	
8445 13 00	-- 연조기 또는 조방기	1.7	0	
8445 19 00	-- 기타	1.7	0	
8445 20 00	- 방직기계	1.7	0	
8445 30	- 합사기 또는 연사기			
8445 30 10	-- 합사기	1.7	0	
8445 30 90	-- 연사기	1.7	0	
8445 40 00	-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1.7	0	
8445 90 00	- 기타	1.7	0	
8446	직기(직조기)			
8446 10 00	- 폭이 30센티미터이하인 소폭직기	1.7	0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의 것에 한한다)			
8446 21 00	--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에 한한다)	1.7	0	
8446 29 00	-- 기타	1.7	0	
8446 30 00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1.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47	편직기 · 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 · 튜울 · 레이스 · 자수포 · 트리밍 · 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 원형편기			
8447 11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이하인 것			
8447 11 10	--- 래치 바늘을 사용하는 것	1.7	0	
8447 11 90	--- 기타	1.7	0	
8447 12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447 12 10	--- 래치 바늘을 사용하는 것	1.7	0	
8447 12 90	--- 기타	1.7	0	
8447 20	- 횡편기와 스티치 본딩기			
8447 20 20	-- 경편기(라셀형과 스티치 본딩형을 포함)	1.7	0	
8447 20 80	-- 기타	1.7	0	
8447 90 00	- 기타	1.7	0	
8448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 도비기 · 자카드기 · 자동정지기 · 셔틀 교환기) 및 이 호 또는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 스펀들 · 스펀들플라이어 · 침포 · 코움 · 방사니플 · 셔틀 · 종광 · 종광프레임 · 메리야스용 바늘)			
	-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 11 00	-- 도비기와 자카드기 및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 · 복사 · 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1.7	0	
8448 19 00	-- 기타	1.7	0	
8448 20 00	-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7	0	
	- 제8445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 31 00	-- 침포	1.7	0	
8448 32 00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1.7	0	
8448 33	-- 스펀들 · 스펀들플라이어 · 스피닝링 및 링트래블러			
8448 33 10	--- 스펀들 및 스펀들플라이어	1.7	0	
8448 33 90	--- 스피닝링 및 링트래블러	1.7	0	
8448 39 00	-- 기타	1.7	0	
	- 직기(직조기)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 42 00	-- 직조기용의 바디 · 종광과 종광 프레임	1.7	0	
8448 49 00	-- 기타	1.7	0	
	- 제8447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 51	--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 · 바늘과 기타의 물품			
8448 51 10	--- 싱커	1.7	0	
8448 51 90	--- 기타	1.7	0	
8448 59 00	-- 기타	1.7	0	
8449 00 00	펠트 또는 성형펠트(부직포를 포함한다)의 제조 · 완성이 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및 모자제조용의 형	1.7	0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킬로그램이하인 것			
8450 11	-- 완전자동 세탁기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킬로그램이하인 것			
8450 11 11	---- 전방투입식 세탁기	3	0	
8450 11 19	---- 탑로드형 세탁기	3	0	
8450 11 90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6킬로그램 초과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2.6	0	
8450 12 00	-- 기타 세탁기(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2.7	0	
8450 19 00	-- 기타	2.7	0	
8450 20 00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50 90 00	- 부분품	2.7	0	
8451	수세용·청정용·취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을 제외하며, 방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8451 10 00	- 드라이클리닝기	2.2	0	
	- 건조기			
8451 21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킬로그램이하인 것			
8451 21 10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6킬로그램이하인 것	2.2	0	
8451 21 90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6킬로그램초과 10킬로그램이하인 것	2.2	0	
8451 29 00	-- 기타	2.2	0	
8451 3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 전기전원의 것, 동력이			
8451 30 10	--- 2,500와트이하인 것	2.2	0	
8451 30 30	--- 2,500와트를 초과하는 것	2.2	0	
8451 30 80	-- 기타	2.2	0	
8451 40 00	- 세척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2.2	0	
8451 50 00	-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핑킹기(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2.2	0	
8451 80	- 기타의 기계			
8451 80 10	-- 리놀륨 또는 기타 바닥 깔개 제작용 기계	2.2	0	
8451 80 30	-- 장식용 또는 완성용 기계	2.2	0	
8451 80 80	-- 기타	2.2	0	
8451 90 00	- 부분품	2.2	0	
8452	재봉기(제8440호의 재봉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8452 10	- 가정형의 재봉기			
	-- 머리 부분품이 모터를 제외한 중량이 16킬로그램이하이고 모터를 포함한 중량이 17킬로그램 이하인 박음질용 재봉틀; 모터를 제외한 중량이 16킬로그램이하이고 모터를 포함한 무게가 17킬로그램 이하인 박음질용 재봉틀의 머리부분품			
8452 10 11	--- €65 초과와 박음질용 재봉틀(프레임·테이블 또는 가구는 제외)	5.7	0	
8452 10 19	--- 기타	9.7	0	
8452 10 90	-- 기타의 박음질용 재봉틀과 기타의 박음질용 재봉틀의 머리 부분품	3.7	0	
	- 기타의 박음질용 재봉틀			
8452 21 00	-- 자동식의 것	3.7	0	
8452 29 00	-- 기타	3.7	0	
8452 30	- 재봉기용 바늘			
8452 30 10	-- 평판 생크의 것	2.7	0	
8452 30 90	-- 기타	2.7	0	
8452 40 00	-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2.7	0	
8452 90 00	-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2.7	0	
8453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평준비기·유평기 또는 가공기계 또는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수선용 기계(재봉기를 제외한다)			
8453 10 00	-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평준비기·유평기 또는 가공기계	1.7	0	
8453 20 00	-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	1.7	0	
8453 80 00	- 기타의 기계	1.7	0	
8453 90 00	- 부분품	1.7	0	
8454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454 10 00	- 전로	1.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54 20 00	-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1.7	0	
8454 30	- 주조기			
8454 30 10	-- 압력주조용	1.7	0	
8454 30 90	-- 기타	1.7	0	
8454 90 00	- 부분품	1.7	0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 10 00	- 관 압연기	2.7	0	
	- 기타의 압연기			
8455 21 00	--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압연기	2.7	0	
8455 22 00	-- 냉간 압연기	2.7	0	
8455 30	- 압연기용의 롤			
8455 30 10	-- 주철제의 것	2.7	0	
	-- 개방금형의 단강			
8455 30 31	--- 열간 로울, 열간 및 냉간 백업 로울	2.7	0	
8455 30 39	--- 냉간 로울	2.7	0	
8455 30 90	-- 주강 또는 연강제의 것	2.7	0	
8455 90 00	- 기타 부분품	2.7	0	
8456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8456 10 00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4.5	0	
8456 20 0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3.5	0	
8456 3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 수치제어식의 것			
8456 30 11	--- 와이어 컷	3.5	0	
8456 30 19	--- 기타	3.5	0	
8456 30 90	-- 기타	3.5	0	
8456 90 00	- 기타	3.5	0	
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8457 10	- 머시닝센터			
8457 10 10	-- 수평	2.7	0	
8457 10 90	-- 기타	2.7	0	
8457 20 0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2.7	0	
8457 30	- 멀티스테이션용의 트랜스퍼 머신			
8457 30 10	-- 수치제어식의 것	2.7	0	
8457 30 90	-- 기타	2.7	0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수평 선반			
8458 11	-- 수치제어식의 것			
8458 11 20	--- 터닝 센터	2.7	0	
	--- 자동 선반			
8458 11 41	---- 싱글 스펀들	2.7	0	
8458 11 49	---- 멀티스핀들	2.7	0	
8458 11 80	---- 기타	2.7	0	
8458 19	-- 기타			
8458 19 20	--- 센터 선반(엔진 또는 공구실)	2.7	0	
8458 19 40	--- 자동 선반	2.7	0	
8458 19 80	--- 기타	2.7	0	
	- 기타 선반			
8458 91	-- 수치제어식의 것			
8458 91 20	--- 터닝 센터	2.7	0	
8458 91 80	--- 기타	2.7	0	
8458 99 00	-- 기타	2.7	0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보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8459 10 00	- 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	2.7	0	
	- 기타의 드릴링 머신			
8459 21 00	-- 수치제어식의 것	2.7	0	
8459 29 00	-- 기타	2.7	0	
	- 기타의 보링머신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59 31 00	-- 수치제어식의 것	1.7	0	
8459 39 00	-- 기타	1.7	0	
8459 40	기타의 보링머신			
8459 40 10	-- 수치제어식의 것	1.7	0	
8459 40 90	-- 기타	1.7	0	
	- 무릎형 밀링머신			
8459 51 00	-- 수치제어식의 것	2.7	0	
8459 59 00	-- 기타	2.7	0	
	- 기타의 밀링머신			
8459 61	-- 수치제어식의 것			
8459 61 10	--- 톨 밀링머신	2.7	0	
8459 61 90	--- 기타	2.7	0	
8459 69	-- 기타			
8459 69 10	--- 톨 밀링머신	2.7	0	
8459 69 90	--- 기타	2.7	0	
8459 70 00	- 기타의 나사절삭 또는 태핑머신	2.7	0	
8460	디버링 · 샤프닝 · 그라인딩 · 호닝 · 래핑 ·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를 제외한다)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인 것에 한한다)			
8460 11 00	-- 수치제어식의 것	2.7	0	
8460 19 00	-- 기타	2.7	0	
	- 기타의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인 것에 한한다)			
8460 21	-- 수치제어식의 것			
	--- 실린더 표면용			
8460 21 11	---- 내부 실린더형 연삭기	2.7	0	
8460 21 15	---- 센터리스 연삭기	2.7	0	
8460 21 19	---- 기타	2.7	0	
8460 21 90	---- 기타	2.7	0	
8460 29	-- 기타			
	--- 실린더 표면용			
8460 29 11	---- 내부 실린더형 연삭기	2.7	0	
8460 29 19	---- 기타	2.7	0	
8460 29 90	---- 기타	2.7	0	
	- 샤프닝머신 (공구 또는 커터 연삭용)			
8460 31 00	-- 수치제어식의 것	1.7	0	
8460 39 00	-- 기타	1.7	0	
8460 40	- 호닝머신 또는 래핑머신			
8460 40 10	-- 수치제어식의 것	1.7	0	
8460 40 90	-- 기타	1.7	0	
8460 90	- 기타			
8460 90 10	-- 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인 것	2.7	0	
8460 90 90	-- 기타	1.7	0	
8461	플레이닝용 · 셰이핑용 · 슬로팅용 · 부로칭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 기어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61 20 00	- 셰이핑머신 또는 슬로팅머신	1.7	0	
8461 30	- 부로칭머신			
8461 30 10	-- 수치제어식의 것	1.7	0	
8461 30 90	-- 기타	1.7	0	
8461 40	-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 기어절삭기(연마식 기어절삭기 포함)			
	--- 실린더형 기어 절삭용			
8461 40 11	---- 수치제어식의 것	2.7	0	
8461 40 19	---- 기타	2.7	0	
	--- 기타 기어 절삭용			
8461 40 31	---- 수치제어식의 것	1.7	0	
8461 40 39	---- 기타	1.7	0	
	-- 기어 완성용 기계			
	--- 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인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61 40 71	---- 수치제어식의 것	2.7	0	
8461 40 79	---- 기타	2.7	0	
8461 40 90	--- 기타	1.7	0	
8461 50	- 톱기계 또는 절단기			
	-- 톱기계			
8461 50 11	--- 원형 톱기계	1.7	0	
8461 50 19	--- 기타	1.7	0	
8461 50 90	-- 절단기	1.7	0	
8461 90 00	- 기타	2.7	0	
8462	단조 · 해머링 · 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 · 접음 · 교정 · 펼침 · 전단 · 편칭 · 낮침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8462 10	- 단조기 · 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8462 10 10	-- 수치제어식의 것	2.7	0	
8462 10 90	-- 기타	1.7	0	
	-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또는 평탄기(프레스 포함)			
8462 21	-- 수치제어식의 것			
8462 21 10	--- 플랫폼 제품 작업용	2.7	0	
8462 21 80	--- 기타	2.7	0	
8462 29	-- 기타			
8462 29 10	--- 플랫폼 제품 작업용	1.7	0	
	--- 기타			
8462 29 91	---- 수력	1.7	0	
8462 29 98	---- 기타	1.7	0	
	- 전단기(프레스 포함,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			
8462 31 00	-- 수치제어식의 것	2.7	0	
8462 39	-- 기타			
8462 39 10	--- 플랫폼 제품 작업용	1.7	0	
	--- 기타			
8462 39 91	---- 수력	1.7	0	
8462 39 99	---- 기타	1.7	0	
	- 편칭기 또는 낮침기(프레스를 포함,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			
8462 41	-- 수치제어식의 것			
8462 41 10	--- 플랫폼 제품 작업용	2.7	0	
8462 41 90	--- 기타	2.7	0	
8462 49	-- 기타			
8462 49 10	--- 플랫폼 제품 작업용	1.7	0	
8462 49 90	--- 기타	1.7	0	
	- 기타			
8462 91	-- 액압 프레스			
8462 91 10	--- 소결을 통한 금속 파우더 조형용 액압 프레스 또는 금속 조각을 한 묶음으로 압축 시키는 프레스	2.7	0	
	--- 기타			
8462 91 50	---- 수치제어식의 것	2.7	0	
8462 91 90	---- 기타	2.7	0	
8462 99	-- 기타			
8462 99 10	--- 소결을 통한 금속 파우더 조형용 액압 프레스 또는 금속 조각을 한 묶음으로 압축시키는 프레스	2.7	0	
	--- 기타			
8462 99 50	---- 수치제어식의 것	2.7	0	
8462 99 90	---- 기타	2.7	0	
8463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8463 10	- 드로우 벤치(봉 · 관 · 프로파일 ·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8463 10 10	-- 선용 드로우 벤치	2.7	0	
8463 10 90	-- 기타	2.7	0	
8463 20 00	- 나사전조기	2.7	0	
8463 30 00	- 선가공기	2.7	0	
8463 90 00	- 기타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64	석 · 도자기 · 콘크리트 · 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8464 10 00	- 톱기계	2.2	0	
8464 20	- 연마기 또는 광택기			
	-- 유리 가공용			
8464 20 11	--- 광유리	2.2	0	
8464 20 19	--- 기타	2.2	0	
8464 20 20	-- 도자기 가공용	2.2	0	
8464 20 95	-- 기타	2.2	0	
8464 90	- 기타			
8464 90 20	-- 도자기 가공용	2.2	0	
8464 90 80	-- 기타	2.2	0	
8465	목재 · 코르크 · 뼈 · 경질 고무 ·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 · 스테이플용 · 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8465 10	- 다 작업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465 10 10	-- 수동 전송으로 다른 종류의 작업이 가능	2.7	0	
8465 10 90	-- 자동 전송으로 다른 종류의 작업이 가능	2.7	0	
	- 기타			
8465 91	-- 톱 기계			
8465 91 10	--- 띠톱	2.7	0	
8465 91 20	--- 원형톱	2.7	0	
8465 91 90	--- 기타	2.7	0	
8465 92 00	-- 평삭기 · 밀링기 또는 몰당기(절단 방식으로 한 것에 한한다)	2.7	0	
8465 93 00	-- 연삭기 · 샌딩기 또는 광택기	2.7	0	
8465 94 00	-- 굽힘기 또는 조립기	2.7	0	
8465 95 00	-- 드릴링 또는 모티싱기	2.7	0	
8465 96 00	-- 스플리팅 · 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2.7	0	
8465 99	-- 기타			
8465 99 10	--- 선반	2.7	0	
8465 99 90	--- 기타	2.7	0	
8466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 · 톨홀더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톨홀더			
8466 10	- 톨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 톨홀더			
8466 10 20	--- 굴대 · 폴릿 및 슬리브	1.2	0	
	--- 기타			
8466 10 31	---- 선반용	1.2	0	
8466 10 38	---- 기타	1.2	0	
8466 10 80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1.2	0	
8466 20	- 가공용 홀더			
8466 20 20	-- 특정용도의 가공용 지그와 픽스처; 표준 지그와 픽스처 세트의 부품	1.2	0	
	-- 기타			
8466 20 91	--- 선반용	1.2	0	
8466 20 98	--- 기타	1.2	0	
8466 30 00	-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1.2	0	
	- 기타			
8466 91	-- 제8464호의 기계용의 것			
8466 91 2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1.2	0	
8466 91 95	--- 기타	1.2	0	
8466 92	-- 제8465호의 기계용의 것			
8466 92 2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1.2	0	
8466 92 80	--- 기타	1.2	0	
8466 93 00	-- 제8456호 내지 제8461호의 기계용의 것	1.2	0	
8466 94 00	-- 제8462호 또는 제8463호의 기계용의 것	1.2	0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압축공기식의 것			
8467 11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67 11 10	--- 금속세공	1.7	0	
8467 11 90	--- 기타	1.7	0	
8467 19 00	-- 기타	1.7	0	
	- 자가컨테이너전기모터가 장착된 것			
8467 21	-- 각종의 드릴			
8467 21 10	--- 외부 동력이 필요 없이 작동하는 것	2.7	0	
	--- 기타			
8467 21 91	---- 수지식	2.7	0	
8467 21 99	---- 기타	2.7	0	
8467 22	-- 톱			
8467 22 10	--- 체인톱	2.7	0	
8467 22 30	--- 원형톱	2.7	0	
8467 22 90	--- 기타	2.7	0	
8467 29	-- 기타			
8467 29 10	--- 직물 재료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7	0	
	--- 기타			
8467 29 30	---- 외부 동력이 필요 없이 작동하는 것	2.7	0	
	---- 기타			
	----- 그라인더 및 샌더			
8467 29 51	----- 앵글 그라인더	2.7	0	
8467 29 53	----- 벨트 샌더	2.7	0	
8467 29 59	----- 기타	2.7	0	
8467 29 70	----- 플레이너	2.7	0	
8467 29 80	----- 헤지 트리머 및 잔디 깎는 기계	2.7	0	
8467 29 90	----- 기타	2.7	0	
	- 기타 공구			
8467 81 00	-- 체인톱	1.7	0	
8467 89 00	-- 기타	1.7	0	
	- 부분품			
8467 91 00	-- 체인톱의 것	1.7	0	
8467 92 00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1.7	0	
8467 99 00	-- 기타	1.7	0	
8468	납땀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능 여부를 불문하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표면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8468 10 00	- 수지식 취관	2.2	0	
8468 20 00	- 가스를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	2.2	0	
8468 80 00	- 기타의 기기	2.2	0	
8468 90 00	- 부분품	2.2	0	
8469 00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를 제외한다)와 워드프로세싱머신			
8469 00 10	- 워드프로세싱머신	Free	0	
	- 기타			
8469 00 91	-- 전동식	2.3	0	
8469 00 99	-- 기타	2.5	0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8470 10 0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없이 작동되는 것에 한한다)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Free	0	
	- 기타의 전자계산기			
8470 21 00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Free	0	
8470 29 00	-- 기타	Free	0	
8470 30 00	- 기타의 계산기	Free	0	
8470 50 00	- 금전 등록기	Free	0	
8470 90 00	- 기타	Free	0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1 30 0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Free	0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71 41 00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8471 49 00	--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Free	0	
8471 50 0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 또는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8471 60	-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71 60 60	-- 키보드	Free	0	
8471 60 70	-- 기타	Free	0	
8471 70	- 기억장치			
8471 70 20	-- 중앙보관장치	Free	0	
	-- 기타			
	--- 디스크보관장치			
8471 70 30	---- 마그네토 광학계를 포함한 광학계	Free	0	
	---- 기타			
8471 70 50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Free	0	
8471 70 70	----- 기타	Free	0	
8471 70 80	--- 자기테이프보관장치	Free	0	
8471 70 98	--- 기타	Free	0	
8471 80 00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관의 단위기기	Free	0	
8471 90 00	- 기타	Free	0	
8472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 핵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 · 주소인쇄기 · 현금자동지불기 · 주화분류기 · 주화계수포장기 · 연필절삭기 · 천공기 또는 지철기)			
8472 10 00	- 등사기	2	0	
8472 30 00	-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접음기 ·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와 우편물의 개봉 · 봉합 또는 실링기 및 우표의 첨부 또는 소인기	2.2	0	
8472 90	- 기타			
8472 90 10	-- 동전 분류기 · 동전 계산기 또는 동전 포장기	2.2	0	
8472 90 30	-- 현금자동처리기	Free	0	
8472 90 70	-- 기타	2.2	0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 · 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8473 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전자 조립품			
8473 10 11	--- 제8469.00.1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것	Free	0	
8473 10 19	--- 기타	3	0	
8473 10 90	-- 기타	Free	0	
	-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8473 21	-- 소호 제8470.10호 · 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8473 21 10	--- 전자 조립품	Free	0	
8473 21 90	--- 기타	Free	0	
8473 29	-- 기타			
8473 29 10	--- 전자 조립품	Free	0	
8473 29 90	--- 기타	Free	0	
8473 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 30 20	-- 전자 조립품	Free	0	
8473 30 80	-- 기타	Free	0	
8473 40	-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전자 조립품			
8473 40 11	--- 제8472.90.3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것	Free	0	
8473 40 18	--- 기타	3	0	
8473 40 80	-- 기타	Free	0	
8473 50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473 50 20	-- 전자 조립품	Free	0	
8473 50 80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74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 세척기 · 파쇄기 · 분쇄기 · 혼합기 · 반죽기(고상 ·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 석 ·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괴기 · 형입기 · 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 · 세라믹 페이스트 · 굳지 아니한 시멘트 · 석고 ·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8474 10 00	-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또는 세척기	Free	0	
8474 20	- 파쇄기 또는 분쇄기			
8474 20 10	-- 도자기 산업용의 광물성 물질용	Free	0	
8474 20 90	-- 기타	Free	0	
	- 혼합기 또는 반죽기			
8474 31 00	-- 콘크리트 혼합기 또는 모르타르 혼합기	Free	0	
8474 32 00	--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Free	0	
8474 39	-- 기타			
8474 39 10	--- 도자기 산업용 광물성 물질의 혼합기 또는 반죽기	Free	0	
8474 39 90	--- 기타	Free	0	
8474 80	- 기타의 기계			
8474 80 10	-- 조괴기 · 형입기와 도자기 페이스트 성형기	Free	0	
8474 80 90	-- 기타	Free	0	
8474 90	- 부분품			
8474 90 1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Free	0	
8474 90 90	-- 기타	Free	0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 · 튜브 ·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체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 10 00	- 전기 또는 전자램프 · 튜브 ·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체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1.7	0	
	- 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 21 00	-- 광섬유 및 광섬유예비 성형품제조용의 기계	1.7	0	
8475 29 00	-- 기타	1.7	0	
8475 90 00	- 부분품	1.7	0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 우표 · 담배 · 식품 또는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음료 자동판매기			
8476 21 00	--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1.7	0	
8476 29 00	-- 기타	1.7	0	
	- 기타 기계			
8476 81 00	--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1.7	0	
8476 89 00	-- 기타	1.7	0	
8476 90 00	- 부분품	1.7	0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477 10 00	- 사출 성형기	1.7	0	
8477 20 00	- 압출기	1.7	0	
8477 30 00	- 취입 성형기	1.7	0	
8477 40 00	- 진공성형기 기타의 열성형기	1.7	0	
	- 기타의 성형기			
8477 51 00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와 기타의 이너 튜브 성형기	1.7	0	
8477 59	-- 기타			
8477 59 10	--- 프레스	1.7	0	
8477 59 80	--- 기타	1.7	0	
8477 80	- 기타의 기계			
	-- 다포 제품 제조용 기계			
8477 80 11	--- 반작용적 수지 처리용 기계	1.7	0	
8477 80 19	--- 기타	1.7	0	
	-- 기타			
8477 80 91	--- 크기 축소용 장비	1.7	0	
8477 80 93	--- 혼합기 · 반죽기 및 교반기	1.7	0	
8477 80 95	--- 커팅 · 스플리 및 필링기	1.7	0	
8477 80 99	--- 기타	1.7	0	
8477 90	- 부분품			
8477 90 1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1.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77 90 80	-- 기타	1.7	0	
8478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478 10 00	- 기계	1.7	0	
8478 90 00	- 부분품	1.7	0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479 10 00	- 토목공사 ·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Free	0	
8479 20 00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류	1.7	0	
8479 30	-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			
8479 30 10	-- 프레스	1.7	0	
8479 30 90	-- 기타	1.7	0	
8479 40 00	-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1.7	0	
8479 50 00	- 산업용 로봇(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7	0	
8479 60 00	- 증발식 에어컨	1.7	0	
	- 기타의 기기			
8479 81 00	--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1.7	0	
8479 82 00	--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채 · 시프팅기 · 균질기 · 유화기 또는 교반기	1.7	0	
8479 89	-- 기타			
8479 89 30	--- 이동 수력 광산 지붕 서포트	1.7	0	
8479 89 60	--- 중심 그리싱 시스템	1.7	0	
8479 89 91	--- 도자기류 글레이징과 장식용 기계	1.7	0	
8479 89 97	--- 기타	1.7	0	
8479 90	- 부분품			
8479 90 2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1.7	0	
8479 90 80	-- 기타	1.7	0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 · 금속탄화물 · 유리 · 광물성 물질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 10 00	-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1.7	0	
8480 20 00	- 주형 베이스	1.7	0	
8480 30	- 주형 제조용의 모형			
8480 30 10	-- 목재제의 것	1.7	0	
8480 30 90	-- 기타	2.7	0	
	-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성형용의 주형			
8480 41 00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1.7	0	
8480 49 00	-- 기타	1.7	0	
8480 50 00	- 유리 성형용의 주형	1.7	0	
8480 60	-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8480 60 10	-- 압축식의 것	1.7	0	
8480 60 90	-- 기타	1.7	0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 71 00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1.7	0	
8480 79 00	-- 기타	1.7	0	
8481	파이프 · 보일러의 동체 · 탱크 ·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8481 10	- 감압밸브			
8481 10 05	-- 여과기 또는 급유기와 혼합된 것	2.2	0	
	-- 기타			
8481 10 19	--- 주철 또는 주강제의 것	2.2	0	
8481 10 99	--- 기타	2.2	0	
8481 20	-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8481 20 10	-- 유압 전송용의 밸브	2.2	0	
8481 20 90	--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2.2	0	
8481 30	- 체크(논-리턴)밸브			
8481 30 91	-- 주철 또는 주강제의 것	2.2	0	
8481 30 99	-- 기타	2.2	0	
8481 40	- 안전밸브			
8481 40 10	-- 주철 또는 주강제의 것	2.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81 40 90	-- 기타	2.2	0	
8481 80	- 기타의 기기			
	-- 세면대 · 목욕통 · 비데 · 수조 · 욕조 및 이와 유사한 설 치물용 탭, 코크 및 밸브			
8481 80 11	--- 혼합 밸브	2.2	0	
8481 80 19	--- 기타	2.2	0	
	-- 중앙 난방기용 밸브			
8481 80 31	--- 자동온도조절 밸브	2.2	0	
8481 80 39	--- 기타	2.2	0	
8481 80 40	-- 압축공기식 타이어 및 튜브용 밸브	2.2	0	
	-- 기타			
	--- 프로세스 제어 밸브			
8481 80 51	---- 온도 조절장치	2.2	0	
8481 80 59	---- 기타	2.2	0	
	--- 기타			
	---- 게이트 밸브			
8481 80 61	----- 주철제의 것	2.2	0	
8481 80 63	----- 강제의 것	2.2	0	
8481 80 69	----- 기타	2.2	0	
	---- 구형 밸브			
8481 80 71	----- 주철제의 것	2.2	0	
8481 80 73	----- 강제의 것	2.2	0	
8481 80 79	----- 기타	2.2	0	
8481 80 81	---- 볼 및 플러그 밸브	2.2	0	
8481 80 85	---- 나비꼴 밸브	2.2	0	
8481 80 87	---- 다이어프램 밸브	2.2	0	
8481 80 99	---- 기타	2.2	0	
8481 90 00	- 부분품	2.2	0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8482 10	- 볼베어링			
8482 10 10	-- 외부 지름 최대 30밀리미터이하인 것	8	3	
8482 10 90	-- 기타	8	3	
8482 20 00	-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8	3	
8482 30 00	- 구형 롤러베어링	8	3	
8482 40 00	- 니들 롤러베어링	8	3	
8482 50 00	- 기타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8	3	
8482 80 00	-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3	
	- 부분품			
8482 91	-- 볼 · 니들 및 롤러			
8482 91 10	--- 원추형 롤러	8	3	
8482 91 90	--- 기타	7.7	3	
8482 99 00	-- 기타	8	3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 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클 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8483 10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크랭크와 크랭크샤프트			
8483 10 21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4	0	
8483 10 25	--- 개방금형의 단강	4	0	
8483 10 29	--- 기타	4	0	
8483 10 50	-- 연결식 샤프트	4	0	
8483 10 95	-- 기타	4	0	
8483 20	-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에 한한다)			
8483 20 10	-- 항공기 및 우주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6	0	
8483 20 90	-- 기타	6	0	
8483 30	-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 하우징 베어링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83 30 32	---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	5.7	0	
8483 30 38	--- 기타	3.4	0	
8483 30 80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3.4	0	
8483 40	-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 · 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용용 엘리먼트를 제외한다),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및 기어박스과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 기계에 사용되는 기어 및 전동장치 (마찰 기어 제외)			
8483 40 21	--- 박차 및 헬리칼	3.7	0	
8483 40 23	--- 베벨 및 베벨/박차	3.7	0	
8483 40 25	--- 웜기어	3.7	0	
8483 40 29	--- 기타	3.7	0	
8483 40 30	-- 볼 스크루 또는 롤러 스크루	3.7	0	
	-- 기어박스 및 기타 변속기			
8483 40 51	--- 기어박스	3.7	0	
8483 40 59	--- 기타	3.7	0	
8483 40 90	-- 기타	3.7	0	
8483 50	- 플라이휠과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8483 50 2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2.7	0	
8483 50 80	-- 기타	2.7	0	
8483 60	-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8483 60 20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2.7	0	
8483 60 80	-- 기타	2.7	0	
8483 9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용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8483 90 20	-- 하우스 베어링의 부분품	5.7	0	
	-- 기타			
8483 90 81	---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것	2.7	0	
8483 90 89	--- 기타	2.7	0	
8484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커니컬 실			
8484 10 00	- 가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1.7	0	
8484 20 00	- 메커니컬 실	1.7	0	
8484 90 00	- 기타	1.7	0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석 제9(c)호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8486 10 00	-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Free	0	
8486 20	-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8486 20 10	-- 초음파 기계 장치	3.5	0	
8486 20 90	-- 기타	Free	0	
8486 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8486 30 10	-- 액정 표시 장치(LCD)용 화학적 방식의 증착기	2.4	0	
8486 30 30	-- 액정 표시 장치(LCD)용 건식 식각기	3.5	0	
8486 30 50	-- 액정 표시 장치(LCD)용 물리적 방식의 증착기	3.7	0	
8486 30 90	-- 기타	Free	0	
8486 40 00	- 제84류의 주석 제9(c)호에 명시된 기계 및 기구	Free	0	
8486 90	- 부분품 및 부속품			
8486 90 10	-- 톨 홀더 및 자동개방 다이헤드; 워크 홀더	1.2	0	
	-- 기타			
8486 90 20	--- 액정 표시 장치(LCD)의 사진 유제 도포용 스피너의 부분품	1.7	0	
8486 90 30	--- 전기도금 방식으로 한 반도체 패키지의 금속 납 세정용 제거 기계의 부분품	1.7	0	
8486 90 40	--- 액정 표시 장치(LCD)의 물리기상성장법의 기구의 부분품	3.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486 90 50	--- 액정 표시 장치(LCD)의 드라이 에칭 패턴용 기구의 부분품	1.2	0	
8486 90 60	--- 액정 표시 장치(LCD)의 화학기상성장법의 기구의 부분품	1.7	0	
8486 90 70	--- 초음파 기계 장치의 부분품 및 부속품	1.2	0	
8486 90 90	--- 기타	Free	0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87 10	-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8487 10 10	-- 청동제의 것	1.7	0	
8487 10 90	-- 기타	1.7	0	
8487 90	기타			
8487 90 10	-- 비가단주철제의 것	1.7	0	
8487 90 30	-- 가단주철제의 것	1.7	0	
	-- 철 또는 강제의 것			
8487 90 51	--- 주강제의 것	1.7	0	
8487 90 53	--- 개방금형의 단철 또는 단강제의 것	1.7	0	
8487 90 55	--- 비개방금형의 단철 또는 단강제의 것	1.7	0	
8487 90 59	--- 기타	1.7	0	
8487 90 90	-- 기타	1.7	0	
85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8501 10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8501 10 10	-- 출력 18와트 이하의 동기 전동기	4.7	0	
	-- 기타			
8501 10 91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2.7	0	
8501 10 93	--- 교류전동기	2.7	0	
8501 10 99	--- 직류 전동기	2.7	0	
8501 20 0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	2.7	0	
	- 기타 직류전동기 및 직류발전기			
8501 31 00	-- 출력이 750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32	-- 출력이 750와트초과 75킬로와트이하인 것			
8501 32 20	--- 출력이 750와트초과 7.5킬로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32 80	--- 출력이 7.5킬로와트초과 75킬로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33 00	-- 출력이 75킬로와트초과 375킬로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34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501 34 50	--- 직류견인전동기	2.7	0	
	--- 기타, 출력이			
8501 34 92	----375킬로와트초과 750킬로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34 98	----75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7	0	
8501 40	- 기타 단상의 교류전동기			
8501 40 20	-- 출력이 37.5와트초과 750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40 80	--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2.7	0	
	- 기타의 교류전동기, 다상의 것			
8501 51 00	-- 출력이 750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52	-- 출력이 750와트초과 75킬로와트이하인 것			
8501 52 20	--- 출력이 750와트초과 7.5킬로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52 30	--- 출력이 7.5킬로와트초과 37킬로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52 90	--- 출력이 37킬로와트초과 75킬로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53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501 53 50	--- 견인전동기	2.7	0	
	--- 기타, 출력이			
8501 53 81	----75킬로와트초과 375킬로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53 94	----375킬로와트초과 750킬로와트이하인 것	2.7	0	
8501 53 99	----75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7	0	
	- 교류발전기			
8501 6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8501 61 20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8501 61 80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8501 62 00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01 63 00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2.7	0	
8501 64 00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7	0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 또는 세미디젤엔진에 한한다)			
8502 1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8502 11 20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8502 11 80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8502 12 00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8502 13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02 13 20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8502 13 40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8502 13 80	--- 출력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7	0	
8502 2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8502 20 20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8502 20 40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8502 20 60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2.7	0	
8502 20 80	--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7	0	
	- 기타의 발전세트			
8502 31 00	-- 풍력의 것	2.7	0	
8502 39	-- 기타			
8502 39 20	--- 터빈발전기	2.7	0	
8502 39 80	--- 기타	2.7	0	
8502 40 00	- 회전변환기	2.7	0	
8503 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03 00 10	- 비자성 링	2.7	0	
	- 기타			
8503 00 91	-- 주철 또는 주강의 것	2.7	0	
8503 00 99	-- 기타	2.7	0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 10	-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8504 10 20	-- 유도자(축전기와의 연계여부를 불문한다)	3.7	0	
8504 10 80	-- 기타	3.7	0	
	- 유입식의 변압기			
8504 21 00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3.7	0	
8504 22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8504 22 10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초과 1,60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3.7	0	
8504 22 90	--- 용량이 1,600킬로볼트암페어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3.7	0	
8504 23 00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3.7	0	
	- 기타의 변압기			
8504 31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 측정변압기			
8504 31 21	---- 전압측정용	3.7	0	
8504 31 29	---- 기타	3.7	0	
8504 31 80	---- 기타	3.7	0	
8504 32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8504 32 20	--- 측정변압기	3.7	0	
8504 32 80	--- 기타	3.7	0	
8504 33 00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3.7	0	
8504 34 00	--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3.7	0	
8504 40	- 정지형 변환기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04 40 30	-- 전기통신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및 그 유니트와 사용되는 것	Free	0	
	-- 기타			
8504 40 40	--- 다결정의 반도체 정류기	3.3	0	
	--- 기타			
8504 40 55	----축전지	3.3	0	
	----기타			
8504 40 81	----정류기	3.3	0	
	----인버터			
8504 40 84	----용량이 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3.3	0	
8504 40 88	----- 용량이 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3.3	0	
8504 40 90	----- 기타	3.3	0	
8504 50	- 기타의 유도자			
8504 50 20	-- 전기통신기기의 것과 함께 사용되고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및 그 유니트의 전력공급용인 것	Free	0	
8504 50 95	-- 기타	3.7	0	
8504 90	- 부분품			
	-- 변압기 및 유도자의 것			
8504 90 05	--- 제8504.50.20호의 기계의 전자조립품	Free	0	
	--- 기타			
8504 90 11	---- 페라이트코어	2.2	0	
8504 90 18	---- 기타	2.2	0	
	-- 정지형 변환기			
8504 90 91	--- 제8504.40.30호의 기계의 전자조립품	Free	0	
8504 90 99	--- 기타	2.2	0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출터,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			
	-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 11 00	-- 금속제의 것	2.2	0	
8505 19	-- 기타			
8505 19 10	--- 영구자석(응결된 페라이트의 것)	2.2	0	
8505 19 90	--- 기타	2.2	0	
8505 20 00	-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2.2	0	
8505 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505 90 10	-- 전자석	1.8	0	
8505 90 30	--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 및 유사출딩장치	1.8	0	
8505 90 50	-- 전자석 리프팅 헤드	2.2	0	
8505 90 90	-- 부분품	1.8	0	
8506	일차전지			
8506 10	- 이산화망간제의 것			
	-- 알칼라인제의 것			
8506 10 11	--- 원통 형태인 것	4.7	0	
8506 10 15	--- 버튼 형태인 것	4.7	0	
8506 10 19	--- 기타	4.7	0	
	-- 기타			
8506 10 91	--- 원통 형태인 것	4.7	0	
8506 10 95	--- 버튼 형태인 것	4.7	0	
8506 10 99	--- 기타	4.7	0	
8506 30	- 산화수은제의 것			
8506 30 10	-- 원통 형태인 것	4.7	0	
8506 30 30	-- 버튼 형태인 것	4.7	0	
8506 30 90	-- 기타	4.7	0	
8506 40	- 산화은제의 것			
8506 40 10	-- 원통 형태인 것	4.7	0	
8506 40 30	-- 버튼 형태인 것	4.7	0	
8506 40 90	-- 기타	4.7	0	
8506 50	- 리튬제의 것			
8506 50 10	-- 원통 형태인 것	4.7	0	
8506 50 30	-- 버튼 형태인 것	4.7	0	
8506 50 90	-- 기타	4.7	0	
8506 60	- 에어징크제의 것			
8506 60 10	-- 원통 형태인 것	4.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06 60 30	-- 버튼 형태인 것	4.7	0	
8506 60 90	-- 기타	4.7	0	
8506 80	- 기타의 일차전지			
8506 80 05	-- 건조한 아연탄소전지(전압이 5.5볼트이상 6.5볼트이하인 것)	Free	0	
	-- 기타			
8506 80 11	--- 원통 형태인 것	4.7	0	
8506 80 15	--- 버튼 형태인 것	4.7	0	
8506 80 90	--- 기타	4.7	0	
8506 90 00	- 부분품	4.7	0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07 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鉛酸)축전지			
	-- 중량이 5킬로그램이하인 것			
8507 10 41	--- 유동전해물과 함께 작동되는 것	3.7	0	
8507 10 49	--- 기타	3.7	0	
	-- 중량이 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507 10 92	--- 유동전해물과 함께 작동되는 것	3.7	0	
8507 10 98	--- 기타	3.7	0	
8507 20	- 기타의 연산 축전지			
	-- 견인 축전지			
8507 20 41	--- 액체전해질과 함께 작동되는 것	3.7	0	
8507 20 49	--- 기타	3.7	0	
	-- 기타			
8507 20 92	--- 액체전해질과 함께 작동되는 것	3.7	0	
8507 20 98	--- 기타	3.7	0	
8507 30	- 니켈 카드뮴 축전지			
8507 30 20	-- 밀폐된 것	2.6	0	
	-- 기타			
8507 30 81	--- 견인 축전지	2.6	0	
8507 30 89	--- 기타	2.6	0	
8507 40 00	- 니켈-철 축전지	2.7	0	
8507 80	- 기타의 축전지			
8507 80 20	-- 니켈-하이드라이드	2.7	0	
8507 80 30	-- 리튬-이온	2.7	0	
8507 80 80	-- 기타	2.7	0	
8507 90	- 부분품			
8507 90 20	-- 축전지판	2.7	0	
8507 90 30	-- 격리막	2.7	0	
8507 90 90	-- 기타	2.7	0	
8508	진공청소기			
	- 전동기를 자장한 것			
8508 11 00	-- 출력이 1,500와트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기타 20리터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2.2	0	
8508 19 00	-- 기타	1.7	0	
8508 60 00	- 기타의 진공청소기	1.7	0	
8508 70 00	- 부분품	1.7	0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			
8509 40 0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일 또는 채소즙 추출기	2.2	0	
8509 80 00	- 기타의 기기	2.2	0	
8509 90 00	- 부분품	2.2	0	
8510	면도기 ·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자장(自藏)한 것에 한한다]			
8510 10 00	- 면도기	2.2	0	
8510 20 00	- 이발기	2.2	0	
8510 30 00	- 모발제거기	2.2	0	
8510 90 00	- 부분품	2.2	0	
8511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용 자석발전기 · 자석발전기 · 점화코일 · 점화플러그 · 예열플러그 · 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 ·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 10 00	- 점화플러그	3.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11 20 00	- 정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3.2	0	
8511 30 00	- 배전기와 정화코일	3.2	3	
8511 40 00	-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3.2	3	
8511 50 00	- 기타의 발전기	3.2	3	
8511 80 00	- 기타의 기기	3.2	0	
8511 90 00	- 부분품	3.2	3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원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8512 10 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2.7	0	
8512 20 0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2.7	0	
8512 30	- 음향신호용 기구			
8512 30 10	-- 모터차량용 도난경보기	2.2	0	
8512 30 90	-- 기타	2.7	0	
8512 40 00	- 원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와 제무기	2.7	0	
8512 90	- 부분품			
8512 90 10	-- 제8512.30.10호의 기기	2.2	0	
8512 90 90	-- 기타	2.7	0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			
8513 10 00	- 전등	5.7	5	
8513 90 00	- 부분품	5.7	0	
8514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8514 10	-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8514 10 10	-- 베이커리 및 비스킷 오븐	2.2	0	
8514 10 80	-- 기타	2.2	0	
8514 20	-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8514 20 10	-- 유도식 노와 오븐	2.2	0	
8514 20 80	-- 유전식 노와 오븐	2.2	0	
8514 30	- 기타의 노와 오븐			
8514 30 19	-- 적외선 오븐	2.2	0	
8514 30 99	-- 기타	2.2	0	
8514 40 00	- 기타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2.2	0	
8514 90 00	- 부분품	2.2	0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 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 납땜용의 기기			
8515 11 00	-- 납땜용의 인두와 건	2.7	0	
8515 19 00	-- 기타	2.7	0	
	- 금속 저항용접용 기기			
8515 21 00	--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2.7	0	
8515 29	-- 기타			
8515 29 10	--- 금속 바트용접용	2.7	0	
8515 29 90	--- 기타	2.7	0	
	- 금속의 아크 용접기기(플라즈마 아크 용접기기 포함)			
8515 31 00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2.7	0	
8515 39	-- 기타			
	--- 용접봉으로 수동식 용접을 하기 위한 것(용접 또는 절단 기기가 갖추어진 것)			
8515 39 13	---- 변압기	2.7	0	
8515 39 18	---- 발전기 또는 회전변환기·정지형변환기·정류기 또는 정류기기	2.7	0	
8515 39 90	--- 기타	2.7	0	
8515 80	- 기타의 기기			
	-- 금속 처리용			
8515 80 11	--- 용접용	2.7	0	
8515 80 19	--- 기타	2.7	0	
	--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15 80 91	--- 플라스틱 저항용접용	2.7	0	
8515 80 99	--- 기타	2.7	0	
8515 90 00	- 부분품	2.7	0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 헤어드라이어 · 헤어컬러 · 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8516 10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 물 가열기			
8516 10 11	--- 즉시식 물가열기	2.7	0	
8516 10 19	--- 기타	2.7	0	
8516 10 90	-- 투입식 가열기	2.7	0	
	- 전기식의 공간가열용 기기 및 전기식 토양가열용 기기			
8516 21 00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2.7	0	
8516 29	-- 기타			
8516 29 10	--- 액체방열기	2.7	0	
8516 29 50	--- 대류히터	2.7	0	
	--- 기타			
8516 29 91	---- 팬이 장착된 것	2.7	0	
8516 29 99	---- 기타	2.7	0	
	- 전기가열식의 이발 또는 핸드건조 기기			
8516 31	-- 헤어드라이어			
8516 31 10	--- 건조후드	2.7	0	
8516 31 90	--- 기타	2.7	0	
8516 32 00	-- 기타의 이용기기	2.7	0	
8516 33 00	-- 손 건조기	2.7	0	
8516 40	- 전기다리미			
8516 40 10	-- 증기 다리미	2.7	0	
8516 40 90	-- 기타	2.7	0	
8516 50 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5	3	
8516 60	- 기타의 오븐, 쿠키 · 조리판 · 보일링링 · 그릴러와 로스터			
8516 60 10	-- 요리도구(오븐과 호브를 결합한것)	2.7	0	
	-- 조리판, 보일링링 및 호브			
8516 60 51	--- 건물내부용 호브	2.7	0	
8516 60 59	--- 기타	2.7	0	
8516 60 70	-- 그릴과 로우스터	2.7	0	
8516 60 80	-- 건물내부용 오븐	2.7	0	
8516 60 90	-- 기타	2.7	0	
	- 기타의 전기가열식 기기			
8516 71 00	--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2.7	0	
8516 72 00	-- 토스터	2.7	0	
8516 79	-- 기타			
8516 79 20	--- 답뎃프라이어	2.7	0	
8516 79 70	--- 기타	2.7	0	
8516 80	- 전열용 저항체			
8516 80 20	-- 절연된 포머로 조립된 것	2.7	0	
8516 80 80	-- 기타	2.7	0	
8516 90 00	- 기타	2.7	0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 ·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 11 00	--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셋이 있는 것에 한한다)	Free	0	
8517 12 00	--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Free	0	
8517 18 00	-- 기타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 61 00	-- 기지국	Free	0	
8517 62 00	--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Free	0	
8517 69	-- 기타			
8517 69 10	--- 영상전화기	Free	0	
8517 69 20	--- 엔트리폰 시스템	Free	0	
	---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용 기기			
8517 69 31	---- 호출·경보 또는페이징용의 휴대형 수신기	Free	0	
8517 69 39	---- 기타	9.3	3	
8517 69 90	---- 기타	Free	0	
8517 70	- 부분품			
	--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8517 70 11	--- 무선전송 또는 무선전화기기의 안테나	Free	0	
8517 70 15	--- 망원형 및 횡형안테나(휴대기기 또는 모터차량 설비용 기기의 것)	5	0	
8517 70 19	--- 기타	3.6	0	
8517 70 90	-- 기타	Free	0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8518 1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8518 10 30	--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직경 10밀리미터 이하, 높이 3밀리미터이하로서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쯔 내지 3.4킬로헤르쯔 범위의 것에 한한다)	Free	0	
8518 10 95	-- 기타	2.5	0	
	- 확성기(인클로저의 장착 여부를 불문한다)			
8518 21 00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4.5	0	
8518 22 00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4.5	0	
8518 29	-- 기타			
8518 29 30	--- 확성기[인클로저가 장착되지 않은 것(직경 50밀리미터 이하로서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쯔 내지 3.4킬로헤르쯔 범위의 것에 한한다)]	Free	0	
8518 29 95	--- 기타	3	0	
8518 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8518 30 20	-- 무선전화 핸드세트	Free	0	
8518 30 95	-- 기타	2	0	
8518 40	- 가청주파증폭기			
8518 40 30	-- 전화기 또는 측정기	3	0	
	-- 기타			
8518 40 81	--- 한 개 채널만 보유한 것	4.5	0	
8518 40 89	--- 기타	4.5	0	
8518 50 00	- 음향증폭세트	2	0	
8518 90 00	- 부분품	2	0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8519 20	-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기타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8519 20 10	-- 동전 또는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6	0	
	-- 기타			
8519 20 91	--- 레이저판독장치를 갖춘 것	9.5	0	
8519 20 99	--- 기타	4.5	0	
8519 30 0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2	0	
8519 50 00	- 전화응답기	Free	0	
	- 기타의 기기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19 81	-- 자기식 · 광학식 또는 기타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 음성재생기기(카세트플레이어를 포함한다), 음성녹음장치가 없는 것			
8519 81 11	----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5	0	
	---- 기타의 음성 재생 기기			
8519 81 15	----- 포켓 크기의 카세트플레이어	Free	0	
	----- 기타, 카세트 유형			
8519 81 21	----- 아날로그 및 디지털판독장치를 갖춘 것	9	0	
8519 81 25	----- 기타	2	0	
	----- 기타			
	----- 레이저판독장치를 갖춘 것			
8519 81 31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것, 직경이 6.5센티미터이하의 디스크, 음향녹음장치가 없는 것	9	0	
8519 81 35	-----기타	9.5	0	
8519 81 45	----- 기타	4.5	0	
	--- 기타의 기기			
8519 81 51	---- 외부전원없이 작동하지 않는 디테이팅기	4	0	
	---- 기타의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 음성재생기기가 결합된 것			
	----- 카세트 유형			
	----- 증폭기가 장착되고 하나 이상의 라우드스피커가 장착된 것			
8519 81 55	-----외부전원 없이 작동되는 것	Free	0	
8519 81 61	-----기타	2	0	
8519 81 65	----- 포켓 크기의 녹음기	Free	0	
8519 81 75	----- 기타	2	0	
	----- 기타			
8519 81 81	----- 마그네틱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초당 19센티미터의 속도로 음향을 녹음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것,(속도가 느린 경우 몇 초이내에 19센티미터의 녹음 및 재생도 가능)]	2	0	
8519 81 85	----- 기타	7	0	
8519 81 95	---- 기타	2	0	
8519 89	-- 기타			
	--- 음성재생기기, 음성녹음장치가 없는 것			
8519 89 11	---- 레코드 플레이어(소호 제8519.20호의 것은 제외)	2	0	
8519 89 15	----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5	0	
8519 89 19	---- 기타	4.5	0	
8519 89 90	--- 기타	2	0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 자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1 10	- 마그네틱 테이프 유형의 것			
8521 10 20	-- 길이 1.3센티미터이하의 마그네틱 테이프용 또는 테이프 기록 또는 재생속도가 초당 50밀리미터이하인 것	14	0	
8521 10 95	-- 기타	8	0	
8521 90 00	- 기타	13.9	5	
8522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 10 00	- 픽업 카트리지	4	0	
8522 90	- 기타			
8522 90 30	-- 스타일리,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기타 귀금속 또는 반귀금속(음성 재생 기기용 스타일리를 위한 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 장착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 기타			
	--- 전자조립품			
8522 90 41	---- 제8519.50.00호의 기기의 것	Free	0	
8522 90 49	---- 기타	4	0	
8522 90 70	--- 단일형 카세트-덱 조립품(총 두께가 53밀리미터이하이고 음성 녹음 및 재생 기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Free	0	
8522 90 80	--- 기타	4	0	
8523	디스크 · 테이프 ·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자기식 매체			
8523 21 00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저장한 카드	3.5	0	
8523 29	-- 기타			
	--- 마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디스크			
8523 29 15	---- 녹음되지 않은 것	Free	0	
	---- 기타			
8523 29 31	----- 음성 또는 영상 이외의 현상 재생용	Free	0	
8523 29 33	-----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 정보 처리 기계식의 것에 한한다)	Free	0	
8523 29 39	----- 기타	3.5	0	
8523 29 90	--- 기타	3.5	0	
8523 40	- 광학식 매체			
	-- 녹음되지 않은 것			
8523 40 11	--- 레이저판독장치를 갖춘 디스크(기록용량이 900메가바이트이하인 것, 지울 수 있는 것 제외)	Free	0	
8523 40 13	--- 레이저판독장치를 갖춘 디스크(기록용량이 900메가바이트초과 18기가바이트이하인 것, 지울 수 있는 것 제외)	Free	0	
8523 40 19	--- 기타	Free	0	
	-- 기타			
	--- 레이저판독장치용 디스크			
8523 40 25	---- 음성 또는 영상 이외의 현상 재생용	Free	0	
	----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8523 40 31	----- 직경 6.5센티미터이하인 것	3.5	0	
8523 40 39	----- 직경 6.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3.5	0	
	---- 기타			
8523 40 45	-----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 정보 처리 기계식의 것에 한한다)	Free	0	
	----- 기타			
8523 40 51	-----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3.5	0	
8523 40 59	----- 기타	3.5	0	
	--- 기타			
8523 40 91	---- 음성 또는 영상 이외의 현상 재생용	Free	0	
8523 40 93	---- 음성 또는 영상 현상 재생용의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 정보 처리 기계식의 것 (레이저 판독용 디스크는 제외)	Free	0	
8523 40 99	---- 기타	3.5	0	
	- 반도체 매체			
8523 51	--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 51 10	--- 기록되지 않은 것	Free	0	
	--- 기타			
8523 51 91	---- 음성 또는 영상 이외의 현상 재생용	Free	0	
8523 51 93	----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 정보 처리 기계식의 것	Free	0	
8523 51 99	---- 기타	3.5	0	
8523 52	-- 스마트카드			
8523 52 10	--- 두 개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장착한 것	3.7	0	
8523 52 90	--- 기타	Free	0	
8523 59	-- 기타			
8523 59 10	--- 기록되지 않은 것	Free	0	
	--- 기타			
8523 59 91	---- 음성 또는 영상 이외의 현상 재생용	Free	0	
8523 59 93	----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 정보 처리 기계식의 것	Free	0	
8523 59 99	---- 기타	3.5	0	
8523 80	- 기타			
8523 80 10	-- 기록되지 않은 것	Free	0	
	-- 기타			
8523 80 91	--- 음성 또는 영상 이외의 현상 재생용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23 80 93	---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 정보 처리 기계식의 것	Free	0	
8523 80 99	--- 기타	3.5	0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 50 00	- 송신기기	3.6	0	
8525 60 0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Free	0	
8525 80	-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텔레비전카메라			
8525 80 11	--- 3개 이상의 촬상관을 갖춘 것	3	0	
8525 80 19	--- 기타	4.9	0	
8525 80 30	-- 디지털카메라	Free	0	
	-- 기타의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8525 80 91	--- 텔레비전 카메라가 찍은 음성 및 영상 녹화가 가능한 것에 한한다	4.9	0	
8525 80 99	--- 기타	14	0	
8526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 10 00	- 레이더기기	3.7	0	
	- 기타			
8526 91	-- 항행용 무선기기			
8526 91 20	--- 항행용 수신기	3.7	3	
8526 91 80	--- 기타	3.7	3	
8526 92 00	-- 무선원격조절기기	3.7	0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527 12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527 12 10	--- 아날로그 및 디지털판독장치가 갖추어진 것	14	0	
8527 12 90	--- 기타	10	0	
8527 13	-- 기타의 기기(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에 한한다)			
8527 13 10	--- 레이저판독장치를 갖춘 것	12	0	
	--- 기타			
8527 13 91	---- 카세트 유형의 것(아날로그 및 디지털판독시스템을 갖춘 것)	14	0	
8527 13 99	---- 기타	10	0	
8527 19 00	-- 기타	Free	0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자동차용으로 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527 21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복호화가 가능한 것			
8527 21 20	---- 레이저판독장치를 갖춘 것	14	0	
	---- 기타			
8527 21 52	----- 카세트 유형의 것(아날로그와 디지털 판독장치를 갖춘 것)	14	0	
8527 21 59	----- 기타	10	0	
	--- 기타			
8527 21 70	---- 레이저판독장치를 갖춘 것	14	5	
	---- 기타			
8527 21 92	----- 아날로그와 디지털 판독장치를 갖춘 카세트 유형의 것	14	0	
8527 21 98	----- 기타	10	0	
8527 29 00	-- 기타	12	0	
	- 기타			
8527 91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동일한 하우징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확성기가 결합된 것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27 91 11	---- 아날로그와 디지털 판독장치를 갖춘 카세트 유형의 것	14	0	
8527 91 19	---- 기타	10	0	
	--- 기타			
8527 91 35	---- 레이저판독장치를 갖춘 것	12	0	
	---- 기타			
8527 91 91	----- 아날로그와 디지털 판독장치를 갖춘 카세트 유형의 것	14	0	
8527 91 99	----- 기타	10	0	
8527 92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8527 92 10	--- 자명종시계라디오	Free	0	
8527 92 90	--- 기타	9	0	
8527 99 00	-- 기타	9	0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음극선관 모니터			
8528 41 00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Free	0	
8528 49	-- 기타			
8528 49 10	--- 흑백색 또는 기타 단색의 것	14	5	
	--- 천연색의 것			
8528 49 35	---- 화면 너비/길이 비율이 1.5미만인 것	14	5	
	---- 기타			
8528 49 91	----- 스캔 파라미터가 625라인이하인 것	14	5	
8528 49 99	----- 스캔 파라미터가 625라인을 초과하는 것	14	5	
	- 기타의 모니터			
8528 51 00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Free	0	
8528 59	-- 기타			
8528 59 10	--- 흑백색 또는 기타 단색의 것	14	5	
8528 59 90	--- 천연색의 것	14	5	
	- 영사기			
8528 61 00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Free	0	
8528 69	-- 기타			
8528 69 10	--- 평판디스플레이(예: 액정표시장치)로 작동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정보 표시가 가능한 것	Free	0	
	--- 기타			
8528 69 91	---- 흑백색 또는 기타 단색의 것	2	0	
8528 69 99	---- 천연색의 것	14	5	
	- 텔레비전 수신기기(무선 방송 수신기, 또는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 71	--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			
	--- 비디오 튜너			
8528 71 11	---- 전자조립품(자동자료처리기에 결합된 것)	Free	0	
8528 71 13	----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장치를 가진 기기[인터넷 접속용 모뎀이 결합된 것, 상호정보교환 기능을 가진 것,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통신기능을 가진 셋탑박스)]	Free	0	
8528 71 19	---- 기타	14	5	
8528 71 90	--- 기타	14	5	
8528 72	--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8528 72 10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14	5	
8528 72 20	---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기기	14	5	
	--- 기타			
	---- 통합형 튜브를 갖춘 것			
	----- 화면 너비/길이 비율이 1.5미만인 것, 화면의 대각선 측정치가			
8528 72 31	----- 42센티미터이하인 것	14	5	
8528 72 33	----- 42센티미터초과 52센티미터이하인 것	14	5	
8528 72 35	----- 52센티미터초과 72센티미터이하인 것	14	5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28 72 39	----- 7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4	5	
	----- 기타			
	----- 스캔 파라미터가 625라인이하이고 화면의 대각선측 정치가			
8528 72 51	-----75센티미터이하인 것	14	5	
8528 72 59	-----7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4	5	
8528 72 75	----- 스캔 파라미터가 625라인을 초과하는 것	14	5	
	---- 기타			
8528 72 91	----- 화면 너비/길이 비율이 1.5미만인 것	14	5	
8528 72 99	----- 기타	14	5	
8528 73 00	-- 기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한다)	2	0	
8529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29 10	-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 안테나			
8529 10 11	--- 망원형 및 헬형안테나(휴대기기 또는 자동차 설치용 기기의 것)	5	0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용 외부 안테나			
8529 10 31	---- 위성 수신용	3.6	0	
8529 10 39	---- 기타	3.6	0	
8529 10 65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용 내부 안테나(내 장형 포함)	4	0	
8529 10 69	--- 기타	3.6	0	
8529 10 80	-- 안테나 필터 및 분리기	3.6	0	
8529 10 95	-- 기타	3.6	0	
8529 90	- 기타			
8529 90 20	-- 제8525.60.00호, 제8525.80.30호, 제8528.41.00호, 제 8528.51.00호와 제8528.61.00호 기기의 부분품	Free	0	
	-- 기타			
	--- 캐비닛과 케이스			
8529 90 41	---- 목재의 것	2	0	
8529 90 49	---- 기타의 재료의 것	3	0	
8529 90 65	--- 전자조립품	3	0	
	--- 기타			
8529 90 92	---- 제8525.80.11호 및 제8525.80.19호의 텔레비전 카메 라용과 소호 제8527호 및 제8528호의 기기용	5	0	
8529 90 97	---- 기타	3	0	
8530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또는 공항 용의 전기식 신호 · 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을 제외한다)			
8530 10 00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기	1.7	0	
8530 80 00	- 기타의 기기	1.7	0	
8530 90 00	- 부분품	1.7	0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8531 10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8531 10 30	--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것	2.2	0	
8531 10 95	-- 기타	2.2	0	
8531 20	-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 합된 표시반			
8531 20 20	-- 발광다이오드(LED)를 갖춘 것	Free	0	
	-- 액정표시장치(LCD)를 갖춘 것			
8531 20 40	--- 액정표시장치(LCD)를 갖춘 표시판, 활성의 것	Free	0	
8531 20 95	--- 기타	Free	0	
8531 80	- 기타의 기기			
8531 80 20	-- 평판디스플레이 기기	Free	0	
8531 80 95	-- 기타	2.2	0	
8531 90	- 부분품			
8531 90 20	-- 소호 제8531.20호와 제8531.80.20호의 기기	Free	0	
8531 90 85	-- 기타	2.2	0	
8532	축전기[고정식 ·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			
8532 10 0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 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 기타의 고정식 축전기			
8532 21 00	-- 탄탈륨의 것	Free	0	
8532 22 00	-- 알루미늄 전해의 것	Free	0	
8532 23 00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Free	0	
8532 24 00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Free	0	
8532 25 00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Free	0	
8532 29 00	-- 기타	Free	0	
8532 30 00	-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Free	0	
8532 90 00	- 기타	Free	0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8533 10 0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Free	0	
	- 기타의 고정식 저항기			
8533 21 00	-- 용량이 20와트이하인 것	Free	0	
8533 29 00	-- 기타	Free	0	
	- 권선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			
8533 31 00	-- 용량이 20와트이하인 것	Free	0	
8533 39 00	-- 기타	Free	0	
8533 40	- 기타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			
8533 40 10	-- 용량이 20와트이하의 것	Free	0	
8533 40 90	-- 기타	Free	0	
8533 90 00	- 기타	Free	0	
8534 00	인쇄회로			
	- 전도체소자 및 접촉자로만 구성된 것			
8534 00 11	-- 다층의 회로	Free	0	
8534 00 19	-- 기타	Free	0	
8534 00 90	- 기타의 수동 소자를 갖춘 것	Free	0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 · 퓨즈 · 피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억제기 · 플러그와 기타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535 10 00	- 퓨즈	2.7	0	
	- 자동차단기			
8535 21 00	-- 전압이 72.5킬로볼트미만인 것	2.7	0	
8535 29 00	-- 기타	2.7	0	
8535 3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8535 30 10	-- 전압이 72.5킬로볼트미만인 것	2.7	0	
8535 30 90	-- 기타	2.7	0	
8535 40 00	-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2.7	0	
8535 90 00	- 기타	2.7	0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 ·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8536 10	- 퓨즈			
8536 10 10	-- 전류가 10암페어이하인 것	2.3	0	
8536 10 50	-- 전류가 10암페어초과 63암페어이하인 것	2.3	0	
8536 10 90	-- 전류가 63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3	0	
8536 20	- 자동차단기			
8536 20 10	-- 전류가 63암페어이하인 것	2.3	0	
8536 20 90	-- 전류가 63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3	0	
8536 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8536 30 10	-- 전류가 16암페어이하인 것	2.3	0	
8536 30 30	-- 전류가 16암페어초과 125암페어이하인 것	2.3	0	
8536 30 90	-- 전류가 125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3	0	
	- 계전기			
8536 41	-- 전압이 60볼트이하인 것			
8536 41 10	--- 전류가 2암페어이하인 것	2.3	0	
8536 41 90	--- 전류가 2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3	0	
8536 49 00	-- 기타	2.3	0	
8536 50	- 기타의 개폐기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36 50 03	--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에 한한다)	Free	0	
8536 50 05	-- 전자식 개폐기[온도보호용의 것 포함하며,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침온칩기술)에 한한다]	Free	0	
8536 50 07	--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 방식의 개폐기로 전류가 11암페어이하인 것	Free	0	
	-- 기타			
	--- 전압이 60볼트이하인 것			
8536 50 11	---- 누름버튼 방식의 개폐기	2.3	0	
8536 50 15	---- 회전형 개폐기	2.3	0	
8536 50 19	---- 기타	2.3	0	
8536 50 80	---- 기타	2.3	0	
	- 램프홀더, 플러그와 소켓			
8536 61	-- 램프홀더			
8536 61 10	--- 에디슨 램프홀더	2.3	0	
8536 61 90	--- 기타	2.3	0	
8536 69	-- 기타			
8536 69 10	--- 동축케이블용의 것	Free	0	
8536 69 30	--- 인쇄회로용의 것	Free	0	
8536 69 90	--- 기타	2.3	0	
8536 70 00	- 광섬유 ·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3	0	
8536 90	- 기타의 기기			
8536 90 01	-- 조립식 소자(전기회로용의 것)	2.3	0	
8536 90 10	--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Free	0	
8536 90 20	-- 웨이퍼프로버	Free	0	
8536 90 85	-- 기타	2.3	0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8537 10	- 전압이 1,000볼트이하인 것			
8537 10 10	--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장착된 수치제어패널	2.1	0	
	-- 기타			
8537 10 91	--- 프로그래머블 메모리 컨트롤러	2.1	0	
8537 10 99	--- 기타	2.1	0	
8537 20	-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8537 20 91	-- 전격전압이 1,000볼트초과 72.5킬로볼트이하인 것	2.1	0	
8537 20 99	-- 전격전압이 72.5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2.1	0	
8538	부분품(제8535호 ·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38 10 00	-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7호의 물품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2.2	0	
8538 90	- 기타			
	-- 제8536.90.20호의 웨이퍼프로버용			
8538 90 11	--- 전자식 조립품	3.2	0	
8538 90 19	--- 기타	1.7	0	
	-- 기타			
8538 90 91	--- 전자식 조립품	3.2	0	
8538 90 99	--- 기타	1.7	0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8539 10 00	- 실드빔 램프유닛	2.7	0	
	- 기타 필라멘트램프(자외선 또는 적외선 램프는 제외)			
8539 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8539 21 30	--- 모터사이클 또는 기타 모터차량용의 것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2.7	0	
	--- 기타, 전압이			
8539 21 92	----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	2.7	0	
8539 21 98	---- 100볼트이하인 것	2.7	0	
8539 22	-- 기타(전력이 200와트이하이고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539 22 10	--- 리플렉터 램프	2.7	0	
8539 22 90	--- 기타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39 29	-- 기타			
8539 29 30	--- 모터사이클 또는 기타 모터차량용의 것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2.7	0	
	---기타, 전압이			
8539 29 92	----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	2.7	0	
8539 29 98	---- 100볼트이하인 것	2.7	0	
	-방전 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 31	--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8539 31 10	--- 더블엔디드 캡	2.7	0	
8539 31 90	--- 기타	2.7	0	
8539 32	--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8539 32 10	--- 수은증기 램프	2.7	0	
8539 32 50	--- 나트륨증기 램프	2.7	0	
8539 32 90	--- 메탈 할라이드 램프	2.7	0	
8539 39 00	-- 기타	2.7	0	
	-자외선 또는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 41 00	-- 아크 램프	2.7	0	
8539 49	-- 기타			
8539 49 10	--- 자외선램프	2.7	0	
8539 49 30	--- 적외선램프	2.7	0	
8539 90	- 부분품			
8539 90 10	-- 램프 기반	2.7	0	
8539 90 90	-- 기타	2.7	0	
8540	열전자관 ·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 진공관 · 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 · 수은아크정류관 · 음극선관 · 텔레비전용 활상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			
8540 11	-- 천연색의 것			
	---화면 너비/길이 비율이 1.5미만이고, 화면의 대각선측정치가			
8540 11 11	---- 42센티미터이하인 것	14	0	
8540 11 13	---- 42센티미터초과 52센티미터이하인 것	14	0	
8540 11 15	---- 52센티미터초과 72센티미터이하인 것	14	0	
8540 11 19	---- 7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4	0	
	---기타, 화면의 대각선측정치가			
8540 11 91	---- 75센티미터이하인 것	14	0	
8540 11 99	---- 75센티미터초과인 것	14	0	
8540 12 00	-- 흑백 또는 단색의 것	7.5	0	
8540 20	- 텔레비전용 활상관,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기타의 광전관			
8540 20 10	-- 텔레비전 활상관	2.7	0	
8540 20 80	-- 기타	2.7	0	
8540 40 0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인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6	0	
8540 50 0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한다)	2.6	0	
8540 60 00	- 기타의 음극선관	2.6	0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 · 속도변조관 · 여행용 웨이브관 · 칼시트론) (그리드-제어관 제외)			
8540 71 00	-- 자전관	2.7	0	
8540 72 00	-- 속도변조관	2.7	0	
8540 79 00	-- 기타	2.7	0	
	-기타의 관			
8540 81 00	-- 수신관 또는 증폭관	2.7	0	
8540 89 00	-- 기타	2.7	0	
	-부분품			
8540 91 00	-- 음극선관의 것	2.7	0	
8540 99 00	-- 기타	2.7	0	
8541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10 00	- 다이오드(광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제외한다)	Free	0	
	-트랜지스터(광광성 트랜지스터를 제외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41 21 00	-- 전력납비율이 1와트미만인 것	Free	0	
8541 29 00	-- 기타	Free	0	
8541 30 00	- 사이리스터, 다이액 및 트라이액(광광성 디바이스를 제외한다)	Free	0	
8541 40	-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8541 40 10	-- 발광다이오드(레이저 다이오드를 포함한다)	Free	0	
8541 40 90	-- 기타	Free	0	
8541 50 00	-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	Free	0	
8541 60 0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Free	0	
8541 90 00	- 부분품	Free	0	
8542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			
8542 31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42 31 10	--- 이 류의 주석 제8(b)(3)호에 해당하는 품목	Free	0	
8542 31 90	--- 기타	Free	0	
8542 32	-- 메모리			
8542 32 10	--- 이 류의 주석 제8(b)(3)호에 해당하는 품목	Free	0	
	---기타			
	----다이내믹 램(디램)			
8542 32 31	----- 저장 용량이 512메가바이트이하인 것	Free	0	
8542 32 39	----- 저장 용량이 512메가바이트를 초과하는 것	Free	0	
8542 32 45	----- 캐시램을 포함한 스테틱 램(에스램)식 전자 집적회로	Free	0	
8542 32 55	----- 자외선 소거 프로그램 가능 롬(이피롬)	Free	0	
	-----전자 소거 프로그램 가능 롬(이피롬)(플래시 이피롬을 포함한다)			
	-----플래시 이피롬			
8542 32 61	----- 저장 용량이 512메가바이트이하인 것	Free	0	
8542 32 69	----- 저장 용량이 512메가바이트를 초과하는 것	Free	0	
8542 32 75	----- 기타	Free	0	
8542 32 90	---- 기타 메모리	Free	0	
8542 33 00	-- 증폭기	Free	0	
8542 39	-- 기타			
8542 39 10	--- 이 류의 주석 제8(b)(3)호에 해당하는 품목	Free	0	
8542 39 90	--- 기타	Free	0	
8542 90 00	- 부분품	Free	0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543 10 00	- 입자가속기	4	0	
8543 20 00	- 신호발생기	3.7	0	
8543 30 00	-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3.7	0	
8543 70	- 기타의 기기			
8543 70 10	--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	Free	0	
8543 70 30	-- 공중측량용 증폭기	3.7	0	
	--선베드·선램프 및 이와 유사한 선택 기구			
	---자외선 A 레이 형광램프관용			
8543 70 51	---- 관의 최대 길이가 100센티미터인 것	3.7	0	
8543 70 55	---- 기타	3.7	0	
8543 70 59	--- 기타	3.7	0	
8543 70 60	-- 전기 율타리 에너지저	3.7	0	
8543 70 90	-- 기타	3.7	0	
8543 90 00	- 부분품	3.7	0	
8544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 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권선			
8544 11	-- 동체의 것			
8544 11 10	--- 래커 및 에나멜	3.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544 11 90	--- 기타	3.7	0	
8544 19	-- 기타			
8544 19 10	--- 래커 및 에나멜	3.7	0	
8544 19 90	--- 기타	3.7	0	
8544 20 0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3.7	0	
8544 30 00	- 전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 · 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3.7	0	
	-기타 전기절연도체, 전압이 1,000볼트이하인 것			
8544 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8544 42 10	---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Free	0	
8544 42 90	--- 기타	3.3	0	
8544 49	-- 기타			
8544 49 20	---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전압이 80볼트이하인 것	Free	0	
	---기타			
8544 49 91	---- 전기선 및 케이블, 각각의 도체선의 지름이 0.51밀리 미터를 초과하는 것	3.7	0	
	----기타			
8544 49 93	----- 전압이 80볼트이하인 것	3.7	0	
8544 49 95	----- 전압이 80볼트초과 1,000볼트미만인 것	3.7	0	
8544 49 99	----- 전압이 1,000볼트인 것	3.7	0	
8544 60	-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 한다)			
8544 60 10	-- 동체의 도체를 갖춘 것	3.7	0	
8544 60 90	-- 기타의 도체를 갖춘 것	3.7	0	
8544 70 00	- 광섬유 케이블	Free	0	
8545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기 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 전극			
8545 11 00	-- 노용의 것	2.7	0	
8545 19	-- 기타			
8545 19 10	--- 전기분해 장치용 전기봉	2.7	0	
8545 19 90	--- 기타	2.7	0	
8545 20 00	- 브러시	2.7	0	
8545 90	- 기타			
8545 90 10	-- 전열용 저항체	1.7	0	
8545 90 90	-- 기타	2.7	0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8546 10 00	- 유리제의 것	3.7	0	
8546 20	- 도자제의 것			
8546 20 10	-- 금속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	4.7	0	
	--금속부분을 포함한 것			
8546 20 91	--- 천장의 전동 또는 견인선용	4.7	0	
8546 20 99	--- 기타	4.7	0	
8546 90	- 기타			
8546 90 10	-- 플라스틱제의 것	3.7	0	
8546 90 90	-- 기타	3.7	0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 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 (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			
8547 1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547 10 10	-- 금속 산화물의 중량이 100분의 80이상인 것	4.7	0	
8547 10 90	-- 기타	4.7	0	
8547 20 00	-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3.7	0	
8547 90 00	- 기타	3.7	0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 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품품(이 류의 다른 곳 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548 10	-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8548 10 10	--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일차배터리	4.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수명이 끝난 전기 축전지			
8548 10 21	--- 연산축전지	2.6	0	
8548 10 29	--- 기타	2.6	0	
	--일차전지 · 일차배터리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8548 10 91	--- 납을 포함한 것	Free	0	
8548 10 99	--- 기타	Free	0	
8548 90	- 기타			
8548 90 20	-- 디-램 및 모듈과 같은 멀티컴비네셔널 형상의 메모리	Free	0	
8548 90 90	-- 기타	2.7	0	
86	제86류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8601 10 00	-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1.7	0	
8601 20 0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1.7	0	
8602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8602 10 00	- 디젤 전기관차	1.7	0	
8602 90 00	- 기타	1.7	0	
8603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8603 10 00	-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1.7	0	
8603 90 00	- 기타	1.7	0	
8604 00 00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자주식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 공작차 · 기중기차 · 밸러스트 탬퍼 · 트랙라이너 · 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1.7	0	
8605 00 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1.7	0	
8606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8606 10 00	-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1.7	0	
8606 30 00	- 자기양하식의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을 제외한다)	1.7	0	
	-기타			
8606 91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8606 91 10	--- 고도의 방사성 물질(유라늄)을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것	1.7	0	
8606 91 80	--- 기타	1.7	0	
8606 92 00	-- 무게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7	0	
8606 99 00	--기타	1.7	0	
8607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보우기 · 비셀보우기 · 차축과 차륜 및 이들의 부분품			
8607 11 00	--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1.7	0	
8607 12 00	--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1.7	0	
8607 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조임여부에 상관없는 차축, 휠 및 부분품			
8607 19 01	---- 주철 또는 주강의 것	2.7	0	
8607 19 11	---- 비개방금형 단강의 것	2.7	0	
8607 19 18	---- 기타	2.7	0	
	---보우기 · 비셀보우기 · 동종의 부분품			
8607 19 91	---- 주철 또는 주강의 것	1.7	0	
8607 19 99	---- 기타	1.7	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 21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 21 10	--- 주철 또는 주강의 것	1.7	0	
8607 21 90	--- 기타	1.7	0	
8607 29	-- 기타			
8607 29 10	--- 주철 또는 주강의 것	1.7	0	
8607 29 90	--- 기타	1.7	0	
8607 30	- 축과 기타의 연결장치 · 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8607 30 01	-- 주철 또는 주강의 것	1.7	0	
8607 30 99	-- 기타	1.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기타			
8607 91	-- 기관차용의 것			
8607 91 10	--- 축상자 및 부분품	3.7	0	
	---기타			
8607 91 91	---- 주철 또는 주강의 것	1.7	0	
8607 91 99	---- 기타	1.7	0	
8607 99	-- 기타			
8607 99 10	--- 축상자 및 부분품	3.7	0	
8607 99 30	--- 차량의 본체 또는 부분품	1.7	0	
8607 99 50	--- 새시 및 부분품	1.7	0	
8607 99 90	--- 기타	1.7	0	
8608 00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및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8608 00 10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기	1.7	0	
8608 00 30	- 기타 기기	1.7	0	
8608 00 90	- 부분품	1.7	0	
8609 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8609 00 10	- 방사성 물질(유라늄)의 수송을 위한 안티방사선 납 커버링 컨테이너	Free	0	
8609 00 90	- 기타	Free	0	
87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8701 10 00	- 보행운전형 트랙터	3	0	
8701 20	-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1 20 10	-- 신차	16	5	
8701 20 90	-- 중고차	16	5	
8701 30	- 무한궤도식 트랙터			
8701 30 10	-- 정설차	Free	0	
8701 30 90	-- 기타	Free	0	
8701 90	- 기타			
	--바퀴달린 농업용 트랙터(보행운전형 트랙터는 제외한다)와 임업용 트랙터			
	---신차, 엔진출력이			
8701 90 11	---- 18킬로와트이하인 것	Free	0	
8701 90 20	---- 18킬로와트초과 37킬로와트이하인 것	Free	0	
8701 90 25	---- 37킬로와트초과 59킬로와트이하인 것	Free	0	
8701 90 31	---- 59킬로와트초과 75킬로와트이하인 것	Free	0	
8701 90 35	---- 75킬로와트초과 90킬로와트이하인 것	Free	0	
8701 90 39	---- 9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Free	0	
8701 90 50	--- 중고차	Free	0	
8701 90 90	-- 기타	7	0	
8702	10인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2 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실린더용량이 2,500cm³를 초과하는 것			
8702 10 11	--- 신차	16	0	
8702 10 19	--- 중고차	16	0	
	--실린더용량이 2,500cm³이하인 것			
8702 10 91	--- 신차	10	0	
8702 10 99	--- 중고차	10	0	
8702 90	- 기타			
	--불꽃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실린더용량이 2,800cm³를 초과하는 것			
8702 90 11	---- 신차	16	0	
8702 90 19	---- 중고차	16	0	
	---실린더용량이 2,800cm³이하인 것			
8702 90 31	---- 신차	10	0	
8702 90 39	---- 중고차	10	0	
8702 90 90	-- 기타 엔진의 것	10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 10	- 설상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8703 10 11	-- 설상주행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볼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자동차	5	0	
8703 10 18	-- 기타	10	0	
	-볼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기타 자동차			
8703 21	-- 실린더용량이 1,000cm³이하인 것			
8703 21 10	--- 신차	10	5	
8703 21 90	--- 중고차	10	5	
8703 22	-- 실린더용량이 1,000cm³초과 1,500cm³이하인 것			
8703 22 10	--- 신차	10	5	
8703 22 90	--- 중고차	10	5	
8703 23	-- 실린더용량이 1,500cm³초과 3,000cm³이하인 것			
	---신차			
8703 23 11	---- 캐러밴	10	3	
8703 23 19	---- 기타	10	3	
8703 23 90	--- 중고차	10	3	
8703 24	--실린더용량이 3,000cm³를 초과하는 것			
8703 24 10	--- 신차	10	3	
8703 24 90	--- 중고차	10	3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자동차			
8703 31	-- 실린더용량이 1,500cm³이하인 것			
8703 31 10	--- 신차	10	5	
8703 31 90	--- 중고차	10	5	
8703 32	-- 실린더용량이 1,500cm³초과 2,500cm³이하인 것			
	---신차			
8703 32 11	---- 캐러밴	10	3	
8703 32 19	---- 기타	10	3	
8703 32 90	--- 중고차	10	3	
8703 33	-- 실린더용량이 2,500cm³를 초과하는 것			
	---신차			
8703 33 11	---- 캐러밴	10	3	
8703 33 19	---- 기타	10	3	
8703 33 90	--- 중고차	10	3	
8703 90	- 기타			
8703 90 10	-- 전기모터의 것	10	5	
8703 90 90	-- 기타	10	5	
8704	화물자동차			
8704 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8704 10 10	-- 압축 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볼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Free	0	
8704 10 90	-- 기타	Free	0	
	-압축 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기타의 것			
8704 21	-- 총중량이 5톤이하인 것			
8704 21 10	--- 고방사성 물질(유라늄) 수송용	3.5	0	
	---기타			
	----실린더용량이 2,500cm³를 초과하는 엔진이 있는 것			
8704 21 31	----- 신차	22	5	
8704 21 39	----- 중고차	22	5	
	----실린더용량이 2,500cm³이하 엔진이 있는 것			
8704 21 91	----- 신차	10	5	
8704 21 99	----- 중고차	10	5	
8704 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이하인 것			
8704 22 10	--- 고방사성 물질(유라늄) 수송용	3.5	0	
	---기타			
8704 22 91	----- 신차	22	3	
8704 22 99	----- 중고차	22	3	
8704 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8704 23 10	--- 고방사성 물질(유라늄) 수송용	3.5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기타			
8704 23 91	---- 신차	22	5	
8704 23 99	---- 중고차	22	5	
	-기타,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있는 것			
8704 31	-- 총중량이 5톤이하인 것			
8704 31 10	--- 고방사성 물질(유라늄) 수송용	3.5	0	
	---기타			
	----실린더용량이 2,800cm³를 초과하는 엔진이 있는 것			
8704 31 31	----- 신차	22	3	
8704 31 39	----- 중고차	22	3	
	----실린더용량이 2,800cm³이하의 엔진이 있는 것			
8704 31 91	----- 신차	10	3	
8704 31 99	----- 중고차	10	3	
8704 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 32 10	--- 고방사성 물질(유라늄) 수송용	3.5	0	
	---기타			
8704 32 91	---- 신차	22	3	
8704 32 99	---- 중고차	22	3	
8704 90 00	- 기타	10	0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예 : 구난차 · 기중기차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사선차)			
8705 10 00	- 기중기차	3.7	0	
8705 20 00	-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3.7	0	
8705 30 00	- 소방차	3.7	0	
8705 40 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3.7	0	
8705 90	- 기타			
8705 90 10	-- 구난차	3.7	0	
8705 90 30	-- 콘크리트 펌프차	3.7	0	
8705 90 90	-- 기타	3.7	0	
8706 00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제8701호의 트랙터용 새시; 제8702호 ·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의 모터차량용 새시[실린더 용적이 2,500cm³를 초과하는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를 초과하는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8706 00 11	-- 소호 제8702호 또는 제8704호의 자동차용	19	3	
8706 00 19	-- 기타	6	3	
	-기타			
8706 00 91	-- 소호 제8703호의 자동차용	4.5	3	
8706 00 99	-- 기타	10	3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8707 10	-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8707 10 10	-- 산업용 조립용	4.5	0	
8707 10 90	-- 기타	4.5	3	
8707 90	- 기타			
8707 90 10	-- 산업 조립품용[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전용 트랙터;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특수용도차량]	4.5	3	
8707 90 90	-- 기타	4.5	3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8708 1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8708 10 10	-- 산업 조립품용[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8708 10 90	-- 기타	4.5	0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차체의 것으로, 캡을 포함한다)			
8708 21	-- 안전벨트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708 21 10	--- 산업 조립품용[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8708 21 90	--- 기타	4.5	0	
8708 29	-- 기타			
8708 29 10	--- 산업 조립품용[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전용 트랙터; 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8708 29 90	--- 기타	4.5	0	
8708 3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 30 10	--산업 조립품용[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전용 트랙터; 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기타			
8708 30 91	--- 디스크 브레이크용	4.5	0	
8708 30 99	--- 기타	4.5	0	
8708 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708 40 20	--산업 조립품용[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전용 트랙터; 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기타			
8708 40 50	--- 기어 박스	4.5	0	
	---부분품			
8708 40 91	---- 비개방금형 주강의 것	4.5	0	
8708 40 99	---- 기타	3.5	0	
8708 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8708 50 20	-- 산업 조립품용[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기타			
8708 50 35	---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 (변속장치 여부 불문)	4.5	0	
	---부분품			
8708 50 55	---- 비개방금형 주강의 것	4.5	0	
	----기타			
8708 50 91	----- 비구동 차축의 것	4.5	0	
8708 50 99	----- 기타	3.5	0	
8708 70	-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8 70 10	-- 산업 조립품용[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전용 트랙터; 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기타			
8708 70 50	--- 알루미늄 휠 및 알루미늄 부분품 및 부속품	4.5	0	
8708 70 91	--- 스타형의 한조각으로 주조된 주강 또는 주철 휠센터	3	0	
8708 70 99	--- 기타	4.5	0	
8708 80	-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8708 80 20	-- 산업 조립품용[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기타			
8708 80 35	--- 서스펜션 완충기	4.5	0	
8708 80 55	--- 좌우요동 방지 바 및 토션 바	3.5	0	
	---기타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708 80 91	---- 비개방금형 주강의 것	4.5	0	
8708 80 99	---- 기타	3.5	0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708 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8708 91 20	--- 산업 조립품용[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 전용 트랙터; 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 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 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기타			
8708 91 35	---- 라디에이터	4.5	0	
	----부분품			
8708 91 91	----- 비개방금형 주강의 것	4.5	0	
8708 91 99	----- 기타	3.5	0	
8708 92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8708 92 20	--- 산업 조립품용[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 전용 트랙터; 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 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 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기타			
8708 92 35	---- 소음장치(머플러) 및 배기관	4.5	0	
	---부분품			
8708 92 91	---- 비개방금형 주강의 것	4.5	0	
8708 92 99	---- 기타	3.5	0	
8708 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8708 93 10	--- 산업 조립품용[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전 용 트랙터; 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린 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 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8708 93 90	--- 기타	4.5	0	
8708 94	--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8708 94 20	--- 산업 조립품용[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 는 실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 점화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기타			
8708 94 35	---- 운전대, 스티어링 칼럼 및 운전 박스	4.5	0	
	----부분품			
8708 94 91	----- 비개방금형 주강의 것	4.5	0	
8708 94 99	----- 기타	3.5	0	
8708 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 95 10	--- 산업 조립품용[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 전용 트랙터; 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 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 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기타			
8708 95 91	---- 비개방금형 주강의 것	4.5	0	
8708 95 99	---- 기타	3.5	0	
8708 99	-- 기타			
8708 99 10	--- 산업 조립품용[소호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보행 운 전용 트랙터; 제8703호의 차량; 제8704호에 해당하는 실 린더 용적이 2,500cm³이하인 내연피스톤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실린더 용적이 2,800cm³이하인 불꽃점화 식 내연피스톤엔진; 제8705호의 차량]	3	0	
	---기타			
8708 99 93	---- 비개방금형 주강의 것	4.5	0	
8708 99 97	---- 기타	3.5	0	
8709	공장 · 창고 · 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 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차량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709 11	-- 전기식의 것			
8709 11 10	---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고도의 방사성 물질(유라늄) 수송용	2	0	
8709 11 90	--- 기타	4	0	
8709 19	-- 기타			
8709 19 10	---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고도의 방사성 물질(유라늄) 수송용	2	0	
8709 19 90	--- 기타	4	0	
8709 90 00	- 부분품	3.5	0	
8710 00 00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1.7	0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8711 10 00	- 실린더용량이 50cm³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	0	
8711 20	- 실린더용량이 50cm³초과 250cm³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8711 20 10	-- 스쿠터	8	0	
	--기타, 실린더 용량이			
8711 20 91	--- 50cm³초과 80cm³이하의 것	8	0	
8711 20 93	--- 80cm³초과 125cm³이하의 것	8	0	
8711 20 98	--- 125cm³초과 250cm³이하의 것	8	0	
8711 30	- 실린더용량이 250cm³초과 500cm³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8711 30 10	-- 실린더 용량 250cm³초과 380cm³이하의 것	6	0	
8711 30 90	-- 실린더 용량 380cm³초과 500cm³이하의 것	6	0	
8711 40 00	- 실린더용량이 500cm³초과 800cm³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6	0	
8711 50 00	- 실린더용량이 800cm³를 초과하는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6	0	
8711 90 00	- 기타	6	0	
8712 00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8712 00 10	- 볼베어링을 갖추지 않은 것	15	3	
	-기타			
8712 00 30	-- 이륜자전거	14	3	
8712 00 80	-- 기타	15	3	
8713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713 10 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Free	0	
8713 90 00	- 기타	Free	0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의 것			
8714 11 00	-- 안장	3.7	0	
8714 19 00	-- 기타	3.7	3	
8714 20 00	-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것	Free	0	
	-기타			
8714 91	--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714 91 10	--- 프레임	4.7	3	
8714 91 30	--- 프론트 포크	4.7	0	
8714 91 90	--- 부분품	4.7	0	
8714 92	-- 휠 림과 스포크			
8714 92 10	--- 림	4.7	3	
8714 92 90	--- 스포크	4.7	0	
8714 93	-- 허브(코스터 브레이크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및 프리 휠스프로킷 휠			
8714 93 10	--- 프리휠 또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허브	4.7	0	
8714 93 90	--- 프리휠 스포크휠	4.7	0	
8714 94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크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8714 94 10	--- 코스터 브레이크 허브 및 허브 브레이크	4.7	0	
8714 94 30	--- 기타 브레이크	4.7	0	
8714 94 90	--- 부분품	4.7	0	
8714 95 00	-- 안장	4.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714 96	--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8714 96 10	--- 페달	4.7	0	
8714 96 30	--- 크랭크 기어	4.7	0	
8714 96 90	--- 부분품	4.7	0	
8714 99	-- 기타			
8714 99 10	--- 핸들바	4.7	0	
8714 99 30	--- 짐받이	4.7	0	
8714 99 50	--- 변속 장치	4.7	0	
8714 99 90	--- 기타, 부분품	4.7	0	
8715 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5 00 10	- 유모차	2.7	0	
8715 00 90	- 부분품	2.7	0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8716 1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및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8716 10 10	-- 접음식 캐러밴	2.7	0	
	--기타, 중량이			
8716 10 91	--- 750킬로그램이하의 것	2.7	0	
8716 10 94	--- 750킬로그램초과 1,600킬로그램이하의 것	2.7	0	
8716 10 96	--- 1,600킬로그램초과 3,500킬로그램이하의 것	2.7	0	
8716 10 99	--- 3,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7	0	
8716 20 00	-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2.7	0	
	-화물수송용의 기타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 31 00	--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2.7	0	
8716 39	-- 기타			
8716 39 10	--- 고도의 방사성 물질(유라늄) 수송용	2.7	0	
	---기타			
	----새 것			
8716 39 30	----- 세미트레일러	2.7	0	
	-----기타			
8716 39 51	----- 차축이 한 개인 것	2.7	0	
8716 39 59	----- 기타	2.7	0	
8716 39 80	---- 중고	2.7	0	
8716 40 00	-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2.7	0	
8716 80 00	- 기타의 차량	1.7	0	
8716 90	- 부분품			
8716 90 10	-- 새시	1.7	0	
8716 90 30	-- 본체	1.7	0	
8716 90 50	-- 차축	1.7	0	
8716 90 90	-- 기타 부분품	1.7	0	
88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 00	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더 · 행글라이더와 기타의 무동력 항공기			
8801 00 10	-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3.7	0	
8801 00 90	- 기타	2.7	0	
8802	기타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 · 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			
	-헬리콥터			
8802 11 00	-- 자중이 2,000킬로그램이하인 것	7.5	3	
8802 12 00	-- 자중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7	0	
8802 20 00	- 자중이 2,000킬로그램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7.7	3	
8802 30 00	- 자중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킬로그램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2.7	0	
8802 40 00	- 자중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2.7	0	
8802 6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			
8802 60 1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4.2	0	
8802 60 90	--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 로켓	4.2	0	
8803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			
8803 10 00	-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2.7	0	
8803 20 00	-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2.7	0	
8803 30 00	-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803 90	- 기타			
8803 90 10	-- 카이트의 것	1.7	0	
8803 90 20	-- 인공위성을 포함하는 우주선의 것	1.7	0	
8803 90 30	-- 서보모터 및 우주선 발진 로켓의 것	1.7	0	
8803 90 90	-- 기타	2.7	0	
8804 00 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7	0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감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8805 10	-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감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와 그 부분품			
8805 10 10	-- 항공기 발진 기어 및 그 부분품	2.7	0	
8805 10 90	-- 기타	1.7	0	
	-지상비행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 21 00	-- 모의 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1.7	0	
8805 29 00	-- 기타	1.7	0	
89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 · 화물선 · 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에 한한다)			
8901 10	-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트			
8901 10 10	-- 원양용의 것	Free	0	
8901 10 90	-- 기타	1.7	0	
8901 20	- 탱커			
8901 20 10	-- 원양용의 것	Free	0	
8901 20 90	-- 기타	1.7	0	
8901 30	-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을 제외한다)			
8901 30 10	-- 원양용의 것	Free	0	
8901 30 90	-- 기타	1.7	0	
8901 90	-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8901 90 10	-- 원양용의 것	Free	0	
	--기타			
8901 90 91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1.7	0	
8901 90 99	--- 기계구동식의 것	1.7	0	
8902 0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원양용의 것			
8902 00 12	-- 총용적 250톤을 초과하는 것	Free	0	
8902 00 18	-- 총용적 250톤이하의 것	Free	0	
8902 00 90	- 기타	1.7	0	
8903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 10	- 인플랫터블식의 것			
8903 10 10	-- 총량이 100킬로그램이하인 것	2.7	0	
8903 10 90	-- 기타	1.7	0	
	-기타			
8903 91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903 91 10	--- 원양용의 것	Free	0	
	---기타			
8903 91 92	---- 길이 7.5미터이하의 것	1.7	0	
8903 91 99	---- 길이 7.5미터를 초과하는 것	1.7	0	
8903 92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를 제외한다)			
8903 92 10	--- 원양용의 것	Free	0	
	---기타			
8903 92 91	---- 길이 7.5미터이하의 것	1.7	0	
8903 92 99	---- 길이 7.5미터를 초과하는 것	1.7	0	
8903 99	-- 기타			
8903 99 10	--- 총량이 100킬로그램이하인 것	2.7	0	
	---기타			
8903 99 91	---- 길이 7.5미터이하의 것	1.7	0	
8903 99 99	---- 길이 7.5미터를 초과하는 것	1.7	0	
8904 00	예인선과 푸셔크래프트			
8904 00 10	- 예인선	Free	0	
	-추진식 크래프트 (원양용은 제외)			
8904 00 91	-- 원양용의 것	Free	0	
8904 00 99	-- 기타	1.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및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8905 10	- 준설선			
8905 10 10	-- 원양용의 것	Free	0	
8905 10 90	-- 기타	1.7	0	
8905 20 00	-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Free	0	
8905 90	- 기타			
8905 90 10	-- 원양용의 것	Free	0	
8905 90 90	-- 기타	1.7	0	
8906	기타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 10 00	- 군함	Free	0	
8906 90	- 기타			
8906 90 10	-- 원양용의 것	Free	0	
	--기타			
8906 90 91	--- 중량이 100킬로그램이하의 것	2.7	0	
8906 90 99	--- 기타	1.7	0	
8907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 부교 · 탱크 · 코퍼댐 · 부잔교 · 부표 · 수로부표)			
8907 10 00	- 인플랫티블식의 부교	2.7	0	
8907 90 00	- 기타	2.7	0	
8908 00 00	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것에 한한다)	Free	0	
90	제90류 광학기기 · 사진용기기 · 영화용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 ·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9001 10	- 광섬유 · 광섬유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9001 10 10	-- 영상도체케이블	2.9	0	
9001 10 90	-- 기타	2.9	0	
9001 20 00	- 편광재료제의 판	2.9	0	
9001 30 00	- 콘택트렌즈	2.9	0	
9001 40	- 유리제의 안경렌즈			
9001 40 20	-- 시력 교정용이 아닌 것	2.9	0	
	--시력 교정용의 것			
	---양면이 마감된 것			
9001 40 41	---- 단초점의 것	2.9	0	
9001 40 49	---- 기타	2.9	0	
9001 40 80	---- 기타	2.9	0	
9001 50	-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9001 50 20	-- 시력 교정용이 아닌 것	2.9	0	
	--시력 교정용의 것			
	---양면이 마감된 것			
9001 50 41	---- 단초점의 것	2.9	0	
9001 50 49	---- 기타	2.9	0	
9001 50 80	---- 기타	2.9	0	
9001 90 00	- 기타	2.9	0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 · 프리즘 ·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대물렌즈			
9002 11 00	-- 카메라용 · 영상기용 · 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6.7	0	
9002 19 00	-- 기타	6.7	0	
9002 20 00	- 필터	6.7	5	
9002 90 00	- 기타	6.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003	안경 · 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테 및 장착구			
9003 11 00	-- 플라스틱제의 것	2.2	0	
9003 19	-- 기타 재료제의 것			
9003 19 10	--- 귀금속제의 것	2.2	0	
9003 19 30	--- 비금속제의 것	2.2	0	
9003 19 90	--- 안경, 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 및 장착구(금속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을 제외)	2.2	0	
9003 90 00	- 부분품	2.2	0	
9004	시력교정용 · 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 ·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 10	- 선글라스			
9004 10 10	-- 광학적으로 연마한 것	2.9	0	
	--기타			
9004 10 91	--- 플라스틱제 렌즈로 된 것	2.9	0	
9004 10 99	--- 기타	2.9	0	
9004 90	- 기타			
9004 90 10	-- 플라스틱제 렌즈로 된 것	2.9	0	
9004 90 90	-- 기타	2.9	0	
9005	쌍안경 · 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및 기타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9005 10 00	- 쌍안경	4.2	0	
9005 80 00	- 기타의 기기	4.2	0	
9005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2	0	
9006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 10 00	- 인쇄제판용 사진기	4.2	0	
9006 30 00	- 수중촬영용 · 공중측량용 및 내과용 · 외과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4.2	0	
9006 40 00	- 즉석인화사진기	3.2	0	
	-기타 카메라			
9006 51 00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이하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4.2	0	
9006 52 00	-- 기타(폭이 35밀리미터미만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4.2	0	
9006 53	--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9006 53 10	--- 일회용사진기	4.2	0	
9006 53 80	--- 기타	4.2	0	
9006 59 00	-- 기타	4.2	0	
	-사진용 섬광기구와 플래시벌브			
9006 61 00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3.2	0	
9006 69 00	-- 기타	3.2	0	
	-부분품과 부속품			
9006 91 00	-- 카메라용의 것	3.7	0	
9006 99 00	-- 기타	3.2	0	
9007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카메라			
9007 11 00	-- 폭이 16밀리미터 미만 또는 더불 8밀리미터의 필름용인 것	3.7	0	
9007 19 00	-- 기타	3.7	0	
9007 20 00	- 영사기	3.7	0	
	-부분품과 부속품			
9007 91 00	-- 촬영기용의 것	3.7	0	
9007 92 00	-- 영사기용의 것	3.7	0	
9008	투영기 ·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9008 10 00	- 환등기	3.7	0	
9008 20 00	- 마이크로필름 · 마이크로피체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3.7	0	
9008 30 00	- 기타의 투영기	3.7	0	
9008 40 00	-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3.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008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	3.7	0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			
9010 10 00	-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2.7	0	
9010 50 0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 프린트 등의 처리용의 기타의 기기 및 네가토스코우프	2.7	0	
9010 60 00	- 영사용 스크린	2.7	0	
9010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	2.7	0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9011 10	- 입체현미경			
9011 10 10	--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Free	0	
9011 10 90	-- 기타	6.7	0	
9011 20	- 기타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에 한한다)			
9011 20 10	-- 마이크로사진용광학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Free	0	
9011 20 90	-- 기타	6.7	0	
9011 80 00	- 기타의 현미경	6.7	0	
9011 90	- 부분품과 부속품			
9011 90 10	-- 제9011.10.10호 또는 소호 제9011.20.10호의 기기의 것	Free	0	
9011 90 90	-- 기타	6.7	0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9012 1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			
9012 10 10	-- 전자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Free	0	
9012 10 90	-- 기타	3.7	0	
9012 90	- 부분품과 부속품			
9012 90 10	-- 제9012.10.10호의 기기의 것	Free	0	
9012 90 90	-- 기타	3.7	0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3 10 00	-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및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4.7	0	
9013 20 0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4.7	0	
9013 80	- 기타의 기기			
	--액정 디바이스			
9013 80 20	--- 활성 매트릭스 액정표시장치	Free	0	
9013 80 30	--- 기타	Free	0	
9013 80 90	-- 기타	4.7	0	
9013 90	- 부분품과 부속품			
9013 90 10	-- 액정 디바이스용	Free	0	
9013 90 90	-- 기타	4.7	0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기			
9014 10 00	- 방향탐지용 컴퍼스	2.7	0	
9014 20	-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9014 20 20	-- 관성항법시스템	3.7	0	
9014 20 80	-- 기타	3.7	0	
9014 80 00	- 기타의 항행용 기기	3.7	0	
9014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	2.7	0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측기기 · 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및 거리측정기			
9015 10	- 거리측정기			
9015 10 10	-- 전기식	3.7	0	
9015 10 90	-- 기타	2.7	0	
9015 20	-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015 20 10	-- 전기식	3.7	0	
9015 20 90	-- 기타	2.7	0	
9015 30	- 수준기			
9015 30 10	-- 전기식	3.7	0	
9015 30 90	-- 기타	2.7	0	
9015 40	- 사진측량기기			
9015 40 10	-- 전기식	3.7	0	
9015 40 90	-- 기타	2.7	0	
9015 80	- 기타의 기기			
	--전기식			
9015 80 11	--- 기상관측기기, 수리계측기기, 지구물리학용 기기	3.7	0	
9015 80 19	--- 기타	3.7	0	
	--기타			
9015 80 91	--- 측지학, 지형학, 토지측량 또는 수준측량 및 수로학용 기기	2.7	0	
9015 80 93	--- 기상관측기기, 수리계측기기, 지구물리학용 기기	2.7	0	
9015 80 99	--- 기타	2.7	0	
9015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	2.7	0	
9016 00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9016 00 10	- 저울	3.7	0	
9016 00 90	- 부분품 및 부속품	3.7	0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및 수지식의 길이측정용구(예 :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7 1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017 10 10	-- 플로터	Free	0	
9017 10 90	-- 기타	2.7	0	
9017 20	- 기타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9017 20 05	-- 플로터	Free	0	
	--기타 제도 용구			
9017 20 11	--- 제도세트	2.7	0	
9017 20 19	--- 기타	2.7	0	
9017 20 39	-- 설계용구	2.7	0	
9017 20 90	-- 계산용구(계산척, 계산반 및 이와 유사한 용구를 포함한다)	2.7	0	
9017 30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와 게이지류			
9017 30 10	-- 마이크로미터 및 캘리퍼스	2.7	0	
9017 30 90	-- 기타(제9031호의 조정장치가 없는 게이지류를 제외)	2.7	0	
9017 80	- 기타의 기기			
9017 80 10	-- 눈금이 든 곧은자 및 줄자	2.7	0	
9017 80 90	-- 기타	2.7	0	
9017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	2.7	0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 11 00	-- 심전계	Free	0	
9018 12 00	-- 초음파 영상진단기	Free	0	
9018 13 00	-- 자기공명 촬영기기	Free	0	
9018 14 00	--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Free	0	
9018 19	-- 기타			
9018 19 10	---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기기	Free	0	
9018 19 90	--- 기타	Free	0	
9018 20 00	-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Free	0	
	-주사기·바늘·카테터·케놀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 31	--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9018 31 10	--- 플라스틱제의 것	Free	0	
9018 31 90	--- 기타	Free	0	
9018 32	--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			
9018 32 10	---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Free	0	
9018 32 90	--- 봉합용 바늘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018 39 00	-- 기타	Free	0	
	-치과용의 기타의 기기			
9018 41 00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기타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9018 49	-- 기타			
9018 49 10	--- 치과드릴용 바아, 디스크, 드릴 및 부러쉬	Free	0	
9018 49 90	--- 기타	Free	0	
9018 50	- 안과용의 기타의 기기			
9018 50 10	-- 광학용이 아닌 것	Free	0	
9018 50 90	-- 광학용인 것	Free	0	
9018 90	- 기타의 기기			
9018 90 10	-- 혈압측정용 기기	Free	0	
9018 90 20	-- 내시경	Free	0	
9018 90 30	-- 신장투석기(인공신장, 신장기계 및 투석기)	Free	0	
	--투열요법기			
9018 90 41	--- 초음파의 것	Free	0	
9018 90 49	--- 기타	Free	0	
9018 90 50	-- 수혈기기	Free	0	
9018 90 60	-- 마취기기	Free	0	
9018 90 70	-- 초음파 쇄석기	Free	0	
9018 90 75	-- 신경자극기	Free	0	
9018 90 85	-- 기타	Free	0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 · 산소흡입기 · 에어로졸치료기 ·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 1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및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9019 10 10	-- 전기식 진동-마사지용 기기	Free	0	
9019 10 90	-- 기타	Free	0	
9019 20 00	-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Free	0	
9020 00 0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スマ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다)	1.7	0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 ·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9021 10	-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9021 10 10	-- 정형외과용의 기기	Free	0	
9021 10 90	-- 부목 및 기타 골절치료구	Free	0	
	-의치 및 치과용품			
9021 21	-- 의치			
9021 21 10	--- 플라스틱제의 것	Free	0	
9021 21 90	--- 기타 재료의 것	Free	0	
9021 29 00	-- 기타	Free	0	
	-기타 인조의 인체 부분			
9021 31 00	-- 인조관절	Free	0	
9021 39	-- 기타			
9021 39 10	--- 의안	Free	0	
9021 39 90	--- 기타	Free	0	
9021 40 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Free	0	
9021 50 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Free	0	
9021 90	- 기타			
9021 90 10	-- 보청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Free	0	
9021 90 90	-- 기타	Free	0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 · 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 · 고압발생기 · 조절반 · 스크린 · 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 ·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022 12 00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Free	0	
9022 13 00	--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Free	0	
9022 14 00	--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에 한한다)	Free	0	
9022 19 00	-- 기타 용도의 것	Free	0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9022 21 00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	Free	0	
9022 29 00	-- 기타 용도의 것	2.1	0	
9022 30 00	- 엑스선관	2.1	0	
9022 9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9022 90 10	-- 엑스선 형광판 및 엑스선 증감지; 산란방지 쉴드 및 그 리드	2.1	0	
9022 90 90	-- 기타	2.1	0	
9023 00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9023 00 10	- 물리학, 화학 또는 기술과목 교육에 사용되는 유형의 것	1.4	0	
9023 00 80	- 기타	1.4	0	
9024	재료(예 :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 10	- 금속재료 시험기기			
9024 10 10	-- 전기식	3.2	0	
	--기타			
9024 10 91	--- 보편적이거나 인장시험용의 것	2.1	0	
9024 10 93	--- 경도시험용 기기	2.1	0	
9024 10 99	--- 기타	2.1	0	
9024 80	- 기타의 기기			
9024 80 10	-- 전기식	3.2	0	
	--기타			
9024 80 91	--- 직물제, 지제 및 판지제의 시험용 기기	2.1	0	
9024 80 99	--- 기타	2.1	0	
9024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	2.1	0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25 11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의 것에 한한다)			
9025 11 20	--- 의료용 및 수의용 온도계	Free	0	
9025 11 80	--- 기타	2.8	0	
9025 19	-- 기타			
9025 19 20	--- 전기식	3.2	0	
9025 19 80	--- 기타	2.1	0	
9025 80	- 기타의 기기			
9025 80 20	-- 기압계(다른 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1	0	
	--기타			
9025 80 40	--- 전기식	3.2	0	
9025 80 80	--- 기타	2.1	0	
9025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	3.2	0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9026 10	-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전기식			
9026 10 21	--- 유량계	Free	0	
9026 10 29	--- 기타	Free	0	
	--기타			
9026 10 81	--- 유량계	Free	0	
9026 10 89	--- 기타	Free	0	
9026 20	-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9026 20 20	-- 전기식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기타			
9026 20 40	--- 나선형 또는 금속형 압력측정 게이지류	Free	0	
9026 20 80	--- 기타	Free	0	
9026 80	- 기타의 기기			
9026 80 20	-- 전기식	Free	0	
9026 80 80	--기타	Free	0	
9026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	Free	0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 · 굴절계 · 분광계 · 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 · 포로서티 · 팽창 · 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 · 소리 ·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톱			
9027 10	-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9027 10 10	-- 전기식	2.5	0	
9027 10 90	-- 기타	2.5	0	
9027 20 0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Free	0	
9027 30 00	- 분광계 · 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9027 50 00	- 기타의 기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9027 80	- 기타의 기기			
9027 80 05	-- 노출계	2.5	0	
	--기타			
	---전기식			
9027 80 11	---- 전기식 pH미터, rH미터 및 기타 전도도 측정용 기기	Free	0	
9027 80 13	---- 반도체재료의 물리적 특성 또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정 또는 LCD 생산 동안의 LCD기판 또는 관련 절연층 또는 전도층 측정용 기기	Free	0	
9027 80 17	---- 기타	Free	0	
	---기타			
9027 80 91	---- 점도계, 기공도측정계 및 팽창계	Free	0	
9027 80 93	---- 반도체재료의 물리적 특성 또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정 또는 LCD 생산 동안의 LCD기판 또는 관련 절연층 또는 전도층 측정용 기기	Free	0	
9027 80 97	---- 기타	Free	0	
9027 90	- 마이크로톱 및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7 90 10	-- 마이크로톱	2.5	0	
	--부분품 및 부속품			
9027 90 50	--- 소호 제9027.20호 내지 제9027 80호의 기기의 것	Free	0	
9027 90 80	--- 마이크로톱 또는 가스 또는 매연분석용 기기의 것	2.5	0	
9028	기체 ·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측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 10 00	- 기체용 계기	2.1	0	
9028 20 00	- 액체용 계기	2.1	0	
9028 30	- 전기용 계기			
	--교류용의 것			
9028 30 11	--- 단상용의 것	2.1	0	
9028 30 19	--- 적산용 계기	2.1	0	
9028 30 90	-- 기타	2.1	0	
9028 90	- 부분품과 부속품			
9028 90 10	-- 전기용 계기의 것	2.1	0	
9028 90 90	-- 기타	2.1	0	
9029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9029 10 00	- 적산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1.9	0	
9029 2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9029 20 31	--- 속도계(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2.6	0	
9029 20 38	--- 기타	2.6	0	
9029 20 90	-- 스트로보스코우프	2.6	0	
9029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	2.2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030	오실로스코프 ·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9030 10 00	-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4.2	0	
9030 20	- 오실로스코프와 오실로그래프			
9030 20 10	-- 음극선	4.2	0	
9030 20 30	-- 기타(기록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Free	0	
	--기타			
9030 20 91	--- 전기식	Free	0	
9030 20 99	--- 기타	2.1	0	
	-전압 · 전류 · 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9030 31 00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4.2	0	
9030 32 00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Free	0	
9030 33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9030 33 10	--- 전기식	4.2	0	
	---기타			
9030 33 91	---- 전압계	2.1	0	
9030 33 99	---- 기타	2.1	0	
9030 39 00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Free	0	
9030 40 0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 : 누화계 · 계인측정계 · 만곡률계 · 잡음전압계)	Free	0	
	-기타의 기기			
9030 82 00	--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Free	0	
9030 84 00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Free	0	
9030 89	--기타			
9030 89 30	--- 전기식	Free	0	
9030 89 90	--- 기타	2.1	0	
9030 90	- 부분품과 부속품			
9030 90 20	-- 제9030.82.00호의 기기용	Free	0	
9030 90 85	-- 기타	2.5	0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			
9031 10 00	- 균형시험기	2.8	0	
9031 20 00	- 테스트벤치	2.8	0	
	-기타 광학식의 기기			
9031 41 00	-- 반도체 웨이퍼 및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Free	0	
9031 49	-- 기타			
9031 49 10	--- 윤곽투영기	2.8	0	
9031 49 90	--- 기타	Free	0	
9031 80	- 기타의 기기			
	--전기식			
	---기하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9031 80 32	---- 반도체 웨이퍼 및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	2.8	0	
9031 80 34	---- 기타	2.8	0	
9031 80 38	---- 기타	4	0	
	--기타			
9031 80 91	--- 기하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2.8	0	
9031 80 98	--- 기타	4	0	
9031 90	- 부분품과 부속품			
9031 90 20	-- 제9031.41.00호의 기기 또는 소호 제9301.49.90호의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오염상태 측정용의 광학식 기기	Free	0	
9031 90 30	-- 제9031.80.32호의 기기용	2.8	0	
9031 90 85	-- 기타	2.8	0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 1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9032 10 20	-- 전기식	2.8	0	
	--기타			
9032 10 81	--- 전기식 기록장치가 있는 것	2.1	0	
9032 10 89	--- 기타	2.1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032 20 00	- 매노우스타트	2.8	0	
	-기타의 기기			
9032 81 00	--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2.8	0	
9032 89 00	-- 기타	2.8	0	
9032 90 00	- 부분품과 부속품	2.8	0	
9033 00 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	0	
91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커금속제의 것 또는 커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팔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1 11 00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9101 19 00	-- 기타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기타의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101 21 00	-- 자동권식의 것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9101 29 00	-- 기타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기타			
9101 91 00	-- 전기구동식의 것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9101 99 00	-- 기타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9102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팔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102 11 00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9102 12 00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9102 19 00	-- 기타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기타의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102 21 00	-- 자동권식의 것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9102 29 00	-- 기타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기타			
9102 91 00	-- 전기구동식의 것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9102 99 00	-- 기타	4,5 MIN 0,3 € p/st MAX 0,8 € p/st	0	
9103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제9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9103 10 00	- 전기구동식의 것	4.7	0	
9103 90 00	- 기타	4.7	0	
9104 00 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	3.7	0	
9105	기타의 클록			
	-자명종시계			
9105 11 00	-- 전기구동식의 것	4.7	0	
9105 19 00	-- 기타	3.7	0	
	-벽 시계			
9105 21 00	-- 전기구동식의 것	4.7	0	
9105 29 00	-- 기타	3.7	0	
	-기타			
9105 91 00	-- 전기구동식의 것	4.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105 99	-- 기타			
9105 99 10	--- 테이블탑 또는 맨텔피스 클록	3.7	0	
9105 99 90	--- 기타	3.7	0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시계의 무브먼트나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 또는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타임레코더)			
9106 10 00	-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4.7	0	
9106 90	- 기타			
9106 90 10	-- 프로세스 타이머, 스톱클록과 이와 유사한 것들	4.7	0	
9106 90 80	-- 기타	4.7	0	
9107 00 00	타임스왑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4.7	0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전기구동식의 것			
9108 11 00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7	0	
9108 12 00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7	0	
9108 19 00	-- 기타	4.7	0	
9108 20 00	- 자동권식의 것	5 MIN 0,17 € p/st	0	
9108 90 00	- 기타	5 MIN 0,17 € p/st	0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전기구동식의 것			
9109 11 00	-- 자명종 시계용의 것	4.7	0	
9109 19 00	-- 기타	4.7	0	
9109 90 00	- 기타	4.7	0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및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시계의 것			
9110 11	--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9110 11 10	--- 평형휠과 헤어스프링이 있는 것	5 MIN 0,17 € p/st	0	
9110 11 90	--- 기타	4.7	0	
9110 12 00	-- 불완전한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3.7	0	
9110 19 00	-- 러프 무브먼트	4.7	0	
9110 90 00	- 기타	3.7	0	
9111	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 10 00	- 귀 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0,5 € p/st MIN 2,7 MAX 4,6	0	
9111 20 0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0,5 € p/st MIN 2,7 MAX 4,6	0	
9111 80 00	- 기타의 케이스	0,5 € p/st MIN 2,7 MAX 4,6	0	
9111 90 00	- 부분품	0,5 € p/st MIN 2,7 MAX 4,6	0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 20 00	- 케이스	2.7	0	
9112 90 00	- 부분품	2.7	0	
9113	휴대용시계줄·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 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9113 10 10	-- 귀금속제의 것	2.7	0	
9113 10 90	--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3.7	0	
9113 20 0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6	0	
9113 90	- 기타			
9113 90 10	--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것	6	0	
9113 90 80	-- 기타	6	0	
9114	기타 시계의 부분품			
9114 10 0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3.7	0	
9114 20 00	- 시계용 보석	2.7	0	
9114 30 00	- 문자판	2.7	0	
9114 40 00	- 지판과 브리지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114 90 00	- 기타	2.7	0	
92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와 기타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 10	- 업라이트 피아노			
9201 10 10	-- 신형	4	0	
9201 10 90	-- 중고	4	0	
9201 20 00	- 그랜드 피아노	4	0	
9201 90 00	- 기타	4	0	
9202	기타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 10	- 활을 사용하는 것			
9202 10 10	-- 바이올린	3.2	0	
9202 10 90	-- 기타	3.2	0	
9202 90	- 기타			
9202 90 30	-- 기타	3.2	0	
9202 90 80	-- 기타	3.2	0	
9205	기타의 취주악기(예: 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			
9205 10 00	-금관악기	3.2	0	
9205 90	- 기타			
9205 90 10	--아코디언 및 이와 유사한 악기류	3.7	0	
9205 90 30	--하모니카	3.7	0	
9205 90 50	--건반이 있는 파이프 오르간, 하모늄 및 이와 유사한 프리 메탈 리드식의 건반 악기	3.2	0	
9205 90 90	--기타	3.2	0	
9206 00 00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넷·마라카스)	3.2	0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 10	- 건반악기(아코디언을 제외한다)			
9207 10 10	--오르간	3.2	0	
9207 10 30	--디지털 피아노	3.2	0	
9207 10 50	--합성기	3.2	0	
9207 10 80	--기타	3.2	0	
9207 90	- 기타			
9207 90 10	--기타	3.7	0	
9207 90 90	--기타	3.7	0	
9208	유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오르간·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기계식 자명조·유지컬소오와 기타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각종의 데코이 콜 및 휘슬·호각과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 하는 기구			
9208 10 00	-유지컬박스	2.7	0	
9208 90 00	-기타	3.2	0	
9209	악기의 부분품(예: 유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디스크와 롤) 및 박절기·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律管)			
9209 30 00	-악기용의 현	2.7	0	
	-기타			
9209 91 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2.7	0	
9209 92 00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2.7	0	
9209 94 00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2.7	0	
9209 99	-- 기타			
9209 99 20	---제9205호의 악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2.7	0	
	---기타			
9209 99 40	----박절기, 음차 및 조율관	3.2	0	
9209 99 50	----유지컬 박스의 기계 장치	1.7	0	
9209 99 70	---기타	2.7	0	
93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무기(리볼버·피스톨과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다)			
	-포병 무기, 예) 총, 곡사포 및 박격포			
9301 11 00	--자주식의 것	Free	0	
9301 19 00	--기타	Free	0	
9301 20 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301 90 00	-기타	Free	0	
9302 00 00	리볼버와 피스톨(제9303호 또는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다)	2.7	0	
9303	기타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 경기용의 산탄총과 라이플 · 총구장전화기 · 베리식 피스톨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기타의 장치 · 공포탄용 피스톨 및 리볼버 · 캡티브볼트형의 무통도살기 · 출발사총)			
9303 10 00	-총구장전화기	3.2	0	
9303 20	-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9303 20 10	--단발형, 활강형	3.2	0	
9303 20 95	--기타	3.2	0	
9303 30 0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라이플	3.2	0	
9303 90 00	-기타	3.2	0	
9304 00 00	기타의 무기(예 : 스프링총 · 공기총 · 가스총 · 경찰봉)(제9307호의 것을 제외한다)	3.2	0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 내지 제9304호의 것에 한한다)			
9305 10 00	-리볼버 또는 피스톨의 것	3.2	0	
	-제9303호의 산탄총 또는 라이플총의 것			
9305 21 00	--산탄총의 총열	2.7	0	
9305 29 00	--기타	2.7	0	
	-기타			
9305 91 00	--제9301호의 군용무기의 것	Free	0	
9305 99 00	--기타	2.7	0	
9306	폭탄 · 유탄 · 어뢰 · 지뢰 ·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 기타 총포탄 ·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및 공기총 탄환			
9306 21 00	--탄약	2.7	0	
9306 29	-- 기타			
9306 29 40	---케이스	2.7	0	
9306 29 70	---기타	2.7	0	
9306 30	- 기타의 탄약과 그 부분품			
9306 30 10	--제9302호의 리볼버 및 피스톨과 제9301호의 기관단총용	2.7	0	
	--기타			
9306 30 30	---군용 화기용	1.7	0	
	---기타			
9306 30 91	----중앙에 뇌관이 있는 탄약	2.7	0	
9306 30 93	----가장자리에 기폭탄이 있는 탄약	2.7	0	
9306 30 97	----기타	2.7	0	
9306 90	- 기타			
9306 90 10	--군용	1.7	0	
9306 90 90	--기타	2.7	0	
9307 00 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1.7	0	
94	제94류 가구와 침구 · 매트리스 · 매트리스서포트 ·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자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 10 00	-차량용의 의자	Free	0	
9401 20 00	- 차량용의 의자	3.7	0	
9401 30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9401 30 10	--등받이 및 카스터 또는 글라이드가 있는 걸천을 댄 것	Free	0	
9401 30 90	--기타	Free	0	
9401 40 00	-침대겸용의자(가든시트 또는 캠핑용을 제외한다)	Free	0	
	-등나무 · 버드나무 · 대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 51 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5.6	0	
9401 59 00	--기타	5.6	0	
	-기타의 의자(프레임이 목제인 것에 한한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401 61 00	--의자의 속·용수철·카바등을 댄 것	Free	0	
9401 69 00	--기타	Free	0	
	-기타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401 71 00	--의자의 속·용수철·카바등을 댄 것	Free	0	
9401 79 00	--기타	Free	0	
9401 80 00	-기타의 의자	Free	0	
9401 90	-부분품			
9401 90 10	--모든 항공기용 의자의 것	1.7	0	
	--기타			
9401 90 30	---목재로 된 것	2.7	0	
9401 90 80	---기타	2.7	0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뒤로 젖히거나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9402 10 0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Free	0	
9402 90 00	-기타	Free	0	
9403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 10	-사무실용 금속제가구			
9403 10 10	--제도용 책상 (제90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Free	0	
	--기타			
	---높이 80센티미터이하의 것			
9403 10 51	----책상	Free	0	
9403 10 59	----기타	Free	0	
	---높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9403 10 91	----문, 셔터 또는 플랩이 있는 식기장	Free	0	
9403 10 93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높이 80센티미터 초과인 금속제로 된 서류함, 카드 인덱스 및 기타 캐비닛	Free	0	
9403 10 99	----기타	Free	0	
9403 20	-기타의 금속제가구			
9403 20 20	--침대	Free	0	
9403 20 80	--기타	Free	0	
9403 30	-사무실용 목제가구			
	--높이 80센티미터이하의 것			
9403 30 11	----책상	Free	0	
9403 30 19	----기타	Free	0	
	--높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9403 30 91	---문·셔터 또는 플랩이 있는 식기장; 서류함·카드 인덱스 및 기타 캐비닛	Free	0	
9403 30 99	---기타	Free	0	
9403 40	-주방용 목제가구			
9403 40 10	--주방용 장비도구	2.7	0	
9403 40 90	--기타	2.7	0	
9403 50 00	-침실용 목제가구	Free	0	
9403 60	-기타의 목제가구			
9403 60 10	--목재로 된 식당용 및 거실용 가구류	Free	0	
9403 60 30	--목재로 된 상점용 가구류	Free	0	
9403 60 90	--기타 목재 가구류	Free	0	
9403 70 00	-플라스틱제의 가구	Free	0	
	-기타 재료제의 가구(등나무·버드나무·대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제의 것을 포함한다)			
9403 81 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5.6	0	
9403 89 00	--기타	5.6	0	
9403 90	-부분품			
9403 90 10	--금속제로 된 것	2.7	0	
9403 90 30	--목재로 된 것	2.7	0	
9403 90 90	--기타 재료로 된 것	2.7	0	
9404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9404 10 00	-매트리스 서포트	3.7	0	
	-매트리스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404 21	--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9404 21 10	---고무제로 된 것	3.7	0	
9404 21 90	---플라스틱으로 된 것	3.7	0	
9404 29	-- 기타 재료의 것			
9404 29 10	---내부에 스프링이 장착된 것	3.7	0	
9404 29 90	---기타	3.7	0	
9404 30 00	-슬리핑 백	3.7	0	
9404 90	- 기타			
9404 90 10	--깃털 및 솜털로 채운 것	3.7	0	
9404 90 90	--기타	3.7	0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 ·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405 10	- 산데리아와 기타의 천장용 ·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플라스틱제로 된 것			
9405 10 21	---필라멘트 램프를 사용하는 것	4.7	0	
9405 10 28	---기타	4.7	0	
9405 10 30	--도자 제품으로 된 것	4.7	0	
9405 10 50	--유리로 된 것	3.7	0	
	--기타 재료로 된 것			
9405 10 91	---필라멘트 램프를 사용하는 것	2.7	0	
9405 10 98	---기타	2.7	0	
9405 20	-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플라스틱제의 것			
9405 20 11	---필라멘트 램프를 사용하는 것	4.7	0	
9405 20 19	---기타	4.7	0	
9405 20 30	--도자 제품으로 된 것	4.7	0	
9405 20 50	--유리로 된 것	3.7	0	
	--기타 재료로 된 것			
9405 20 91	---필라멘트 램프용으로 사용하는 것	2.7	0	
9405 20 99	---기타	2.7	0	
9405 30 0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3.7	0	
9405 40	-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 40 10	--탐조등 및 조사등	3.7	0	
	--기타			
	---플라스틱제의 것			
9405 40 31	----필라멘트 램프용으로 사용하는 것	4.7	0	
9405 40 35	----형광등용으로 사용하는 것	4.7	0	
9405 40 39	----기타	4.7	0	
	---기타 재료로 된 것			
9405 40 91	----필라멘트 램프용으로 사용하는 것	2.7	0	
9405 40 95	----관형의 형광등용으로 사용하는 것	2.7	0	
9405 40 99	----기타	2.7	0	
9405 50 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2.7	0	
9405 60	-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5 60 20	--플라스틱제의 것	4.7	0	
9405 60 80	--기타 재료의 것	2.7	0	
	-부분품			
9405 91	-- 유리제의 것			
	---전기 조명기기용의 제품(탐조등 및 조사등은 제외)			
9405 91 11	----상들리에 장식용 단면의 유리, 플레이트, 볼, 배모양의 물방울 장식, 꽃모양의 조각, 펜던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7	0	
9405 91 19	----기타(예: 전기 조명기기용의 확산기, 천장 조명, 볼, 컵, 램프갓, 구체, 튜립모양의 조각)	5.7	0	
9405 91 90	---기타	3.7	0	
9405 92 00	--플라스틱제의 것	4.7	0	
9405 99 00	--기타	2.7	0	
9406 00	조립식 건축물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406 00 11	-이동가능한 간이주택	2.7	0	
	-기타			
9406 00 20	--목재의 것	2.7	0	
	--철강으로 된 것			
9406 00 31	---건조실	2.7	0	
9406 00 38	---기타	2.7	0	
9406 00 80	--기타 재료로 된 것	2.7	0	
95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및 각종의 퍼즐			
9503 00 10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달린 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달 린 완구류 및 인형의 탈 것	Free	0	
	-사람 모형의 인형(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9503 00 21	--인형	4.7	0	
9503 00 29	--부분품 및 부속품	Free	0	
9503 00 30	-트랙, 신호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한 전기식 기차, 축소 모형의 조립용 키트	Free	0	
	-기타 조립 세트 및 조립식 완구			
9503 00 35	--플라스틱제의 것	4.7	0	
9503 00 39	--기타 재료로 된 것	Free	0	
	-동물 또는 사람을 모방하지 아니한 완구			
9503 00 41	--속이 채워져 있는 것	4.7	0	
9503 00 49	--기타	Free	0	
9503 00 55	-완구용 악기류 및 기구	Free	0	
	-퍼즐			
9503 00 61	--목재로 된 것	Free	0	
9503 00 69	--기타	4.7	0	
9503 00 70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 완구류	4.7	0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완구 및 모형			
9503 00 75	--플라스틱제의 것	4.7	0	
9503 00 79	--기타 재료로 된 것	Free	0	
	-기타			
9503 00 81	--장난감 무기	Free	0	
9503 00 85	--다이캐스팅으로 주조된 금속으로 된 축소 모형	4.7	0	
	--기타			
9503 00 95	---플라스틱제의 것	4.7	0	
9503 00 99	---기타	Free	0	
9504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 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 희장 용구를 포함한다)			
9504 10 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Free	0	
9504 20	-각종의 당구용구와 부속품			
9504 20 10	--당구대(다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Free	0	
9504 20 90	--기타	Free	0	
9504 30	-기타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및 기 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 는 제외한다)			
9504 30 10	--스크린이 있는 게임	Free	0	
	--기타 게임			
9504 30 30	---폴리퍼	Free	0	
9504 30 50	---기타	Free	0	
9504 30 90	--부분품	Free	0	
9504 40 00	-유희용 카드	2.7	0	
9504 90	-기타			
9504 90 10	--전자식의 경주용 차 세트	Free	0	
9504 90 90	--기타	Free	0	
9505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술(奇 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 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9505 10 10	--유리로 만든 것	Free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505 10 90	-- 크리스마스용 물품 (유리로 된 것, 양초 및 전자 조명기구, 천연 크리스마스 트리 및 크리스마스 트리 스탠드는 제외)	2.7	0	
9505 90 00	- 기타	2.7	0	
9506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 체조 · 육상 · 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용품			
	- 설상스키와 기타의 설상스키용품			
9506 11	-- 스키			
9506 11 10	---크로스 컨트리 스키	3.7	0	
	---활강 스키			
9506 11 21	---- 모노스키 및 스노보드	3.7	0	
9506 11 29	---- 기타	3.7	0	
9506 11 80	--- 기타 스키	3.7	0	
9506 12 00	--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3.7	0	
9506 19 00	-- 기타	2.7	0	
	- 수상스키 · 서프보드 및 기타 수상 스포츠용 장비			
9506 21 00	-- 세일보드	2.7	0	
9506 29 00	-- 기타	2.7	0	
	-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			
9506 31 00	--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한다)	2.7	0	
9506 32 00	-- 골프공	2.7	0	
9506 39	-- 기타			
9506 39 10	--- 골프채의 부분품	2.7	0	
9506 39 90	--- 기타	2.7	0	
9506 40	- 탁구용구			
9506 40 10	-- 배트, 공 및 네트	2.7	0	
9506 40 90	-- 기타	2.7	0	
	- 테니스용 · 배드민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506 51 00	--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7	0	
9506 59 00	-- 기타	2.7	0	
	- 공(골프공과 탁구공을 제외한다)			
9506 61 00	-- 로온테니스 공	2.7	0	
9506 62	--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9506 62 10	--- 가족제의 것	2.7	0	
9506 62 90	--- 기타	2.7	0	
9506 69	-- 기타			
9506 69 10	--- 크리켓 및 폴로 공	Free	0	
9506 69 90	--- 기타	2.7	0	
9506 70	-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링부츠를 포함한다)			
9506 70 10	--아이스 스케이트	Free	0	
9506 70 30	--롤러 스케이트	2.7	0	
9506 70 90	--부분품 및 부속품	2.7	0	
	-기타			
9506 91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 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9506 91 10	---저항 조절 장치가 있는 운동 기구	2.7	0	
9506 91 90	--- 기타	2.7	0	
9506 99	-- 기타			
9506 99 10	--- 크리켓 및 폴로 용구 (공은 제외)	Free	0	
9506 99 90	--- 기타	2.7	0	
9507	낚시대 · 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 · 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제9208호 또는 제9705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7 10 00	- 낚시대	3.7	0	
9507 20	-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507 20 10	-- 낚시 줄에 매는 짧은 줄이 없는 낚시 바늘	1.7	0	
9507 20 90	--기타	3.7	0	
9507 30 00	-낚시 릴	3.7	0	
9507 90 00	-기타	3.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508	회전목마 · 그네 · 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및 순회서커스용 · 순회동물원용 · 순회극장용의 용품			
9508 10 00	-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1.7	0	
9508 90 00	- 기타	1.7	0	
96	제96류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 · 뼈 · 귀갑 · 뿔 · 가지진 뿔 · 산호 · 자개 ·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 10 00	-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2.7	0	
9601 90	- 기타			
9601 90 10	-- 천연 또는 덩어리로 된 가공한 산호 및 그 제품	Free	0	
9601 90 90	--기타	Free	0	
9602 00 00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 · 스테아린 · 천연수지 또는 모델링 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을 제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2.2	0	
9603	비 ·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 모프와 깃 먼지떨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퀘지를 제외한다)			
9603 10 0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	0	
	- 치솔 · 면도용 브러시 · 헤어브러시 · 네일브러시 · 아이래쉬 브러시 및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 21 00	-- 치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3.7	0	
9603 29	-- 기타			
9603 29 30	--- 헤어 브러쉬	3.7	0	
9603 29 80	--- 기타	3.7	0	
9603 30	- 회화용의 붓 · 필기용의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붓			
9603 30 10	--회화용 및 필기용 브러쉬	3.7	0	
9603 30 90	--화장용 브러쉬	3.7	0	
9603 40	- 페인트용 · 디스탬퍼용 · 배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를 제외한다) 및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9603 40 10	-- 페인트용, 디스탬퍼용, 배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쉬	3.7	0	
9603 40 90	-- 페인트용의 패드 및 롤러	3.7	0	
9603 50 00	- 기타의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2.7	0	
9603 90	- 기타			
9603 90 10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수동 바닥 청소기	2.7	0	
	--기타			
9603 90 91	---도로 청소용 브러시, 가정용 비 및 브러시(신발 브러시와 옷 브러시를 포함한다), 동물 치장용 브러쉬	3.7	0	
9603 90 99	--- 기타	3.7	0	
9604 00 00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3.7	0	
9605 00 00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3.7	0	
9606	단추 · 프레스파스너 · 스냅파스너와 프레스터드 · 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9606 10 00	-프레스파스너 · 스냅파스너와 프레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3.7	0	
	-단추			
9606 21 00	--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3.7	0	
9606 22 00	-- 비(非)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3.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606 29 00	-- 기타	3.7	0	
9606 30 00	- 단추의 몰드와 단추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2.7	0	
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슬라이드파스너			
9607 11 00	--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6.7	0	
9607 19 00	-- 기타	7.7	3	
9607 20	- 부분품			
9607 20 10	--비금속제의 것(비금속제의 체인 스쿠프가 장착된 세폭 스트립을 포함한다)	6.7	0	
9607 20 90	-- 기타	7.7	3	
9608	볼펜, 팁이 펄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 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 · 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을 제외한다)			
9608 10	- 볼펜			
9608 10 10	-- 액체 잉크로 된 것(롤링 볼펜)	3.7	0	
	-- 기타			
9608 10 30	--- 커금속 또는 롤상의 커금속제로 된 몸체 또는 뚜껑을 가진 것	3.7	0	
	--- 기타			
9608 10 91	---- 리필이 가능한 것	3.7	0	
9608 10 99	---- 기타	3.7	0	
9608 20 00	- 팁이 펄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3.7	0	
	- 만년필, 철필 및 기타 펜			
9608 31 00	--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펜	3.7	0	
9608 39	-- 기타			
9608 39 10	---커금속 또는 롤상의 커금속제로 된 몸체 또는 뚜껑을 가진 것	3.7	0	
9608 39 90	---기타	3.7	0	
9608 40 00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3.7	0	
9608 50 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3.7	0	
9608 60	-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9608 60 10	-- 액체잉크로 된 것(롤링볼 펜용)	2.7	0	
9608 60 90	-- 기타	2.7	0	
	- 기타			
9608 91 00	-- 펜촉과 닙포인트	2.7	0	
9608 99	-- 기타			
9608 99 20	---금속제로 된 것	2.7	0	
9608 99 80	---기타	2.7	0	
9609	연필(제9608호의 펜슬을 제외한다) · 크레용 · 연필심 · 파스텔 · 도화용의 목탄 ·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9609 10	-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속에 심을 넣은 것에 한한다)			
9609 10 10	-- 흑연심을 넣은 것	2.7	0	
9609 10 90	-- 기타	2.7	0	
9609 20 00	-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에 한한다)	2.7	0	
9609 90	- 기타			
9609 90 10	-- 파스텔 및 도화용의 목탄	2.7	0	
9609 90 90	-- 기타	1.7	0	
9610 00 00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2.7	0	
9611 00 00	일부인 · 봉합용 스탬프 · 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컴포징 스틱 및 컴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2.7	0	
9612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플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지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612 10	- 리본			
9612 10 10	--플라스틱제의 것	2.7	0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9612 10 20	-- 영구적으로 플라스틱 또는 금속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폭이 30밀리미터미만인 자동 타자기, 자동 자료 처리 기계 및 기타 기계용의 인조 섬유로 된 것	Free	0	
9612 10 80	-- 기타	2.7	0	
9612 20 00	- 잉크 패드	2.7	0	
9613	깍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			
9613 10 0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2.7	0	
9613 20	- 포켓용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9613 20 10	-- 전기식 점화 장치를 가진 것	2.7	0	
9613 20 90	-- 기타의 점화 장치를 가진 것	2.7	0	
9613 80 00	- 기타의 라이터	2.7	0	
9613 90 00	-부분품	2.7	0	
9614 00	깍연용 파이프(파이프 불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 · 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9614 00 10	- 깍연용 파이프 생산을 위해 거칠게 성형한 나무 또는 뿌리 덩어리	Free	0	
9614 00 90	- 기타	2.7	0	
9615	빗 · 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머리핀 · 컬링핀 · 컬링그립 · 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빗 · 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 11 00	-- 경화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2.7	0	
9615 19 00	-- 기타	2.7	0	
9615 90 00	- 기타	2.7	0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			
9616 1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9616 10 10	-- 화장용 분무기	2.7	0	
9616 10 90	-- 마운트 및 두부	2.7	0	
9616 20 00	- 화장용 분첩과 패드	2.7	0	
9617 00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용량			
9617 00 11	-- 용량이 0.75리터이하의 것	6.7	0	
9617 00 19	-- 용량이 0.75리터를 초과하는 것	6.7	0	
9617 00 90	-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는 제외)	6.7	0	
9618 00 00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형 인형 및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1.7	0	
97	제97류 예술품 · 수집품과 골동품			
9701	회화 · 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 10 00	- 회화 · 데생과 파스텔	Free	0	
9701 90 00	- 기타	Free	0	
9702 00 00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및 석판화	Free	0	
9703 00 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Free	0	
9704 00 00	우표 또는 수입인지 · 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봉투 ·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 또는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Free	0	
9705 00 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및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Free	0	
9706 00 00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Free	0	

부록 2-가-1

대한민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대한민국이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대한민국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대한민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라 한다)의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유럽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규정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HSK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수량의 유럽공동체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대한민국 영역으로 수입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유럽공동체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규정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대한 공매제도

2. 대한민국은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이행하기 위해 공매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양 당사자가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상호 합의에 의해 설정한다. 다만, 가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¹⁾

- 가. 1)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동안 95퍼센트 미만이 사용된 경우, 유럽공동체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불완전한 사용의 원인을 확인하고 다루기 위하여 공매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협의한다. 협의에서 양 당사자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 2) 양 당사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 3) 대한민국은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도달한 상품무역 위원회에서의

1) 공매제도의 조건은 미사용된 허가의 시의적절한 반납과 재배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수입이행보증금의 몰수를 포함하여 미사용된 허가를 사용 또는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칙을 포함한다.

결정을 그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그리고

- 4) 대한민국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 유럽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이 관련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가) 대한민국이 가호3목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가호1목에 언급된 협이가 협의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 항의 적용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자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이 협정에 규정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대한 허가제도

3. 대한민국은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호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는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을 포함하여 허가제도의 정책 및 절차와 이에 대한 어떠한 변경 또는 개정에 대하여도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합의한다.

가. 1)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동안 95퍼센트 미만이 사용된 경우, 유럽공동체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쿼터내 물량의 불완전한 사용의 원인을 확인하고 다루기 위하여 배분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협의한다. 협의에서 양 당사자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대한민국은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도달한 상품무역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그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그리고

- 4) 대한민국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 유럽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이 관련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가) 대한민국이 가호3목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가호 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요청일 후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 항의 적용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자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국영무역기업

4. 대한민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 서만 자국의 영역에서 국영무역기업에 의하여 유럽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 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넘치류

5.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800
2	864
3	933
4	1,008
5	1,088
6	1,175
7	1,269
8	1,371
9	1,481
10	1,599
11	1,727
12	무제한

물량은 선착순 방식에 따라 들어온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거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2-A"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39.0000.

분유(지방 1.5퍼센트 미만)와 버터밀크,
 분유(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전지분유),
 밀크와 크림(연유)(가당 또는 무가당 및/또는 농축하지 아니한 것)

6.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1,000
2	1,030
3	1,060
4	1,092
5	1,125
6	1,159
7	1,194
8	1,229
9	1,266
10	1,304
11	1,343
12	1,384
13	1,425
14	1,468
15	1,512

이행 15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5년 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유탈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공매(12월, 3월, 6월 및 9월)를 통해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
 속서 2-가 제1항머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
 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그리고 0403.90.1000.

식용유장

7.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3,350
2	3,450
3	3,554
4	3,660
5	3,770
6	3,883
7	4,000
8	4,120
9	4,243
10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초과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하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0-B”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4.10.1010, 0404.10.1090, 0404.10.2110, 0404.10.2120, 0404.10.2130, 0404.10.2190 그리고 0404.10.2900.

버터 및 우유 추출 유지방

8.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350
2	360
3	371
4	382
5	393
6	405
7	417
8	430
9	443
10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유탈당을 운영하고 쿼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해 배분하며, 원산지 상품의 전체 쿼터 내 물량은 매 연도 첫째 월에 실시되는 그 연도의 첫 번째 공매 동안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첫 번째 공매에서 배분되지 아니하는 모든 물량은 셋째 월 15일 이전의 후속 공매에서, 그리고 직전 공매일부터 45일 이내의 추가 후속 공매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0”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5.10.0000 그리고 0405.90.0000.

치즈(신선, 갈았거나 분상한 것, 가공한 것,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

9.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규정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4,560
2	4,696
3	4,837
4	4,982
5	5,132
6	5,286
7	5,444
8	5,608
9	5,776
10	5,949
11	6,128
12	6,312
13	6,501
14	6,696
15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유탈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6.10.1000, 0406.20.0000, 0406.30.0000 그리고 0406.90.0000(0406.90.0000은 체다 치즈를 포함한다). 이행 10년차부터 체다치즈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더 이상 관세유탈당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천연꿀

10.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50
2	51
3	53
4	54
5	56
6	57
7	59
8	61
9	63
10	65
11	67
12	69
13	71
14	73
15	75

이행 15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5년 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공매(12월, 3월, 6월 및 9월)를 통해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머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9.00.0000.

오렌지

11.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20
2	20
3	20
4	20
5	20
6	40
7	40
8	40
9	40
10	40
11	60

이행 11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1년 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유탈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는 연도별 공매를 통해 배분하고, 이행 11년차부터는 가장 최근 3년 기간의 과거 실적에 기초한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공사는 매년 8월에 공매를 실시하고 수입허가를 배분하며, 수입자들은 무관세 물량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대외무역법*상 무역업자로 등록된 인 또는 실체는 무관세 물량의 할당을 받도록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S-B”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805.10.0000.

맥아 및 맥주맥

1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10,000
2	10,800
3	11,600
4	12,400
5	12,772
6	13,155
7	13,549
8	13,956
9	14,375
10	14,806
11	15,250
12	15,707
13	16,179
14	16,664
15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대해 선착순으로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 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첫째 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으로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에 따라 철폐

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003.00.1000 그리고 1107.10.0000.

조제분유

13.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450
2	463
3	477
4	491
5	506
6	521
7	537
8	553
9	570
10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초과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0”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901.10.1010 그리고 1901.10.1090.

보조사료

14.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5,500
2	5,665
3	5,834
4	6,009
5	6,190
6	6,376
7	6,567
8	6,764
9	6,967
10	7,176
11	7,391
12	무제한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허가제도를 통해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이 관세율할당은 신청자가 허가서가 발급된 연도 직전 24개월 동안 수입한 다호에 규정된 원산지 상품의 물량과 그 연도에 신청자가 요청한 원산지 상품의 물량에 근거하여 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2”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그리고 2309.90.9000.

텍스트린

15.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공동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28,000
2	30,500
3	33,000
4	35,000
5	36,050
6	37,131
7	38,245
8	39,392
9	40,574
10	41,791
11	43,045
12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대해 선착순으로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 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첫째 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으로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2”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그리고 3505.10.5090.

부록 2-가-2

유럽공동체 당사자

1. 이 부록은 2008년 9월 19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031/2008호 (및 후속법)와 유럽공동체의 세계무역기구 양허표 CXL에 규정된 공동관세에 따라 유럽공동체 당사자가 특정 과일 및 채소에 적용하는 진입가격제도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원산지 상품은 2008년 9월 19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031/2008호 (및 후속법)와 유럽공동체의 세계무역기구 양허표 CXL에 규정된 공동관세에 명시된 진입가격제도를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진입가격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유럽공동체가 2008년 9월 19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031/2008호와 유럽공동체의 세계무역기구 양허표 CXL에 따라 진입가격제도를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종가세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유럽공동체의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유형에 따라 철폐된다.

3. 제2항의 상품에 대하여 2006년 10월 17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549/2006호에 규정된 종량세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유럽공동체의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유형에 따른 관세 철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그 관세는

가. 다음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시에 완전히 철폐된다.

CN 코드	품목명
07070005	오이(신선 또는 냉장)
08082050	배(신선)(페리배, 벌크,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외)
08092005	신 체리(신선)(“프루누스 세라서스”)
08092095	체리(신선)(신 체리 “프루누스 세라서스” 제외)

CN 코드	품목명
20096110	포도주스(포도즙 포함),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브릭스 값이 30이하인 것, 100킬로그램당 €18초과, 설탕 혹은 기타 감미료 포함 불문(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20096919	포도주스(포도즙 포함),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브릭스 값이 67초과인 것, 100킬로그램당 €22초과, 설탕 혹은 기타 감미료 포함 불문(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20096951	농축 포도주스(포도즙 포함),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브릭스 값이 30초과 67이하인 것, 100킬로그램당 €18초과, 설탕 혹은 기타 감미료 포함 불문(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20096959	포도주스(포도즙 포함),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브릭스 값이 30초과 67이하인 것, 100킬로그램당 €18초과, 설탕 혹은 기타 감미료 포함 불문(농축된 것과 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22043092	포도즙, 발효되지 아니한 것, 제22류의 주석 제7호에 규정된 농축된 것, 섭씨 20도에서 1.33g/cm ³ 농도 이하, 실제 알코올 농도 0.5퍼센트 초과 1퍼센트 이하(알코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중지된 것 제외)
22043094	포도즙, 발효되지 아니한 것, 농축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1.33g/cm ³ 농도 이하, 실제 알코올 농도 0.5퍼센트 초과 1퍼센트 이하(알코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중지된 것 제외)
22043096	포도즙, 발효되지 아니한 것, 제22류의 주석 제7호에 규정된 농축된 것, 20°C에서 1.33g/cm ³ 농도 초과, 실제 알코올 농도 0.5퍼센트 초과 1퍼센트 이하(알코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중지된 것 제외)
22043098	포도즙, 발효되지 아니한 것, 농축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1.33g/cm ³ 농도 초과, 실제 알코올 농도 0.5퍼센트 초과 1퍼센트 이하(알코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중지된 것 제외)

나. 다음의 상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철폐된다.

CN 코드	품목명	철폐일
07099070	주키니(신선 또는 냉장)	이행 5년차의 첫째 날
07099080	숨엥경퀴(신선 또는 냉장)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
08052010	클레멘타인(신선 또는 건조)	이행 15년차의 첫째 날
08052050	맨더린 및 월킹(신선 또는 건조)	이행 15년차의 첫째 날
08052070	탄저린(신선 또는 건조)	이행 15년차의 첫째 날
08052090	탄젤로, 오르타니쿠스, 말라퀴나스 및 유사 감귤류(신선 또는 건조)(클 레멘타인, 몬게알레, 세트수머, 맨더 린, 월킹, 탄저린 제외)	이행 15년차의 첫째 날
08055010	레몬(신선 또는 건조)(시트리스 리 몬, 시트리스 리머늄)	이행 2년차의 첫째 날
08061010	포도(신선)	이행 17년차의 첫째 날
08081080	사과(신선)(사이더사과, 벌크, 9월 16 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외)	이행 10/20 ¹⁾ 년차의 첫째 날
08091000	살구(신선)	이행 7년차의 첫째 날
08093010	복숭아(벡터린, 신선)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
08093090	복숭아(벡터린 제외, 신선)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
08094005	자두(신선)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

다. 다음 상품에 대해서는 유지된다.

CN 코드	품목명
0702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
08051020	스위트 오렌지(신선)
08052030	몬레알레 및 세트수머(신선 또는 건조)

1) 후지종의 경우, 이행 20년차의 첫째 날

4. 제3항의 종량세는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발효중인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더 낮은 종량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나

전자제품

제 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자의 의무를 상기하고, 각 당사자의 성장, 고용 및 무역에 있어서 전자제품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다음의 공유된 목적과 원칙을 확인한다.

가. 양자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철폐하는 것

나. 개방성, 비차별성, 비례성 및 투명성 원칙에 근거한 경쟁적인 시장조건을 수립하는 것

다. 국내규정을 기존 국제표준에 점진적으로 정합시키는 것

라. 중복적이고 불필요하게 부담이 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철폐를 통하여 “단일시험”과, 실행가능한 경우,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증진하는 것

마. 제조물 책임 및 시장 감시와 관련된 규제와 법의 적절한 집행 메커니즘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바. 공중보건의 보호 및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상호 유익한 지속적 무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것

2. 이 부속서는, 부록 2-나-1에서 정의된 전기 및 전자 기기, 전문가용 전기기술기기, 가정용 전기용품 및 소비자 전자제품(이하 “적용대상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안전과 전자파적합성(이하 “전자파적합성”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제 2 조

국제 표준 및 표준제정기관

1. 양 당사자는, 국제표준화기구(이하 “국제표준화기구”라 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국제전기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국제통신연합(이하 “국제통신연합”이라 한다)이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및 안전에 대한 관련 국제표준제정기관임을 인정한다.¹⁾

2.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및 국제통신연합이 제정한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서 이들 국제표준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사용한다.²⁾

3. 양 당사자는 그들의 표준제정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및 국제통신연합에서 국제표준의 개발에 참여하고 공통된 접근방식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을 약속하도록 보장한다.

제 3 조

적합성 평가절차

당사자가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³⁾

가. 적합성 평가절차가 다른 쪽 당사자와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
- 1) 양 당사자는 이 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새로운 국제표준제정기관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향후 합의할 수 있다.
 - 2)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표준의 그것과 다른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채택한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안전과 그 밖의 공익 요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제한하고, 적절한 경우, 제4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따라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에 관한 제품 요건에 근거하도록 한다.
 -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현재 적합성 보증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향후 적합성 보증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하되, 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이 부속서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제4조에 규정된 경과조치를 포함하여 이 부속서상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으로서 다음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제품을 자신의 시장에서 수용⁴⁾한다.

- 1) 어떠한 적합성 평가기관의 개입이나 인정된 시험소에 의한 제품의 시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 2) 이 협정의 발효시 또는 그 이후의 통보에서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통보된 그 당사자의 영역 내 모든 시험소의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통보하는 당사자는, 수입 당사자에 의한 사전 승인이나 검증 없이, 그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관련 시험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⁵⁾ 모든 시험소를 통보하는데 있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수입 당사자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공급자가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할 것과 그 선언서에 시험 성적서를 발행한 시험소의 이름과 시험 성적서의 발행일이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 당사자는 주요 부품목록을 포함하여 제품에 적용가능한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의 사본과 제품의 일반적 설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 3) 다음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 가) 수입 당사자가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시험소
 - 나) IECCEB Scheme의 규칙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양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유효한 CB 시험 인증서가 수반된, IECCEB Scheme 하에 있는 다른 쪽 당사자의 CB 시험소

4) 이 호에 따라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강제적 표시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허용을 포함한다.

5) 통보하는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당사자에서 자격이 있거나, 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예를 들어 ISO/IEC 17025 하에서)을 받았거나, 통보하는 당사자에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사후 시장감시의 자격이 있는 특정 시험소는 이 부속서에서 상정하고 있는 그 임무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수입 당사자는 제품이 자신의 시장에 출시되기 전 검토를 위하여 중요한 부품 목록을 포함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의 사본과 제품의 일반적 설명서를 포함한 적합성 선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호의 절차 중 선택은 부록 2-나-2에 규정된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가 한다.

다. 양 당사자는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 변경 또는 철회하는데 공급자가 단독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 양 당사자는 적합성 선언서에 날짜가 기입되고, 적합성 선언서에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권한을 부여한 당사자의 영역 내의 대표자, 그 선언에 서명하도록 제조업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인, 그 선언의 적용대상인 제품, 그리고 적합성 선언에 적용된 기술규정이 적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이 제품의 동일한 생산 공정에 대한 것일 때, 그 생산 공정의 각 품목에 적용된다. 시험이 수행될 때, 시험소의 선택은 공급자가 한다. 그리고

라. 이 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당사자는 자신의 기술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달리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유형의 제품 등록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가 나호3)목에 맞게 공급자의 선언을 검토하는 한, 그 검토는 시험이 그 당사자의 관련 기술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것과 그 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완전하다는 것을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검증하는 것에만 한정된다. 그러한 모든 검토는 그 당사자 시장에서의 제품 출시에 과도한 지체를 야기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제품이 그 당사자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고 제출된 서류가 완전하다면 선언은 예외 없이 수용된다. 선언이 거부된 경우, 그 당사자는 거부의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를 공급자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결정을 공급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제 4 조

경과조치

1.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3년 이내에 이 부속서 제3조나호를 준수하는 한편, 유럽공동체는 이 협정의 발효시에 그 호를 준수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3자 시험을 포함하여,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 합성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강제인증을 이 협정의 발효시에 적용하는 한, 대한민국은 그러한 제품의 출시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⁶⁾

가. 유럽공동체의 법령에 따라 “통보기관”으로 지정된 유럽공동체내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유럽공동체는, 대한민국의 사전 승인이나 검증 없이, 그 영역 내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이 협정의 발효시에 관련기관의 목록과 그 이후 모든 변경을 대한민국에 통보한다. 또는

나. 대한민국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그 기술규정에 대한 인증서. 대한민국은 다음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그러한 인증서를 수용한다.

- 1) 대한민국이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유럽공동체내의 모든 시험소
- 2) IECCE CB Scheme의 규칙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유럽공동체 및 대한민국의 약속에 따라, 유효한 CB 시험인증서가 수반된, IECCE CB Scheme 하의 유럽공동체 CB 시험소

이 호의 절차 중 선택은 부록 2-나-2에 규정된 제한을 조건으

6) 이 조에 따라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 제품을 출시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강제적 표시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허용을 포함한다.

로 대한민국이 한다.

3. 부록 2-나-3에 기재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의 만료 후 이 부속서 제4조제2항나호에 따른 인증서에 근거하여 적용대상 제품의 안전에 관한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부록 2-나-3에 기재된 각 제품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3조나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품의 안전에 관한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지 여부가 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말까지 검토될 것이다. 그러한 위험 평가는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고와 제품검사의 부적합률과 같은 이용가능한 과학적이고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출시된 그러한 제품에 대하여 수행될 것이다. 제품이 의도된 최종 용도로, 그리고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고려될 것이다. 위험 평가의 결과가 해당제품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3조나호를 준수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수립된 사후 시장감시 체계가 그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 이 부속서 제4조제2항나호에 규정된 적합성 보증이 유지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경과기간의 종료 후 매 3년마다 부록 2-나-3에 기재된 제품을 더욱 축소시키기 위하여 위험 평가를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제 5 조

통합 및 요건의 점진적 축소

1. 양 당사자는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 그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을 포함하는 적합성 평가절차, 또는 시험 성적서를 승인하거나 검토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관하여 이 부속서에 규정된 것 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거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지연하는 효과를 달리 가지는 어떠한 요건을 유지하거나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일부 제품의 출시를 위하여 이 부속서 제3조나호1)목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도입한다.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도입한 후 매 5년마다,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3조나호1)목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과 그러한 시스템이 적절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장 감시를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제3자 강제시험을 포함하여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요건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갈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 6 조

예외 및 긴급조치

1. 이 부속서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특정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대한 제3자 강제시험 또는 인증에 대한 요건을 도입하거나, 시험 성적서를 승인하거나 검토하는 행정적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와 관련된 긴급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할 것

나.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의 도입 이유가 해당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실증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의해 지지될 것

다.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그 당사자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할 것, 그리고

라. 그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시에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를 도입할 필요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을 것

요건이나 절차를 도입하기 전에,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후에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를 고안함에 있어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한다. 도입된 모든 요건은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이 부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일단 채택되면, 도입된 모든 요건이나 절

차는 채택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검토되고 이를 도입한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폐지된다.

2. 특히 제품에 적용가능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어느 적용대상 제품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당사자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제품을 자신의 시장에서 회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일시적인 긴급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된 설명과 함께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이 다음 어느 사항에 기인하는지를 적시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 가. 적용가능한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
- 나.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부정확하게 적용한 것, 또는
- 다. 표준 또는 기술규정 그 자체의 결함

제 7 조

이행 및 협력

1. 양 당사자는 무선주파수 기기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규제문제에 관하여 공통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 부속서의 이행과 관련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요청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는 그들간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인 약정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3. 대한민국이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보증으로서 이 부속서 제3조나호3)목 및 제4조제2항나호에 규정된 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은 그 제품에 대한 자신의 기술규정이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자신의 인증기관이 유럽공동체내의 시험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IECEE CB Scheme 하의 국가인증기관이 되도록 보장한다. 이 항은 이 부속

서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된다.

4.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대한 기존 기술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술규정을 개발할 때에,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한 추가적 정보나 다른 쪽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공하며, 적절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것과 적절한 경우 국제표준의 증진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적용대상 제품의 무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6.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획득된 모든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부록 2-나-1

1. 부속서 2-나는 부속서 2-나 제1조제2항에 기재된 다음의 제품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가. 유럽공동체의 의무의 경우, 이 협정의 서명일에, 특정 전압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전기기기와 관련된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95/EC(성문판), 또는 전자파적합성에 관련된 회원국 법률의 근접화에 관한 것으로서 지침 89/336/EEC를 폐기하는 2004년 12월 1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4/108/EC, 또는 무선기기 및 전기통신 단말기기와 그 적합성 상호인정에 관한 1999년 3월 9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1999/5/EC(성문판)의 안전 또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의무의 경우, 이 협정의 서명일에, 전파법(법률 제8867호, 2008.2.29.),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8974호, 2008.3.21.)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법률 제7747호, 2008.2.29.)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것¹⁾

2. 양 당사자는, 부속서 2-나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부록에 기재된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이 전자제품 전체를 포함할 의도임을 양해한다. 어느 제품이 어느 한 쪽 당사자에 대하여 부속서 2-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나, 이 협정의 서명시 또는 그 이후에²⁾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제3자 강제인증 대상이 되나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제품에 건강과 안전의 보호에 필요할 수 있는 유사한 대우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 그 조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통보하고 협

1) 이 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필요한 때에 직류로 작동하는 전자기기를 이 조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예를 들어 부속서 2-나 제6조에 따른 것이거나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지침 2004/108/EC 제1.4조에 따라 특정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의를 위한 3개월의 기간을 제공한다.

부록 2-나-2

1. 유럽공동체는 모든 적용대상 제품에 대하여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으로서 부속서 2-나 제3조나호1)목에 규정된 절차를 수용한다.

2. 대한민국은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으로서 다음을 수용한다.

가. 이 협정의 서명일에 *전파법*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 1) 부속서 2-나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동안, 부속서 2-나의 제4조제2항가호에 정의된 절차, 그리고
- 2) 경과기간 후에는 부속서 2-나 제3조나호1)목 또는 제3조나호2)목에 정의된 절차. 두 가지 절차 중 선택은 대한민국이 한다.

나. 이 협정의 서명일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 1) 부속서 2-나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동안, 부속서 2-나 제4조제2항나호에 정의된 절차, 그리고
- 2) 경과기간 후에는 부속서 2-나 제3조나호1)목, 제3조나호2)목 또는 제3조나호3)목에 정의된 절차. 세 가지 절차 중 선택은 대한민국이 한다.

3. 이 협정 서명일에 이 부록 제2항에 언급된 둘 이상의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공급자는 이 부록 제2항의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택한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제공할 자유가 있다. 어떤 제품이 향후 이 부록 제2항에 언급된 둘 이상의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에 관련된 것이든 안전에 관련된 것이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부록 2-나-3

번 호	제 품	HS 코드
1	케이블 및 코드세트	854442, 854449, 854459, 854460
2	스위치	853590, 853650
3	전기기기보호용 차단기	853521, 853529, 853620, 853630, 853650
4	전자개폐기	853650
5	커패시터 및 노이즈필터	853210, 853221, 853222, 853223, 853224, 853225, 853229, 853230, 853540
6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853650, 853669
7	퓨즈 및 퓨즈홀더, 온도 퓨즈	853510, 853610, 853630
8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850421, 850422, 850431, 850432, 850433, 850434, 850440
9	전기청소기, 바닥청소기, 스팀청소기, 표면세척기	842430, 850811, 850819, 850860
10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851640, 845130
11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842211, 842219, 842220, 845140, 842240
12	주방용전열기구	841989, 841990, 851410, 851650, 851660, 851672
13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842112, 845011, 845012, 845019, 845020
14	모발관리기	851631, 851632
15	보온 플레이트 및 전기 보온기	851660, 851679, 851680
16	주방용전동기기	821490, 843510, 846722, 850940, 850980
17	전기액체가열기기	841981, 841989, 851660, 851671, 851679, 851680
18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630110
19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392210, 630110, 851680
20	전기온수기 및 순간온수기	851610, 851660, 851679, 851680
21	전기냉장 및 냉동기기	841490, 841581, 841582, 841810, 841821, 841829, 841830, 841840, 841850, 841869, 841899
22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851650
23	가정용 재봉기	845210, 845229

번 호	제 품	HS 코드
24	배터리충전기	850440
25	전기건조기	845121, 851629, 851679, 845129, 851632, 851633
26	전열기구	851610, 851621, 851629, 851679, 851680, 940210
27	마사지기	901910
28	냉방기 및 제습기	841510, 841581, 841582, 841583
29	펌프 및 유체펌프	841350, 841360, 841370, 841381, 841810, 961610
30	전기가열기기	841989, 841990, 842240, 842290, 851511, 851519, 851521, 851580
31	전기사우나기기	851629, 851679
32	관상어용 수조히터,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841350, 841360, 841370, 841381, 841480, 842139, 851629, 851660
33	전기기포발생기	841480, 842139
34	전격살충기	851660, 851679, 851680
35	전기욕조	392210, 392290, 691010, 691090
36	공기청정기	841410, 841430, 841451, 841459, 841480
37	자동판매기(전열장치, 냉각장치, 방전등 또는 액체수납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는 것)	847621, 847629, 847681, 847689
38	전기팬, 레인지후드	630319, 841410, 841451, 841459, 841460, 841480, 841490, 841510, 854089
39	화장실용 전기기기, 오물 흡입기	392290, 850819
40	가습기	851580
41	전기분무기	961610
42	전기소독기(살균 램프가 장착된 것)	841989
43	음식물처리기	850980
44	물수건 포장기기	820890, 842240
45	전동공구	820750, 843311, 843319, 843320, 846711, 846719, 846721, 846722, 846781, 846789, 850980
46	복사기	844331
47	직류전원공급장치(교류전원을 사용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	850440
48	무정전전원장치	850440
49	라미네이터	847989

번 호	제 품	HS 코드
50	램프홀더	853661, 853669
51	일반조명기구(일반적으로 조명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940510, 940520, 940540, 940560, 940591, 940592, 940599
52	안정기(램프, 제어장치)	850410, 853661, 853669,
53	안정기내장형 램프	853990

부록 2-나-4

부속서 2-나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¹⁾가 적용된다.

전기기기의 안전이란 기기가 안전 문제에서 모범 엔지니어링 관행에 따라 구축되어, 만들어진 용도로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되어 사용되는 경우, 인간, 가축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자파적합성이란 전자파 환경에서 어떤 것에도 허용치를 넘는 전자파적 장애를 유발함이 없이 그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기능하는 기기 또는 시스템의 능력을 말한다.

적합성 선언이란 검토 후 결정에 근거하여, 특정 요건의 충족이 증명되었다는 진술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이란 제품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제품,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

기술규정이란 적용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하여, 제품의 특성 또는 관련된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규정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제품,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제조자, 또는 수입 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수입 당사자의 영역 내에 제조자 및 대리인이 모두 없

1) ISO/IEC 17000:2004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근거함.

는 경우, 공급자 선언을 제시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

적합성 평가란 제품, 공정, 시스템, 인 또는 기관과 관련된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적합성 평가는 제1자, 제2자 또는 제3자 활동으로 수행될 수 있고 시험, 검사 및 인증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시험소란 시험 서비스를 수행하고 이러한 특정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공식 증명을 알리는 증명서를 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을 말한다.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 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성장, 고용 및 무역에 대하여 자동차 및 부품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공유된 목적과 원칙을 확인한다.

- 가. 이 협정에 따라 양자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완전한 상호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
- 나. 국제표준에 기초한 규정의 양립성을 증진하는 것
- 다. 개방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한 경쟁적인 시장 조건을 수립하는 것
- 라. 인간 건강, 안전 및 환경의 보호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 마. 지속적이고 상호 유익한 무역 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것

2. 이 부속서는 부록 2-다-1에 규정된 그러한 제품을 제외하고 HS 제40류, 제84류, 제85류, 제87류 및 제94류에 해당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 및 그 부품에 적용된다.

제 2 조 규제 수립

1. 양 당사자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이하 “UN ECE”라 한다)의 틀 내에서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이하 “WP.29”라 한다)이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관련 국제표준제정기관임을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WP.29에서의 규정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 하며, WP.29에 의한 새로운 규정을 과도한 지체 없이 채택하도록 협력한다.

제 3 조 시장접근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서 하는 제품을 이 조에 따라 자신의 시장에 허용한다.

- 가. 1) 유럽공동체의 권한있는 승인당국은 유럽공동체 형식승인의 목적상 부록 2-다-2의 표1에 기재된 요건을 준수하는 제품을 적용가능한 유럽공동체 기술규정의 상응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¹⁾
- 2) 대한민국은 부록 2-다-3의 표1에 기재된 요건을 준수하는 제품을 적용가능한 대한민국 기술규정의 상응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¹⁾
- 3) 양 당사자는,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는 부록 2-다-2의 표2,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부록 2-다-3의 표2에 기재된 규정을 상응하는 UN ECE 규정 또는 세계기술규정(이하 “GTR”이라 한다)에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이내에 조화시킨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특정 UN ECE 규정 또는 GTR이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의 달성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할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²⁾ 그리고
- 4) 가호1)목 또는 가호2)목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기술규정에 대해, 또는 어떠한 조화도 있지 아니하는 동안 가호3)목의

1) 제3조가호1)목 부터 제3조가호3)목까지의 적용 목적상 그리고 적용가능한 규정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제품의 분류는 수입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분류이다.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 당시에 존재하는 가호3)목 및 가호4)목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정이 심각한 시장접근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조항에 따라 이 규정이 서명당시의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시장접근 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양해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기술규정에 대해, 무역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에서 시장접근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부과하려는 당사자는 관련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의도된 결정의 근거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²⁾

- 나.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시판을 위하여 각자의 절차가 과도한 지체 없이 완수되도록 보장한다.
- 다. 각 당사자는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취해진 결정과 그러한 결정의 근거 및 이용가능한 법적 구제조치에 관한 정보를 해당 경제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 라. 양 당사자는 국제적으로 또는 양 당사자 내에서 일어났을 수 있는 규제발전을 고려하여 이 조의 가호에 규정된 제품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3년보다 짧지 아니한 기간마다 이 부속서의 부록 2-다-2 및 2-다-3을 검토한다. 이 부록에 대한 수정은 무역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 4 조

규제 수렴의 강화

- 1. 양 당사자는,
 - 가. 언제라도 UN ECE 규정 또는 GTR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나 그러한 규정의 완성이 임박한 분야, 특히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는 부록 2-다-2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부록 2-다-3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UN ECE 규정 또는 GTR과 다른 새로운 국내 기술규정의 도입을 자제한다. 그리고
 - 나. 기존 국내 기술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새로운 UN ECE 규정 또는 GTR이 UN ECE에 의해 채택된 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UN ECE 규정 또는 GTR을 준수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제품을 이 부속서 제3조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대우한다.

다만, 특정 UN ECE 규정 또는 GTR이 도로 안전이나 환경 또는 공중건강의 보호를 보장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지에 대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한 실증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그러한 이유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공표된다.

2. 당사자가 기존 UN ECE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그러한 UN ECE 규정과 다른 기술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한, 그 당사자는 그 관련 기술규정을 부과하는 이유가 계속 유효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발효로부터 3년보다 짧지 아니한 기간마다 이 기술규정을 검토한다. 이 검토 결과와 그 검토 결과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는 공표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3. UN ECE 규정 또는 GTR이 없고 최소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기술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분야에서, 양 당사자는 그러한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제표준의 개발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다. 그러한 국제표준의 개발이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리고 양 당사자가 그러한 분야에서 국내 기술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규정을 근접화할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약속한다.

제 5 조

최혜국 대우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에 관한 내국세와 배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이 원산지인 동종 제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제품에 부여한다.

제 6 조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의 제품

1. 어떠한 당사자도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이 아직 규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거절하거나 시장에서 이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한 때에, 다른 쪽 당사자와 해당 경제 운영자에게 이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이 통보는 모든 관련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다.

제 7 조

무역을 제한하는 그 밖의 조치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특정적인 그 밖의 규제조치를 통하여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시장접근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는 도로 안전, 환경 또는 공중 건강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제 8 조

규정의 적용

1. 당사자가 이 부속서 제3조와 합치되게 UN ECE 요건의 준수 또는 이와
의 조화를 수용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UN ECE 형식승인서는
적합성의 추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형식승인서의 적용대
상이 되는 어떤 제품이 승인된 형식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알린다. 이 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
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양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자의 권한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자기 인증한 것을 포함한
제품이 적절한 경우 다음을 준수하는 지를 자신의 국내법령에 따라 무작위
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

가. 그 당사자의 모든 기술규정, 또는

나. 이 부속서 제3조가호에서 규정된 국내기술규정 및 그 밖의 요건

각 당사자는 제품이 경우에 따라 그러한 규정 또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
니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생산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관련 절차가 준수되
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당 제품이 적절한 경우 다음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
우, 형식승인은 거절될 수 있다.

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모든 기술규정, 또는

나. 이 부속서 제3조가호에서 규정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기술규정
및 그 밖의 요건

4. 이 부속서 제3조가호에 언급된 기술규정 또는 요건을 준수함에도 불
구하고,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도로 안전, 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긴급하고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급자에 대해 자신의 시장에서 제품의 출시를 거부하거나 그 제
품을 자신의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거부나 다른 쪽
당사자의 제품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

성하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일시적 긴급조치는 시행되기 전에 그 조치의 동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른 쪽 당사자와 공급자에게 통보된다.

제 9 조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1. 자동차 및 부품의 무역을 보다 촉진하고 시장접근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양 당사자는 제4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서로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모든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 및 질문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서면으로 응답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찾기 위해 그러한 조치에 대해 협의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은 이 부속서의 효과적 이행을 담당하고, 이 부속서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작업반은 다음을 담당한다.

가. 이 부속서 제2조에 맞게 WP.29 작업에 대해 양 당사자의 협력을 준비하는 것

나. 다음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 제3조에 규정된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감독하는 것

1) 제3조가호3)목에 규정된 조화 과정의 이행에 대한 진전을 논의하는 것

2) 제3조가호4)목에 상정된 협의를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3) 제3조라호에 규정된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마련하는 것

다. 이 부속서 제4조제2항에 기술된 검토를 논의하고 이 부속서 제4

조제3항에 규정된 협의를 개최하는 것

라. 적절한 경우 이 부속서 제6조 및 제8조에 상정된 통보를 논의하는 것

마. 다른 경로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한 기술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권고하는 것, 그리고

바. 적절한 경우 부록 2-다-3의 표1에 규정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OBD”라 한다)와 배출에 대한 경과 조치의 실제 이행에 관한 모든 사안

3. 작업반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최소 1년에 한번 회합한다. 그 회합은 통상적으로 WP.29의 회합 또는 자동차 문제를 다루는 그 밖의 논의의 장과 연계하여 개최된다. 작업반은 또한 전자우편, 전화회의나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0 조 준 수

1. 제14장(분쟁해결)은 다음의 수정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에 적용된다.

가. 이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긴급 사안으로 간주된다.

나. 제14.3조(협약)에 따른 협약에 예견된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다. 제14.6조(패널 잠정보고서)에 따른 패널 잠정보고서의 제출에 예견된 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라. 제14.7조(중재패널판정)에 따른 중재패널판정의 제출을 위하여 예견된 기간은 120일에서 75일로 단축된다. 그리고

마. 다음 문장이 제14.9조(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소 당사자는 중재패널판정을 지체 없이 준수한다. 즉시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면, 피소 당사자가 준

수를 위해 입법행위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채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합리적 기간은 통상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패널 판정 제출 후 1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의 특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부록 2-다-1

이 부속서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트랙터(HS 8701.10, 8701.20, 8709.11, 8709.19 및 8709.90에 포함)

나. 설상차와 골프카트(HS 8703.10에 포함), 그리고

다. 건설기계(HS: 84134000, 84251100, 84251920, 84251980, 84253100, 84253930, 84253990, 84254100, 84254200, 84254900, 84261100, 84261200, 84261900, 84262000, 84263000, 84264100, 84264900, 84269110, 84269190, 84269900, 84272010, 84272090, 84281020, 84281080, 84282030, 84282091, 84282098, 84283100, 84283200, 84283300, 84283920, 84283990, 84284000, 84286000, 84289030, 84289071, 84289079, 84289091, 84289095, 84291100, 84291900, 84292000, 84293000, 84294010, 84294030, 84294090, 84295110, 84295191, 84295199, 84295210, 84295290, 84295900, 84301000, 84302000, 84303100, 84303900, 84304100, 84304900, 84305000, 84306100, 84306900, 84311000, 84313100, 84313910, 84313970, 84314100, 84314200, 84314300, 84314920, 84314980, 84741000, 84742010, 84742090, 84743100, 84743200, 84743910, 84743990, 84748010, 84748090, 84749010, 84749090, 84791000, 87013010, 87013090, 87041010, 87041090, 87051000, 87052000, 87054000 그리고 87059030)

부록 2-다-2

표 1

부속서 2-다 제3조가호1)목에 언급된 목록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유럽공동체 기술규정
소음허용기준	UN ECE 규정 51	지침 70/157/EEC
교체용 소음기 시스템	UN ECE 규정 59	지침 70/157/EEC
배출가스	UN ECE 규정 83	지침 70/220/EEC
교체용 배기가스 정화장치	UN ECE 규정 103	지침 70/220/EEC
연료탱크	UN ECE 규정 34	지침 70/221/EEC
액화석유가스 탱크	UN ECE 규정 67	지침 70/221/EEC
압축천연가스 탱크	UN ECE 규정 110	지침 70/221/EEC
후부안전판	UN ECE 규정 58	지침 70/221/EEC
조향장치	UN ECE 규정 79	지침 70/311/EEC
문열림방지장치	UN ECE 규정 11	지침 70/387/EEC
경음기	UN ECE 규정 28	지침 70/388/EEC
후사경	UN ECE 규정 46	지침 2003/97/EC
제동장치	UN ECE 규정 13	지침 71/320/EEC
승용차 제동장치	UN ECE 규정 13H	지침 71/320/EEC
교체용 브레이크 라이닝	UN ECE 규정 90	지침 71/320/EEC
전자파 적합성	UN ECE 규정 10	지침 72/245/EEC
디젤자동차 매연	UN ECE 규정 24	지침 72/306/EEC
차실내부 충격 흡수	UN ECE 규정 21	지침 74/60/EEC
도난방지장치	UN ECE 규정 18	지침 74/61/EEC
도난방지장치 및 이모빌라이저	UN ECE 규정 116	지침 74/61/EEC
경보장치	UN ECE 규정 97 UN ECE 규정 116	지침 74/61/EEC
조향핸들 후방이동 및 충격흡수	UN ECE 규정 12	지침 74/297/EEC
좌석강도	UN ECE 규정 17	지침 74/408/EEC
좌석강도(승합자동차)	UN ECE 규정 80	지침 74/408/EEC
외부돌출물	UN ECE 규정 26	지침 74/483/EEC
속도계	UN ECE 규정 39	지침 75/443/EEC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유럽공동체 기술규정
좌석안전띠부착장치	UN ECE 규정 14	지침 76/115/EEC
등화장치 설치	UN ECE 규정 48	지침 76/756/EEC
후부반사기	UN ECE 규정 3	지침 76/757/EEC
차폭등/표시등/제동등	UN ECE 규정 7	지침 76/758/EEC
주간전조등	UN ECE 규정 87	지침 76/758/EEC
측면표시등	UN ECE 규정 91	지침 76/758/EEC
방향지시등	UN ECE 규정 6	지침 76/759/EEC
번호등	UN ECE 규정 4	지침 76/760/EEC
전조등(R2 및 HS1)	UN ECE 규정 1	지침 76/761/EEC
밀봉식 전조등	UN ECE 규정 5	지침 76/761/EEC
전조등(H1, H2, H3, HB3, HB4, H7, 및/또는 H8, H9, HIR1, HIR2 및/또는 H11)	UN ECE 규정 8	지침 76/761/EEC
전조등(H4)	UN ECE 규정 20	지침 76/761/EEC
밀봉식 할로겐 전조등	UN ECE 규정 31	지침 76/761/EEC
필라멘트식 등화장치	UN ECE 규정 37	지침 76/761/EEC
가스방전식 전조등	UN ECE 규정 98	지침 76/761/EEC
가스방전식 전조등 전구	UN ECE 규정 99	지침 76/761/EEC
비대칭형 전조등	UN ECE 규정 112	지침 76/761/EEC
조명가변형 전조등	UN ECE 규정 123	지침 76/761/EEC
앞면안개등	UN ECE 규정 19	지침 76/762/EC
뒷면안개등	UN ECE 규정 38	지침 77/538/EC
후퇴등	UN ECE 규정 23	지침 77/539/EC
주차등	UN ECE 규정 77	지침 77/540/EC
좌석안전띠	UN ECE 규정 16	지침 77/541/EC
어린이보호용 좌석	UN ECE 규정 44	지침 77/541/EC
전방시계범위	UN ECE 규정 125	지침 77/649/EC
지시표시장치	UN ECE 규정 121	지침 78/316/EEC
난방장치	UN ECE 규정 122	지침 2001/56/EC
머리지지대(좌석부착)	UN ECE 규정 17	지침 78/932/EEC
머리지지대	UN ECE 규정 25	지침 78/932/EEC
연료소비율	UN ECE 규정 101	지침 80/1268/EEC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유럽공동체 기술규정
원동기출력	UN ECE 규정 85	지침 80/1269/EEC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UN ECE 규정 49	지침 2005/55/EC
측면보호대	UN ECE 규정 73	지침 89/297/EEC
창유리	UN ECE 규정 43	지침 92/22/EEC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타이어	UN ECE 규정 30	지침 92/23/EEC
상용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타이어	UN ECE 규정 54	지침 92/23/EEC
예비타이어	UN ECE 규정 64	지침 92/23/EEC
타이어 타행 소음	UN ECE 규정 117	지침 92/23/EEC
최고속도제한장치	UN ECE 규정 89	지침 92/24/EEC
연결장치	UN ECE 규정 55	지침 94/20/EC
커플링 디바이스	UN ECE 규정 102	지침 94/20/EC
차실내장재 연소성	UN ECE 규정 118	지침 95/28/EC
승합자동차	UN ECE 규정 107	지침 2001/85/EC
승합자동차 차체강도	UN ECE 규정 66	지침 2001/85/EC
정면충돌	UN ECE 규정 94	지침 96/79/EC
측면충돌	UN ECE 규정 95	지침 96/27/EC
위험물 운반차량	UN ECE 규정 105	지침 98/91/EC
앞면 안전판	UN ECE 규정 93	지침 2000/40/EC

표 2

부속서 2-다 제3조가호3)목에 언급된 목록

대 상	유럽공동체 기술규정	상응하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 규정
상용자동차 외부돌출물	지침 92/114/EEC	61

부록 2-다-3

표 1

부속서 2-다 제3조가호2)목에 언급된 목록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충돌시 승객보호	정면	UN ECE 규정 94	자동차안전기준 ¹⁾ 에 관한 규칙 제102조
	측면	UN ECE 규정 95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UN ECE 규정 1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2호
조향장치 충격흡수		UN ECE 규정 1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1호
좌석 및 그 잠금장치		UN ECE 규정 1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
머리지지대 강도		UN ECE 규정 17, UN ECE 규정 25, GTR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99조
문열림방지장치		UN ECE 규정 11, GTR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제2항
계기판넬 충격흡수		UN ECE 규정 2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좌석 등받이 충격흡수		UN ECE 규정 2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팔걸이 충격흡수		UN ECE 규정 2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햇빛가리개 충격흡수		UN ECE 규정 2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UN ECE 규정 46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견인장치		77/389/EEC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호, 제2호, 제4호
후부안전판 강도		UN ECE 규정 5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 제96조

1)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등화장치	설치기준	UN ECE 규정 4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전조등	UN ECE 규정 1, 2, 5, 8, 20, 31, 37, UN ECE 규정 98, 99, 112, 113, 12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48조제3항, 제106조제1호
	앞면안개등	UN ECE 규정 1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제1항, 제106조제2호
	후퇴등	UN ECE 규정 2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06조제3호
	차폭등	UN ECE 규정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06조제4호
	번호등	UN ECE 규정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06조제5호
	후미등	UN ECE 규정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06조제6호
	제동등	UN ECE 규정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제106조제7호
	보조제동등	UN ECE 규정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 제3항, 제106조제8호
	방향지시등	UN ECE 규정 6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06조제9호
	보조방향지시등	UN ECE 규정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06조제10호
	뒷면안개등	UN ECE 규정 3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제2항, 제106조제2호
	후부 반사지 또는 반사판	UN ECE 규정 70, UN ECE 규정 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제2항, 제107조
운전자의 시계범위		UN ECE 규정 46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94조
원동기 출력		UN ECE 규정 85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제111조
시계 확보장치	창닫이기	78/318/EEC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2항, 제109조제1호
	서리제거장치	78/317/EEC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제2호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안개제거장치	78/317/EEC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제3호
	세정액분사장치	78/318/EEC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제4호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UN ECE 규정 13H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0조제1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UN ECE 규정 1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0조제2호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UN ECE 규정 1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0조제3호
바퀴잡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제동능력		UN ECE 규정 1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0조제4호
바퀴잡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UN ECE 규정 1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0조제5호
조향성능		UN ECE 규정 7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89조제2항
최고속도제한장치		UN ECE 규정 8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의2
속도계		UN ECE 규정 3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전자파 적합성		UN ECE 규정 10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
충돌시연료누출방지		UN ECE 규정 34, UN ECE 규정 94, UN ECE 규정 95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범퍼 충격흡수		UN ECE 규정 4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좌석안전띠 부착		UN ECE 규정 14, UN ECE 규정 16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103조제1항, 제2항, 제3항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UN ECE 규정 1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 제103조의2
자동차의 경적소음, 배기소음, 소음방지장치		UN ECE 규정 28 UN ECE 규정 5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5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3륜이상 이륜자동차의 가속 주행 소음 제외)		UN ECE 규정 40, UN ECE 규정 41, UN ECE 규정 47 지침 2002/51/EC, 2003/77/EC, 97/24/EC 5장 및 9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2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OBD 포함)	3.5톤 미만 차량	UN ECE 규정 83, UN ECE 규정 24 규정(EC) 692/2008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 62조
	3.5톤 초과 차량	UN ECE 규정 49 규정(EC) 692/2008	
타이어	UN ECE 규정 30, 54, 75, 106, 117, 108, 10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20조, 21조), 시행규칙 제2조 2항 및 제19조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Euro 6 OBD를 준수하는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 저배출차량 및 초저배출차량 OBD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의 OBD 및 배출에 관한 경과조치

1. OBD

2013년말까지, 또는 Euro 6 OBD의 도입이 더 빠른 경우 Euro 6 OBD의 도입시까지,

가. 200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Euro OBD를 장착한 자동차의 판매가 800대를 초과한 유럽연합의 각 자동차 제작사는²⁾ Euro 5 OBD를 장착한 다음 대수의 자동차를 연도 및 브랜드별로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2010년: 1,200, 2011년: 1,500, 2012년: 1,800 그리고 2013년: 1,800

나. 2005년부터 2008년 동안 Euro OBD를 장착한 자동차의 총 판매가 연간 평균 750대를 초과한 유럽연합의 각 자동차 제작사는 Euro 5 OBD를 장착한 1천대의 자동차를 연도 및 브랜드별로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다. 위의 가호 또는 나호의 적용대상이 아닌 그 밖의 유럽연합의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1,500대의 총 상한 내에서 Euro 5 OBD를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이 수량은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에 의하여 결정될 원칙에 따라 그러한 제작사간에 분배될 것이다.

2. 배출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연간 10,000대 이하의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시에 제작사의 개념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행은 이 항의 이행에 있어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 새로운 조치³⁾가 적용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차량을 연간 250대 이하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 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의 연간 평균배출량이 0.047g/k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배출 요건을 준수한다.

나.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차량을 연간 4,000대 이하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의 연간 평균배출량이 0.039g/k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배출 요건을 준수한다. 그리고

다.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차량을 연간 10,000대 이하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의 연간 평균배출량이 0.030g/k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배출 요건을 준수한다.

3. 경과조치의 적용⁴⁾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부터 OBD 및 배출에 관한 이러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도록 한다.

3)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새로운 조치가 도입될 것임을 양해한다.

4) 이 협정이 2010년에 발효할 것이라는 상호 양해 하에, 대한민국은 Euro 5 OBD를 장착한 자동차의 시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표 2

이 부속서 제3조가호3)목에 언급된 목록

대 상	대한민국 기술규정	상응하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 규정
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107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07
주행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30, 54
조종장치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121
차대 및 차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58, 7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호 및 제5호	55
도난방지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18
승차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107
운전자의 좌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107
승객좌석의 규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107
좌석안전띠장치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16
입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107
승강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107
비상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107
통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107
창유리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43, GTR 6
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48

대 상	대한민국 기술규정	상응하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 규정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39
소화설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36
주행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75
제동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78, GTR 3
전조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53, 56, 57, 72, 74, 76, 82
번호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50, 53
후미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	50, 53
제동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50, 53
방향지시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50, 53
후부반사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3, 53
후사경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81
속도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39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 1 조

일반규정

각 당사자의 보건의료 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자는 그들 인구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한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다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들이 공유하는 원칙을 확인한다.

- 가.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면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접근
- 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접근을 위한 건전한 경제적 유인과 경쟁적인 시장
- 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와 개발에 있어 학술적이고 상업적인 연구와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부 지원, 지적재산 보호, 그리고 혁신을 위한 그 밖의 유인
- 라.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에 대한 높은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을 저해함이 없이,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절차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혁신과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비용부담 가능한 접근의 촉진
- 마.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고 비차별적인 보건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자 및 공급자와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윤리적 관행, 그리고
- 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규제사안에서,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이하 “세계보건기구”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경제협력개발기구”라 한다), 의약품

에 대해서는 의약품규제조화국제회의(이하 “의약품규제조화국제회의”라 한다)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국제정합화기구(이하 “의료기기국제정합화기구”라 한다)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국제적 관행 개발에서 양 당사자 간 협력

제 2 조 혁신에의 접근

당사자내의 보건의료 당국이 자신이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등재, 급여자격이 있는 적응증, 또는 급여액의 설정이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¹⁾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한도에서, 그 당사자는

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등재, 급여를 위한 적응증, 급여액의 설정, 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등재, 가격산정 및/또는 급여와 관련된 조치에 적용되는 절차, 규칙, 기준 및 이행지침이 공평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하도록 보장한다.²⁾ 그리고 나. 적절한 규제 당국이 안전하고 유효하며 양질인 것으로 승인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산정 및 급여에 관한 보건 당국의 결정이 공공기관 또는 준 공공기관의 관여에 근거한 경우, 그 결정은 다음이 되도록 보장한다.

- 1)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그 당사자가 제공하는 가격산정액과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한다.
- 2)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급여액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그 비교제품에 제공된 것보다 증가된 가격산정액과 급여액을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혜택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1) 이 부속서에서 가격산정에 대한 언급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법령 하에서 적용가능한 경우에만 관련된다.

2) 양 당사자는, 주어진 가격으로 제품에 대해 급여토록 하는 의무를 창설하거나 약가 협상에 있어 특정 결과를 예단하지 아니하는 이 호에 따라, 급여 및 가격 산정에 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지침, 공고, 또는 “고려 사항” 등의 형태를 띌 수 있는)이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양해한다.

- 3)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가격산정/급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제조자가 그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혜택에 관하여 제출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그 제품에 대하여 증가된 급여액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 4)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그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혜택에 관하여 제출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그 제품의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가격산정액 및 급여액과 가격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 5)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화를 포함한 특정한 상황에서 외부적 원인으로 당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액/급여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조정이 채택되기 전에 그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3 조 투 명 성

1. 각 당사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자신의 법, 규정, 절차, 행정 판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행지침(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조기 단계에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가. 자신이 채택하거나 중대하게 수정하고자 제안하는 그러한 모든 규칙을, 그 규칙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공중이 접근가능한 관련 장소에 사전에 공표한다.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러한 모든 제안된 규칙에 대하여 특히 협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면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자신이 그러한 제안된 규칙을 채택하는 시점보다 늦지 아니하게, 의견 제출기간 동안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에서 제기된 중대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서면으로 처리하고, 그러한 제안된 규칙에 대해 이루어진 실질적인 수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3.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한 그러한 모든 규칙의 공표와 발효 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4. 각 당사자의 보건의료 당국이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따라 가격산정 및 급여의 개정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등재, 급여 자격이 있는 적응증, 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한도에서, 그 당사자는

가. 급여를 위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또는 승인에 대한 모든 공식 요청 및 신청에 대한 결정이 접수일부터 합리적이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채택되고 전달되도록 보장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가 부적절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로 그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어떠한 상세한 추가 정보가 요구되는지를 통보하고 이 추가 정보가 접수되면 원래 결정 과정을 재개한다.

나. 모든 절차, 방식, 원칙, 비교제품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기준, 그리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급여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지침을 합리적이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공개한다.

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한 시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기회를 신청자에게 부여한다.

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권고 또는 결정

에서 원용된 모든 전문가 의견 또는 학술 연구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권고 또는 결정의 근거에 관한 의미 있고 상세한 서면 정보를 신청자에게 합리적이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등재, 가격 및/또는 급여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결정기관이 요구된 가격 인상을 전부 또는 일부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의사결정기관은 적용된 기준과, 적절한 경우, 그 결정이 근거한 모든 전문가 의견이나 권고를 포함하여, 그 결정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한 이유에 대한 진술을 제공한다.

마. 권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발동될 수 있는 사법적, 준사법적 또는 행정적 심판이나 독립적인 검토 절차³⁾가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가격 및 급여에 대한 결정을 전달하는 시점에,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신청자가 갖는 권리와 그러한 구제를 구하기 위한 절차 및 기간을 그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바. 급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기관이 혁신적 및 복제 의약품회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게 개방되도록 한다.

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이나 급여에 관련된 중앙 기관의 목록을 공개한다. 그리고

아. 정당한 상업적 이해를 가진 이해당사자를 위해 연도별로 발행되는 각각의 공공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선별등재목록을 포함하여 가격산정 및 급여에 관한 각 당사자의 국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급여제외목록은, 있을 경우, 매 6개월마다 공표된다.

5. 각 당사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일관되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이 호에서 규정한 것에 더하여, 신청자는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결정에 대해 진정한 사법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조

윤리적 영업 관행

1. 각 당사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 및 공급자가 보건의료 프로그램상에서 급여 자격이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등재, 구매 또는 처방을 위하여 보건의료 전문가나 기관을 부적절하게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이 제1항에 합치되게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 및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행한 모든 부적절한 유인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양 당사자는 1999년 2월 15일에 발효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상 그들의 의무를 상기한다.

제 5 조

규제 협력

1.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세계보건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의약품규제조화국제회의, 의료기기국제정합화기구 및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가 개발한 것을 포함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적 규정, 관행 및 지침을 고려할 것이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관련 국제기구에서 그들의 완전한 참여가 상호 간의 규제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적합성평가절차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비임상시험관리기준과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수행된 때, 그리고 양 당사자의 해당 관행이 국제 관행에 따르는 때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자신의 적합성 평

가4)를 수용해 달라는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3.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건의료 또는 그 밖의 사안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처 공무원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작업반은

가. 이 부속서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나. 이 부속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그리고

다. 이 부속서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한다.

5. 작업반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최소 1년에 한번 회합한다. 작업반은 또한 전자우편, 전화회의 또는 화상회의나 그 밖의 적절한 통신 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제 6 조 정 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의약품이란 의학적 진단,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또는 생리적 기능 또는 구조의 회복, 교정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복합제를 말한다. 의약품은, 예를 들어, 화학의약품, 생물학적제제(백신, (항)독소, 전혈, 혈액성분, 혈장분획제제), 생약제제, 방사성의약품, 재조합 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및 조직공학제품을 포함한다.

4) 의약품의 목적상, **적합성 평가**란 제품의 시판 허가, 그리고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기술적 표준/관행 준수의 감독/집행을 말한다.

의료기기란 질병의 진단, 예방, 모니터링, 치료 또는 경감과 같은 의료적 목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든지 조합하여 사용되든지, 사람에게 사용되도록 제조자가 의도한 모든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말한다⁵⁾. 의료기기는 그 제조자에 의하여 기기에 통합되고 기기의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당사자의 **보건의료 당국**이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그 당사자의 일부이거나 그 당사자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당사자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이란 이 부속서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보건의료 당국이 결정을 내리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조자란 각 당사자 영역 내에서 제품에 대한 법적인 권리 소유자를 지칭한다.

급여제외목록이란 당사자의 공공 보건의료 프로그램 하에서 처방 및/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목록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선별등재목록이란 당사자의 공공 보건의료 프로그램 하에서 처방 및/또는 급여될 수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열거적 목록으로 정의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는 제품을 각 당사자의 법령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중 하나로 분류하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는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대사적 수단을 통하여 인체에 의도된 주요 효과를 달성하지 아니하나 그 기능에 있어 그러한 수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속서 2-마

화학물질

1. 세계무역기구협정,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그들의 의무를 상기하고, 각자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및 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자는 다음의 공유된 목적과 원칙을 확인한다.

가. 개방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경쟁적인 시장 조건을 수립하는 것

나. 지속적이고 상호 유익한 무역 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것

다. 공중보건 및 환경의 높은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것

라. 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장려하고 동물 실험을 축소하는 것

마. 적절한 규제 메커니즘을 이행하고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

바.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이행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사.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우수 관행을 국제적으로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

2. 양 당사자는 제1항의 목적과 원칙에 근거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화학물질 분야에서 양 당사자의 법,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밖의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규제하고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제공하는 것

다. 법령의 채택 및 이행, 위험성 평가, 그리고 비밀 사업정보의 등록, 허가, 통보 및 처리에 관하여 우수 관행을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적용하는 것, 그리고

라.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접근의 국제적 조화를 추구할 목

적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더욱 조화된 접근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범 실험실 관행 및 실험지침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

3. 양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 효과를 갖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성실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4. 이 부속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제3항에 상정된 논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작업반이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다. 화학물질 작업반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언급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 2년에 한번 회합한다.

제 3 장 무역구제

제 1 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3.1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거나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이 절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수입 당사자는 다음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2) 제2.5조(관세 철폐)제2항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 3.2 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2항에 기술된 조사의 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쪽 당사자와 협의한다.

2.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제2항다호에 따라 자신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자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자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

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당사자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철폐)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3.3 조 잠정조치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자는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그 당사자는 제3.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3.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3.2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3.4 조 보 상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를 가지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해 상호 합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협의한다. 그 당사자는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상품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 실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5 조 정 의

이 절의 목적상,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양해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4조제1항 가호 및 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각 상품에 대하여 경우에 맞게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 2 절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3.6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당사자는, 어느 연도에 부속서 3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의 총 수입물량이 부속서 3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합치되게 그 상품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는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부속서 3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적용하는 관세는 부속서 3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정해진다.

4. 어떠한 당사자도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제3.1조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또는

다.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른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5. 당사자는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6.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은 제2.16조(상품무역 위원회)에 언급된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어떠한 당사자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부속서 3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나. 그 조치가 부속서 2-가(관세 철폐)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맺은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 중이던 해당 상품의 모든 공급은 그러한 모든 추가적인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 물량은 차기연도에서의 제1항의 발동 목적상 차기연도 동안 해당 상품의 수입 물량으로 계산될 수 있다.

제 3 절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3.7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

해진 조치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당사자가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당사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잠정적 결과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해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절대적 양 또는 가액 기준으로 측정하여 당사자가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수입된 상품의 상위 5대 공급자중 하나인 경우, 그 당사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간주된다.

4. 어떠한 당사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제3.1조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5. 어떠한 당사자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4 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 3.8 조

일반규정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6조,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 협정”이라 한다)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자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제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 협정 제6조제5항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조제4항을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최대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충분한 방어권을 고려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에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 영어의 사용이 양 당사자에 의해 수용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대한민국이 한국어 서면으로 된 명확화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목적상, 제출된 문서의 의미가 대한민국의 조사 당국에 의해 합리적으로 명확하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목적상, 그 요청이 합리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엄격하게 한정되는 경우

4. 조사행위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 동안 그들의 견해를 표시하기 위한 청문 기회가 부여된다.

제 3.9 조 통 보

1.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제공한다.

2.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자신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하는 회의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제 3.10 조 공공이익의 고려

양 당사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3.11 조 재심에 의한 종료 이후 조사

양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이면서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개시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가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12 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수입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 3.13 조 재심에 적용가능한 미소기준

1. 반덤핑 협정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대상이 된 조치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덤핑마진이 반덤핑 협정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종결된다.

2. 반덤핑 협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별 마진을 결정할 때, 대표적 수출 판매에 근거하여 덤핑마진이 반덤핑 협정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면, 어떠한 관세도 수출 당사자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3.14 조 최소부과원칙

당사자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세액은 덤핑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 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그 마

진 미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3.15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5 절 제도 규정

제 3.16 조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1.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은 무역구제 협력을 위한 대화의 포럼이다.

2. 작업반은 다음을 그 기능으로 한다.

- 가. 다른 쪽 당사자의 무역구제 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나.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 다.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자의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 라.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
- 마. 다음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

- 1)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 2)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과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의 관행, 그리고

바. 양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력하는 것

3. 작업반은 통상 연례적으로 회합하며, 필요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한민국 양허표

대상 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3.6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

2.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 신선, 냉장 그리고 냉동 쇠고기

HSK 세번 0201.10.0000, 0201.20.0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0000 그리고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9,900	10,098	10,299	10,505	10,716	10,9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30.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1,149	11,371	11,599	11,831	12,068	12,309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0.0	30.0	30.0	30.0	24.0	24.0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 (메트릭톤)	12,555	12,806	13,062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4.0	24.0	24.0	0		

나.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0203.19.1000 그리고 0203.1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163	166	169	172	176	179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15.8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 (메트릭톤)	183	187	190	194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4.6	13.5	12.4	11.3	0

다. 아래에 포함된 사과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0808.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7,500	7,650	7,803	7,959	8,118	8,28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5.0	45.0	45.0	45.0	45.0	33.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8,446	8,615	8,787	8,963	9,142	9,32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3.8	33.8	33.8	33.8	27	27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발동수준 (메트릭톤)	9,511	9,702	9,896	10,094	10,295	10,50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	27	27	22.5	22.5	22.5
이행년도	19	20	21	22	23	24
발동수준 (메트릭톤)	10,711	10,926	11,144	11,367	11,594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0

발동수준은 모든 종류의 수입 사과의 총량과 관련된다. 이행 11년차와 그 이후 이행 23년차까지 각 연도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라. 아래에 포함된 맥아 및 맥주맥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003.00.1000 그리고 1107.10.1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14,000	14,280	14,565	14,856	15,154	15,457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502.0	479.0	455.0	432.0	408.0	385.0
1107.10.0000	263.0	258.0	252.0	246.0	240.0	216.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5,766	16,081	16,403	16,731	17,065	17,407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361.0	338.0	315.0	291.0	268.0	244.0
1107.10.0000	207.0	199.0	190.0	181.0	139.0	127.0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 (메트릭톤)	17,755	18,110	18,472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221.0	197.0	174.0	0
1107.10.0000	115.0	103.0	91.5	0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록 2-가-1의 제12항을 참조할 것.

마. 아래에 포함된 감자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8.13.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7,900	38,658	39,431	40,219	41,024	41,84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55.0	436.0	426.0	416.0	406.0	366.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42,681	43,535	44,405	45,294	46,199	47,12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51.0	336.0	321.0	306.0	235.0	215.0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 (메트릭톤)	48,066	49,027	50,008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95.0	175.0	155.0	0		

바. 아래에 포함된 인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211.20.2210, 1211.20.2220, 1211.20.2290,
1302.19.1210, 1302.19.1220 그리고
1302.19.129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00	306	312	318	324	33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337	344	351	358	365	37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발동수준 (메트릭톤)	380	388	395	403	411	42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54.3	754.3	754.3	566.0	566.0	566.0
이행년도	19					
발동수준 (메트릭톤)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					

사. 아래에 포함된 설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701.99.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220	224	228	233	238	24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0	50.0	50.0	50.0	50.0	50.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247	252	257	262	268	27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0	50.0	50.0	50.0	50.0	50.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발동수준 (메트릭톤)	279	284	290	296	302	30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0	50.0	50.0	37.5	37.5	37.5
이행년도	19	20	21			
발동수준 (메트릭톤)	314	32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5	37.5	0			

아. 아래에 포함된 주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2207.10.901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95	96	98	100	102	10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64.0	258.0	253.0	247.0	241.0	217.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06	109	111	113	115	11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08.0	199.0	191.0	182.0	139.0	127.0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 (메트릭톤)	120	122	12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16.0	104.0	91.8	0		

자. 아래에 포함된 텍스트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그리고 3505.10.509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7,900	38,658	39,431	40,219	41,024	41,84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5.0	365.0	355.0	345.0	334.0	291.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42,681	43,535	44,405	45,294	46,199	47,12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5.0	260.0	244.0	228.0	152.0	131.0
이행년도	13					
발동수준 (메트릭톤)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록 2-가-1 제15항을 참조할 것.

3.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나. 이행 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다. 이행 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라. 이행 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마. 이행 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바. 이행 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사. 이행 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아. 이행 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자. 이행 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차. 이행 1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카. 이행 1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타. 이행 1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파. 이행 1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하. 이행 1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거. 이행 1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너. **이행 1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더. **이행 1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러. **이행 1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머. **이행 1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버. **이행 2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서. **이행 2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어. **이행 2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저. **이행 2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처. **이행 2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제 4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4.1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상의 서로에 대한 당사자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4.2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자 간의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정의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 또는
 -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 4.3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자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수평적 및 분야별 수준 모두에서 규제 대화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양자 협력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당사자의 기술규정의 질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정보, 경험 및 자료의 교환을 통한 규제 협력과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

나. 적절한 경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적절한 경우,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불필요한 차이를 피하고 기술요건의 수렴 또는 정합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라. 계량, 표준화, 시험, 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 당사자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 간 양자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

3.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 장의 조건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가 제시하는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4.4 조 기술규정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대로 모범 규제관행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로 하는데 동의한다. 특히, 양 당사자는 다음에 동의한다.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명시된 대로 양 당사자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한다.

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관련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기초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표준이 추구되는 목적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이유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다. 당사자가 기술규정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그 기술규정에 대한 목적, 법적근거 및 취지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정보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라. 기술규정에 관한 향상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공공 웹사이트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특히 당사자의 기술규정의 준수에 관한 서면 정보와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서면 지침을,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마. 기술규정 개발 과정의 일부가 공공 협의에 개방되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서면 응답을 제공한다.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통보 이후 최소 60일을 부여한다. 그리고

사.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가 적응하도록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며, 실행가능한 경우,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기술규정의 개발에 관한 모든 공식적 공공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자는 기술규정을 자신의 영역에 걸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대한민국이 유럽공동체 설립 조약과 양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령에 있어서의 편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역 문제를 유럽공동체 당사자에 통보하면, 그 유럽공동체 당사자는 시의적절하게 그 문제를 다루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제 4.5 조 표 준

1.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표준화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표준의 준비 및 채택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상의 당사자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이래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 G/TBT/1/Rev.8, 2002년 5월 23일, 제9부(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규정된 원칙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다.

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표준의 사용

나. 각자의 표준화 과정, 그리고 당사자의 국가 및 지역 표준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의 사용 정도, 그리고
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표준화에 관하여 이행한 협력 협정, 예를 들어 제3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표준화 문제에 관한 정보

제 4.6 조 적합성 평가 및 인정

1. 양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 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한 합의
- 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 다.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정부 지정
-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정
- 마. 각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 당사자의 수용

2. 특히 그러한 고려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다음을 약속한다.

- 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들 및 유사한 메커니즘에 관하여 당사자의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 나.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특히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적절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선택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다. 인정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정에 관한 국제표준과 예를 들어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 및 국제인정포럼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인정기관이 관여된 국제협정을 최대한 잘 이용하

는 방법을 고려한다. 그리고
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조제1항2호에 맞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엄격하지 아니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요구한다.

3.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고 투명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기술규정의 개발 및 채택에 관하여 설립한 원칙 및
절차는 강제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4.7 조

시장 감시

양 당사자는 시장 감시 및 집행 활동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
다.

제 4.8 조

적합성 평가 비용

양 당사자는, 수입상품의 강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수수료는 신청자와 적
합성 평가기관의 시설의 위치상의 차이로 인한 통신, 운송 및 그 밖의 비용
을 고려하여, 자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와의 관계에서 형평을 이루어
야 한다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조제2항5호상의 의무를 재
확인하고,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한
다.

제 4.9 조

표시 및 라벨부착

1. 양 당사자는 기술규정이 표시 또는 라벨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 1항의 규정을 주목하고, 당사자의 기술규정이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부착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2. 특히 양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상품의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부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에 동의한다.

가. 그 당사자는 그 상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부착 이외의 표시 또는 라벨부착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그 밖의 목적, 예를 들어 재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라벨부착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그 당사자는 라벨 또는 표시의 형식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관련 국내 규정에 비추어 라벨 또는 표시에 제공될 특정 정보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 그 당사자가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행한다.

라. 그 당사자는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수용한 국제명칭체계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상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

는 한, 다른 언어의 동시 사용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마. 그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이 이에 의해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거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부착하기 보다 동반 서류에 표시 또는 라벨부착을 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4.10 조 조정 메커니즘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조정자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 개선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다. 제4.3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규제 대화체의 설치를 준비하는 것

라. 양 당사자가 상호 동의할 경우 비정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작업반의 설치를 준비하는 것

마.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비정부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

리고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
을 검토하는 것

3. 조정자는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서로 연락한다.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1. 대한민국의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2. 유럽공동체의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유럽공동체가 지명하며 이 협정의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통보된다.

제 5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5.1 조 목 적

1. 이 장은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더 나아가, 이 장은 양 당사자의 축산업 여건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동물 복지 문제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5.3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의 제1항에 정의된 조치를 말한다.

제 5.4 조 권리 및 의무

양 당사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5.5 조 투명성 및 정보교환

양 당사자는

- 가. 무역에 적용가능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하여 투명성을 추구한다.
- 나. 각 당사자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 적용에 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한다.
- 다.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한 사안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 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제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요건을 전달한다.

제 5.6 조 국제기준

양 당사자는

- 가.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적용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그리고

나.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에 협력한다.

제 5.7 조 수입요건

1. 당사자의 일반적인 수입요건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전체에 적용된다.

2. 추가적인 특정 수입요건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이하 “국제수역사무국”이라 한다)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이하 “국제식물보호협약”이라 한다)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수입당사자가 수출당사자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상황에 관하여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수출당사자 또는 그 일부에 부과될 수 있다.

제 5.8 조 동물 및 식물 위생과 연관된 조치

1. 양 당사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여 그러한 지역의 인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2. 그러한 지역을 결정할 때, 양 당사자는 지리적 위치,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서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관리의 효과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3. 양 당사자는 그러한 지역의 결정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따르는 절차에 관한 신뢰를 획득할 목적으로,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구축한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약 2년 이내에 이러한 신뢰구축 활동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신뢰구축 협력의 성공적인 완료는 제5.10조에 언급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다.

4. 그러한 지역을 결정할 때, 수입당사자는 수출당사자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상황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기준에 따라 수출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에 원칙적으로 근거하도록 하고, 수출당사자가 내린 결정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가 내린 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수출당사자는 그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임을, 그리고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유지될 것임을 수입당사자에게 각각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를 위하여 수입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제 5.9 조

동물복지에 관한 협력

양 당사자는

- 가. 동물복지 분야에서 정보, 전문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그러한 활동을 위한 작업계획을 채택한다. 그리고
- 나. 국제포럼에서 동물복지 기준, 특히 동물의 기절 및 도축에 관한 기준의 개발에 협력한다.

제 5.10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또는 약정의 개발
- 나. 이 장의 이행 진전 상황의 점검
- 다. 제5.8조제3항에 언급된 신뢰구축 활동의 성공적 완료의 확인
- 라. 동물 유래 생산품 작업장과 적절한 경우 식물 유래 생산품 생산 장소의 승인을 위한 절차의 개발, 그리고
- 마.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에 도달하기 위해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포럼의 제공.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사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고, 상호 합의한 일자에 1년에 한 번 회합한다. 회의장소 또한 상호 합의된다. 의제는 회의 전에 합의된다. 의장은 양 당사자 간 교대로 한다.

제 5.11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6 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 6.1 조

목적 및 원칙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양자 및 다자 간 관세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다음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상품에 대한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가. 상품에 대한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효율적이고 비례적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 1) 각 당사자는 적절한 통관관리 및 선별절차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2)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 3) 각 당사자는 최소한의 문서로 상품의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전자시스템이 세관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4) 각 당사자는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한다.
- 5) 각 당사자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사안을 포함하여 국경통제에 관여하는 자신의 관세 당국 및 기관이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 6) 각 당사자는 관세사의 이용이 선택적이지도록 규정한다.

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양 당사자가 수용한 국제 무역 및 관세 관련 합의문서와 표준에 근거해야 하며,

- 1) 국제 무역 및 관세 관련 합의문서와 표준은,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합의문서와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 2) 자료 요건 및 절차는 세계관세기구(이하 “세계관세기구”라 한다) 관세자료모델 및 관련된 세계관세기구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용되고 적용된다.

다. 요건 및 절차는 수입자, 수출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한다.

라. 각 당사자는 새로운 또는 개정되는 중요한 요건 및 절차의 채택 이전에 이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 대표와 시의적절하게 협의한다.

마. 위험관리 원칙 또는 절차는 주목할 만한 거래에 준수노력을 집중하도록 적용된다.

바.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사.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는 국가 안보, 건강 및 환경의 보호와 같은 정당한 정책 목적의 달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6.2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통관과 그 밖의 무역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당국, 국경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신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과 형식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 각 당사자는 반출 시간을 더욱 줄이도록 노력한다.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최종 처리(“도착전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
- 다. 적용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신의 관세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이를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¹⁾, 그리고
- 라.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자유로이 유통되도록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

제 6.3 조 간소화된 통관절차

양 당사자는 탁송화물의 물리적 도착 전 정보의 사전 전자적 제출 및 처리, 적은 횟수의 개장검사, 그리고 예를 들어 최소한의 문서로 하는 간소화된 신고에 대한 무역원활화를 포함하여 특히 상품의 보다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결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업자 또는 경제 운영자에게 간소화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6.4 조 위험관리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당국이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 분석과 선별을 위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위험관리 절차를 위하여 1999년도 *통관절차의 간소*

1) 당사자는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지급액을 충당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 개정판과 세계관세 기구 위험 관리 지침을 이용한다.

제 6.5 조 투 명 성

1. 각 당사자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 규정 및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그 밖의 요건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용이하게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질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질의처 또는 정보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자는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대표들과 협의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협의 및 정보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중요한 요건 및 절차를 대상으로 하며, 채택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된다.

제 6.6 조 사전심사

1. 무역업자로부터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품목분류, 원산지 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해 서면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상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품목 분류 및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자신의 사전심사 결정을,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표한다.

3.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사안에 관한 그들 각자의 법령의 변경에 대한 정기적 갱신을 그들의 양자대화에 포함한다.

제 6.7 조

불복청구 절차

1. 각 당사자는 관세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의 결정에 관하여,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된 관련 인이 그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당사자는 불복청구가, 사법당국이나 행정재판소가 될 수 있는 상위 독립기관에 의한 재심에 앞서, 동일한 기관, 그 감독당국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먼저 심리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재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8 조

비밀유지

1. 제6.7조에 따라 요청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 또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자의 당국에 제공한 어떠한 정

보도 각 당사자에게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인 성격으로 취급된다. 이는 공식적인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받은 당사자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는다.

2. 개인 자료는 그 자료를 받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그 특정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식으로 그러한 자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인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적용가능한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어떠한 요건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 없이, 이를 받은 당사자의 당국에 의해 제공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적 절차와 연계하여 그것을 받은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할 의무가 있거나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에게도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은, 가능한 경우 사전에, 그러한 공개를 통보받는다.

5. 당사자의 당국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인에게 법적 절차와 연계된 정보 공개의 모든 가능성을 통보한다.

6. 요청하는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한 인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 또는 그 밖의 당국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개인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용가능한 조치를 적절한 경우 언제나 사용한다.

제 6.9 조

수수료 및 부과금

관세와 제2.3조(관세)에 따라 관세의 정의에서 제외된 항목 이외에,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하여,

- 가. 수수료 및 부과금은 해당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나 그러한 수입 또는 수출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나. 수수료 및 부과금은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다. 수수료 및 부과금은 종가세 방식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 라. 수수료 및 부과금은 영사서비스에 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다.
- 마.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된다. 이 정보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 부과된 이유, 담당 당국, 적용될 수수료 및 부과금, 그리고 지불될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은 마호에 따른 정보가 공표되고 용이하게 이용가능해지기 전까지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6.10 조 선적 전 검사

각 당사자는 선적 전 검사 또는 그에 상당한 것의 이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6.11 조 통관사후심사

각 당사자는 무역업자에게 효율적인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건 또는 부담을 무역업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6.12 조

관세평가

관세평가협정은, 관세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유보 및 선택권을 제외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6.13 조

관세협력

1. 양 당사자는 관세 및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자는 국제기구가 이와 연계해서 행한 작업을 고려하여, 관세 사안에서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 이는 새로운 관세 절차의 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3. 양 당사자는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성을 교환한다.
4. 양 당사자는 다음을 약속한다.
 - 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대한 관세 관련 사안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무역에 사용된 문서 및 자료 요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나. 관세분석소와 과학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분석 방법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 세관 직원을 교환하는 것

라. 관세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위하여 관세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

마. 무역 및 비즈니스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상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원산지 결정에 있어 상호 지원하는 것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 및 그 밖의 통관절차에 대하여, 특히 위조품에 대하여 관세당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집행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아.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모든 지역으로부터 양 당사자로 수입, 환적 또는 통과되는 해상화물과 그 밖의 선적의 보안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자는 강화되고 확대된 협력의 목적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 국제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 그리고

2) 가장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화물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적절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간 포럼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

5. 양 당사자는 그들간 기술 협력이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준수를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성취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관세와 관세 관련분야에서 협력 조치의 범위, 시기 및 비용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당사자의 관세 행정기관을 통하여 합의한다.

6. 양 당사자는, 각자의 관세 행정기관과 그 밖의 국경 관련 당국을 통

하여, 심화된 공동 행동이 양 당사자 간 무역을 원활히 하고 공유된 다자간 목적을 증진할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관세기구에서의 관련 활동을 포함한 무역원활화에 관한 관련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검토한다. 양 당사자는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야의 국제기구, 특히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관세기구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공통의 입장을 수립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7. 양 당사자는 이 장,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그들 각자의 관세 법 또는 규정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 서로 지원한다.

제 6.14 조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

1. 양 당사자는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9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의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6.15 조

관세 접촉선

1. 양 당사자는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정된 접촉선의 목록을 교환한다.

2. 접촉선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운영사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

록 노력한다. 사안이 접촉선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이 장에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6.16 조 관세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세위원회는 제15.1조(무역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2.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사안,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 및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관세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매년 양 당사자 간 교대로 회합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는 무역원활화, 품목 분류, 상품의 원산지 및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포함하여, 특히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 및 제8조와 관련하여,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건전한 기능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권고 또는 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제 7 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 1 절

일반규정

제 7.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서비스 무역과 설립의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자유화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이에 규정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부조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에 합치되게, 각 당사자는 정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이 장은 당사자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자신의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신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신의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그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 및 부속서에서의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¹⁾

제 7.2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가.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나.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에 의해 취하여진 조치를 말한다.

- 1)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 2)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자연인**이란 각자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공동체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을 말한다.

마. **법인**이란 회사, 신탁회사, 합명회사, 합작투자, 1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바. **당사자의 법인**이란,

-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법에 따라 각각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이 적용되

1)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장과 부속서에서의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는 영역에 등록사무소, 경영본부²⁾ 또는 주영업소를 각각 가지고 있는 법인. 이 법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등록사무소 또는 경영본부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이 적용되는 공동체의 영역에서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³⁾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인은 각각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는

- 2) 제7.9조가호에 따른 설립의 경우,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자연인에 의해 각각 소유 또는 지배되거나, 1)목 상에 적시된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 각각의 법인에 의해 소유 또는 지배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은,

- 1)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인에 의해 각각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인에 의해 **소유**된다.
- 2)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의 인 또는 유럽 공동체 당사자의 인에 의해 **지배**된다.
-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사. 마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 당사자 밖에 설립되고 각각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해운회사도, 자신의 선박이 대한민국 또는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의 법령에 따라 등록되고 대한민국 또는 어느 유럽연합 회원

2) **경영본부**란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을 말한다.

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세계무역기구에의 통보(WT/REG39/1)와 맞게, 유럽공동체 당사자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48조에 내포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와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라는 개념은 GATS 제5조제6항에 규정된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개념과 동등한 것으로 양해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등록사무소 또는 경영본부만을 대한민국의 영역에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당사자는 그 법인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보유한 경우에만 이 협정의 혜택을 부여한다.

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⁴⁾

- 아. **경제통합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특히 GATS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서비스 무역 및 설립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협정을 말한다.
- 자.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차.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하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라 한다)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카.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타.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인을 말하며, 투자자로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인을 포함한다.

제 7.3 조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위한 양 당사자의 수석대표는 이 장의 이행을 담당하는 당국의 공무원이다.
2. 위원회는,

4) 이 호는 설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이 장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한다.

나.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이 장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다. 관련 당국이 제7.46조에 대하여 건전성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 2 절 국경간 서비스 공급

제 7.4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의 국경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양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가. 시청각 서비스⁵⁾

나. 국내연안운송, 그리고

다. 다음을 제외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 그리고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4)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공항운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2.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5) 이 절의 적용범위로부터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은 문화협력에 대한 의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나. 서비스의 구매, 지불 또는 이용

다.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의 어느 한 쪽 당사자 영역 내 주재

3. 이 절의 목적상,

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 1)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내로의 공급, 그리고
- 2)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공급

나. **서비스**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리고

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근거에서 공급되지도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 7.5 조 시장접근

1.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부속서 7-가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신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⁶⁾
-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그리고
-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⁷⁾

제 7.6 조 내국민대우

1. 시장접근 약속이 부속서 7-가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가 그것이 다른 쪽 당사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자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4. 이 조에 따라 부담하는 구체적 약속은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

6) 이 호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7.9조가호의 의미에서의 설립을 하거나, 당사자의 영역에 주재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7) 이 호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자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열위를 당사자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7 조

약속 목록

1. 이 절에 따라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자유화된 분야와 유보에 의하여 해당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가능한 시장 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은 부속서 7-가에 포함된 약속 목록에 규정되어 있다.

2.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과 합치되게 행해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보다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

제 7.8 조

최혜국대우⁸⁾

1.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 후 서명된 경제통합 협정의 맥락에서 자신이 제3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제3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경제통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는, 이 대우가 부속서 7-나에 규정된 대로 그 지역경제통합협정이 이 절의 맥락에서 취해지는 것보다 중

8)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하게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한 분야별 또는 수평적 약속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에만 제1항의 의무로부터 제외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는 다음에 따라 부여되는 대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GATS 제7조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자격, 면허 또는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규정하는 조치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정 또는 약정, 또는

다. 부속서 7-다에 기재된 최혜국대우 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

4. 이 장의 규정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가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설 립

제 7.9 조 정 의

이 절의 목적상,

가. **설립**이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을 말한다.

- 1)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⁹⁾, 또는
- 2)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나. **투자자**란 설립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자 하거나 수행하는

9) 법인의 “구성” 및 “인수”라는 용어는 지속적인 경제적 연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자본 참여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모든 인을 말한다.¹⁰⁾

다. **경제활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수행되는 활동, 즉 상업적 근거에서 행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경제운영자와의 경쟁 하에 행해지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제외한 경제적 성격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라. **당사자의 법인의 자회사**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인에 의해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마. **법인의 지점**이란 법인격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모회사의 연장과 같이 상시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고 경영진을 보유하며 제3자와 사업을 협상할 물리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어, 그 제3자가 본점이 외국에 있는 모회사와의 법적 연계가 필요한 경우 있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모회사와 직접 거래할 필요없이 그 연장을 구성하는 영업소에서 사업거래를 할 수 있는营业소를 말한다.

제 7.10 조

적용범위

투자 환경, 그리고 특히 양 당사자 간 설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에서 설립에 영향을 주는 양 당사자에 의한 조치¹¹⁾에 적용된다.

가. 핵물질의 채굴, 제조 및 처리¹²⁾

나. 무기, 군수품 및 전쟁물자¹³⁾의 생산 또는 거래

-
- 10) 경제활동이 법인에 의해 직접 수행되지 아니하고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와 같이 설립의 다른 형태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법인을 포함한 투자자는 그룹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대우를 그러한 설립을 통해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설립에도 부여되며, 그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 밖에 주재하는 투자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 11) 제7.12조로부터 도출되는 대우 이외의 투자보호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1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핵물질의 처리는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 산업 분류에서 code 2330에 포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13) 전쟁물자는 전쟁의 수행 또는 방위 활동과 관련하여 오로지 군사적 용도로 의도되고 제작된 제품에 한정된다.

다. 시청각 서비스¹⁴⁾

라. 국내연안운송, 그리고

마. 다음을 제외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 그리고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4)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공항운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보조적인 그 밖의 서비스

제 7.11 조 시장접근

1. 설립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부속서 7-가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신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권리,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와 같은 그 밖의 설립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설립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영업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¹⁵⁾

14) 이 절의 적용범위로부터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은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5) 가호부터 다호까지는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라.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 마.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로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바.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제7.1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 이외에, 특정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투자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의 수행에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제 7.12 조 내국민대우¹⁶⁾

1. 부속서 7-가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자신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가 그것이 다른 쪽 당사자의 동종 설립 또는 투자자와 비교하여 당사자의 설립 또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4. 이 조에 따라 부담하는 구체적 약속은 당사자가 관련 설립 또는 투자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열위를 당

16) 이 조는 국적 및 거주 요건과 같이 설립체의 이사회 구성을 규율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사자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13 조 약속 목록

1. 이 절에 따라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자유화된 분야와 유보에 의하여 해당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 적용가능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은 부속서 7-가에 포함된 약속 목록에 규정되어 있다.

2.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 대하여 제1항과 합치되게 행해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보다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

제 7.14 조 최혜국대우¹⁷⁾

1.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 후 서명된 경제통합협정의 맥락에서 자신이 제3국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¹⁸⁾

2.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제3국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지역 경제통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는, 이 대우가 부속서 7-나에 규정된 대로 그 지역경제통합협정이 이 절의 맥락에서 취해지는 것보다 중대하게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한 분야별 또는 수평적 약속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

17)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8) 이 항에 포함된 의무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투자 보호 규정들로 확대되지 아니한다.

에만 제1항의 의무로부터 제외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는 다음에 따라 부여되는 대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GATS 제7조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자격, 면허 또는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규정하는 조치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정 또는 약정, 또는

다. 부속서 7-다에 기재된 최혜국대우 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

4. 이 장의 규정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가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15 조 **그 밖의 협정**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가 당사자인 투자와 관련한 기존의 또는 미래의 국제협정에 규정된 더 유리한 대우로부터 양 당사자의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정상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양 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협정상의 양 당사자의 국제적인 법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

제 7.16 조 **투자의 법적 틀의 검토**

1. 투자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투자의 법적 틀,¹⁹⁾ 투자 환경 및 양 당사자 간 투자의 흐름을 국제협정에서의 그들의 약속과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 간격으로 검토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검토의 맥락에서, 양 당사자는 직면해 왔던 투자에 대한 장벽을 평가하고, 투자보호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심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장벽을 다루기 위한 협상을 수행한다.

제 4 절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제 7.17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절은 제7.1조제5항에 따라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과 일시 체류에 관한 양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절의 목적상,

가. **핵심인력**이란 당사자의 비영리조직 이외의 법인 내에 고용된 자연인으로서, 설립체의 설치 또는 적절한 통제,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핵심인력은 설립체의 설치를 담당하는 상용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로 구성된다.

1) **상용방문자**란 설립체의 설치를 담당하는 고위직에 근무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그들은 일반 공중과의 직접적인 거래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방문국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

¹⁹⁾ 이는 이 장과 부속서 7-가 및 7-다를 포함한다.

지 아니한다. 그리고

- 2) 기업내 전근자란 최소 1년간 당사자의 법인에 의해 고용되어 있거나 그 법인의 공동경영자(과반수 지분보유자는 제외한다)인 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설립체(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점을 포함한다)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자연인을 말한다. 해당 자연인은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

관리자

법인 내에서 고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주로 그 사업체의 이사회나 주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들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아 다음을 포함하여 주로 설립체의 경영을 지휘하는 자연인

- 가) 설립체 또는 설립체의 부서 또는 그 하부 조직을 지휘하는 것
- 나)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것, 그리고
- 다) 채용 및 해고를 직접하거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

전문가

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설립체의 생산, 연구 기기, 기술 또는 경영에 필수적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는 자연인. 그러한 지식을 평가함에 있어, 설립체에 특정한 지식뿐 아니라, 해당 인이 공인된 직업단체의 회원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특정한 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직업의 유형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이다.

- 나. 대졸연수생이란 당사자의 법인에 의해 최소 1년간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경력개발 목적을 위해서나 사업 기술 또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설립체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자연인을 말한다.²⁰⁾

다. **상용서비스판매자**란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일시 입국을 하려는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인 자연인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방문국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라.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당사자의 법인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설립체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자 내의 최종 소비자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선의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서비스 공급 이행을 위해 그 다른 쪽 당사자 내에 피고용인을 일시 주재시킬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 그 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자연인을 말한다.²¹⁾ 그리고

마. **독립전문가**란 당사자의 영역에서 서비스공급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설립체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자 내의 최종 소비자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선의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서비스 공급 이행을 위해 그 다른 쪽 당사자 내에 일시 주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 그 자연인을 말한다.²²⁾

제 7.18 조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

1. 제3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부속서 7-가에 기재된 유보를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자연인을 자신의 설립체에 파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피고용인이 제7.17조에 정의된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이어야 한다. 핵심인력

20) 대졸연수생을 받는 설립체는 체류의 목적이 학사학위 수준에 상응하는 연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체류기간 동안의 연수계획서를 사전 승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21) 이 호에 언급된 서비스 계약은 계약이 이행되는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한다.

22) 이 호에 언급된 서비스 계약은 계약이 이행되는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한다.

과 대졸연수생의 일시 입국 및 체류는 기업내 전근자²³⁾에 대해서는 3년, 상용방문자에 대해서는 12개월 기간 내 90일,²⁴⁾ 대졸연수생에 대해서는 1년까지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2. 제3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속서 7-가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유지하거나 채택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수량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투자자가 특정 분야에서 핵심인력 또는 대졸연수생으로 파견할 수 있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과 차별적인 제한으로 정의된다.²⁵⁾

제 7.19 조

상용서비스판매자

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부속서 7-가에 기재된 유보를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12개월의 기간 내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용서비스판매자의 일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한다.²⁶⁾

제 7.20 조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

1. 양 당사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와 독립전문가의 일시 입국 및 체류에 관해 GATS에 따른 그들의 약속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자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23)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발효 중인 법 및 규정에 합치되게, 허용된 기간 동안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4) 이 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간의 양자 비자면제협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5) 부속서 7-가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설립체가 고위관리직에 특정 국적의 자연인 또는 자신의 영역에 거주지를 갖는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6) 이 조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간에 체결된 양자 비자면제협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GATS 제19조 및 2001년 11월 14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의 각료선언에 따른 협상의 종결 후 2년 이내에, 무역위원회는 당사자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접근에 관한 약속 목록을 포함한 결정을 채택한다. 그러한 GATS 협상의 결과를 고려하며, 그 약속들이 호혜적이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도록 한다.

제 5 절 규제의 틀

제 1 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제 7.21 조 상호 인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자연인이 해당 활동 분야에 대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에서 명시된 필요한 자격 및/또는 직업적 경험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자는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가, 임시 면허를 포함하여, 서비스 분야와 특히 전문직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에 대한 승인, 면허, 영업 및 증명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적용하는 기준을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목적으로, 각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관련 대표 전문직 기관이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무역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권고를 수령하는 때에, 무역위원회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 권고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권고를 검토한다.

4.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제2항에 언급된 권고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양 당사자의 관련 규정 간에 충분한 수준의 상응성이 있으면, 양 당사자는 동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을 통하여 요건, 자격, 면허 및 그 밖의 규정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이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을 협상한다.

5. 그러한 모든 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과 특히 GATS 제7조와 합치되도록 한다.

6.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호인정협정 작업반은 무역위원회 하에서 운영되고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제2항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작업반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한다.

가. 작업반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1) 각자의 영역 내 관련 대표 기관이 상호 인정에 있어서 그들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절차, 그리고
- 2) 관련 대표 기관이 상호 인정에 관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나. 작업반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관련 전문직 기관에 의해 제기되는 상호 인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위한 접촉선으로서 기능한다.

제 7.22 조

투명성 및 비밀 정보

1. 양 당사자는 제12장(투명성)에 따라 설치된 메커니즘을 통해 다음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한다.

가. 상호 인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에 속하거나 이 장에 해당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나.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와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 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한 정보. 그러한 표준 및 기준은 교육, 시험, 경험, 행동 및 윤리,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종사 범위, 현지 지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한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자가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의 규제 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4.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규제 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 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5.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 당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6. 당사자의 규제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 당국은 과

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제 7.23 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 또는 설립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각 당사자는 설립, 국경간 서비스 공급 또는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영향을 받은 투자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양 당사자는 그 절차가 실제로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공공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개별 분야에 대해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그리고

나.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4. GATS 제6조제4항에 따른 협상의 결과나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 협의 후 적절한 경우 이 조는 수정된다.

제 7.24 조 지배구조

각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및 감독과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이행되고 적용되도록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보장한다. 그러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은, 특히,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 원칙*, 2003년 10월 3일 싱가포르에서 승인된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의 *보험감독 핵심 원칙 및 방법론*, 국제증권감독기구의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경제협력개발기구”라 한다)의 *조세정보교환협정*, G20의 *조세정보의 투명성 및 교환에 관한 성명*,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금융조치전담반의 *자금세탁에 관한 40개 권고사항* 및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9개 특별 권고사항*이다.

제 2 관 컴퓨터 서비스

제 7.25 조 컴퓨터 서비스

1.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 따라 컴퓨터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다음 항에서 규정된 양해에 동의한다.

2.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연합코드인 CPC²⁷⁾ 84는, 컴퓨터의 작동 및 통신(그 개발과 구현을 포함한다)을 가능하게 하는 데 요구되는 명령어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처리 및 저장, 그리고 고객의 직원을 위한 상담 및 훈련 서비스와 같은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기본 기능을 포함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는 이러한 기본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의 묶음 또는 패키지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웹 또는 도메인 호스팅, 데이터 마이닝 서비스 및 그리드 컴퓨팅과 같은 서비스는 각각 기본 컴퓨터 서비스 기능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터넷을 포함하여 망을 통해 전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는 다음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가.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또는 이를 위한 상담, 전략, 분석, 기획, 규격, 디자인, 개발, 설치, 구현, 통합, 시험, 오류수정, 업데이트, 지원, 기술지원 또는 관리

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또는 이를 위한 상담, 전략, 분석, 기획, 규격, 디자인, 개발, 설치, 구현, 통합, 시험, 오류수정, 업데이트, 적응, 유지, 지원, 기술지원, 관리 또는 사용

다. 데이터 처리, 데이터 저장, 데이터 호스팅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라.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 기계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또는

마.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되고 어디에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객의 직원을 위한 훈련서비스

4.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는 은행업무와 같은 그 밖의 서비스를 전자적

27) CPC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1년 발간 CPC prov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수단 및 그 밖의 수단 모두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양 당사자는 웹호스팅 또는 어플리케이션 호스팅과 같은 실현 서비스와 은행업무와 같이 전자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콘텐츠 또는 핵심 서비스 간에는 중요한 구별이 있다는 것과, 그러한 경우에는 그 콘텐츠 또는 핵심 서비스는 CPC 84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3 관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제 7.26 조 규제 원칙

이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각 당사자 내에서 독점으로 유보되지 아니한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그러한 원칙은 반경쟁 관행, 보편적 서비스, 개별 면허 및 규제당국의 성격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⁸⁾

제 4 관 통신서비스

제 7.27 조 적용범위 및 정의

2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발효시에 민간배달서비스 공급자를 규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 기존 규제 기관의 규제의 틀을 변경하려고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이 관은 이 장의 제2절부터 제4절에 따라 자유화된, 방송 이외의 기본통신서비스²⁹⁾에 대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관의 목적상,

가. **통신서비스**란 전자기 신호의 송신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고, 그 전송을 위해 통신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제공으로 구성되는 경제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당사자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다.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라. 통신 분야의 **규제당국**이란 이 관에 언급된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기관을 말한다.

마.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1)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될 것, 그리고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바. 통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란 필수 설비에 대한 자신의 지배 또는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의 결과로 통신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사. **상호접속**이란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경우, 어느 한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아. **보편적 서비스**란 당사자의 영역내에 있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지

29) 이는 MTN/GNS/W/120의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 C. 통신서비스 (a)부터 (g)까지에 기재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³⁰⁾

자.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차.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그리고

카. **번호이동성**이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최종이용자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공급자간에 전환할 때에 품질, 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 7.28 조 규제당국

1.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당국은 모든 통신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법적으로 구별되고 기능적으로 독립된다.

2. 규제당국은 통신서비스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규제당국에 의해 수행될 업무는 특히 그러한 업무가 둘 이상의 기관에 할당된 경우, 용이하게 접근가능하고 분명한 형태로 공개된다.

3. 규제당국의 결정과 그에 의해 사용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해 공평하도록 한다.

제 7.29 조

30)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및 이행은 각 당사자에 의해 결정된다.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

1. 서비스의 제공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간소화된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2. 허가는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의 귀속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허가를 위한 조건은 공개된다.
3.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 가.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은 공개된다.
 - 나. 허가의 거부에 대한 이유는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그리고,
 - 다.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자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 수수료³¹⁾는 그 적용가능한 허가의 관리, 통제 및 집행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³²⁾

제 7.30 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보장장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러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³³⁾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31) 허가 수수료는 경매, 입찰이나 그 밖의 허가를 부여하는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불, 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2) 이 호는 이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시에 허가 수수료가 비차별적 방식으로 부과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33) 또는 유럽공동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윤압착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제 7.31 조 상호접속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내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영역 내에서 상호접속을 협상할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 간 상업적 협상에 근거하여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규제 당국은 상호접속약정 협상의 과정에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공급자가 그 정보를 오직 그 정보가 공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전송되거나 저장된 정보의 비밀성을 항상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3.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가. 비차별적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서비스에 대해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

나.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공,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

4.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적용가능한 절차는 공개된다.

5. 지배적 사업자는 그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한다.³⁴⁾

제 7.32 조 번호이동성

각 당사자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자신의 영역 내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제 7.33 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2.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되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³⁴⁾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제 7.34 조 보편적 서비스

1. 각 당사자는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그 자체로 반경쟁적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의무의 운영은 경쟁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며, 각 당사자에 의해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를 위해 필요한 것 보다 더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 7.35 조 정보의 비밀성

각 당사자는 서비스 무역을 제한함이 없이 공중 통신 전송 망과 공중에 게 이용가능한 통신 서비스에 의한 통신 및 관련 트래픽 데이터의 비밀성을 보장한다.

제 7.36 조 통신 분쟁의 해결

구제신청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서비스 공급자는 이 관에 규정된 사안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당사자의 규제당국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이 관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해당 규제당국은 분쟁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최단기의 기한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린다.

불복심사 및 사법심사

2.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규제당국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는

가.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심사기관에 불복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³⁵⁾ 그 불복심사기관이 성격상 사법적이지 아니한 경우 그 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서면 이유가 항상 제공되며 그 판정 또는 결정은 또한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불복심사기관에 의해 취하여진 판정 또는 결정은 실효적으로 집행된다. 그리고

나. 당사자의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얻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심사의 신청이 규제당국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제 5 관 금융서비스

제 7.37 조 적용범위 및 정의

35)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불복심사기관은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와 독립적이다.

1. 이 관은 제2절부터 제4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관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가) 생명보험

나) 비생명보험

2) 재보험과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자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적인 서비스

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 공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2) 소비자신용, 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여신

3) 금융리스

4)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5) 보증 및 약정

6)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산 또는 고객계산으로 거래하는 것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나) 외환

다)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
율 상품
- 마) 양도성 증권, 그리고
-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
- 7)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증권 발
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그리고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8) 자금중개업
-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관리, 연금
기금관리,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 10)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를 포함하는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11)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
전, 그리고
- 12)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여, 1)목부터
11)목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적인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자
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
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자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
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 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
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신금융서비스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 7.38 조 건전성 조치 예외³⁶⁾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³⁷⁾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 나. 그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

2.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스럽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36) 당사자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그 당사자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 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조에 맞게 취해진다.

37)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7.39 조

투 명 성

양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방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제 7.40 조

자율규제기구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관, 유가증권이나 선물 거래 또는 시장, 결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때, 또는 그 당사자가 그러한 기관에게 금융서비스 공급에 있어 특혜 또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때, 그 당사자는 그러한 자율규제기구가 제7.6조, 제7.8조, 제7.12조 및 제7.14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7.41 조

지급 및 결제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결제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자의 최종 대부기

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7.42 조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자는,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새로운 법의 제정 또는 기존법의 수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자기 자신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사자는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7.43 조 자료 처리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경제통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가.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해 자신의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나. 각 당사자는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약속³⁸⁾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개인 자료의 이전에 대하여 사생활의

3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세계인권선언*, *전산화된 개인 자료 파일의 규제를 위한 지침* (199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5/95로 채택)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자료의 국경 이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1980년 9월 23일 이사회 채택)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지칭한다.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채택한다.

제 7.44 조

구체적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수행하면서 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자의 계산으로, 또는 그 당사자의 보증 하에, 또는 그 당사자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45 조

분쟁해결

1. 제14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자는 각각 개인 5인을 추천하고, 양 당사자는 또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며 중재패널의 의장 직무를 수행할 개인 5인을 선정한다. 그러한 개인들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가지며 부속서 14-다(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자에 대한 행동 규범)를 준수한다.

3. 패널위원들이 제14.5조(중재패널 설치)제3항, 제14.9조(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제3항, 제14.10조(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제3항, 제14.11조(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제4항, 제14.12조(의무의 정지 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제3항, 부속서 14-나(중재절차 규칙)의 제6조(교체)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첨에 의해 선정되는 때, 선정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서 이루어진다.

4. 제14.11조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분쟁상의 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자신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동등한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없다.

제 7.46 조 인 정

1. 당사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자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자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 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 시 또는 그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제3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들 간의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당사자와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6 관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제 7.47 조

적용범위·정의 및 원칙

1. 이 관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해상운송 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관의 목적상,

가. **국제해상운송**은 하나의 운송서류 상에서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을 사용하여 상품을 운반하는 일관운송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로 다른 운송 방식 제공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해상화물취급 서비스**란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1)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 2) 화물의 고정/분리, 그리고
- 3)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다. **통관서비스**(‘관세사 서비스’라고도 한다)란, 이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운송을 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라.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란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마. **해운대리업 서비스**란 다음의 목적을 위해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 1)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 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그리고
- 2)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 수행

3.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 기존의 자유화의 수준에 비추어,

가. 양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국제해운시장 및 무역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나. 각 당사자는 특히,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 통관 시설, 그리고 접근과 선적 및 하역을 위한 시설의 할당뿐만 아니라 항구에의 접근, 항구의 기반시설 및 해상보조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운영하는 선박에 자기 자신의 선박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4.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가. 건화물, 액체화물 및 정기선 무역을 포함하여,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해 제3자와의 미래 양자협정에서 화물공유약정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양자협정에 화물공유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화물공유약정을 실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해상운송에서 서비스의 자유로운 공급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 및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그 밖의 장벽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하는 것을 자제한다.

5.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약속 목록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자기 자신의 또는 제3자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에 관계없이, 불리하지 아니한 설립 및 운영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설립을 하도록 허용한다.

6.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제해상운송 공급자에게 항구에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음의 서비스가 이용하게 되도록 한다.

가. 도선

나. 예선 지원

다. 식량 공급

라. 연료 공급 및 급수

마.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바. 선석배정

사. 항행원조, 그리고

아.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 비상보수시설,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를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 기반 서비스

제 6 절 전자상거래

제 7.48 조 목적 및 원칙

1.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무역 기회, 그 이용 및 발전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 장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자료 보호의 국제기준과 충분히 양립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3. 양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³⁹⁾

제 7.49 조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규제 문제에 관한 대화를

39) 이 장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유지하며, 이 대화는 특히 다음의 문제를 다룬다.

- 가. 공중에게 발급되는 전자서명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서비스의 촉진
- 나.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대한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다. 요청받지 아니한 전자 상업통신의 취급
- 라. 전자상거래 범위에서의 소비자 보호
- 마. 종이없는 무역의 발전, 그리고
- 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련된 그 밖의 문제

2. 대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각각의 법령뿐 아니라 그러한 법령의 이행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제 7 절 예 외

제 7.50 조 예 외

1. 그러한 조치가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설립 또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공안보 또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⁴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⁴⁰⁾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때에만 원용될 수 있다.

다.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투자자 또는 서비스의 국내 공급이나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적용되는 경우

라.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 또는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2) 개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계좌의 비밀성의 보호

3) 안전

바. 제7.6조 및 제7.12조에 불합치하는 조치. 다만, 대우에서의 차이가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활동, 투자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⁴¹⁾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한한다.

41)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당사자가 자신의 조세제도에 따라 채택하는 조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당사자 영역 내에 원천이 있거나 소재하는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비거주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나. 그 당사자 영역에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다. 준수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라. 그 당사자 영역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마. 투자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과세표준의 성격상 차이를 인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그 밖의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바. 당사자의 과세표준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자 또는 지점이나 관련인 또는 동일인의 지점간의 소득, 이윤, 임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분 또는 조정하는 조치

이 항과 이 각주의 조세용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취하는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른 조세의 정의와 개념 또는 동등 또는 유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유럽공동체 당사자

1. 제7.7조(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2. 제7.13조(설립)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3. 제7.18조(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제7.19조(상용서비스판매자)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

대한민국

4.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가.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나.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7-가-1
유럽공동체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국경간 서비스 공급)

1. 아래의 약속 목록은 제7.7조에 따라 자유화된 서비스 분야와, 유보를 통하여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유럽 공동체 당사자가 약속한 분야 또는 하위분야와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아래 목록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서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분야를 확인함에 있어,

가.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나.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과 절차에 관련된 조치가 제7.5조 및 제7.6조의 의미에서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요구,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 인정 획득 요구,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요구)는 비록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아래의 목록은 일정한 서비스 분야 및 하위분야에서 제7조제4항제1목의 국경간 서비스공급의 실행가능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설립에 관한 약속 목록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공공독점 및 배타적 권리의 존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5.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가 부여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아래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직접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7.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형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공화국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u>부동산</u> <u>공급형태 1 및 2</u> 오, 불, 사, 체, 덴, 그, 핀, 형, 아, 이, 리, 몰, 폴, 루,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오 : 외국의 자연인과 법인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리스뿐 아니라 취득 또는 구매는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해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검토할 권한있는 지역 당국(Länder)의 인가를 요구함. 불 : 외국 법인과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은 재무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 및 부동산의 제한된 재산권¹⁾을 취득할 수 있음. 그 허가 요건은 불가리아에 이미 투자한 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과 외국 법인 및 외국인 참여가 결정을 채택하는 데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결정의 채택을 저지할 수 있는 회사는 허가를 조건으로 내각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한 지역에서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사 : 약속 안함. 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체코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의 실체의 토지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덴 : 비거주 물리적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음.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에 의한 농업용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음. 그 : 법 제1892/90에 따라, 시민이 국경 근접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함. 행정적 관행에 따라, 허가는 직접투자에 용이하게 부여됨.

1) 불가리아 재산법은 다음의 제한된 재산권을 인정함 : 사용권, 건축권, 상부구조물 설치권과 지역권 및 채취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핀 : (아랜드(Åland) 섬): 아랜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아랜드(Åland) 아일랜드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아랜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 형 : 외국의 투자자에 의한 토지 및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음.²⁾ 아 : 국내 또는 외국 회사 또는 외국 국민이 아일랜드 토지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그러한 토지가 (농업관련 산업이 아닌) 산업용인 경우 “기업, 무역 및 고용부”로부터의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조건으로 이 요건이 면제됨. 이 법은 도시 경계 내의 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부동산 구매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리 : 토지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³⁾ 몰 : 부동산 재산권 취득에 관한 몰타 법 및 규정의 요건이 계속 적용됨. 폴 : 외국인(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부동산 취득에는 허가가 요구됨. 국가 소유 재산의 취득(즉, 민영화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 루 : 루마니아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본부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법인뿐 아니라 루마니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은 증여법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음. 베 : 외국 자본 참여로 슬로베니아 공화국 내에 설립된 법인은 슬로베니아 공화국 영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인이 슬로베니아 공화국에 설립한 지점⁴⁾은 그들이 설립된 목적에 따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만을 취득할 수 있음. 다른 쪽 당사자의 법인 또는 국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속해있는 회사가 국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별 허가를 조건으로 함.

2)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3)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슬 : 외국인인 물리적 및 법적 실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외국인인 실체는 슬로바키아인인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토지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⁵⁾ 공증, “huissiers de justice (집행관 업무)” 또는 그 밖의 “officiers publics et ministeriels (공무원 업무)”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서비스는 제외	공급형태 1 및 2 오, 사, 서, 그, 리, 물, 슬 : 국내(유럽공동체 및 회원국)법 업무를 위하여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 벨, 핀 : 법률대리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 벨기에에서 비행사사건에 있어 “Cour de cassation (최고법원)”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가 적용됨. 불 : 대한민국 변호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그리고 불가리아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률대리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음. 법률조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시 거주가 요구됨. 프 : “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 (헌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와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

4) 상업회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공화국 내에 설립된 지점은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나, 활동과 관련하여 지점에 대한 대우는 GATS 제28조 제사항에 따른 현지법인의 그것과 동일함.

5) 법률자문 서비스, 법률대리 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공동체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지역의 법과 관련하여서만 인가되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이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공동체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그러한 변호사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공동체 측의 권한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공동체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는, 그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그 국가에 속하는 당사자를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형 :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 외국 변호사에 대하여 법적 활동의 범위는 법률자문의 제공에 한정됨. 라 : 형사 절차에서의 대리권이 유보되고 서약한 사무변호사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덴 : 법률자문서비스의 마케팅은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와 덴마크에 등록된 법무회사(로펌)에 유보됨.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이 요구됨. 스 : 스웨덴의 직명 “advokat”의 사용만을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협회에의 가입은 거주요건을 조건으로 함.
b) 1.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 (감사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2 , CPC 86213, CPC 86291 및 CPC 86220)	<u>공급형태 1</u> 프, 형, 이, 몰, 루, 베 : 약속 안함. 오 : 권한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b) 2. 감사 서비스 (회계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1 및 86212)	<u>공급형태 1</u> 벨, 불, 사, 독,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몰, 네, 포, 루, 베, 영 : 약속 안함. 오 : 권한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하여, 그리고 특정한 오스트리아법(예를 들어 합자주식회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 규정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스 :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한 감사인만이 주주가 되거나 (공식적 목적으로) 자격있는 감사를 행하는 회사에서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음. 승인을 위하여 거주가 요구됨. 리 : 감사 보고서는 리투아니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감사인과 함께 작성하여야 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세무자문서비스 (CPC 863) ⁶⁾	<u>공급형태 1</u> 오 : 권한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사 : 세무사는 재무부에 의해 적절하게 인가되어야 함.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사용되는 기준은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허가 부여의 그것과 유사함. 이 기준이 하위 분야에 적용될 경우 그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이 항상 고려됨. 불, 물, 루,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d) 건축설계서비스 그리고 e)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u>공급형태 1</u> 오 : 계획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벨, 불, 사, 그, 이, 물, 폴, 포, 베 : 약속 안함. 독 : 외국에서 수행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 및 수입료에 대한 국내규칙이 적용됨. 형, 루 : 경관 건축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f)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g)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u>공급형태 1</u> 오, 베 : 순수한 계획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불, 사, 그, 이, 물, 포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6) 1.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h) 의료 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 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독, 덴, 에, 서, 핀, 프, 그, 아, 이, 록, 물, 네, 포, 루, 슬, 영 : 약속 안함. 베 : 사회의료 서비스, 위생 서비스, 피부의학 서비스, 의료/생태서비스, 혈액공급, 혈액준비와 수혈 및 검시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에, 서, 프, 그, 형, 아, 이, 라, 물, 네, 포, 루, 베, 슬 : 약속 안함. 영 : 수의외과의에게 공급되는 수의실험 및 수의기술서비스, 일반자문, 지침 및 정보(예를 들어 영양, 행동 및 애완동물 관리)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j) 1. 조산원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에, 서,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록, 물, 네, 포, 루, 베, 슬, 영 : 약속 안함. 핀, 폴 : 간호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k) 의약품 소매 및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 소매 (CPC 63211)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⁷⁾	공급형태 1 오, 벨, 불, 독, 사, 덴, 서, 핀, 프, 그, 아, 이, 록, 물, 네, 폴, 포, 루, 스, 슬, 베, 영 : 약속 안함. 체, 라, 리 : 우편 주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형 : CPC 632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C. 연구개발서비스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심리학자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CPC 852) ⁸⁾	제한 없음.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유 : 공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공동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공동체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D. 부동산 서비스⁹⁾	

7)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됨.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조제약의 공급만이 약제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8)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에 기재된 CPC 85201의 일부임.

9)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 (CPC 821)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예, 형, 아, 라, 리, 물,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b) 요금 또는 계약에 근거 (CPC 822)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예, 형, 아, 라, 리, 물,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u>공급형태 1</u> 불, 사, 독, 형, 물, 루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형, 라, 물, 폴, 루, 슬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불, 사, 체, 라, 물, 폴, 루, 슬 : 약속 안함. 오, 벨, 독, 텐, 서, 예,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록, 네, 포, 베, 스, 영 : 유럽공동체 항공사에 의해 사용되는 항공기는 그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한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공동체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야 함. 단기 리스 계약에 대하여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CPC 83102 및 CPC 83105)	<u>공급형태 1</u> 불, 사, 형, 라, 물, 폴, 루,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 CPC 83107, CPC 83108 및 CPC 83109)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형, 물, 폴, 루, 슬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e) 개인 가정물품 관련 (CPC 832)	<u>공급형태 1 및 2</u>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록, 물,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예 :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기기용 사전녹화 비디오 카세트와 관련한 리스 또는 임대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f) 통신장비 임대 (CPC 7541)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F. 기타 사업서비스	
a) 광고 (CPC 871)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CPC 864)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d)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u>공급형태 1 및 2</u> 형 :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서비스 (CPC 8676)	<u>공급형태 1</u> 이 : 생물학자 및 화학분석가 직종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물, 폴, 루, 슬,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불, 사, 체, 물, 폴, 루, 슬, 스 : 약속 안함.
f)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1의 일부)	<u>공급형태 1</u> 이 : 농경제학자 및 “농업기술자”에게 유보된 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 에, 물, 루,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g)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2의 일부)	<u>공급형태 1</u> 라, 물, 루,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h) 제조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4의 일부 및 CPC 885의 일부)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직업 소개, 파견 서비스	
i) 1. 임원급 소개서비스 (CPC 87201)	<u>공급형태 1</u> 오, 불, 사, 체, 독, 에, 서, 핀, 아, 라, 리, 몰, 폴, 포, 루, 슬, 베,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오, 불, 사, 체, 에, 핀,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i) 2. 직업 소개 서비스 (CPC 87202)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에, 서, 그, 핀, 프, 아, 이, 룩, 라, 리,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오, 불, 사, 체, 에, 핀, 라, 리, 몰,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i) 3. 사무지원인력 파견 서비스 (CPC 87203)	<u>공급형태 1</u> 오, 불, 사, 체, 독, 에, 핀, 프, 이, 아, 라, 리, 몰, 네, 폴, 포, 루, 스, 슬,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오, 불, 사, 체, 에, 핀,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i) 4. 가사보조인력, 기타 상업 또는 산업근로자, 간호 및 기타 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4, 87205, 87206, 87209)	<u>공급형태 1 및 2</u> 형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약속 안함 형 : 제한 없음.
j) 1. 조사서비스 (CPC 87301)	<u>공급형태 1 및 2</u>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영 :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u>공급형태 1</u> 형 : CPC 87304, CPC 87305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사, 체, 서, 예, 핀, 프, 이, 라, 리, 몰, 포,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형 : CPC 87304, CPC 87305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예, 라, 리, 몰,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k) 과학,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CPC 8675)	<u>공급형태 1</u> 벨, 불, 사,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룩, 몰, 네, 폴, 포, 루, 베, 영 : 탐사 서비스에 대해서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l) 1.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u>공급형태 1</u> 해상운송선박에 대하여, 벨, 불, 사, 독, 덴, 서, 핀, 프, 그, 아, 이, 리, 몰, 네, 폴, 포, 루, 스, 베, 영 : 약속 안함. 내륙수로운송선박에 대하여, 예, 형, 라를 제외한 유럽공동체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l)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독, 사, 체, 덴, 서, 핀, 프, 그, 아, 이, 리,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스, 베, 슬,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l)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l) 4.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u>공급형태 1</u> 벨, 불, 사, 체, 독, 텐, 서, 편, 프, 그, 아, 이, 리, 록, 몰, 네,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l)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용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 ¹⁰⁾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m) 빌딩청소 서비스 (CPC 874)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편, 프, 그, 아, 이, 록, 라,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10)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8868)는 1.F.1)1.부터 1.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CPC 845)는 1.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n) 사진서비스 (CPC 875)	<u>공급형태 1</u> 불, 예, 물, 폴 : 항공사진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라 : 전문사진서비스(CPC 87504)에 대하여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o) 포장서비스 (CPC 876)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r) 1.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u>공급형태 1</u> 폴 : 서약한 통역사의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형, 슬 : 공식 번역 및 통역에 대하여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r) 2. 인테리어 디자인 및 기타 전문 디자인서비스 (CPC 87907)	<u>공급형태 1</u> 독 : 외국에서 수행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수입료에 대하여 국내규칙이 적용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r) 3. 수금 대리 서비스 (CPC 87902)	<u>공급형태 1 및 2</u>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예,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r) 4. 신용 조사 서비스 (CPC 87901)	공급형태 1 및 2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¹¹⁾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록, 물,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r) 6. 통신자문서비스 (CPC 7544)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r) 7. 전화응답서비스 (CPC 87903)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목적지가 국내 또는 외국을 불문하고 다음에 열거된 하위 분야 목록에 따른 우편 품목 ¹²⁾ 의 취급 ¹³⁾ 과 관련된 서비스: (i)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와 다이렉트 메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 ¹⁴⁾ 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기재된 통신문의 취급,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11) CPC 88442에 해당하며 6.F.p)에 기재된 출판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음.

12) “취급”이란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 등의 활동을 말함.

13)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i) 주소가 기재된 소포 및 소화물¹⁵⁾의 취급, (iii) 주소가 기재된 출판물¹⁶⁾의 취급, (iv) 등기 또는 보험가입 우편물로서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취급, (v)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특급배달서비스¹⁷⁾, (vi) 주소가 미기재된 품목의 취급, 그리고 (vii) 문서 교환¹⁸⁾ 그러나 하위 분야 (i), (iv) 및 (v)는 중량이 350그램 미만일 경우 그 가격이 공공 기본요금의 5배 미만인 통신품목¹⁹⁾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등기우편 업무에 해당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된다. (CPC 751의 일부, CPC 71235의 일부²⁰⁾ 및 CPC 73210의 일부²¹⁾)	

14) 예를 들어 서장, 엽서

15) 서적, 카탈로그가 이에 포함됨.

16) 잡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17) 특급배달서비스는 보다 빠른 속도와 신뢰성과 함께 발송지로부터의 수집, 수취인에 대한 개별 배달, 종적 조회, 배송 중 도착지 및 수취인 변경 가능성, 수취 확인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

18) 제3자에 의한 운송 및 임시장소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간 우편품목을 상호 교환하는 자체배달을 허용하는 수단의 제공.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19) “통신품목”이란 발송자가 자체에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한 주소에 전달 및 배달되는, 모든 유형의 물리적 매체에 서면으로 기재된 통신을 의미함. 서적, 카탈로그,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통신품목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통신서비스 이 서비스는 그 운송을 위하여 통신서비스가 필요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a)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 ²²⁾ , 방송 ²³⁾ 은 제외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b) 위성방송 전송서비스 ²⁴⁾	공급형태 1 및 2 유 :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전자 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들에 따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이익 목표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벨 : 약속 안함.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20)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육상 운송

21) 우편물품의 자체 항공 운송

22) 이 서비스는 1.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된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CPC 843의 일부)을 포함하지 않음.

23)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자간의 중계연결은 포함되지 아니함.

24) 이 서비스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통신서비스(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성을 통한,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를 포함함. 이 서비스는 위성서비스 이용의 판매를 포함하나 가정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 서비스는 국내간 연결(위성에 의한 국내영토로부터 국내 영토로의 전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4.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기타 전쟁 물자는 제외) A. 위탁중개인 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위탁중개인 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그리고 CPC 6121의 일부) b) 기타 위탁중개인 서비스 (CPC 621) B. 도매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도매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b) 통신단말기 도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c) 기타 도매서비스 (CPC 622, 에너지 제품 도매서비스 ²⁵⁾ 는 제외)	공급형태 1 및 2 오, 베, 스, 핀을 제외한 유 : 화학제품, 귀금속 (그리고 보석)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 불꽃제조 상품, 가연성 물품 및 폭발 장치, 그리고 독성 물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불 : 의료 및 외과 기구, 의료 물질 및 의료용 도구와 같은 의료용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오, 불, 프, 폴, 루 : 담배 및 담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 도매서비스에 대하여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이 있음. 불, 핀, 폴, 루, 스 : 알콜 음료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불, 체, 핀, 루, 슬, 베 : 의약품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형, 폴 : 상품중개인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프 : 위탁중개인 서비스에 대하여, 신선 식품에 대한 국가적 이해가 있는 17개 시장에서 활동하는 매매업자 및 중개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의약품 도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몰 : 위탁중개인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사,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록, 몰, 네, 폴, 포, 슬, 영 :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우편판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5) CPC 62271를 포함하는 이 서비스는 14.D.중 에너지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C. 소매서비스²⁶⁾</u>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소매서비스 (CPC 61112, CPC 61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통신단말기 소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식품 소매서비스 (CPC 631) 그 밖의(비에너지) 물품의 소매서비스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물품²⁷⁾소매서비스 제외 (CPC 63211 및 63297 제외) <u>D. 프랜차이징</u> (CPC 8929)	

26) 사업서비스의 1.B.및 1.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에너지서비스의 14.E. 및 14.F에 기재된 에너지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27)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물품의 도매는 1.A.k)의 전문직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5. 교육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초등 교육서비스 (CPC 921)	<u>공급형태 1</u> 불, 사, 핀, 프, 이, 물, 루, 스,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사, 핀, 물, 루, 스, 베 : 약속 안함.
B. 중등 교육서비스 (CPC 922)	<u>공급형태 1</u> 불, 사, 핀, 프, 이, 물, 루,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사, 핀, 물, 루,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1 및 2</u> 라 :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 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와 관련된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고등 교육서비스 (CPC 923)	<u>공급형태 1</u> 오, 불, 사, 핀, 물, 루, 스 : 약속 안함. 프 :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시하며 교육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이 : 서비스 공급자가 국가 공인 졸업장 발급을 인가받기 위한 국적조건이 있음. <u>공급형태 2</u> 오, 불, 사, 핀, 물, 루,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1 및 2</u> 체, 슬 : 중등 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 (CPC 92310)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D. 성인 교육서비스</u> (CPC 924)	<u>공급형태 1 및 2</u> 사, 핀, 물, 루, 스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1</u> 오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성인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u>E. 기타 교육서비스</u> (CPC 929)	<u>공급형태 1 및 2</u> 오, 벨, 불, 사,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록, 물, 네, 폴, 포, 루, 베, 스, 영 : 약속 안함.
6. 환경서비스 <u>A. 폐수서비스</u> (CPC 9401) ²⁸⁾ <u>B. 고체/유해폐기물관리</u> <u>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운송은 제외</u> a) 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b)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u>C. 대기 및 기후 보호</u> (CPC 9404) ²⁹⁾	<u>공급형태 1</u> 유 : 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28) 하폐수 서비스에 해당함.

29) 배기가스 정화서비스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D. 토양 및 수질 개선과 정화</u> a) 오염된 토양 및 수질 처리와 개선 (CPC 94060의 일부) ³⁰⁾ <u>E. 소음 및 진동 저감</u> (CPC 9405) <u>F.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u> a)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의 일부) <u>G. 기타 환경 및 부수 서비스</u> (CPC 94090)	
7. 금융서비스	
<u>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u>	<u>공급형태 1 및 2</u> 오, 벨,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네, 폴, 포, 루, 슬, 스, 베, 영 : 다음에 관련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 보험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b)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오 : 유럽공동체에 설립되지 아니한 현지법인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을 대표하여 모집 활동 및 중개를 하는 것은 금지됨(재보험 및 재재보험은 제외). 국제 상업적 항공운송을 제외하고 강제 항공보험은 유럽공동체에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지점만이 인수될 수 있음. 유럽공동체에 설립되지 아니한 현지법인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이 체결하는 계약(재보험 및 재재보험 계약은 제외)에 대해 더 높은 프리미엄 보험세를 지불함. 더 높은 프리미엄 보험세에 대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30)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의 일부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덴 : 유럽공동체에 설립된 회사에 의하여만 강제 항공보험이 인수될 수 있음. 덴마크법 또는 덴마크의 권한있는 당국이 면허를 부여한 보험회사 이외에는,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어떠한 인 또는 회사도, 덴마크 내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 덴마크 선박 또는 덴마크 내 재산에 대하여 덴마크 거주자를 위한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조력할 수 없음. 독 : 유럽공동체에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독일에 설립된 지점에 의하여만 강제 항공보험증권을 인수될 수 있다. 외국 보험회사가 독일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독일 내 설립된 지점을 통해서만 국제 운송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독일 내에서 체결할 수 있음. 프 : 육상 운송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은 유럽공동체에 설립된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인수될 수 있음. 폴 : 재보험, 재재보험 및 국제무역에서의 상품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포 : 유럽공동체에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만 상품, 항공기, 선체 및 책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항공 및 해상운송 보험을 인수할 수 있음. 유럽공동체에 설립된 인 또는 회사만이 포르투갈에서 그러한 보험사업에 대한 중개업자로 활동할 수 있음. 루 : 국제시장에 대한 재보험은 재보험된 위험이 국내시장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공급형태 1 오, 벨,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네, 포, 루, 슬, 스, 베, 영 : 다음에 관한 위험에 관련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 보험중개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b)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불 : 불가리아 공화국 내에서 외국인에게 외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직접 보험에 대하여 약속 안함.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운송보험, 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보험 및 불가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에 관한 책임보험은 외국 보험회사에 의해 직접 인수될 수 없음. 외국 보험회사는 오직 유럽공동체 내 지점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강제 보험제도뿐 아니라 예금보험 및 유사한 보상 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속 안함. 사, 라, 몰 :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 보험서비스에 대해 약속 안함. 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b)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리 :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 보험서비스에 대해 약속 안함. 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b) 리투아니아 내에 위험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육상운송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라, 리, 폴 : 보험 중개에 대하여 약속 안함. 핀 : 유럽공동체에 본점이 있거나 핀란드에 지점이 있는 보험자만이 (공동보험 포함) 직접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보험 중개 서비스의 공급은 유럽공동체 내의 상시적인 영업장소를 조건으로 함. 형 : 유럽공동체에 설립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의한 헝가리 영역 내 직접보험 공급은 헝가리에 등록된 지점 사무소를 통해서만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이 : 보험계리 직종에 대하여 약속 안함. 상품에 대한 운송보험, 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보험 및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에 관한 책임보험은 유럽공동체에 설립된 보험회사만이 인수할 수 있음. 이 유보는 이탈리아로의 수입품과 관련된 국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스 : 직접보험의 공급은 스웨덴에서 인가된 보험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서만 허용됨. 다만, 외국 서비스 공급자 및 스웨덴 보험회사가 같은 그룹의 회사에 속하거나 그들 사이에 협력 협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서 : 보험계리 서비스에 대하여, 거주 요건 및 3년간의 관련 경력 요건이 있음. 공급형태 2 오, 벨, 불, 체, 사,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몰, 네, 폴, 포, 루, 슬, 스, 베, 영 : 중개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 직접보험에 대하여, 불가리아 공화국 영역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불가리아 자연인 및 법인은 불가리아에서의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불가리아에서 보험활동을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공급자와만 보험을 체결할 수 있음. 이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 보상은 불가리아 내에서 지불됨. 강제 보험제도뿐 아니라 예금보험 및 기타 유사 보상 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 상품에 대한 운송보험, 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보험 및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보험은 유럽공동체에 설립된 보험회사에 의하여만 인수될 수 있음. 이 유보는 이탈리아로의 수입품과 관련된 국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 제외) 아래에 표시된 모든 하위 분야	공급형태 1 오, 벨, 불,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네, 폴, 포, 슬, 스, 영 :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벨 : 투자자문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벨기에 내에서 설립이 요구됨. 불 : 통신네트워크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사 : 양도가능 증권의 거래,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예 : 예금 수취에 대하여, 에스토니아 금융감독당국의 인가 및 합자주식회사, 현지법인 또는 지점으로서 에스토니아법에 따른 등록이 요구됨. 예 : 투자펀드의 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관리회사의 설립이 요구되며,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사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리 : 계약형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관리회사의 설립이 요구되며,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사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아 : 투자서비스 또는 투자자문의 제공은 다음의 하나를 요구함. (a) 통상적으로 그 실체가 법인화되거나 제휴 또는 단독 거래자이기를 요구하는 아일랜드에서의 인가(인가는 일정한 경우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서비스 공급자가 아일랜드에 상업적 주채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 서비스가 사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 본점/등록사무소를 아일랜드 내에 보유, 또는 (b)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공동체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의 인가 이 : “promotori di servizi finanziari”(금융 판매원)에 대하여 약속 안함. 라 :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리 : 연금기금 관리에 대하여 상업적 주채가 요구됨. 몰 : 예금의 수취, 모든 유형의 대부,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폴 :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금융자료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공공통신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인가된 운영자의 네트워크의 사용이 요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루 : 금융 리스, 머니마켓상품, 외환, 파생상품, 환율 및 이자율 상품, 양도성 증권, 그리고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의 거래,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 대한 참여, 자산관리 그리고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지불 및 이전서비스는 오직 루마니아에서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허용됨. 베 : (a) 재무부 채권의 발행에 대한 참여, 연금기금관리 : 약속 안함. .(b) 재무부 채권의 발행에 대한 참여, 연금기금관리,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기타 부수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하위 분야 : 신용(모든 종류의 차용)의 수취, 그리고 국내의 법적 실체 및 1인 기업의 외국 신용기관으로부터의 보증 및 약정의 인수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외국인은 국내 은행 및 증권중개회사를 통해서만 외국증권을 제공할 수 있음. 슬로베니아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슬로베니아 공화국 내에서 법인화되거나 외국 투자 회사 또는 은행의 지점이어야 함. 공급형태 2 불 : 통신네트워크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폴 :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금융자료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공공통신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인가된 운영자의 네트워크의 사용이 요구됨.
8.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병원서비스 (CPC 9311) C. 병원 이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CPC 93193)	공급형태 1 오, 벨, 불, 독, 사, 체, 덴,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라, 리, 물, 룩,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D. 사회서비스</u> (CPC 933)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에, 서, 그, 핀, 프, 형, 아, 이, 록, 물, 폴, 포, 루, 스, 베, 슬,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벨 : 조리원과 요양원 및 양로원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u>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u>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 ³¹⁾	<u>공급형태 1</u>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라,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케이터링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u> (CPC 7471)	<u>공급형태 1</u> 불, 형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C. 관광안내서비스</u> (CPC 7472)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형, 이, 리, 물, 폴, 슬, 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31)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 부수서비스 중 12.E.a)의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	
<u>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u> (극장, 라이브 밴드, 서커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u>공급형태 1</u>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사, 체, 핀, 물,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불 :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 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1),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CPC 96192), 그리고 극장 부수서비스(CPC 96193)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에 : 영화관 서비스를 제외하고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9)에 대하여 약속 안함. 리, 라 : 영화관 운영 서비스(CPC 96199의 일부)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u>B. 뉴스제공 서비스</u> (CPC 962)	<u>공급형태 1</u> 불, 사, 체, 에, 형, 리, 물, 루, 폴, 베, 슬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불, 사, 체, 형, 리, 물,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u>C.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u> (CPC 963)	<u>공급형태 1</u>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라,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라,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스포츠 서비스 (CPC 9641)	공급형태 1 및 2 오 : 스키학교서비스 및 산악가이드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체, 라, 물, 폴, 루, 슬 :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사, 예 : 약속 안함.
E. 레크리에이션 파크 및 해변 서비스 (CPC 96491)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11.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	
a) 국제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³²⁾) b) 국제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³³⁾)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 32)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33)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내수운송	
a) 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1 ³⁴⁾) b) 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2 ³⁵⁾)	공급형태 1 및 2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한 국적기준을 충족하는 운영자에게 운수권 일부를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오 :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경영 이사,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되거나 상시적인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의 과반수가 유럽연합 시민에 의해 보유되어야 함. 벨, 사, 체, 에, 핀, 헝, 리, 몰, 루, 스, 베, 슬 : 약속 안함.
C. 철도운송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 34)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35)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D. 도로운송</u>	
a) 여객운송 (CPC 7121 및 CPC 7122)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b) 화물운송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 제외 ³⁶⁾)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E. 연료 이외 상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³⁷⁾</u> (CPC 7139)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라, 록,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36) CPC 71235의 일부로서 통신서비스 중 2.A.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37)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4.B.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2. 운송부수서비스³⁸⁾	
A. 해운부수서비스	공급형태 1
a) 해상화물취급서비스	유 : 해상화물취급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오, 불, 사, 체, 독, 예, 형, 리, 물, 폴, 루, 스, 베, 슬 : 선원 포함 선박대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통관서비스	공급형태 2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서비스	제한 없음.
e) 해운대리업서비스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g) 선원포함 선박대여 (CPC 7213)	
h) 예선서비스 (CPC 7214)	
i) 해상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38) 사업서비스의 1.F.1)1.부터 1.F.1)4.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내수운송 부수서비스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 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선원포함 선박대여 (CPC 7223) e) 예선서비스 (CPC 7224) f) 내수운송 지원서비스 (CPC 745의 일부) g)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공급형태 1 및 2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운항권 일부를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유 : 예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독, 에, 핀, 형, 라, 리, 물, 루, 슬, 베, 스 : 선원 포함 선박대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철도운송 부수서비스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 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예선서비스 (CPC 7113) e) 철도운송 지원서비스 (CPC 743)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공급형태 1 유 : 예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도로운송 부수서비스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e) 도로운송 지원서비스 (CPC 744)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에, 형, 라, 리, 물, 폴, 루, 슬, 베, 스 :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E. 항공운송 부수서비스	
a) 지상조업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 포함)	공급형태 1 유 : 케이터링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불, 사, 체, 형, 물,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b) 창고업 (CPC 742의 일부)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c) 화물운송대리업 (CPC 748의 일부)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CPC 734)	공급형태 1 및 2 유 : 유럽공동체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되어야 함. 또는 면허를 부여하는 회원국이 허용하는 경우, 유럽공동체의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도 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소유 및 통제에 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해 소유될 것이 요구됨. 예외적으로, 유럽공동체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영능력 수요, 또는 유럽공동체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항공사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유럽공동체 항공사에게 유럽공동체 항공사에게 면허를 부여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음.
e) 판매 및 마케팅 f) 컴퓨터 예약시스템	공급형태 1 및 2 유 : 유럽공동체 항공사가 유럽공동체 내에서 제공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³⁹⁾를 대한민국에 있는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유럽공동체의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가 유럽공동체 내에서 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각각 유럽공동체 내의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가 대한민국의 항공사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는 유럽공동체 항공사가 대한민국의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F. 연료 이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서비스 ⁴⁰⁾ a) 파이프라인에 의해 운송되는 연료 외의 상품 창고업 (CPC 742의 일부)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핀, 프, 그,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39) “동등한 대우”라 함은 유럽공동체 항공사 및 유럽공동체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40)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보조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4.C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3. 기타 운송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 제공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물, 폴, 루, 스,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모든 주어진 운송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이 약속 목록에 명기된 제한을 저해하지 아니함.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물, 폴, 루, 스, 베, 슬 : 약속 안함.
14. 에너지서비스	
A. 광업부수서비스 (CPC 883) ⁴¹⁾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B.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CPC 7131)	공급형태 1 유: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라, 룩,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C.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연료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핀, 프, 그, 아, 이, 리, 룩,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41)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링 및 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서비스, 머드 제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피싱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 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끝처리 기구 공급 및 설치, 시멘트 (프레스 펌핑), 스티물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 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보수 서비스 그리고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이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u>D. 고체, 액체 및 기체 연료와 관련 제품의 도매서비스</u> (CPC 62271) <u>그리고 전력, 증기 및 온수 도매서비스</u>	<u>공급형태 1</u> 유 : 전력, 증기 및 온수의 도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E. 자동차연료 소매서비스</u> (CPC 613)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F.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판매</u> (CPC 63297) <u>그리고 전력,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 소매서비스</u>	<u>공급형태 1</u> 유 : 전력,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u>벨, 불, 사, 체,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록, 몰, 네, 폴, 포, 슬, 영</u> :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우편주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우편주문에 대하여 제한 없음.)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u>G.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u> (CPC 887)	<u>공급형태 1</u> 유 : 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컨설팅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5.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 서비스 (CPC 9701)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b) 머리 미용 서비스 (CPC 97021)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d)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미장 서비스 (CPC 97029)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 복지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파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 ⁴²⁾ (CPC ver. 1.0 97230)	<u>공급형태 1</u> 유 : 약속 안함. <u>공급형태 2</u> 제한 없음.
g) 통신 연결 서비스 (CPC 7543)	<u>공급형태 1 및 2</u> 제한 없음.

42)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1.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1.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8.A 및 8.C)에 기재됨.

부속서 7-가-2
유럽공동체 당사자
제7.13조에 합치하는 약속의 목록
(설립)

1. 아래의 약속 목록은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경제적 활동, 그리고 유보에 의해 그러한 활동에서 대한민국의 설립 및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유럽공동체 당사자에 의해 약속되는 분야 또는 하위분야 그리고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아래 목록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서 설립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가.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나.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다.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제7.11조 및 제7.12조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그리고 일정한 활동이 환경적으로 보호받는 구역 또는 특별히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흥미가 있는 지역에서 수행될 수 없도록 하는 비차별적 요건)는, 비록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7.11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법적 형태의 유형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유럽공동체 당사자에 의해 유지되거나 채택되기 위하여 설립에 관한 아래의 약속 목록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6. 아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7.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유럽공동체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형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공화국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부동산 오, 블, 사, 체, 덴, 에, 그, 핀, 형, 아, 이 라, 리, 몰, 폴, 루,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오 : 외국의 자연인과 외국 법인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리스뿐 아니라 취득 또는 구매는 권한 있는 지역 당국(Länder)의 인가를 요구하며, 동 지역 당국은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해가 영향 받는지 여부를 검토함. 블 : 외국의 자연인 및 외국 법인(지점을 통하는 방식 포함)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불가리아의 법인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외국 법인 및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은 재무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 및 부동산의 제한된 재산권¹⁾을 취득할 수 있음. 이러한 허가 요건은 불가리아에 이미 투자한 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이 결정을 채택하는 데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결정의 채택을 저지할 수 있도록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허가를 조건으로 내각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한 지역에서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사 : 약속 안함. 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체코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의 실체의 토지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덴 : 비거주 물리적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함.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에 의한 농업용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음. 에 : 농업용 및 임업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²⁾ 그 : 법 제1892/90에 따라, 시민이 국경 근접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함. 행정적 관행에 따라, 허가는 직접투자에 쉽게 부여됨. 핀 : (아랜드(Åland) 섬): 랜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아랜드(Åland) 아일랜드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아랜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섬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

1) 불가리아 재산법은 다음의 제한된 재산권을 인정함 : 사용권, 건축권, 상부구조물 설치권과 지역권 및 채취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형 : 외국 투자자에 의한 토지 및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음.³⁾ 아 : 국내 또는 외국 회사 또는 외국 국민이 아일랜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그러한 토지가 (농업관련 산업이 아닌) 산업용인 경우 “기업, 무역 및 고용부”로부터의 이 효과를 위한 증명을 조건으로 이 요건이 면제됨. 이 법은 도시 경계 내의 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부동산 구매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라 :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 99년을 넘지 아니하는 토지 리스는 허용됨. 리 : 토지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⁴⁾ 몰 : 부동산 재산권 취득에 관한 몰타 법 및 규정의 요건이 계속 적용됨. 폴 : 외국인(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부동산 취득에는 허가가 요구됨. 국가 소유 재산의 취득(즉, 민영화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 루 : 루마니아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본부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법인뿐 아니라 루마니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은 증여법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음. 베 : 외국인 자본 참여를 통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내에 설립된 법인은 슬로베니아공화국 영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인이 슬로베니아공화국에 설립한 지점⁵⁾은 그들이 설립된 목적에 따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만을 취득할 수 있음. 다른쪽 당사자 법인 또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회사가 국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별 허가를 조건으로 함. 슬 :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슬로바키아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토지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3)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4)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5) 상업회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슬로베니아공화국 내에 설립된 지점은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나, 활동과 관련하여 지점에 대한 대우는 GATS 제28조 사항에 따른 현지법인과 동일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u>공익사업</u> 유 : 국가 또는 지방 수준에서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제활동은 공공독점 또는 사적 운영자에 대해서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⁶⁾⁷⁾
모든 분야	<u>설립의 종류</u> 유 :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형성되고, 공동체 내에 등록된 사무소, 경영본부 또는 주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의) 현지법인에 부여되는 대우는 대한민국 회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설립한 지점 또는 대리점에 부여되지 아니함.⁸⁾ 불 : 지점의 설립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에 : 최소 경영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이 유럽공동체 내에 거주해야 함. 핀 : 핀란드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에서 동업자로서 사업을 행하는 대한민국인은 사업 허가가 필요하고 유럽공동체 내에 영구 거주해야 함.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원 및 대리인의 최소 절반이 국적 및 거주요건이 있음. 그러나 특정 회사에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설립자의 절반 및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에 대하여 영구 거주가 요구됨.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동 법인 또한 거주 요건을 조건으로 함. 대한민국의 조직이 핀란드에 지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허가가 요구됨. 대한민국의 조직 또는 유럽연합의 시민이 아닌 자연인에게는 유한회사의 설립자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됨. 이 : 산업, 상업, 기술 활동에 대한 접근은 거주 허가 및 그 활동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 인가를 조건으로 함. 불, 폴 : 대표사무소의 운영 범위는 그 대표사무소가 대표하는 외국의 모회사의 광고 및 홍보만을 포함할 수 있음. 폴 :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지점에 대하여 약속 안함. 대한민국 투자자는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합자주식회사 (법률서비스의 경우, 오직 등록제휴 및 합자회사)의 형태로만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루 : 상업회사의 집행인 총 수의 절반뿐 아니라 이사회의 단독 집행인 또는 회장은 회사 계약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 상업회사 감사와 그 대리인의 과반수는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

6) 공익사업이 중앙 정부 이하의 수준에서도 종종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별 양허를 열거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약속 목록의 구체적 각주에서는 공익사업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가 예시적이며 비열거적으로 제시될 것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스 : (스웨덴에 법적 실체를 설립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회사는 독립적인 경영진과 별도의 회계를 가진 스웨덴에서 설립된 지점을 통하여 상업적 활동을 수행해야 함.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을 가진 건설 프로젝트는 지점을 설립하거나 상주 대표를 임명하는 요건으로부터 면제됨. 유한회사(합자주식회사)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설립자에 의해 설립될 수 있음. 설립자 또는 설립자들은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스웨덴인인 법적 실체여야 함. 제후는 각 동업자가 스웨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설립주체가 될 수 있음. 유사한 조건이 모든 다른 형태의 법적 실체의 설립에 적용됨.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50퍼센트 이상이 스웨덴에 거주해야 함.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또는 스웨덴 시민으로서 스웨덴에서 상업적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활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주 대표를 지방 당국에 등록해야 함. 일정한 경우에 필요 없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 거주 요건은 면제될 수 있음. 베 : 대한민국 회사의 지점 설립은 최소 1년간 원적지국에서 모회사가 법원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함. 슬 : 기업을 대표하여 행동하도록 위임받은 인으로 상업 등기소에 그 이름이 등록된 대한민국의 자연인은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의 거주 허가를 제출할 것이 요구됨.
모든 분야	투자 서 : 외국 정부 및 외국의 공적 실체⁹⁾의 직접적인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회사 또는 그 밖의 실체를 통한, 스페인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사전 인가가 필요함. 불 : 공공(회원국 또는 지자체)의 보유 지분이 총 주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인가가 필요함. 회원국 또는 공공의 재산의 이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경제활동은 양허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외국인 투자자는 민영화에 참여할 수 없음. 외국인 투자자 및 대한민국의 자본참여에 의해 통제를 받는 불가리아 법인은 a) 영해,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부터 천연자원을 시굴, 개발 또는 채굴하고 b) “a)”에 명시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에 지배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됨.

7) 이 제한은 통신 서비스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8) 유럽공동체조약 제48조에 따라 이러한 현지법인들은 유럽공동체 법인으로 간주됨. 유럽공동체의 경제와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연계를 가지는 범위에서 이 현지법인들은 유럽공동체 내 부시장의 수혜를 받으며, 이는 특히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설립과 서비스공급의 자유를 포함함.

9) 그러한 투자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체에 대한 비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프 : 기존 프랑스 기업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33.33퍼센트를, 또는 상장된 프랑스 회사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대한국민인의 구매는 다음의 규제를 조건으로 함. - 연매출이 7천6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프랑스 기업에는 이러한 액수가 만족된다는 사전 통지 및 증명 후 15일이 경과한 후 7백6십만 유로 미만의 투자가 자유로움. - 사전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경제부 장관이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투자 연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인가는 묵시적으로 그 밖의 투자에도 부여됨.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보유는 프랑스 정부가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는, 공공에 제공되는 지분의 변동가능한 총량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일정한 상업, 산업, 기술적 활동에 있어 설립을 위하여 경영 이사가 상시 거주 허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 구체적인 인가가 요구됨. 핀 : 대한민국 소유자가 주요 핀란드 회사 또는 주요 핀란드 사업체(1천명 초과를 고용하거나 연매출이 1억6천8백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자산총액10이 1억6천8백만 유로를 초과)의 의결권의 3분의 1일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하는 지분 취득은 핀란드 당국의 확인을 조건으로 함.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손상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 확인이 거부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은 통신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형 :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한 대한민국인 지분 보유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거나 유지될 수 있음.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의 의결권은 일정 경우에 제한될 수 있음.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방위, 운송, 통신 및 에너지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많은 지분의 취득은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모든 분야	지리적 구역 핀 : 아랜드 섬에서는, 아랜드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아랜드 섬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는 법인의 설립권에 제한이 있음.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농업, 수렵업 (ISIC 개정판 3.1: 011, 012, 013, 014, 015)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제외 ¹¹⁾	오, 형, 물, 루 : 농업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 사 : 대한민국 투자자의 지분 보유는 49퍼센트까지만 허용됨. 프 : 대한민국 국민의 농업기업 설립 및 대한민국 투자자의 포도밭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아 : 대한민국 거주자가 밀가루 제분 활동을 위하여 설립을 하는 것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B. 임업 및 벌목업 (ISIC 개정판 3.1: 020)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¹²⁾ 는 제외	불 : 벌목 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어업 및 양식업 (ISIC 개정판 3.1: 0501, 0502) 자문 및 컨설팅 ¹³⁾ 서비스는 제외	약속 안함.
3. 광업 및 채석업¹⁴⁾ A. 석탄, 갈탄의 채광; 토탄의 채광 (ISIC 개정판 3.1: 10) B.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¹⁶⁾ (ISIC 개정판 3.1: 1110) C. 금속 광업 (ISIC 개정판 3.1: 13) D. 기타 광업 및 채석업 (ISIC 개정판 3.1: 14)	유 : 유럽공동체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공동체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¹⁵⁾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제조업¹⁷⁾	

11)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12)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13)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1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15)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16) 19.A 하의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전에서 요금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광업부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17) 이 분야는 사업서비스의 6.F.h)에 기재된 제조업부수 자문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음식료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5)	제한 없음.
B. 담배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6)	제한 없음.
C. 직물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7)	제한 없음.
D. 의복 제조업; 모피의 가공 및 염색 (ISIC 개정판 3.1: 18)	제한 없음.
E. 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 가방, 핸드백, 안장, 마구류 및 신발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9)	제한 없음.
F.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목제품, 코르크 제품 제조업; 고공업 및 조물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0)	제한 없음.
G.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1)	제한 없음.
H.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사업¹⁸⁾ (ISIC 개정판 3.1: 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업은 제외 ¹⁹⁾)	이 :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적 요건이 있음.
I. 코르크스 제조로 제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31)	제한 없음.
J. 석유 정제품 제조업²⁰⁾ (ISIC 개정판 3.1: 232)	유 : 유럽공동체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공동체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²¹⁾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18) 이 분야는 제조활동에 제한되며, 시청각관련 또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19)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의 6.F.p)에 기재됨.

20)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21)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K. 폭발물질 제조업을 제외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 폭발물질 제조업 제외)	제한 없음.
L.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5)	제한 없음.
M.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6)	제한 없음.
N. 제1차 금속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7)	제한 없음.
O. 기계류 및 장비를 제외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8)	제한 없음.
P. 기계 제조업	
a) 일반목적의 기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1)	제한 없음.
b)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목적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23, 2924, 2925, 2526, 2929)	제한 없음.
c)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구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3)	제한 없음.
d) 사무, 회계 및 계산용 기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0)	제한 없음.
e)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류 및 장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1)	제한 없음.
f)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기기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2)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Q.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3)	제한 없음.
R.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4)	제한 없음.
S. 기타 (비군사용) 운송장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5, 군함, 군용 항공기 및 기타 군사용 운송장비 제외)	제한 없음.
T. 가구 제조업;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61, 369)	제한 없음.
U. 재활용 (ISIC 개정판 3.1: 37)	제한 없음.
5. 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생산과 자체적 운송 및 유통²²⁾ (원자력 기반 전력 생산은 제외)	
A. 전력생산, 전력의 자체적 운송 및 유통 (ISIC 개정판 3.1: 4010의 일부) ²³⁾	유 : 약속 안함.
B. 기체 연료 생산, 기체 연료의 자체적 유통 (ISIC 개정판 3.1: 4020의 일부) ²⁴⁾	유 : 약속 안함.
C. 증기 및 온수 생산, 증기 및 온수의 자체적 유통 (ISIC 개정판 3.1: 4030의 일부) ²⁵⁾	유 : 유럽공동체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공동체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²⁶⁾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2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23)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전력 운송 및 유통 시스템은 포함하지 않음.

24)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및 기체 연료의 운송,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가스의 운송 및 유통, 그리고 천연가스 및 기체 연료의 판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6.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²⁷⁾ 공증, “huissiers de justice (집행관 업무)” 또는 다른 “officiers publics et ministériels (공무원 업무)”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서비스는 제외	오 :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자격을 지닌 대한민국 변호사의 지분 참여 및 법무회사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은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대한민국 변호사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벨 : 비형사사건에 있어 “Cour de cassation (최고법원)”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가 적용됨. 프 : “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 (헌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를 조건으로 함. 덴 :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와 덴마크에 등록된 법무회사만이 덴마크 법무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만이 덴마크 법무회사의 임원이 되거나 경영진이 될 수 있음.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이 요구됨. 프 : 일정한 유형의 법적 형태(“association d’avocats (변호사 조합)” 및 “société en participation d’avocat (변호사 참여 회사)”)는 프랑스 변호사협회에 완전하게 가입된 변호사를 위하여 유보됨. 프랑스법 또는 유럽공동체법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회사 지분의 75퍼센트를 보유한 파트너들의 최소 75퍼센트는 프랑스 변호사협회에 완전하게 가입된 변호사여야 함. 형 : 상업적 주체는 헝가리 변호사 “ügyvéd (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 “ügyvédi iroda (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설립한 사무소)”와 제휴형태를 취하거나 대표사무소 형태를 취해야 할 것임. 폴 : 유럽공동체 변호사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도 이용가능하나, 외국 변호사는 등록제휴 및 합자회사의 법적 형태만 이용할 수 있음.

25)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증기 및 온수의 운송 및 유통과 증기 및 온수의 판매는 포함하지 아니함.

26)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27) 법률자문 서비스, 법률대리 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공동체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지역의 법과 관련하여서만 인가됨.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이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공동체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공동체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1. 회계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 86212 “감사서비스” 제외, CPC 86213, CPC 86291 및 CPC 86220)	오 : 대한민국 회계사(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지분 참여 및 오스트리아인인 법인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은, 그 회계사가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사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 덴 : 덴마크의 인가된 회계사와 제휴를 하기 위하여 외국 회계사는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함.
b) 2. 감사 서비스 (CPC 86211 및 86212 회계서비스 제외)	오 : 대한민국 감사인(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지분 참여 및 오스트리아인인 법인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은, 그 감사인이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사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상황 체 및 슬 : 최소 60퍼센트의 지분 또는 의결권이 국민에게 유보됨. 덴 : 덴마크의 인가된 회계사와 제휴를 하기 위하여 외국 회계사는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함. 핀 : 핀란드 책임회사의 감사인 중 최소 1인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이 있음. 라 : 서약감사인 상업회사에서는 서약감사인 또는 유럽공동체의 서약감사인 상업회사가 의결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해야 함. 리 : 75퍼센트 이상의 지분이 유럽공동체 감사인 또는 감사회사에 소유되어야 함. 스 :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한 감사인들만이 주식보유자가 되거나 (공식적 목적으로) 자격있는 감사를 행하는 회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 승인을 위해 거주가 요구됨. 베 : 감사회사에서 외국인의 지분은 총 지분의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c) 세무자문서비스 (CPC 863) ²⁸⁾	오 : 대한민국 조세 자문사(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지분 참여 및 오스트리아인인 법적 실체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은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한 제한은 동 조세 자문사가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 사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

외국 변호사가, 동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동 국가에 속하는 의뢰인을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28) 1.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건축설계서비스 및 e)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불 :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한민국 투자자는 불가리아 투자자와 제휴하여 또는 하청업체로서 활동해야 함. 라 : 건축설계서비스의 경우, 모든 범위의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프로젝트 계약을 맺을 권리를 얻기 위하여 라트비아에서 프로젝트 분야에 3년간 활동해야 하며, 대학학위가 요구됨.
f)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g)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불 :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한민국 투자자는 불가리아 투자자와 제휴하여 또는 하청업체로서 활동해야 함.
h) 의료 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 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	사, 예, 핀, 몰 : 약속 안함. 오 : 치의료 서비스,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그리고, 치의료 서비스,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사에 대하여 제한 없음. 독 : 의사와 치과 의사가 공공보험 가입자를 치료하도록 인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 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에서 의사 및 치과 의사의 부족 프 : 유럽공동체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société d'exercice liberal (자유 영업 회사)” 및 “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 (전문인 회사)”만을 이용할 수 있음. 라 :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에서 의사 및 치과 의사의 부족 불, 리 : 서비스의 공급은 인구와 기존의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수립되는 보건서비스 계획에 근거한 인가를 조건으로 함. 베 : 사회의료, 위생, 피부의학, 의료/생태서비스, 혈액공급, 혈액준비, 수혈 및 검시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영 : 국립보건서비스 소속 의사를 위한 설립은 의료 인력계획을 조건으로 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오, 사, 예, 몰, 베 : 약속 안함. 불 :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형 :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그 분야의 노동시장 조건 프 : “société d'exercice liberal (자유 영업 회사)” 및 “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 (전문인 회사)”을 통해서만 공급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j) 1. 조산원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불, 체, 핀, 형, 물, 베, 슬 : 약속 안함. 프 : 유럽공동체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société d'exercice liberal (자유 영업 회사)” 및 “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 (전문인 회사)”만을 이용할 수 있음. 리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오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활동만 허용됨. :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실존분석적 정신요법사, 식이요법사 및 영양사 불, 물 : 약속 안함. 핀, 베 :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약속 안함. 프 : 유럽공동체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société d'exercice liberal (자유 영업 회사)” 및 “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 (전문인 회사)”만을 이용할 수 있음. 리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 라 : 외국인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의 고용 상황
k)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 (CPC 63211) 약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²⁹⁾ (CPC)	오, 불, 사, 핀, 물, 폴, 루, 스, 베 : 약속 안함. 벨, 독, 덴, 에, 서, 프, 이, 형, 아, 라, 포, 슬 :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약국의 지리적 밀도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	제한 없음.

29) 그 밖의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일부 회원국의 경우, 조제약의 공급만이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연구개발서비스³⁰⁾	
a)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유 :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유럽공동체에 본부를 둔 유럽공동체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b)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2 심리학자 제공 서비스 제외) ³¹⁾	제한 없음.
c)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유 :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공동체 회원국 국민과 유럽공동체에 본부를 둔 유럽공동체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D. 부동산 서비스³²⁾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 (CPC 821)	제한 없음.
b) 요금 또는 계약에 기반 (CPC 822)	제한 없음.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은 임대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리 : 선박은 리투아니아인인 자연인 또는 리투아니아에 설립된 회사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스 : 대한민국인이 선박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스웨덴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 스웨덴의 영향력이 지배적임이 증명되어야 함.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유 : 유럽공동체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한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공동체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야 함. 항공기는 특정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소유 및 통제(이사의 국적을 포함)에 관한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해야 함. 단기 리스 계약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30)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31)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에 기재된 CPC 85201의 일부임.

32)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자연인 및 법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CPC 83102 및 CPC 83105)	제한 없음.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 CPC 83107, CPC 83108 및 CPC 83109)	제한 없음.
e) 개인·가정물품 관련 (CPC 832)	제한 없음. 단, 벨 및 프는 CPC 832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f) 통신장비임대 (CPC 7541)	제한 없음.
F. 기타 사업서비스	
a) 광고 (CPC 871)	제한 없음.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CPC 864)	제한 없음.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제한 없음.
d)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형 :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서비스 ³³⁾ (CPC 8676)	제한 없음.
f)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1의 일부)	제한 없음.
g)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2의 일부)	제한 없음.
h) 제조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4의 일부 및 CPC 885의 일부)	제한 없음.
i) 직업소개, 파견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1. 임원급 소개 서비스 (CPC 87201)	불, 사, 체, 독, 에, 핀, 라, 리, 물,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서 : 국가 독점
i) 2. 직업소개 서비스 (CPC 87202)	오, 불, 사, 체, 에, 핀, 라, 리, 물, 폴, 포, 루, 슬 : 약속 안함 벨, 서, 프, 이 : 국가 독점 독 :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노동 시장의 상황 및 발전
i) 3. 사무지원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3)	오, 불, 사, 체, 독, 에, 핀, 라, 리, 물,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이 : 국가 독점
i) 4. 모델 에이전시 서비스 (CPC 87209의 일부)	제한 없음.
i) 5. 가사보조인력, 기타 상업 또는 산업근로자, 간호 및 기타 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4, 87205, 87206, 87209)	형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약속 안함 형 : 제한 없음.
j) 1. 조사서비스 (CPC 87301)	벨, 불, 사, 체, 독, 서, 에,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룩, 물, 네,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덴 :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국적 및 거주요건이 있음. 공항수위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에, 핀, 라, 리, 물, 폴, 루, 베, 슬 : 국민과 국가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면허가 부여될 수 있음. 서 : 시장접근은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함. 인가 부여시 내각은 능력, 직업적 일체성과 독립성, 그리고 주민 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하여 제공되는 보호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함.
k) 과학,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³⁴⁾ (CPC 8675)	프 :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탐사 및 예비조사를 위한 구체적 인가가 요구됨.
l) 1.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제한 없음.

33)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은 마케팅 승인 또는 이용 승인의 부여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에 적용됨. (예: 자동차 검사, 식품 검사)

3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은 광업(예: 광물, 석유 및 가스)과 관련된 일정한 활동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l)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라 : 국가 독점 스 : 투자자가 자신의 터미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됨. 주요 기준 : 공간 및 능력 제한
l)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스 : 투자자가 자신의 터미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됨. 주요 기준 : 공간 및 능력 제한
l) 4.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제한 없음.
l)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용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 ³⁵⁾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제한 없음.
m) 빌딩청소 서비스 (CPC 874)	제한 없음.
n) 사진서비스 (CPC 875)	제한 없음.
o) 포장서비스 (CPC 876)	제한 없음.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리, 라 : 출판 분야의 설립권은 국가에 등록된 법인에만 부여됨(지점은 불가). 폴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편집장에 대해서 국적요건이 있음. 스 :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출판자 및 소유자에 대해서 거주요건이 있음.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제한 없음.

35)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CPC 8868)는 6.F.1)1.부터 6.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CPC 845)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r) 1.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덴 : 공인 번역사 및 통역사에 대한 인가는 그들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폴 : 서약한 통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형, 슬 : 공식 번역 및 통역에 대하여 약속 안함.
r) 2. 인테리어 디자인 및 기타 전문 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제한 없음.
r) 3. 수금 대리 서비스 (CPC 87902)	이, 포 :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r) 4. 신용 조사 서비스 (CPC 87901)	벨 : 소비자 신용데이터 뱅크의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이, 포 :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³⁶⁾	제한 없음.
r) 6. 통신자문서비스 (CPC 7544)	제한 없음.
r) 7. 전화응답서비스 (CPC 87903)	제한 없음.
7. 커뮤니케이션서비스	
A. 우편 및 쿠리어서비스 목적지가 국내 또는 외국을 불문하고 다음에 열거된 하위 분야 목록에 따른 우편 품목 ³⁷⁾ 의 취급 ³⁸⁾ 과 관련된 서비스: (i)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와 다이렉트 메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 ³⁹⁾ 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기재된 통신문의 취급,	제한 없음.

36) CPC 88442에 해당하며 6.F.p)에 기재된 인쇄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37) “취급”이란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 등의 활동을 말함.

38)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39) 예를 들어 서장, 엽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i) 주소가 기재된 소포 및 소화물⁴⁰⁾의 취급, (iii) 주소가 기재된 출판물⁴¹⁾의 취급, (iv) 등기 또는 보험가입 우편물로서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취급, (v)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특급배달서비스⁴²⁾, (vi) 주소가 미기재된 품목의 취급, 그리고 (vii) 문서 교환⁴³⁾ 그러나 하위 분야 (i), (iv) 및 (v)는 중량이 350그램 미만일 경우 그 가격이 공공 기본요금의 5배 미만인 통신품목⁴⁴⁾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등기우편 업무에 해당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제외된다. (CPC 751의 일부, CPC 71235의 일부⁴⁵⁾ 및 CPC 73210의 일부⁴⁶⁾)	
B. 통신서비스 이 서비스는 그 운송을 위하여 통신서비스가 필요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40) 서적, 카탈로그가 이에 포함됨.

41) 잡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42) 특급배달서비스는 보다 빠른 속도와 신뢰성과 함께 발송지로부터의 수집, 수취인에 대한 개별 배달, 종적 조회, 배송 중 도착지 및 수취인 변경 가능성, 수취 확인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

43) 제3자에 의한 운송 및 임시장소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간 우편품목을 상호 교환하는 자체배달을 허용하는 수단의 제공.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44) “통신품목”이란 발송자가 자체에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한 주소에 전달 및 배달되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에 서면으로 기재된 통신을 의미함. 서적, 카탈로그,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통신품목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45)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육상 운송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 ⁴⁷⁾ , 방송 ⁴⁸⁾ 은 제외	제한 없음. ⁴⁹⁾
b) 위성방송 전송서비스 ⁵⁰⁾	유 :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전기 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 틀에 따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이익 목적을 보호하는 의무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벨 : 약속 안함.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제한 없음.
9.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그 밖의 전쟁 물자는 제외)	오 : 불꽃제조 상품, 가연성 품목 및 폭발 장치, 그리고 독성 물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의약품 및 담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공동체 내에 본부를 가진 유럽공동체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핀 : 알콜성 음료 및 의약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음에 언급된 모든 하위 분야 ⁵¹⁾	
A. 위탁중개인 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위탁중개인 서비스 (CPC 6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제한 없음.

46) 우편물품의 자체 항공 운송

47) 이 서비스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된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CPC 843의 일부)을 포함하지 않음.

48)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자간의 중계연결은 포함하지 아니함.

49)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일정한 통신 운영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유지함. 그러한 회원국은 미래에도 이러한 지분 보유를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는 시장접근 제한이 아님. 벨기에에서 벨가콤에 대한 정부의 지분 보유와 의결권은 정부기업의 개혁에 관한 1991년 3월 21일자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의 사례와 같이 입법권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됨.

50) 이 서비스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통신서비스(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성을 통한,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를 포함함. 이 서비스는 위성서비스 이용의 판매를 포함하나 가정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51)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화학제품, 의약품, 의료 및 외과 기구, 의료 물질, 의료용 도구와 같은 의료용품, 군사장비 및 귀금속 (그리고 보석)의 유통에 적용되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담배 및 담배제품 및 알콜성 음료의 유통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기타 위탁중개인 서비스 (CPC 621)	제한 없음.
B. 도매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도매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제한 없음.
b) 통신단말기 도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제한 없음.
c) 기타 도매서비스 (CPC 622, 에너지제품의 도매서비스 ⁵²⁾ 는 제외)	프, 이 :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 프 : 도매 약국의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약국의 지리적 밀도
C. 소매서비스⁵³⁾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소매서비스 (CPC 61112,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서, 프, 이 :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 벨, 불, 덴, 프, 이, 물, 포 : 백화점(프랑스의 경우 대형 매장에 대해서만)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매장의 수와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및 새로운 고용 창출

52) CPC 62271을 포함하는 이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D에 기재됨.

53) 사업서비스의 6.B. 및 6.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에너지서비스의 19.E. 및 19.F에 기재된 에너지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통신단말기 소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식품 소매서비스 (CPC 631) 그 밖의 (비에너지) 상품의 소매서비스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 소매서비스 제외⁵⁴⁾ (CPC 63211 및 CPC 63297을 제외한 CPC 632)	아, 스 : 알콜성 음료의 소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스 : 의류, 신발 및 판매지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식품의 일시적인 판매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매장에 대한 영향
<u>D. 프랜차이즈</u> (CPC 8929)	제한 없음.
10. 교육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u>A. 초등 교육서비스</u> (CPC 921) <u>B. 중등 교육서비스</u> (CPC 922) <u>C. 고등 교육서비스</u> (CPC 923)	유 : 교육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적 운영자에 대한 지분 보유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오 : 고등교육서비스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성인 학교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 외국인인 자연인 및 외국 협회의 초등 및/또는 중등 교육서비스 공급과, 고등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체, 슬 :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중등 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CPC 92310)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54)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의 소매는 6.A.k)의 전문직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성인 교육서비스 (CPC 924)	사, 핀, 물, 루, 스 : 약속 안함. 그 : 초등 및 중등 학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국가 공인 졸업장을 부여하는 고등 교육기관에 대하여 약속 안함. 서, 이 : 공인 졸업장 또는 학위를 발급하도록 인가된 사립 대학의 설립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관련 절차에는 의회의 권고가 포함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설립의 밀도 형, 슬 : 설립되어 있는 학교의 수는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지방 당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고등학교 및 그 밖의 고등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당국) 라 :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 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와 관련된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베 : 초등교육에 대하여 약속 안함. 중등 및 고등학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E. 기타 교육서비스 (CPC 929)	오, 벨, 불, 사,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룩, 물, 네, 폴, 포, 루, 베, 스, 영 : 약속 안함. 체, 슬 : 교육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적 운영자에 대한 지분 보유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11. 환경서비스⁵⁵⁾ A. 폐수서비스 (CPC 9401) ⁵⁶⁾ B. 고체/유해폐기물관리 <u>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운송은 제외</u> a) 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b)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C. 대기 및 기후 보호 (CPC 9404) ⁵⁷⁾	제한 없음.

55)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56) 하폐수 서비스에 해당함.

57) 배기가스 정화서비스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토양 및 수질 개선과 정화 a) 오염 토양 및 수질 처리 및 개선 (CPC 9406의 일부)⁵⁸⁾ E. 소음 및 진동 저감 (CPC 9405) F.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 a)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의 일부) G. 기타 환경 및 부수 서비스 (CPC 9409)	
12. 금융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오 : 대한민국 보험자의 지점 사무소를 위한 면허는, 그 보험자가 대한민국에서 합자주식회사 또는 상호 보험 조합과 대응되거나 동등한 법적 형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거부됨. 불, 서 : 불가리아 또는 스페인에 일정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립하기 전에 대한민국 보험자는 최소 5년간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운영하도록 인가를 받았어야 함. 그 : 설립의 권리는 대표 사무소의 창설 또는 그 밖의 보험회사의 상시 주재를 포함하지 아니함. 단, 그 사무소가 대리점, 지점 또는 본점으로 설립된 경우는 제외함. 핀 : 권한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발기인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최소 절반이 유럽공동체 내에 거주지를 보유해야 함. 대한민국 보험자는 법정 연금 보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점으로서의 핀란드 내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이 : 지점의 설립 인가는 궁극적으로 감독 당국의 평가를 조건으로 함.

58) 자연 및 경관 보호서비스의 일부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불, 폴 : 보험 중개업자에 대해서 국내 법인화가 필요함(지점은 불가). 포 : 포르투갈 내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보험회사는 최소 5년의 사전 운영 경험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직접 지점 설립은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형성된 회사를 위하여 유보되어 있는 보험 중개업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음. 슬 : 대한민국인은 합자주식회사의 형태로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현지법인을 통해 보험업을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베 : 외국인 투자자는 보험회사의 민영화에 참여할 수 없음. 상호 보험 기관으로의 가입은 슬로베니아 공화국에 설립된 회사(지점은 불가)와 내국인인 자연인에 제한됨. 자문서비스 및 청구결산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 실체로서의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스 : 스웨덴에 법인화되지 아니한 보험중개업체는 지점을 통하여만 설립될 수 있음.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 제외)	유 :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사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위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동일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본점 및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전문 관리회사를 설립할 경우 계약형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관리 활동을 수행할 것이 요구됨. 불 : 연금 보험은 법인화된 연금 보험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지점은 불가). 경영위원회의 회장 및 이사회 회장에겐 불가리아 내 영주가 요구됨. 사 :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소 회원(중개사)만이 사이프러스에서 증권 중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중개회사는 사이프러스 회사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경우에만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음(지점 불가). 형 : 대한민국 기관의 지점은 사적 연금 펀드 또는 벤처캐피탈의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되지 않음.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최소 2인의 헝가리 시민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 외환 규정에 따른 거주를 하고 최소 1년간 헝가리에 영주해야 함. 아 : 집합투자계획이 계약형 투자신탁 및 변동자본회사(양도가능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체인 UCITS는 제외)로 구성된 경우, 수탁인/예탁기관 및 관리회사는 아일랜드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투자 합자회사의 경우 최소 1인의 일반 파트너는 아일랜드 내에 법인화해야 함. 아일랜드 증권거래소 회원이 되기 위하여 실체는 (a) 법인화 또는 제휴를 통해 아일랜드에서 인가를 받고, 본점/등록사무소를 아일랜드 내에 보유하거나, (b)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공동체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이 : 이탈리아에서 설립을 통하여 증권결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이탈리아에서 설립을 통하여 중앙증권예탁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인가받기 위하여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유럽공동체의 법령 상 조화된 UCITS 외의 집합투자계획의 경우, 수탁자/예탁기관은 이탈리아 또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법인화를 하고 이탈리아에서 지점을 통해 설립할 것이 요구됨. 유럽공동체의 법령 상 조화되지 아니한 UCITS의 관리 회사 역시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유럽공동체 내에 법적인 본점을 보유한,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및 유럽공동체 입법 상 조화된 UCITS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한 UCITS만이 연금 자원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방문판매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개업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인가된 금융판매원을 활용해야 함. 외국 중개업자의 대표사무소는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리 : 자산관리의 목적 상 전문 관리회사로의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리투아니아에 등록 사무소를 보유한 회사만이 자산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포 : 연금기금 관리는 포르투갈에서 법인화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전문화된 회사 및 포르투갈에서 설립되고 생명보험 사업을 행하도록 인가받은 보험회사,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연금기금 관리를 위하여 인가된 실체만이 공급할 수 있음.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루 : 외국 기관의 지점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함. 슬 : 슬로바키아공화국 내 투자서비스는 은행, 투자회사, 투자펀드 및 법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합자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를 지닌 증권딜러가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베 : 민영화에 따른 은행 지분 보유 및 사적 연금기금(비강제 연금기금)에 대하여 약속 안함. 스 : 저축은행의 설립자는 공동체에 거주하는 자연인이어야 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3.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⁵⁹⁾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병원서비스 (CPC 9311) B. 구급차서비스 (CPC 93192) C. 병원 이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CPC 93193) D. 사회서비스 (CPC 933)	유 : 보건 및 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운송시설, 인구밀도, 지리적 산포 및 새로운 고용 창출 오, 베 : 구급차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 병원서비스, 구급차서비스 및 병원 이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사, 체, 핀, 물, 스, 슬 : 약속 안함. 형 :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폴 : 구급차 서비스, 병원 이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영 : 구급차서비스, 병원 이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및 조리원 및 요양원 그리고 양로원 이외의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14.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 ⁶⁰⁾	불 :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바, 카페 및 레스토랑에 적용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설립의 밀도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 (CPC 7471)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포 : 포르투갈에 회사 기반을 가진 상업 회사의 설립이 요구됨(지점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제한 없음.
15.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	

59)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60)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부수서비스 중 17.E.a)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사, 체, 핀, 몰,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불 :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 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1),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CPC 96192) 및 극장 보조 서비스(CPC 96193)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에 : 영화관 서비스를 제외하고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9)에 대하여 약속 안함. 라 : 영화관 운영 서비스(CPC 96199의 일부)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B. 뉴스제공 서비스 (CPC 962)	프 : 프랑스어로 출판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보유는 그 회사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뉴스통신사 : 약속 안함. 단, 대한민국 뉴스통신사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지사 또는 지국을 설립할 수 있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뉴스를 배포할 수 없음. 불, 사, 체, 에, 형, 리, 몰, 루, 폴, 베, 슬 : 약속 안함. 포 : “Sociedade Anonima”의 법적 형태로 포르투갈에서 법인화된 뉴스회사는 명목주식의 형태로 사회 자본을 보유하여야 함.
C.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⁶¹⁾ (CPC 963)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오, 리 : 사적 운영자의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 보유는 허가 또는 면허를 조건으로 함.
D. 스포츠서비스 (CPC 9641)	오, 베 : 스키학교서비스 및 산악가이드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에, 라, 몰, 폴, 루, 슬 : 약속 안함.
E. 레크리에이션파크 및 해변 서비스 (CPC 96491)	제한 없음.
16.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⁶²⁾	

61)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6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및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해운서비스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국제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⁶³⁾)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b) 국제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⁶⁴⁾)	
B. 내수운송	
a) 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1 ⁶⁵⁾)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기반한 조치는, 관련된 국가에 기반하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일정한 운수권을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b) 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2 ⁶⁶⁾)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 또는 상시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 과반수를 유럽연합 시민이 보유해야 함.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형 : 설립시 국가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음. 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63)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64)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65)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66)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철도운송⁶⁷⁾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D. 도로운송⁶⁸⁾	
a) 여객운송 (CPC 7121 및 CPC 7122)	유 : 외국인 투자자는 운영자 포함 비정기 버스 임대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 회원국 내에서 운송서비스(연안운송)를 공급할 수 없음. 유 : 택시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오, 불 :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공동체 내에 본부를 가진 유럽공동체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핀, 라 :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 등록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라 및 스 : 설립된 실체는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서 : CPC7122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국내 수요 이, 포 : 리무진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서, 아, 이 : 시내버스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프 : 시내버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67)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적용됨.

68)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화물운송⁶⁹⁾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은 제외 ⁷⁰⁾)	오, 불 :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공동체 내에 본부를 둔 유럽공동체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불 :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핀, 라 :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 등록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라 및 스 : 설립된 실체는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이, 슬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국내 수요
E. 연료 이외 상품의 파이프라인 운송⁷¹⁾ (CPC 7139)	오 : 배타적 권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공동체 내에 본부를 둔 유럽공동체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17. 운송부수서비스⁷³⁾	
A. 해운부수서비스⁷⁴⁾ a) 해운화물취급서비스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통관서비스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서비스 e) 해운대리업서비스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g)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13) h) 예선서비스 (CPC 7214)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 해운화물취급서비스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 ⁷⁵⁾ 가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및 새로운 고용 창출 불 :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해운대리업서비스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운회사는 그 주사무소를 위한 대리점으로 활동할 지점 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짐. 선박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해운부수서비스는 불가리아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음.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69)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일부 회원국에 적용됨.

70) CPC 71235의 일부로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중 7.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71)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B에 기재됨.

7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73) 사업서비스의 6.F.1)1.부터 6.F.1)4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7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부수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적용됨.

75) 이 조치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해상운송 지원서비스 (CPC 745의 일부) 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케이터링 포함) (CPC 749의 일부)	
B. 내수운송 부수서비스⁷⁶⁾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23) e) 예선서비스 (CPC 7224) f) 내수운송 지원서비스 (CPC 745의 일부) g)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운항권 일부를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록,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 또는 상시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 과반수를 유럽연합 시민이 보유해야 함. 단, 창고업, 화물운송대리업, 선적 전 조사는 제외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참여는 49퍼센트로 제한됨. 형 : 설립시 국가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음. 창고업서비스는 제외 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베 : 슬로베니아공화국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76)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부수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철도운송 부수서비스⁷⁷⁾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예선서비스 (CPC 7113) e) 철도운송 지원서비스 (CPC 743)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해서 약속 안함(법인화 필요).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 베 : 슬로베니아공화국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D. 도로운송 부수서비스⁷⁸⁾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운전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e) 도로운송 지원서비스 (CPC 744)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오 : 운전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공동체 내에 본부를 둔 유럽공동체 법인에만 인가가 부여될 수 있음.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 핀 : 운전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해서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에 등록된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베 : 슬로베니아공화국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77)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됨.

78)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항공운송 부수서비스	
a) 지상조업서비스 (케이터링 포함)	유 : 내국민대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활동의 분류는 공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각 공항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가용 공간의 제약 및 다른 이유로 2개의 공급자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음.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폴 : 냉동 또는 냉장 물품 및 액체 또는 가스 벌크보관서비스에 대해서, 활동의 분류는 공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각 공항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가용 공간의 제약 및 다른 이유로 2개의 공급자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음.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사, 체, 형, 물, 폴, 루, 슬 : 약속 안함. 불 : 외국인은 49퍼센트 지분 제한 조건하에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그리고 지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베 : 슬로베니아공화국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d)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CPC 734)	유 : 유럽공동체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되어야 함. 또는 만약 면허를 부여하는 회원국이 허용하는 경우는 유럽공동체의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도 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사가 운영해야 함.
e) 판매 및 마케팅 f) 컴퓨터 예약시스템	유 : 유럽공동체 항공사가 유럽공동체 내에서 제공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⁷⁹⁾를 대한민국에 있는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유럽공동체의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가 유럽공동체 내에서 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각각 유럽공동체 내의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가 대한민국의 항공사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는 유럽공동체 항공사가 대한민국의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79) “동등한 대우”라 함은 유럽공동체 항공사 및 유럽공동체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F. 연료 이외의 물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u>부수서비스⁸⁰⁾</u> a)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연료 <u>창고업서비스⁸¹⁾</u> (CPC 742의 일부)	제한 없음.
18. 기타 운송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 제공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물, 폴, 루, 스,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각 운송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이 약속목록에 명기된 제한을 저해하지 아니함.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물, 폴, 루, 스, 베, 슬 : 약속 안함.
19. 에너지서비스	
A. 광업부수서비스⁸²⁾ (CPC 883) ⁸³⁾	제한 없음.
B. 연료 파이프라인 운송⁸⁴⁾ (CPC 713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라, 록,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C.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연료 <u>창고업⁸⁵⁾</u> (CPC 742의 일부)	폴 : 에너지 공급국의 투자자는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음.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80)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C에 기재됨.

81)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3)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링빗 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서비스, 머드 제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피싱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 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끝처리 기구 공급 및 설치, 시멘트 (프레스 펌핑), 스티플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 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보수 서비스 그리고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이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아니함.

8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고체, 액체 및 기체 연료와 관련 제품의 도매서비스 (CPC 62271) 그리고 전기, 증기 및 온수 도매서비스⁸⁶⁾	유 : 전기, 증기 및 온수의 도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E. 자동차연료 소매서비스 (CPC 613) F.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판매 (CPC 63297) 그리고 전기,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 소매서비스⁸⁷⁾	유 : 자동차연료, 전기,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덴, 프, 이, 물, 포 :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서비스에 대해서 백화점(프랑스의 경우 대형 매장에 대해서만)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매장에 수와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역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및 새로운 고용 창출
G. 에너지유통 부수 서비스⁸⁸⁾ (CPC 887)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아, 형, 이, 록, 리, 물, 네, 폴, 포, 루, 슬, 스, 영 : 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베 : 가스유통 부수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가스 유통에 대하여 제한 없음.
20.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 서비스 (CPC 9701)	제한 없음.
b) 머리미용 서비스 (CPC 97021)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85)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6)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7)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8) 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미장 서비스 (CPC 97029)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기반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 복지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파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 ⁸⁹⁾⁹⁰⁾ (CPC ver 1.0 97230)	제한 없음.
f) 통신 연결 서비스 (CPC 7543)	제한 없음.

89)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6.A.h) 의료서비스, 6.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13.A 및 13.C)에 기재됨.

90)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일정한 수원지와 같은 공용구역에서 제공되는 스파서비스 및 의료요법이 아닌 마사지에 적용됨.

부속서 7-가-3

유럽공동체 당사자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의 목록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1. 아래의 유보 목록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경제활동으로서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라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 대해 제한이 적용되는 활동을 표시하고 그러한 제한을 명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제한이 적용되는 분야 또는 하위분야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가능한 제한을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유럽공동체 당사자는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하는(약속 안함으로 남아있는) 경제활동에서 핵심인력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가.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나.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다.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 관한 약속은 그들의 일시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제7.18조 및 제7.19조의 의미에서의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및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에 법적 주소를 보유할 필요)는, 비록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핵심인력 및 대졸 연수생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체류기간, 최저임금 및 단체임금협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입국, 체류, 직업 및 사회안전 조치에 관한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법과 규정의 모든 요건은 비록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6.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아래의 목록은 설립에 관한 약속 목록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공공 독점과 배타적 권리의 존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8.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그 주요 기준은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공급될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그 지역에서의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9. 아래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10.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유럽공동체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형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공화국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u>경제적 수요 심사</u> 불, 형: 대졸연수생에 대해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¹⁾
모든 분야	<u>기업내 전근자의 범위</u> 불: 기업내 전근자의 수는 각 불가리아 법인에 의해 고용된 유럽연합 시민 수의 연간 평균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100명 이하가 고용된 경우, 기업내 전근자의 수는 인가를 조건으로 총 고용인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음. 형: 대한민국의 법인에서 파트너인 자연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모든 분야	<u>대졸연수생</u> 오, 독, 서, 프, 형에 대해, 연수는 취득한 학사 학위와 연계되어야 함.
모든 분야	<u>경영 이사 및 감사</u> 오: 법인 지점의 경영 이사들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해야 함. 오스트리아 무역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지점 내의 자연인은 오스트리아에 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 핀: 민간 기업인으로서 무역을 행하는 외국인은 무역 허가가 필요하고 유럽공동체 내에 영주해야 함.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유한회사의 경영 이사에 적용됨.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영 이사가 상시 거주해야 함. 프: 산업, 상업 또는 기술적 활동의 경영 이사는 거주 허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 구체적 인가가 필요함. 루: 상업회사의 감사와 그 대리인의 과반수는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 스: 법인 또는 지점의 경영 이사는 스웨덴에 거주해야 함.
모든 분야	<u>인정</u> 유: 학위상호인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은 유럽연합 시민에게만 적용됨. 한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서 규제되는 전문직 서비스 영업을 할 권리는 다른 회원국에서 영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²⁾

1)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2) 비공동체 국가 국민이 그들 자격에 대해 공동체 전 지역에 걸치는 자격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 제7.21조에 정의된 틀 내에서 협상된 상호인정협정이 필요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4. 제조업 ³⁾	
H.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사업 (ISIC rev. 3.1: 22), 수수료 및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 제외 ⁴⁾	이: 출판업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폴: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편집장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스: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출판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6.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⁵⁾ 공증, “huissiers de justice (집행관 업무)” 또는 다른 “officiers publics et ministeriels (공무원 업무)”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서비스는 제외	오, 사, 서, 그, 리, 몰, 루, 슬 : (유럽공동체 및 회원국) 국내법 업무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스페인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 벨, 핀 : 법률대리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벨기에에서 비형사사건에 있어 “Cour de cassation (최고법원)”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를 조건으로 함. 불 : 대한민국 변호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그리고 불가리아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률대리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음. 법률조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주가 요구됨. 프 : “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 (헌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와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3) 이 분야는 사업서비스의 6.F.h)에 기재된 제조업에 부수된 자문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함.

4) 수수료 및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의 6.F.p)에 기재됨.

5) 법률자문 서비스, 법률대리 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공동체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지역의 법과 관련해서만 인가됨.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접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공동체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공동체 측의 권한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공동체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그 국가에 속하는 의뢰인을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형 :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외국 변호사에 대해 법적 활동의 범위는 법률자문의 제공에 한정되며, 이러한 법률자문은 헝가리 변호사 또는 법무회사와 체결된 협력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함. 라 : 형사 절차에서의 법률대리권이 유보된, 서약한 사무변호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덴 : 법률자문서비스의 마케팅은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에 제한됨.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이 요구됨. 룩 : 룩셈부르크 및 유럽공동체 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 스 : 스웨덴의 변호사 직명 “advokat (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사용만을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협회에의 가입은 거주요건을 조건으로 함.
b) 1.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 (감사서비스를 제외한 PC 86212, CPC 86213, CPC 86291 및 CPC 86220)	프 :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의 제공은 외교부 장관과의 합의에서 경제금융산업 장관의 결정을 조건으로 함. 거주요건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b) 2. 감사 서비스 (CPC 86211 및 회계서비스를 제외한 86212)	오 : 권한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그리고 특정한 오스트리아법(예: 합자주식회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 규정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 덴 : 거주요건이 있음. 서 : 법정 감사인에 대하여, 그리고 회사법에 관한 제8차 유럽경제공동체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관리자, 이사 및 파트너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핀 : 핀란드 책임회사의 감사인 중 최소 1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그 : 법정 감사인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 회사법에 관한 제8차 유럽경제공동체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관리자, 이사 및 파트너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개별 감사인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이 있음. 스 :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승인을 위해 거주가 요구됨.
c) 세무자문서비스 (CPC 863) ⁶⁾	오 : 권한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 불, 베 :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형 : 거주요건이 있음.

6) 6.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건축설계서비스 및 e)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예: 최소 1인의 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컨설턴트)가 에스토니아에 거주해야 함. 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축 분야에서 최소 2년간 경험이 있어야 함.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그, 형, 슬: 거주요건이 있음.
f)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g)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예: 최소 1인의 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컨설턴트)가 에스토니아에 거주해야 함. 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축 분야에서 최소 2년간 경험이 있어야 함. 슬: 거주요건이 있음. 그, 형: 거주요건이 있음.(CPC 8673의 거주요건은 대졸연수생에게만 적용됨.)
h) 의료 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 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	체, 이, 슬: 거주요건이 있음. 체, 루, 슬: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벨, 록: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권한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불, 물: 국적조건이 있음. 독: 공공의 보건상 이익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국적조건이 있음. 덴: 구체적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제한된 인가가 18개월 까지 부여될 수 있고 거주가 요구됨.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연간 설정된 쿼터 내에서 접근이 가능함. 라: 외국인에 의한 의료 업무를 위해 일정 지역에서의 의사 및 치과 의사에 대한 경제적 수요에 근거한 지방보건당국으로부터의 허가가 요구됨. 폴: 외국인에 의한 의료 업무를 위해 허가가 요구됨. 외국인 의사는 직능 단체 내에서 제한된 선거권을 가짐. 포: 심리학자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불, 독, 그, 프, 형: 국적조건이 있음. 체 및 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이: 거주요건이 있음. 폴: 국적조건이 있음. 외국인인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j) 1. 조산원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오: 오스트리아에서 전문직 개업을 하기 위해, 해당 인은 해당 직종에서 설립 전에 최소 3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함. 벨, 록: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사, 예, 루: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연간 설정된 쿼터 내에서 접근이 가능함. 이: 거주요건이 있음. 라: 일정 지역에서의 조산원 총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수요 조건에 따라 지방보건당국이 인가함. 폴: 국적조건이 있음. 외국인인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오 :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활동만 허용됨. :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실존분석적 정신요법사, 식이요법사 및 영양사. 오스트리아에서 전문직 개업을 하기 위해, 해당 인은 해당 직종에서 설립 전에 최소 3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함. 벨, 프, 록 :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사, 체, 예, 루, 슬 :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형 : 국적조건이 있음. 덴 :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한된 인가가 18개월 까지 부여될 수 있고 거주가 요구됨. 사, 체, 그, 이 :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결정은 지역적 결원 및 부족을 조건으로 함. 라 : 일정 지역에서의 간호사 총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수요의 조건에 따라 지방보건당국이 인가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k)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 (CPC 63211)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⁷⁾ (CPC)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설정된 쿼터 내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프랑스의 약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접근이 가능함. 독, 그, 슬: 국적조건이 있음. 형: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CPC 63211)를 제외하고 국적조건이 있음.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D. 부동산 서비스⁸⁾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 (CPC 821)	프, 형,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라, 몰, 베: 국적조건이 있음.
b)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 (CPC 822)	덴: 달리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에 의해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요건이 있음. 프, 형,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라, 몰, 베: 국적조건이 있음.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은 임대서비스	
e) 개인·가정물품 관련 (CPC 832)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f) 통신장비임대 (CPC 7541)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7)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됨.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조제약의 공급만이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8)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자연인 및 법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F. 그 밖의 사업서비스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서비스 (CPC 8676)	이, 포: 생물학자 및 화학분석가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f) 농업, 수렵업,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1의 일부)	이: 농경제학자 및 “periti agrari (농업기술자)”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벨: 경영 인력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블, 사, 체, 예, 라, 리, 물, 폴, 루, 베, 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덴: 경영자 및 공항수위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서, 포: 전문 인력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프: 경영 이사 및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경비서비스 및 귀중품 운송을 위해 필요한 인가를 얻기 위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k) 과학·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CPC 8675)	블: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독: 공적으로 지명된 조사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프: 재산권 설립 및 토지법과 관련된 “조사” 활동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l) 1.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몰: 국적조건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l)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라: 국적조건이 있음.
l)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유: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l)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물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⁹⁾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다음은 제외: CPC 633, 8861, 8866에 대해, 벨, 독, 텐, 서, 프, 그, 형, 아, 이, 록, 물, 네, 폴, 포, 루, 스, 영 개인·가정물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보석류 제외)에 대해, 불 : CPC 63301, 63302, 63303의 일부, 63304, 63309 CPC 633, 8861-8866에 대해, 오 CPC 633, 8861-8866에 대해, 에, 핀, 라, 리 CPC 633, 8861-8865에 대해, 체, 슬 CPC 633, 8861, 8866에 대해, 베
m) 빌딩청소 서비스 (CPC 874)	사, 에, 물, 폴, 루, 베: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n) 사진서비스 (CPC 875)	라 : 전문사진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폴 : 항공사진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스 : 출판업자 및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베: 국적조건이 있음.

9)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8868)는 6.F.1)1.부터 6.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CPC 845)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r) 1. 번역 및 통역서비스 (CPC 87905)	편: 공인 번역사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덴: 달리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에 의해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공인 번역사 및 통역사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r) 3. 수금 대리 서비스 (CPC 87902)	벨, 그, 이: 국적조건이 있음.
r) 4. 신용 조사 서비스 (CPC 87901)	벨, 그, 이: 국적조건이 있음.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¹⁰⁾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설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경험이 있어야 함.
9.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그 밖의 전쟁 물자는 제외)	
<u>C. 소매서비스¹¹⁾</u>	
c) 식품 소매서비스	프: 담배판매자(즉, buraliste)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0. 교육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u>A. 초등 교육서비스</u> (CPC 921)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 및 지시하고 교육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이: 국가 공인 졸업장을 발행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그: 교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0) CPC 88442에 해당하며 6.F.p)에 기재된 인쇄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11) 사업서비스의 6.B. 및 6.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에너지서비스의 19.E. 및 19.F에 기재된 에너지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중등 교육서비스 (CPC 922)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 및 지휘하고 교육하기 위해 권한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이: 국가 공인 졸업장을 발행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그: 교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라: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 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C. 고등 교육서비스 (CPC 923)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 및 지시하고 교육하기 위해 권한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체, 슬: 중등 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 (CPC 92310)를 제외한 고등교육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국가 공인 졸업장을 부여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덴: 교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2. 금융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오: 지점의 경영진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2인의 자연인으로 구성됨. 예: 직접보험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자본참여를 한 보험 합자주식회사의 경영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 보유 비율과 비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경영진 구성원의 절반을 초과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음. 현지법인 또는 독립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에스토니아에 영주해야 함. 서: 보험계리업에 대해 거주요건(또는 그 대체 요건으로 2년의 경험)이 있음. 이: 보험계리업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 핀: 달리 권한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회사의 경영 이사 및 최소 1인의 감사는 유럽공동체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달리 회사가 유럽공동체에 본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보험회사의 일반 대리업자는 핀란드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 제외)	불: 집행 이사 및 경영 대리인에 대하여 불가리아에서의 영주가 요구됨. 편: 달리 금융감독당국이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여수신 기관의 경영 이사 및 최소 1인의 감사는 유럽공동체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중개인(개인)은 공동체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이: “promotori di servizi finanziari (금융 판매원)”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 영역 내의 거주요건이 있음. 리: 최소 1인의 관리자는 유럽연합의 시민이어야 함. 폴: 은행 임원 중 최소 1인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3.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병원서비스 (CPC 9311) B. 구급차서비스 (CPC 93192) C. 병원 이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CPC 93193) E. 사회 서비스 (CPC 933)	프: 관리 기능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인가가 필요함. 인가시 국내 관리인의 이용가능성이 고려됨. 라: 의사, 치과의사, 조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폴: 외국인의 의료 업무에는 인가가 요구됨. 외국인 의사는 직능 단체 내에서 제한된 선거권을 가짐.
14.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¹²⁾	불: 불가리아 회사의 자본 중 공공(국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관리자의 수는 불가리아 시민권자인 관리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함.

12)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부수서비스 중 17.E.a)의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 (CPC 7471)	불: 불가리아 회사의 자본 중 공공(국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관리자의 수는 불가리아 시민권자인 관리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함.
C.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불, 사, 서, 프, 그, 형, 이, 리, 물, 폴, 포, 슬: 국적조건이 있음.
15.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프: 관리 기능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인가가 필요함. 2년을 초과하는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인가는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16.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	
a) 국제여객운송 (국가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유: 선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오: 경영 이사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 국제화물운송 (국가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D. 도로운송	
a) 여객운송 (CPC 7121 및 CPC 7122)	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또는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덴: 관리자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불, 물: 국적조건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화물운송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은 제외 ¹³⁾)	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또는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불, 몰: 국적조건이 있음.
E. 연료 이외 상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¹⁴⁾ (CPC 7139)	오: 경영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7. 운송부수서비스¹⁵⁾	
A. 해운부수서비스 a) 해운화물취급서비스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통관서비스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서비스 e) 해운대리업서비스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g)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13) h) 예선서비스 (CPC 7214) i) 해상운송 지원서비스 (CPC 745의 일부) 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케이터링 제외) (CPC 749의 일부)	오: 경영 이사의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불, 몰: 국적조건이 있음. 덴: 통관서비스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그: 통관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raccomandatorio marittimo (특허 해운대리업자)"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

13) CPC 71235의 일부로서 통신서비스 중 7.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14)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B에 기재됨.

15) 사업서비스의 6.F.1)1.부터 6.F.1)4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도로운송 부수서비스 d) 운전자 포함 상업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또는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불, 몰: 국적조건이 있음.
F. 연료 이외의 물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서비스¹⁶⁾ a) 파이프라인에 의해 운송되는 연료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오: 경영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9. 에너지서비스	
A. 광업부수서비스 (CPC 883) ¹⁷⁾	슬: 거주요건이 있음.
20.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서비스 (CPC 9701)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 머리미용 서비스 (CPC 97021)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d) 기타 미장 서비스 (CPC 97029)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 복지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파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¹⁸⁾ (CPC ver 1.0 97230)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6)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C에 기재됨.

17)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빗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서비스, 머드 제 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피싱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끝처리기구 공급 및 설치, 시 멘트(프레스 펌핑), 스티물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보수 서비스,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아니함.

18)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6.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13.A 및 13.C)에 기재됨.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가.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 해

1. 아래의 약속 목록(이하 “이 양허표”라 한다)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서비스 분야, 그리고 유보에 의해 그러한 분야에서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이 양허표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대한민국에 의해 약속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 그리고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나.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5조 및 제7.11조에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다.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6조 및 제7.12조에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세 번째 열, 그리고

라.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 및 설립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7.5조 및 제7.11조와 제7.6조 및 제7.12조에 따른

양허표 작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기술하는 네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양허표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제7.5조 및 제7.11조와 제7.6조 및 제7.12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7.5조 및 제7.11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7.6조 및 제7.12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¹⁾

3. 네 가지 다른 공급형태가 이 양허표에 표시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가. “1) 국경간 공급”의 공급형태는 제7.4조제3항가호1목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나. “2) 해외소비”의 공급형태는 제7.4조제3항가호2목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1) 이 항의 목적상, 제7.6조 및 제7.12조에 따라 규정된 대우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이고 이 협정의 서명 후 발효될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속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다.

영역에서의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다. “3) 상업적 주재”의 공급형태는 제7.9조가호에 따라 설립을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라. “4) 자연인의 주재”의 공급형태는 제7.17조에 따라 영업 목적의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4. 제7.11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법적 형태의 유형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대한민국에 의해 유지되거나 채택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5. 대한민국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하는 경제활동에서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하여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라 행해진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관한 대한민국의 약속은 그들의 일시적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및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 고용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가 허용된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는 대한민국의 이민 및 노동 법을 준수한다.

6.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7.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제7.5조 및 제7.11조와 제7.6조 및 제7.12조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이 양허표는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에서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및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에 법적 주소를 보유할 필요)는, 비록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 제7.1조에 따라, 이 양허표는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이 양허표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아니함을 말함. “***” CPC 코드 번호 위의 이중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함.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3) 다른 쪽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 및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2)3)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4) 국가의 재산권적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유보는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2)3)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야와 관련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1)2) 사업 서비스에 대하여, 통제되는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토지 취득은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a) 외국인토지법상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 (b) 외국인토지법상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점의 토지취득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허용됨. -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해당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이 유보는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3) 이 유보의 목적상, “공기업”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함.

4) 경제적 취약집단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조치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5) <u>핵심인력 및 상용서비스판매자</u>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에 관한 제4절에 따른 약속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u>대졸연수생(GT)</u> 아래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CPC 861, CPC 862, CPC 863, CPC 851, CPC 853, CPC 82201**, CPC 82202**, CPC 82203**, CPC 82204**, CPC 82205**, CPC 82206**, CPC 83104, CPC 832, CPC 86761**, CPC 86763**, CPC 86769**, CPC 633, CPC 8861, CPC 8862, CPC 8863, CPC 8864, CPC 8865, CPC 8866, CPC 874**, CPC 7512**, 통신서비스, CPC 8929**를 제외한 유통서비스, 교육서비스, CPC 9401**, CPC 9402**, CPC 641, CPC 642, CPC 6431**, CPC 7471, CPC 87905, CPC 96191, CPC 96192, CPC 962, CPC 7472, CPC 7211, CPC 7212, CPC 7111, CPC 7112, CPC 71233**, CPC 9702, ISIC 개정판 3.1⁶⁾: 011, 012, 013, 015.	4) 토지취득은 토지 임차권 허용 이외에는 약속 안함.	

5)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적용됨. 대졸연수생에 대한 제한 중 이중별표를 가진 CPC 코드에 관하여, “약속 안함”의 범위는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의 관련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약속 범위와 동일함.

6) 이 양허표에 기재된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다음을 제외함. (i) 법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1)2)3) (a)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1)2)3) 시장접근 열 (b)에 명기된 것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됨.	1.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중재에서 적용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거나 국제 규범인 경우에 허용됨. 2. 원자격국 직명의 본국 언어로의 사용이 허용됨.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사”라는 직명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iv)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b) (a)7에서 공급이 허용된 법률서비스 이외의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리고 (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3.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단, 한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7)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감독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형태를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d) 제7장의 각주 16 및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변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자연인의 이동은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서만 허용된다. 외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의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서비스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아래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 1.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야 함. 2.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있어야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함. 3.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의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하여야 함. 4.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지사, 현지 사무소, 현지법인 또는 합작기업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법무회사(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대한민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5. 외국법자문사는 일 년에 최소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 862)	1)2)3) (a)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음. (b) (a)⁸⁾에서 공급이 허용된 회계 및 감사 서비스 이외의 회계 및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함. a)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그들이 등록한 관할지역의 회계법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리고 b)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함.	1)2)3) 시장접근 열 (b)에 명기된 것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됨.	1)2)3) 대한민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사인 대한민국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 (i) 외국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에 대한 자문 (ii) 공인회계사연수 (iii) 감사기법전수, 그리고 (iv) 정보교환

8)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등록된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고용 제한. (b) 외국 공인회계사의 대한민국 내 감사 서비스 제공 제한. (c) 제7장의 각주 16 및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a)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b)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등록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1년까지 허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서비스 (CPC 863)	1)2)3) (a)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 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세무사 자격자가 아닌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 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b) a항9)에서 공급이 허용된 세무서비스 이외의 세무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함. a) 유럽연합 회원국 법에 따라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세무사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법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그들이 등록된 관할지역의 세법 또는 국제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b)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의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1)2)3) 시장접근 열 (b)에 명기된 것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됨.	

9)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대한민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고용 제한. (b) 외국 세무사의 대한민국 내 세무조정 또는 세무대리 서비스 제공 제한. (c) 제7장의 각주 16 및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a) 대한민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b)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세무사 1인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설계서비스 (CPC 8671)	1) 상업적 주재 ¹⁰⁾ 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2)4)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본국의 법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정규 6개 건축사 시험과목 중 2개 과목인 (i) 건축법규와 (ii) 건축설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0) 상업적 주재는 법인일 필요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수산질병관리사 포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설비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연구개발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b.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D. 부동산 서비스</u>			
중개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감정 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 등 정부의 권한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u>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 서비스</u>			
a. 선박 관련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하여 허용.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83105**)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개인·가정용품 관련 임대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1)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한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기타 사업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로젝트 경영 및 기타 경영 서비스 (CPC 86601, 866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성분·순도검사 및 분석서비스 (CPC 86761**)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서비스 (CPC 86762)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기술적 진단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13)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2) 86761 :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만을 포함.

13) 86763, 86769 : CPC 86763, 86769 중 전기제품에 대한 검사 및 분석서비스만을 포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가금류감별서비스 (CPC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충 방제서비스를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자문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 부수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단 88411, 88450, 88442, 88493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소개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상법상의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 직업소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 1. 회사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함. 2. 회사는 5천만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서비스 공급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사업소당 2천만 원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 조사 및 경비 서비스 (CPC 87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에서는 아래 5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됨. (a) 시설경비 (b) 호송경비 (c) 신변보호 (d) 기계경비, 그리고 (e) 특수경비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m. 과학,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 적 및 그밖의 과학적 예측서비스 (CPC 86751) 지각 조사 서비스 (CPC 867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지표 조사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지도 제작 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o. 빌딩청소 서비스 (CPC 874**, 단,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r. 1) 인쇄 (CPC 88442**)1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4) 88442 : 스크린인쇄, 그라비아인쇄 및 CPC 88442 중 인쇄 관련 서비스업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r. 2) 출판 (CPC 88442**) 신문, 정기 간행물 출판서비스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숙기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t. 번역 및 통역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B. 쿠리어 서비스 특급 배달 서비스¹⁵⁾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우편법¹⁶⁾상 대한민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¹⁷⁾를 가지는 신서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는 제외.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 이 약속은 자기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운항면장 및 항공기를 보유한 배달 사업자에게의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않음.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서비스 사업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와 관련한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5) “특급배달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및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16)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 서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관련 서류, 또는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병역의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통신서비스</u> a. 음성전화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전송 서비스 d. 텔렉스서비스 e. 전신서비스 f. 팩시밀리서비스 g. 전용회선서비스 o. 기타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 PCS(개인통신서비스) TRS(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IAS(인터넷접속서비스) PSTN(공중교환전화망) 과 연결된 VoIP(인터넷전화) 서비스	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대한민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상업적 약정 없이 위성 설비를 통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신호 전송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¹⁸⁾을 허용함. 2) 제한 없음. 3)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부여됨.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¹⁹⁾ 모두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없음.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8) 이 서비스는 오직 위성에 의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방송사업자간 중계 연결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의됨. 따라서, 이 서비스는 위성설비의 임대를 포함하나 일반대중에게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그리고, 이 서비스는 국내간 연결 (위성에 의한 이러한 신호의 국내 영역으로부터 국내 영역으로의 전송)은 포함하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함. (a) 외국인의제법인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²⁰⁾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 단,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 (b) 외국인의제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9) “외국인의제법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대한민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20)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함.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음)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함.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를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부가서비스²¹⁾</u>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축적 및 전송, 축적 및 검색 포함한 고도 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 ²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 공급을 허용함. ²³⁾

21) “부가서비스”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함.

22)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함.

23)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서비스 및 임대회선의 단순재판매는 제외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통신관련서비스 a. 장비임대서비스 (CPC 7541) b. 통신단말장비의 도소매 서비스 (CPC 75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 함.	
3. 건설 서비스 (CPC 511-518)	1) CPC 51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 유통서비스 ²⁴⁾			
A. 위탁중개인 서비스 (CPC 621, 단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중개인 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은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24) 다음 서비스는 제외함.

(a) 총포·도검, 및 화약류 거래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서비스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공관장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유통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도매서비스 (CPC 61111, 622**, 다만, 62211, 62223 중 곡물도매업 및 홍삼도매업은 제외) ²⁵⁾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 중고자동차 도매업 -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주요 기준 :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주류 도매업을 하는 자는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25) 천연가스의 도매거래는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모든 분야 - 가스 산업” 하에 기재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소매서비스</u>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사업 제외), 631**(담배, 쌀, 홍삼 제외), 632)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사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인당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 의약품 소매서비스(한약재 포함)를 공급하는 자는 약국을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 사업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D. <u>프랜차이징</u> (CPC 8929**)2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26)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에 한정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교육서비스²⁷⁾			
C. 고등 교육서비스²⁸⁾ (CPC 923**)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인평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고등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 교육서비스 다음을 제외함. (i) 보건·의료 관련 고등 교육 (ii) 유아·초등· 중등교원 양성 고등교육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학교법인 ²⁹⁾ 만이 장관의 인가를 얻어 고등교육기관 설립이 가능. 다만 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 불필요. 첨부 I 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 수도권지역 ³⁰⁾ 에 사내대학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 정수의 50퍼센트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 ³¹⁾ 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한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27) 모든 서비스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전문직 실무수습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을 목적으로 하는 학위 인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28)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 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됨.

29) “학교법인”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함.

30) “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31)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 및 사이버 대학을 통한 대학	현지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 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이 가능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의료인, 약사, 수의사, 한약사, 의료기사,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분야의 연간 학생정원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의 총수를 제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u>성인교육서비스</u>³²⁾ (CPC 924**) 사립성인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성인교육서비스 다음을 제외함. (i)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졸업장을 수여 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교육서비스 (ii)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른 정부지원 직업 훈련 서비스 (iii) 방송을 통한 교육 서비스, 그리고	1) 보건·의료 관련 성인교육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으로 한정됨. (a)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³³⁾ 그리고 (b)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 평생교육시설로서 (i)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언론 기관에 부설된 것, (ii) 지식·인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 또는 (iii) 온라인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것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1) 보건·의료 관련 성인교육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32)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33)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임.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직업 훈련서비스	수도권 지역에서 총 건평 3,000 평방미터 이상의 성인교육시설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B. 폐기물 처리 서비스</u>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3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u>C. 기타</u>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환경시험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35) 토양 및 지하수 정화 (CPC 9406**) 환경컨설팅 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34)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35)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금융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대한민국 양허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7. 금융서비스 두주(頭註): 모든 금융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제7.11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을 조건으로 함. ³⁶⁾ 2. 제7.11조 및 제7.1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소유하거나 지배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함.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최고경영자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 함. 4. 대한민국이 자신의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허용은 대한민국이 그러한 공급자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구매권유를 허용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대한민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정의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한 약속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됨. 5. 대한민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대한민국은 공개할 경우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할 비밀 영업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임.			

36) 이 두주(頭註)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양 당사자는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7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함³⁷⁾: 한국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³⁸⁾ 7. 대한민국은 (a) 다음 금융서비스 공급자 중 하나 이상에(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대하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 수산업협동조합 (b)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더 큰 규모의 자본 대비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조세의 면제 8.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9.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이 이 양허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을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 영역에서 그 자연인 또는 그 법인에게 공급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함.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음.			

3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장은 이 항에 명시된 실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함.

3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하는 이 항의 목적상,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금융서비스공급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위의 두주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감독되는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7장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공급자로 간주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 대한민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11. 대한민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함. 다만, 대한민국은 (a)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b) 공모 이후, 그 거래소 또는 그 결제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설립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제되고 감독되는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³⁹⁾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서비스, 그리고 (d)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위 (a)와 (b)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서비스 2)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d)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위 (a)와 (b)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서비스 2)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39) “컨설팅”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함.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강제적인” 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는 고려되지 아니함.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음. 3)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투명성을 위하여,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와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이 제한될 것이며,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의 은행판매비율에 대한 제한이 부과될 것임.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 함.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강제적인” 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는 고려되지 아니함.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 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⁴⁰⁾ (b)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자유무역협정에서 유래한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c)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됨. 이 약속은 (i)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ii) 대한민국의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b)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자유무역협정에서 유래한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c)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됨. 이 약속은 (i)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ii) 대한민국의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	

4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에서 언급되는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해외 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다음 종류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음. (a) 신용협동조합 (b) 상호저축은행 (c) 여신전문금융회사 (d) 종합금융 (e)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 (f) 신용정보 (g) 일반사무관리회사 (h)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i) 채권평가회사 대한민국에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현지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음. 대한민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기존의 두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됨.	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해외 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⁴¹⁾”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음. 투명성을 목적으로, (a)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함. (b) 자연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c)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그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41)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한국거래소만이 대한민국에서 증권 또는 선물시장을 운용할 수 있음. 증권예탁결제원만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증권회사 계정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대한민국에서의 각 지점 설치에 개별 인가를 요구함.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현지법인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대한민국 지점은 운영자금을 대한민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함.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됨.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다른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됨. 대한민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u>호텔 및 레스토랑</u> (CPC 641, 6431**) 단, 6431 중 철도·항공운송관련 시설 서비스는 제외 음식제공서비스 (CPC 6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운송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운송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B. <u>여행알선대행서비스</u>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C. <u>관광안내서비스</u>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A. <u>엔터테인먼트 서비스</u>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행해지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B. <u>뉴스제공 서비스</u> (CPC 962)	1)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국내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사 또는 지국은 대한민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의 대표자 또는 편집인,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a)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b)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음. (a) 외국정부 (b) 외국인 (c)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d) 외국인이 100분의 25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a)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b)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c)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E. <u>레크리에이션파크 서비스</u> (CPC 96491) CPC 96191, 96192 및 해변서비스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서비스			
A. <u>해운서비스</u> 국제운송 (CPC 7211, 7212) 연안운송제외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제한 없음. (b)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 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 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전기공급 등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 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주석 :

관련 국내법 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 함.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해운부수서비스</u> 해상화물취급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대리업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중개서비스 (CPC 748**, 749**)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44) (CPC 886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2) CPC 748 중 자기의 명의 (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43) CPC 748**, 749** :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44)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선원포함 선박대여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 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검정·검량 서비스 (CPC 745**)4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5) 검수·검정·검량서비스는 해상운송 분야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항공 운송서비스</u> ⁴⁶⁾ 컴퓨터예약시스템 (CRS)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 함.	
항공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 함.	
항공기 유지 및 보수 (CPC 8868 중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 함.	

46)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정의에 따름.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승무원포함 항공기임대 (CPC 734) ⁴⁷⁾	1)2)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영능력 수요, 또는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공동체의 항공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사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됨.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사가 운영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2)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영능력 수요, 또는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공동체의 항공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사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됨.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사가 운영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7) 이 서비스는 포괄임차에 한정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지상조업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E. <u>철도운송서비스</u>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산업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c. 철도 유지 및 보수 (CPC 8868 중 일부) ⁴⁸⁾ d. 철도운송부수 서비스 (CPC 741의 일부, CPC 7113의 일부) ⁴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48) 철도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소유철도시설에만 적용됨.

49) 철도운송부수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소유철도시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u>도로운송서비스</u>			
a. 내륙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화물운송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b. 운전자 포함 비정기 버스 임대 (CPC 712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c. 도로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7의 일부, CPC 6112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G. <u>파이프라인 운송</u> (CPC 7131**) 오직 석유제품 운송에 한정50) LPG 운송을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H. <u>운송부수서비스</u> b. 항만구역 이외의 창고업 (CPC 742**) 농·축·수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I. <u>기타운송서비스</u> 복합운송서비스 철도화물 주선5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2. 기타 서비스 b. 머리미용 및 기타 미장 서비스 (CPC 97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50)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은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모든 분야-가스 산업”에 기재됨.

51) “철도화물 주선”이란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 화물적재/하역 및 배달 등을 포함하는 철로 운송의 끝 지점에서 수행되는 부수서비스를 말함.

첨부 1
(고등교육 서비스)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 내지 3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2.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 내지 6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립·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첨부 2 (성인교육 서비스)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 관련된 다음의 과목을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등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된다.

- (a)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 자원, 국토 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공예, 환경, 교통, 안전관리
- (b)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c)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상담, 텔레마케팅
- (d)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 (e)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 (f)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상품, 관광
- (g) 간호보조: 간호조무사
- (h)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 (i)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j)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k)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공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 (l) 독서실⁵²⁾: 학교 교과 교습 학원 교습 과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독서실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평생성인교육시설은

52)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하여 가는 장소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시민단체, 학교, 그리고 언론기관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 지식 및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및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나.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¹⁾

주 해

1. 아래의 약속 목록(이하 “이 양허표”라 한다)은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된 경제적 활동과, 유보에 의해 그 활동에서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이 양허표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대한민국에 의해 약속이 수행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와,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열

나.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11조에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그리고

다.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12조에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세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양허표에 언급되지 아니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설립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대한민국 양허표의 이미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 양허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7.11조 및 제7.12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7.11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7.12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²⁾

4. 제7.11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법적 형태의 종류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대한민국에 의해 유지 또는 채택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1)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1.수평적 약속”에 기술된 핵심인력, 대졸 연수생 및 상용서비스 판매자에 대한 제한은 관련있는 경우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또한 적용된다.

2) 이 항의 목적상 제7.12조에 따라 규정된 대우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이며 이 협정의 서명 이후 발효될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속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다.

5. 대한민국은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한 경제적 활동에서의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하여 제 7.18조 및 제7.19조에 따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관한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라 수행되는 대한민국의 약속은 그들의 일시적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적 고용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가 허용된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는 대한민국의 이민법 및 노동법을 준수한다.

6.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확인함에 있어,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7.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제7.11조 및 제7.12조의 의미 내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양허표는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요구,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요구,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요구 및 일정한 활동이 환경적으로 보호 받는 구역 또는 특정한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이익이 있는 지역에서 수행될 수 없도록 하는 비차별적 요건)은 비록 열거되지 아니 하더라도,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 제7.1조에 따라, 이 양허표는 대한민국에 의해 부여되는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이 양허표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u>토지 취득</u> 외국인에 의한 토지취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취득이 계속 허용됨. (1) <i>외국인토지법</i> 제2조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2)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i>외국인토지법</i>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단, <i>외국인토지법</i>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a) 정상적인 사업 활동 (b) 고위경영진의 주거, 또는 (c)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 요건의 충족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u>투자</u>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³⁾⁴⁾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지식경제부장관령에 따라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비율과 같은 문제의 변경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이 허용됨. 방위산업의 투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신규발행된 공모주 이외에 방위산업의 공모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3) 이 유보는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4) 이 유보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u>취약집단</u>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⁵⁾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u>국가소유의 전자/정보 시스템</u> 국가의 재산권적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 기능 및 권한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이 유보는 금융 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u>총포, 도검, 화약류 등</u>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야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u>원자력 에너지</u> 원자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u>전력산업</u>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그러한 조치는 D(a)a) (ISIC 개정판 3.1 : 401)상에 열거된 바와 같이 전력산업에서 허용되는 외국소유 총합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음. <u>가스산업</u> 천연가스의 수입 및 도매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 그러한 조치는 D(a)b) (ISIC 개정판 3.1 : 402)상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가스산업에서 허용되는 외국소유 총합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음.	

5) 취약집단을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조치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a) <u>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 활동</u> (ISIC 개정판 3.1: 011, 012, 013, 015)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대해 약속 안함. 외국인 투자자는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대해 약속 안함.
(b) <u>임업 및 벌목업</u> (ISIC 개정판 3.1: 0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B. 광업 및 채석업		
(a) <u>석탄, 갈탄의 채광; 토탄의 채광</u> (ISIC 개정판 3.1: 1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b) <u>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탐사를 제외한 원유 및 가스 채취에 수반된 서비스 활동</u> (ISIC 개정판 3.1: 11)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 없음: (a) 해저석유 ⁶⁾ 채취권은 정부만 보유할 수 있음. 그리고 (b) 이러한 권리는 제한된 기간 동안, 면허업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 단, 신청인은 비차별 및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제한 없음
(d) <u>금속 광업</u> (ISIC 개정판 3.1: 1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 <u>기타 광업 및 채석업</u> (ISIC 개정판 3.1: 14)	제한 없음	제한 없음

6) “석유”는 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C. 제조업		
(a) <u>음식료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5 곡물도정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b) <u>담배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6)	제한 없음	제한 없음
(c) <u>식물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7)	제한 없음	제한 없음
(d) <u>의복 제조업; 모피의 가공 및 염색</u> (ISIC 개정판 3.1: 18)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 <u>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 가방, 핸드백, 안장, 마구류 및 신발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9)	제한 없음	제한 없음
(f) <u>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목제품, 코르크 제품 제조업; 고공품 및 조물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g) <u>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1)	제한 없음	제한 없음
(h) <u>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사업</u> (ISIC 개정판 3.1: 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업 제외) ⁷⁾	제한 없음	제한 없음
(i) <u>코르크스 제조로 제품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31)	제한 없음	제한 없음
(j) <u>석유 정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3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7)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 중 기타 사업 서비스 r)에서 확인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l) <u>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u> a) 기초 화학물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1 방사성동위원소 제조업 제외) b)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2) c) 합성섬유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m) <u>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5)	제한 없음	제한 없음
(n) <u>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6)	제한 없음	제한 없음
(o) <u>제1차 금속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7)	제한 없음	제한 없음
(p) <u>기계류 및 장비를 제외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8 원자로 제조업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q) <u>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u> a) 일반목적의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1) b)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 목적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9) c)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구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r) 사무, 회계 및 계산용 기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s)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류 및 장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1)	제한 없음	제한 없음
(t)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기기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u)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3 방사선 발생 장치 제조업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v)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4)	제한 없음	제한 없음
(w) 기타 (비군사용) 운송장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5 군함, 군용 항공기 및 기타 군사용 운송장비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x) 가구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6)	제한 없음	제한 없음
(y) 재활용 (ISIC 개정판 3.1: 37)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D.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a) <u>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 공급</u> a) 에너지 산업-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전력의 운송, 유통 및 판매 (ISIC 개정판 3.1: 401)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송전, 배전 및 판매 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함.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단일 주주의 지분은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b) 가스 제조; 가스배관을 통한 가스연료 공급 (ISIC 개정판 3.1: 402)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단일 주주의 지분은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c) 증기 및 온수 공급 (ISIC 개정판 3.1: 40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1. 제7.8조제2항 및 제7.14조제2항의 목적상, 의미있게 더 높은 수준이 되기 위해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규정된 의무는 서비스 및 설립에 관한 내부시장¹⁾을 창설하거나 설립의 권리 및 법령의 근접화 모두를 포함한다. 의무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또는 수평적 약속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가. 이 항에 언급된 **설립의 권리**란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발효 시까지 그 지역협정의 당사자들 간에 설립에 대한 모든 장벽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의무를 말한다. 설립의 권리는 그러한 설립이 시행되는 국가의 법령에 의해 국민에게 규정되는 조건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국민의 권리를 포함한다.

나. 이 항에 언급된 **법령의 근접화**란 다음을 의미한다.

- 1) 지역경제통합협정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의 법령을 그 협정의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법령과 정합시키는 것, 또는
- 2) 공통되는 법령을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법적 질서에 통합시키는 것. 그러한 정합 또는 통합은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국내 법적 질서내로 입법화된 시점부터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양 당사자는 제7.8조제2항과 제7.14조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경제통합협정을 제7.3조에 언급된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지역경제통합협정의 서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3.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부속서의 제2항에 언급된 통보에 더하여, 양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또는 별개의 협의에서 그 지역경제통

1) 서비스 및 설립에 대한 내부시장이란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내부적 경제가 없는 지역을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서명시 유럽경제지역(EEA)이 유럽 공동체의 제3국과의 유일한 내부시장이다.

합협정의 제7.8조제2항과 제7.14조제2항 및 이 부속서의 조건과의 합치성을
논의하고 검토한다.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유럽공동체 당사자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 모든 분야	유럽연합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대우를 국가에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유럽연합은 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개정이 그 협정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의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모든 조치를 개정할 수 있음.	모든 국가	무기한	역진방지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적인 대우를 보호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 도로운송	루마니아에서,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들에 등록된 운송수단이 상품 및/또는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허가는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 간 도로 협정에 따름. 도로내륙운송은 국내에 등록된 운송수단에 유보됨.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위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이란,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공화국, 시리아, 슬로베니아, 터키, 헝가리 및 향후 다른 국가도 가능	무기한	예외의 필요성은 도로운송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지역적 특수성과 연관됨.
3. 철도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영역내 그리고 관련 국가간의 운수권, 운영조건 및 운송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철도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영역내 그리고 관련 국가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4.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공동체 또는 그 회원국과 제3국가간 체결된 (복합운송 - 도로/철도 포함) 국제도로운임 및 여객운송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의 다음에 대한 규정 (a)- 계약당사자간 또는 계약 당사자의 영역을 지나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각 계약당사자에 등록된 운송수단에 유보하거나 제한 ¹⁾ 또는 (b)- 그러한 운송수단에 대한 조세 면제	스위스, 중유럽,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회원국, 알바니아,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	무기한	예외의 필요성은 도로운송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의 지역적 특성과 연관됨.

1)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운수권에 관한 최혜국대우 면제 부분은 도로운송에 관한 양자간 협정 또는 도로운송과 관련된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이외의 조치가 바람직한 모든 국가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5.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운송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체코공화국으로의 운송서비스, 체코 공화국에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을 지나는 운송서비스 그리고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관련 채약당사자로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별도로세를 포함하여 운송서비스를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철도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체코공화국 영역내 그리고 관련 국가간에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6.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핀란드에서 내륙운송을 유보한(복합운송, 도로 및 철도 포함) 국제도로운송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상호 양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의 규정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협정이 발효 중인 모든 국가	무기한	도로운송서비스의 지역적 특수성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7.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오스트리아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들에 등록된 운송수단으로 외국 기업가들이 수행하는 국제여객운송으로 제한됨.	구 유고슬라비아 승계국들, 스위스 그리고 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 국연방 승계국(발트3국,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몰도바 및 우즈베키스탄 제외)	무기한	상호주의 및 국제여행 발전의 촉진
8. 도로운송서비스 - 여객 및 화물	사실상의 상호주의를 근거로 한 일정한 조건에 따른 오스트리아에서의 운송수단에 대한 조세 면제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으로 제한됨.	이스라엘, 모나코, 산마리노, 터키, 교황청 그리고 미국	무기한	상호주의 및 국제여행 및/또는 국제상품운송 발전의 촉진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9.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양자간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리투아니아 공화국 영역으로의 운송서비스, 리투아니아 공화국 영역을 통한 운송서비스 그리고 리투아니아 공화국 영역으로부터 관련 채약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 양자간 통과허가 및 그 밖의 운송허가를 포함하여 운영조건, 도로세 및 부과금을 명시하고 운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설정함.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을 보호하고 리투아니아 영역 및 관련 국가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10.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그 불가리아공화국 영역에서의 또는 불가리아공화국 국경을 지나는,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이러한 등록의 운송서비스 공급을 제한 및/또는 유보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환경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불가리아공화국 영역 및 관련 국가간의 운수권의 규제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1. 해상운송을 제외한 모든 여객 및 화물운송서비스	폴란드: 관련 국가들의 공급자들이, 관련 국가의 영역에서, 관련 국가의 영역으로, 그리고 관련 국가의 영역을 통과하는 운송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상호주의 요건	모든 국가	무기한	운송협력(또는 유사한 성격의 것),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증진과 보호 및 특히 양자적으로 합의된 허가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운송 쿼터를 이행하는 것에 관한 기존 및 미래의 상호적 협정의 체제
12.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의 운송서비스,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의 운송서비스 그리고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부터 관련 계약당사자로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별도로세를 포함하여 운송서비스를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도로운송 기반시설의 무결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슬로바키아공화국 영역 및 관련 국가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3. 도로운송 - 화물 (CPC 7123)	스페인에서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위한 인가는, 스페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거절될 수 있음.	모든 국가	무기한	스페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실효적인 시장접근 및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
14. 항공운송부수서비스 (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 예약 시스템 (CRS) 서비스, 그리고 (d)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공항운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되거나 유효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모든 국가	무기한	기존 및 미래의 국제협정을 보호를 위해 요구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5. 항공 운송 서비스의 컴퓨터예약시스템과 판매 및 마케팅	유럽공동체 규정 3089/93에 의해 개정된, 유럽공동체 규정 2299/89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동등한 대우가 모회사 또는 컴퓨터예약 시스템 판매자의 국가에서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컴퓨터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 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의 의무가 그 국가의 컴퓨터예약 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 및 참여항공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함.	컴퓨터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가 소재하는 모든 국가	무기한	컴퓨터예약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다자적으로 합의된 규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의 필요성
16.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내 상품과 관련한 서비스를 포함한 항만 내 화물취급서비스와 보관, 창고 서비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는 상호주의를 근거로, 그리고 관련 국가와의 양자 협정에 따라 불가리아 공화국에 의해 부여됨.	모든 국가	무기한	그러한 조치의 적용 목적은 그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불가리아 공급자에 대해 그 밖의 국가의 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7. 내수운송	내륙수로에의 접근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라인-마인-다뉴브 연결 협정을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에 관한 국적기준을 충족시키는 운영자를 위해 운수권을 유보하는 조치	스위스, 중유럽,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회원국	무기한 일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통합협정 이 체결되거나 완성될 때까지만 예외가 요구됨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륙수로에 대한 운송 능력을 규제하기 위함.
18. 내수운송	라인강 화물운송에 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 ²⁾	스위스	무기한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륙수로에 대한 운송 능력을 규제하기 위함.
19. 내수운송 - 여객 및 화물	오스트리아에서, a. 일정한 운수권은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선박을 위하여 유보됨.(소유에 관한 국적 요건), 그리고 b.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에의 증명과 면허가 인정됨.	구 유고슬라비아 승계국 그리고 구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승계국	무기한, 그리고 예외는 기존의 조치 및 새로운 조치에 적용됨.	역사적 발전, 그리고 특정한 지역적 측면

2) 다음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최혜국대우 면제가 적용된다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0. 내수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내륙수로에 대한 접근 및 내륙수로에서의 운수권을 외국의 운영자를 위해 유보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기반시설의 무결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하여
21. 해상운송	부속서 7-가에서 대한민국의 약속을 넘는 조치로서 해운회사의 설립,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조치	특정되지 않음.	무기한	전반적인 무역관계의 맥락에서의 국제협정
22. 해상운송 - 연안해운	특정된 다른 국가의 국기를 계양하고 등록된 선박을 핀란드에서의 연안해운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면제하는 조치로서 핀란드에 의해 취해진, 기존 또는 미래의 상호적 조치	모든 국가	무기한	연안해운의 지역적 특수성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3. 해상운송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등록된 선박을 스웨덴 연안해운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면제하는 조치로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스웨덴에 의해 취해진 상호적 조치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협정이 발효 중인 모든 국가	무기한	상호 협정에 근거한 연안해운 운수를 규제하기 위함.
24. 선박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CPC 83103)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7223).	독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의한 외국선박의 용선계약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모든 국가	무기한	독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 및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
25. 수산	공동체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발효되거나 서명된 수산을 포함한 모든 양자 또는 복수국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모든 국가	무기한	기존 그리고 미래의 양자 및 복수국간 국제협정의 보호를 위해 요구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6. 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특히 발틱해 유역에서의 국제보존 관행 및 정책 또는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폴란드가 우호적인 수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 관련 국가들의 어업 관할권 지역에서의 - 특혜 대우	모든 국가	미정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뿐만 아니라 관행을 근거로, 특히 발틱해 유역에서의 어업 및 수산 보전에 관한 협력
27. 법률 서비스	외국변호사는 법률 지원에 관한 양자 협정에 따라서만 리투아니아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적법성과 책임을 통제할 능력을 보장할 필요
28. 법률 서비스	불가리아 공화국에서, 서비스 공급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완전한 내국민대우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 및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시민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특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국가	무기한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9. 보건의료 서비스	양자간 협정이 서명되었거나 미래에 서명될 선택된 국가에서 사이프러스 시민에게 사이프러스에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의료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것.	의료 협력이 바람직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무기한	그 조치는 사이프러스와, 사이프러스가 지리적 인접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제3국과의 양자간 협정이 존재하거나, 새로운 양자협정을 미래에 서명할 가능성 때문에 필요함.
30. 의료 및 치과 서비스	불가리아 공화국의 영역에서 외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및 치과 서비스와 관한 비용과 지출을 부담하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과 보상 계획 및 프로그램은 양자 협정의 틀 내에서 상호주의를 근거로 부여됨.	그러한 양자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국가	무기한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31. 공공 사회보장 서비스	사이프러스와 일정한 국가들간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양자 협정의 규정	호주, 이집트, 캐나다, 퀘벡주 및 미래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모든 국가	무기한	계약당사자의 사회보장법령의 적용대상이거나 적용대상이 된 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거나 사회보장권을 취득한 경우 사회보장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특히, 혜택을 받을 자격을 목적으로 계약 당사자에서 보험 또는 거주 기간의 합산을 규정하는 이 협정들은 사이프러스와 노동 이동이 있는 국가들 간에 체결됨.
32. 출판 (CPC 88442의 일부)	이탈리아에서 회사의 자본 및 의결권 49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이탈리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33. 뉴스제공 서비스 (CPC 962의 일부)	프랑스어로 된 출판물을 출판하는 프랑스 회사의 자본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프랑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분야 또는 업종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34. 뉴스제공 서비스 (CPC 962의 일부)	프랑스에서의 시장접근.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프랑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35. 토지 구매	리투아니아 공화국 지방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헌법에 따라, 리투아니아가 개시한 유럽통합 및 그 밖의 통합의 기준을 준수해서 헌법에 의해 명시된 리투아니아에서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세 번 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외국인인 실체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내국 실체는, 그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농경지가 아닌 토지를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취득하는 것이 허용됨. 토지취득 절차, 조건 및 규제는 헌법에 의해 설정됨.	헌법에 의해 결정된 모든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³⁾ 북대서양조약기구 ³⁾ 회원 국, 및 유럽연합의 제휴국	무기한	리투아니아와 관련 국가들 사이의 큰 경제적 협력을 위하여, 보다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할 필요

3) 다만, 이 국가들이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경제개발협력기구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인 경우에 한함.

분야 또는 업종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36. 관광안내서비스	리투아니아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관광안내는 상호주의적으로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에 관한 양자간 협정(또는 계약)에 따라서만 제공될 수 있음.	협정(또는 계약)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 및 증진
37. 모든 분야	사이프러스 :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와 관련하여 자본의 이동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지역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의 면제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	무기한	상업적 주재의 점진적 자유화.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 중 일부 국가와의 상호 투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양자협정이 준비중임.

분야 또는 업종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38. 모든 분야	노르딕 협력 증진을 목표로 덴마크, 스웨덴 및 핀란드에 의해 취해진 다음의 조치 (a)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노르딕 산업기금) (b) 국제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연구 자금 조달(프로젝트 수출을 위한 노르딕 기금), 그리고 (c) 환경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⁴⁾에 대한 재정적 지원(노르딕 환경 재정 공사)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무기한	노르딕 협력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함.
39. 모든 분야	폴란드 : 부속서 7-가에 포함된 폴란드를 위한 제한을 넘어서는, 다음에 포함된 상업적 주재의 개념 (a) 통상 및 항해 조약 (b) 사업 및 경제 관계 조약, 그리고 (c) 외국인 투자협정의 증진 및 보호	모든 국가	미정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의 상호주의 규정

4) 하나 이상의 노르딕 기업과 협력중인 동유럽 기업들에 적용됨.

분야 또는 업종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40. 모든 분야	폴란드는 폴란드가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의 강제 중재 절차를 규정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기하거나, 그와 관련된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의 강제적인 중재를 수락함.	모든 국가	미정	외국인 투자의 증진과 보호
41. 모든 분야	상호주의적으로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의 이탈리아에서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허가	모든 국가	무기한	상호주의 요건은 그 밖의 국가에서의 이탈리아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함.
42. 모든 분야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이 행하는 일정한 활동 및 직업을 위한 국적 요건의 면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앙골라, 브라질, 카포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및 상투메프린시페)	무기한	이 조치는 포르투갈과 이러한 국가들간의 역사적 연계성을 반영함

분야 또는 업종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43. 모든 분야	일정한 회원국 ⁵⁾ 과 관련 국가들 및 공국들간의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자연인과 법인의 설립권을 규정하는 조치	산 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그리고 교황청	무기한	회원국과 관련 국가들 및 공국들간의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연계성

5) 다음의 회원국들이 적용대상이 됨: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대한민국

분야 또는 하위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1.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서명된 다음의 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상 국가들에 대해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가) 수산, 또는 (나)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2.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 대우를 국가에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대한민국은 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개정이 그 협정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의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모든 조치를 개정할 수 있음.
3. 항공운송부수서비스 (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 예약 시스템(CPS) 서비스 (d)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공항운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된 항공운송보조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4. 취약집단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5. 사회서비스	대한민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범위 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6.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대한민국은 편방향위성전송 (DTH) 및 직접방송위성 (DBS) 텔레비전 서비스와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보장과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7. 운송 서비스 - 철도운송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서명된 철도운송 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상 국가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8.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택시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대한민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9.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 운송 서비스는 제외)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국내운송은 제외)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도로 화물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10. 운송 서비스 - 내수운송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대한민국은 내수운송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11. 교육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대한민국은 유아·초등·중등교육, 보건·의료 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원격교육 (학점,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한 성인 교육은 제외),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 유보항목은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시험 운영에 적용되지 않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시험을 선택하고 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2.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대한민국은 사람을 인간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 유보항목은 <i>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i>(법률 제9616호, 2008.12.26.) 및 <i>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i>(법률 제9526호, 2009.3.25.)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유사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13.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서비스 - 영화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대한민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14. 운송 서비스 - 해상여객운송서비스와 연안해상운송	대한민국은 아래의 조치를 포함한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하고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연안해상운송은 대한민국선박에 유보되어 있음.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소재하고 있는 모든 항구간 해상운송을 포함함.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함. (a)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 또는 국토해양부 산하 설립기관이 소유한 선박 (b)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c)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으로서,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 책임자, 회장, 또는 유사한 주요 수석 상사)가 대한민국 국민인 기업 소유의 선박. 1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부속서 7-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정보의 이전

1. 양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의 보호,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 그러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규제기관의 능력,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과 같은 분야를 다루면서, 금융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자신의 규제제도에 대한 수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¹⁾

기능의 수행

2. 양 당사자는 당사자 영역 내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가.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나. 데이터처리²⁾,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다.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관리 및 비서 업무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라.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마. 은행계좌조정,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재

1) 이것은 특히, 투명성의 준수와 본국의 금융규제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보고 요건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이전을 포함한다.

2) 당사자가 제7.43조에 따라 자신의 영역 밖으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그 당사자는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처리를 또한 허용한다.

산 회계를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바.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자신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정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그 본점 또는 계열사가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에 적용가능한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5. 당사자의 우편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그 당사자의 우편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자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우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6.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 언더라이팅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그러한 서비스가 자신의 영역에서 동종 보험 언더라이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³⁾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7.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우위를 제공하여서는 아

3) 이 약속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할권 내의 우편서비스 공급자가 그 영역 내에서 보험 언더라이팅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유럽공동체에 또한 적용된다.

니 될 것이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당사자는 그러한 협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 보험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동종서비스에 자신이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8.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는 분야별 협동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자율규제기구

9. 한국보험개발원은 제7.40조 원칙의 적용대상이다. 이 확인은 이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 또는 다른 금융서비스 하위분야의 그 밖의 모든 기구의 지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금융규제당국이 보험에 관련된 기능을 자율규제기구 또는 그 밖의 비정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그 당국은 위임받은 기능에 따라 그 기구 또는 다른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제7.39조(투명성) 및 제7.23조(국내 규제)제2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양해**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즉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에 대하여

가.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
임, 그리고

나.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양 당사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그러한 공급이 유럽공동체에 설립된 공
급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금융서비스 공급
자는 서비스가 공급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설립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유
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설립을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을 확
인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공급은 금융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유럽집행위와 유럽공동체내 설립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가 그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축
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속된다. 유럽공동체 당사자는 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향후에 협의를 갖자는 대한민국의 제안을 환영
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¹⁾

이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유럽공동체 대표단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의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자신의 우편개혁계획의 다음의 측면에 유럽공동체 대표단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대한민국은 허용되는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우편법*, 관련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가. 그러한 개정이 입법화된 후,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신서의 범위는 그 개념의 재정의를 통해 보다 명확히 될 것이며, 신서 독점에 대한 예외는 중량, 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확대될 것이다.

나. 그러한 개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국내시장 조건, 우편 자유화를 이룬 그 밖의 국가의 경험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향후 3년 이내에 이러한 개정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모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편법시행령* 제3조를 또한 개정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모든 국제서류 특급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의 국제 및 국내 특급배달 서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우편 서비스 독점의 적용대상

1) 이 양해는 비구속적이며 제14장(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아니다.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이 협정의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대표단 간에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인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해,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 2) 다른 쪽 당사자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그 당사자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3) 제7.22조(투명성 및 비밀정보), 제7.23조(국내 규제) 및 제7.36조(통신분쟁의 해결)와 합치하는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용도지역지구제·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이 협정의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시점에서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내에 적용가능한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자는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하여 규제가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비차별적이며 비수량적인 조치를 구성하는 한, 이러한 규제가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양해를 공유한다.

위의 공동의 양해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다음의 법률에서 유지하는 특정한 조치들이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양 당사자는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8 장 지불 및 자본이동

제 8.1 조 경상지급

양 당사자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거주자 간에 국제수지의 경상 계정에 관한 모든 지급 및 송금이 자유교환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제 8.2 조 자본이동

1. 국제수지의 자본 및 금융 계정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유치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접 투자,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따라 자유화된 투자 및 그 밖의 거래, 그리고 그러한 투자 자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청산 및 본국 송금과 관련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해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2.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자는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제수지의 자본 및 금융 계정에 관한 거래에 대해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특히 다음과 관련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치국의 법에 따라 보장한다.

- 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거주자가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
- 나. 금융 대부 및 신용, 또는
- 다. 지속적인 경제적 연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의도가 없는 법인에 대한 자본 참여

3.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거주자 간의 자본이동에 대하여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약정이 더 제한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한다.

4.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자본이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 8.3 조 예 외

그러한 조치가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자본이동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안보 및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나.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1) 형사 범죄나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 또는 계약 불이행의 효과(파산, 지급불능 및 채권자 권리의 보호)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2)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 3) 유가증권, 옵션, 선물 또는 그 밖의 파생상품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 4)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5)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8.4 조 세이프가드 조치

1.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자 간의 지급 및 자본이동이 대한민국이나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¹⁾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엄격하게 필요한 자본 이동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²⁾는 관련 당사자³⁾에 의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⁴⁾동안 취해질 수 있다.

2.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채택을 즉시 통보받고 그 제거를 위한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 받는다.

-
- 1)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 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특히, 이 조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가. 필수적이지 아니할 것
 - 나.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 다. 제한된 자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 마.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그리고
 - 바. 외환정책을 담당하는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신속하게 공표될 것
- 3) 유럽공동체나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
- 4)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초로 채택할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 또는 동등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은 해당 당사자에 의해 한번 더 6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전에 모든 제안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조율한다.

제 9 장 정부조달

제 9.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이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상의 자신의 권리 및 의무와 각 당사자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간 무역 기회를 더욱 확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자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것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검토에 있어, 그리고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계속 협력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상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 또는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합의된 개정 정부조달협정 협정문(이하 “개정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¹⁾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가. 그 밖의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개정 정부조달협정 제4조제1항나호 및 제2항)

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개정 정부조달협정 제5조)

다. 참가조건(개정 정부조달협정 제8조제2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

1) 2007년 11월 19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negs 268(Job No[1].8274)에 포함되었다.

받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사전 작업 경험의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수적인 때를 제외하고,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기구(개정 정부조달협정 제21조), 그리고

마. 최종 규정(개정 정부조달협정 제22조)

5. 제4항에 따른 개정 정부조달협정 적용의 목적상,

가.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협정”이란 “장”을 말한다. 다만,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란 “비당사자”를 말하며, “협정의 당사자”란 “당사자”를 말한다.

나.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그 밖의 당사자”란 “다른 한 쪽 당사자”를 말한다. 그리고

다.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위원회”란 “작업반”을 말한다.

제 9.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은 그 개정 또는 대체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및 그에 따른 주석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이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9에서 정의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라 한다)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은 부속서 9의 적용을 받는다.

제 9.3 조

정부조달 작업반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부조달 작업반은 상호 합의하는 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을 위하여 회합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회부된 정부조달과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문제의 검토

나. 각 당사자의 정부조달과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기회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다.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의 논의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 1 조

정 의

1. 대한민국의 경우,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2. 유럽공동체의 경우,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란 사업 시행에 대한 대가가 오로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권리에 있거나 이 권리와 지불에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공공사업 계약과 동일한 유형의 계약을 말한다.

공공사업 계약이란 중양품목분류 제51대분류의 의미에서의 활동들의 하나와 관련된 사업의 시공이나 설계 및 시공 모두, 또는 수단을 불문하고 계약당국이 명시한 요건에 상응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이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일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건축 또는 토목 사업의 산출물을 말한다.

제 2 조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가능한 규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1.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그 당사자가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는 국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

3. 각 당사자는 조달기관이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예정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공고를 이 부속서 제4조에 기재된 적절한 공식적인 지면 또는 전자 매체에 공표하도록 보장한다. 공고는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무료로, 가능하다면 단일 접근점을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계약의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예정된 계약의 공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조달기관을 접촉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관련 문서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나. 계약에 대한 기술

다.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 주소와 마감일자

라. 제출되는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

마.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과 간략한 기술, 그리고

바. 계약의 낙찰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

낙찰 공고

4.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각 계약의 낙찰 후 적절한 기간 이내에,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4조에 기재된 적절한 공식 지면 또는 전자 매체에 조달기관 및 낙찰자의 명칭과 주소를 적시하여 그 계약의 낙찰이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재심

5.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권한있는 당국의 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재심제도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특별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제도의 창설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규칙 및 절차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조건으로, 이 부속서는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법령에 따라 수행한 조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안보 및 일반적 예외

7.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조달에 관련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당사자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의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노동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되는 조치

제 3 조

적용범위

1. 이 부속서는 15,000,000 특별인출권을 넘는 가액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된다.

2. 유럽공동체에 관하여, 이 부속서는 유럽공동체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3. 대한민국에 관하여, 이 부속서는 대한민국이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¹⁾

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공표수단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있는 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유럽공동체의 경우,

유럽 공공조달 정보 시스템: http://simap.europa.eu/index_en.html

유럽공동체 관보

1)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 10 장 지적재산

제 1 절 일반규정

제 10.1 조 목 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자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나.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

제 10.2 조 의무의 성격 및 범위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그들이 당사자인 지적재산을 다루는 국제조약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이 장의 규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고 구체화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작인접권

- 나. 특허와 관련된 권리
- 다. 상표
- 라. 서비스표
- 마. 디자인
- 바. 집적회로 배치설계
- 사. 지리적 표시
- 아. 식물품종, 그리고
- 자. 미공개정보의 보호

3. 지적재산의 보호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967)(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제10조의2에 언급된 불공정경쟁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제 10.3 조 기술의 이전

1. 양 당사자는 각각의 영역 내 및 제3국과의 기술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관행 및 정책에 관하여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정보의 흐름, 사업 합작, 라이선싱 및 종속계약을 촉진하는 조치를 특히 포함한다. 특히 인적자본 및 법적 체제의 개발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유치국에서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국가간 기술 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구성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싱 관행 또는 조건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4 조

소 진

양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소진에 대한 자신의 제도를 수립할 자유가 있다.

제 2 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제 1 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 10.5 조 부여되는 보호

양 당사자는 다음을 준수한다.

-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1961)(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 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 다.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라 한다) 저작권 조약 (1996)(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조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그리고
- 라.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제 10.6 조

저작자 권리의 존속기간

각 당사자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 10.7 조 방송사업자

1.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최초 송신 50년 이후에 만료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¹⁾

제 10.8 조 권리의 집중관리에 관한 협력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콘텐츠의 보다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그들 각각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이 항의 목적상, 당사자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한정된 가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자 영역 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상의 재송신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10.9 조 방송 및 공중전달

1. 이 조의 목적상,

가. **방송**이란 소리, 또는 이미지와 소리, 또는 그 표현물을 공중의 수신을 위해 무선수단에 의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에 의한 그러한 송신도 또한 “방송”이다. 복호화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되는 경우에 암호화되는 신호의 송신도 방송이다. 그리고,

나. **공중전달**이란 실연의 소리, 또는 음반에 고정된 소리나 소리의 표현물을 방송 이외의 모든 매체에 의해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5항의 목적상, “공중전달”은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 당사자는,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된 실연이거나 고정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실연을 무선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고 공중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실연자에게 제공한다.

3. 각 당사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4. 각 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사용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청구하도록 자신의 법령에 규정한다. 양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나누는 조건을 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불 하에 공중에
게 접근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법 사안이다.

제 10.10 조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양 당사자는 예술가의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대한 견해와 정
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도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제 10.11 조

제한 및 예외

양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
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제10.5조
부터 제10.10조까지에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제한 또는 이에 대
한 예외를 자신의 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

제 10.12 조

기술조치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장치, 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하거나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3.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암호화, 스크램블이나 그 밖의 변형,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령과 제10.5조에 언급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제 10.13 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협정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3. 제2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 10.14 조 경과규정

대한민국은 제10.6조 및 제10.7조의 의무를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완전하게 이행한다.

제 2 관 상 표

제 10.15 조

등록절차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고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출원인이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또한 이해당사자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제 10.16 조

국제협정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상표법조약(1994)*을 준수하며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06)*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제 10.17 조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각 당사자는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을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로서 규정하며, 그 밖의 제한적인 예외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관

지리적 표시²⁾³⁾

제 10.18 조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인정

1. 대한민국에서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통제 및 보호에 관련되는 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그 이행규칙과 함께 검토한 후, 유럽공동체는 이 법령이 제6항에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2. 유럽공동체에서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통제 및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정(EC) 제510/2006호*와 그 이행규칙, 그리고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에 관한 *이사회규정(EC) 제1234/2007호*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은 이 법령이 제6항에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3.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로서,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식품의 명세서 요약서를 검토한 후, 유럽공동체는 이 장에 규정된 보호수준에 따라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4. 제2항에 언급된 법령에 따라 유럽공동체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로서,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유럽공동체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식품 명세서의 요약서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은 이 장에 규정된 보호수준

2) 이 관의 “지리적 표시”는 다음을 지칭한다.

가. 2006년 3월 20일자 *이사회 규정(EC) 제510/2006호*, 2008년 1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 1991년 6월 10일자 *이사회 규정(EEC) 제1601/1991호*, 1999년 5월 17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와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 또는 이러한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 원산지 명칭,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포도주 및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테이블 포도주,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

3) 이 관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유럽공동체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5. 제3항은 제10.24조에 따라 추가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적용된다.

6.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통제를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는 것에 합의한다.

가. 각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등재하는 등록부

나.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적시하는 것임을 검증하는 행정절차

다. 등록된 명칭이 적절한 행정절차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제품 명세서가 규정되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특정제품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요건

라. 생산에 적용되는 통제규정

마. 등록된 명칭이 해당 명세서에 부합하는 농산물 또는 식품을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법적 규정, 그리고

바. 명칭이 지적재산의 형태로서 보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명칭의 선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도록 허용하는 이의절차

제 10.19 조

포도주⁴⁾·방향포도주⁵⁾ 및 증류주⁶⁾에 대한 특정 지리적 표시의 인정

4) 이 관에서 의미하는 포도주는 HS 제22.04호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이다.

가.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 2009년 7월 10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606/2009호, 2009년 7월 14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607/2009호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준수하는 제품

1. 대한민국에서는,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유럽공동체의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호된다.

2. 유럽공동체에서는,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호된다.

제 10.20 조 사 용 권

이 관에 따라 보호되는 명칭은 해당 명세서에 부합하는 농산물, 식품, 포도주, 방향포도주 또는 증류주를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 10.21 조 보호의 범위

1.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행위로부터 보호된다.

가.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
- 5) 이 관에서 의미하는 방향포도주는 HS 제22.05호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이다.
가. 1991년 6월 10일 이사회 규정(EEC) 제1601/1991호 및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8852호, 2008.2.2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준수하는 제품
- 6) 이 관에서 의미하는 증류주는 HS 제22.08호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이다.
가. 2008년 1월 1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와 1990년 4월 24일 집행위원회 규정(EEC) 제1014/90호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8852호, 2008.2.2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준수하는 제품

해당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나.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유사상품⁷⁾에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2. 이 협정은 인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영업상 전임자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결코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이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 당사자의 지리적 표시가 동음인 경우, 선의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표시에 보호가 부여된다. 지리적 표시 작업반은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음의 지리적 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이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가 제3국의 지리적 표시와 동음인 경우, 각 당사자는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음의 지리적 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모든 상품에 대하여, “유사상품”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에 대하여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 또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증류주에 대하여 증류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3조제1항에 맞게 해석된다.

5. 이 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이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원, 등록되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해당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사용에 의하여 확립된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의 법령에 그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제10.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제 10.22 조

보호의 집행

양 당사자는 제10.18조부터 제10.23조까지에 규정된 보호를 당국의 적절한 개입에 의하여 직권으로 집행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호를 집행한다.

제 10.23 조

상표와의 관계

1.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제10.21조제1항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의 유사상품에 대한 등록은, 상표 등록 출원이 해당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후에 제출되는 한, 양 당사자에 의하여 거절되거나 무효화된다.

2. 제1항의 목적상,

가.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이다. 그리고

나. 제10.24조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거나 인정해 달라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을 당사자가 접수한 날이다.

제 10.24 조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⁸⁾

1.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제10.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추가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부속서에 추가해 달라는 다른 쪽의 요청을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3. 명칭이 포도의 품종을 포함하여, 식물의 품종 또는 동물의 종의 명칭과 충돌되고 그 결과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명칭은 지리적 표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제 10.25 조
지리적 표시 작업반

1.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리적 표시 작업반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작업반은 컨센서스로 권고를 하거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회의 장소는 양 당사자간 교대로 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자가 상호 결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그리고 화상회의를 포함한 방식으로 회합하나, 요

8) 제10.18조제1항, 제10.18조제2항 및 제10.19조 각주에 언급된 것 이외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법을 통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의 의미에서의 지리적 표시로서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된 원산지 명칭을 이 협정에 추가하려는 제안이 다음과 같이 제기된 경우, 양 당사자는 그 지리적 표시가 이 관에 따라 이 협정에 추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10.18조제2항 및 제10.19조 각주에 규정된 유럽공동체 법령의 범위에 해당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제안이 제기된 경우, 또는

나. 유럽공동체에 의하여 제10.18조제1항 및 제10.19조 각주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법령의 범위에 해당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제안이 제기된 경우

청 후 90일 이내에는 회합한다.

3. 작업반은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가. 적용가능한 경우 제10.18조제3항 및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보호될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의 개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기 위해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는 것

나. 원산지 당사자⁹⁾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더 이상 다른 쪽 당사자에서 지리적 표시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개별 지리적 표시를 삭제하기 위해 가호에 언급된 부속서를 수정¹⁰⁾하는 것, 그리고

다. 이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의 발효 후 특정일에 개정되고 대체되어 효력이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4. 작업반은 또한 이 관이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 이행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을 담당한다.

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입법 및 정책 발전에 관한 정보의 교환

나. 이 협정에 따라 그 보호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

5. 작업반은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어떠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다.

9)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중단하는 결정은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로 하는 당사자의 전속 책임이다.

10) 이는 명칭 및 제품 범주를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 그 자체의 수정을 말한다. 제10.18조제3항 및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명세서의 수정 또는 제10.18조제6항 라호에 언급된 책임 있는 통제기구의 수정은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로 하는 당사자의 전속 책임이다. 그러한 수정은 정보목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제 10.26 조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 출원

이 관의 규정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의 관련법령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4 관
디자인

제 10.27 조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1.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다.¹¹⁾
2. 이 보호는 등록에 의해 제공되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제 10.28 조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

11) 대한민국은 디자인등록을 위한 출원이 제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경우, 디자인이 새롭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은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위한 출원이 제출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었던 경우, 디자인이 독창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공동체는 등록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또는 미등록 디자인의 공개일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디자인이 새롭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공동체는 디자인이 정보가 있는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이 그러한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다르지 아니한 경우, 디자인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무역관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아니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 10.29 조 미등록 외관에 부여되는 보호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¹²⁾ 그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제시¹³⁾,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한다.

제 10.30 조 보호기간

1. 등록이후 양 당사국에서 이용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15년에 달한다.
2. 미등록 외관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에서 이용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3년에 달한다.

제 10.31 조 예 외

-
- 12) 이 조의 목적상,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미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외관”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등록 디자인” 또는 “미등록 외관”의 보호를 위한 조건은 다음에 규정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법률 제8767호, 2007년 12월 21일), 그리고
나. 유럽공동체의 경우, 2006년 12월 18일 이사회규정(EC) 제1891/2006호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 이사회규정(EC) 제6/2002호
- 13) 이 조의 목적상, 대한민국은 “제시”를 “양도, 대여 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로 간주하고, 유럽공동체는 “제시”를 “제공” 또는 “출시”로 간주한다.

1.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디자인의 보호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디자인 보호는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되는 디자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디자인권은 공공정책 또는 인정된 도덕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 10.32 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관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에서 등록된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이 창작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고정된 날부터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도 받을 자격이 있다.¹⁴⁾

제 5 관 특 허

제 10.33 조 국제협정

양 당사자는 특허법조약(2000)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수하기 위해 모

14) 저작권법상의 디자인 보호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제 10.34 조 특허와 공중보건

1. 양 당사자는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이라고 한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 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도하 선언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2. 각 당사자는 도하 선언 제6항에 관한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결정*과 2005년 12월 6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이행에 기여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 10.35 조 특허보호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1. 양 당사자는 각각의 영역에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의약품¹⁵⁾ 및 식물보호제품¹⁶⁾은 자신의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행정적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15) 부속서 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16) 식물보호제품은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형태에 있어서 활성물질, 완화제 또는 상승제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며, 다음의 용도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한다.

가. 식물 또는 식물제품을 모든 유해 유기체로부터 보호하거나 그러한 유기체의 활동을 방지하는 것, 다만, 이러한 제품의 주요목적이 식물 또는 식물제품의 보호가 아니라 위생상의 이유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영양제 이외의 것으로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식물제품을 보존하는 것, 다만, 그러한 물질이나 제품이 보존제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특별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원하지 아니한 식물 및 식물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 다만, 제품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토양이나 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이 식물에는 조류는 제외한다. 또는

마. 식물의 원하지 아니한 성장을 저지하거나 방지하는 것, 다만, 제품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토양이나 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이 식물에는 조류는 제외한다.

2. 양 당사자는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최초허가의 결과로서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규정한다.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¹⁷⁾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0.36 조

의약품¹⁸⁾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1. 양 당사자는 의약품 시판허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자료의 비밀성, 비공개 및 비원용을 보장한다.

2. 그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9조에 언급된 대로,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인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시판허가 보유자가 이러한 자료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의약품의 또 다른 시판허가를 부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각자의 법령에 보장한다.

3. 자료보호기간은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획득된 최초 시판허가일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5년이어야 할 것이다.

제 10.37 조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1. 양 당사자는 식물보호제품을 각각의 시장에 출시하도록 허가하기 전

¹⁷⁾ 이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 소아과 사용을 위한 연장 가능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¹⁸⁾ 부속서 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에 안전성 및 유효성 요건을 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식물보호제품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인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 시험, 연구보고서 또는 정보가, 최초 신청인이 이러한 자료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 밖의 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 또는 관련당국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보호는 이하 자료보호라 한다.

3. 자료보호 기간은 각 당사자에서의 최초 시판허가일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0년이어야 할 것이다.

제 10.38 조

이 행

양 당사자는 이 관에서 예견된 보호의 완전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한다.

제 6 관

그 밖의 규정

제 10.39 조

식물품종

각 당사자는 식물품종의 보호를 규정하고, 식물 신품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1)을 준수한다.

제 10.40 조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 자신의 법령을 조건으로, 양 당사자는 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 보존 및 유지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 하에 더욱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2. 양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관련 다자간 토론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가. 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의 틀 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나. 세계무역기구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이하 “생물다양성협약”이라 한다)간의 관계와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혜택공유에 관한 국제체제에 관련된 문제

3. 제2항에 언급된 관련 다자간 논의의 종결 이후, 양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다자간 논의의 결과 및 결론에 비추어 무역위원회에서 이 조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위원회는 그 검토결과에 대해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3 절 지적재산권의 집행

제 10.41 조 일반적 의무

1. 양 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그 협정 제3부상의 각자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¹⁹⁾의 어떠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허용되도록 다음의 보완적 조치, 절차 및 구제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그러한 조치, 절차 및 구제는

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한다.

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다.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한 기한 또는 부당한 지체를 수반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라.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하고,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제 10.42 조 자격있는 신청자

각 당사자는 다음의 인을 이 절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에 언급된 조치, 절차 및 구제의 신청을 구할 자격이 있는 인으로 인정한다.

가. 적용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산권자

나. 적용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모든 그

¹⁹⁾ 제10.2조제2항 가호부터 아호까지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 밖의 인, 특히 라이선스를 가진 자
- 다. 적용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자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정규적으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 집중관리단체, 또는
- 라. 적용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협회 또는 조합

제 1 관

민사조치·절차 및 구제

제 10.43 조

증 거

각 당사자는,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권한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은행, 재정 또는 상업 서류의 제출을, 적절한 경우 그리고 일방의 신청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44 조

증거보전을 위한 잠정조치

1. 각 당사자는, 사건의 본안에 관한 절차의 개시 이전이라도,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곧 침해되려고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증거를 제시한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한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침해 혐의에 관한 관련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가, 침해상품,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의, 견본 수집 여부를 불문한 상세설명 또는 물리적 압류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자연으로 인해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진술없이 취해진다.

제 10.45 조

정 보 권

1.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절차 동안 그리고 원고의 정당하고 비례적인 요청에 대응하여, 권한있는 사법당국이 침해자 및/또는 그 밖의 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근원 및 유통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이 항의 “그 밖의 인”이란 다음의 인을 말한다.

- 1) 상업적 규모로 침해상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 2) 상업적 규모로 침해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 3) 침해활동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상업적 규모로 제공하는 것으로 발견된 인, 또는
- 4)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배포나 서비스의 공급에 연루된 것으로 이 호에 언급된 인에 의하여 지목된 인

나. 정보는 적절한 경우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의도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공급자 및 그 밖의 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 2) 문제가 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획득된 정보로서, 생산, 제조, 배달, 수령 또는 주문된 양과 가격에 관한 것

2. 이 조는 다음의 그 밖의 법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 가. 권리자에게 더 완전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정
 - 나. 이 조에 따라 전달된 정보를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규정
 - 다. 정보권의 오용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법규정
 - 라. 제1항에 언급된 인이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자신 또는 가까운 친족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강요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규정, 또는
 - 마. 정보원의 비밀성의 보호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법규정

제 10.46 조

잠정적 및 예방적 조치

1.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의 임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신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반복적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그 침해행위의 계속을 금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계속에 권리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중간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간금지명령은 제3자에 의하여 중개자²⁰⁾의 서비스가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그 중개자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다.

2. 중간금지명령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상거래로 유입되거나 상거래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의 압류를 명령하기 위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

²⁰⁾ 이 항의 목적상, “중개자”의 범위는 각 당사자의 법령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침해상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하는 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3.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침해의 경우에 있어, 각 당사자는 신청인이 손해의 회복을 위협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사법당국이 은행계정 및 그 밖의 자산의 동결을 포함하여 침해혐의자의 동산 및 부동산의 예방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0.47 조

시정조치

1. 각 당사자는 권한있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어떠한 손해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의 폐기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사법당국은 그러한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도 명령할 수 있다.

2. 사법당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원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정조치에 대한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제3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간의 비례성의 필요가 고려된다.

제 10.48 조

금지명령

1.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판정하는 사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법당국이 침해의 계속을 금지할 목적의 금지명령을 침해자에게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준수를 보장할 목적으로,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반복적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각 당사자는 중개자²¹⁾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가 그 중개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도록 또한 보장한다.

제 10.49 조 대체조치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그리고 제10.47조 또는 제10.48조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책임이 있는 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인이 고의나 과실 없이 행동하였다면, 문제가 되는 조치의 집행이 비례적이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면, 그리고 피해당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면, 권한있는 사법당국이 제10.47조 또는 제10.48조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는 대신 피해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10.50 조 손해배상

1.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사법당국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적절한 경우 침해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의 요소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한다. 또는
 - 나. 가호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당국은 적절한 경우에 있어, 침해자가 문제가 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불되었어

21) 이 항의 목적상, “중개자”의 범위는 각 당사자의 법령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침해상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하는 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야 할 최소한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일괄 지급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양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또는 사전에 설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사전설정 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 10.51 조

법적 비용

각 당사자는 승소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법적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보장한다.

제 10.52 조

사법적 결정의 공표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있어,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침해자의 비용으로, 결정을 게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뚜렷한 광고를 포함하여 특정한 상황에 적절한 그 밖의 추가적인 공표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제 10.53 조
저작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이나 실체가 그러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지정된 권리자라는 추정을 규정한다.

제 2 관
형사집행

제 10.54 조
형사집행의 범위

각 당사자는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²²⁾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제 10.55 조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헌법 또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의 위조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수립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한다.

²²⁾ “저작인접권”이라는 용어는 각 당사자에 의해 자신의 국제의무에 따라 정의된다.

제 10.56 조

법인의 책임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원칙에 합치하게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수립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다.

2. 그러한 책임은 그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0.57 조

방조 및 교사

이 관의 규정은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방조 및 교사에 적용된다.

제 10.58 조

압 수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경우에 있어,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의심상품, 위법혐의행위 수행에 주로 사용된 관련 재료 및 도구,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서류증거,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 10.59 조

벌 칙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 선고를 포함한 벌칙을 규정한다.

제 10.60 조

물 수

1.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있는 당국이 모든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과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몰수 및/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몰수된 상표위조 상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상품이 인간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하지 아니하다는 조건하에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자는 나아가 이 조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피고인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10.61 조

제3자의 권리

각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제 3 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 10.62 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²³⁾의 책임

양 당사자는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중개서비스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전혀 연루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제10.63조부터 제10.66조까지에 명시된 조치를 규정한다.

제 10.63 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단순도관”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 제공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송신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 가. 제공자가 송신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
- 나. 제공자가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다. 제공자가 송신에 담긴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제공 행위는, 저장이나 통신망에서 송신을 실행할 목적으로만 일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정보가 송신을 위해 합

23) 제10.63조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간 또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위해 송신, 라우팅 또는 접속하는 제공자를 말하고, 제10.64조 및 제10.65조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망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아니하는 한, 송신되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을 포함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64 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캐싱”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다른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그 서비스 수신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계속적 송신을 보다 효율적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만 행하여지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할 것

나. 제공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조건을 준수할 것

다. 제공자가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보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라. 제공자가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이용에 간섭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마. 제공자가 송신의 최초 원천에 있는 정보가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었거나, 또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그러한 제거나 무력화를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 자신이 저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65 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호스팅”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명백하게 하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할 것, 또는

나. 제공자가,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제1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자의 권한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가 정보의 제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를 규율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66 조

감시할 일반적 의무의 면제

1. 양 당사자는, 제공자가 제10.63조부터 제10.65조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인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일반적인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행해진 불법행위의 활동이나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권한있는 당국에게 신속하게 알려줄 의무, 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저장계약을 맺고 있는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권한있는 당국에게 전달할 의무를 수립할 수 있다.

제 4 관 그 밖의 규정

제 10.67 조 국경조치

1. 각 당사자는, 이 절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²⁴⁾의 수입, 수출, 재수출, 보세운송, 환적, 자유지역에의 장치²⁵⁾,

24) 이 조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위조상품, 즉

- 1) 포장을 포함하여 같은 형태의 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를 허가 없이 지닌 상품
- 2) 가호1)목에서 언급된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분리되어 제시된다 할지라도, 모든 상표의 상징(로고, 라벨, 스티커, 소책자, 사용지침 또는 보증서류), 또는
- 3) 가호1)목에서 언급된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분리되어 제시되는, 위조상품의 상표를 지닌 포장재료

나. 각 당사자의 법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권리자의 동의 또는 제작국에서 권리자에 의해 정당하게 허락받은 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복제물이거나 복제물을 포함하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다. 세관조치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자의 법에 따라 다음을 침해하는 상품

임시 절차²⁶⁾ 또는 보세창고에의 장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 권리자가 세관당국이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것을 권한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²⁷⁾를 채택한다.

2. 양 당사자는 세관당국이, 자신의 조치과정에서 그리고 권리자에 의해 신청이 제출되거나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때, 권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장을 이행하면서 확립된 수입업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수출업자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상품의 보유자²⁸⁾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4. 대한민국은 각주²⁴⁾의 다호1목 및 다호3목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상의 의무를 협정 발효 2년 내에 완전히 이행한다.

제 10.68 조 행동규범

양 당사자는 다음을 장려한다.

가. 업종 또는 전문적인 협회 또는 조직이, 특히 자신의 제조근원의

-
- 1) 특허
 - 2) 식물 품종권
 - 3) 등록 디자인, 또는
 - 4) 지리적 표시

25) “보세운송, 환적, 자유지역에의 장치”는 교토협약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26) 한국의 경우 “임시절차에의 장치”는 일시수입 및 보세공장을 포함한다. 유럽공동체의 경우, “임시절차에의 장치”는 일시수입, 역내가공 및 세관통제하의 가공을 포함한다.

27)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나라의 시장에 판매된 상품의 수입에 그러한 절차를 적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8) 최소한 상품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처분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는 인을 포함한다.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를 광학디스크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규범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나. 행동규범 초안과 이러한 행동규범의 적용에 대한 평가를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하는 것

제 10.69 조

협 력

1. 양 당사자는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약속과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체제와 보호 및 집행의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입법 진전사항에 대한 경험의 교환

나.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다. 세관, 경찰, 행정 및 사법기관에 의한 중앙 및 지방 단계에서의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다른 나라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위조품의 수출 방지를 위한 조정

라. 역량 배양, 그리고

마. 특히 업계 및 시민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증진 및 전파, 소비자 및 권리자의 공중인식 증진

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제1항에 대한 보완으로서,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는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련된 주제와 그 밖의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적재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화체(지적재산 대화체)를 설치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 1 부 유럽공동체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¹⁾²⁾ (제10.18조 제4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Tiroler Speck	햄	티롤러 슈페크
Steirischer Kren	고추냉이	슈타이리셔 크렌

체코공화국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České pivo	맥주	체스께 삐보
Budějovické pivo	맥주	부데요비츠께 삐보
Budějovický měšt'anský var	맥주	부데요비츠끼 므네슈판스키 바르
Českobudějovické pivo	맥주	체스꼬부데요비츠께 삐보
Žatecký chmel	홉	자떼스키 슈멜

프랑스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Comté	치즈	콩떼 / 콩테
Reblochon	치즈	르블로송 / 레블로송

1) 이탤릭으로 쓰여진 단어는 지리적 표시의 일부가 아니다.

2) 지리적 표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경우, "Szegedi téliszalámi / Szegedi szalámi", 이는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Roquefort	치즈	로끄포르 / 로크포르
Camembert de Normandie	치즈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 카망베르 드 노르망디
Brie de Meaux	치즈	브리 드 모
Emmental de Savoie	치즈	에멘탈 드 사부아 / 에멩탈 드 싸부아
Pruneaux d'Agen / Pruneaux d'Agen mi-cuits	조리건포도	프뤼노 다장 / 프뤼노 다쟁
Huîtres de Marennes-Oléron	굴	(마렌느 올레롱 굴) 위트르 드 마렌느 올레롱
Canards à foie gras du Sud-Ouest (Chalosse, Gascogne, Gers, Landes, Périgord, Quercy)	오리지방간	까나르 아 푸아그라 뒤 쉬드우에스트 / 까나르 아 푸아그라 뒤 쉬드우에스트
Jambon de Bayonne	햄	장봉 드 바이온 (바이온 햄)
Huile d'olive de Haute-Provence	올리브유	(오뜨 프로방스 올리브유) 월돌리브 드 오뜨 프로방스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라벤더 에센스유	(오뜨 프로방스 라벤더 에센스 오일) 월 에쌍시엘 드 라병드 드 오뜨 프로방스

독일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Bayerisches Bier	맥주	바이어리췌스 비어
Münchener Bier	맥주	뮌헨너 비어

그리스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Ελιά Καλαμάτας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Elia Kalamatas)	올리브	엘리아 깔라마파스
Μαστίχα Χίου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Masticha Chiou)	껌	마스티하 히우
Φέτα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Feta)	치즈	페따

헝가리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Szegedi téliszalámi / Szegedi szalámi	살라미	세게드 텔리살라미 / 세게드 살라미

이탈리아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Aceto balsamico Tradizionale di Modena	소스 - 양념	아체토 발사미코 틀앗디치오날에 디 모데나 (모데나의 전통 발사믹 식초)
Cotechino Modena	돼지고기 소시지	코테키노 모데나 (모데나의 코테키노 <살루미 일종>)
Zampone Modena	돼지고기	잠포네 모데나 (모데나의 돼지 앞발)
Mortadella Bologna	큰 돼지고기 소시지	모르타델라 볼로냐 (볼로냐의 모르타델라 (사를미의 일종)
Prosciutto di Parma	햄	프로슈토 디 파르마 (생햄)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Prosciutto di S. Daniele	햄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생햄)
Prosciutto Toscano	햄	프로슈토 디 토스카나 (생햄)
Provolone Valpadana	치즈	프로볼로네 발파다나 (치즈 일종)
Taleggio	치즈	탈레조 (베르가모 산 치즈의 일종)
Asiago	치즈	아시아고
Fontina	치즈	폰티나 (발다오스타 지역의 치즈의 일종)
Gorgonzola	치즈	고르곤졸라 (치즈의 일종)
Grana Padano	치즈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일종)
Mozzarella di Bufala Campana	치즈	모차렐라 디부팔라 캄파나
Parmigiano Reggiano	치즈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의 일종)
Pecorino Romano	치즈	페코리노 로마노 (로마의 페코리노 <양젖 치즈의 일종>)

포르투갈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Queijo de Sao Jorge	치즈	케이주 썬 조르쥬

스페인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Baena	올리브유	바에나
Sierra Mágina	올리브유	씨에라 마히나
Aceite del	올리브유	아쎬이떼 델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Baix-Ebre-Montsía / Oli del Baix Ebre-Montsià		바야스에브래몬샤 (바야스에브래몬샤산 기름)
Aceite del Bajo Aragón	올리브유	아쎬이떼 델 바호 아라곤 (바호 아라곤산 기름)
Antequera	올리브유	안테께라
Priego de Córdoba	올리브유	쁘리에고 데 꼬르도바
Sierra de Cádiz	올리브유	씨에라 데 까디스
Sierra de Segura	올리브유	씨에라 데 세구라
Guijuelo	햄	귀후엘로
Jamón de Huelva	햄	하몬 데 우엘바 (우엘바산 햄류)
Jamón de Teruel	햄	하몬 데 떼루엘 (떼루엘산 햄류)
Salchichón de Vic / Llonganissa de Vic	소시지	살치촌 데 빅 (빅산 살치촌, 육가공품의 일종)
Mahón-Menorca	치즈	마온-메노르까
Queso Manchego	치즈	께소 만체고 (라 만차산 치즈)
Cítricos Valencianos / Cítrics Valencians	감귤류	씨뜨리꼬스 발렌씨아노스 (발렌씨아산 감귤류)
Jijona	누가	히호나
Turrón de Alicante	과자류	뚜론 데 알리칸떼 (알리칸떼산 누가)
Azafrán de la Mancha	사프란	아짜프란 데 라 만차 (라 만차산 사프란)

제 2 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 (제10.18조제3항
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보성녹차(Boseong Green Tea)	녹차	Boseong Nokcha
하동녹차(Hadong Green Tea)	녹차	Hadong Nokcha
고창복분자주(Gochang Black Raspberry Wine)	복분자주	Gochang Bokbunjaju
서산마늘(Seosan Garlic)	마늘	Seosan Maneul
영양고춧가루(Yeongyang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Yeongyang Gochutgaru
의성마늘 (Uiseong Garlic)	마늘	Uiseong Maneul
괴산고추 (Goesan Red Pepper Dried)	고추	Goesan Gochu
순창전통고추장(Sunchang Traditional Gochujang)	고추장	Sunchang Jeontong Gochujang
괴산고춧가루(Goesan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Goesan Gochutgaru
성주참외(Seongju Chamoe)	참외	Seongju Chamoe
해남겨울배추(Haenam Winter Bacchu)	배추	Haenam Gyeoul Baechu
이천쌀(Icheon Rice)	쌀	Icheon Ssal
철원쌀(Cheorwon Rice)	쌀	Cheorwon Ssal
고흥유자(Goheung Yuja)	유자	Goheung Yuja
홍천찰옥수수(Hongcheon Waxy Corn)	찰옥수수	Hongcheon Charoksusu
강화약쑥(Ganghwa Mugwort)	약쑥	Ganghwa Yakssuk
횡성한우고기(Hoengseong Hanwoo Beef)	소고기	Hoengseong Hanwoogogi
제주돼지고기(Jeju Pork)	돼지고기	Jeju Dwaejigogi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고려홍삼(Korean Red Ginseng)	홍삼	Goryeo Hongsam
고려백삼(Korean White Ginseng)	백삼	Goryeo Baeksam
고려태극삼(Korean Taekuk Ginseng)	태극삼	Goryeo Taekuksam
충주사과(Chungju Apple)	사과	Chungju Sagwa
밀양얼음골사과(Miryang Eoreumgol Apple)	사과	Miryang Eoreumgol Sagwa
정선황기(Jeongseon Hwanggi)	황기	Jeongseon Hwanggi
남해마늘(Namhae Garlic)	마늘	Namhae Maneul
단양마늘(Danyang Garlic)	마늘	Danyang Maneul
창녕양파(Changnyeong Onion)	양파	Changnyeong Yangpa
무안양파(Muan Onion)	양파	Muan Yangpa
여주쌀(Yeaju Rice)	쌀	Yeoju Ssal
무안백련차(Muan White Lotus Tea)	백련차	Muan Baengnyeoncha
청송사과(Cheongsong Apple)	사과	Cheongsong Sagwa
고창복분자(Gochang Black Raspberry)	복분자	Gochang Bokbunja
광양매실(Gwangyang Maesil)	매실	Gwangyang Maesil
정선찰옥수수(Jeongseon Waxy Corn)	찰옥수수	Jeongseon Charoksusu
진부당귀 (Chinbu Dangui)	당귀	Chinbu Dangui
고려수삼(Korean Fresh Ginseng)	수삼	Goryeo Susam
청양고추(Cheongyang Hot Pepper)	고추	Cheongyang Gochu
청양고춧가루(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고춧가루	Cheongyang Gochutgaru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해남고구마(Haenam Sweet Potato)	고구마	Haenam Goguma
영암무화과(Yeongam Fig)	무화과	Yeongam Muhwagwa
여주고구마(Yeaju Sweet Potato)	고구마	Yeoju Goguma
함안수박(Haman Watermelon)	수박	Haman Subak
고려인삼제품 (Korean Ginseng Products)	백삼 또는 태극삼 제품	Goryeo Insamjepum
고려홍삼제품(Korean Red Ginseng Products)	홍삼제품	Goryeo Hongsamjepum
군산찰쌀보리쌀(Gunsan Glutinous Barley)	보리	Gunsan Chalssalborissal
제주녹차(Jeju Green Tea)	녹차	Jeju Nokcha
홍천한우(Hongcheon Hanwoo)	소고기	Hongcheon Hanwoo
양양송이버섯(Yangyang Pine-mushroom)	송이버섯	Yangyang Songibeoseot
장흥표고버섯(Jangheung Oak-mushroom)	표고버섯	Jangheung Pyogobeoseot
산청곶감(Sancheong Persimmon Dried)	곶감	Sancheong Gotgam
정안밤(Jeongan Chestnut)	밤	Jeongan Bam
울릉도삼나물(Ulleungdo Samnamul)	삼나물	Ulleungdo Samnamul
울릉도미역취(Ulleungdo Miyeokchwi)	미역취	Ulleungdo Miyeokchwi
울릉도참고비(Ulleungdo Chamgobi)	참고비	Ulleungdo Chamgobi
울릉도부지갱이(Ulleungdo Bujigaengi)	부지갱이	Ulleungdo Bujigaengi
경산대추(Gyeongsan Jujube)	대추	Gyeongsan Daechu
봉화송이(Bonghwa Pine-mushroom)	송이버섯	Bonghwa Songi
청양구기자(Cheongyang Gugija)	구기자	Cheongyang Gugija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상주곶감(Sangju Persimmon Dried)	곶감	Sangju Gotgam
남해창선고사리(Namhae Changsun Fern)	고사리	Namhae Changsun Gosari
영덕송이(Yeongdeok Pine-mushroom)	송이버섯	Yeongdeok Songi
구례산수유(Gurye Corni fructus)	산수유	Gurye Sansuyu
광양백운산 고로쇠 (Gwangyang baekunsan Acer mono sap)	고로쇠수액	Gwangyang baekunsan Gorosoe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 1 부 유럽공동체를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¹⁾(제10.19조제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 1 절 유럽공동체를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프랑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Beaujolais	보졸레
Bordeaux	보르도
Bourgogne	부르고뉴 / 버건디
Chablis	샤블리 / 샤블리스
Champagne	샹파뉴 / 샴페인 / 샹빠뉴
Graves	그라브
Médoc	메독 / 매독
Moselle	모젤
Saint-Emilion	생테밀리옹 / 생테밀리옹
Sauternes	쑤테른 / 소테른
Haut-Médoc	오메독 / 오매독
Alsace	알자스
Côtes du Rhône	코뜨 뒤 론 / 코트 뒤 론
Languedoc	랑그독
Côtes du Roussillon	코뜨 뒤 루시옹 / 코트 뒤 루시옹

1) 이탤릭으로 쓰여진 부분은 지리적 표시의 일부가 아니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Châteauneuf-du-Pape	샤또 네프 뒤 빠쁘 / 샤또 네프 뒤 파프
Côtes de Provence	코뜨 드 프로방스 / 코트 드 프로방스
Margaux	마르고 / 마고
Touraine	투렌느 / 투렌
Anjou	앙주 / 앙쥬
Val de Loire	뱅드빼이 뒤 발 드 루아르 / 뱅드빼이 뒤 발 드 르와르

독일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Mittelrhein	미털라인
Rheinhessen	라인헤센
Rheingau	라인가우
Mosel	모젤

그리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Ρετσίνα (<i>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Retsina</i>)	레찌나
Σάμος (<i>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Samos</i>)	사모스

헝가리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Tokaji	토카이

이탈리아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Chianti	키안티
Marsala	마르살라
Asti	아스티
Barbaresco	바르바레스코
Bardolino	바르돌리노
Barolo	바롤로
Brachetto d'Acqui	브라케토 다퀴
Brunello di Montalcino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Vino nobile di Montepulciano	비노 노빌레 디 몬테 풀치아노
Bolgheri Sassicaia	볼게리 사씨카이아
Dolcetto d'Alba	돌체토 달바
Franciacorta	프란차코르타
Lambrusco di Sorbara	람브루스코 디 소르바라
Lambrusco Grasparossa di Castelvetro	람브루스코 그라스파로사 디 카스텔 베토로
Montepulciano d'Abruzzo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초
Soave	소아베
Campania	캄파니아
Sicilia	시칠리아
Toscana	토스카나
Veneto	베네토
Conegliano Valdobbiadene	코넬리아노 발도비아네 데네

포르투갈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Madeira	마테이라
Porto <i>or</i> Port	포르투
Douro	도우루
Dão	더웅
Bairrada	바이하다
Vinho Verde	비뉴 베르드
Alentejo	알렌떼주

루마니아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Dealu Mare	데알루 마레
Murfatlar	무르파트라르

슬로바키아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Tokajská <i>or</i> Tokajský <i>or</i> Tokajské	토카이스카 / 토카이스키 / 토카이스케

스페인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Málaga	말라가
Rioja	리오하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Jerez – Xérès – Sherry <i>or</i> Jerez <i>or</i> Xérès <i>or</i> Sherry	헤레스 – 헤레스 – 셰리, 헤레스, 헤레스 혹은 셰리
Manzanilla - Sanlúcar de Barrameda	만싸니야 – 산루까르 데 바라메다
La Mancha	라 만차
Cava	까바
Navarra	나바라
Valencia	발렌씨아
Somontano	소몬따노
Ribera del Duero	리베라 델 두에로
Penedés	빠네데스
Bierzo	비에르쑈
Ampurdán-Costa Brava	암뿌르단 – 꼬스따 브라바
Priorato <i>or</i> Priorat	쁘리오라또 / 뿌리오란
Rueda	루에다
Rías Baixas	리아스 바이샤스
Jumilla	후미야
Toro	또로
Valdepeñas	발데빠냐스
Cataluña	까탈루냐
Alicante	알리칸떼

제 2 절 유럽공동체를 원산지로 하는 증류주²⁾³⁾

오스트리아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Jägertee / Jagertee / Jagatee	예거테
Inländerrum	인랜더룸
Korn / Kornbrand ⁴⁾	코언 / 코언브랜드

벨기에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Korn / Kornbrand ⁵⁾	코언 / 코언브랜드

사이프러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Ouzo ⁶⁾	우조

핀란드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Vodka of Finland	보드카 오브 핀란드
Finnish berry liqueur / Finnish fruit liqueur	피니쉬 베리 리퀴 / 피니쉬 프루트리퀴

2) 이탤릭으로 쓰여진 부분은 지리적 표시의 일부가 아니다.

3) 지리적 표시가 다음과 같이 사용된 경우: "Korn / Kornbrand", 이것은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5)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6) 사이프러스 또는 그리스의 제품

프랑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Cognac	꼬냑 / 코냑
Armagnac	아르마냑
Calvados	칼바도스 / 칼바도스

독일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Korn / Kornbrand ⁷⁾	코언 / 코언브랜드

그리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Ouzo ⁸⁾	우조

헝가리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Törkölypálinka	퇴르쿄이팔링카
Pálinka	팔링카

7)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8) 사이프러스 또는 그리스의 제품

아일랜드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Irish whiskey / Irish whisky	아이리쉬 위스키 (양주의 일종)

이탈리아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Grappa	그라파

폴란드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Polska Wódka / Polish Vodka	폴쓰까 부드카 / 폴잇 보드카
Wódka ziołowa z Niziny Północnopodlaskiej aromatyzowana ekstraktem z trawy żubrowej / Herbal vodka from the North Podlasie Lowland aromatised with an extract of bison gras	부드카 지오워바 즈 니지느 푸노쯔노 포들라스키에이 아로마티조바나 에크 스트라크템 즈 트라브 쥬브로베이 / 햐알 보드카 프롬 떼 노스 포들라시애 로우랜드 아러마디샌 윌 앤 엑스트랏 드 윌 비션 그랏
Polska Wiśniówka / Polish Cherry	폴스까 비쉬니우브카 / 폴잇체리

스페인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Brandy de Jerez	브렌디 데 헤레스 (헤레스산 브렌디)
Pacharán	빠차란

스웨덴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Swedish Vodka	스웨디쉬 보드카 (스웨덴산 보드카)
Svensk Aquavit / Svensk Akvavit / Swedish Aquavit	스웬스크 아쿠아비트/스웬스크 아쿠아비트/스웨디쉬 아쿠아비트 (스웨덴산아쿠아비트)
Svensk Punsch / Swedish Punch	스웬스크 펀체 / 스웨디쉬 펀체

영국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Scotch Whisky	스카치 위스키

제 2 부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증류주(제10.19조 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증류주

보호되는 명칭	로마자로의 음역
진도홍주(Jindo Hongju)	Jindo Hongju

제 11 장 경쟁

제 1 절 경쟁

제 11.1 조 원칙

1.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무역관계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아니한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상품, 서비스 및 설립에 있어서 무역 자유화 과정의 혜택이 반경쟁적 영업행위나 반경쟁적 거래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철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경쟁법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자는 각자의 영역 내에서 경쟁 제한적 합의, 동조적 행위¹⁾ 및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기업간 결합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경쟁법을 유지한다.

3. 양 당사자는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이 협정의 적절한 기능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가. 당사자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경쟁의 금지,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기업간 합의, 기업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행위

나. 당사자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또는

다. 당사자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특히 지배적

1) 동조적 행위에 대한 이 조의 적용은 각 당사자의 경쟁법에 의해 결정된다.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간 결합

제 11.2 조 정 의

이 절의 목적상,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유럽공동체의 경우,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81조, 제82조 및 제86조, 기업간 결합의 통제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와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 나. 대한민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다. 이 협정의 발효 후 이 조에 규정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변경 사항

제 11.3 조 이 행

1. 양 당사자는 제11.2조에 규정된 경쟁법의 이행을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하게 조직된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2. 양 당사자는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관련 당사자의 방어권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경쟁법을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무와 관련된 자신의 경쟁법 집행 활동과 법령에 관한 공공 정보를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제 11.4 조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²⁾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

1.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 어떠한 당사자도 제11.1조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자는 그러한 기업들이 제11.2조에 규정된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들에게 맡겨진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1.5 조

국가 독점

1. 각 당사자는 상품이 조달되고 판매되는 조건에 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³⁾도 양 당사자의 자연인 간 또는 법인 간에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상업적 성격의 국가 독점을 조정한다.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국가 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특별한 권리는 당사자가 객관적, 비례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는 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수를 둘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기업에 부여하는 때에, 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다.

3) **차별적 조치**란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이 조는 제9장(정부조달)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1.6 조 협 력

1. 양 당사자는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 증진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또는 반경쟁적 거래의 축소를 통해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경쟁당국 간 협력과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2009년 5월 2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 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 협정*에 근거한 집행 협력, 통보, 협의 및 비밀 아닌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각자의 집행 정책에 관하여 그리고 경쟁법 집행에서 협력한다.

제 11.7 조 협 의

1. 제11.6조제2항에 언급된 협정에 보다 구체적인 규칙이 없을 때,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절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다른 쪽 당사자는 자신의 요청에,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2. 양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절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협의한다.

3. 협의 대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11.8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2 절

보 조 금

제 11.9 조

원 칙

양 당사자는 보조금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보조금에 의하여 야기된 경쟁의 왜곡을 경쟁법의 적용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거나 제거하고, 그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한다.

제 11.10 조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1.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이다.

2.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의미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정적이다.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의미에서 특정적인 경우에만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 11.11 조

금지보조금⁴⁾⁵⁾

다음의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조건에 따라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금지된다.

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부채와 채무의 금액 또는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 없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 특정기업의 부채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보조금, 그리고

나.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가능상태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 없이, 그리고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비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보조금(대부 및 보증, 현금 무상교부, 자본 투입, 시장가격 미만의 자산 제공 또는 세금 감면 등). 이는 양 당사자가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청산 계획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오로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금액에 한정된 대부 보증 또는 대부의 형태로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양 당사자는 이 조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수령되는 보조금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5) 이 협정의 목적상,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제1항나호 및 이에 부속된 각주 2에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은 국내 및 수출시장 모두로 구성된다.

이 호는 공공서비스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부여되는 보조금과 석탄산업에 부여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12 조

투 명 성

1. 각 당사자는 보조금 분야에서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특정적이고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유형 및 분야별 분배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매년 통보한다. 통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의 목적, 형태, 금액 또는 예산, 그리고 가능한 경우 수령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한 통보는 다음해 12월 31일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송되거나 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보조금 계획과 특정적인 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개별사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양 당사자는 직업상 및 영업상의 비밀 요건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을 고려하여 이 정보를 교환한다.

제 11.13 조

세계무역기구협정과 관계

이 절의 규정은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구제를 적용하거나 분쟁해결을 제기하거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1.14 조

감시 및 검토

양 당사자는 이 절에서 언급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발효 후 매 2년마다 이 절의 이행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 11.15 조

적용범위

1. 제11.9조부터 제11.14조까지의 규정은 수산보조금,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보조금, 그리고 농업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상품에 대한 보조금에 적용된다.

2. 양 당사자는 다자수준에서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에 적용가능한 규칙을 발전시키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양 당사자는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에 관하여 최초의 견해 교환을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하기로 합의한다.

제 12 장 투 명 성

제 12.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란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여 일반적 또는 추상적 행위, 절차, 해석 또는 그 밖의 요건을 말한다. 이는 특정인에 적용되는 관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란 제12.2조의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따라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12.2 조 목적 및 적용범위

당사자 각자의 규제 환경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자는 경제운영자, 특히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하는 소규모 경제운영자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을 추구한다.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상의 그들 각자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투명성, 협의 및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한 명확화와 개선된 약정을 이에 규정한다.

제 12.3 조

공 표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보장한다.

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이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될 것

나. 그러한 조치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 그리고

다. 법적 안정성, 정당한 기대 및 비례성의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조치의 공포와 발효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것

2. 각 당사자는

가. 제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를 사전에 공포하도록 노력한다.

나. 이해관계인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그러한 기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그리고,

다.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제 12.4 조

질의처 및 접촉선

1. 각 당사자는 제안되거나 발효중인 것으로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그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

증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질의는 이 협정상 수립되는 질의처 또는 접촉선을 통하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루어 질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각자의 법과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규정된 응답은 최종적이거나 법적으로 구속적이지 아니하며 오직 정보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요청당사자가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청당사자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관련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4. 각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임무를 가진 그 이해관계인을 위한 질의처 또는 접촉선을 확인하거나 창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과정은 쉽게 접근가능하고, 시간을 준수하며, 결과 지향적이고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당사자가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장소 또는 재심 절차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과정은 또한 제14장(분쟁 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상의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2.5 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들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특정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함에 있어,

가. 절차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그리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당사자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공이익이 허용하는 한, 그러한 이해관계인에게 최종적인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다. 자신의 절차가 자신의 법에 근거하고, 이에 따르도록 보장한다.

제 12.6 조

재심 및 상소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자는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자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근거한 결정

3. 각 당사자는 문제가 된 행정 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자신의 법에 규정된 상소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 보장한다.

제 12.7 조

규제의 질 및 성과와 모범 행정 행위

1. 양 당사자는 각자의 규제 개혁 과정과 규제 영향 평가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규제의 질과 성과를 증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자는 모범 행정 행위의 원칙에 동의하고, 정보와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증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 12.8 조

비 차 별

각 당사자는 자국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국의 이해관계인, 또는 제3국에 부여되는 투명성 기준 중 최선의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투명성 기준을 다른 쪽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한다.

제 13 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제 13.1 조 배경과 목적

1.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제 21,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UN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을 상기하며, 양 당사자는 지속가능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자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양 당사자는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3.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노동이나 환경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장에서의 그들의 의도가 아니며, 제1항과 제2항의 문맥상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무역 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임을 인정한다.

제 13.2 조 적용범위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13.1조제1항 및 제13.1조제2항의 문맥상 노동¹⁾ 및 환경 문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양 당사자는 환경 및 노동 기준이 보호주의적 무역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비교 우위를 문제 삼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을 주목한다.

제 13.3 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자신의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자는 그러한 법과 정책이 제13.4조 및 제13.5조에서 언급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또는 협정에 합치되는 높은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13.4 조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

1. 양 당사자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 고용 및 사회적 도전과 기회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고용 및 노동에 대한 국제 협력과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관심있는 무역 관련 노동 및 고용 문제에 대해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양 당사자는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에 따라,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1) 노동이 이 장에서 언급될 때에는 노동은 국제노동기구(이하 “국제노동기구”라 한다)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에서 합의한 양질의 일자리 의제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일자리를 모든 국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국제 협력의 우선 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과, 남성, 여성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 따라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약속한다.

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각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현행” 협약으로 분류된 그 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제 13.5 조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자는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해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그들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교토 의정서*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발리행동계획*²⁾에 따라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발전에 관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제 13.6 조

지속가능발전에 유익한 무역

1. 양 당사자는 무역이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해야 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핵심 노동 기준과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적 효율성, 혁신 및 생산성에 갖는 유익한 역할을 인정하고, 한편으로 무역 정책과 다른 한편으로 고용 및 노동 정책 간의 더 나은 정책적 일관성이 갖는 가치를 강조한다.

2. 양 당사자는 관련 비관세 장벽의 처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환경기술,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적 제품 및 서비스와 에코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포함한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체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상품의 무역을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13.7 조

법·규정 또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의 보호 수준 유지

1.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 및 노동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아니 된다.

2)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결정문-1/CP.13*

2.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법, 규정 또는 기준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법에 부여된 환경이나 노동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 13.8 조

과학적 정보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사회적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때, 과학기술 정보와 관련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3.9 조

투 명 성

양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와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3.10 조

지속가능성 영향 검토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립된 절차와 제도뿐만 아니라 각자의 참여 절차와 제도를 통해, 예를 들어 무역 관련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점검 및 평가하기로 약속한다.

제 13.11 조 **협 력**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 및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부속서 13에 규정된 대로 협력활동을 개시하기로 약속한다.

제 13.12 조 **제도적 장치**

1. 각 당사자는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와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신의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2.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양 당사자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부속서 13에 따라 수행된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이 협정 발효 첫 해 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자문단(환경 및 노동)을 설치한다.

5. 국내자문단은 환경, 노동 및 기업 단체와 그 밖의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독립적인 시민사회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다.

제 13.13 조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1. 각 당사자의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양 당사자 간 무역관계의 지속가능발전 측면을 포괄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 시민사회포럼에서 회합할 것이다. 시민사회포럼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년에 한번 회합할 것이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결정으로 합의한다.

2. 국내자문단은 제13.12조제5항에 규정된 대로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자신의 위원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3. 양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시민사회포럼에 제출할 수 있다. 시민사회포럼의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제출될 수 있다.

제 13.14 조 정부간 협의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제 13.12조에서 언급된 국내자문단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제기되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시작된다.

2. 양 당사자는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와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 기구 또는 기관의 업무 간에 협력과 일관성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이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 기구 또는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관련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를 조건으로, 양 당사자는 이러한 기구나 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위원회가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해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속하게 소집되고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해결책은 공개된다.

4.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한 쪽 또는 양 쪽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자문단은 또한 자체 이니셔티브로 의견을 그 당사자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3.15 조 **전문가 패널**

1.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제 13.14조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전달된 90일 후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에 입장제출을 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자, 국내자문단, 또는 제13.14조에 규정된 국제기구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된다.

2.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전문가 패널은 이 장을 이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공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은 마지막 전문가의 선출로부터 90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양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자문이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전문가 패널 권고의 이행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의해 점검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양 당사자의 국내 자문단에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비밀정보와 관련해서는 부속서 14-나(중재절차 규칙)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이 협정의 발효시에,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비당사자 국민 최소 5인을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최소 15인의 명부에 합의한다. 그 전문가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나 국내자문단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들과 관계가 있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 명부에서 1인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그러한 기간 내에 자신의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그 당사자의 국민 1인을 전문가 명부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2인의 전문가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의장을 결정한다.

제13.16조

분쟁해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13.14조 및 제13.15조에 규정된 절차만을 이용한다.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자는 제13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다.

가. 양 당사자가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이 협정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이를 강화, 방지 또는 완화할 방법에 대한 견해의 교환

나.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및 그 밖의 협약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비준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의 효과적 이행과 후속조치,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 에코 라벨부착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벨부착제도, 녹색공공조달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

마.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교환

바.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문제, 무역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방안, 그리고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사.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아.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증진하는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자. 불법 벌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산림벌채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차. 세관 협력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카. 무역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노동시장 조정, 핵심 노동기준, 노동통계,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포용, 사회적 대화와 남녀평등 간의 상호 연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양질의 일자리 의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타.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교환, 또는
- 파.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2. 양 당사자는 그들이 개발한 협력 활동의 적용과 혜택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제 14 장 분쟁해결

제 1 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 14.1 조 목 적

이 장은 이 협정의 신의성실한 적용에 관한 양 당사자 간 분쟁을 회피하고 해결하며 가능한 경우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¹⁾

제 2 절 협 의

제 14.3 조 협 의

1)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되는 분쟁에 대하여, 이 장에서 무역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문화협력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협의에 임함으로써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조치와 적용가능하다고 간주하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적시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요청으로 협의를 구한다. 협의 요청서의 사본은 무역위원회에 전달된다.

3.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양 당사자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하는 동안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된다.

4.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²⁾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고, 요청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각각 규정된 기한 내에 협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나,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제14.4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절 분쟁해결절차

제 1 관 중재절차

2) 계절 상품이란, 그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 중, 연중 분산되지 아니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 해의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상품이다.

제 14.4 조 중재절차 개시

1. 양 당사자가 제14.3조에 규정된 협의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그 요청에 적시하고, 그러한 조치가 어떻게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의 위반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4.5 조 중재패널 설치

1.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무역위원회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구성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의한다.

3. 양 당사자가 제2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패널의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무역위원회 의장이나 의장의 대리인에게, 제14.18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서 추첨으로 제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 피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과 의장 역할을 하도록 양 당사자가 선정한 개인 중 1인으로 된, 모두 3인의 구성원을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중재패널 구성원에 합의하는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동일한 절차로 선정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된 날이다.

제 14.6 조 **패널 잠정보고서**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과 중재패널이 내린 조사결과 및 권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떠한 당사자도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도록 잠정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과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긴급사건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이내에,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도록 서면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4. 잠정보고서에 관한 양 당사자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최종 중재패널 판정은 중간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제 14.7 조 **중재패널판정**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120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정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5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과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긴급사건의 경우, 중재패널은 그 설치일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을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설치 후 75일을 초과하여 소요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재패널은 그 사건을 긴급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관한 예비 판정을 그 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릴 수 있다.

제 2 관 이 행

제 14.8 조 중재패널 판정의 이행

각 당사자는 중재패널 판정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 당사자는 그 판정을 이행하는 기간에 대해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제 14.9 조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1. 양 당사자에게 중재패널 판정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통보한다.

2.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할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피소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행한 통보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한 요청은 다른 쪽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중재패널은 요청의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한다.

3.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은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부터 35일이다.

4. 피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중재패널 판정의 이행에 대한 진전사항을 제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줄 것이다.

5.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 14.10 조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1. 피소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통보한다.

2. 조치의 존재나,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의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의 합치에 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에 대해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는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가 적시되고, 그러한 조치가 어떻게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 양립불가능한지 설명된다. 중재패널은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제출한다.

3.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은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로부터 60일이다.

제 14.11 조

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

1. 피소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제14.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그 당사자의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할 경우, 일시적 보상에 대한 제안을 한다.

2.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제14.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불합치한다는 제14.10조에 따른 중재패널 판정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14.2조에 언급된 모든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정지할 권한을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하는 즉시 갖는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자가 정지하고자 하는 의무의 수준이 명시된다. 피소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중재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 그 정지를 시행할 수 있다.

3. 의무를 정지함에 있어 제소 당사자는 관세율의 인상으로 곱해진 무역량이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의 가치와 같게 되도록 결정되는 무역량에 대하여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정지의 수준이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피소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을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제2항에서 언급된 10일의 기간 만료 전에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원 중재패널은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의무의 정지 수준에 대한 판정을 그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원 중재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 전까지 의무가 정지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정지도 중재패널 판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5.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그 판정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4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이다.

6. 의무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고,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불합치하다고 판명된 조치가 제14.12조에 따라 정하여진 대로 그러한 규정에 합치되도록 철회 또는 개정된 때 까지, 또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제 14.12 조

의무의 정지 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1. 피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제소 당사자가 신청한 의무의 정지에 대한 종료 요청을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2. 통보된 조치의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의 양립가능성에 관하여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을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한 요청

은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중재패널 관정은 그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제출된다.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합치된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의무의 정지가 종료된다.

3.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그 판정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부터 60일이다.

제 3 관 공통 규정

제 14.13 조 상호 합의된 해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장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모든 그러한 해결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통보되는 즉시, 절차는 종료된다.

제 14.14 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4-나의 규율을 받는다.
2. 모든 중재패널의 심리가 부속서 14-나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다.

제 14.15 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이니셔티브로, 중재패널은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를 포함하여 중재패널 절차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또한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전문가의 관련 의견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된 정보는 양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양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부속서 14-나에 따라 외부조언자의 의견서를 중재패널에 제출하는 것이 승인된다.

제 14.16 조 해석 규칙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을 해석한다. 이 협정상의 의무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의무와 동일한 경우, 중재패널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이하 “분쟁해결기구”라 한다)의 판정에서 수립된 관련 해석과 합치하는 해석을 채택한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제14.2조에 언급된 조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제 14.17 조 중재패널 결정 및 판정

1. 중재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로 결정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인의 반대의견은 공표되지 아니

한다.

2. 중재패널의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고,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판정은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조사결과 및 결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판정을 전부 공개한다.

제 4 절

일반 규정

제 14.18 조

중재인 명부

1.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중재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개인 5인을 제안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면서 중재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5인을 선정한다. 무역위원회는 그 명부가 이 수준으로 항상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2. 중재인은 법과 국제무역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다.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어떠한 당사자 정부와 연계되지 아니하고, 부속서 14-다를 준수한다.

제 14.19 조

세계무역기구 의무와의 관계

1. 이 장의 분쟁해결 규정의 이용은, 분쟁해결 조치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 장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중 어느 한 쪽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당사자는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상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그 두 포럼에서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의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되면, 선택된 포럼이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그 의무의 시정을 구하는 주장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협정상의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구하려는 주장을 다른 쪽 포럼에서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의 목적상,

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사자의 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분쟁해결기구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6조 및 제17.14조에 따라, 각 경우에 맞게,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를 채택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나.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제14.4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중재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패널이 제14.7조에 따라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한 의무의 정지를 이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은 당사자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정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용되지 아니한다.

제 14.20 조

기 한

1. 중재패널이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을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기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날이 된다.

2. 이 장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제 1 조

목 적

이 부속서는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중개인의 지원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발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중개 메커니즘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과 이에 속하는 부속서상의 것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¹⁾에 해당되는 모든 사안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제 1 절

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

제 3 조

중개절차의 개시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은 비농산물 시장접근, 그리고 무역구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원활화,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 및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의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하여 관련된 무역 규칙을 포함한다. 이는 농산물 무역, 서비스 및 설립, 문화협력,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지불 및 자본이동, 그리고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은 제외한다.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중개절차에 임하도록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된다. 그 요청은 요청 당사자의 우려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충분히 자세해야 하고, 다음이어야 한다.

가.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할 것

나. 그 조치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미치는 것으로 요청 당사자가 믿는 주장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진술을 제공할 것, 그리고

다. 그러한 무역 효과가 어떻게 그 조치와 연결된다고 요청당사자가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

2.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그 요청의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서면 응답을 제공한다.

제 4 조 중개인의 선정

1. 중개절차를 개시한 경우, 양 당사자는 요청에 대한 응답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중개인에 관해 합의하도록 장려된다. 양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중개인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추첨으로 중개인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요청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고,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며,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 3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그 명부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명부에서 최소한 하나의 이름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은 선정된 이름 중 추첨으로 중개인을 선정한다. 추첨에 의한 선정은 양 당사자 대표의 임석 하에 추첨에 의한 임명 요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2. 중개인은, 문제되는 조치와 관련이 있는 대상 분야에서 전문가이어야

한다.²⁾ 중개인은, 양 당사자가 그 조치와 그 가능한 무역 효과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 5 조 중개절차 규칙

1.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중개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상세한 기술, 특히 문제가 되는 조치의 운영 및 그 무역 효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중개인과 다른 한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 제출을 전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는 문제의 기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관련된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자신의 기술 또는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

2. 중개인은 초기단계를 수행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특히 양 당사자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인지,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들과 협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초기 단계에 이어, 중개인은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고려할 만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의견에서, 중개인은 문제되는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조치의 정책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의문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중개인은 상호 합의된 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회합할 수 있다. 이 절차 단계는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완료된다.

4. 중개절차는 비밀이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영역에서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밖의 장소에서나 방법으로 수행된다.

2) 예를 들어, 표준 및 기술 요건에 관한 경우, 중개인은 관련 국제표준제정기관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중개절차는 다음으로 종결된다.

가. 양 당사자의 해결 합의에 대한 서명으로, 그 서명일에

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합의
일에

다. 양 당사자와의 협의 후 추가적인 중개 노력이 더 이상 정당화되
지 아니한다는 중개인의 서면 선언으로, 또는

라. 중개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한 후, 그리고 중개인
의 자문 의견 및 제안을 고려한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선
언으로

제 2 절 이 행

제 6 조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이행

1. 양 당사자가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과도한 지체 없이 상
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이행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단
계나 조치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 3 절 일반 규정

제 7 조 분쟁해결과의 관계

1. 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는 이 협정 또는 다른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도록 의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그러한 분쟁해결 절차에서 증거로서 다음에 의존하거나 이를 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중개절차 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자가 취한 입장

나. 중개의 대상이 된 비관세 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쪽 당사자가 수용할 의향을 보였다는 사실, 또는

다. 중개인이 제시한 제안

2. 중개 메커니즘은 제14장(분쟁해결)상의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기 한

이 부속서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제 9 조 비 용

1. 각 당사자는 중개절차에의 참여로부터 발생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자는 중개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적인 사안으로 발생된 비용을 분담한다.

제 10 조

검 토

1. 양 당사자는, 제14.2조에 정의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안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그러한 사안을 다루는 상응하는 메커니즘³⁾의 설치에 합의할 경우, 그 중개 메커니즘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적용 범위의 확대는 그러한 합의의 적용일부부터이다. 이는 상응하는 세계무역기구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적 확대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5년 후, 양 당사자는 획득된 경험, 그리고 상응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메커니즘의 발전에 비추어, 중개 메커니즘을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

3) “상응하는 메커니즘”이란 아프리카 그룹, 캐나다, 유럽공동체, 최빈개도국 그룹,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관한 11개 개발도상국 그룹,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및 스위스가 2007년 7월 23일자 문서 TN/MA/W/88 “비관세장벽·비관세장벽에 대한 해결의 촉진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제안”에서 제안한 메커니즘, 또는 2007년 7월 23일자 문서 TN/MA/W/88을 대체하는 문서에서 제안된 그 밖의 유사한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는 양해한다.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제 1 조
일반 규정

1. 제14장과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자가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문하거나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14.5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당사자의 대표자란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당사자의 정부 또는 정부 부처의 고용인이나 정부 또는 정부 부처에 의하여 임명된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자란 제14.4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피소 당사자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중재패널이란 제14.5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2.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자는 분쟁해결 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양 당사자는 중재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적인 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한다.

제 2 조 통 보

1. 양 당사자와 중재패널은,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2.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와 각 중재인에게 각 서면 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3. 모든 통보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에 각각 제출된다.

4.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5. 문서 전달 마감일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제 3 조 중재 개시

1. 가. 제14.5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구성원이 추천으로 선정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은, 제14.5조제3항에 언급된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대표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선정은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임석하여 이루어진다.

나.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될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또는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중재패널의 설치로부터 7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중재패널과 회합하며 그 사안은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따르게 될 것이다.

2. 가. 중재패널 설치일부터 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 문제되는 조치의 합치성에 관하여 판정하며, 제14.7조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것”

나. 양 당사자는 중재패널에 대하여 합의된 위임 사항을 합의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 4 조

최초 서면 입장

제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20일 이내에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자는 최초 서면입장의 전달일 후 20일 이내에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제 5 조

중재패널 작업

1. 중재패널의 의장은 자신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3.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 심의에 보조인의 출석을 허락할 수 있다.
4. 판정문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정의 규정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러한 규정과 양립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6.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가능한 기한을 수정하거나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변경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와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을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알린다. 제14.7조제2항의 기한은 수정될 수 없다.

제 6 조

교 체

1. 중재인이 절차에 참여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교체되어야 할 경우, 후임은 제14.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다.

2. 중재인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부속서 14-다에 대한 중재인의 실질적인 위반의 바탕이 되는 상황을 알게 되었던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3. 의장을 제외한 중재인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며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중재인을 교체하고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정한다.

양 당사자가 중재인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그 사안이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중재인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장이 발견하는 경우, 그 의장은 원 중재인이 구성원이었던 제14.18조제1항에서 언급된 개인의 명부에서 추첨으로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한다. 원 중재인이 제14.5조제2항에 따라 양 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그 후임은 제14.18조제1항에 따라 제소 당사자와 피소 당사자가 제안했던 개인의 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4. 중재패널의 의장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며,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의장을 교체하고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정한다.

양 당사자가 의장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제14.18조제1항에 따라 의장 역할을 하도록 선정된 개인의 명부의 잔여 구성원 중 하나에게 그 사안이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의 이름은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대리인의 추첨으로 뽑혀진다. 의장을 교체할 필

요에 대한 이 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원 의장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이 인이 결정하는 경우, 그 인은 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제14.18조제1항에 언급된 개인의 명부의 잔여 구성원 중 하나를 추첨으로 새로운 의장으로 선정한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추첨에 의한 선정은, 당사자가 자신의 대표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임석하고,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6. 중재패널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 7 조 심 리

1. 의장은, 양 당사자 및 중재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확인한다. 심리가 공중에게 비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자는 이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양 당사자 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패널은 심리를 열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제소 당사자가 대한민국일 경우 브뤼셀에서, 제소당사자가 유럽공동체 당사자일 경우 서울에서 개최된다.

3. 중재패널은 양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4.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임석한다.

5. 다음의 인은 심리가 공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가. 양 당사자의 대표자

나. 양 당사자의 자문인

다. 행정 인력, 통역가, 번역가 및 법원서기, 그리고

라. 중재인의 보조인

양 당사자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을 접촉할 수 있다.

6. 각 당사자는 심리일 5일 이전에 그 당사자 대신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다른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7. 중재패널의 심리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공중에게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양 당사자가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심리는 공중에게 공개된다. 당사자의 서면입장 및 주장이 상업적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8.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자와 피소 당사자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자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자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자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자의 반박 답변

9.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당사자에게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10.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고 양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전달되도록 주선한다.

11. 각 당사자는 심리일부터 10일 이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제 8 조

서면 질문

1. 중재패널은 절차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중재패널이 제기한 모든 질문서 사본을 받는다.

2.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또한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전달일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의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 9 조

비밀 유지

이 부속서 제7.7조에 따라 심리가 비공개 회의로 열리는 경우, 양 당사자와 그 자문인은 그 중재패널 심리의 비밀을 유지한다. 각 당사자와 그 자문인은, 다른 쪽 당사자가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중재패널에 서면 입장의 비밀본을 제출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일 또는 제출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입장에 포함된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자가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일방적 접촉

1. 중재패널은 다른 쪽 당사자의 참석 없이 어느 한 쪽 당사자와 회합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재패널의 어떠한 구성원도 다른 중재인의 참석 없이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와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외부조언자의 서면입장

1. 중재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중재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아니해야 하고, 중재패널이 검토 중인 사실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2. 그 서면입장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국적 또는 설립 장소, 활동

성격 및 자금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서면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3.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는 모든 서면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그러한 서면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 한다. 이 조에 따라 중재패널이 획득한 모든 서면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출된다.

제 12 조

긴급사건

제14.7조제2항에 언급된 긴급사건의 경우 중재 패널은 적절한 경우 이 부속서에 언급된 기한을 조정한다.

제 13 조

번역 및 통역

1. 제14.3조제1항에 언급된 협의 동안, 이 부속서 제3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회합 이전에 양 당사자는 중재패널 앞에서의 절차를 위한 공동 작업언어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자가 공동 작업언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서면 입장을 다른 쪽 당사자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도록 신속히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피소 당사자는 구두 입장을 양 당사자가 선택한 언어로 통역하도록 주선한다.

3. 중재패널 판정은 양 당사자가 선택한 1개 언어 또는 복수 언어로 제출된다.

4. 중재패널 판정의 번역으로 발생한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5. 어떠한 당사자도 이 조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번역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4 조 **기한 계산**

이 부속서 제2조제5항의 적용을 이유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가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그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 15 조 **그 밖의 절차**

이 부속서는 제14.9조제2항, 제14.10조제2항, 제14.11조제3항 및 제14.1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이 부속서에 규정된 기한은 그 다른 절차에서 중재패널 판정의 채택을 위하여 규정된 특별 기한에 맞게 조정된다.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 1 조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구성원** 또는 **중재인**이란 제14.5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나. **중개인**이란 부속서 14-가에 따라 중개 절차를 수행하는 인을 말한다.

다. **후보자**란 그 이름이 제14.18조에 언급된 중재인의 명부에 있고, 제14.5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구성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라. **보조인**이란 구성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마.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상의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바. 구성원에 대하여는, **직원**이란 보조인을 제외하고 그 구성원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제 2 조
절차에 대한 책임

모든 후보자와 구성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완전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구성원들은 이 부속서 제6조 및 제7조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공개 의무

1. 이 협정상 중재패널의 구성원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2. 후보자 또는 구성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자의 검토를 위하여 무역위원회에만 전달한다.

3. 일단 선정되면, 구성원은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모든 단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구성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구성원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자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무역위원회에 알림으로써 공개한다.

제 4 조

구성원의 의무

1. 선정되는 경우 구성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2. 구성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판정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원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이 부속서의 제2조, 제3조 및 제7조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구성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1. 구성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어느 한 쪽 당사자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구성원은 그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재패널에서의 그의 지위를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하는 행동을 피한다.

4. 구성원은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 수 없다.

5. 구성원은 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6 조

전임 구성원의 의무

모든 전임 구성원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중재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이 도출되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제 7 조

비밀 유지

1. 구성원이나 전임 구성원은 그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동안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성원은 이 협정에 따른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원이나 전임 구성원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어느 구성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중개인

구성원 또는 전임 구성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부속서에 기술된 규율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중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5 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제 15.1 조

무역위원회

1. 양 당사자는 한 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표와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위원회¹⁾를 설치한다.

2. 무역위원회는 브뤼셀과 서울에서 교대로 1년에 한번 또는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무역위원회는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무역을 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의장이 된다. 무역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한다.

3. 무역위원회는

가. 이 협정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나.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촉진하며 협정의 일반 목표를 증진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 양 당사자 간의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마. 제14장(분쟁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거나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과 방법을 구한다.

1) 문화협력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역위원회는 그 의정서에 관하여 어떠한 관할권도 가지지 아니하고 문화협력위원회는 문화협력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기능이 관련될 경우에 그 의정서에 관하여 무역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바. 양 당사자 간 무역의 발전을 연구한다. 그리고
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관심 사안을 검토한다.

4. 무역위원회는

가. 전문위원회, 작업반 또는 다른 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나.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와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마. 이 협정이 상정한 대로 권고를 하거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바.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무역위원회는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과 전문위원회, 작업반 그리고 다른 기관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6. 제14장(분쟁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라도 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7. 당사자가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무역위원회, 전문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8. 투명성과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중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자의 관행을 확인한다.

제 15.2 조 전문위원회

1. 다음의 전문위원회가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가. 제2.16조(상품무역 위원회)에 따른 상품무역 위원회

나. 제5.10조(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원회)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다. 제6.16조(관세위원회)에 따른 관세위원회. 세관협정의 배타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있어 관세위원회는 그 협정에 설치된 세관협
력 공동위원회로서 기능한다.

라. 제7.3조(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에 따른 서비스무
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마. 제13.12조(제도적 장치)에 따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그리
고

바.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
서 4에 따른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활동범위와 임무는 이 협정의 관련되는 장과 의정
서에서 정의된다.

2. 무역위원회는 자신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문위원
회의 구성, 임무 및 기능을 결정한다.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
년에 한번 적절한 급에서 브뤼셀과 서울에서 교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
자나 무역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하고,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의 대
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전문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의제를 정

한다.

4. 전문위원회는 자신의 회합에 충분히 앞서,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무역위원회에 알린다. 전문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위원회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어떠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무역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전문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 15.3 조 작 업 반

1. 다음의 작업반이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가.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 제9조(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제2항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나. 부속서 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5조(규제 협력)제3항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다. 부속서 2-마(화학물질)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작업반

라. 제3.16조(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제1항에 따른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마. 제7.21조(상호인정)제6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바. 제9.3조(정부조달 작업반)에 따른 정부조달 작업반, 그리고

사. 제10.25조(지리적 표시 작업반)에 따른 지리적 표시 작업반

2. 무역위원회는 특별 임무 또는 대상을 위한 다른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작업반의 구성, 임무 및 기능을 결정한다. 그 작업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양 당사자 간 모든 정기 또는 임시 회합은 이 조의 의미에서 작업반으로 간주된다.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나 무역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급에서 회합한다. 작업반은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의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작업반은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의제를 정한다.

4. 작업반은 자신의 회합에 충분히 앞서,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무역위원회에 알린다. 작업반은 무역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작업반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어떠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무역위원회는 작업반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작업반을 해산할 수 있다.

제 15.4 조 **의사결정**

1.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

2. 취해진 결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고, 양 당사자는 취해진 결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무역위원회는 또한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과 권고를 작성한다.

제 15.5 조 **개 정**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15.6 조

접 촉 선

1. 의사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시에 조정자를 지정한다. 조정자의 지정은 이 협정의 특정 장에 따른 권한있는 당국의 특정한 지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조정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계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을 제공한다.

3. 자신의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에 대해 자신의 조정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에 관한 다른 쪽 당사자의 질의에 신속히 답변한다.

제 15.7 조

과 세

1. 이 협정은 과세조치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이,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과 각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조세 협약상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대한민국과 각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조세 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있는 당국들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데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자가 각자의 재정법령 관련조항의 적용에 있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는 납세자를, 특히 납세자의 거주지와 납세자의 자본이 투자된 장소에 대하여, 구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그 밖의 조세 약정 또는 국내 재정법령의 과세 조항에 따라 조세의 방지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의 채택이나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5.8 조

국제수지 예외

1. 당사자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험에 처한 경우 그 당사자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및 설립에 대한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제한 조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어떠한 제한 조치라도 비차별적이고 그 기간이 제한되며,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이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수립된 조건을 따르고 적용가능한 대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과 합치된다.

3. 제한 조치 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유지하거나 채택한 당사자는 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그 제거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한다.

4. 제한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협의가 신속히 개최된다. 그러한 협의는 관련 당사자의 국제수지 상황과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을 특히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가.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의 성격과 범위

나. 대외 경제 및 교역 환경, 또는

다. 이용가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정 조치

협이는 제한 조치가 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다룬다. 환율, 통화 보유고 및 국제수지와 관련되는 국제통화기금(이하 “국제통화기금”이라 한다)이 제출한 통계 및 그 밖의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는 수용되어야 하고, 결론은 관련 당사자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근거한다.

제 15.9 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정보를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 1)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생산이나 거래와 관계되거나 군사 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과 관련되는 조치
-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또는
- 3)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당사자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목적을 위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제 15.10 조

발 효

1. 이 협정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양 당사자에 의해 승인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3.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언급된 통보의 교환 전에 2005년 10월 20일 파리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의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협약의 비준서를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기탁한 날의 다음 세 번째 달 첫째일부터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적용한다.

4. 통보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과 유럽연합 이사회 사

무충장에게 송부된다.

5. 가.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당사자가 그들 각각의 관련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의 다음달 첫째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나.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잠정 적용을 할 수 없는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잠정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통보한다. 가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어느 규정이 잠정 적용될 수 없다는 통보로부터 10일 이내에 잠정적용에 반대하지 아니 할 경우, 통보되지 아니한 규정은 통보의 다음달 첫째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보로 잠정 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통보의 다음달 첫째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라.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라는 용어는 잠정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15.11 조 존속기간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3.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5.12 조

의무이행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상의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 또는 특정 조치를 취한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이 협정의 폐기의 경우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13 조

부속서·부록·의정서 및 주석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5.14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및/또는 유럽공동체간의 이전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해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기본협정이 규율하는 전반적인 양자 관계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이 협정은 기본협정의 의미에서 무역 규정에 효과를 부여하는 특정 협정을 구성한다.

3.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는 상호 행정지원에 관

한 규정에 대하여 세관 협정을 대체한다.

4.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 15.15 조

영역적 적용

1. 이 협정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적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 설립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그 조약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이 협정에서 “영역”이라는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다.

2. 상품의 관세 대우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한, 이 협정은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유럽공동체 관세영역지역에도 적용된다.

제 15.16 조

정 본

이 협정은 한국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에스토니아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협정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목 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제2부 ‘원산지 제품’의 정의

제2조 원산지 제품

제3조 원산지 누적

제4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제7조 원산지 자격 단위

제8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9조 세트상품

제10조 중립재

제11조 재료 구분 회계

제3부 영역 요건

제12조 영역 원칙

제13조 직접 운송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4부 환급 또는 면제

제14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제5부 원산지 증명

제15조 일반 요건

제16조 송품장신고서 작성 조건

제17조 인증수출자

제18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제19조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제20조 분할 수입

제21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제22조 증빙 서류

제23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제25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제6부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26조 주소의 교환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제28조 분쟁해결

제29조 벌칙

제30조 자유지역

제 3 절
세우타 및 멜리야

제7부 세우타 및 멜리야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제32조 특별 조건

제 4 절

최종규정

제8부 최종규정

제33조 의정서의 개정

제3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부속서 목록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부속서 3: 송품장 신고서 문안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공동 선언

안도라 공국에 관한 공동선언

산마리노 공화국에 관한 공동선언

이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규정

제 1 조 정 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 가.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 나. **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 다. **제품**이란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 라. **상품**이란 재료,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마.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바.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 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 아.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사호에 정의

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 자. **류, 호 및 소호**란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 차. **분류된**이란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 타. **HS**란 발효 중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제로 그 일반해석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한다. 그리고
-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제 2 부

‘원산지 제품’의 정의

제 2 조

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 나. 당사자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또는,
-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제 3 조 원산지 누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1. 제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자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 나. 당사자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 다. 당사자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당사자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 마. 1) 당사자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밋사냥, 또는 당사자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2) 당사자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 제품
- 바. 당사자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 사. 마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
- 아. 당사자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당사자는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자. 당사자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차. 당사자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또는

카.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제품

2. 제1항 바호 및 사호에서 ‘당사자의 선박’과 ‘당사자의 가공선박’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된 것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공공기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

제 5 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부

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은,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및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은 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6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섬유질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시험 또는 측정
-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 더. 동물의 도살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나. 탁송화물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제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제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제 9 조 세트상품

HS 통칙 3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모든 구성 제품이 원산지 제품이고 세트와 그 제품 모두 이 의정서의 다른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10 조

중립재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재료 구분 회계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2.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자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적용된다.

4.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

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이 관세당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승인의 이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 3 부 영역 요건

제 12 조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이 조의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자로부터 비당사자로 수출된 원산지 제품이 재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국가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일정 상품이 대

한민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에 따라 양 당사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13 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4 부 환급 또는 면제

제 14 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1.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발효 1년 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운영에 관해 이용가능한 정보와 다음과 같은 상세한 통계를 상호적으로 교환한다.

1.1 이 협정의 발효 1년 후를 시작으로 HS 2007 하의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분류된 재료의 수입에 대한 8단위/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 통계와,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수출 통계가 제공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계는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 제공된다. 이 조의 제3항을 근거로 도입된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제한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 정보가 교환된다.

2. 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 협정의 발효 이후의 원자재 조달 방식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에 대한 가능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1 위에 언급된 조건은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다음의

증거를 근거로 입증될 것이다.

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당사자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재료의 관세부과대상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하는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 다만,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특히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그 당사자의 제품의 국내소비의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 이외의 제품에 수입된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 이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또는
-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그 당사자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나.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그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로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 다른 쪽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생산자에 대한 경쟁의 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련된 증거도 고려된다.¹⁾

3.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제14장(분쟁해결) 제14.5조(중재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의해 긴급사건²⁾으로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결정된다. 패널이 제2항

1) 이 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평가하는 목적상, 기준년도는 이 협정의 발효 직전 최근 3년의 평균일 것이며, 각 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 연도이다. 증거는 해당 제품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로 사용된 모든 재료의 총합이나 그러한 재료의 하부집합에 근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관세 환급과 역내 가공에 대한 제한은 그 하부집합에만 적용될 것이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기 전에는 제2항에 예견된 협의 이외의 어떠한 추가 협의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예견된 협의의 기한은 제14.3조제4항의 기한과 같다. 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 위한 기한은 제14.7조제2항에 적시되어 있다.

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자는 판정으로부터 통상적으로 90일 이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환급될 수 있는 그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최대 관세율을 5퍼센트로 제한한다.

제 5 부

원산지 증명

제 15 조

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공동체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공동체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송품장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송품장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송품장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 16 조

송품장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송품장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공동체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송품장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송품장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송품장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송품장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 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송품장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송품장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 17 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송품장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 18 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1.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외에 서류의 제출이 늦은 경우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해당 마감일 전에 그 제품이 제시된 당사자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수리할 수 있다.

제 19 조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 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분할 수입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HS 통칙 제2호가목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제 21 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만 한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유럽공동체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4. 제3항의 목적상, 유로화 또는 미화 이외의 통화로 제품에 대한 송품장이 발부될 경우, 유로화 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 당사자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수입 당사자의 적용가능한 현재 환율에 따라 정해진다.

제 22 조

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공동체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또는
-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제 23 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1.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송품장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한다.
3.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송품장신고서를 5년 동안

보관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4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25 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1.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적용상, 제품이 유로화 이외의 통화로 송품장이 발부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유럽공동체 당사자에 의해 매년 정해져 대한민국에 제출된다.

2. 탁송화물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당사자가 정한 금액에 따라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3. 유럽연합 회원국의 해당 국가통화로 사용되는 금액은 10월의 첫 업무일에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의 통화에 상응해야 한다.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이 금액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이 금액은 그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4.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서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반올림하거나 반내림 할 수 있다. 이 반올림된 금액은 환산된 금액과 5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3항에 규정된 연례 정산 시점에, 모든 반올림 이전 금액의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으로 15퍼센트 미만의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국통화를 환산하지 아니한 채 유지할 수 있다. 환산이 동등 가치에서 감소를 유발할 경우 자국통화 상당액은 환산되지 아니한 채 유지될 수 있다.

5.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이 검토가 수행될 때, 관세위원회는 실질 가격으로 관련 한도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위원회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수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6 부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 26 조

주소의 교환

양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담당하는 관세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제 27 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제 28 조

분쟁해결

1.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간에 해결될 수 없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들이 이 의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2.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간 분쟁의 해결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다.

제 29 조

별 칙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제 30 조

자유지역

1.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 하에 교역되는 제품으로서 운송 도중 자신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이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예외로,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원산지 증명 하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취급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 그 행해진 취급 또는 가공이 이 의정서의 규정과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증명이 작성될 수 있다.

제 3 절

세우타 및 멜리야

제 7 부

세우타 및 멜리야

제 31 조

의정서의 적용

1. “유럽공동체 당사자” 용어는 세우타 및 멜리야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세우타 및 멜리야로 수입된 경우,

스페인왕국과 포르투갈공화국의 유럽공동체 가입 법률의 의정서 2에 따라 공동체의 관세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관세 체제를 향유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며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당사자로부터 수입되었고 이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관세 체제를 부여한다.

3.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할 목 적상, 이 의정서는 제32조에 규정된 특별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 32 조 특별 조건

1. 제품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운송된 경우 다음이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

- 1)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또는
- 2) 가호1)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제품이 생산시 사용되고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가) 그 제품이 제5조의 의미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것, 또는

나) 그러한 제품은 당사자를 원산지로 할 것. 다만,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나.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

- 1) 대한민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또는
 - 2) 나호1)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제품이 생산시 사용되고 대한민국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 가) 그 해당 제품이 제5조의 의미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을 거쳤을 것, 또는
나) 그러한 제품은 세우타 및 멜리야 또는 유럽공동체 당사자
를 원산지로 할 것. 다만,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세우타 및 멜리야는 단일 영역으로 간주된다.

3. 수출자 또는 그의 권한이 있는 대표자는 “대한민국” 또는 “세우타 및
멜리야”를 송품장신고서에 기입한다.

4. 스페인 관세당국은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의 이 의정서의 적용을 담당
한다.

제 4 절 최종규정

제 8 부 최종규정

제 33 조 의정서의 개정

무역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4 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이 의정서 제5조의 의미에서 모든 제품이 충분히 작업되거나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요구된 조건을 규정한다.

주석 2

2.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제품을 기술한다. 제1열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사용된 소호 번호, 호 번호 또는 류 번호를 제시하고 제2열은 그 소호, 호 또는 류에 대하여 그 체계에서 사용된 상품명을 제시한다. 처음 두 열의 각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3열 또는 제4열에 명시된다. 일부 사례에서,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되는 경우, 이는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이 제2열에서 기술된 그 소호 또는 호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여러 개의 소호 또는 호 번호가 제1열에 함께 그룹화되거나 류 번호가 제시되어, 제2열의 상품명에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되는 경우, 인접한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에서 류의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되거나 제1열에서 함께 그룹화된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2.3. 하나의 소호 또는 호 내의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이 목록에 있는 경우, 각각의 들어쓰기 한 곳은 인접한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호 또는 호의 그 일부에 대한 상품명에 포함한다.

2.4.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3열과 제4열 모두에 명시되는 경우, 수출자는 제3열에 명시된 규정 또는 제4열에 명시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제4열에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열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주석 3

3.1.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제5조의 규정은, 이 원산지 지위가 이들 제품이 사용된 공장안에서 또는 당사자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예:

결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적시하는 제8407호의 엔진은 제7224.90소호의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 또는 제7205호의 재료”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재료가 유럽공동체 당사자내에서 비원산지 괴로부터 가공되었을 경우, 그 재료는 목록의 제7224.90소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 이 재료는 그 다음에 엔진의 가치 산정시, 그 재료가 동일한 공장 또는 유럽공동체 당사자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합산할 때 비원산지 괴의 가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2. 목록의 규정은 요구된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의 양을 나타내며, 보다 많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또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보다 적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이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의 특정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생산의 더 이전 단계에 허용되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더 낮은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주석3.2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들)의 재료가(제품과 동일한 상품명 및 호의 재료까지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특정 제한이 그 규정에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은 목록의 제2열에 제시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명의 것을 제외한 모든 호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3.4.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모든 재료가 사용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제5208호에서 제5121호까지의 식물에 대한 규정은 천연섬유가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재료 중에서 화학재료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두 가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나 나머지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3.5.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식물에 관한 아래 주석 6.2 참조).

예:

곡물과 그 파생품의 사용을 명확히 배제하는 제1904호의 조제식품에 대한 규정은 곡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아닌 천연소금, 화학물질 및 그 밖의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목록에 명시된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없다 하더라도 생산의 이전 단계에서 동일한 성격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제62류 중 부직포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의류 물품의 경우, 오직 비원산지 사만의 사용이 이런 종류의 물품에 허용되는 경우, 부직포 옷감이 통상적으로 사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부직포 옷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 시작하는 재료는 통상적으로 사 이전의 단계인 섬유 단계이다.

3.6.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두 개의 비율이 제시되는 경우, 이들 비율은 합산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는 제시된 비율 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개별 비율은 그 개별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에 대하여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석 4:

4.1.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이 목록에서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 섬유 이외의 섬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는 웨이스트를 포함하여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되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를 포함한다.

4.2.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제0503호의 마모,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및 제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조수모, 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그리고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기타 식

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4.3. “방직용 펄프”, “화학 재료” 및 “제지 원료”라는 용어는 재생이나 반합성,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기술하기 위해 목록에서 사용된다.

4.4. “인조스테이플섬유”라는 용어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지칭할 때 목록에서 사용된다.

주석 5:

5.1. 목록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제3열에 규정된 조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합산되는 경우 사용된 모든 기초 방직 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초 방직 재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아래의 주석 5.3 및 5.4도 참조).

5.2. 그러나, 주석 5.1에 언급된 최소허용치는 단지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기초 방직 재료이다.

- 견
- 양모
- 조수모
- 섬수모
- 마모
- 면
- 제지 원료 및 종이
- 아마

- 대마
-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 사이잘삼 및 기타 아계부류의 방직용 섬유
- 코코넛, 아바카, 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합성 인조 필라멘트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 전도성 필라멘트
-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폴리에테르의 연질 조각을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5605호의 제품(금속드리사)
- 제5605호의 기타 제품

예:

제5203호의 면섬유 및 제5506호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제5205호의 사는 혼방사이다. 그러므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합성 스테이플 섬유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총중량이 사의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

제5107호의 양모사와 제5509호의 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제

5112호의 모직물은 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합성사 또는 원산지 규정(카드 또는 코움을 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방적처리를 위해 준비되지 아니한 천연섬유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양모사 또는 그 둘의 결합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총중량이 직물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

제5205호의 면사와 제5210호의 면직물로부터 만들어진 제5802호의 터후트직물은 면직물 그 자체가 두 개의 별도의 호에 분류된 사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직물이거나 사용된 면사 자체가 혼방인 경우에만 혼방 제품이다.

예/:

해당 터후트직물이 제5205호의 면사 및 제5407호의 합성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경우, 사용된 사는 명백히 두 개의 별도의 기초 방직 재료이고 따라서 터후트직물은 그 자체로 혼방 제품이다.

5.3.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허용치는 이 사에 대해 20퍼센트이다.

5.4.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최소허용치는 이 스트립에 대해 30 퍼센트이다.

주석 6: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목록의 제3열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 재료(안감과 심감은 예외)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2. 주석 6.3을 저해함이 없이,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그 재료가 직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 제품의 생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예:

목록의 규정이 특정 직물물품(바지와 같은)에 대해 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단추와 같은 금속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단추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는 지퍼가 통상적으로 직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3.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는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HS	상품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제 1 류	산 동물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 전 획득되어야 함.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	사용된 제1류와 제 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제 3 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 4 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 한 식용의 동물성 생식품.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 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 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 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 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 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사용된 제 2009호의 모든 과일쥬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은 제외)가 원산 지 재료인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제 5 류	다른 류에 포함되거나 분 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 식품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 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 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제7류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사용된 제8류의 모든 과실 및 견과류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ex 제9류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 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0902	차(향미가 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0902.10	녹차(발효되지 않은 것), 1 개의 총중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즉시 포장된 것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910.91	혼합 향신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0류	곡 물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 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10 류, 제11류, 그리고 제23류 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1106.10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 류의 분, 조분 및 가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 물, 짚과 사료용 식물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301	락과 천연검, 수지, 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발삼)	사용된 제1301호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 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 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 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생산
1302.19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및 그 외의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1211.20호의 것 은 제외

(1)	(2)	(3) 또는 (4)
1302.31 1302.32, 및 1302.39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의 돼지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0207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으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0506호의 뼈는 사용될 수 없음.
1502	소,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료와 제0506호의 뼈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7부터 ex1515까지	식물성 기름과 그 분획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509 및 1510	올리브 기름과 그 분획물, 오로지 올리브로부터만 획득한 그 밖의 기름과 그 분획물	사용된 모든 식물성 기름의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2류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5류 및 제23류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러나, 제1507호, 제1508호, 제1511호 및 제1513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와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5류 및 제23류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러나 제1507호와 제1508호, 제1511호 및 제1513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제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류의 동물로부터의 생산. 그리고/또는, -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701.9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이며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 꿀(천연꿀을 혼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및 과당 - 기타의 당류(고체상태인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기타	제1702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ex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1901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4류, 제1006호 및 제11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의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은 완전 획득되는 생산(다만, 듀럼밀과 그 부산물의 경우는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2류와 제3류의 모든 재료가 그 제품 중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ex 1902.19	국수(조리되지 않고 건조된, 속을 채우지 않은, 분으로부터 획득된 것을 말한다. 듀럼밀 새물리나의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1902.30	라면, 인스턴트 국수, 열을 가하거나 튀겨 조리되고, 고추분말과 소금, 마늘향의 분말과 양념 베이스를 포함한 혼합조미료와 함께 포장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1903 1904 ex 1905 ex 1905.90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프레이크상, 난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조제식품류(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부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난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웨이퍼,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다음을 제외함 쌀의 베이커리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108호의 감자전분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806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의 모든 곡물과 분말(다만, 듀럼밀과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을 제외한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11류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제20류 2006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과일, 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사용된 제7류와 제8류 및 제12류의 모든 과일, 견과류, 채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제 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2007 2008.11 2008.19 2008.91 2008.92 및 2008.99 2009	잼, 과실제리, 마말레이드, 과실 또는 견과류의 푸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낙화생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기타(제 2008.19호의 것을 제외하고 혼합물을 포함한다)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제0801호와 제0802호 및 제1202호부터 제1207호까지의 모든 원산지 견과류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는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21류 ex 2103	각종의 조제식료품. 다음을 제외함.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겨자의 분·조분은 사용될 수 있음.	

(1)	(2)	(3) 또는	(4)
2103.30	겨자의 분, 조분 및 그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103.90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104.10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용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002부터 제2005호까지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류는 제외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106	따로 분류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	(2)	(3) 또는	(4)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 주스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함. 다만, 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211.20호와 제1302.19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207호 또는 제2208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 류주, 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207호 또는 제2208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ex 제23류 ex 2301 2303.10 2306.90 2309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다음을 제외함. 고래, 육,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 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사료용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제2류와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옥수수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올리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4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7류의 모든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1)	(2)	(3) 또는 (4)	
ex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2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2402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와 담배부산물의 중량의 최소 70퍼센트가 원산지재료인 생산	
2403.10	흡연용 담배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의 중량의 최소 70퍼센트가 원산지재료인 생산	
ex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와 시멘트.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2504.10	천연흑연(분상 또는 플레이크상인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5.12	대리석, 트레버틴,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6.12	화강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8.2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2519	파쇄된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완전밀폐용기에 담긴 것에 한한다)과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하고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를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는 사용될 수 있음.	
ex 2520.20	플라스터(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된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2525.20	운모분	운모 또는 운모 웨이스트의 분쇄	
ex 2530.90	어드칼라(하소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에 한한다)	어드칼라의 하소 또는 분쇄	

(1)	(2)	(3) 또는	(4)
제26류	광, 슬랙 및 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28류	무기화합품 및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29류	유기화합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2905.19	메탈알콜레이트(이 호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올의 것)	제2905호의 다른 재료들을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이 호의 메탈 알콜올레이트의 총가치가 이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15호와 제2916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2932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황산화유도체 및 질산염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환식아세탈과 내연헤미아세탈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황산화유도체 및 질산염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09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2933	질소테로고리 화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32호와 제2933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32호와 제2933호 및 제 2934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ex 제30류	의료용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3001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기관(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타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해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002	인혈, 치료용, 예방 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 (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1류	비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 기타 비료 및 이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다음을 제외함. - 질산나트륨 - 칼슘시아나미드 - 황산칼륨 - 황산마그네슘칼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 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201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식물성 유연엑스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205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³⁾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203호, 제3204호 및 제3205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3205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206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 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 제32류에 관한 주해3은 이러한 조제품이, 제32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다른 재료의 안료로 쓰이거나 안료 조제품 생산의 원료로 쓰이는 종류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1)	(2)	(3) 또는	(4)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애플 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 불휘발성유,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이 호의 다른 "군"4)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품과 같은 "군"의 재료는 그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4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 조제윤활제, 인조왁스, 조제왁스, 광택 또는 연마조제품,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 치과용왁스와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파라핀, 석유왁스, 역청왁스, 분탄왁스, 비늘왁스를 기제로 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4) "군"은 세미콜론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호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1)	(2)	(3) 또는	(4)
3505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 전분(예:프리젤라티나 이징드 전분 또는 에스 테르화 전분) 및 전분, 텍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 전분 에테르 및 에스 테르 -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108호의 것은 제외 제3505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108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507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팩으로 된, 천연색 사진용의 것) -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와 제3702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3702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와 제3702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3701호와 제3702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와 제3702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704	사진플레이트, 필름, 인화지, 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ex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803.00	정제한 톨올오일	조상 톨올 오일의 정제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805.10	정화된 황산테레빈유	황산테레빈원유의 증류 또는 정제에 의한 정화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6.30	에스테르검	수지산업으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8	살충제, 살서제(쥐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 제제, 식물성장조절제소 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 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 지, 양초 및 파리잡이 끈 끈이)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9	완성가공제, 염색촉진 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 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 는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 땀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땀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1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3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 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9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2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821.00	미생물용(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 인간, 동물 세포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22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콜	
3823.11부터 3823.19까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콜	제3823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3901부터 3921까지	플라스틱(일차제품, 웨이스트, 페어링인 것에 한한다)과 플라스틱 부스러기, 플라스틱 반제품과 물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3907.30 및 3907.40	에폭시수지 및 폴리카보네이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907.20 및 3907.91	기타 폴리에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922부터 3926까지	플라스틱 물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4403	원목[꺾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ex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 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합판용 단판 (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 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 가공, 홈가공, 은축이음 가공, 경사이음가공, 브이형이음가공, 구슬형 가공, 주형가공,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연마, 엔드-조인트한 것인지를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	(2)	(3) 또는 (4)	
ex 4410 부터 ex 4413까지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구슬형가공된 스킨 및 주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포함한다)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	
ex 4415.10	목재의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크기에 맞춰 자르지 않은 보드로부터의 생산	
ex 4416.00	목재의, 통, 배럴, 배트, 텀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쪼갠 막대로부터의 생산 (양쪽 주 표면에 톱질 이상의 가공이 안된 것에 한한다)	
ex 4418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셀룰라우드패널과 지붕 이 판자는 사용될 수 있음.	
	- 구슬형가공품 및 주형가공품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	
ex 4421.90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용의 나무 못 또는 핀	모든 호의 나무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409호의 인발한 나무는 제외	
ex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제4501호의 코르크로부터의 생산	
제46류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제47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ex 제48류 4816 4817 4818.10 ex 4820.10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카본지, 셀프복사지,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 (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플레이트 (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 봉합엽서, 우편엽서, 통신훈용 카드와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 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화장지 편지지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제47류의 제지원료로부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49류 4909	인쇄서적, 신문, 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 문서, 타이프문서 및 도면. 다음을 제외함.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전언용,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 봉투,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909호와 제4911호의 것은 제외	
ex 제50류	견.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ex 5003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하고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말한다)	견웨이스트의 카드 또는 코움	
5004 부터 ex 5006까지	견사, 견방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⁵⁾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 주석⁵를 참조

(1)	(2)	(3) 또는	(4)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⁶⁾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⁷⁾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칩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ex 제51류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106부터 5110까지	양모사,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⁸⁾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111부터 5113까지	식물(양모, 조수모 또는 마모사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⁹⁾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염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ex 제52류	면.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204부터 5207까지	면의 사 또는 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¹⁾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1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208부터 5212까지	면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 ¹²⁾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¹³⁾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 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 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 투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ex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 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 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306부터 5308까지	기타 식물성 섬유사 및 지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⁴⁾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1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309부터 5311까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의 식물과 지사의 식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¹⁵⁾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⁶⁾ - 코이어사 - 황마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 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 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 투, 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1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401부터 5406까지	사 및 모노필라멘트와 인조필라멘트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⁷⁾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 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1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407 및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¹⁸⁾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¹⁹⁾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칩투, 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1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501부터 5507 까지	인조 스테이플사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로부터의 생산	
5508부터 5511까지	인조 스테이플 섬유사 와 재봉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⁰⁾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²⁰⁾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512부터 5516까지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²¹⁾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²⁾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 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 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칩 투, 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 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2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ex 제56류	위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³⁾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5602	펠트(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602.10	- 니들룸펠트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⁴⁾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토크 의 경우, 단일 섬유나 필라멘트가 9데시텍스 이하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치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²³⁾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²⁴⁾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604	- 기타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 한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⁵⁾ - 천연섬유 -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 스테이플섬유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5604.10	-고무사와 코오트(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고무사와 코오트(방직용 섬유로 피복하지 않은 것)로부터의 생산	
5604.90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⁶⁾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2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605	금속드리사(짐프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 스트립, 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만 해당한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⁷⁾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5606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⁸⁾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2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니들룸펠트의 것 - 기타 펠트의 것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²⁹⁾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및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 또는 섬유가 9데시텍스 이하인 모든 종류는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음.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³⁰⁾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준비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³¹⁾ -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 천연섬유. 또는,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음.	

(1)	(2)	(3)	또는 (4)
ex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 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다음을 제외함.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³²⁾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³³⁾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5805	고우벌린직, 플란더스직, 오버션직, 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 트리(예:퍼티포인트·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 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2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810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겹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사로부터의 생산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만 해당한다)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이하를 함유 - 기타	사로부터의 생산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	

3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903	플라스틱을 칩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칩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 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 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로부터의 생산 ³⁴⁾	

³⁴⁾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905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 고무·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 - 기타	사로부터의 생산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³⁵⁾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³⁵⁾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를 참조

(1)	(2)	(3)	또는 (4)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직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이상을 함유한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기타 직물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³⁶⁾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화학재료로부터의 생산 사로부터의 생산	
5907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직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³⁶⁾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한다.

(1)	(2)	(3)	또는 (4)
5908	램프용, 스토브용, 라이터용, 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 편조 또는 편직 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 여부를 불문한다) - 백열가스 맨틀(침투된 것에 한한다) - 기타	가스 맨틀용 관상편물로부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5909부터 5911까지	섬유제품(공업용에 적합한 종류의 것) - 제5911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펠트된 것과 아닌 것을 포함하며 침투 또는 판는 도포여부를 불문하고, 단일 또는 복합 경편직 및/또는 웨프트를 자장한 관형 또는 순환형, 또는 제5911호의 복수의 경사 및/또는 웨프트를 자장한 평 직물에 한한다)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직물 또는 엉마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로부터의 생산³⁷⁾ - 다음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의 사³⁸⁾ -- 사(폐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복합사에 한한다) --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메타 페닐렌디아민 및 이소프탈산의 축합중합에 의해 획득된 것에 한한다) --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모노필³⁹⁾ -- 합성방직섬유제의 사 [폴리(파라-페닐렌 테레프탈아마이드)의 것에 한한다] -- 유리 섬유의 사(폐놀수지로 도포된 것과 아크릴사로 김프된 것에 한한다)⁴⁰⁾	

3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8)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있다

39)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있다

40)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있다

(1)	(2)	(3)	또는 (4)
	- 기타	-- 폴리에스테르 코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와 테레프탈산, 1,4-시클로헥산디탄올산 및 이소프탈산의 수지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제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⁴¹⁾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제 (카드,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⁴¹⁾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제60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다음으로부터의 생산⁴²⁾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뜨개질(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동반하는 천연스테이플사 및/또는 인조스테이플사의 방적⁴³⁾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압출 또는, 절단을 포함한 편직 및 제조(형성을 위해 절단되었거나 형성을 위해 직접 획득된 편직 또는 크로셋 직물 두 조각 이상의 조립)⁴⁴⁾⁴⁵⁾	

4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43) 소개주석5를 참조

44) 소개주석5를 참조

45) 소개주석6을 참조

(1)	(2)	(3)	또는 (4)
ex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⁴⁶⁾⁴⁷⁾ 또는,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자수.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⁴⁸⁾ 또는,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도포.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⁴⁹⁾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칩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며 구성보다 선행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⁵⁰⁾⁵¹⁾	

46) 소개주석5를 참조

47) 소개주석6을 참조

48) 소개주석6을 참조

49) 소개주석6를 참조

5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51) 소개주석6을 참조

(1)	(2)	(3)	또는 (4)
ex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칼라, 커프스 및 컷아웃의 심감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ex 제63류 6301부터 6304까지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 하던 의류, 사용하던 방 직용 섬유제품 및 냅마. 다음은 제외함.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및 베드린넨 등, 커튼 등, 기타 가구제품 - 펠트의 것과 부직포 의 것 - 기타 -- 자수한 것 --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 은 제외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⁵²⁾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표백하지 않은 단사 ⁵³⁾ ⁵⁴⁾ 로부 터의 생산. 또는,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 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 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함.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 ⁵⁵⁾ ⁵⁶⁾	

5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를 참조

53) 소개주석 6을 참조

54)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조각의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 6을 참고

55) 소개주석 6을 참조

56)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조각의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6을 참고

(1)	(2)	(3)	또는 (4)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⁵⁷⁾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펠프	
6306	타포린, 천막, 차양, 텐트, 돛 및 캠프용품 - 비직조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58) 59)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펠프	
6307	- 기타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 ^{60) 61)}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6308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 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 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 성된 세트(부속품이 있 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 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 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그 구성품에 적용되는 규 정을 충족시켜야 함. 그러 나, 비원산지 물품의 총가 치가 세트의 공장도 가격 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은 세트에 사용될 수 있음.	
ex 제64류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부 착된 갑피의 조립으로부 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5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5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59) 소개주석6을 참조

6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61) 소개주석6을 참조

(1)	(2)	(3)	또는 (4)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제65류 6505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은 제외한다)의 레이스, 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직물류로 만든것만 해당하며, 안을 댄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 또는 방직 섬유로부터의 생산 ⁶²⁾	
ex 제 66 류 6601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 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67 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구제품, 조화, 인모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제 68 류 ex 6803 00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슬레이트 또는 집적된 슬레이트의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가공된 슬레이트로부터의 생산	

62) 소개주석 6을 참조

(1)	(2)	(3)	또는 (4)
ex 6812	석면 제품,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6814	운모 제품(지,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된 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한다)	가공된 운모로부터의 생산(응결 또는 재생된 운모를 포함한다)	
제 69 류	도자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7006	제7003호, 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절연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SEMII 기준 ⁶³⁾ 에 따른 반도체 등급의유리판 토대 -기타	제7006호의 코팅되지 않은 유리판 토대로부터의 생산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008	유리체의 복층절연유니트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⁶³⁾ SEMII: 반도체장비재료협회

(1)	(2)	(3)	또는 (4)
7010	유리제의 카보이, 병 플라스크, 단지항아리, 약병, 앰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와 유리제의 보존병 및 유리제의 마개, 뚜껑 및 기타 마개류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유리제품의 절단. 다만, 자르지 않은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7013	유리제품(식탁용, 주방용, 화장실, 사무용, 실내 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유리제품의 절단. 다만, 자르지 않은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또는, 손으로 붙어서 만든 유리제품의 수공 장식(실크스크린 프린팅 제외), 사용된 손으로 붙어서 만든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1)	(2)	(3)	또는 (4)
ex 7019	유리섬유(단사 제외) 제품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채색하지 않은 슬라이버, 로빙, 실, 단연사 또는, -글라스 울	
ex 제 71 류 7101 7102, 7103 및 7104 7106, 7108 및 7110	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 변장식용품과 주화. 다음을 제외함.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꿰뚫,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꿰뚫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기타 귀석 및 반귀석 (천연, 합성 또는 재생된 것) 귀금속 -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의 생산 또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7106, 7108 호 및 제7110호의 것은 제외 또는, 제7106, 7108 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 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 가공하지 아니한 귀금속으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7107, 7109 및 7111	귀금속을 입힌 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되지 않은 비금속 부분품으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ex 제72 류	철강.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7207	철 및 비합금 강철의 반제품	제7201, 7202, 7203, 7204, 7205 또는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208 부터 7216까지	철 및 비합금 강철의 평판압연 제품, 바 및 대, 봉, 형재 및 조각	제7206호 또는 제7207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	
7217	철 및 비합금 강의 선	제7207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	
7218.91 및 7218.99	반제품	제7201, 7202, 7203, 7204 또는 7205호 또는 제7218.10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219 부터 7222까지	스테인리스 강의 평판압연 제품, 바 및 대, 봉, 형재 및 조각	제7218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재료로부터의 생산	
7223	스테인리스 강의 선	제7218호의 반제품재료로부터의 생산	
7224.90	반제품	제7201, 7202, 7203, 7204 7205호 또는 제7224.10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	(2)	(3)	또는 (4)
7225 부터 7228까지	비규칙적으로 감긴 고 리형태의 평판압 제품, 열압 바 및 대 기타 합 금 강철의 봉, 형재 및 조각 강철의 합금 또는 비합금 공동 드릴 바 및 대	제7206, 7207, 7218호 또 는 제7224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재 료로부터의 생산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제7224호 반제품 재료로 부터의 생산	
ex 제 73 류	철강의 제품. 다음을 제 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301.10	강시판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 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궤조, 책궤조와 치형 궤조, 침단궤조, 교차 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 로싱피스, 침목(크로스 타이), 계목판, 좌철, 좌철썰기, 저판(베이스 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 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 한다]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304, 7305 및 7306	철강제(주철제를 제외 한다)의 관과 중공프로 파일	제7206, 7207, 7218 또는 제7224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307.21 부터 7307.29까지	스테인리스 강철의 관 연결구류	단조 반가공품의 터닝, 드 릴링, 리밍, 나선가공, 테 버링 및 모래 분사 다만, 사용된 버린 반가공 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1)	(2)	(3)	또는 (4)
7308	철강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물은 제외한다) 및 구조물 부분품(예: 다리 와 교량, 수문, 탑, 격자주, 지붕, 지붕 틀, 문과 창 및 이들의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7301호의 용접된 형재는 사용될 수 없음.	
7315 20	스키드 체인	사용된 제 7315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7403.21, 7403.22 및 7403.29	동 합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407	동의 봉과 프로파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7408	동의 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1)	(2)	(3)	또는 (4)
7409	동의 판, 쉘트 및 스트립(두께가 0,15 mm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료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7411	동제의 판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ex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7601	알루미늄의 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열 또는 전해처리에 의한 생산	

(1)	(2)	(3)	또는 (4)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7605	알루미늄의 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7606	알루미늄 판, 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 mm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7607	알루미늄 박 [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7606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7608	알루미늄 튜브 및 파이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1)	(2)	(3)	또는 (4)
7609	알루미늄제의 관연결 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함.	
7619.99	알루미늄제의 기타제 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제 77 류	HS에서 미래에 사용에 대비하여 확보되었음.		
ex 제 78 류	연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801	연의 껍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7802호의 웨이 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수 없음.	
ex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901	아연의 껍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7902호의 웨이스트나 스 크랩은 사용될 수 없음.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8206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그러나,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도구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도구는 세트에 포함될 수 있음.	
8207.13 부터 8207.30까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 프레스, 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8207.40부터 8207.90까지	탭핑, 드레딩용 공구 드릴링(착암용 제외)용 공구 보링 또는 브로칭용 공구 밀링용 공구 터닝용 공구 기타 호환성공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8211.10 부터 8211.93까지 및 8211.95	톱니 모양 불문의 칼과 절단용 칼날(전지용 칼을 포함한다)(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비금속의 칼날 및 손잡이는 이용될 수 있음.	
8214	칼붙이의 기타 제품(예: 조발기, 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 초퍼 및 민싱용 칼, 종이용 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비금속의 손잡이는 이용될 수 있음.	

(1)	(2)	(3)	또는 (4)
8215	스푼, 포크, 국자, 스키머, 케이크서버, 생선용칼, 버터용칼, 각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비금속의 손잡이는 이용될 수 있음.	
ex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8302. 41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8302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8302. 60	자동 도어 폐지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8302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8306. 21 부터 8306. 29까지	비금속제의 작은 조상 및 기타 장식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8306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ex 제 84 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04	제8402 또는 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5	폴리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6	선박의 데릭 및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7	포크리프트 트럭, 기타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8	기타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텔레페릭)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29	자주식의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레벨러, 스크레이퍼, 메카니컬셔블, 엑스커베이터, 셔블로더,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0	기타의 이동, 정지, 지균, 스크레이핑, 굴착, 탬핑, 콤팩팅, 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 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만 해당한다), 향타기와 향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라이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2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와 잔디 또는 운동장 롤러(토양 준비 또는 경작용의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3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결소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조란, 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4	착유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44	인조섬유의 방사, 연신, 텍스처 도는 절단용의 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합사기, 연사기와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 8446호 또는 제 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6	직기(직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7	편물 기계, 스티치 본딩 집프사, 툴, 레이스, 자수, 트리밍, 꼰꼰 또는 네트 생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56	각종재료의 가공공작 기계(레이저는 기타 광선, 광자빔, 초음파, 방전, 전기화학, 전자빔, 이온빔 또는 플라즈마 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57	금속 가공용의 머시닝 센터, 유닛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만 해당한다)미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보링, 밀링, 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0	디버링,샤프닝, 그라인딩, 호닝, 래핑,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연마재, 고아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 (제 8461호의 기어절삭기,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 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1	플레이닝용, 셰이핑용, 슬로팅용, 부로치용, 기어절삭기용, 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2	단조, 해머링, 다이시스템 평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굽힘, 접음, 교정, 펼침, 전단, 펀칭, 닛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3	재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4	석, 도자기, 콘크리트, 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 기계와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65	목재, 코르크, 뼈, 경질 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 물의 가공기계(네일용, 스테이플용, 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6	제8456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저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가공물 홀더, 틀 홀더,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및 수지식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틀홀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7	수지식 공구(압축 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장착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장착한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9	타자기와 워드 프로세싱 기계 (제8443호의 프린터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474	선별기, 기계식체, 부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연료, 세라믹페이스트, 굳지 아니한 시멘트, 석고,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만 해당한다) 및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제조요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은 제외한다), 금속 탄화물, 유리, 광물성물질,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4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의 척, 크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 헤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8	진공청소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만 해당하며, 제 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11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자석발전기,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예열플러그, 시동전동기)내연 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 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2	전기식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 (제 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윈드스크린 와이퍼, 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과 자동차 용의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4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5	전기식 (전기발열에 따른 가열식을 포함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 및 광자빔식, 초음파식, 전자빔식, 자기 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 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와 헤어컬러, 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 다리미, 기타 가정용 전열 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단, 제 854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1	영상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비디오 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3	디스크, 테이프,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 스마트 카드와 음성 및 기타 현상의 기록용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메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 37류의 물품은 제외 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5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 기기(수신기거나 음성 기록 또는 재생기기르르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6	레이다기기, 항행용 무선 전기기와 무선 원격조절기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7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 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8	텔레비전 수신 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29	부분품 (제 8525호내지 제 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0	철도, 궤도, 도로, 내륙수로, 주차장, 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 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 (제 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 (예: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와 8532호의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계폐기, 퓨즈, 서지억제기, 플러그, 소켓, 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 접속함)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와 광섬유, 광섬유다발 또는 케이블 용의 커넥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8	부분품 (제8535호, 8536호, 또는 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 실드빔 램프 유닛과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자관 벨브와 튜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42. 31 부터 8542.33까지 및 8542. 39	모노리식 집적 회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알맞은 도펀트의 선택적인 주입에 의하여 반도체 기판에 집적회로를 형성하는 확산공정(비당사국에서의 조립 및/또는 테스트 여부 불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4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 절연도체(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만 해당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5	탄소전극, 탄소브러쉬, 램프용 탄소, 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호의 전기절연체를 제외한다)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판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601. 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철도용 기관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8603. 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및 화차 (제8604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8608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 궤도, 도로, 내륙수로, 주차장, 항만,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 안전, 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701부터 8707까지 및 8712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차체 및 제 8701 호에서 8705호까지의 차량을 위한 엔진을 갖 춘 새시, 자전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708부터 8711까지 및 8713부터 8716까지	제 8701호부터 8705호 까지 및 제 8711호부터 8713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 모터싸 이클; 작업차 및 이들 의 부분품, 유모차와 그 부분품,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및 이들 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ex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8804. 00	로토슈트	제8804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8906호의 선체는 사용될 수 없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0 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01	광섬유, 광섬유다발, 제 8544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 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 프리즘, 반사경과 기타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 기기의 부분품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만 해당하며,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12	광학현미경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레이저 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2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22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을 불문하고 알파, 베타 또는 감마방사능을 사용하는 기기. 방사선사진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포함한다. 엑스선관과 기타 엑스선 발생기, 고압발생기, 제어패널, 책상, 스크린, 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27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 점도, 프로서티팽창, 표면 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 소리,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030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 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및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와 윤곽투영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05	기타의 클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만 해당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것만 해당한다) 및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위의 제한 내에서, 사용된 제 9114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13	휴대용시계줄 · 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ex 9113.10 및 9113.20	귀금속을 입힌 금속 또는 비(卑)금속제 (금 또는 은을 도금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기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92 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93 류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4 류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 서포트,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406	조립식 건축물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5 류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9503	기타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9506.31 및 9506.39	골프채와 기타 골프용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한 일차 성형된 반제품은 사용될 수 있음.	
ex 제 96 류	잡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9601 및 9602	가공한 아이보리, 뼈, 귀갑, 뿔, 사슴뿔, 산호, 자개와 기타 동물성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을 포함한다)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제품(왁스, 스테아린, 천연수지 또는 모델링 페이스트제이 것만 해당한다)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제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 (제3503호 젤라틴은 제외한다), 비경화 젤라틴 재료의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9603. 10, ex 9603. 40 및 9603. 90	비, 브러쉬(마당비와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와 다람쥐 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모프와 깃 먼지떨이, 페인트용의 패드와 로우러 및 스퀴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 바느질용,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될 규정을 충족해야함. 그러나, 비원산지 물품이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은 결합될 수 있음.	
9606	단추, 프레스파스너,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1)	(2)	(3)	또는 (4)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스틸로그래프 펜과 기타의 펜, 절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 펜슬홀, 유사한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캡과 크립을 포함하여 제9609호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사용 될 수 있음.	
9612	타자기용 리본 도는 이와 유사한 리본 (잉크가 침투되어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폴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9613. 20	포켓형 라이터 (가스 주입식의 것으로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 9613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9614	깍연용 파이프와 파이프 볼	일차 성형된 반제품으로부터의 생산	
제 97 류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공통규정

1. 아래 기술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 부속서 2에 명시된 규정 대신, 연간 쿼터에 의해 제한을 받을지라도, 다음의 규정이 또한 적용될 수 있다.

2. 이 부속서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영어 문구를 포함한다. “예외물량 - 의정서의 부속서 2-가...”

3. 해당 제품이 예외물량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수출자가 서명한 신고서의 규정에 따른 이들 예외물량에 따라, 제품이 유럽공동체 당사자로 수입될 수 있다.

4. 원산지 증명이 어묵 조제품(제1604.20호의 일부)에 대한 예외물량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은 어묵 조제품이 그 제품의 중량 당 최소 40퍼센트의 어류로 구성되고, 명태 종이 연육의 주요 원료⁶⁴⁾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된다.

5. 원산지 증명이 염색된 식물(제5408.22호 및 제5408.32호)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그 원산지 증명은 염색되기 전 사용된 식물이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 한다.

6. 이 부속서에 언급된 모든 물량은 유럽공동체 당사자에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집행위원회는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적용가능한

⁶⁴⁾ 필요시, 주요원료의 개념은 이 의정서의 제28조에 따라 관세위원회에 의하여 해석된다.

법령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7. 아래 표에 적시된 쿼터는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들 예외물량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럽공동체 당사자로 수출된 물량은 유럽공동체 당사자로의 수입을 근거로 산정될 것이다.

HS	상품명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연간 수출쿼터
(1)	(2)	(3)	(4)
ex 1604.20	제품의 중량 당 최소한 40퍼센트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종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 ⁶⁵⁾	제3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이행 1년차 연간 쿼터: 2,000톤 이행 2년차 연간 쿼터: 2,500톤 이행 3년차 및 그 이후 연간 쿼터: 3,500톤
ex 1905.90	비스켓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연간 270 메트릭톤의 쿼터
2402.20	권련(담배를 포함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연간 250 메트릭톤의 쿼터
5204	면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86톤의 쿼터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100분의 8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2,310톤의 쿼터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100분의 85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377톤의 쿼터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은 해당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92톤의 쿼터

65) 특히 공통규정 제4항 참조

5408	인조 필라멘트사의 직물	인조 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표백·떠어·서라이징·열처리·기모·캘린더·방축방지가공·영구·마감처리·증기처리·침투·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연간 17,805,290 SME의 키퍼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286톤의 키퍼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3,437톤의 키퍼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1,718톤의 키퍼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203톤의 키퍼

부속서 3

송품장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송품장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²⁾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불가리아어 본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 (1))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ъдет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 (2).

스페인어 본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¹⁾.)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²⁾.

체코어 본

Vývozce výrobků uvedených v tomto dokumentu (číslo povolení...

⁽¹⁾) prohlašuje, že kromě zřetelně označených, mají tyto výrobky preferenční původ v ...⁽²⁾.

덴마크어 본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¹⁾),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ndelse i ...⁽²⁾.

독일어 본

Der Ausführer (Ermächtigter Ausführer; Bewilligungs-Nr. ...⁽¹⁾)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ä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äferenzbegünstigte ...⁽²⁾ Ursprungswaren sind.

에스토니아어 본

Käesoleva dokumendiga hõ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ameti kinnitus nr. ...⁽¹⁾)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²⁾ sooduspäritoluga, vä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äidatud teisiti.

그리스어 본

Ο εξαγωγέας των προϊόντων που καλύπτονται από το παρόν έγγραφο (άδεια τελωνείου υπ' αριθ. ...⁽¹⁾) δηλώνει ότι, εκτός εάν δηλώνεται σαφώς άλλως, τα προϊόντα αυτά είναι προτιμησηακής καταγωγής ...⁽²⁾.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²⁾ preferential origin.

프랑스어 본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¹⁾)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²⁾.

이탈리아어 본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¹⁾)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²⁾.

라트비아어 본

Eksportētājs produktiem, kuri ietverti šajā dokumentā (muitas pilnvara Nr. ...⁽¹⁾), deklarē, ka, izņemot tur, kur ir citādi skaidri noteikts, šiem produktiem ir priekšrocību izcelsme no ...⁽²⁾.

리투아니아어 본

Šiame dokumente išvardintų prekių eksportuotojas (muitinės liudijimo Nr. ...⁽¹⁾)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²⁾ preferencinės kilmės prekės.

헝가리어 본

A jelen okmányban szereplő áruk exportőre (vámfelhatalmazási szám: ...⁽¹⁾) kijelentem, hogy eltérő jelzés hiányában az áruk kedvezményes ...⁽²⁾ származásúak.

몰타어 본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¹⁾) jiddikjara li, hlief fejn indikat b'mod ċ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ġini preferenzjali ...⁽²⁾.

네덜란드어 본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 ...⁽¹⁾),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ële ... oorsprong zijn ⁽²⁾.

폴란드어 본

Eksporter produktów objętych tym dokumentem (upoważnienie władz celnych nr ...⁽¹⁾) deklaruje, że z wyjątkiem gdzie jest to wyraźnie określone, produkty te mają ...⁽²⁾ preferencyjne pochodzenie.

포르투갈어 본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ção aduaneira n.º. ...⁽¹⁾), declara que, salvo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ário, estes produtos são de origem preferencial ...⁽²⁾.

루마니아어 본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b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ția vamală nr. ...⁽¹⁾) declară că, exceptând cazul în care î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ine preferențială ...⁽²⁾.

슬로베니아어 본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št ...⁽¹⁾) izjavlja, da, razen če ni drugač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²⁾ poreklo.

슬로바키아어 본

Vývozca výrobkov uvedených v tomto dokumente (číslo povolenia ...⁽¹⁾) vyhlasuje, že okrem zreteľne označených, majú tieto výrobky preferenčný pôvod v ...⁽²⁾.

핀란드어 본

Tässä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ä (tullin lupa n:o ...⁽¹⁾) ilmoittaa, että nämä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ä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alkuperä tuotteita ⁽²⁾.

스웨덴어 본

Exportö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ånd nr. ...⁽¹⁾) försä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örmånsberättigande ... ursprung ⁽²⁾.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 송품장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송품장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송품장 신고서가 세우타 및 벨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자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안도라공국에 관한 공동 선언

1. HS의 제25류에서 제97류까지에 해당되는 안도라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유럽공동체 당사자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위에 언급된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산마리노공화국에 관한 공동 선언

1. 산마리노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유럽공동체 당사자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위에 언급된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동 선언

1. 양 당사자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고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합의한다. 양 당사자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생산 공정, 가격 변동 및 그 밖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서 2

는 HS의 정기적인 개정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주해를 수립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주해는 양 당사자에 의해 그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주 해

1. 제1조의 목적상, 생산은 수확, 덧사냥, 생산, 번식 및 분해를 포함한다.

2. 제1조사호의 목적상, **확인가능한**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을 말한다.

3. 제5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자가생산된 원산지 재료를 포함한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품의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4.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재료의 생산으로 초래된 모든 비용과 무역의 일반 과정에서 추가된 이윤과 동등한 이윤 금액을 포함한다.

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간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간 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

6. 제10조의 목적상, 중립재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설비 및 장비

다. 기계 및 도구, 그리고

라.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아니하는 상품

7. 제11조의 목적상,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제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8. 제11조의 목적상, 특정한 “기간”이란 각 당사자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만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가. 제13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원산지 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제시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10. 안도라공국에 대한 공동 선언의 목적상, 안도라공국의 관세당국은 안도라공국의 공동 선언의 적용을 담당한다.

11. 산마리노공화국에 대한 공동 선언의 목적상, 이탈리아공화국의 관세당국은 산마리노공화국의 공동 선언의 적용을 담당한다.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 정 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 가. **관세 법령**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규율하고, 금지, 제한 및 통제조치를 포함한 그 밖의 세관 체제 또는 절차 하에 상품을 두는 것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적용가능한 법 또는 규정을 말한다.
- 나. **요청 당국**이란 당사자에 의해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되고 이 의정서에 근거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권한있는 행정당국을 말한다.
- 다. **피요청 당국**이란 당사자에 의해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되고 이 의정서에 근거하여 협조를 요청받는 권한있는 행정당국을 말한다.
- 라. **개인 자료**란 확인된 또는 확인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 마. **관세 법령 위반행위**란 관세 법령의 모든 위반행위 또는 위반을 시도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양 당사자는 특히 관세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조사 및 방지를 통해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분야에 서 이 의정서에 규정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2. 이 의정서에 규정된 관세 사안에서의 지원은 이 의정서의 적용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의 어떠한 행정당국에도 적용된다. 이는 형사 사

안에서의 상호 지원을 규율하는 규칙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사법 당국의 요청으로 행사된 권한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그러한 정보의 전달이 그 당국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루지 아니한다.

3. 관세, 세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은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요청에 따른 지원

1.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관세 법령 위반 행위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주목된 또는 계획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세 법령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요청 당국에 제공한다.

2.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요청 당국에 다음을 알린다.

가. 적절한 경우, 그 상품에 적용된 통관절차를 명시하여,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제대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나. 적절한 경우, 그 상품에 적용된 통관절차를 명시하여,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제대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3.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신의 법 또는 규정의 틀 내에서 다음에 대한 특별한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관세 법령 위반 행위에 연루되거나 되어왔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다량의 상품이 조립되어 왔거나 조립될 수 있는 장소

다.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수 있는 상품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운송 수단

제 4 조 자발적 지원

양 당사자는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획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이니셔티브로 그리고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가. 관세 법령 위반행위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행위이면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행위

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다. 관세 법령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품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되어왔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마. 관세 법령 위반 행위에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

제 5 조 전달·통보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신의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수령인에게 요청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이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가. 모든 문서를 전달하거나

나. 모든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피요청 당국에 적용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취한다.

문서의 전달 또는 결정의 통보에 대한 요청은 서면으로 피요청 당국의 공식 언어 또는 그 당국에 수용가능한 언어로 한다.

제 6 조

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의정서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그 요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그 요청에 첨부된다. 사태의 긴급성으로 인해 필요한 때에는, 구두요청도 수용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요청 당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과 이유

라. 관련된 법 또는 규정과 그 밖의 법적 요소

마. 조사의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명

바. 관련 사실과 이미 수행된 조사의 요약

3. 요청은 피요청 당국의 공식 언어 또는 그 당국에 수용가능한 언어로 제출 된다.

4. 요청이 위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 정정 또는 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 그동안, 사전예방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제 7 조 요청의 수행

1. 피요청 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신의 다른 당국의 요청을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과 이용가능한 자원의 한도 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수행한다. 이 규정은 피요청 당국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어 피요청 당국에 의해 그 요청이 전달된 그 밖의 모든 당국에게도 적용된다.

2. 지원요청은 피요청 당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3.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 공무원은 이 의정서의 목적상 지원요청 당국이 필요로 하는 관세 법령 위반행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된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와 그 당사자에 의해 설정된 조건하에, 제1항에 따라 피요청 당국의 사무실 또는 그 밖의 다른 관계 당국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4.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련 당사자 공무원은, 관련된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와 그 당사자에 의해 설정된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 8 조 정보전달의 형태

1. 피요청 당국은 관련문서, 인증사본, 또는 그 밖의 자료와 함께 조사결과를 지원 요청 당국에 서면으로 전달한다.

2. 이 정보는 전산화된 형태일 수 있다.

3. 원본문서는 인증사본이 불충분할 경우, 요청에 의해서만 전달된다. 이 원본은 가능한 조기에 반환된다.

제 9 조

지원을 제공할 의무에 대한 예외

1. 당사자가 이 의정서에 따른 지원이 다음에 해당된다는 의견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가. 이 의정서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주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나. 특히 제10조제2항에 언급된 사례에 있어서, 공공정책, 안보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다.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한다.

2. 지원은 진행 중인 조사, 기소, 또는 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피요청 당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 당국과 협의한다.

3. 요청 당국이 그렇게 요청받을 경우 그 자신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당국은 자신의 지원요청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그러한 지원요청에 어떻게 응할지는 피요청 당국이 결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에, 피요청 당국의 결정과 그 이유는 지체없이 지원요청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 10 조

정보 교환 및 비밀유지

1. 이 의정서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되는 정보는 각 당사자에게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 성격의 것이 된다. 교환되는 정보는 공식적인 비밀 준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며, 정보를 받은 당사자의 관련 법과 공동체 당국에 적용되는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는다.

2. 개인 자료는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내에서 그 특정한 사례에 적용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식으로 그러한 자료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3. 이 의정서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개시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증거의 기록, 보고서 및 증언에 있어서와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고소에서,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참조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그 문서에 대해 접근을 제공한 권한있는 당국은 그러한 사용에 대해 통보받는다.

4. 획득된 정보는 오로지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그러한 정보를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는다. 그러한 사용은 그 당국에 의해 규정된 모든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제 11 조

전문가 및 증인

피요청 당국의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사안과 관련된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고 그 소송에 필요한 물품, 문서 또는 그 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출석요청은 어느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출석해야 할 것인지와 어떠한 직위와 자격으로 신문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제 12 조

지원비용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및 증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이 의정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서로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를 포기한다.

제 13 조

이 행

1. 이 의정서의 이행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권한있는 기관과, 적절한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위임된다. 그들은 특히 자료 보호 분야에서의 발효 증인 규칙을 고려하여 이 의정서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조치와 방안을 결정한다. 그들은 이 의정서에 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개정사항을 권한있는 기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서로 협의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이행

세부규칙을 추후 서로 통보한다.

제 14 조 다른 협정

1.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은

가. 그 밖의 국제 협정이나 협약상의 양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대한민국과 개별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수 있는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에 대해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다. 이 의정서에 따라 획득된 것으로서 유럽공동체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정보에 관하여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세 당국 간 전달을 규율하는 유럽공동체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이 대한민국과 개별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수 있는 상호지원에 관한 양자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이 의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3. 이 의정서의 적용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이 협정 제6.16조(관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관세위원회의 틀 내에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한다.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양 당사자는,

2005년 10월 20일 파리에서 채택되고 2007년 3월 18일 발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유네스코 협약”)을 제15.10조(발효)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유네스코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그 이행의 틀 내에서 협력할 의도로 그 협약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협약의 규정들과 맞는 조치를 개발하고,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다면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이 협정이 지지하는 과정이 공평한 성장과 양 당사자 간의 경제, 무역 및 문화 협력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세계적인 전략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이 의정서의 목적이 다음을 위하여 다른 체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및 미래의 정책 수단에 의해 보완되고 지지됨을 상기하면서,

- 가. 양 당사자의 문화 산업의 역량과 독립성의 강화
- 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의 진흥
- 다. 문화간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보호 및 증진, 그리고
- 라. 문화유산의 인정, 보호 및 증진,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방민의 인정 증진과 문화 정체성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유산의 가치의 인정

양 당사자 간의 문화협력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안별로, 특히 각국의 문화산업 발전 정도, 문화교류의 수준과 구조적인 불균형, 그리고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의 존재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적용범위·목적 및 정의

1.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의정서는 양 당사자가 특히 시청각 분야를 포함하여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틀을 마련한다.

2.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의 적용범위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이 이 의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3조 및 제3조의2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한다.

3. 양 당사자는 자신의 문화정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역량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를 규율하는 조건을 개선하고 교류에 있어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비대칭적 패턴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이 의정서의 목적상,

문화적 다양성, 문화 콘텐츠,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은 유네스코 협약에서 정의되고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 전문가 및 실연자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거나,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문화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자연인을 말

한다.

제 1 절 수평적 규정

제 2 조 문화 교류 및 대화

1. 양 당사자는 자신의 문화정책을 결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육성하고, 자신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의 문화적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양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모범 관행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시청각 사안에 관해서 대화를 통해 공동 이해의 발전과 제고된 정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 대화는 적절한 경우와 시기에 그 밖의 관련 포럼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협력 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제 3 조 문화협력 위원회

1. 이 의정서가 적용된 후 6개월 이내에 문화협력 위원회가 설치된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문화적 사안 및 관행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각 당사자의 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문화협력 위원회는 이 의정서가 적용된 후 1년 이내에,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이 의정서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제15장(제도·일반 및 최종 규정)의 제도적 규정을 이탈하여, 무역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그러한 기능이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관련되는 경우 문화협력 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관하여 무역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다른 쪽 당사자와의 국내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신의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5.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 및 시청각 대표자들로 구성된 문화협력에 관한 국내자문그룹을 설치한다.

6. 당사자는 문화협력 위원회에서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심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이후 신속하게 회합하여 그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함에 있어 문화협력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자의 국내자문그룹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자문그룹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3 조의 2

분쟁해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 제3조제6항에서 언급된 사안이 그 조항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14장(분쟁해결)이 다음의 수정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 가. 무역위원회에 대한 제14장(분쟁해결)의 모든 언급은 문화협력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나. 제14.5조(중재패널 설치)의 목적상,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중재인에 관해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자가 중재패널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추첨에 의한 선정은 제14.18조(중재인 명부)에 따라 작성된 명부가 아니라 다호에 따라 작성된 명부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 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설립 후 신속하게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할 개인 5인을 추천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어느 쪽 당사자의 국민도 아니며 중재패널의 의장으로 활동할 개인 5인을 선정한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명부가 항상 이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중재인은 이 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지식 및 경험을 가진다.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분쟁에 관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부속서 14-다(중재패널 구성원과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를 준수한다.
- 라.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제14.11조(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제2항에 따라 정지할 의무를 선택함에 있어, 제소당사자는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의무만 정지시킬 수 있다.
- 마. 제14.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 이외의 분쟁에서 정지할 의무를 선택함에 있어, 제소당사자는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

제 4 조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1. 양 당사자는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약속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의 그들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에 관여된,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예술가, 배우, 기술자, 그리고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또는

나. 그 밖의 다른 활동 중에서 예를 들어, 음악 녹음과 같은 문화활동에 관여하거나 문학 박람회 및 축제 같은 문화행사에 적극 기여하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시각, 조형 및 공연 예술가와 지휘자, 작곡가, 작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자와 그 밖의 유사한 전문가 및 실연자와 같은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다만, 이들이 일반 공중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자신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데 종사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당사자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예술가 또는 그 밖의 문화전문가 또는 실연자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당사자 내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지 아니한 법인과 그 당사자 내의 소비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틀 내에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른 양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는, 허용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중 90일까지의 기간 동안이다.

3.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의 훈련 및 그들 간의 접촉 증대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구성원

나.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

다. 서커스, 놀이공원 및 유사한 고객유인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그리고

라. 사교무도장 또는 디스코장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그리고 무용 교습가

제 2 절 분야별 규정

제 1 관 시청각물 관련 규정

제 5 조 시청각 공동제작물

1. 이 의정서의 목적상, **공동제작물**이란 이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당사자 양측의 제작자가 투자하여 제작한 시청각물을 말한다.¹⁾

2.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간 새로운 공동제작협정의 교섭과 기존 공동제작협정의 이행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과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련된 양자간 공동제작협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자는 공동제작물에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1)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공동제작물에 대한 인정절차가 있다. 이 인정절차는 공동제작물이 제6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점검에 한정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제작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부여될 것이다.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제작자간 공동제작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한다.

4.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지침 2007/65/EC에 의해 개정된 지침 89/552/EEC의 제4.1조 및 제3i.1조, 또는 그 후속 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청각물 진흥을 위한 요건의 목적상, 지침 2007/65/EC에 의해 개정된 지침 89/552/EEC의 제1(n)(i)조, 또는 그 후속 개정에 따라 유럽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제3항에서 언급된 유럽공동체 당사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²⁾

5.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9676호, 2009.5.21.) 제40조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방송법*(법률 제9280호, 2008.12.31.) 제71조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 2008.12.31.)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대한민국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제3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지방/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³⁾

6.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은 다음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

가.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에 의하여,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각각에 의하여, 직접적으로인지 또는 다수지분에 의한 것인지 관계없이, 소유되고 그 소유가 지속되는 기업간 실현된다.

나. 공동제작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소유하며 그 영역 내에 거주함을 입증할 수 있다.

다.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각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2개국의 제작자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애니메이션물

2) 법령의 개정은 제10항의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앞의 주석과 동일

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3개국으로부터의 제작자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제작자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10퍼센트 미만일 수 없다.

라.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작자(모두 합하여)와 유럽공동체 당사자(모두 합하여)의 제작자 각각의 최소 재정적 기여는 시청각제작물 총 제작비용의 30퍼센트 미만일 수 없다. 애니메이션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여는 총 제작비용의 35퍼센트 미만일 수 없다.

마. 각 당사자의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여는 효과적인 기술적 및 예술적 참여를 포함하고, 양 당사자의 기여 간 균형이 보장된다. 특히,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서 각 당사자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그들의 재정적 기여와 비교하여 2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총 기여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다. 애니메이션물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그들의 재정적 기여와 비교하여 1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총 기여의 65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다.

바.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제3국 제작자의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참여는 가능한 경우 총 제작비용 그리고/또는 시청각물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의 최대 20퍼센트까지 수용된다.

7. 양 당사자는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는 상호 혜택을 보장한다는 것과 제6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제작물이 제6항의 기준에 추가적인 어떠한 조건 없이 제4항 및 제5항 각각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유럽 작품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8. 가.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는 이 의정서 적

용 후 3년의 기간 동안 설정된다. 국내자문그룹의 자문에 따라, 그 만료 6개월 전에, 문화협력 위원회는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공동제작물에 대한 호혜적인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격 부여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율할 것이다.

나. 이 자격 부여는 3년의 존속기간으로 갱신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 쪽 양 당사자가 최초 또는 차후 기간의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자격 부여를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동일한 존속 기간만큼 추가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각 갱신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문화협력 위원회는 가호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평가를 시행할 것이다.

다. 양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영역에서 이러한 공동제작물의 첫 번째 방송 또는 상영일이 관련 기간의 만료일 이전이면, 그러한 자격 부여의 종료는, 제6항의 조건에 따라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공동제작물이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9.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지방/지역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의 존속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특히 국내자문그룹을 통하여 제6항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문화협력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지방/지역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 그리고/또는 제6항에서 언급된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10.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동제작물을 위한 권리가 이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법령 변경의 결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언급된 자신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을 2개월 전 사전 통지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를 하기 전에, 통지하는 당사자는 문화협력 위원회에서 법령 변경의 성격 및 효과를 다른 쪽 당사자와 논의하고 검토한다.

제 6 조

그 밖의 시청각 협력

1. 양 당사자는 축제, 세미나 및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조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시청각물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제2조제2항에 언급된 대화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한 문화 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방송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한다.

가. 권한 있는 당국간 방송 정책 및 규제의 틀에 대한 정보와 의견의 교류 증진

나. 방송 산업간 협력 및 교류 장려

다. 시청각물의 교류 장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송 행사 방문 및 참여의 장려

3. 양 당사자는 시청각 기술의 양립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표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한다.

4. 양 당사자는 시청각물을 창작하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악기 및 스튜디오 녹음 장비와 같은 기술 자재 및 장비의 대여와 임차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5. 양 당사자는 시청각 기록보존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7 조

시청각물 촬영 목적을 위한 자재 및 장비의 일시적 수입

1.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 목적을 위한 장소로서 각 당사자의 영역을 홍보하는 것을 장려한다.

2. 이 협정의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가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재 및 장비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검토하고 허용한다.

제 2 관

시청각 이외 문화 분야의 증진

제 8 조

공연 예술

1. 양 당사자는 특히 오디션 참여, 네트워크의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의 증진을 포함하여 전문가 교류 및 훈련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연 예술의 실연자 간 접촉 증대를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촉진한다.

2.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 제작자와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제작자간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공동 제작을 장려한다.

3. 양 당사자는 적절한 표준화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극장기술표준의 개발과 극장 무대 표시의 사용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을 촉진한다.

제 9 조

출 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의 출판물 교류 및 전파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한다.

- 가. 박람회, 세미나, 문학 행사, 그리고 공공 독서용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 출판과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행사의 조직
- 나. 공동출판 및 번역의 촉진, 그리고
- 다. 사서, 작가, 번역가, 도서관매자 및 출판업자를 위한 전문가 교류와 훈련의 촉진

제 10 조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

양 당사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보호 사업을 유념하면서, 전문가 교류, 전문가 훈련에 대한 협력, 지역민의 인식 제고의 촉진과, 역사적 기념물과 보존 지역의 보호와 문화재와 관련된 조치, 특히 문화재를 지방 생활의 일부로 통합하는 조치의 입법과 이행에 대한 자문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문가의 교류와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우수 관행의 교환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서의 자신의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적절한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장려한다.

터키에 대한 공동 선언

유럽공동체는 공동체와 터키 간에 발효중인 관세동맹에 따라, 터키가 공동체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공동 관세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공동체의 특혜관세 체제에 일치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국가와 상호 유익한 기초에서 협정을 교섭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이에 따라 공동체는 대한민국이 터키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개시하도록 권유하였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터키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협정에 대한 공동 타당성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터키와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통보한다.